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024.01.



SOKCHO CITY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계획의 개요 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성격 6
3 계획수립 의의 8

제2장 도시의 특성과 현황 11
1 속초시 특성 및 성격 11

제3장 관련계획 및 대응전략 31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1
2 2020 도시기본계획 평가 41
3 여건분석 및 대응전략 54
4 지역 이미지 및 주민의식 조사 59

[제2편 도시기본구상]

제1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71
1 미래상 설정 71
2 지표의 설정 77

제2장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91
1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91
2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106

[제3편 부문별 계획]

제1장 토지이용계획 ····· 111

1 현황분석 ····· 111
2 용도별 수요추정 ····· 115
3 토지이용계획 ····· 122

제2장 기반시설계획 ····· 131

1 교통계획 ····· 131
2 물류계획 ····· 175
3 기타 기반시설 계획 ····· 184
4 상·하수도 계획 ····· 206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 227

1 도심 및 시가지 정비 ····· 227
2 주거환경계획 ····· 245

제4장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계획 ····· 265

1 기후변화대응 ····· 265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272
3 자연생태 및 경관녹지 ····· 286
4 대기환경 ····· 296
5 수질환경 ····· 306
6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 318
7 토양환경 ····· 327
8 소음 및 진동 ····· 332
9 에너지 ····· 336
10 폐기물 ····· 350

제5장 경관 및 미관계획 ····· 367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367
2 기본구상 ····· 380
3 경관계획 ····· 388
4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396
5 유형별 가이드라인 ····· 403
6 실행계획 ·····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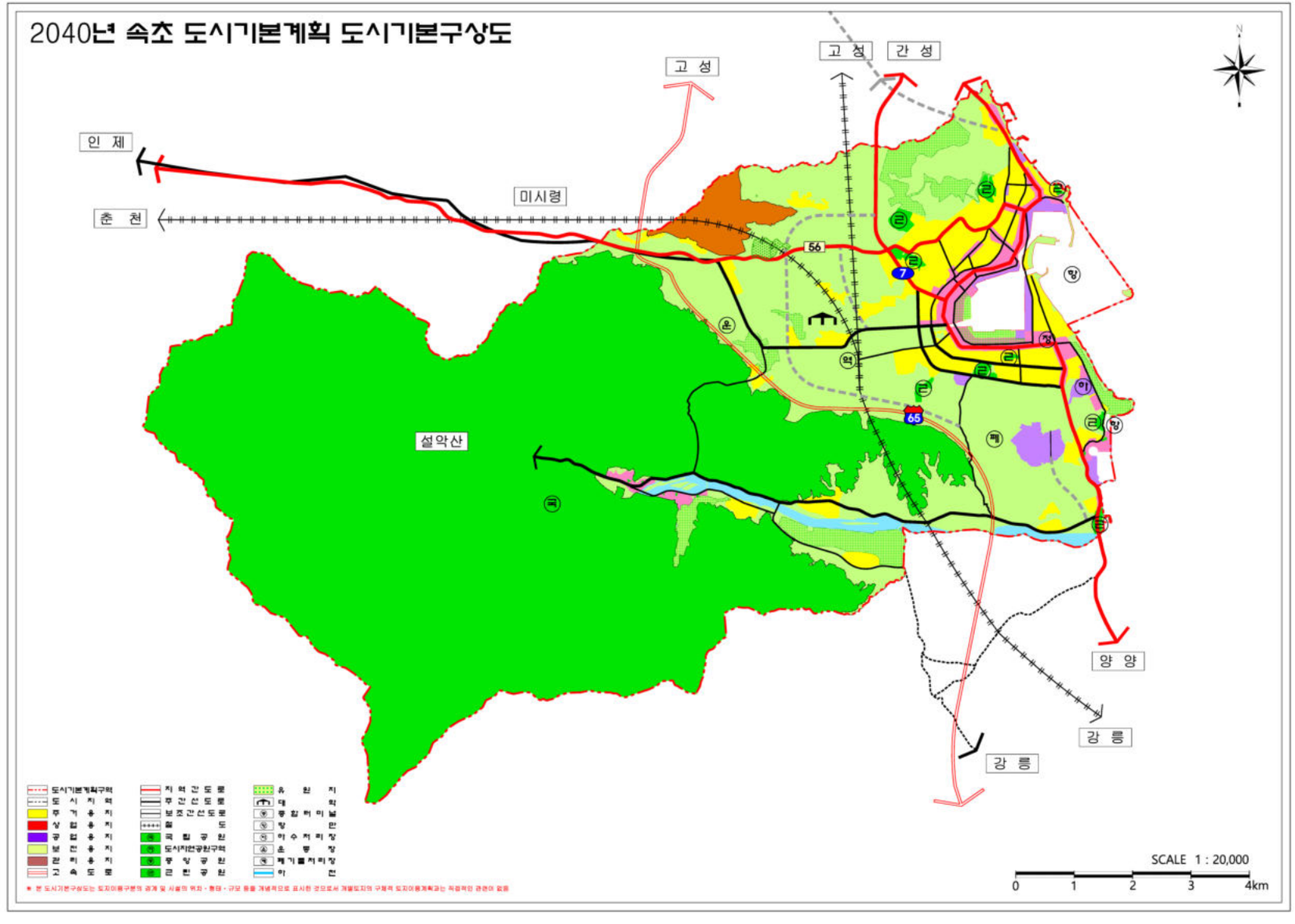
제6장 공원 및 녹지계획 ····· 417
1 현황 및 문제진단 ····· 417
2 기본방향 및 기준검토 ····· 421
3 공원 및 녹지계획 ····· 437

제7장 방재 및 안전계획 ····· 455
1 현황분석 ····· 455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 484
3 방재계획 ····· 487
4 도시안전계획 ····· 503
5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512

제8장 경제.산업 개발계획 ····· 527
1 현황분석 ····· 527
2 농·축산업 ····· 534
3 수산업 ····· 541
4 공업부문 ····· 547
5 서비스업 ····· 555
6 관광 ····· 561

제9장 사회.문화 개발계획 ····· 585
1 의료·보건 ····· 585
2 사회복지부문 ····· 592
3 교육부문 ····· 612
4 문화·체육시설 부문 ····· 620

제10장 실행계획 ····· 625
1 현황분석 ····· 625
2 재정계획 ····· 630
3 재원조달방안 ····· 635
4 투자계획 ····· 638


204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
고 성
고 성
간 성
인 제
미시령
춘 천
56
7
65
설악산
양 양
강 릉
강 릉
SCALE 1 : 20,000
0
1
2
3
4km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주요내용

1 일부변경 대상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유원지 신설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197 일원	148,935㎡	장사동 유원지

2 변경사유

- 사업대상지가 속한 속초시 북부권은 속초IC에서의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산악지형이라는 특성과 교도소, 장묘시설 등의 혐오시설 등이 위치 해 있어 지역개발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지난 2019년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림자원이 훼손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일반적으로 산불로 훼손된 지역의 복원에는 수십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관광트랜드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훼손된 지역 경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상위계획인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주요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계 획 내 용</th><th>변 경 사 유</th></tr>
<tr><td>계획 범위</td><td>○ 공간적 범위 : 속초시 행정구역 전역(서울특별시 기준 북동측으로 248km에 위치)
○ 시간적 범위 : 2017~2040년(계획기간을 5년 단위로 4단계 구분)
<table>
<tr><th>구분</th><th>1단계</th><th>2단계</th><th>3단계</th><th>4단계</th></tr>
<tr><td>계획 기간</td><td>2020~2025년</td><td>2026~2030년</td><td>2031~2035년</td><td>2036~2040년</td></tr>
</table></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계획 인구</td><td>(단위 : 명, 가구, 인/세대)
<table>
<tr><th>구 분</th><th>2025년</th><th>2030년</th><th>2035년</th><th>2040년</th></tr>
<tr><td>계획인구</td><td>85,268</td><td>87,957</td><td>89,860</td><td>90,930</td></tr>
<tr><td>계획가구</td><td>37,073</td><td>38,242</td><td>39,070</td><td>39,535</td></tr>
<tr><td>세대당인구</td><td>2.3</td><td>2.3</td><td>2.3</td><td>2.3</td></tr>
</table></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도시 공간 구조</td><td>○ 1도심 4지역 중심, 1특화핵
- 도심 : 청학·노학
- 지역 중심 : 영랑, 척산, 대포, 청호
- 특화핵 : 학사평</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생활권 및 인구 배분 계획</td><td>○ 2개 대생활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인 구 배 분 (인)</th></tr>
<tr><th>2017년</th><th>2025년</th><th>2030년</th><th>2035년</th><th>2040년</th></tr>
<tr><td>합 계</td><td>83,213</td><td>85,268</td><td>87,957</td><td>89,860</td><td>90,930</td></tr>
<tr><td>북 생활권</td><td>50,053</td><td>50,757</td><td>53,047</td><td>54,528</td><td>55,508</td></tr>
<tr><td>남 생활권</td><td>33,160</td><td>34,511</td><td>34,910</td><td>35,332</td><td>35,422</td></tr>
</table></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able>

구 분	주 요 계 획 내 용	변 경 사 유
도시환경지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단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인 구	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연평균증가율	%	-	0.35	0.46	0.45	0.40
주택	가구당 인구	인/가구	2.4	2.3	2.3	2.3	2.3
	총가구수	가구	33,441	37,073	38,242	39,070	39,535
	주택보급률	%	110.7%	112.0%	115.0%	115.0%	115.0%
	주택공급수	호	37,023	34,033	35,106	35,866	36,293
교통	자동차대수	대	34,917	35,000	36,104	36,885	37,324
	자동차보유	대/인	0.4	0.4	0.4	0.4	0.4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	99.7	100.0	100.0	100.0	100.0
	일최대수요량	㎥/일	39,242	65,517	65,775	652,09	65,986
	하수도보급률	%	99.4	100.0	100.0	100.0	100.0
	일최대하수량	㎥/일	31,485	57,091	60,269	63,135	63,887
의료	병상수	개소	746	853	880	899	910
	의사수	인	107	133	137	140	141
	천인당 병상수	병상/천인	9.0	10.0	10.0	10.0	10.0
	천인당 의사수	인/천인	1.3	1.6	1.6	1.6	1.6
	종합병원	개소	2	2	2	2	2
교육	초등학교	개교	12	12	11	11	11
		인/학급	20.6	21.0	21.0	21.0	21.0
	중학교	개교	4	4	4	3	3
		인/학급	25.4	23.0	23.0	22.9	23.1
	고등학교	개교	3	3	3	3	3
		인/학급	30.8	35.0	22.9	23.0	23.0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	개소	2	2	2	2	2
	장애인 복지시설	개소	3	3	4	4	4
	여성복지시설	개소	1	1	1	1	1
	노인복지시설	개소	100	103	106	108	110
문화체육	도서관	개소	2	3	3	3	3
	생활체육시설	개소	59	59	59	60	61
	공연장	개소	1	2	2	2	2
	청소년 수련시설	개소	3	3	3	3	3

일부변경 주요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계 획 내 용</th><th>변 경 사 유</th></tr>
<tr><td rowspan="5">토지
이용
계획</td><td>○ 시가화용지
- 주거용지 : 6.288㎢(변경없음)
- 상업용지 : 2.316㎢(변경없음)
- 공업용지 : 1.082㎢(변경없음)</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 시가화예정용지
- 주거용지 : 0.707㎢(변경없음)
- 상업용지 : 0.297㎢(변경없음)
- 공업용지 : 0.222㎢(변경없음)</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 보전용지
- 98.397㎢</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 토지이용계획표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면 적 (㎢)</th><th rowspan="2">구성비
(%)</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기 정</th><th>변 경</th><th>변경후</th></tr>
<tr><td>합 계</td><td>110.784</td><td>-</td><td>110.784</td><td>100.0%</td><td></td></tr>
<tr><td>시가화용지</td><td>11.161</td><td>-</td><td>11.161</td><td>10.1%</td><td></td></tr>
<tr><td>주거용지</td><td>6.288</td><td>-</td><td>6.288</td><td>5.7%</td><td></td></tr>
<tr><td>상업용지</td><td>2.316</td><td>-</td><td>2.316</td><td>2.1%</td><td></td></tr>
<tr><td>공업용지</td><td>1.082</td><td>-</td><td>1.082</td><td>1.0%</td><td></td></tr>
<tr><td>관리용지</td><td>1.475</td><td>-</td><td>1.475</td><td>1.3%</td><td></td></tr>
<tr><td>시가화예정용지</td><td>1.226</td><td>-</td><td>1.226</td><td>1.1%</td><td></td></tr>
<tr><td>주거용지</td><td>0.707</td><td>-</td><td>0.707</td><td>0.6%</td><td></td></tr>
<tr><td>상업용지</td><td>0.297</td><td>-</td><td>0.297</td><td>0.3%</td><td></td></tr>
<tr><td>공업용지</td><td>0.222</td><td>-</td><td>0.222</td><td>0.2%</td><td></td></tr>
<tr><td>관리용지</td><td>-</td><td>-</td><td>-</td><td>0.0%</td><td></td></tr>
<tr><td>보전용지</td><td>98.397</td><td>-</td><td>98.397</td><td>88.8%</td><td></td></tr>
</table>
주) 기정은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면적임.</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기반
시설</td><td>○ 도시우회도로의 개설 및 도시환경 악영향 감소방안 마련
○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고 보행자 우선의 도로체계 구축
○ 동해안 관광지의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
○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첨단시스템 도입
○ 지속적이고 적용 가능한 주차공급 정책과 주차수요 관리정책 도입</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도심
및
주거
환경
계획</td><td>○ 구도심 활성화(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 계획적 도시공간 개발
○ 효율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급처리시설 확충
○ 도시환경기반 확충</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계 획 내 용</th><th>변 경 사 유</th></tr>
<tr><td>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전 계획</td><td>ㅇ 기후변화대응
ㅇ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ㅇ 자연생태 및 경관녹지
ㅇ 대기환경
ㅇ 수질환경
ㅇ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ㅇ 토양환경
ㅇ 소음 및 진동
ㅇ 에너지
ㅇ 폐기물</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경관 및 미관</td><td>ㅇ 풍부한 자연경관 및 자원의 보존과 이용
ㅇ 조망경관을 고려한 경관 형성
ㅇ 속초시 고유의 경관특성을 발굴·보전
ㅇ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ㅇ 경관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인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ㅇ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매력적인 지역경관 형성</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r><td>공원·녹지</td><td>ㅇ 유원지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면적 (㎡)</th><th rowspan="2">증감 (㎡)</th><th rowspan="2">도시관리계획 반영여부</th></tr>
<tr><th>기정</th><th>변경</th></tr>
<tr><td>계</td><td>유원지</td><td>8개소</td><td>2,991,799</td><td>3,140,734</td><td>증)148,935</td><td></td></tr>
<tr><td>1</td><td>영랑호유원지</td><td>금호동
600-7원 일원</td><td>1,019,535</td><td>1,019,535</td><td>-</td><td>반영</td></tr>
<tr><td>2</td><td>속초해수욕장
유원지</td><td>조양동
1464-1임 일원</td><td>231,748</td><td>231,748</td><td>-</td><td>반영</td></tr>
<tr><td>3</td><td>청초호유원지</td><td>조양동
1544-1대 일원</td><td>339,780</td><td>339,780</td><td>-</td><td>반영</td></tr>
<tr><td>4</td><td>척산온천
유원지</td><td>노학동
972-1대 일원</td><td>211,031</td><td>211,031</td><td>-</td><td>반영</td></tr>
<tr><td>5</td><td>설악1(D지구)</td><td>설악동 332답
일원</td><td>289,133</td><td>289,133</td><td>-</td><td>반영</td></tr>
<tr><td>6</td><td>설악2(E·F지구)</td><td>설악동
705-54대 일원</td><td>807,492</td><td>807,492</td><td>-</td><td>반영</td></tr>
<tr><td>7</td><td>노학온천</td><td>노학동
745-20학 일원</td><td>93,080</td><td>93,080</td><td>-</td><td>예정</td></tr>
<tr><td>8</td><td>장사동유원지</td><td>장사동
산197임 일원</td><td>-</td><td>148,935</td><td>증)148,935</td><td>예정</td></tr>
</table></td><td>• 장사동 유원지 신설
(증 148,935㎡)</td></tr>
<tr><td>방재 및 안전</td><td>ㅇ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 재해예방대책 수립
ㅇ 단계별 재해관리
ㅇ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반의 도시방재시스템의 구축
ㅇ 광역적이고 통합적인 도시방재 종합행정체계 구축
ㅇ 도시방재관련 긴급 구조체계의 확립 및 재해대책의 강화
ㅇ 도시계획을 통한 방재계획의 실효성 제고</td><td>• 변경사항 없음</td></tr>
</table>

일부변경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계 획 내 용	변 경 사 유
경제·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부문 ○ 서비스업 ○ 관광	• 변경사항 없음
사회복지	○ 의료·보건 ○ 사회·복지부문 ○ 교육부문 ○ 문화·체육시설	• 변경사항 없음
실행계획	○ 재정계획 ○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 변경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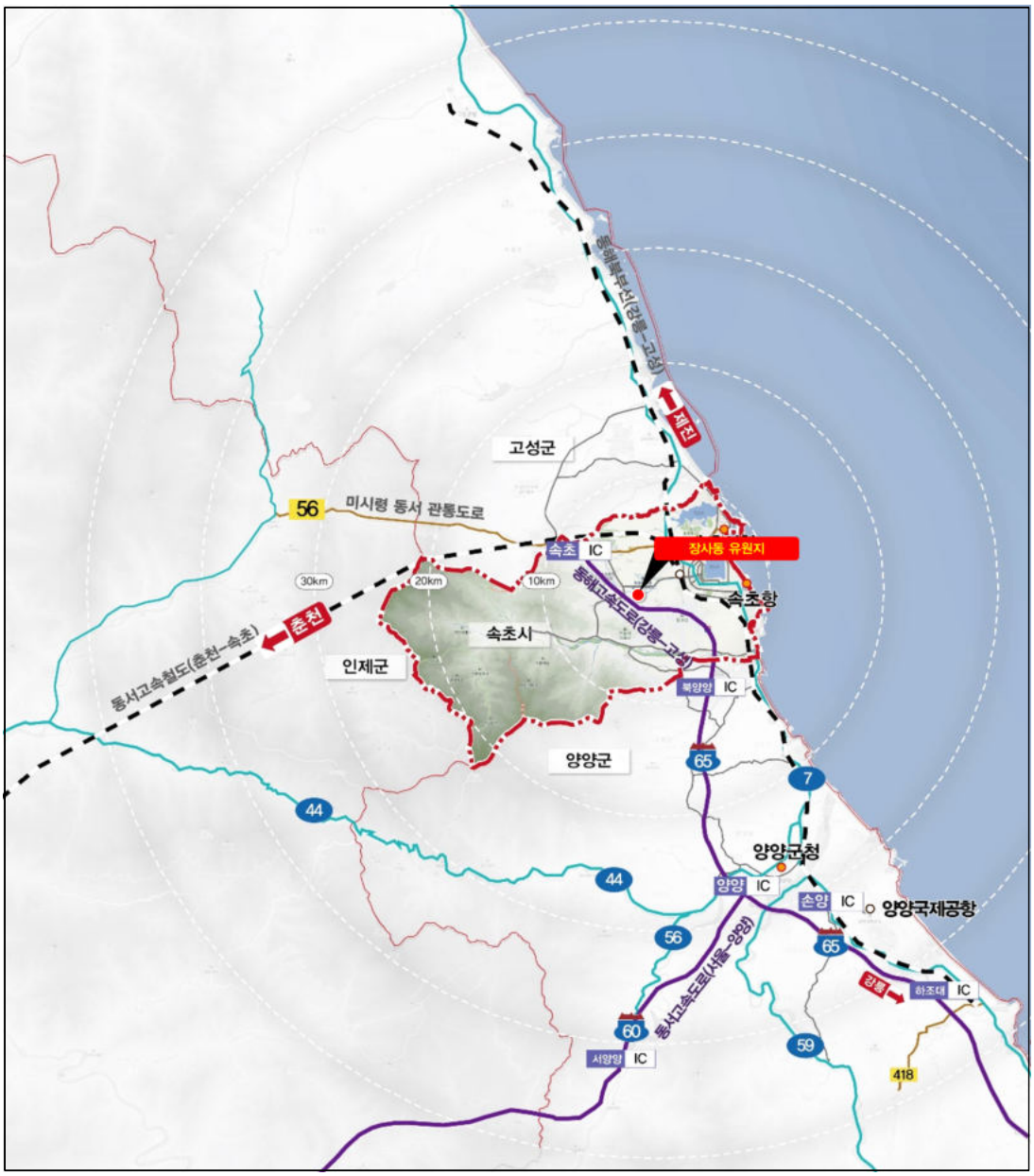
4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세부내용

1. 유원지 신설

1.1 대상지 현황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197번지 일원
- 면적 : 148,935㎡
- 속초IC 인근으로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임

〈 위치도 〉



일부변경 주요내용

〈대상지 전경사진〉



① VIEW POINT	
② VIEW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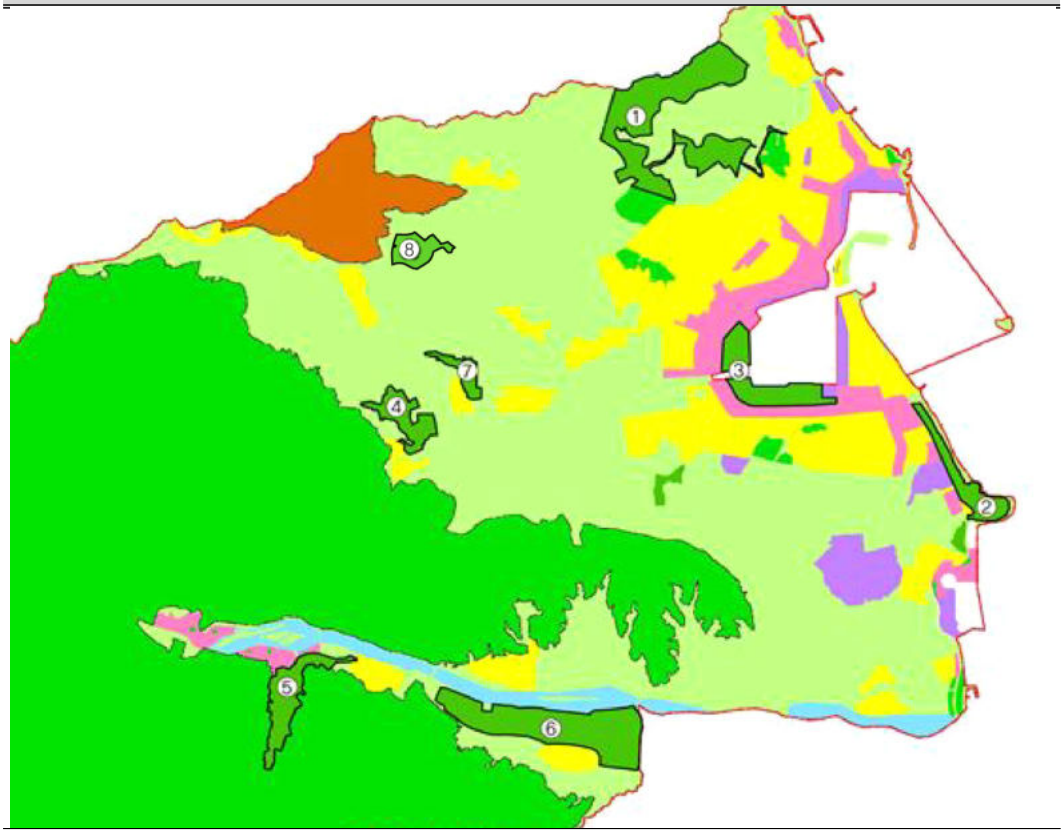
1.2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 변경내용 : 유원지 신설

· 변경사유

- 속초IC에서의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산악지형이라는 특성과 혐오시설등이 위치해 있어 지역개발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대규모 산불로 산림자원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복구방안이 시급한 사항으로 유원지 신설로 인해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유원지 계획도 (변경)



01 서 론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도시의 특성과 현황

제3장 관련계획 및 대응전략

계획의 개요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성격
3. 계획수립 의의

제1장 계획의 개요 (변경)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변경)

1. 계획의 배경

1.1 계획의 필요성 및 여건변화

01 필요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 관련계획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재검토 시기 도래 및 민선7기 출범 등 정책방향의 재해석 필요
- 국토의 효율적 활용, 삶의 질 향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 제시 필요
- 2019년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산림자원 복구 및 관광 속초의 위상에 맞는 관광복합 문화유양시설 도입의 필요성 대두

02 대내 · 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내용 수정

- 기정 계획 수립 이후 변경된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반영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계획 반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
  - 2040 강원비전 :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강원
  - 강원도 종합계획 2021-2040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 한국판 뉴딜사업 가속화 및 노후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방안 등 정책변화에 따른 속초시의 도시계획 방향 설정
- 광역교통여건(동해고속도로 및 동서고속화 철도) 변화에 따른 역세권 중심의 거점지역으로써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

1.2 법적근거

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본 계획은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계획으로 기존 틀을 유지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간구조, 지표 및 목표연도의 변경없이 여건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계획수립

2. 계획의 목적

2.1 계획의 목적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부 및 강원도의 정책 방향 등을 토대로 속초시의 위상 정립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와 도시미래상 정립
- 기 수립된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속초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 제시

01 메가트랜드에 대응하는 도시분야 상위계획 수립

- 남북교류 시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기조 등 여건변화 대응
- 저성장시대, 제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재난·방재,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02 균형발전이 가능한 도시공간구조 정립

-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화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변화 등 도시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
-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방향 마련

03 쾌적한 삶을 위한 자연과 조화된 정주환경 마련

- 설악산, 해안, 석호 등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방안 마련
-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비

04 첨단산업기반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및 주요산업 강화

-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마련으로 자족경제체계 구축
- 속초시 주요산업인 관광산업의 첨단·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05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강화

- 쾌적한 주거, 풍부한 일자리, 행복한 복지 등 시민 체감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 계획수립에서 모니터링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3. 계획수립 사유

3.1 주요지표 변경

01 인구계획 반영

· 동서고속도로 개통(2017년) 및 동서고속화 철도(서울~춘천~속초)사업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며 속초시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증가인구 수정·보완 필요

02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생활권별 개발수요를 고려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조정 필요

· 시가화예정용지 신규 검토가 필요하고 후보지 타당성 및 개발 예정지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필요

3.2 속초시 도시위상 및 여건변화

01 국토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유도

· 저탄소 녹색성장, 뉴딜정책, 6차산업 등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국제적인 관광·휴양 중심도시를 목표로 계획 수립

·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물류기반의 자립기반 조성 방향 설정

·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하고, 속초시의 발전 미래상과 부합 여부 검토 필요

02 공간구조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도시개발이 비체계적으로 우후죽순 입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체계의 보완·개편 필요

· 미래상, 목표 및 전략을 공간적으로 구체화가 가능하도록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계획 수립

· 개발축–관광축–보전축을 분리·특화하여 권역중심의 효율적 도시공간구조 설정 및 생활권 계획 수립

03 광역교통체계 개선 : 동서고속도로(서울 ~ 양양), 동해고속도로(양양 ~ 속초) 개통

-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가 인접하며 공간구조상 연결성 개선 필요
-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적 접근성 향상 및 교통정체 개선

04 철도 건설 : 동서고속화 철도 계획 및 동해북부선 철도

- 동서고속화 철도(서울~춘천~속초(노학)) 행정절차(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
-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TSR연결) 상위계획 반영

4. 계획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위치 : 속초시 행정구역 전역(서울특별시 기준 북동측으로 248km에 위치)
- 면적 : 110.78㎢ (속초시 통계연보 2018, 용도지역 면적 기준)

4.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7년
- 목표연도 : 2040년
-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 제시

【표 1-1-1-1】 단계별 계획기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 고
기 간	2020년~2025년	2026년~2030년	2031년~2035년	2036년~2040년	

※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하여 5년 단위로 단계별 구분

【그림 1-1-1-1】 위 치 도


속초시
고성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
춘천시
홍천군
강릉시
횡성군
평창군
동해시
정선군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태백시
100km
200km
300km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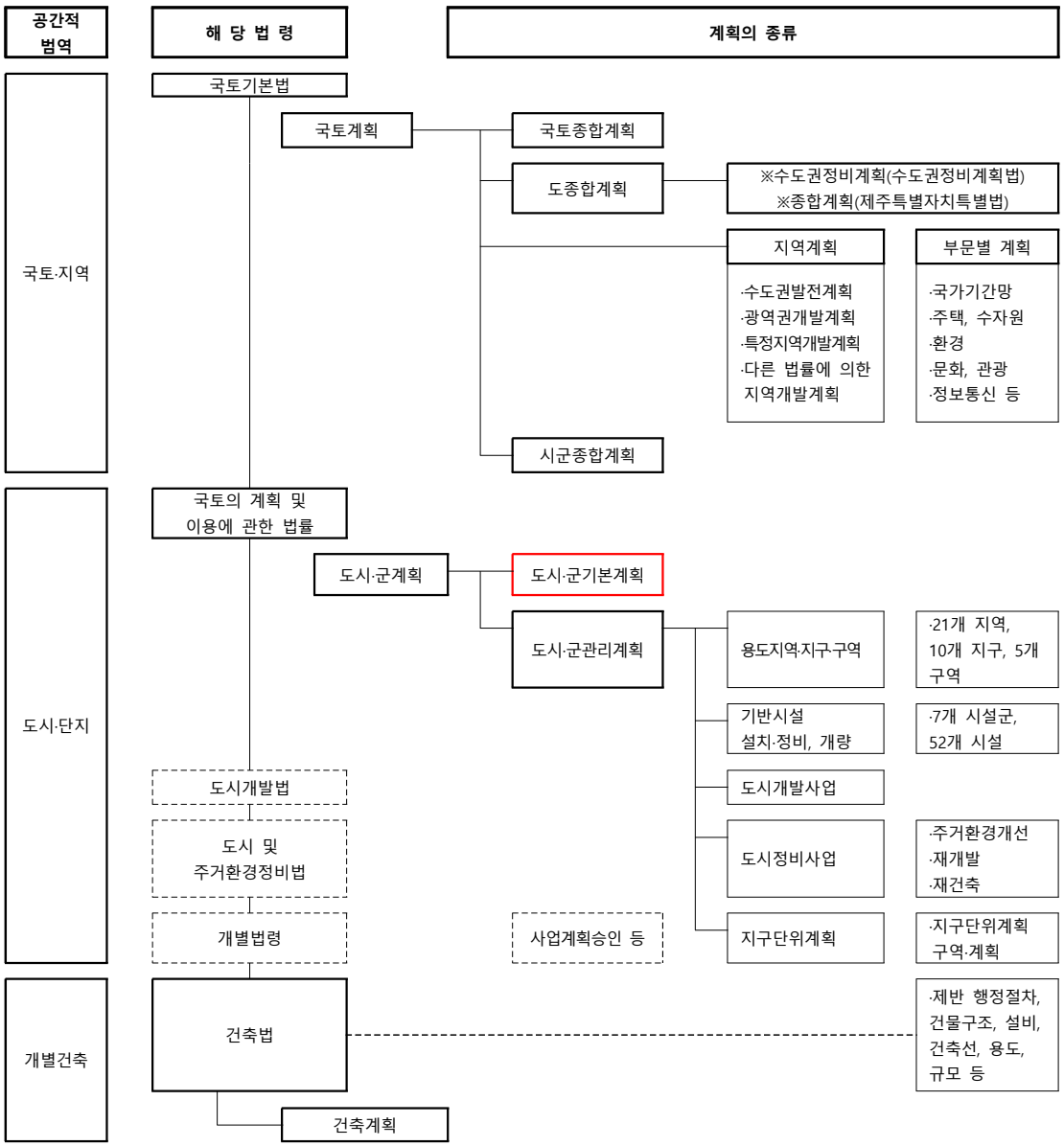
2 계획의 성격 (변경없음)

1. 도시기본계획의 위계

1.1 계획상 위계



1.2 국토계획 체계



2.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2.1 법정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속초시 최상위 법정계획

· 속초시의 향후 법정계획 기준을 결정하는 부문별 계획의 지침 역할 수행

2.2 정책계획

·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도시행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며, 속초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계획

· 장기적 속초의 정책을 다루는 상위계획으로 다른 계획과 연관된 지침이 되는 계획

2.3 종합계획

· 주민의 의사가 반영 가능한 주민 참여형 사회계획

· 속초 전체 및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을 고려한 기본계획

· 환경·경제·문화·사회부문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2.4 전략계획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

3 계획수립 의의 (변경없음)

1. 속초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1 선계획 - 후개발 원칙

· 국토개발 관련계획은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한 선계획 - 후개발이 원칙

1.2 기정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마련

01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확보

·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120,000인이었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인해 미달성된 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도시 자족기능 확보

02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필요

· 지역현안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의 배분, 생활권 및 공간구조 개편의 필요성, 단계별 개발물량의 확보 등

· 도시전반에 걸친 각 부문별 개발방향 및 실천계획의 수립

2. 타당성 검토와 평가

2.1 타당성 검토

· 기본방향 및 목표에 비해 부문별 계획간 연계성 미흡

· 계획의 실현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의 유연성 부족 및 실행 전략의 미흡

· 주변지역 여건 및 계획간 연계성 미흡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질적인 성장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유도형 계획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시되는 계획 수립

· 정책 목표 제시 및 사후 평가지표 제시

2.2 계획수립의 접근방향

01 지침계획이나 실행을 위한 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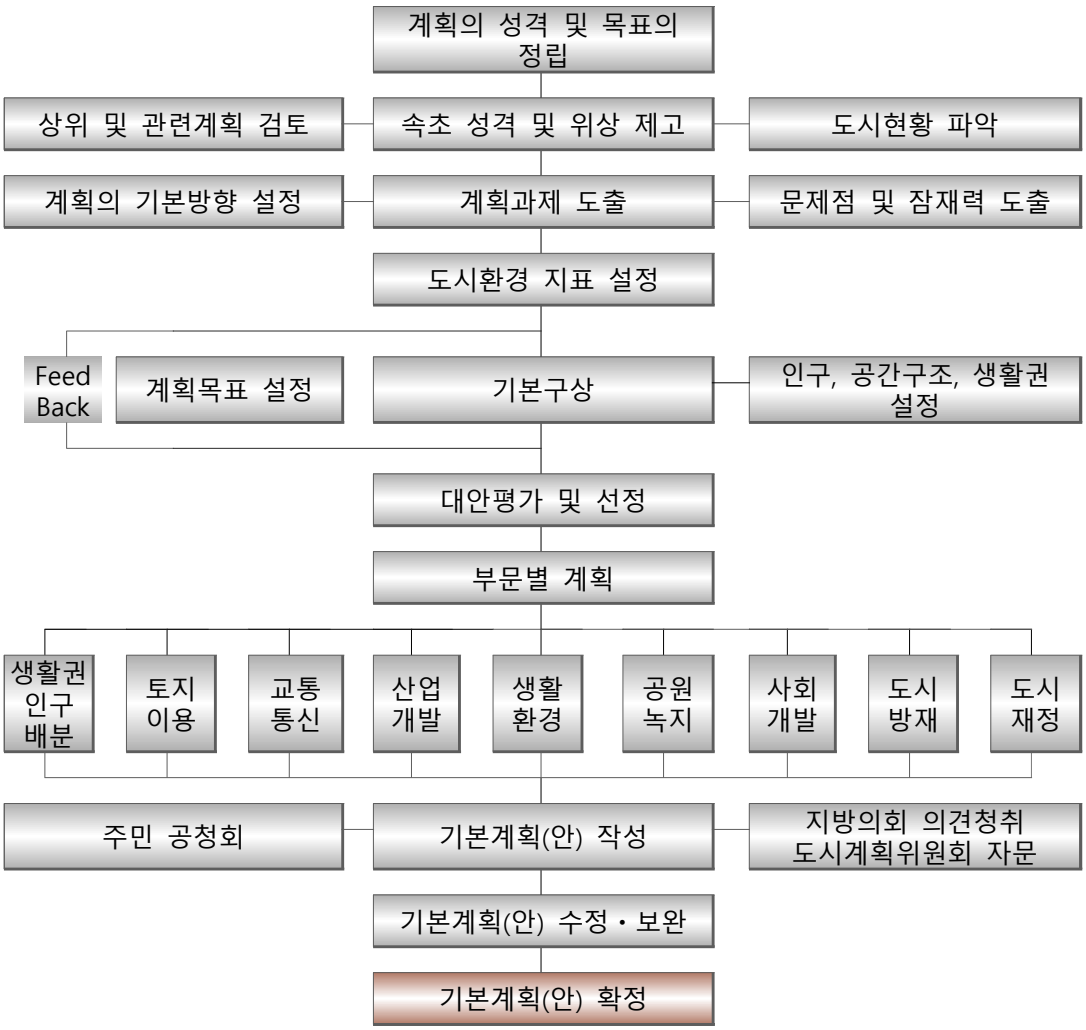
- 상위계획으로의 지침 계획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방안 및 전략계획 수립
-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 실행방안 제시는 지양
- 실천전략 및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에서 유동적으로 활용

02 주민 참여 방식 지향

- 시민과 속초의 체계적이고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민 참여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추구하는 도시 상 형성에 기여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3.1 계획수립방법



3.2 계획수립절차


속초시
강원도
도시기본계획(안)작성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입안(속초시장)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제출
(시장→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안) 승인신청
(속초시장 → 강원도지사)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중앙부처/강원도 관련실과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강원도지사
(강원도 → 속초시)
속초 도시기본계획 확정
도시기본계획 공고 및 공람
(속초시장)

II 도시의 특성과 현황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속초 특성 및 성격

제2장 도시의 특성과 현황 (변경없음)

1 속초시 특성 및 성격

1. 도시현황

1.1 속초시 일반현황(기준연도 기준, 2017년)

01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면적 : 110.78㎢
- 주요 간선 도로축 : 국도 7호선, 지방도 56호선

02 행정구역 및 인구

-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 221통, 1,123반
- 83,213인(37,772세대, 외국인 포함,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03 주요시설

- 주요시설 : 공공청사 45개소, 학교 29개소, 의료시설 117개소
- 도로연장 : 245.24km(도로 포장율 : 약 57.4%)

04 기타사항

- 인접 시·군 : 3개 시·군 (강원지역 3개 시·군-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 연간 관광지 방문객 : 17,591,179인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 예산결산규모 : 443,521백만원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 제56회 속초시 통계연보(2017년말 기준)

2. 공간적 특성

2.1 도시형태

· 남~북에 비해 동~서가 길게 형성된 형태로 서측은 설악산이 위치하여 시가지는 주로 동측에 편중되어 형성

· 청초호와 국도 7호선을 기준으로 동심원 형태로 시가지가 형성

2.2 설악권의 중심도시

· 설악권의 중심도시로서 고성군, 양양군의 중계역할을 수행

· 양양~속초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속초로의 접근성 증가로 지속적인 계획·관리 필요

2.3 속초시 세력권 분석

01 경제권

· 속초시와 양양군 강현면 일부, 고성군 전체가 속초시의 경제권역에 속함

· 산업구조별 산업 종사자 수의 85.8%가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관광 관련 산업 종사자 수가 47.6%로 서비스업(관광) 위주의 산업이 활성화된 도시

· 동서고속도로, 양양~속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근 시·군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02 사회권

·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속초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속초시를 비롯하여 고성군, 양양군 일부지역까지 포함

03 환경권

· 환경권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지형·지세, 하천수계, 풍향 등을 감안한 자연생태, 수질·대기오염 등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속초시는 고성, 인제, 양양 일대를 비롯하여 설악을 어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

3. 도시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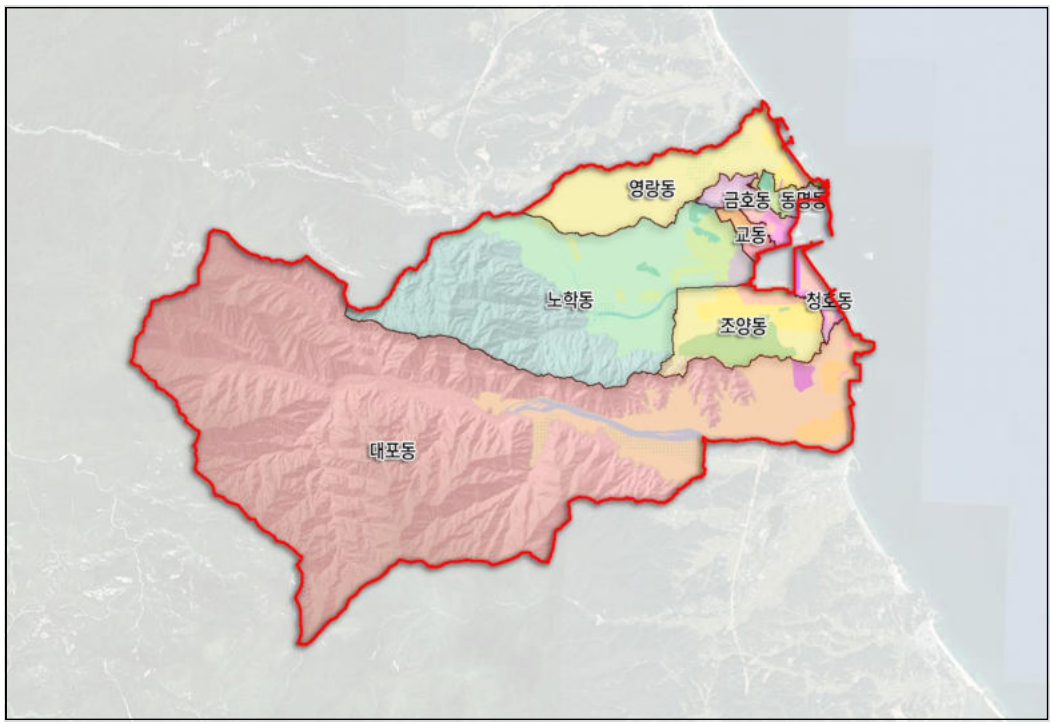
3.1 속초시 도시발전사

<table>
<tr><th>시 대</th><th>연 도</th><th>발 전 연 혁</th></tr>
<tr><td rowspan="3">고 대</td><td>-</td><td>고구려 익현현</td></tr>
<tr><td>551년</td><td>신라 진흥왕 12년. 고구려에서 신라 영역으로 편입</td></tr>
<tr><td>757년</td><td>신라 경덕왕 16년, 익령현</td></tr>
<tr><td rowspan="5">중 세</td><td>995년</td><td>정종 14년, 삭망도 익령현</td></tr>
<tr><td>1018년</td><td>현종 9년, 동계 익령현</td></tr>
<tr><td>1221년</td><td>고종 8년, 익령현에서 양주로 승격</td></tr>
<tr><td>1257년</td><td>고종 44년, 양주에서 덕령현으로 강등</td></tr>
<tr><td>1260년</td><td>원종 1년, 덕령현에서 양주로 회복</td></tr>
<tr><td rowspan="10">근 세
(조 선)</td><td>1397년</td><td>태조 6년, 양주가 부로 승격</td></tr>
<tr><td>1413년</td><td>태종 13년, 양주부에서 양주도호부로 바뀜</td></tr>
<tr><td>1416년</td><td>태종 16년, 양주도호부에서 양양도호부로 바뀜</td></tr>
<tr><td>1618년</td><td>광해군 10년, 양양현으로 강등</td></tr>
<tr><td>1623년</td><td>인조 1년, 양양도호부로 회복</td></tr>
<tr><td>1688년</td><td>숙종 14년, 양양도호부로 강등</td></tr>
<tr><td>1697년</td><td>숙종 23년, 양양도호부로 회복</td></tr>
<tr><td>1783년</td><td>정조 7년, 양양현으로 강등</td></tr>
<tr><td>1792년</td><td>정조 16년 양양도호부로 회복</td></tr>
<tr><td>1895년</td><td>고종 32년, 양양도호부에서 양양군으로 바뀜</td></tr>
<tr><td rowspan="11">현 대</td><td>1914년</td><td>양양군 12개 면 중, 군내면·부남면·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남면이 손양면으로, 강선면·사현면이 강현면으로, 도문면·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7개면으로 재편)</td></tr>
<tr><td>1919년</td><td>간성군이 고성군으로 이름을 바꿈</td></tr>
<tr><td>1937년</td><td>토성면·죽왕면이 양양군에 병합,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개칭됨</td></tr>
<tr><td>1942년</td><td>속초면이 읍으로 승격됨.(부령 제14조)</td></tr>
<tr><td>1951년</td><td>국군 진주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부활</td></tr>
<tr><td>1954년</td><td>양양군 속초읍으로 됨(법률 제350호) / 민정이양</td></tr>
<tr><td>1963년</td><td>속초읍에서 시로 승격(법률 제1176호)</td></tr>
<tr><td>1973년</td><td>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장사동으로 편입
(13개동)⇒(대통령령 제6542호)</td></tr>
<tr><td>1983년</td><td>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지역이 설악동으로 편입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 ⇒ (대통령령 제11027호)</td></tr>
<tr><td>1990년</td><td>법정동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
(법정동, 행정동 13개동)⇒(시조례 제1293호)</td></tr>
<tr><td>1998년</td><td>'98년 동 통·폐합으로 행정동이 13개 동에서 8개동으로 조정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시조례 제1657호)
<table>
<tr><th colspan="2">◎ 행정동 통·폐합 내역</th></tr>
<tr><td>영랑동과 장사동이 영랑동으로</td><td>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td></tr>
<tr><td>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td><td>청호동과 조양동 일부가 청호동으로</td></tr>
<tr><td>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td><td>대포동과 도문동과 설악동이 대포동으로</td></tr>
</table></td></tr>
</table>

3.2 속초시 도시계획 연혁

년 도	내 용
1964. 07. 21	69.68㎢의 도시계획구역 결정 (건설부 고시 제989호)
1967. 01. 19	용도지역, 지구최초결정 (건설부 고시 제13호)
1968. 05. 27	도시계획(도로, 공원, 시장) 일부변경 (건설부 고시 제330호)
1976. 03. 27	제1차 도시계획재정비 (건설부 고시 제37호)
1984. 03. 03	도시기본계획 공고 (속초시 공고 제13호)
1986. 06. 03	제2차 도시계획재정비 (건설부 고시 제238호)
1987. 02. 17	도시계획재정비 (도지사위임 결정사항) 및 지적승인 (강원도 고시 제87-12호)
1987. 04. 13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건설부 고시 제134호)
1991. 09. 10	도시기본계획 공고 (속초시 공고 제182호)
1992. 10. 09	제3차 도시계획재정비 도지사위임 결정사항 (강원고시 제1992-113호)
1993. 04. 28	도시계획재정비(시장위임 결정사항) 및 지적승인 (속초시 고시 제93-11호)
1994. 12. 26	도시기본계획 변경공고(청호동 지역) (속초시 공고 제1994-161호)
1996. 07. 29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강원도 고시 제1996-149호)
1998. 03. 06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1998. 03. 21	도시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속초시 고시 제1998-4호)
2000. 10. 20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강원도 고시 제222호)
2003. 04. 02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004. 05. 28	설악산제척구역 편입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004. 08. 21	설악산제척구역 편입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2006. 03. 09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6. 06. 30	속초 경관형성기본계획 변경 승인(경관지구계획 부문)
2007. 11. 02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7-236호)
2007. 12. 14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속초시고시 제2007-69호)
2012. 01. 20	설악산국립공원 해제구역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2013. 04. 26	설악산국립공원 해제구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3-143호)
2014. 04. 22	202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고시
2015. 09. 25	2020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5-392호)
2015. 10. 16	2020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속초시고시 제2015-48호)

【그림 1-2-1-1】 행정구역도



4. 자연환경

4.1 지형·지세

01 일반현황

- 시가지 북쪽의 국사봉은 해발 83.6m이며 남쪽의 청대산은 해발 230.8m이나 현재 시가지는 해발 50m이하에 형성
- 설악산과 주변에 청대산, 주봉산 및 청초호와 영랑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

02 지형·지세 분석

- 표고 50m 미만의 지역은 37.23㎢로 전체면적의 35.4%를 차지하고, 125m 이상의 개발 불능지는 60.23㎢로 56.9%임
- 경사 10도 미만의 지형이 25.59㎢로 전체면적의 24.2%이며 대부분 동측 시가지에 분포
- 25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61.7%이며, 이 중 대부분이 설악산 일원이며, 동측으로 완만한 경사지가 형성

【표 1-2-1-1】 표고분석

구 분	합 계	25m 이하	25~50m	50~75m	75~100m	100~125m	125m 이상
면 적(㎢)	105.70	31.72	5.51	3.32	2.56	2.36	60.23
구성비(%)	100.0	30.2	5.2	3.1	2.4	2.2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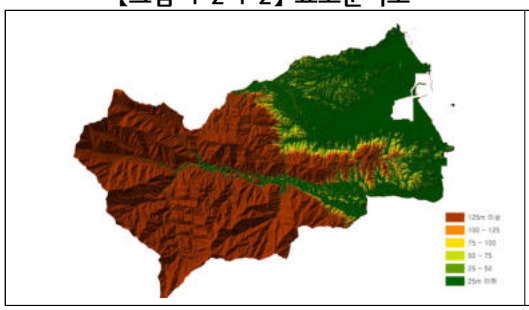
주) 도시지역 미지정 면적 제외

【표 1-2-1-2】 경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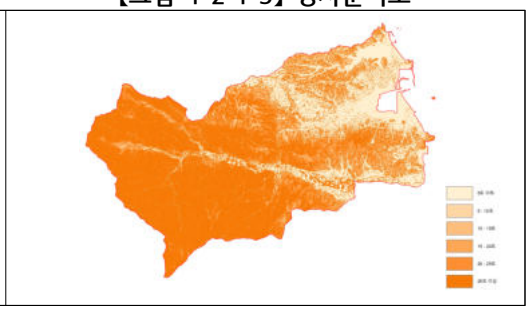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5도 이하	5~10도	10~15도	15~20도	20~25도	25도 이상
면 적(㎢)	105.70	24.64	0.95	2.88	5.25	6.75	65.23
구성비(%)	100.0	23.3	0.9	2.7	5.0	6.4	61.7

주) 도시지역 미지정 면적 제외

【그림 1-2-1-2】 표고분석도



【그림 1-2-1-3】 경사분석도



4.2 지질 및 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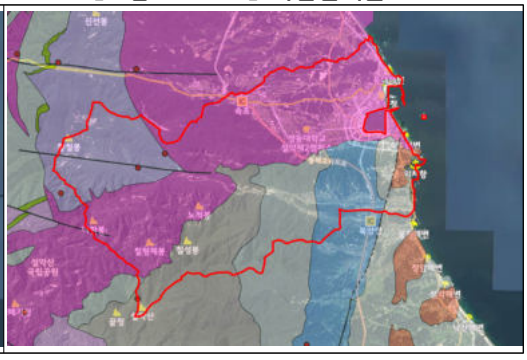
· 구성 암석은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남서측에 분포함

· 설악산 자연 보호구역의 내설악은 여러 종류의 화강암(백악기)으로 구성되며 지형이 험준하고 복잡하여 토양의 유실이 많아 지역 전체가 일반적으로 척박함

【그림 1-2-1-4】 지질현황도



【그림 1-2-1-5】 지질연대분포도



주) https://mgeo.kigam.re.kr/map/main.do?process=geology_tree

4.3 수계

01 수계축 현황

· 쌍천(속초 서측(설악산)→도문평야→동해), 청초천(달마봉→청초호)으로 구성

· 전형적인 배산임해 지형으로 유수방향은 동측, 그 외 수계는 구거(溝渠)수준

02 하천관리 현황

· 관내 하천은 지방하천 2개소(쌍천, 청초천)로 총연장은 17.4km

· 개수율은 100%(2013년 이후), 요개수 연장 17.4km, 기개수구간 17.4km임

【표 1-2-1-3】 속초시 하천개수 현황

구 분	하천수(개소)	총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2017년	2	17.4	17.4	17.4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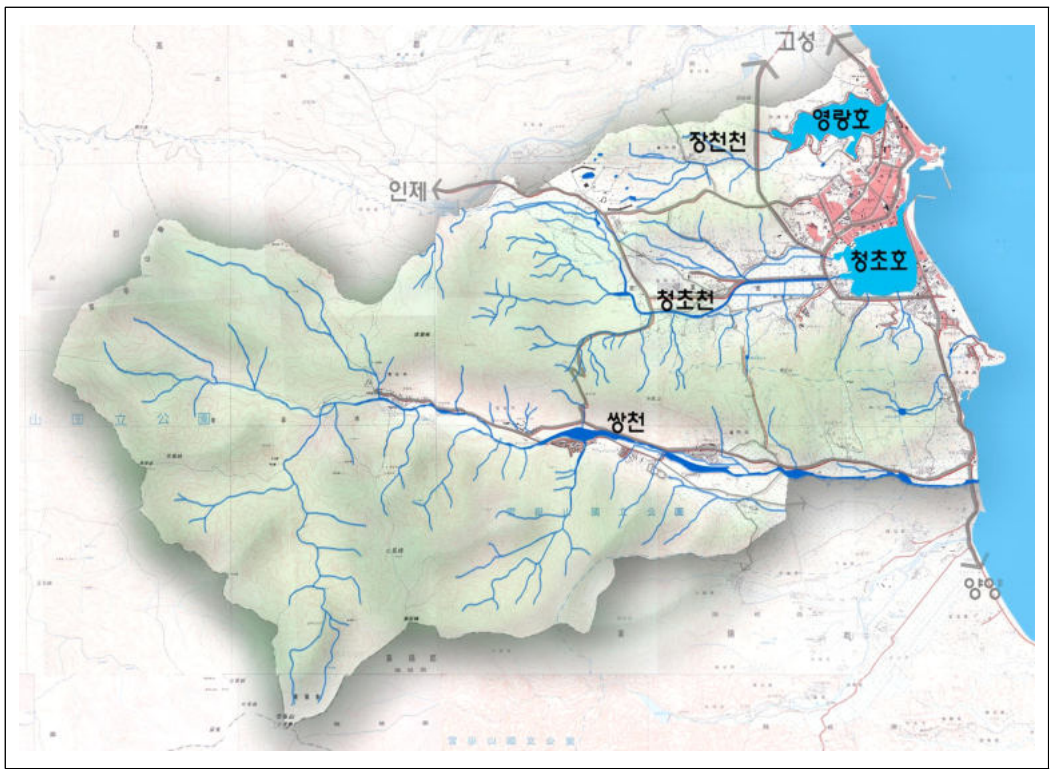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1-2-1-4】 속초시 하천관리 현황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비 고
개 소	2	-	2	소하천 36개소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그림 1-2-1-6】 수계분석도



4.4 기상·기후

· 기후는 대륙성 기후군에 속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국지적으로 해양성 기후를 보임

· 10년간(2008~2017)의 연평균 기온은 12.7℃이며, 최고 16.7℃, 최저 8.9℃로 낮은 편

· 10년간(2008~2017)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7.6mm, 평균 일조시간은 2,324.4hr임

· 7년간(2009~2015) 연평균 천기일수는 맑음 103.0일/년, 흐림 112.7일/년, 비 121.0일/년, 눈 17.0일/년임

【표 1-2-1-5】 기상개황

구 분	기온(℃)			강수량 (㎜)	일조시간 (hr)	비 고
	평균최고	평균최저	연평균			
2009년	17.0	8.9	12.8	1,420.1	2,185.2	
2011년	16.0	8.4	12.1	1,656.1	2,043.2	
2013년	16.7	9.1	12.9	1,115.7	2,439.3	
2015년	16.6	8.8	12.6	1,127.7	2,413.6	
2017년	17.4	8.9	13.1	1,208.2	2,497.9	
평 균	16.7	8.9	12.7	1,287.6	2,324.4	2008~201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1-2-1-6】 월별 최저·최고 기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0.8	3.0	7.0	14.8	18.7	19.8	25.6	23.7	20.8	14.5	7.8	0.7
평균최고	5.0	7.5	11.4	20.1	23.8	23.8	29.1	26.7	25.1	18.8	12.3	4.7
평균최저	-3.3	-1.7	2.6	9.8	13.8	15.9	22.5	21.1	16.1	10.5	2.9	-3.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1-2-1-7】 월별 강수량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420.1	29.0	27.0	83.2	111.2	50.5	181.1	405.2	247.3	20.5	29.8	220.6	14.7
2011년	1,656.1	12.0	105.6	20.4	115.7	65.3	341.5	412.1	140.3	190.1	22.1	131.3	99.7
2013년	1,115.7	77.3	16.1	66.2	49.0	80.1	32.0	292.7	174.6	175.3	66.4	23.3	62.7
2015년	1,127.7	8.7	32.1	8.0	74.2	9.2	127.7	163.1	198.6	13.5	27.4	463.5	1.7
2017년	1,208.2	82.4	3.2	48.7	46.8	25.2	69.7	270.3	424.9	50.5	135.4	41.2	9.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1-2-1-8】 천기일수

구 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황사
2009년	105	107	111	6	7	15	5	0
2011년	105	126	126	7	26	17	13	-
2013년	99	105	126	4	6	27	16	-
2015년	-	-	-	5	15	9	3	11
평 균	103.0	112.7	121.0	5.5	13.5	17.0	9.3	5.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2015.7.13. 이후 속초지점 관측 종료로 데이터 없음

5. 인문환경

5.1 인구

01 속초시 전체 인구

· 기준연도(2017년 12월말 기준)의 속초시 인구는 83,213인 37,772세대임

· 외국인 인구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상 940인(2017년)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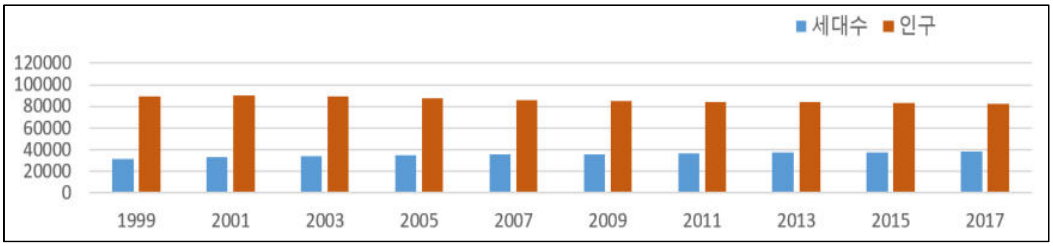
· 세대당 인구수는 감소추세임(1998년 세대당 2.9인, 2017년 2.2인)

· 인구밀도는 1998년 829.6인/㎢에서 2017년 787.0인/㎢로 감소하였음.

【표 1-2-1-9】 행정구역 내 인구•세대 변화 추이

구 분	세대수(호)	인구(인)			인구밀도(인/㎢)	면적(㎢)	세대당 인구(인)	인구 증가율(%)
		소계	남(인)	여(인)				
1998년	29,729	87,070	43,234	43,836	829.6	104.95	2.9	1.9
1999년	30,891	88,914	44,160	44,754	847.0	104.97	2.9	2.1
2000년	32,019	90,201	44,717	45,484	857.0	105.25	2.8	1.4
2001년	32,782	90,543	44,786	45,757	860.3	105.25	2.8	0.4
2002년	33,258	90,447	44,765	45,682	859.4	105.25	2.7	-0.1
2003년	33,848	89,458	44,242	45,216	850.0	105.25	2.6	-1.1
2004년	34,012	88,386	43,664	44,722	839.6	105.27	2.6	-1.2
2005년	34,484	87,583	43,258	44,325	832.1	105.26	2.5	-0.9
2006년	34,921	86,684	42,799	43,885	823.4	105.28	2.5	-1.0
2007년	35,291	86,104	42,446	43,658	817.9	105.28	2.4	-0.7
2008년	35,615	85,349	42,075	43,274	810.7	105	2.4	-0.9
2009년	35,787	84,568	41,680	42,888	805.0	105.28	2.3	-0.9
2010년	36,671	85,034	41,958	43,076	807.7	105.36	2.3	0.6
2011년	36,579	84,489	41,706	42,783	801.5	105.42	2.3	-0.1
2012년	36,745	84,279	41,578	42,701	798.2	105.58	2.3	-0.9
2013년	36,946	83,803	41,342	42,461	792.8	105.70	2.3	-1.4
2014년	37,032	83,194	41,059	42,135	787.1	105.70	2.2	-1.5
2015년	37,084	82,978	40,950	42,028	785.9	105.58	2.2	-0.3
2016년	37,193	82,670	40,831	41,839	783.0	105.58	2.2	-0.4
2017년	37,772	83,213	41,089	42,124	787.0	105.74	2.2	0.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1-2-1-10】 2017년 세대 및 인구규모 비교

구 분	세대수 (세대)	인구(인)			세대당 인구(인)	비 고
		계	남	여		
전 국	21,632,851	51,778,544	25,855,919	25,922,625	2.4	
강원도	700,265	1,550,142	780,635	769,507	2.2	
속초시	37,772	83,213	41,089	42,124	2.2	
도대비율(%)	5.4	5.3	5.2	5.4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02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2017년 연령별 인구 분포현황은 55~59세 인구가 9.7%(7,958인)으로 5세 구분별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60세 이상 인구는 24.0%(19,741인)를 차지

【표 1-2-1-11】 성별·연령별 인구

구 분	인구(인)	구성비 (%)	성별 인구(인)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계	82,273	100.0	40,531	100.0	41,742	100.0
0~4세	2,838	3.4	1,422	3.5	1,416	3.4
5~9세	3,333	4.1	1,667	4.1	1,666	4.0
10~14세	3,667	4.5	1,892	4.7	1,775	4.3
15~19세	4,958	6.0	2,566	6.3	2,392	5.7
20~24세	5,020	6.1	2,768	6.8	2,252	5.4
25~29세	4,150	5.0	2,332	5.8	1,818	4.4
30~34세	4,120	5.0	2,197	5.4	1,923	4.6
35~39세	5,554	6.8	2,784	6.9	2,770	6.6
40~44세	6,069	7.4	3,025	7.5	3,044	7.3
45~49세	7,684	9.3	3,799	9.4	3,885	9.3
50~54세	7,181	8.7	3,597	8.9	3,584	8.6
55~59세	7,958	9.7	3,829	9.4	4,129	9.8
60~64세	6,277	7.6	3,159	7.8	3,118	7.5
65~69세	3,855	4.7	1,782	4.4	2,073	5.0
70~74세	3,473	4.2	1,526	3.8	1,947	4.7
75세 이상	6,136	7.5	2,186	5.3	3,950	9.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주) 외국인인구 제외

03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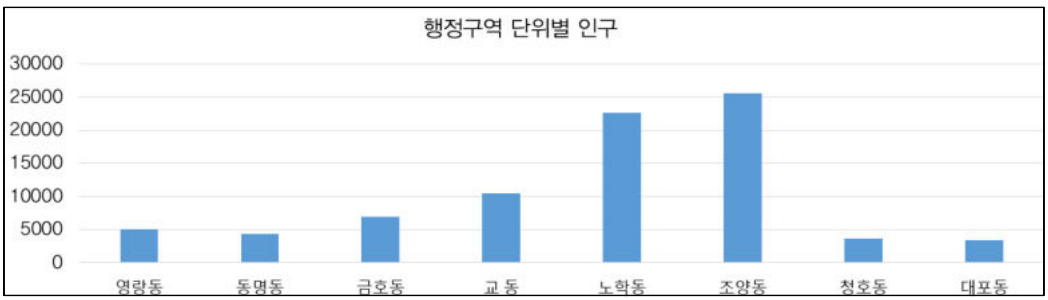
· 속초시 행정구역 중 청호동(6,625.9/㎢)과 동명동(5,515.2/㎢)이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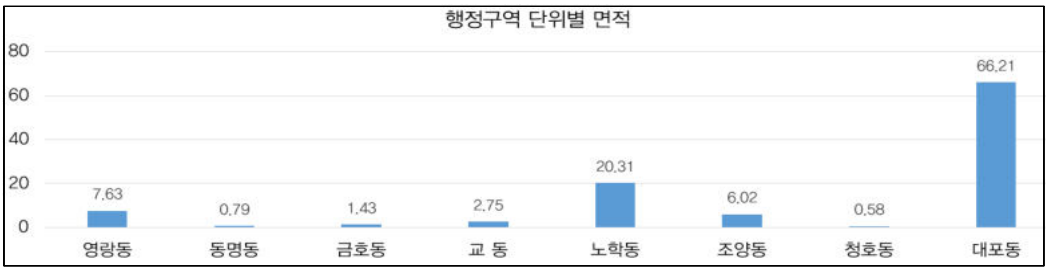
· 영랑동과 대포동은 인구밀도가 1,000인/㎢ 이하임

【표 1-2-1-12】 행정구역단위별 인구변화】

구 분	인구수(인, %)		인구밀도 (인/㎢)	면적(㎢)	세대당 인구(명)	비 고
	소계	구성비(%)				
합 계	83,213	100.0	787.3	105.70	2.2	
영랑동	5,137	6.2	673.3	7.63	1.9	
동명동	4,357	5.2	5,515.2	0.79	2.0	
금호동	7,092	8.5	4,959.4	1.43	2.0	
교 동	10,645	12.9	3,870.9	2.75	2.2	
노학동	22,824	27.4	1,123.8	20.31	2.3	
조양동	25,790	31.0	4,284.1	6.02	2.4	
청호동	3,843	4.6	6,625.9	0.58	1.9	
대포동	3,525	4.2	53.3	66.19	1.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미지정지역 제외





04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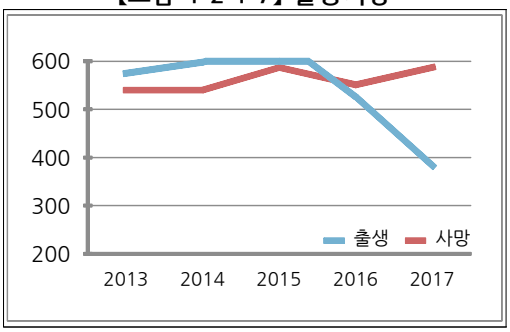
· 이혼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인 감소로 인해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1-2-1-13】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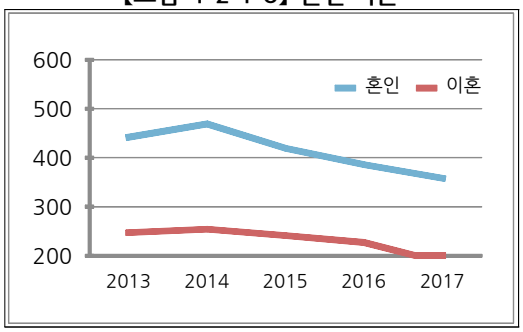
구 분	출 생(인)	사 망(인)	혼 인(쌍)	이 혼(쌍)	비 고
2013년	575	540	442	247	
2014년	598	540	469	254	
2015년	645	587	419	241	
2016년	526	551	386	227	
2017년	383	587	358	18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2-1-7】 출생•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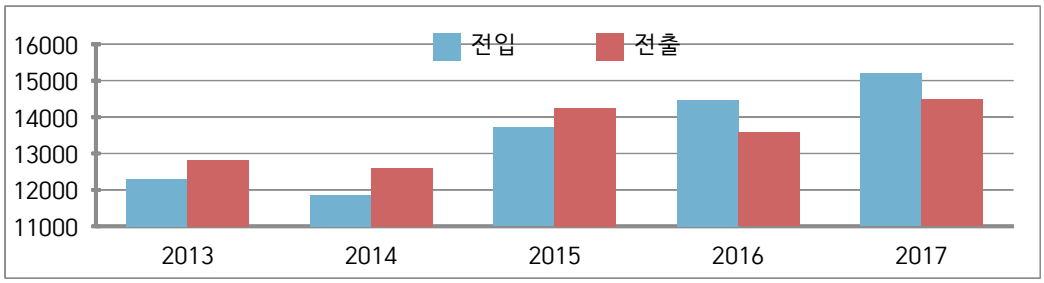
【그림 1-2-1-8】 혼인·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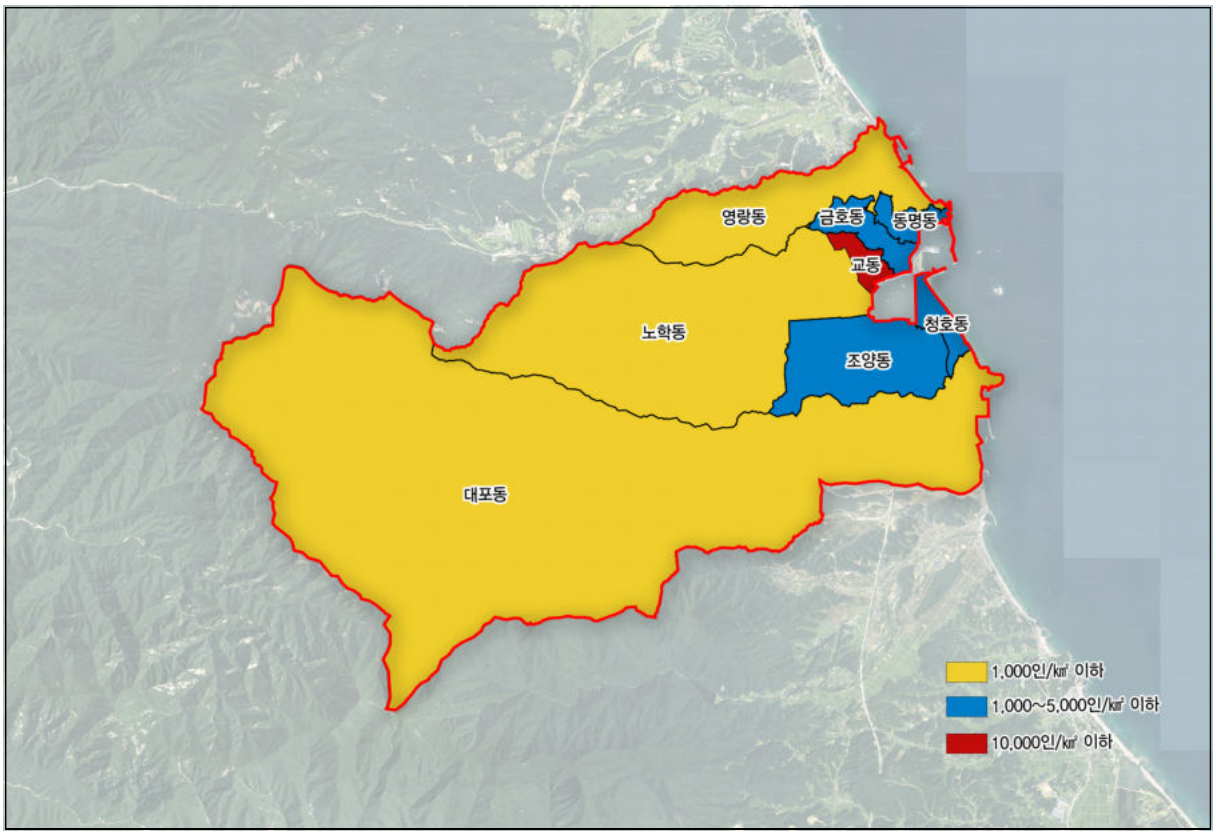
【표 1-2-1-14】 인구이동 추이

구 분	총이동(인)		시도내(인)		시도간(인)		순이동(인)
	전입(A)	전출(B)	전입	전출	전입	전출	(A-B)
2013년	12,298	12,830	2,927	2,861	3,670	4,268	-532
2014년	11,868	12,606	2,877	3,265	3,695	4,045	-738
2015년	13,716	14,252	3,440	3,616	4,919	5,279	-536
2016년	14,468	13,575	3,662	3,780	4,386	4,460	893
2017년	15,200	14,486	4,225	4,014	5,042	4,539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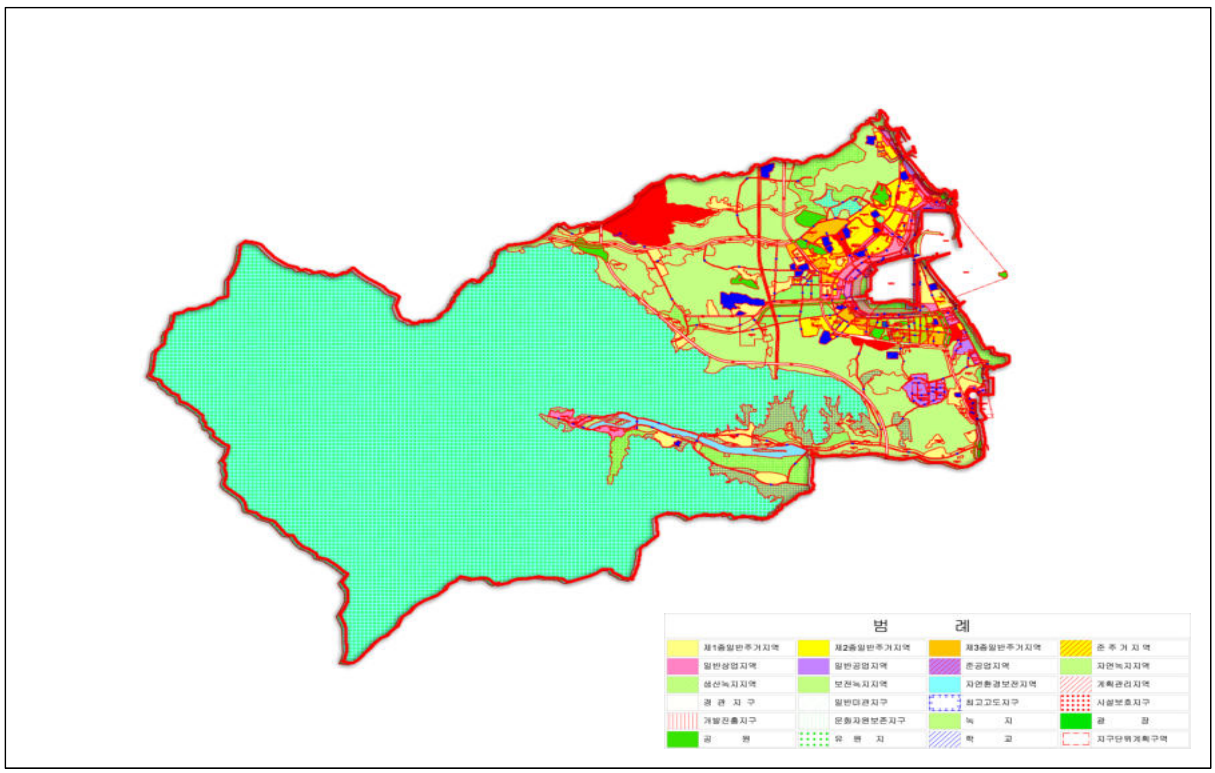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2-1-9】 인구밀도분포 현황도



【그림 1-2-1-10】 도시관리계획도



5.2 생활환경 현황

01 주택현황

· 속초시의 주택보급률은 110.7%로 강원도 전체 주택보급률(107.7%)과 비슷한 수준임

【표 1-2-1-15】 주택보급률

구 분	가구수(호)	주택수(호)	주택보급률(%)	
			속초시	강원도
2015년	32,659	32,089	98.25	106.7
2016년	33,123	35,721	107.84	106.4
2017년	33,441	37,023	110.71	107.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 가구 포함)
주2)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02 상수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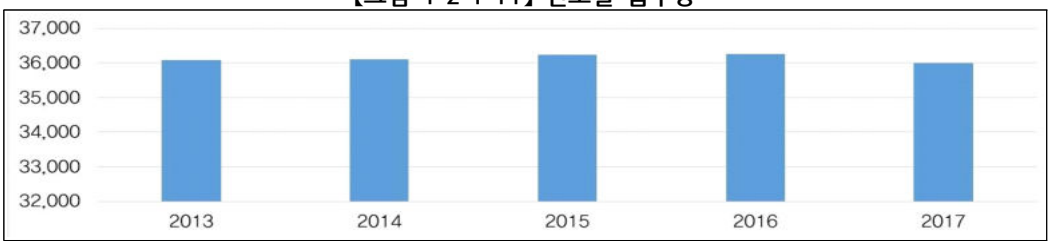
· 상수도 보급률은 99.7%, 1일 급수량은 35,983㎥/일, 1인1일 급수량은 434ℓ임

【표 1-2-1-16】 상수도 급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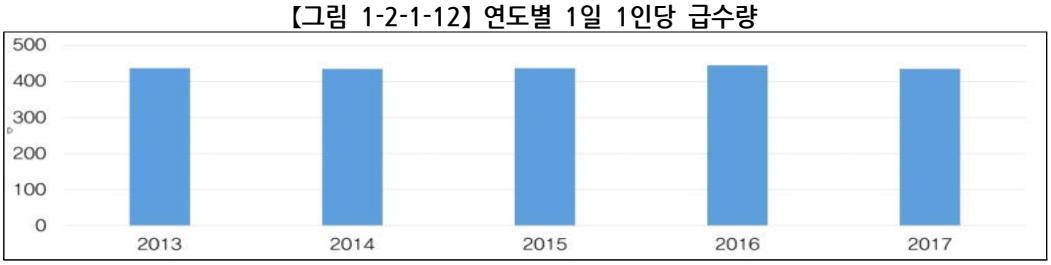
구 분	인구(인)	급수인구(명)	보급률(%)	급수량 (㎥/일)	1일1인당 급수량(ℓ)	비 고
2013년	83,109	82,341	99.1	36,083	436	
2014년	83,194	82,946	99.7	36,102	435	
2015년	82,978	82,806	99.8	36,225	437	
2016년	82,670	82,400	99.7	36,263	444	
2017년	83,213	82,943	99.7	35,983	43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2-1-11】 연도별 급수량



【그림 1-2-1-12】 연도별 1일 1인당 급수량



03 하수도 현황

· 2017년 속초시 하수도 보급률은 99.4%이며, 하수처리장은 총 1개소로 시설용량은 46,000톤/일임

【표 1-2-1-17】 하수처리시설 현황

구 분	소 재 지	시설용량	비 고
하수처리장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539	46,000톤/일	고도처리시설
재이용시설	-	1,000㎥/일	처리방식 : 멤브레인여과막
취수장	조양동 817	2,000㎥/일	-
제1중계펌프장	조양동 청초호 매립지내	32,009㎥/일	우천시 109,390㎥/일
제2중계펌프장	설악동 입구	2,976㎥/일	우천시 8,605㎥/일
제3중계펌프장	장사동 영랑교 입구	4,269㎥/일	우천시 17,97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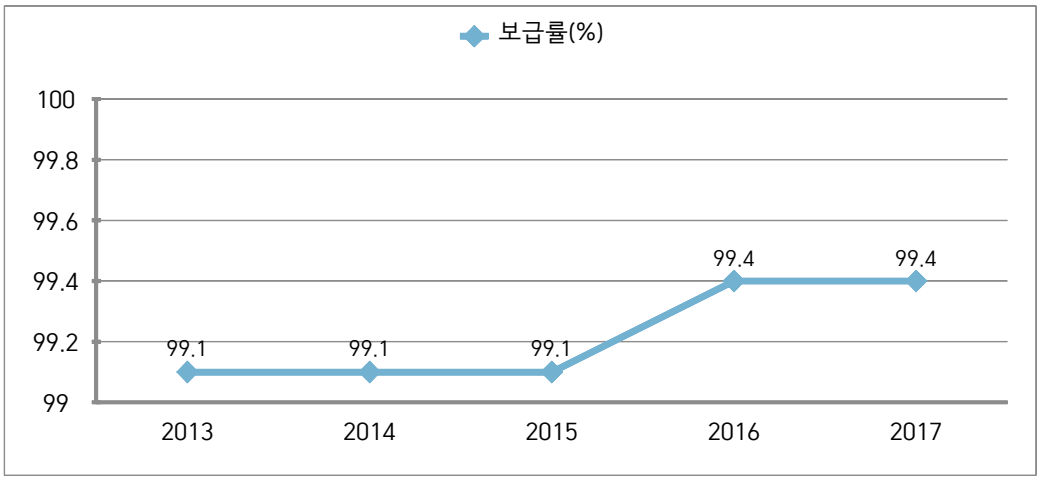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청 홈페이지

【표 1-2-1-18】 처리인구에 대한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총인구(인)	하수처리구역인구(인)	보급률(%)	비 고
2013년	83,803	83,057	99.1	
2014년	83,194	82,486	99.1	
2015년	82,978	82,259	99.1	
2016년	82,670	82,227	99.4	
2017년	83,213	82,780	99.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2-1-13】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04 의료시설 현황

· 의료시설은 117개소이며, 의료인은 815인

· 의사 107인, 치과의사 37인, 한의사25인, 간호사 182인, 간호조무사 294인 등

【표 1-2-1-19】 의료기관 현황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병원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7년	117	2	470	-	-	60	146	30	-

구 분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7년	24	-	1	130	-	1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1-2-1-20】 의료인 현황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약 사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2017년	815	107	-	37	25	3
구 분	조산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비 고
2017년	-	182	294	162	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주) 개인약국 약사 제외

05 복지시설 현황

·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63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14개소(정원 496인),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여성복지시설 1개소가 있음

【표 1-2-1-21】 복지시설 현황

구 분	아동 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2017년	2	14	3	1	6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6 교육시설 현황

- 교육시설 중 유치원(9개소), 초등학교(12개소), 중학교(4개소), 고등학교(3개소) 등 일반학교 수는 변경 없으나, 경동대학교 속초캠퍼스의 통폐합으로 대학은 사실상 폐교상태
- 2018년 학생 수는 총 9,608인으로 2018년 4월 말 기준 속초시 인구 81,724명 대비 11.8%를 차지하며 2017년에 비해 374명가량 감소하였으며, 교직원 수는 869명에서 873명, 학급수는 433학급 유지

【표 1-2-1-22】 교육시설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 및 학과수	보통 교실수	학생수 (인)	교직원수(인)			교원 1인당 학생수(인)
					소 계	교 원	사무직원	
2017.4.1	29	433	605	9,982	869	770	99	13
2018.4.1	29	433	606	9,608	873	771	102	1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교육시설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표 1-2-1-23】 교육시설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계		29	433	9,608	873	12
유 치 원		9	33	596	61	13
초등학교		12	190	3,892	329	14
중학교		4	96	2,389	201	13
고등학교	소 계	3	91	2,612	224	13
	일 반	3	91	2,612	224	13
	전 문	-	-	-	-	-
대학 이상	소 계	-	-	-	-	-
	전문대학	-	-	-	-	-
	대학(교)	-	-	-	-	-
기타학교		1	23	119	58	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주) 교육시설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2018.4.1. 기준임)

07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현황

· 공공공연장, 영화관 등의 공연시설 각 1개소, 전시실 및 문화원 1개소임

·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신고·등록 체육시설 등 총 188개소임

【표 1-2-1-24】 문화시설 현황

구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	스크린수	미술관	화랑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2016년	1	2	1	5	1	-			1	-	-
2017년	1	2	1	5	1	-			1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1-2-1-25】 체육시설 현황

구 분	총 계	공공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2016년	169	52	2	115
2017년	188	59	2	12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1) 공공체육시설 :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공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 카누장, 전전후게이트볼장, 요트장, 빙상장
주2) 등록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주3) 신고체육시설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5.3 생산기반 현황

01 지역 총생산 및 소득수준 현황

구 분		규 모(백만원)		증가율(%)	구성비(%)	비 고
		2010년	2016년			
시장가격	강 원 도	30,628,086	41,738,165	6.1	100.0	
	설 악 권	3,634,877	4,795,945	5.3	11.5	
	속 초 시	1,205,899	1,590,908	5.3	3.8	
총부가가치	강 원 도	28,396,160	38,572,331	6.0	100.0	
	설 악 권	3,394,765	4,460,483	5.2	11.6	
	속 초 시	1,123,832	1,472,576	5.2	3.8	

출처 : 강원도, 강원통계정보DB, 설악권(속초, 양양, 고성, 인제)

02 1인당 생산수준

· 1인당 생산수준은 19,787천원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증가율은 12.3%로 상위권에 속함

【표 1-2-1-26】 1인당 생산수준

구 분	1인당 생산수준(천원)		증가율(%)	비 고
	2015년	2016년		
강 원 도	26,088	27,462	5.3	
설 악 권	29,741	31,749	6.8	
속 초 시	17,624	19,787	12.3	

출처 : 강원도, 강원통계정보DB(내부자료)

03 경제활동인구 고용현황

· 15세 이상 인구는 64.7천인으로 전체 인구 83.2천인 중 약 77.8%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인구는 37.0천인으로 57.7%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

【표 1-2-1-27】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총계	경제활동인구(천명)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소계	취업자	실업자			
2017	64.7	37.3	37.0	0.3	27.4	57.7	0.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5.4 교통 현황

01 도로 현황

· 국도 7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그 외 시도 노선(223km)이 있음

【표 1-2-1-28】 도로 현황

구 분	일 반 국 도 7 호 선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시 도	비 고
구 간	양양읍~속초시	속초시~간성읍	토성면~용대리	-	
연 장(km)	15.2	26.9	13.6	223.2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량 통계연보, 2017년

02 교통량 현황

· 관내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은 증가추세이나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국지도 56호선의 통행량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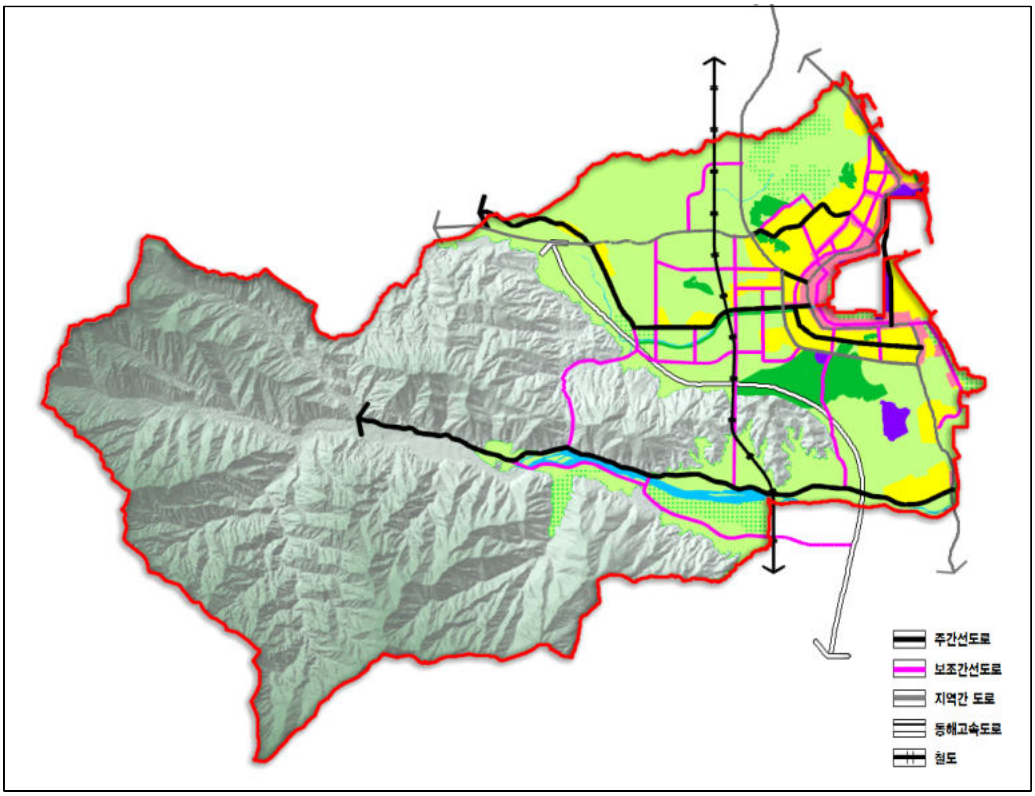
【표 1-2-1-29】 주요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단위 : 대/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국도 7호선	양양읍↔속초시	20,748	21,287	20,155	24시간
	현 북↔강 현	18,900	22,747	22,397	
	양 양↔속 초	21,260	20,882	19,534	
	속초시↔간성읍	13,799	13,716	14,157	24시간
	강 현↔토 성	15,084	15,220	15,565	
	속 초↔토 성	20,273	20,273	20,777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토성면↔용대리	14,835	12,961	6,210	24시간
	일반46→속초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량 통계연보, 2017년
주) TMS 교통량 정보제공시스템

【그림 1-2-1-14】 도로망 현황도



III 관련계획 및 대응전략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 2020 도시기본계획 평가
3. 여건분석 및 대응전략
4. 지역 이미지 및 주민의식 조사

제3장 관련계획 및 대응전략 (변경없음)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1.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01 계획의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그림 1-3-1-1] 계획의 기본틀



0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초연결, 초 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실현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03 국토공간 형성 전략

기본방향	·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공간을 형성 · 국토의 개발에서, 국토의 관리·활용이 중시되는 시대로 전환을 반영 · 인구 감소·저성장과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국토공간 형성의 추진전략	

04 6대 전략별 추진계획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 확대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환경친화적 국토 조성 ·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05 계획의 실행방안

·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

·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평가체계 구축·운영

· 협력적 국토정책 추진과 국민참여 활성화

06 강원도 발전방향

비 전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기 본 목 표	· 체류인구 250만명 달성 · 전국 4% 강원경제권 실현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발 전 방 향	· 동북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신 발전축 구축 - 한반도 통합경제권과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신 발전축 조성 · 활력 넘치는 도농 생활공간환경 조성 - 청정 자연환경과 고품질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농복합타운형 스마트 헬스케어단지 조성 - 인구소멸에 대응해 농촌과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기초공공서비스를 집적한 스마트 생활공동체타운 모델사업 추진 - 스마트 평화빌리지 국가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KTX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거점개발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선도하는 광역물류교통망 확충 - 신경제구상을 선도하기 위한 광역물류교통망 구축 추진 - 양양국제공항 경제권 육성 및 국가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모색 - 접경지역 연결도로망 구축, 평화지역(접경지역) 연결도로(국도, 지방도 등) 구축 등 통일경제·평화지역(접경지역) SOC기반 구축 - 국토 내륙 통합·포용국토 기반 광역교통망 구축 · 스마트 혁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스마트 헬스·모빌리티·관광 등 스마트 라이프산업의 중점 육성 - 국가산업단지 및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신성장 거점 육성 - 미래 강원 농도(農道) 실현을 위한 푸드테크 거점 조성 - 남북평화경제 협력모델 구축 - 글로벌 평화관광지대 조성 추진 검토 - 동계올림픽 특구 평화관광벨트 및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관광휴양 클러스터 구축 - 힐빙(Heal-Being) 포용 국민여가공간 조성 · 365 안심·행복한 안전공동체 실현 - 자연과 공생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방재 실현 -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 - 재난안전 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형성 - 글로벌 산림관광, 고원경제산업 및 생태자원 중심지대 육성 - 설악산-금강산(DMZ 연결)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 유역관리 기반 통합 물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확립 - 환경·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연안의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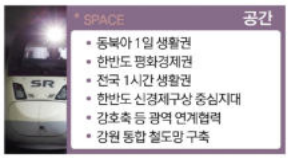
1.2 제4차 강원도종합계획 (2021~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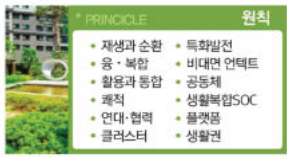
01 기본목표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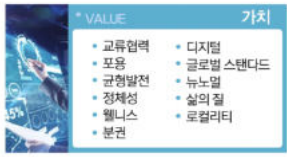
· 웰니스 공동체 강원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 강원









02 주요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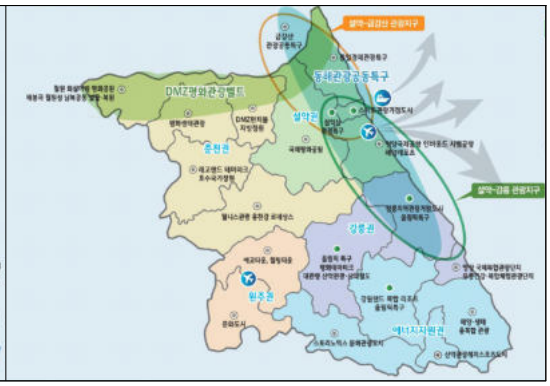
혁신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	· 연계와 협력을 통한 혁신적 지역발전 조성 · 지역 혁신을 위한 상생형 지역균형발전 · 농산어촌 지역혁신 강화와 맞춤형 지원 · 강원도-시군간 혁신적 협업체계 구축
산업혁신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산업공간 육성 ·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 · K-뉴딜 연계 강원형 뉴딜 사업 추진 · 매력있는 문화공간 창출과 문화·생활공간 조성 · 협력적 관광 자원 발굴과 융복합 관광 활성화
포용·행복 공동체 생활 공간 조성	· 인구감소 대응 도시지역 개발 관리 · 뉴노멀 맞춤형 주거생활공간 조성 · 강원형 포용적 주거복지 확충 · 지능형 강원공간 조성 및 스마트 공간관리 혁신 · 안전하고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능형 방재 구축
지속가능하고 품격있는 생태환경관리	· 협력적 관광 자원 발굴과 융복합 관광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강원환경조성 · 환경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품격있고 매력있는 강원경관 창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선도하는 광역물류 교통망 확충	· 광역 교통망 체계적 구축 ·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강원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도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평화경제지역 한반도 중심지 기반 강화	· 평화경제지역 한반도 중심지 기반 강화 · 평화경제지역 SOC 기반 구축

03 분야별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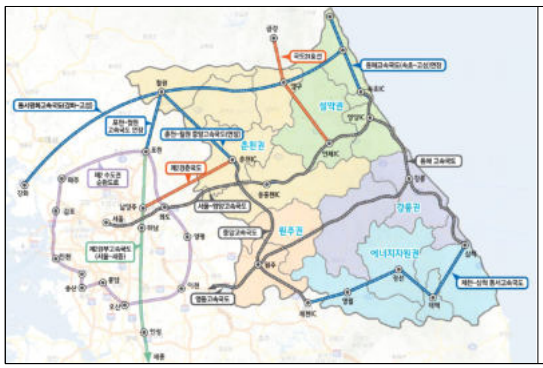
[그림 1-3-1-2] 산업 분야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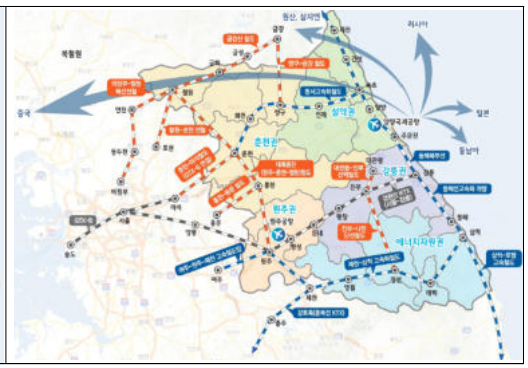
[그림 1-3-1-3] 관광 분야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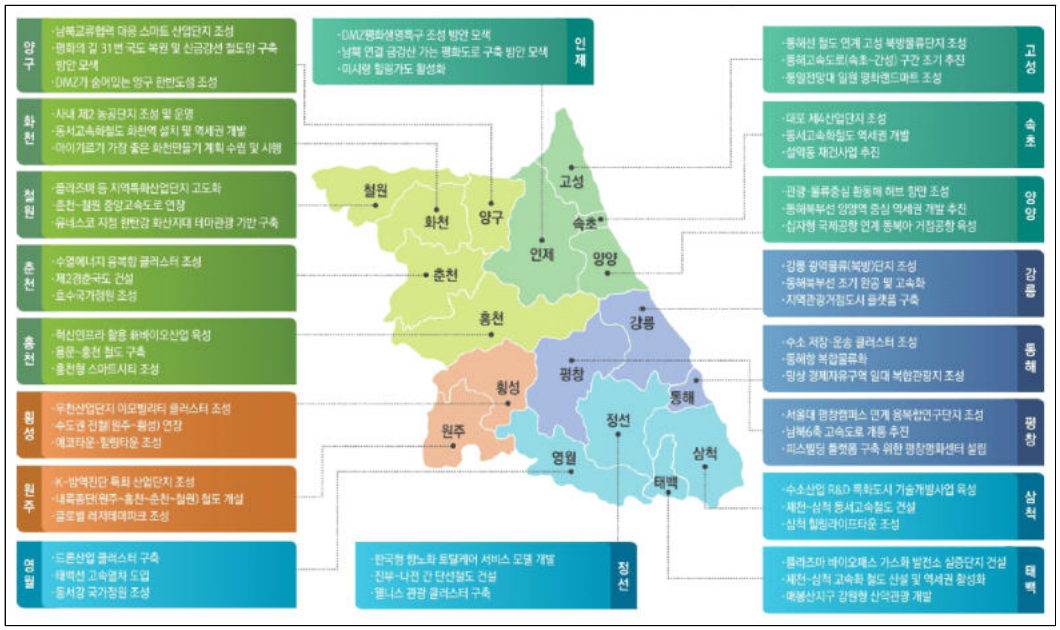
[그림 1-3-1-4] 광역 도로망구상



[그림 1-3-1-5] 관광 분야 발전구상



[그림 1-3-1-6] 시군별 주요사업



04 속초시 특성화 방안

· 비전 및 목표

- 스마트한 국제관광 · 교류 "명품도시 속초"
- 프리미엄 관광레저도시 육성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클린녹색도시 조성
- 시민이 풍요로운 자급자족도시 미래행복 속초 건설
- 세계로 열린 북방물류 중심도시 도약

구 분	주 요 자 원	특 성
자연자원	· 설악산 국립공원, 석호(청초호, 영랑호), · 척산온천지구, 바다, 청정해변 등	국립공원 대표지구 (설악동)
문화관광 자원	· 사찰문화, 아바이마을 등 북한 이주민 문화, 등산문화, 수산어업문화	복합지역문화 형성
산업기반	· 수산업, 속초항, 동명항, 대포농공단지, 리조트 등	관광 서비스, 수산업

【표 1-3-1-1】 공간 발전방향

도시 및 정주공간	· 도시와 전원이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친환경 도시 구축 - 깨끗한 연안환경, 항포구 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취수원 추가 확보, 상수도 유수율 제고 통한 물 자립도시 완성
교통망	· 동서고속화 철도,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구간),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추진 · Fly-Train-Cruise 연계 크루즈 항로 개설 및 크루즈 항만 인프라 확충
환경	·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 어촌어항 뉴딜사업 통한 혁신 어촌 구현 - 동서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

【표 1-3-1-2】 산업 발전방향

산업발전구상	·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및 지역맞춤형 산업생태계 조성 - 대포 4산업단지 조성 - 속초 대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활용한 6차산업 방안 모색
관광구상	· 융복합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국제 관광지대 조성 - 설악~금강산 관광지구 연계 국제적 평화관광지대 육성 - 동해안권 스마트관광거점도시 육성

1.3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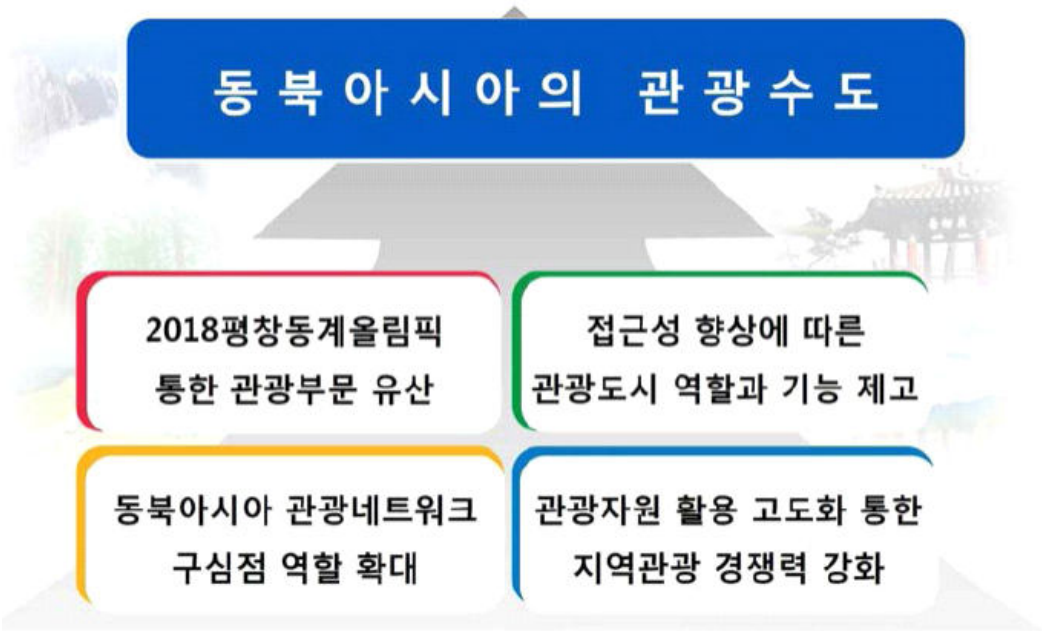
0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의 계획기간 완료
- 제3차 기본계획(2012~2021)과 제6차 권역계획, 시군별 관광자원개발계획 연속적 정책수단 확보 필요
-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합리적 관점의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신규 관광자원개발 중심에서 기존 관광목적지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적 가치 고민

02 계획의 내용적 범위

-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 기정 계획성과 평가 및 제6차 권역계획 계획과제 도출
- 관광개발 기본구상(비전 및 목표 설정, 세부 전략 등)
- 관광개발 사업계획, 관광진흥 사업계획
- 관광사업 집행계획(사업추진체계 제안,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제시 등)

03 계획의 비전



04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개 발 목 표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국민국내관광객 연인원 관광객수 증대 · 관광객의 효율적인 분산화 · 공공 관광인프라 공급 추진의 내실화 · 시군별 계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관광객 소비활동 확대
추 진 전 략	· 접근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형 관광자원개발 · 관광(단)지의 활성화 유도 ·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광소권의 전략적 도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관광 서비스 거점의 역할 강화 · 개발과 진흥의 유기적 결합추구

05 관광(단)지 정비·개발계획

· 기존관광(단)지 정비 : 54개소{관광단지(13), 관광지(41)}

-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실효된 환원관광단지 이외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모두 원안추진사업으로 구분
- 원안추진 관광지 개발사업(26개소)
- 계획보안 관광지 개발사업(1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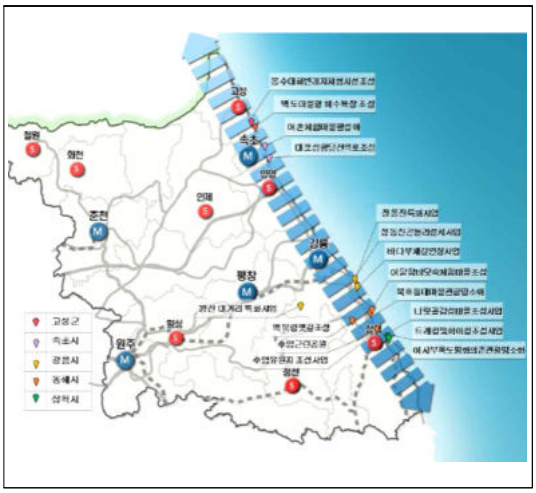
· 신규관광(단)지 추진 : 5개소

- 원주 화훼관광단지, 원주 루첸 관광단지, 평창 노산·노람뜰 관광지,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 양양 잔교관광지

【그림 1-3-1-7】 제6차 권역계획 공간구상도



【그림1-3-1-8】 동해안르네상스 벨트 전략계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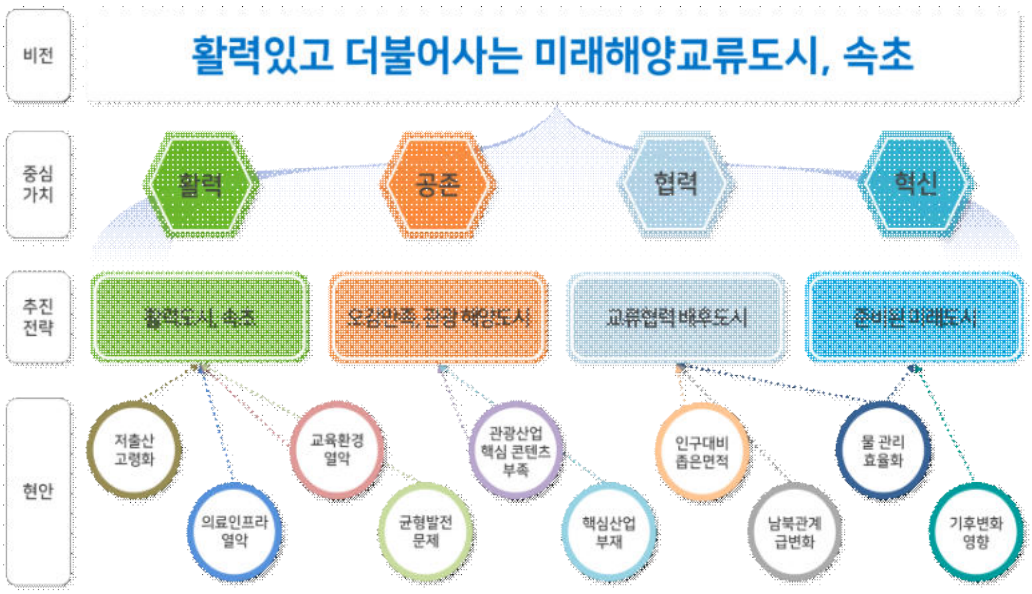


2. 관련계획

2.1 속초비전 2035

01 계획의 목표 : 활력있고 더불어 사는 미래해양교류도시, 속초

· 주요 이슈 및 현안의 대응 방향에 따른 4대 추진전략의 중심가치인 "활력", "공존", "협력", "혁신"을 통해 비전슬로건 도출



02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활력도시, 속초	·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지방자치 강화 및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활력도시, 속초" 전략 추진
오감만족 관광해양도시	· '교통 네트워크 확대 및 환경개선', '수요자 맞춤형 관광테마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추진'을 통한 "오감만족, 관광해양도시" 전략 추진
교류협력 배후도시	· '안정적 물 공급체계 수립', '연계 교통체계 수립 및 신시가지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배후도시" 전략 추진
준비된 미래도시	·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 지향',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수립' 및 '쾌적한 생활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준비된 미래도시" 전략 추진

2 2020 도시기본계획 평가

1. 계획수립의 방침

1.1. 주요내용

계획의 배경	**[계획환경의 변화]**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일원화 · 속초를 통합관리하고, 주민의 참여 확대 **[영동권의 위상변화]** · 환동해 관광·휴양산업 전진기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성 증대 ·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및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등의 포함에 따른 활성화 기대 · 광역교통개선으로 역세권 개발 및 접근성 증대 등 개발 여건 변화 **[속초의 위상변화]** · 남북한 교류 중요 역할 담당 및 개발확산에 따른 파급효과 수용 가능 ·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 확산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 증대
계획의 목표	· 21세기 속초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정체성 확립 · 도시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는 장기 개발 방향 제시 및 공간구조 개편 ·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 모색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 - 후개발 체계 구축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04년 ~ 목표연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 110.784㎢(속초시 행정구역 전역) 

2. 도시성격

2.1. 상위계획 및 도시미래상 주요내용

상 위 계 획	**[국토종합계획], [강원도종합계획], [강원동해안권광역권지정·개발계획] 등** · 제 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 강원권(환동해 관광·휴양산업전진기지) · 제 4차 강원도종합계획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 신 국토축인 환동해축 완성을 위한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개발 · 설악 - 금강산 국제관광 자유지대의 조성 · 교통·통신망 확충에 의한 대외 교류협력기반 강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민선 5기 도정의 신구상, 전략 반영 · 강원도 주도의 인적·물적 기반 확충 및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발전을 견인 ·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실현을 통하여 도민 삶의 질 개선
관 련 계 획	[속초시 중장기비전] · 계획목표 : 환동해권 관광·해양 중심도시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거점도시간에 문화, 체육 등 친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으로 확대 ·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및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국가기간철도망 개설 추진 · 단순 관광형태를 탈피, 호수·온천·바다 등과 연계, 참여(체험)관광 시설 확충 · 관광도시로서 가로환경조성, 도심 취약 지역의 재개발 등 장기적 도시개발추진
도 시 미 래 상	· 환동해 시대의 관광, 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 - 관광·휴양도시, 평화중심도시, 경제·문화도시, 환경생태도시

2.2 문제점 및 개선계획

상 위 계 획 및 관련계획	· 상위계획의 수정 등 속초 위상과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 · 변화된 상위계획에 제시된 강원권의 수립방향과 속초시를 규정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계획에 반영
도 시 미 래 상	· 속초의 위상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미래상을 보완 · 국가 정책 및 도시계획 트랜드에 부합한 미래상 반영 필요 · 장기적 목표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도시미래상에 여건 변화, 정책 방향 변경 및 속초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실천사업 및 개발전략의 지침이 되도록 제시

3. 도시지표

3.1. 계획인구 및 주요도시지표

계획인구

[계획인구(기정)]

· 목표연도 계획인구 : 12만인(자연적 증가인구+사회적 증가인구)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합 계	87,124	97,000	106,000	120,000
	자연적 증가	87,124	88,097	89,240	89,784
	사회적 증가		9,965	19,815	32,408

주요도시지표 및 달성률

[도시환경지표(기정)]

구 분	단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 구	인	87,124	97,000	106,000	120,000
주택보급률	%	95.6	101.3	104.1	107.0
상수도보급률	%	99.0	99.0	100.0	100.0
하수도보급률	%	90.5	91.0	93.0	95.0
초등학교	개교	11	12	12	13
중학교	개교	4	4	5	6
고등학교	개교	3	4	4	5
의료보건시설	개소	1	1	1	1

[달성률]

구 분			단위	기존 계획		현황(B)	달성률
				2015년(A)	2020년(A`)	(2015년말)	(B/A)(%)
계획인구			인	106,000	120,000	82,978	78.3
주택보급률			%	104.1	107.0	98.3	94.4
상수도보급률			%	100.0	100.0	99.8	99.8
하수도보급률			%	95.0	97.0	99.1	104.3
교육	초	학교수	개교	12	13	12	100.0
		학급당학생수	인	31	30	21.3	145.5
	중	학교수	개교	5	6	4	80.0
		학급당학생수	인	34	33	27.1	125.5
	고	학교수	개교	4	5	3	75.0
		학급당학생수	인	31	30	32.6	95.1
의료보건시설		종합병원	개소	1	1	2	200.0
		보건소	개소	1	1	1	100.0
		의사수	인	92	104	117	127.2
문화		도서관	개소	3	4	3	100.0

3.2 문제점 및 개선계획

도 시 지 표	· 속초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춰 전략적인 계획인구 조정 필요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인구계획 확보방안 마련) · 주택보급률 등 분야별 지표 재검토
	· 합리적인 인구추계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지표 설정 ·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변경 및 주말에만 거주하는 유형발생에 따른 증가로 목표연도 지표 재설정 및 재검토 필요 · 수도보급의 경우 전체 급수지역으로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시 보급을 위한 계획반영이 필요 ·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관련 지표의 재검토 필요

4. 도시기본구상

4.1. 주요내용

공 간 구 조 설 정	**[토지이용]** · 계획인구에 적합한 시가화용지를 확보하고 단계별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교통체계]** · 국도 7호선, 미시령 도로를 주간선축으로 설정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하여 보조간선도로의 접속지점을 분산하여 배치
생활권 설정	**[생활권 구분]**

생활권 구분	생활권 특성	인구밀도
중앙	중심업무, 관광지원	55.3인/ha
동명	북방외교, 주거	50.5인/ha
척산	육상관광, 체험민박	9.7인/ha
설악	전원주거, 휴양, 체험관광	11.5인/ha
대포	해양관광, 설악산관광	16.4인/ha
설악산 국립공원 및 미지정	설악산 관광	-

구 분	중앙생활권	동명생활권	척산생활권	설악생활권	대포생활권
인구(인)	52,985	36,093	5,445	7,616	17,861

4.2 문제점 및 개선계획

공간구조 설정	· 지역특화전략 부재 - 생활권 간 기능 연계 부족 및 생활권별 특성화 계획의 구체성 부재 · 지역 중심간 불균형 해소 마련 필요
	· 지역별 특성화 전략 마련 및 생활권 지역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공간체계 보완 · 특화중심기능을 공간구조체계와 권역의 특성화 방향 설정
생활권 설정	· 도시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세분화된 생활권 배분 · 최상위 법정계획 및 속초시의 지침에 되는 계획 수립에 유연성 제고의 어려움 · 상위계획 내용의 반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수립에 대응이 부족한 생활권 체계
	· 생활권별 인구 배분시 도시개발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인구집중과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생활권 규모 및 계획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별 생활권 규모 확대로 생활권 개수 감소

5.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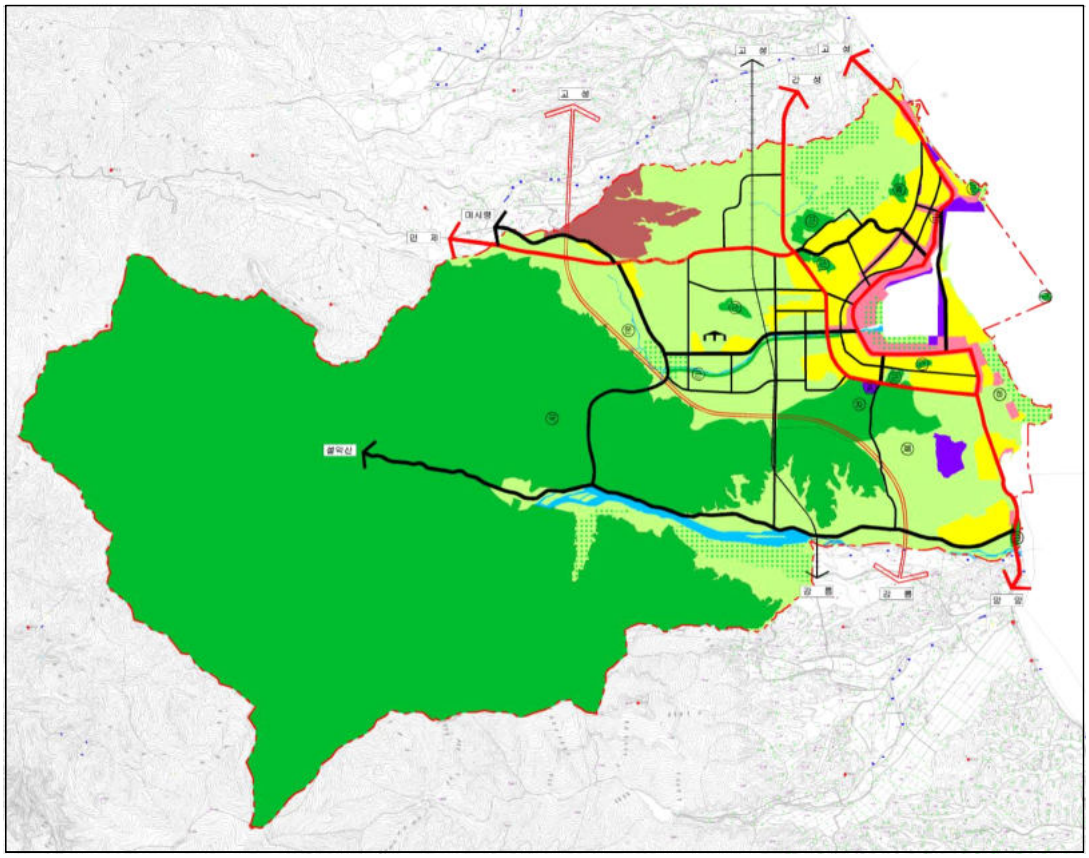
5.1. 주요내용

기본방향	· 속초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물량 및 개발 수요, 인구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시가화예정용지 재조정 · 생활권 및 단계별 적정배분으로 계획 및 관리의 유연성 확보
토지이용계획 물량계획	· 시가화용지(10.549㎢) : 주거(6.270㎢), 상업(2.068㎢), 공업(0.836㎢), 관리용지(1.375㎢) · 시가화예정용지(3.431㎢) / 보전용지(96.804㎢)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향	·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개발효과가 신시가지 및 지역중심지 등 생활권별 중심지 개발에 의하여 용도변경 되는 지역의 정비 · 인접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 및 개발로 토지이용계획 물량 활용을 위한 계획 유연성 제고

5.2 문제점 및 개선계획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을 위한 속초시 개발 방향의 소극적 대응 ·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으로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지 또는 도시재생을 통한 개발 계획 수립 유도 · 생활권별 개발수요를 고려한 시가화예정용지 재조정 필요
	· 속초시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 · 계획인구 변경에 따른 용도별 면적 재산출로 계획의 유연성 제고

【그림 1-3-2-1】 2020 속초 도시기본구상도



6. 기반시설계획

6.1. 주요내용

교 통 계 획	· 광역도로 및 내부 도로망 신설을 통한 강원동해안권 접근성 개선 및 도심부 통과교통량 분산 처리 · 보행자우선정책과 지능형 첨단교통체계도입 및 친환경적 교통정책방향으로 방향전환 모색 · 광역도로망 : 강릉~고성간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미시령도로(지방도56호선) · 간선도로망 : 남-북, 동-서방향 주간선도로, 국도7호선과의 무분별한 접속은 지양 · 보조간선도로 : 광역 및 도시내교통망과의 효율적 연계체계 확보
공공시설계획	· 행정동을 단위로 한 소생활권의 중심지에 서비스 인구규모가 유사한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을 가급적 밀집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 편의성 증대 · 생활권의 중심지에 우체국, 소방파출소 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공공시설 중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등은 자족적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중심을 고려하여 입지

6.2 문제점 및 개선계획

교 통 계 획	· 동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개선으로 주요도로인 국도7호선에 도시내 교통량과 지역간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
	·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방식에서 녹색교통인 버스,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방식으로 전환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전환 · 도로정비기본계획,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합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교통(신교통)시스템 구축
공공시설계획	· 공공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균형적 배분 부족
	· 공공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지양을 위한 서비스이용권역 반영

7.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7.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환경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설정 및 지속적 관리
상 하 수 도 및 기 타 계 획	· 상수도 : 목표연도 상수도 보급률 100.0% · 하수도 : 목표연도 하수도 보급률 100.0% · 폐기물 : 목표연도 1인1일 배출량 3.5kg/일(총발생량 420톤/일) · 에너지 :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에너지 관리대책 수립 · 대기 및 수질 : 환경오염 부하를 저감시키고 기반시설 확충

7.2 문제점 및 개선계획

상 하 수 도 및 기 타 계 획	· 상수도보급률은 전체 급수지역으로 시가화예정용지 검토시 보급을 위한 계획 반영 필요 · 하수도보급률은 기존 계획보급률을 초과하여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여 100% 달성률 확보 필요 · 에너지 : 환경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저탄소녹색도시 개념 도입 필요 · 상하수도 : 계획인구까지 감안한 보급률 100% 확보 · 청 소 : 쓰레기 저감방안 제시, 폐기물 무단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 에너지 : 대체에너지 개발,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 필요

8.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8.1. 주요내용

도 심 및 주거환경계획	·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공간구조를 합리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 다양한 소득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형태 도입으로 새로운 주거형태 양식을 제시 필요 · 소형 아파트 수요의 증대가 예측되므로 소형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 · 주택보급률 : 목표 115%(50,453호)

8.2 문제점 및 개선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기성 시가지, 신시가지, 농촌생활권 등 개발 방향의 세부계획 수립 필요 ·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한 주택보급률 115% 달성 부족 · 도시재생(원도심 재생)에 대한 계획 부재 · 주택보급률은 강원도 주택종합계획(2008~2017)에서 제시한 107% 수준을 초과한 적절한 지표 산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후보지 분석을 통해 양호한 주택 공급을 위한 초석 마련 필요 · 도시재생(원도심 재생방안)에 관한 사항 제시

9. 경관 및 미관계획

9.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설악산 산림경관으로의 조망권 확보 · 산림녹지의 미적 기능과 함께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프로그램 도입 · 시가지의 진입부 및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이미지의 연속성 확보 ·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 고도자유지구, 조망권 경관지구
세 부 계 획	· 산림경관 - 산이 조망되는 공간에 들어설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 통경축을 설정하여 주며 특히 하천변에서의 조망권을 확보 · 수변경관 - 쌍천의 복원시 하천의 직선화를 배제하고 하천의 동적 형태를 고려 - 하천변 인공구조물의 제한적 설치로 녹지에 대한 조망권 확보 - 구역별로 특색있는 하천경관을 조성 · 역사경관 - 진입로 정비계획을 통한 지역 지표물로서 효과적으로 부각 - 경관지구 지정을 통하여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 역사자원이 있는 장소에는 안내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편의와 접근 도모 · 시가지경관 - 시가지 내 도로와 보행자 공간의 구분, 자전거길 조성 - 옥외광고물, 안내판, 보도포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높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권 확보

9.2 문제점 및 개선계획

경 관 및 미 관 계 획	· 경관계획 수립의 현실성 및 세분화 된 계획수립 필요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도시공간, 가로경관 및 경관축 설정,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창출, 보전대상지와 개선대상지 설정 및 구분

10. 공원녹지계획

10.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원·녹지 면적의 충분한 확보 · 공원별 체계 확립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녹지 구성 · 생태적 녹지공간의 조성 및 공원의 녹지체계와 연계한 체육공원, 소단위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공간 조성 · 기존시가지 공공공지 및 도로변 자투리 땅을 활용, 부족한 공원용지 확보
공 원 계 획	· 국립공원(설악산 국립공원) 1개소(67.2㎢) · 생활권 공원 33개소((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 소공원 8개소) 0.558㎢) · 주제공원 8개소((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6개소, 수변공원 1개소) 0.019㎢) · 도시관리계획의 공원면적을 현실화하여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을 포함시켜 공원·녹지계획에 반영
유원지계획	·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설악동 일원의 미개발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유원지로 계획하여 개발 활성화를 유도 · 속초해수욕장 유원지를 관광지 조성계획 상 면적으로 조정·관리 ·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척산온천 등 6개소(2.7㎢)

10.2 문제점 및 개선계획

공 원 녹 지 계 획	· 공원계획에 비해 미집행 공원시설의 증가로 속초시 재정에 부담 · 시가지는 광역 및 간선가로망, 철도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축 단절 · 1인당 공원면적은 6.9㎡이며, 휴식 및 여가를 위한 조성형 공원 및 녹지 등의 다양한 공간은 부족
	· 향후 수립할 속초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한 정합성 있는 계획 수립 방안 마련 및 공원 및 녹지화 계획 반영 · 기존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간의 위계 확립 및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효율을 제고

11. 방재 및 안전계획

11.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재해관련정보의 축적·관리와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연결체계의 확립 · 국가재난 관리계획 및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지침, 지방 행정기관 등의 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투자계획을 병행하여 수립

11.2 문제점 및 개선계획

방 재 및 안 전 계 획	·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재난 관련 기구의 통합이 어려움
	·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12. 경제·산업개발계획

12.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농업 - 전문농업인력 양성 및 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 도시인을 위한 관광농업, 전통식품의 가공, 직거래유통시설의 활성화 - 해외시장조사, 현지여건을 고려한 수출적합품목의 개발 · 수산업 - 북방 원양어업의 전진 기지화를 위한 어항 및 지원시설의 확충 - 수산물 부가 가치화, 지역특산품 개발, 정보 및 기술축척 · 공업 - 기존산업의 벤처기업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특성화와 지식·기술 집약화에 의한 지식산업발전의 추구 - 도시형 첨단산업의 육성·정비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 강화 · 상업 - 기존의 상권을 고려하여 상업·업무기능의 적극적 개발 -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수요에 대응한 근린형상가의 재정비를 도모하여 새로운 상업공간의 조성을 지원

기 본 방 향	· 관광산업 - 관광객의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도입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 급증하는 여가수요와 다양한 여가행태에 능동적으로 대처 -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속초방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계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 즉흥적인 이벤트의 산발적 개최를 지양하고 문화·관광 이벤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12.2 문제점 및 개선계획

경 제 · 산 업 개 발 계 획	· 농수산물 식품 가공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지속적 운영, 관광에 편중된 산업구조
	· 저부가가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6차산업 개념 도입 · 관광에 편중된 산업구조 외 속초시 자족적인 산업구조 개편

13. 사회·문화개발계획

13.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의료·보건 : 의료수요인구의 증가 대비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 사회복지 : 생활권에 상응하는 복지시설들을 적정 배치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 · 교육 : 인적자원 개발 및 지식 인프라 구축과 교육컨텐츠 개발 · 문화·체육 :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분산·배치하고 시민편익 제고

13.2 문제점 및 개선계획

사 회 · 문 화 개 발 계 획	· 사회·문화개발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의 제시
	· 사회·문화개발계획에 대한 서비스권역 및 누락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한 배치 및 시설계획 수립 보완

14. 재정계획

14.1.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지방자치화에 따라 잠재되었던 주민요구의 반영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재정수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현실화하고, 조세수입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 강구 · 지방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선정, 적정 투자규모의 결정,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강구
세 부 내 용	· 장기적인 도시개발추세에 따라 도시내·외부에 걸쳐 나타날 환경변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계획 수립 · 단계별로 계획 수립,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 발생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의 효율성 제고,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14.2 문제점 및 개선계획

도시재정계획	· 재정계획 수립과 관내 수립되는 재정계획과의 현실적으로 정합성 제고의 어려움 · 재정사업 사업 선정과 투자규모 설정 어려움 · 투자계획 확보의 어려움 · 단계별 효율적인 계획 수립 어려움
	· 현실적 재정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 및 재정배분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단계별 계획 수립은 별도의 계획 수립

3 여건분석 및 대응전략

1. 국내외 여건변화

1.1 세계 여건변화

- 한반도 교통체계 구축과 연계강화로 국제적 유대관계 유지
- 대북관계 악화에 따른 우려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요구
- 인터넷 발전으로 세계화·개방화 되고 있는 경제 및 산업구조
-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도 증가로 국가 간 협정 체결

1.2 국내 여건변화

- 첨단기술의 발달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
-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구도체계 조성
- 삶의 질 향상에 관심 증대 및 녹색도시 등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시민생활의 국제화 및 소비구조의 변화
- 고령인구 및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 시행

2. 속초시 여건변화와 대응전략

2.1 속초 여건변화

-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및 동서고속화 철도(춘천~속초) 등 광역교통체계 확대
- 다양한 정부 정책에 능동적이고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신규 개발사업(주택) 발생
- 광역교통 개선으로 인한 속초시 방문객 및 외국인 관광객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2.2 상위계획에서 속초시의 위상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19.12, 국토교통부)	· 속초시는 환동해 경제·관광벨트에 포함 · 강원권 비전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 강원권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거점 구축 · 신경제 구상을 선도하기 위한 광역물류교통망 구축 · 동해북부선 및 동서고속화 철도 연결로 동북아 fly-cruise 허브육성

제 3 차 강 원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	· 글로벌콘텐츠 물류벨트에 포함(춘천-속초-양양 청정산업벨트) · 속초시 특성화 방안 - 고품격 호텔 중심의 숙박시설 확충, 청정교통인프라 및 순환 교통망 구축, 설악동 재개발 및 모노레일 설치, 중앙동·조양동 주택재개발 사업 등
제 6 차 강 원 권 관 광 개 발 계 획 (2017~2021)	· 동해안르네상스벨트 및 설악MICE 관광권에 속함 · 동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단위 레저·휴양 관광객과 외래관광 적극 유치, 고속도로와 7번국도상에 크고 작은 관광도시의 서비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동해안 관광의 위상역할 재정립

2.3 문제점

01 인구의 지속적 감소

· 기정 2020 속초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120,000인이었으나 2017년 현재 달성률 저조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계획 필요

02 지형여건으로 인한 도시개발 제약

· 전체면적의 약 60%이상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대부분의 도시지역이 동측에 집중되어 체계적인 도시골격구조 구축의 어려움

03 교통인프라의 미흡

· 지역간 및 관광지간의 연결이 지방도와 국도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휴가철의 교통체증이 높은편으로 최근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한층 심화

04 지역격차 진행

· 다양한 자연관광 자원이 있으나 대부분의 자원이 설악산과 속초해변으로만 주요 관광개발이 한정

2.4 대응전략

01 개발 및 보전축에 관한 대응전략

· 선택과 집중, 파급효과를 감안한 공간구조 조정

· 효율적 개발 유도 및 보전축의 연결성 제고 등 속초시의 기본골격 계획을 수립

02 광역교통 개선

· 동해고속도로 개통

· 동서고속화 철도(춘천~속초)의 계획 수립중(개통예정년도 2026년)

- 2017년 7월 설명회 개최, 12월 기본 실시설계 발주 계획 총연장 94km, 시속250km 고속화철도 노선
- 수도권과 강원·동해권의 고속화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혼잡 해소 및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개발 촉진

·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계획 수립

-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 : 통일대동맥 동해북부선 강릉~고성~제진 국가철도망사업
- 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 TSR연결

Strength	·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향상(서울~속초 1시간 15분) · 강원도내 目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시군간 접근성 강화
Weakness	· 고속도로개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불가피
Opportunity	·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기대 · 광역교통 개선으로 인구유입 증가
Threat	· 광역교통 개선으로 인구의 역유출 가능성 · 동해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타지자체와의 경쟁 가속화
Strength Opportunity 강점의 극대화	· 광역교통 연계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 상위계획에 개발축 제시 필요 · 철도(속초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과 주변의 체계적 개발 유도 ·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Weakness Opportunity 약점의 극복	· 지역투자 및 레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방안 마련, 자족도시기능 제고 · 개발에 따른 불가피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Strength Threat 기회의 활용	· 산업단지, 관광지, 유통·물류단지 등을 고속도로와 연계 · 국가정책에서 제시한 낙후된 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에 따른 개발촉진 유도
Weakness Threat 위험요소 개선	· 주말 인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보로 인규 유출현상 방지 · 교육·문화공간 확충으로 도시매력도 증대와 주거 만족도 향상 · 관광·체육·문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03 관광휴양 부문의 대응전략

Strength	· 설악산 국립공원, 동해 등 풍부한 관광자원 · 고속도로 건설로 광역 입지여건 및 관광지로의 접근성 개선
Weakness	· 설악권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접근의 어려움 · 관광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불가피
Opportunity	· 광역적 접근체계 개선으로 관광지와 연계성 확보 · 상위계획의 관광벨트, 관광 관련 정책의 지속 발의 및 수립
Threat	· 다양한 관광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관광지 시설 미약 · 단순 관광자원에 의지
Strength Opportunity 강점의 극대화	· 고속도로에서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교통체계 검토 ·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관광상품화 개발 노력
Weakness Opportunity 약점의 극복	·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욕 증대 · 다양한 지역으로 연계 가능한 교통체계(대중교통 서비스 등) 도입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계획 유도
Strength Threat 기회의 활용	·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체험 기회 제공 · 고용창출 및 관광객 증가로 설악권 도시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Weakness Threat 위험요소 개선	· 단일 목적의 관광에서 벗어나 휴양·체험·위락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2.5 정책과제의 도출

정책과제 및 세부계획	· 상위계획에 반영 가능한 속초시 비전 제시 ·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계획 수립 · 속초시내 지역별 격차 해소를 통한 제한적 균형발전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도입 정책 마련

3. 종합여건분석

3.1 S.W.O.T 분석



3.2 S.W.O.T 분석 대응전략

Strength Opportunity 강점의 극대화	· 상위계획 및 정책지원,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관광도시 조성 ·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녹색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Weakness Opportunity 약점의 극복	· 속초항 크루즈, 동서고속화 철도 등을 활용한 산업체계 고도화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개발 · 물류단지 등 신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Strength Threat 기회의 활용	· 철도, 크루즈, 고속도로 등 접근체계 개선을 통한 관광자원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국제교류 및 관광도시 육성 · 관광도시 육성으로 생활환경 및 도시기반 마련
Weakness Threat 위험요소 개선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공공편의시설의 인프라 확보 · 속초시내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산업 유치 및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4 지역 이미지 및 주민의식 조사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속초시의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1.2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속초시민 539명(총 600명 중 539명 조사, 응답률 89.8%)
- 속초시청 공무원 370명(총 400명 중 370명 조사, 응답률 92.5%)

· 설문조사 및 분석기간 : 2018년 02월 ~ 06월

【표 1-3-4-1】 설문조사일정

일정	내용
2018년 02월 26일	1차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년 03월 12일	2차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년 03월 22일	3차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년 06월 01 ~ 15일	4차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년 06월 10 ~ 22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 항목

- 속초시의 생활환경 만족도 및 부문별 개선사항
- 속초시의 비전 및 미래상
- 속초시의 대표 이미지, 키워드, 관광자원 등

【표 1-3-4-2】 설문조사 항목

분야	주요내용	
부문별 만족도 및 개선사항	· 주거 및 정주여건	· 사회복지
	· 산업 및 지역경제	· 관광자원 및 시설
	· 도로 및 교통	· 교육
	· 보건 및 의료	· 재난 및 환경
	· 문화 및 체육	
비전 및 미래상	· 발전정도 및 가능성	·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 미래 발전 산업	· 지향하는 미래 도시모습
	· 우선적 추진사업	· 대표하는 단어 및 이미지

1.3 조사방법

· 조사원 면대면 설문조사 및 우편, e-mail 등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실시

2. 조사결과

1.1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 수 : 909명(총 1,000명 중 909명 조사 응답)

- 성비 : 남성 471명(51.8%), 여성 438명(48.2%)
- 연령 : 40대 265명(29.2%), 50대 230명(25.3%), 30대 166명(18.3%), 60대이상 135명(14.9%), 20대 93명(10.2%), 20대 미만 20명(2.2%) 순
- 거주지 : 조양동 258명, 노학동 211명, 교동 155명, 금호동 77명, 동명동 63명, 영랑동 61명, 청호동 45명, 대포동 39명 순

【표 1-3-4-3】 설문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71	51.8	직업	농업	93	10.2
	여	438	48.2		임업	86	9.5
연령	20대 미만	20	2.2		축산업	78	8.6
	20대	93	10.2		제조업	39	4.3
	30대	166	18.3		상업	19	2.1
					건설업	18	2.0
	40대	265	29.2		서비스업	388	42.7
	50대	230	25.3		회사원	13	1.4
	60대 이상	135	14.9		공무원	5	0.6
거주지	교동	155	17.1		학생	1	0.1
	금호동	77	8.5		기타	158	17.4
	노학동	211	23.2		무응답	11	1.2
				거주기간	1년 미만	35	3.9
	대포동	39	4.3		1-5년	90	9.9
	동명동	63	6.9		5-10년	107	11.8
	영랑동	61	6.7		10-15년	128	14.1
	조양동	258	28.4		15-20년	137	15.1
	청호동	45	5.0		20년 이상	378	41.6
					무응답	34	3.7

1.2 유형별 결과분석

▌생활환경

·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수준이며 상하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문화, 복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1순위	2순위
생활환경 만족도		보통정도수준	
개선방안	주거 및 정주여건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의 개선	노후주택 개선
	지역경제, 주민소득 증대	사회적 경제활성화	신규사업추진
	도로·교통·환경 부문	지역내 교통량개선	주차공간확충
	보건·의료 부문	우수한 의료인 확충	의료기관 서비스 강화
	문화·체육 부문	공연장, 체육관 등 시설의 확충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등이 활성화
	사회복지 부분	복지시설의 확충	청소년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관광자원 시설 부문	지역브랜드 강화	지역향토자원의 마케팅
	교육부문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확충	교육의 질 향상
	재난·환경 관리 부문	물 관리 문제	화재, 산불 예방 및 관리

▌비전 및 미래상

· 비전 및 미래상에 대한 응답은 메가트렌드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모두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인구유출 방지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속초시 미래상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휴양도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되었음

· 미래상 선정 및 부문별계획을 수립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

구분	1순위	2순위
미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문	생활 및 주거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	인구유입·유출방지	관광브랜드 차별화
미래에 직면할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불균형 문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지역의 인적자원 부족 및 인구 감소	도로 등 교통시설 부족
속초시 미래상	관광·휴양도시	환경·생태도시
향후 발전가능 산업	음식·숙박·관광·판매·서비스	농·축·수·임업 등 1차 산업
대표 키워드	설악산	울산바위

1.3 부문별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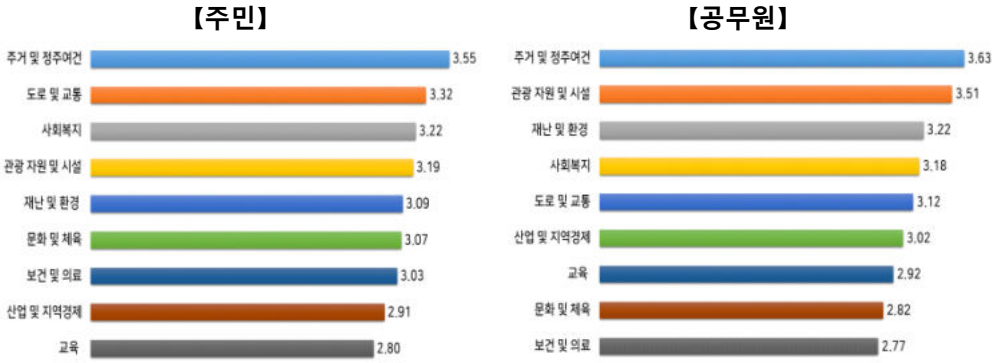
▮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 지역주민 : 주거 및 정주여건 3.55점, 도로 및 교통 3.32점, 사회복지 3.22점 등

· 공무원 : 주거 및 정주여건 3.63점, 관광자원 및 시설 3.51점, 재난 및 환경 3.22점 등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

【그림 1-3-4-1】 속초시의 생활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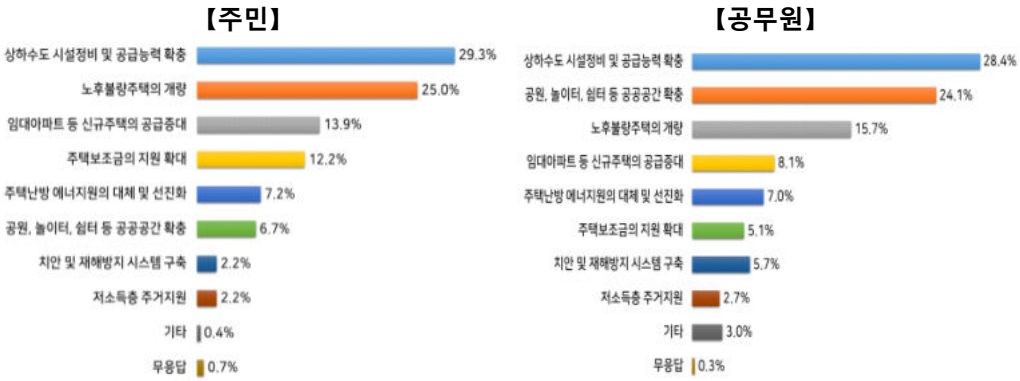
▮ 주거 및 정주여건 부문 중 개선사항

· 지역주민 : 상하수도 시설정비 및 공급능력 확충(29.3%),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25.0%), 신규주택 공급(13.9%) 등

· 공무원 : 상하수도 시설정비 및 공급능력 확충(28.4%), 공원, 놀이터 등 공공공간 확충(24.1%),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15.7%) 등

·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및 개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

【그림 1-3-4-2】 주거 및 정주여건 부문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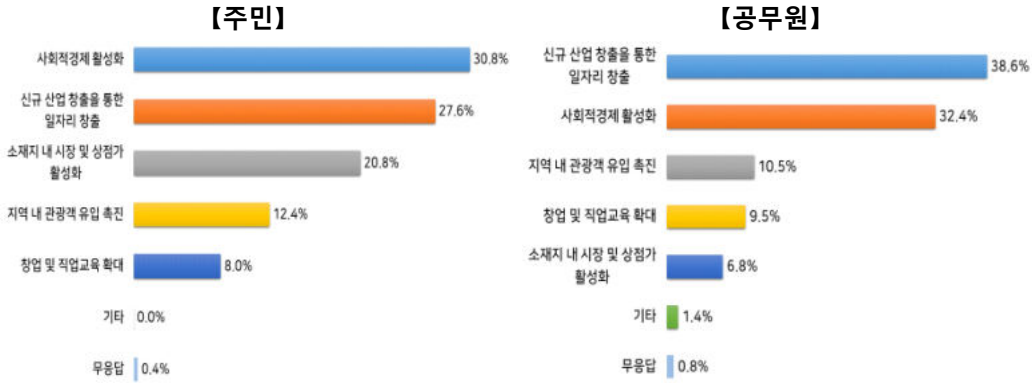


▌지역경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개선사항

· 지역주민 : 사회적 경제 활성화 30.8%, 신규 산업 창출 통한 일자리 창출 27.6%,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20.8% 등

· 공무원 : 신규 산업 창출 통한 일자리 창출 38.6%, 사회적 경제 활성화 32.4%, 지역 내 관광객 유입 촉진 10.5% 등 신규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그림 1-3-4-3】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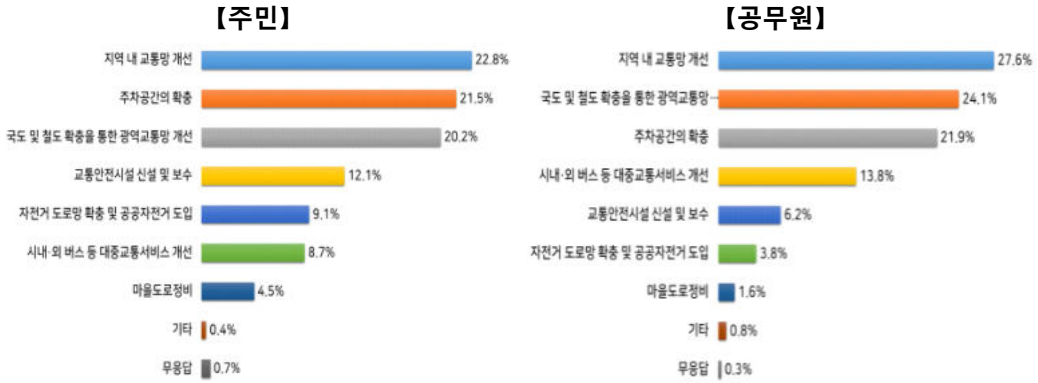
▌도로·교통 환경 부문 중 개선사항

· 지역주민 : 지역 내 교통망 개선 22.8%, 주차공간 확충 21.5%, 국도, 철도 확충을 통한 광역교통망 개선 20.2% 등

· 공무원 : 지역 내 교통망 개선 27.6%, 국도 및 철도 확충을 통한 광역교통망 개선 24.1%, 주차공간 확충 21.9% 등

· 교통인프라 개선 및 확충 통한 도로·교통환경 개선 필요

【그림 1-3-4-4】 도로·교통 환경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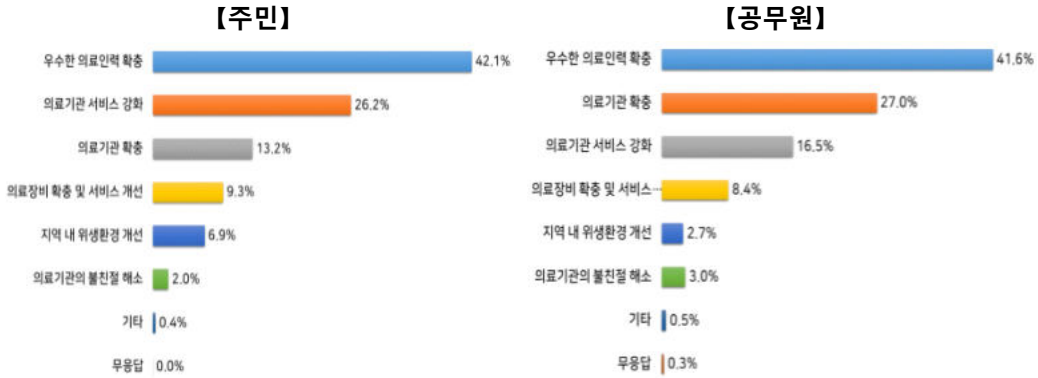
▌보건·의료 부문 중 개선사항

· 지역주민 :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 42.1%, 의료기관 서비스 강화 26.2%, 의료기관 확충 13.2% 등

· 공무원 :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 41.6%, 의료기관 확충 27.0%, 의료기관 서비스 강화 16.5% 등

· 의료기관 및 인력 확충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필요

【그림 1-3-4-5】 보건·의료 부문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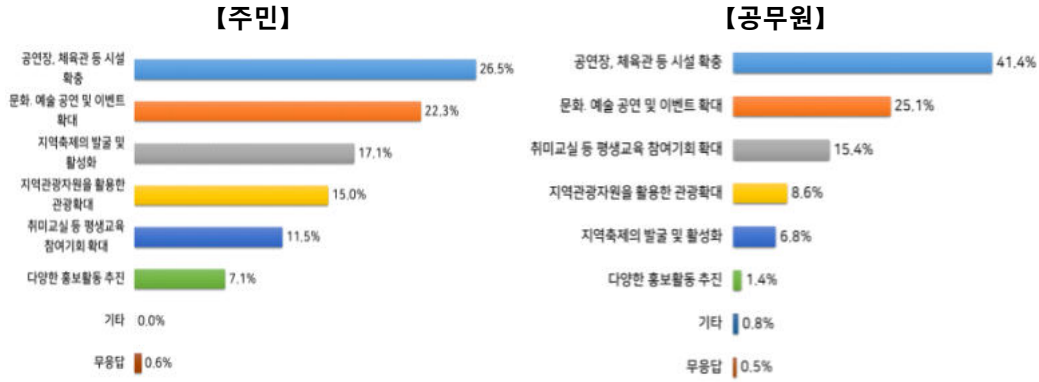
▌문화·체육 부문 중 개선사항

· 지역주민 : 공연장, 체육관 등 시설 확충 26.5%, 문화·예술 이벤트 확대 22.3%, 지역 축제 발굴 및 활성화 17.1% 등

· 공무원 : 공연장, 체육관 등 시설 확충 41.4%, 문화·예술 이벤트 확대 25.1%, 취미교실 등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15.4% 등

· 문화·체육 시설 확충 및 이벤트 확대 통한 문화·체육 향유 서비스 제고 필요

【그림 1-3-4-6】 문화·체육 부문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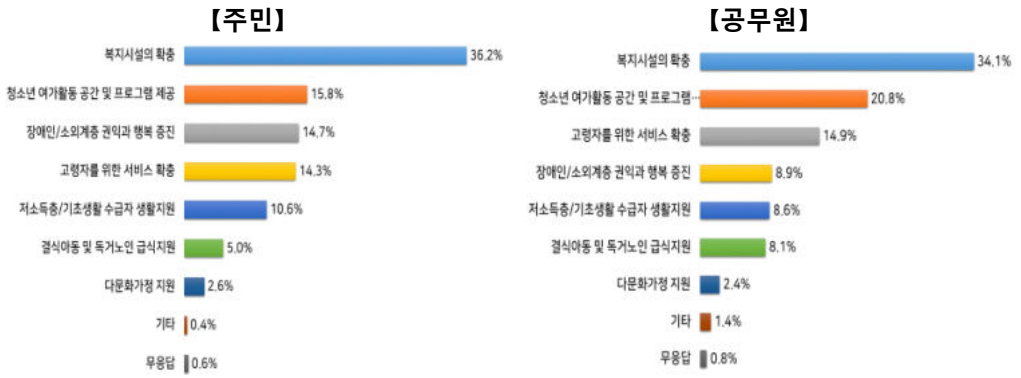
▌사회복지 부문 중 개선사항

· 지역주민 : 복지시설의 확충 36.2%,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15.8%, 장래/소외계층 권익·행복 증진 14.7% 등

· 공무원 : 복지시설의 확충 34.1%,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20.8%,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 14.9% 등

· 복지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필요

【그림 1-3-4-7】 사회복지 부문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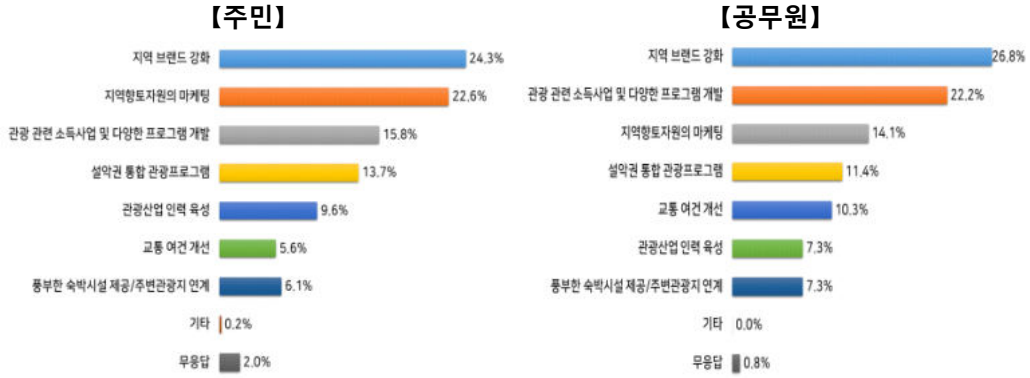
▌관광자원·시설 부문 중 개선사항

· 지역주민 : 지역 브랜드 강화 24.3%, 지역향토 자원 마케팅 22.6%, 관광관련 소득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15.8% 등

· 공무원 : 지역 브랜드 강화 26.8%, 관광 관련 소득산업 및 프로그램 개발 22.2%, 지역 향토자원의 마케팅 14.1% 등

·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

【그림 1-3-4-8】 관광자원·시설 부문 개선사항



▌교육 부문 중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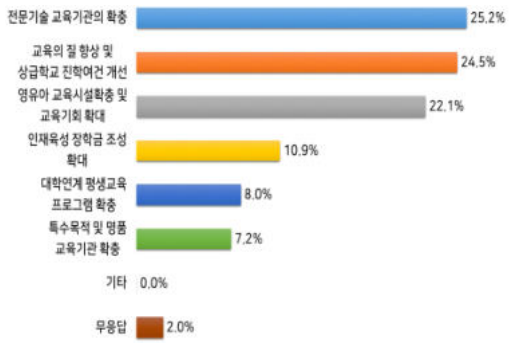
· 지역주민 : 전문기술 교육기관 확충 25.2%, 교육의 질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여건 개선 24.5% 등

· 공무원 : 교육의 질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여건 개선 36.2%, 영유아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기회 확대 28.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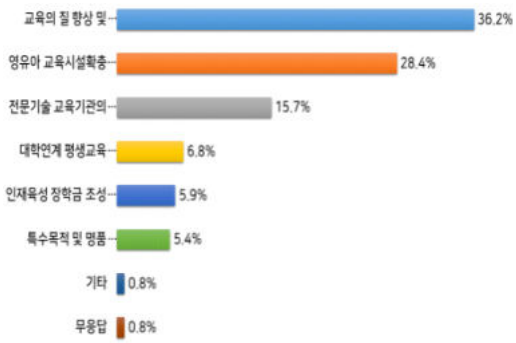
· 전문기술 교육기관 확충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 필요

【그림 1-3-4-9】 교육 부문 개선사항

【주민】



【공무원】



▌재난·환경 관리 부문 중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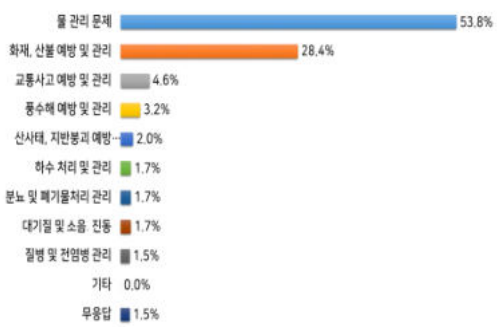
· 지역주민 : 물 관리 문제 53.8%, 화재·산불 예방 및 관리 28.4%,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 4.6% 등

· 공무원 : 물 관리 문제 60.8%, 화재·산불 예방 및 관리 11.9%, 풍수해 예방 및 관리 5.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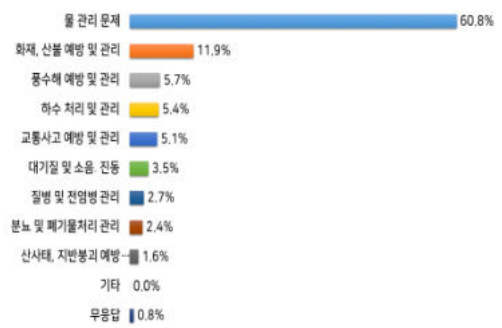
· 물 관리 효율화 추진 및 재난·안전 관리 통한 삶의 질 개선 필요

【그림 1-3-4-10】 재난·환경관리 부문 개선사항

【주민】



【공무원】



1.4 비전 및 미래상

▌ 속초시 미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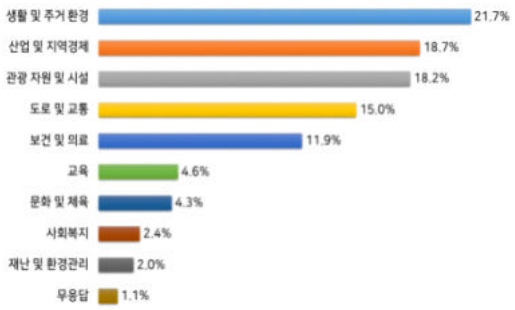
· 지역주민 : 생활 및 주거환경 21.7%, 산업 및 지역경제 18.7%, 관광자원 및 시설 18.2% 등

· 공무원 : 도로 및 교통 20.8%, 생활 및 주거환경 16.2%, 산업 및 지역경제 11.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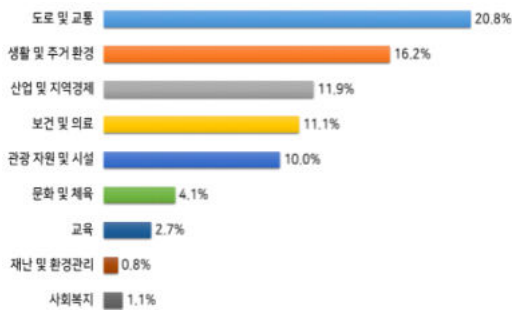
· 생활 및 주거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 방안 필요

【그림 1-3-4-11】 속초시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문

【주민】



【공무원】



▌ 속초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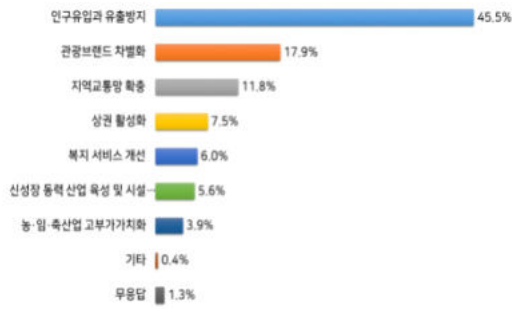
· 지역주민 : 인구유입·유출방지 45.5%, 관광브랜드 차별화 17.9%, 지역교통망 확충 11.8% 등

· 공무원 : 인구유입·유출방지 37.6%, 관광브랜드 차별화 27.0%, 지역교통망 확충 14.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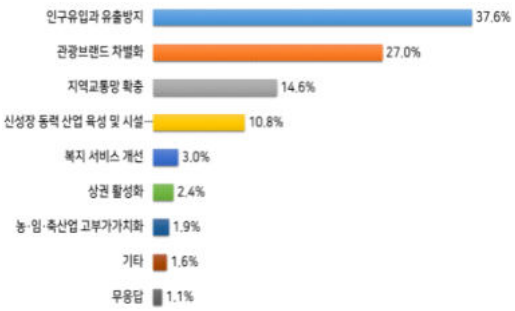
· 관광브랜드 차별화, 교통환경 개선 통한 인구유입·유출방지 방안 필요

【그림 1-3-4-12】 속초시 발전을 위한 우선 개선 사업

【주민】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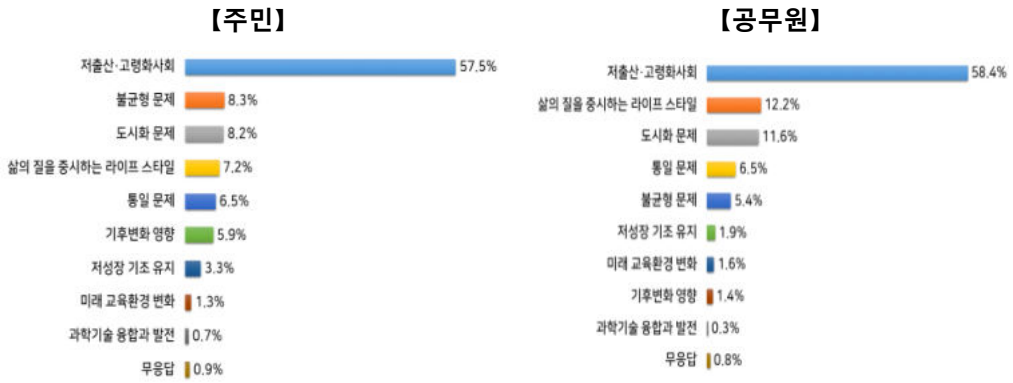
▌ 속초시가 미래에 직면할 문제

· 지역주민 : 저출산·고령화 사회 57.5%, 불균형 문제 8.3%, 도시화 문제 8.2% 등

· 공무원 : 저출산·고령화 사회 58.4%,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12.2%, 도시화 문제 11.6% 등

·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미래트렌드에 대비한 정책 수립 필요

【그림 1-3-4-13】 미래에 직면할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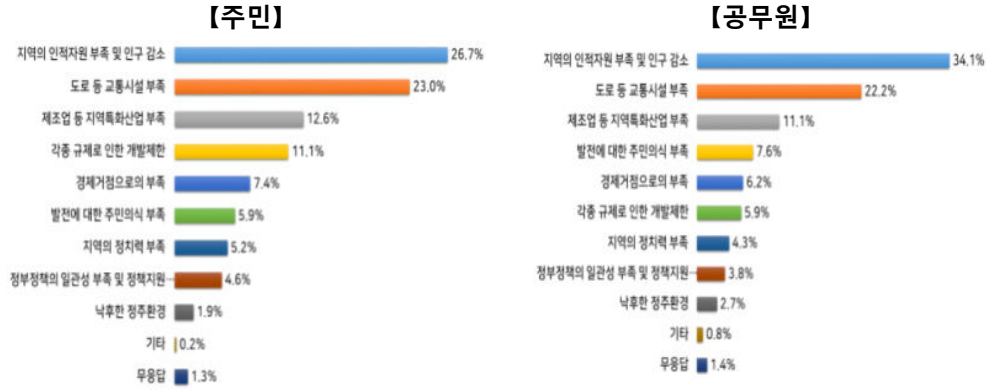
▌ 속초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 지역주민 : 지역의 인적자원 부족 및 인구 감소 26.7%, 도로 등 교통시설 부족 23.0%, 지역특화 산업 부족 12.6% 등

· 공무원 : 지역의 인적자원 부족 및 인구 감소 34.1%, 도로 등 교통시설 부족 22.2%, 지역특화 산업 부족 11.1% 등

· 교통 인프라 확충, 특화산업 육성 등 통한 지역 인적자원 및 인구 증대 방안 필요

【그림 1-3-4-14】 속초시 발전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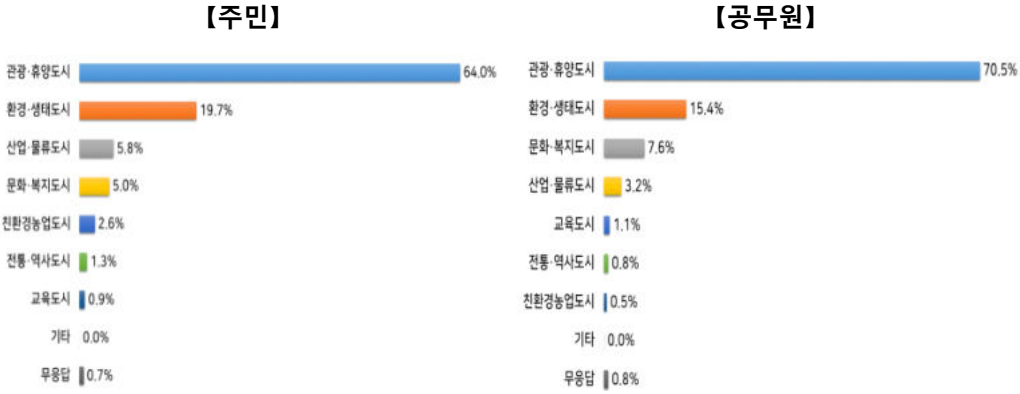
▌ 속초시의 미래상

· 지역주민: 관광·휴양도시 64.0%, 환경·생태도시 19.7%, 산업·물류도시 5.8% 등

· 공무원 : 관광·휴양도시 70.5%, 환경·생태도시 15.4%, 문화·복지도시 7.6% 등

· 청정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 방안 모색

【그림 1-3-4-15】 속초시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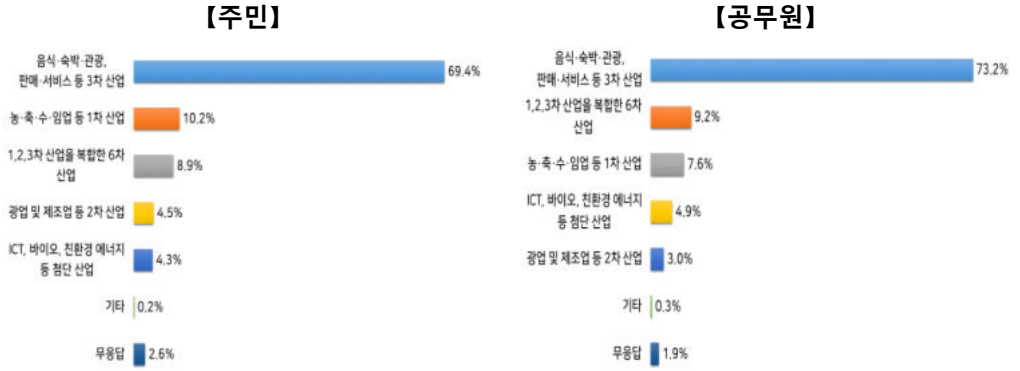
▌ 향후 발전가능 산업

· 지역주민 : 음식·숙박·관광·판매·서비스 등 3차 산업 69.4%, 농·축·수·임업 등 1차 산업 10.2% 등

· 공무원 : 음식·숙박·관광·판매·서비스 등 3차 산업 73.2%, 1, 2, 3차 산업 복합한 6차 산업 9.2% 등

· 핵심산업 육성 등 지역 내 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필요

【그림 1-3-4-16】 속초시 미래 발전가능 산업



▌ 속초시의 대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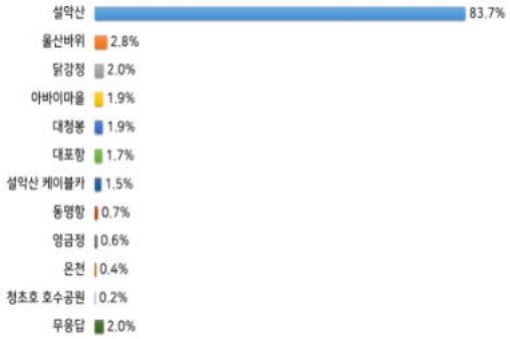
· 지역주민 : 설악산 83.7%, 울산바위 2.8%, 닭강정 2.0%, 아바이마을 1.9% 등

· 공무원 : 설악산 80.5%, 닭강정 5.1%, 대포항 2.2%, 울산바위 1.9%, 붉은 대게 1.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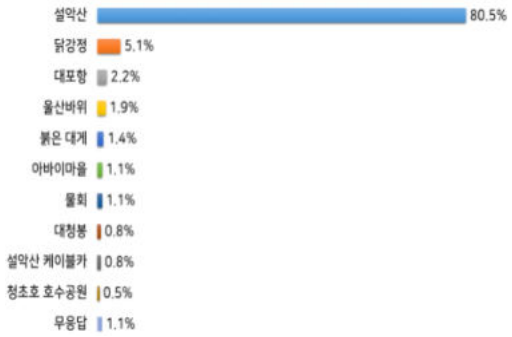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통한 편중된 지역 이미지 탈피 필요

【그림 1-3-4-17】 속초시 대표 키워드

【주민】



【공무원】



▌ 속초시의 대표 이미지 및 관광자원(빅데이터 분석)

· 대표 이미지 : 설악산, 관광, 바다, 영랑호, 아바이마을, 깨끗한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등

· 관광자원 : 설악산, 바다, 먹거리, 온천, 영랑호, 중앙시장, 크루즈 등

· 대표 이미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산업 핵심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필요

【그림 1-3-4-18】 속초시 대표이미지 및 관광자원

【대표이미지】



【관광자원】



02 도시기본구상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제1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제2장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미래상 설정
2. 지표의 설정

제1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변경없음)

1 미래상 설정

1. 기본방향

1.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저탄소 녹색도시의 실현
-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용
- 메가트랜드(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도시서비스의 역할 확대

1.2 우수한 생태환경의 보전 및 활용

- 관광자원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녹색관광도시 육성
- 관내 대표적 생태 관광자원인 동해, 청초천, 쌍천과 대표적 유원지 청초호, 영랑호 등을 포함한 경관관리 및 친수공간 개발

1.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추진

- 개발위주의 도시발전 지양, 청정 자연환경 보전 및 문화예술 기반의 관광도시 계획
-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 상위계획상 관광 개발축인 양양군, 고성군과 연계한 지역 개발축
- 산(관광산업 포함)·학·연 연계 및 신 교통 체계의 도입과 기존 속초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의 유치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마련
- 속초시 내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중심기능 발굴·육성

1.4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 미래 도시공간구조에 부응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기반구축
-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춘천~속초간, 고속철도 등 접근성 향상
-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2. 도시의 미래상

2.1 미래상 도출 모형



2.2 속초시 미래상



3.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3.1 산과 바다의 프리미엄「관광 레저 도시」

01 추진전략

- 자연 친화적이고 여가생활 중심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춘 휴양도시의 위상 제고
- 지역특화시설을 체험하는 다양한 관광시스템 육성 및 휴양형 관광자원의 고급화

02 실천전략

-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 육성
- 맛·멋·흥(음식-경관-즐길거리)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 대포항 크루즈 유치 및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등 레포츠 시설 도입
- 청초호, 영랑호 등 수경관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관광자원 마련

3.2 안심하고 누리는「녹색 안전 도시」

01 추진전략

-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시와 전원이 조화를 이룬 도시환경조성
- 개발-보전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로 자연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
-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저감 대책 마련

02 실천전략

- 설악산 주변으로 친환경 마을 조성과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하여 물과 숲과 마을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 개발사업 수립시 녹색도시 시범사업 및 친환경 도시 조성 유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디자인 계획
- 자연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예방과 재해대처 능력이 탁월한 재해 안전도시 조성
-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녹도,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
- 범죄예방설계 적용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3.3 시민이 풍요로운「자립 성장형 도시」

01 추진전략

- 생활권 간 균형발전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인재 양성 및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02 실천전략

- 상위계획 관광 클러스터 개발축인 고성 양양군과 통합 지역산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 교육·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R&D 관광산업 기능 활성화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물류·유통산업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속초의 농·축산업과 연계한 생명공학(Bio-Technology) 녹색기술 산업단지 조성 검토를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유치 활성화
- 낙후지역 및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한 균등한 삶의 질 향상

3.4 세계로 열려있는「북방 물류중심 도시」

01 추진전략

- 유라시아 대륙 연결의 중추적 거점으로의 기능 제고
-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물류 및 4차산업의 거점도시 기반마련

02 실천전략

- 속초항 크루즈 개통과 연계하여 MICE 산업의 도입이 가능한 경제 특구 등 육성계획 마련
- 외국인 투자지역(외국인 투자촉진법) 지정 등 유라시아 대륙 연결의 중추적 거점지로의 기능 제고
-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공간의 조성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및 국제물류항만 추진
- 속초시는 환동해권의 주요한 거점도시로써 북방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발전 도모

3.5 도시미래상에 대한 부문별 계획 연계방안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	
목표1. 산과 바다의 프리미엄「관광 레저 도시」		
자연 친화적이고 여가생활 중심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춘 휴양도시의 위상 제고	공간구조	· 보전축 구상 중 Eco Ring 지정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구조 마련 - 자연보전축 : 설악산 ↔ 주봉산 ↔ 청대산 ↔ 동해 ↔ 성천리 ↔ 설악산 - 관광휴양축 : 청대 ↔ 척산 ↔ 학사평 ↔ 장천 ↔ 영랑호
	환경	· 도시 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 계획 수립 · 해안(해수욕장 및 연안), 석호(영랑호, 청초호), 산악(설악산) 등 주요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
	주거환경	·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비물리적 주거환경계획 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방안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	
지역특화시설을 체험하는 다양한 관광시스템 육성 및 휴양형 관광자원의 고급화	관광	·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스마트관광시스템 도입방안
목표2 안심하고 누리는「녹색 안전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시와 전원이 조화를 이룬 도시환경조성	경관	· 산림녹지, 해안, 하천 및 호수 ,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 등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로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방재 · 안전	· 범죄예방설계 기법 등의 세부적인 설계전략 등을 도입하여 속초시민의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 · 재해취약성분석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개발-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로 자연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	공간구조	· 기존 노학·청학중심에서 주개발축에 포함된 청호지구를 포함하여 남부지역 개발거점화 방안의 공간구조를 수립하여 개발축과 보전축의 중복을 억제
	공원녹지	· 설악산 국립공원과 청초호, 쌍천변 수변공간 및 도시내 공원, 녹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속초시를 포괄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토지 이용계획	· 공법상 규제지역과 자연적요소(경사, 표고, 생태)를 고려한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
	환경	· 저탄소녹색도시 조성방안과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목표를 설정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저감 대책 마련	교통	· 교통량이 집중되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 계획 및 내부교통의 분산을 통한 통행량 개선으로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고 보행자 우선의 도로체계 구축
	에너지	· 저탄소녹색도시환경 조성 방안과 수송 등의 분야별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제시
목표3 시민이 풍요로운「자립 성장형 도시」		
생활권 간 균형발전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권	· 속초시 면적, 인구규모, 생활환경을 고려 균형잡힌 도시구조가 유지되도록 기존 생활권을 통폐합하여 2개의 생활권으로 변경하고 발전전략을 마련
	도시재생	·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을 통한 신·구 시가지의 상호보완 방안, 원도심 발전전략 등을 제시하고 주거지 격차해소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유형별로 제시함
	사회 · 문화	· 속초시 도시성격을 감안한 무공해, 비용수,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육성 방안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및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경제·산업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 · 지역인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목표4 세계로 열려있는「북방 물류중심 도시」		
유라시아 대륙 연결의 중추적 거점으로의 기능 제고	경제·산업	· 북방물류지원시설과 4차산업단지 속초항, 양양공항, 속초IC 등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물류거점 구상 · 현재 속초시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가동률 등을 고려한 대포4산업단지 추진과 더불어 대포항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물류 및 4차산업의 거점도시 기반마련	기반시설	· 미래 도시공간구조에 부응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한 교통기반구축 ·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춘천~속초간, 고속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활용
	토지이용 계획	· 노학동 일원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세권개발사업 반영 ·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개발사업 및 신산업 기반 물량 · 인구 및 산업지표 달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상업·공업물량의 균형 배분

3.6 기정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2 지표의 설정

1. 목표연도

1.1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 기준연도 : 2017년

· 목표연도 : 2040년

1.2 단계별 계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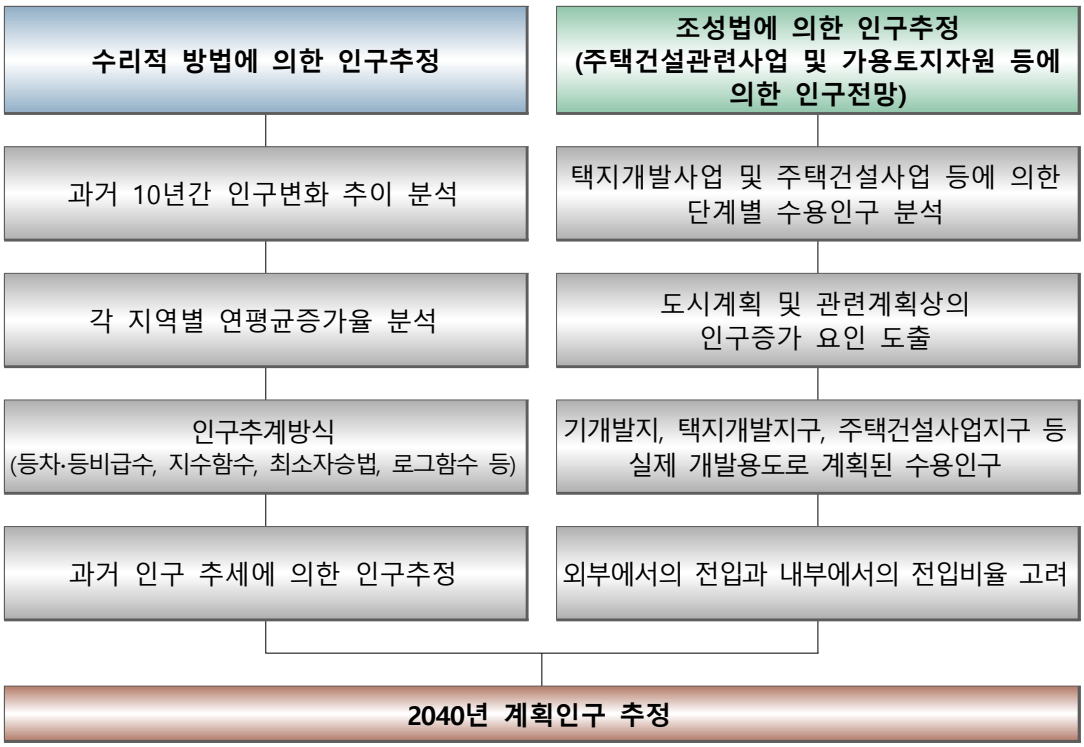
· 4단계로 구분하여 수립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 계	2021~2025년	2026~2030년	2031~2035년	2036~2040년

· 계획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단계별 계획 수립

· 도시미래상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및 집행계획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

2. 인구의 추정방법



2.1 조성법을 이용한 인구추정방법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절 4-2-5 인구】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산정

- 자연증가분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을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
- 사회적 증가분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지역의 과거사례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반영·비교 유추하여 가능유발인구 결정
- 사회적 증가분 = (가능유발인구 -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 × 계수 (단, 계수는 1미만으로서 가능유발인구에 포함되는 기존 인구 등으로 고려하여 정함)

2.2 수리적 인구추정방법 산정방식

등차 급수	$P_n = P_0(1+rn),\ r = \frac{P_n - P_0}{nP_0}$	‣ 인구추정이 비교적 쉽고 간단 ‣ 안정된 인구증가율을 가지는 도시에 적합 ‣ 인구변화가 안정된 지방중소도시에 적합
등비 급수	$P_n = P_0(1+r)^n,\ r = (\frac{P_0}{P_t})^{\frac{1}{t}} - 1$	‣ 인구증가 비율이 일정할 때 적용 ‣ 신흥공업도시와 급성장도시의 인구예측 ‣ 대도시처럼 한계점에서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부적합
지수 함수	$P_n = P_0 \times e^{rn},\ r = \frac{\ln(\frac{P_0}{P_t})}{t}$	‣ 인구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원리 ‣ 짧은기간, 순간 변화까지도 분석가능
최소 자승법	$y = a + bx$	‣ 인구증감의 변화가 심한 도시에 적합 ‣ 대부분 도시에 적용가능
로지 스틱	$y = \frac{K}{1+e^{a+bx}} = \frac{P}{Z} = \frac{P}{A+BC^x}$	‣ 인구성장이 완만하다가 급격히 증가후 임계치에 수렴하게 될 경우 적용 ‣ 대도시권의 인구를 어느 상한선까지 통제할 경우 적용 ‣ 비교적 정확한 인구추계방법임

2.3 가구당 인구 설정

01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한 검토

·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8년 속초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속초의 2017년 가구당 인구는 2.4인/가구, 강원도의 가구당 인구는 2.4인/가구로 조사됨

【표 2-1-2-1】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구 분	가구원 (인)	가 구	가구당 인구 (인/가구)	비 고
강원도	1,521,386	627,054	2.4	
속초시	78,618	33,441	2.4	2017년
	78,312	33,961	2.3	2018년
	78,643	34,550	2.3	2019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2018년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2 유입예상지역에 대한 가구당 인구 검토

·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일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도시의 일반가구의 유입이 예상됨
· 유사한 도시구조를 갖는 강릉시와 동해시는 평균 2.3과 2.4인/가구로 속초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1-2-2】 가구당 인구현황

구 분	평 균 (인/가구)	주 유입 예상지역 가구당 인구(인/가구)						비 고
		서울특별시				강원도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릉시	동해시	
2014년	2.4	2.3	2.4	2.6	2.6	2.3	2.4	
2015년	2.5	2.5	2.5	2.7	2.7	2.3	2.4	
2016년	2.5	2.4	2.5	2.6	2.6	2.3	2.4	
2017년	2.5	2.4	2.4	2.6	2.6	2.3	2.4	
2018년	2.4	2.3	2.4	2.6	2.5	2.2	2.3	
평 균	2.5	2.4	2.4	2.6	2.6	2.3	2.4	

출처 : 해당 지자체별 통계연보, 각 년도
주) 인접시군인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은 노인계층(1~2인세대)로 인해 가구당 인구 지표가 낮은 사항이며,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회 검토사항에서 제외

03 속초시 가구당 인구 계획지표

·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동서고속철도로 인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속초시 가구당 인구는 강원도 및 속초시 현황을 반영 2.3인을 목표로 계획에 반영

【표 2-1-2-3】 2040년 속초시 가구당 인구계획

구 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비고
가구당 인구(인/가구)	2.3	2.3	2.3	2.3	

2.4 기정 2020 속초도시기본계획 인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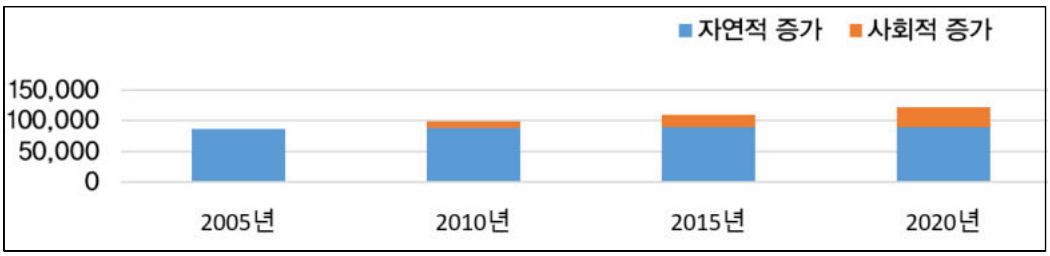
01 과거추세 연장법에 의한 산출방법(2020 속초도시기본계획)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MAPE
등차급수	91,650	98,158	104,666	111,173	3.01%
등비급수	91,931	99,555	107,811	116,752	2.57%
지수할당법	90,484	90,396	89,768	88,506	4.80%
지수성장법	90,368	99,573	107,836	116,785	2.57%
최소자승법	95,090	103,139	110,620	118,100	2.47%
평 균	91,905	98,164	104,140	110,263	

주) 다섯 가지 기법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추계식을 평가하는 방식은 평균절대오차법(MAPE : Mean of Absolute Percentage Error)을 적용함

02 기정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추정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계 획 인 구	87,124	97,000	106,000	120,000	
자연적 증가	87,124	88,097	89,240	89,784	
사회적 증가		9,965	19,815	32,408	



03 기정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기정 도시기본계획 인구	97,000	106,000	120,000	-	-	
A. 자연증가인구	85,034	84,379	83,386	81,895	80,125	
B. 사회적 증가인구	-	5,052	22,876	39,086	74,847	
①고용유발인구	-	3,444	19,031	35,506	73,107	
②개발사업인구	-	1,608	3,845	3,580	1,740	
대포제3농공단지	-	375	725	-	-	
교정시설	-	500	600	-	-	
중앙동 주택재개발	-	-	1,265	-	-	
주택건설사업	-	733	1,255	-	-	
소야도시개발사업	-	-	-	3,580	-	
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	-	-	-	-	1,740	
속초시 추계인구	85,034	89,431	106,262	120,981	154,972	

2.5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 인구현황 및 과제

· 2017년 속초의 내국인 인구는 82,273인이며, 최근 10년 기준 소폭 감소추세임

· 2020년 계획인구 대비 69.3% 달성률을 보임 (2020년 12만명 기준)

【표 2-1-2-4】 인구현황

구 분	인 구(인)			증가율(%) (내국인)	비 고
	총 인 구	내 국 인	외국인		
2008년	85,349	84,599	750	-0.9	
2009년	84,568	83,822	746	-0.9	
2010년	85,034	84,302	732	0.6	
2011년	84,489	83,745	744	-0.1	
2012년	84,279	83,579	700	-0.9	
2013년	83,803	83,109	694	-1.4	
2014년	83,194	82,432	762	-1.5	
2015년	82,978	81,992	986	-0.3	
2016년	82,670	81,793	877	-0.4	
2017년	83,213	82,273	940	0.7	달성률 69.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2-1-2-5】 연령별 인구현황

구 분	인구(인)	구성비(%)	성별 인구(인)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계	82,273	100.0	40,531	100.0	41,742	100.0
0~4세	2,838	3.4	1,422	3.5	1,416	3.4
5~9세	3,333	4.1	1,667	4.1	1,666	4.0
10~14세	3,667	4.5	1,892	4.7	1,775	4.3
15~19세	4,958	6.0	2,566	6.3	2,392	5.7
20~24세	5,020	6.1	2,768	6.8	2,252	5.4
25~29세	4,150	5.0	2,332	5.8	1,818	4.4
30~34세	4,120	5.0	2,197	5.4	1,923	4.6
35~39세	5,554	6.8	2,784	6.9	2,770	6.6
40~44세	6,069	7.4	3,025	7.5	3,044	7.3
45~49세	7,684	9.3	3,799	9.4	3,885	9.3
50~54세	7,181	8.7	3,597	8.9	3,584	8.6
55~59세	7,958	9.7	3,829	9.4	4,129	9.8
60~64세	6,277	7.6	3,159	7.8	3,118	7.5
65~69세	3,855	4.7	1,782	4.4	2,073	5.0
70~74세	3,473	4.2	1,526	3.8	1,947	4.7
75세 이상	6,136	7.5	2,186	5.3	3,950	9.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주) 외국인 인구 미포함

3. 인구 증가에 대한 타당성 제시

3.1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증가추이

·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청년실업, 실업자 증가, 경제 불황에도 속초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내국인 인구 감소에도 종사자 수의 증가는 관광인구의 증가에 따른 타시·군의 종사자 수의 출퇴근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증가한 사유와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분석됨

·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는 괘적한 주거 공간 제공 시 속초 내 거주를 희망할 것으로 분석됨(직주근접 및 교통 통행량 감소 예상)

【표 2-1-2-6】 내국인 인구 및 사업체수•종사자수 추이

구 분	인 구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인)	비 고
2011년	83,745	7,309	25,149	
2012년	83,579	7,578	26,129	
2013년	83,109	7,706	27,354	
2014년	82,432	8,020	28,792	
2015년	81,992	8,077	29,185	
2016년	81,793	8,365	30,806	
2017년	82,273	8,603	31,74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3.2 외부유입률 적용

· 최근 입주한 속초시 공동주택 전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외부유입률 적용

· 속초시의 외부유입률은 35%를 적용

3.3 사회적 인구증가의 타당성

01 여건변화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적용 타당성

·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등 도시인프라 구축시점에 택지개발을 통해 자족성 및 도시인프라 효율성 증대

· 개발가용지를 활용한 계획수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개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조성 필요

02 미래를 준비하는 거점 도시공간 창출

- 속초역세권 개발이 선진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개선된 인프라로 도시기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도시 형성 가능
- 속초의 지역현안사업(공동주택건설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공간 제공으로 인구 유입
- 강원도 동북부의 국제적인 거점도시 육성
- 속초 내 분산된 지역중심을 연계하여 속초의 개발거점으로 육성
- 주거환경과 커뮤니티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 기초적 도시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생활 중심도시로 육성

4. 2040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설정

4.1 기본방향

- 자연증가인구는 과거의 인구증가 추세(출산율, 사망률)를 감안한 생잔모형으로 장래의 인구를 추정
- 사회적 증가는 지역현안 사업 및 사회적 증가요인을 포함하여 인구를 추정
- 자연증가인구(조성법)와 사회적 증가인구에 의한 방법 적용

4.2 계획인구 추정

01 인구계획 총괄

구 분		2017년 (기준연도)	2020년 (현재)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비고
계획 인구	당 초	89,431	120,000	120,981	154,972	-	-	
	재수립(안)	83,213	83,127	85,268	87,957	89,860	90,930	
	증감	감) 6,218	감) 36,873	감) 35,713	감) 67,015	89,860	90,930	
자연 증가 인구	당 초	84,379	83,386	81,895	80,125	-	-	
	재수립(안)	82,273	82,118	74,915	75,790	76,716	76,803	
	증감	감) 2,106	감) 1,268	감) 6,980	감) 4,335	76,716	76,803	
인구 유출량		-	-	감) 8,003	감) 8,097	감) 8,196	감) 8,205	
사회적 증가 인구	당 초	5,052	22,876	39,086	74,847	-	-	
	재수립(안)	940	1,009	10,353	12,167	13,144	14,127	
	증감	감) 4,112	감) 21,867	감) 28,733	감) 62,680	13,144	14,127	

출처 : 2017년 당초 계획인구는「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2015년 계획인구 반영
2020년 현재인구는 속초시 통계자료 (2020.12)
주) 총괄표에 한정하여 외국인 인구는 기타인구로 사회적증가인구에 포함하여 작성(1,491인)

02 자연증가인구

구 분	2017년			2020년			2025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2,273**	**40,531**	**41,742**	**82,118**	**41,322**	**40,796**	**82,918**	**41,726**	**41,192**
0~4세	2,838	1,422	1,416	2,661	1,360	1,301	2,687	1,373	1,314
5~9세	3,333	1,667	1,666	3,335	1,708	1,627	3,367	1,724	1,643
10~14세	3,667	1,892	1,775	3,509	1,823	1,686	3,544	1,841	1,703
15~19세	4,958	2,566	2,392	4,476	2,346	2,130	4,520	2,369	2,151
20~24세	5,020	2,768	2,252	5,265	2,924	2,341	5,316	2,953	2,363
25~29세	4,150	2,332	1,818	4,468	2,535	1,933	4,512	2,560	1,952
30~34세	4,120	2,197	1,923	4,033	2,152	1,881	4,073	2,173	1,900
35~39세	5,554	2,784	2,770	5,310	2,709	2,601	5,363	2,736	2,627
40~44세	6,069	3,025	3,044	5,604	2,868	2,736	5,658	2,896	2,762
45~49세	7,684	3,799	3,885	6,850	3,585	3,265	6,915	3,619	3,296
50~54세	7,181	3,597	3,584	6,803	3,519	3,284	6,869	3,553	3,316
55~59세	7,958	3,829	4,129	7,653	3,851	3,802	7,727	3,888	3,839
60~64세	6,277	3,159	3,118	6,751	3,404	3,347	6,816	3,437	3,379
65~69세	3,855	1,782	2,073	4,274	2,063	2,211	4,315	2,083	2,232
70~74세	3,473	1,526	1,947	3,735	1,727	2,008	3,771	1,744	2,027
75~79세	2,976	1,229	1,747	3,532	1,481	2,051	3,566	1,495	2,071
80~84세	1,794	625	1,169	2,276	845	1,431	2,298	853	1,445
85세이상	1,366	332	1,034	1,583	422	1,161	1,601	429	1,172

구 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3,887**	**42,212**	**41,675**	**84,912**	**42,726**	**42,186**	**85,008**	**42,775**	**42,233**
0~4세	2,718	1,389	1,329	2,752	1,406	1,346	2,755	1,408	1,347
5~9세	3,407	1,745	1,662	3,448	1,766	1,682	3,452	1,768	1,684
10~14세	3,586	1,863	1,723	3,629	1,885	1,744	3,633	1,887	1,746
15~19세	4,573	2,397	2,176	4,629	2,426	2,203	4,633	2,428	2,205
20~24세	5,378	2,987	2,391	5,444	3,024	2,420	5,450	3,027	2,423
25~29세	4,565	2,590	1,975	4,620	2,621	1,999	4,625	2,624	2,001
30~34세	4,120	2,198	1,922	4,170	2,225	1,945	4,175	2,227	1,948
35~39세	5,424	2,767	2,657	5,491	2,801	2,690	5,497	2,804	2,693
40~44세	5,725	2,930	2,795	5,794	2,965	2,829	5,801	2,969	2,832
45~49세	6,997	3,662	3,335	7,082	3,706	3,376	7,090	3,710	3,380
50~54세	6,950	3,595	3,355	7,035	3,639	3,396	7,043	3,643	3,400
55~59세	7,818	3,934	3,884	7,913	3,982	3,931	7,922	3,986	3,936
60~64세	6,896	3,477	3,419	6,980	3,519	3,461	6,988	3,523	3,465
65~69세	4,365	2,107	2,258	4,419	2,133	2,286	4,424	2,135	2,289
70~74세	3,815	1,764	2,051	3,862	1,786	2,076	3,866	1,788	2,078
75~79세	3,608	1,513	2,095	3,652	1,531	2,121	3,657	1,533	2,124
80~84세	2,325	863	1,462	2,354	874	1,480	2,357	875	1,482
85세이상	1,617	431	1,186	1,638	437	1,201	1,640	437	1,203

03 사회적 증가인구 (총괄)

구 분	계획 인구 (인)	외부 유입률 (%)	증가 인구 (인)	단계별 증가인구(인)			
				2025	2030	2035	2040
합 계	36,074	-	12,636	9,258	1,688	845	845
중앙동 주택재개발	3,301	35.0%	1,156	1,156	-	-	-
주택건설사업	20,748	35.0%	7,271	7,271	-	-	-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2,374	35.0%	831	831	-	-	-
동서고속철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9,651	35.0%	3,378	-	1,688	845	845

주) 주택건설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증가인구 산출 합계

5. 사회적 / 기타 증가인구 세부내역

5.1 개발사업

01 도시재생사업(주택재개발사업)

·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서의 인구 반영

· 외부유입률은 35%로 설정하고, 가구당 인구는 2.3인/가구로 설정하여 산정

구 분	계획세대수 (세대)	외부유입률 (%)	세대당 인구 (인/세대)	총인구 (인)	외부유입 인구(인)	비 고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1,435	35	2.3	3,301	1,156	

주) 계획세대수는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반영

02 개별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조성사업

· 개별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외부유입인구 반영(승인, 신청 사항 포함)

· 외부유입률은 35%로 설정하고, 가구당 인구는 2.3인/가구로 설정하여 산정

【표 2-1-2-7】 공동주택 조성사업

구 분	계획 세대수 (세대)	외부 유입률 (%)	세대당 인구 (인/세대)	총인구 (인)	외부유입 인구 (인)	비 고
청호아이파크(청호동1356)Ⓐ	687	35	2.3	1,581	554	
시티프라디움(교동1030)Ⓐ	274	35	2.3	631	221	
KCC스위첸(조양동1572)Ⓐ	847	35	2.3	1,948	682	
효성해링턴플레이스(조양동1582)Ⓐ	651	35	2.3	1,498	525	
미소지움(교동739-3)Ⓐ	368	35	2.3	847	297	
휴먼빌(조양동산255)Ⓐ	379	35	2.3	872	306	
지에스자이(조양동663-1)Ⓐ	874	35	2.3	2,011	704	
테르바움(노학동972-107)Ⓐ	199	35	2.3	458	161	
설악사임당(장사동산85)Ⓐ	465	35	2.3	1,070	375	
양우내안애오션스카이(조양동1441-2)Ⓐ	320	35	2.3	736	258	
렉시움(교동658-82)Ⓐ	48	35	2.3	111	39	
중원아이엔씨(노학동710-2)Ⓐ	64	35	2.3	148	52	
하임벨라(장사동산278-7)Ⓐ	200	35	2.3	460	161	
설악도시개발(동명동361-1)Ⓐ	454	35	2.3	1,045	366	
아이파크2차(조양동415)Ⓐ	578	35	2.3	1,330	466	
레드와이저(교동779-18)Ⓐ	90	35	2.3	207	73	
무궁화신탁(동명동306-10)Ⓐ	258	35	2.3	594	208	
서희스타힐스더베이(조양동 1459)Ⓑ	242	35	2.3	557	195	
코아루아리스타(조양동1411-146)Ⓑ	472	35	2.3	1,086	380	
서희2차(조양동1390-2)Ⓑ	186	35	2.3	428	150	
현대힐스테이트(중앙동468-19)Ⓑ	394	35	2.3	907	318	
대동주택(동명동 464)Ⓐ	169	35	2.3	389	137	
롯데케슬시티글로벌(동명동 436-1)Ⓐ	568	35	2.3	1,307	458	
천마이엔씨건설(장사동 649-12)Ⓐ	229	35	2.3	527	185	
합 계	**9,016**	**-**	**-**	**20,748**	**7,271**	

주) Ⓐ 주택과 Ⓑ 건축과

03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비 공원시설 내 주택수요 반영

· 외부유입률은 35%로 설정하고, 가구당 인구는 2.3인/가구로 설정하여 산정

【표 2-1-2-8】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 분	계획세대수 (세대)	외부유입률 (%)	세대당 인구 (인/세대)	총인구 (인)	외부유입 인구(인)	비 고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1,032	35	2.3	2,374	831	

주) 계획세대수는 민간공원조성 사업자의 사업제안서 반영

04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 동서고속철도 속초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개발에 대한 수요 반영

· 당초 도시기본계획 반영(예측)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로 보완

【표 2-1-2-9】 속초역세권 개발

구 분	역세권 면적(㎡)	주택용지 면적(㎡)	인구수 (인)	외부유입률 (%)	외부유입 인구(인)	비 고
속초역세권 개발계획	776,090	116,334	9,651	35	3,378	

출처 : 「속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 06. 속초시

5.3 기타 적용 인구

01 외국인 인구

· 외국인 인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별도의 유입인구 산정

· 대부분 일자리, 결혼으로 거주하여 외국인 인구의 자연증가인구를 산정 어려움

· MAPE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3개 모형을 선정(등차급수, 최소자승법, 지수함수법)하여 평균치를 반영

· 2040년까지 속초시 거주 외국인은 1,491인으로 예측

【표 2-1-2-10】 외국인 인구 증가 추이

구 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 고
등차급수법	940	1,019	1,151	1,283	1,415	1,547	
최소자승법	940	953	1,056	1,159	1,262	1,365	
지수함수법	940	953	1,078	1,219	1,379	1,560	
평 균	940	975	1,095	1,220	1,352	1,491	

주) MAPE분석 결과 : 등차급수 2.55%, 등비급수 8.21%, 최소자승법 7.10%, 지수모형 6.85%

6. 주간활동인구 검토

6.1 주간활동 인구산정 개요

- 목표연도의 주간활동인구는 기준연도 주간활동인구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주간활동인구지수를 산정하여 목표연도 계획인구에 적용하여 추정하며, 주간활동인구는 주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자, 관광객 등 자료를 통하여 산정함
- 산정된 목표연도 주간활동인구는 목표연도의 계획인구 지표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수요량 산출, 단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중 비주거용도) 등 각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계획인구, 주간활동인구와 연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
- 과도한 주간활동인구 추정으로 과다하게 기반시설이 계획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 근거 자료 제시
- 통근·통학자, 관광객 외 지역적 특성에 따른 주간활동인구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 가능

6.2 통근·통학에 의한 주간활동 인구산정

-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에서 주간인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주간인구를 산정하였으며 통근·통학에 의한 주간인구지표는 "인구 총조사(통계청)"의 통근·통학자료를 활용

【표 2-1-2-11】 2015년 통근·통학에 의한 속초시 유입·유출 인구

상주인구 (인)	유입인구(인)			유출인구(인)		
	계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77,685	3,346	2,797	549	6,984	6,053	931

출처 : 통계청, 인구 총조사, 2015
주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외국인 및 특별조사구 제외, 집계가구 내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주2) 행정구역이 시·도인 경우의 유입·유출 인구는 해당 시·도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하는 인구이며, 행정구역이 시·군·구인 경우의 유입·유출 인구는 시·군·구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시·도의 유입·유출 인구는 시·군·구의 유입·유출 인구의 합이 아님

- 통근·통학자 주간활동인구 = 상주인구 + 통근·통학 유입인구 - 통근·통학 유출인구

  = 77,685인 + 3,346인 – 6,984인 = 74,047인

- 통근·통학자 주간활동인구지수 = 통근·통학자 주간활동인구 ÷ 상주인구 × 100

  = 74,047인 ÷ 77,685인 × 100 = 95.3%

6.3 관광객에 의한 주간활동 인구산정

· 속초시의 관광객 현황은 속초시 관광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관광객 지표에 따라 일간 관광객 인구를 산정하였으며 최근 급격한 증가세인 속초시 관광인구의 반영을 위해 2019년 관광객 현황지표 활용

【표 2-1-2-12】 2019년 속초시 관광객 현황

구분	상주인구 (인)	연간 관광객 인구			일간 관광객 인구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2019년	77,541	17,784,794	17,392,025	392,769	48,725	47,649	1,076

출처 : 속초시 관광과 내부자료
주) 일간관광객 = 연간 관광객 / 365(일), 상주인구 = 주민등록인구 × 93.4%(2015 지표)

· 관광객 주간활동인구 = 상주인구 + 일간 관광객 인구

= 77,541인 + 48,725인 = 126,266인

· 관광객 주간활동인구지수 = 관광객 주간활동인구 ÷ 상주인구 × 100

= 126,266인 ÷ 77,541인 × 100 = 162.8%

6.4 목표연도 주간활동 인구 산정

· 2040 속초기본계획의 주간활동인구지수는 통근·통학에 의한 주간활동인구지수와 관광객에 의한 주간활동 인구지수를 합산한 결과 58.1%로 산정되었으며, 목표연도별 계획인구지표에 적용한 주간활동인구를 통해 부문별 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수요량 산출(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중 비주거용도) 및 기반시설 계획 등과 연계 적용

· 주간활동 인구지수 (100% 기준)

= (95.3%(통근·통학자 주간활동 인구지수)-100%) +

(162.8%(관광객 주간활동 인구지수-100%) = 58.1%

【표 2-1-2-13】 주간활동인구 산정

목표연도	2025년(1단계)	2030년(2단계)	2035년(3단계)	2040년(4단계)
계획인구(인)	85,268	87,957	89,860	90,930
주간활동인구(인)	49,541	51,103	52,208	52,830
합계	134,809	139,060	142,068	143,760

7. 도시환경지표

구 분		단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인 구	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연평균증가율	%	-	0.35	0.46	0.45	0.40
주택	가구당 인구	인/가구	2.4	2.3	2.3	2.3	2.3
	총가구수	가구	33,441	37,073	38,242	39,070	39,535
	주택보급률	%	110.7%	112.0%	115.0%	115.0%	115.0%
	주택공급수	호	37,023	34,033	35,106	35,866	36,293
교통	자동차대수	대	34,917	35,000	36,104	36,885	37,324
	자동차보유	대/인	0.4	0.4	0.4	0.4	0.4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	99.7	100.0	100.0	100.0	100.0
	일최대수요량	㎥/일	39,242	65,517	65,775	652,09	65,986
	하수도보급률	%	99.4	100.0	100.0	100.0	100.0
	일최대하수량	㎥/일	31,485	57,091	60,269	63,135	63,887
의료	병상수	개소	746	853	880	899	910
	의사수	인	107	133	137	140	141
	천인당 병상수	병상/천인	9.0	10.0	10.0	10.0	10.0
	천인당 의사수	인/천인	1.3	1.6	1.6	1.6	1.6
	종합병원	개소	2	2	2	2	2
교육	초등학교	개교	12	12	11	11	11
		인/학급	20.6	21.0	21.0	21.0	21.0
	중학교	개교	4	4	4	3	3
		인/학급	25.4	23.0	23.0	22.9	23.1
	고등학교	개교	3	3	3	3	3
		인/학급	30.8	35.0	22.9	23.0	23.0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	개소	2	2	2	2	2
	장애인 복지시설	개소	3	3	4	4	4
	여성복지시설	개소	1	1	1	1	1
	노인복지시설	개소	100	103	106	108	110
문화체육	도서관	개소	2	3	3	3	3
	생활체육시설	개소	59	59	59	60	61
	공연장	개소	1	2	2	2	2
	청소년 수련시설	개소	3	3	3	3	3

주) 상수도, 하수도 수요추정은 주간활동인구 13만명을 기준으로 산정

II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2.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제2장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변경없음)

1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1. 도시공간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1.1 단일화된 공간구조로 인한 도시중심성 편중

-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인해 동측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행정기능 및 도시인프라가 청초호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국도 7호선 주변으로 관광, 상업, 업무 중심지의 기능이 편중되어 전체적인 도시공간에서 기능적 측면의 활성화 부족
- 동측으로는 동해안, 서측으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지정으로 도시개발 가용지가 협소하여 도시 성장에 제약
- 단위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이 속초시 북동측으로 편향되어 도시의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지적됨

1.2 지역중심간 상호 연계체계 미흡

- 도심 기능 외 지역중심의 기능, 규모 등이 소규모 분산으로 계획되어, 난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부족
- 도시외곽으로 풍부한 자연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시가지 내 공원·녹지와 연결성 부족
- 설악산국립공원, 척산온천지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등 관광개발로 인한 녹지 훼손 및 난개발의 우려

1.3 주요 교통축의 혼잡

- 차량위주의 도로건설로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휴게공간 및 여유공간 부족
- 도로와 관련된 육상교통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휴가철 및 관광철 등 특정기간에 교통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로망 체계상 용량 한계
- 국도 7호선 노선 도심 통과로 심각한 차량정체 및 교통혼잡 유발

2. 기정 2020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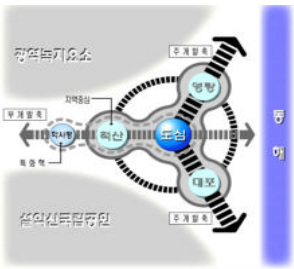
2.1 공간구조설정

01 기본방향 및 전략

- 국도 7호선변을 따라 선형·집중 분포되어 있는 상업기능을 일부 부도심지로 분산 배치하여 균형발전 도모
- 속초~인제를 연결하는 지방도 56호선변은 계획적 개발방향으로 육성
- 속초시 동측의 동해안 해안축과 남·북측의 녹지네트워크를 형성
- 중앙시장의 기반시설 확충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특성화 유도로 시가지 정비
- 기존의 정주단위를 도시경제적 측면에서 육성하고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취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

02 실천전략

- 국도 7호선의 도심통과로 인한 심각한 차량정체 및 교통혼잡 유발 해소
- 기존 국도 7호선 주변으로 관광시설 및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편중 재분배
- 관광산업 외 자립적 경쟁 산업인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유치
-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



▲ 1도심 3지역중심 1특화핵

2.2 공간구조 구상 : 1도심 3지역중심 1특화핵

01 중심지 체계

- 노학 도심을 중심으로 상업·업무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방사형 1차 개발축 계획
- 설악CC를 중심으로 교외형 전원주택과 골프 등의 여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
- 해안 집중 선형의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를 조성
- 도심의 공공시설 재배치, 영랑, 대포, 척산지역은 지역중심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신설

02 개발축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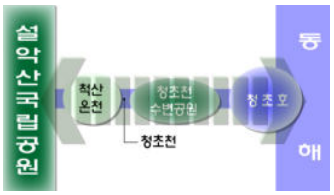
· 관광시설 확충과 기존시설의 정비를 중심으로 남북 주개발축과 도심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동서 부개발축으로 구상

·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축, 특화핵 및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도시관광 네트워크축, 외곽의 광역녹지축으로 구상

03 보전축 구상

· 징검다리식 생태통로 조성 : 설악산을 주핵으로 거점적요소인 근린공원, 영랑호, 청초호, 점적요소인 어린이공원 및 주거지역 내 소규모 쌈지공원, 선(線)적요소인 청초천, 쌍천 등의 하천, 동해안의 해변 등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조성

· 설악산~청초호~해안, 설악산~영랑호~해안을 연결하는 녹지띠(녹지 네크워크) 형성



▲ 속초시 중심녹지축 구상

【그림 2-2-1-1】 당초 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2.3 현재 도시공간구조

01 중심기능 미약

· 상호 연계체계 미흡, 외부도시에 의존적인 도시공간구조

02 불합리한 교통서비스 체계

· 불합리한 방사형 가로형태로 도심지 내 교통 혼잡

03 도시개발 수요 증가

· 광역적인 교통망 체계 구축에 따른 개발 수요 수용 필요

3.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3.1 생활권별 특성화

· 노학의 인구집중의 가속화로 지역특화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통한 물리적·기능적 특성 부여

· 노학 일원의 중심지는 개발을 유도하고 영랑호 주변은 개발밀도 관리를 통한 특성화, 남측 대포일원은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 청학 일원은 속초시 고유의 중심기능을 보완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3.2 보전축 ECO-RING 지정

· 자연환경에 대한 광역적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및 보전축 설정

· 그린네트워크와 도시개발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구조 구상

· 설악산국립공원의 녹지축과 동해의 수변축을 연계한 Eco-Ring 설정

3.3 타도시와의 접근성 강화

·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도시내 교통망 체계 확립

·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설정

3.4 지역중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속초역 신설에 따른 노학·청학 일원은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개발과 보전으로 분리된 공간구조로 계획하되 공생의 정주체계 마련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대포동 일원을 양양군과의 연계 거점화

· 속초항 크루즈 활성화, 동해선 철도(예정)에 따른 청호 일원 도시관광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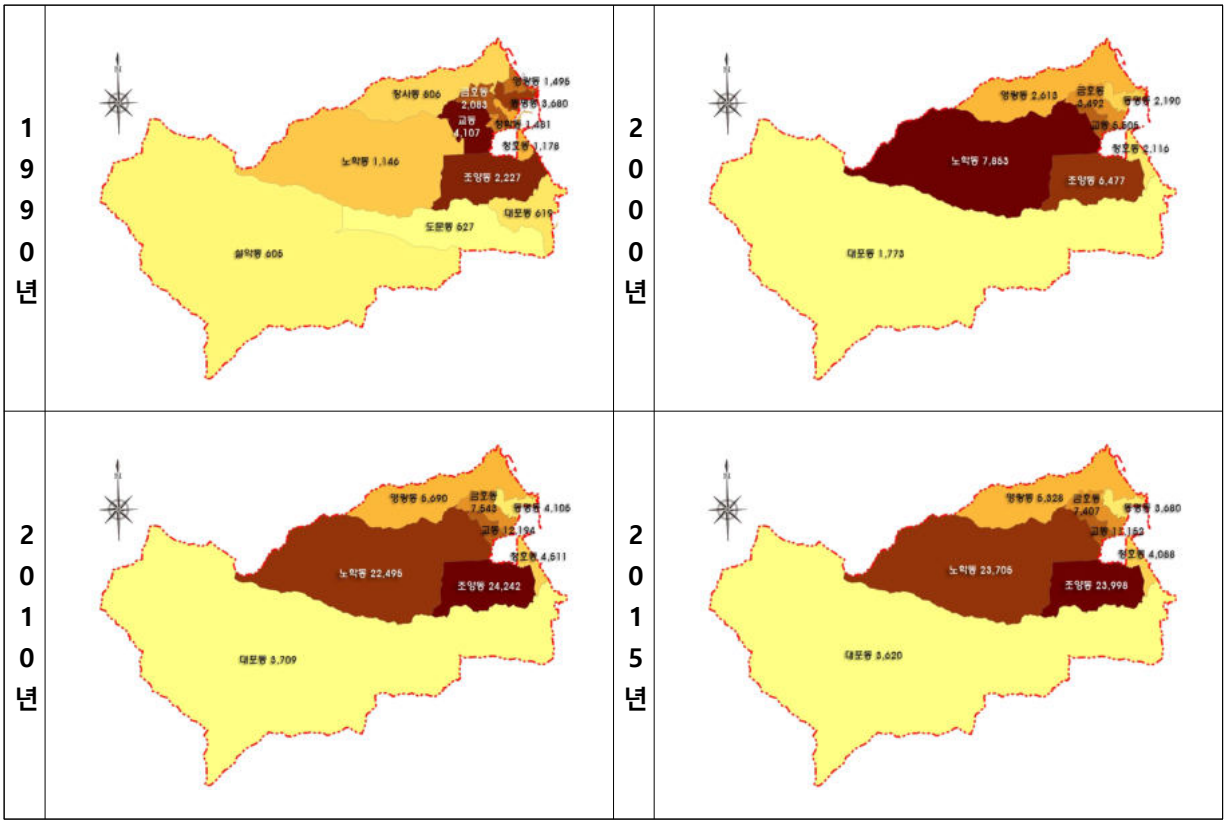
4.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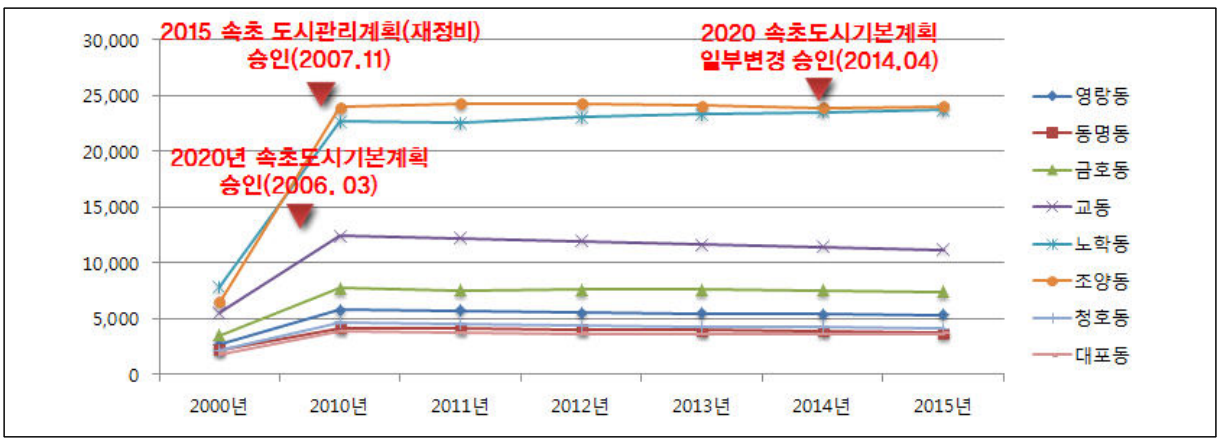
4.1 도시중심성 분석

01 인구 집중에 의한 분석

· 관내 동별 인구 변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 증가의 변화는 노학동 및 조양동 일원의 증가가 뚜렷하며, 그 외 지역은 지속적으로 비슷한 인구 밀도를 보임

【그림 2-2-1-2】 동별 인구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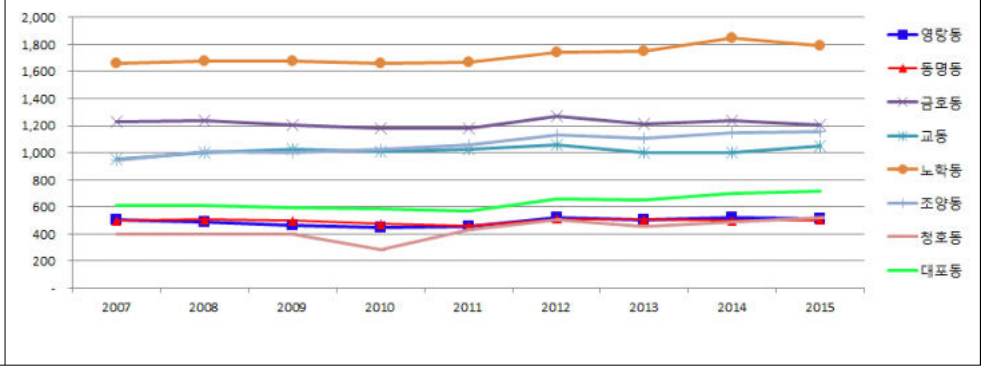


02 사업체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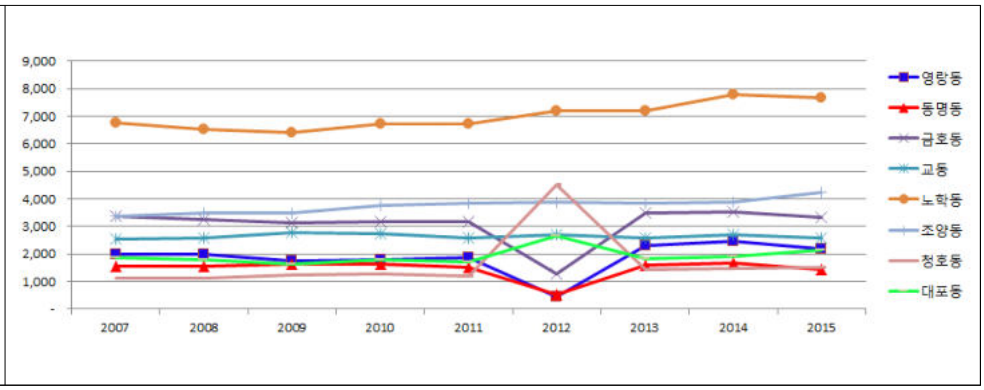
· 3차산업 사업체수는 노학동, 금호동, 조양동 순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3차산업 종사자수는 노학동, 조양동, 금호동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2년 청호동, 대포동의 종사자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사업체수 (3차)



종사자수 (3차)



03 도시 중심성 분석 결과

· 도시 중심성 분석 결과, 인구 밀집도는 영랑·노학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속초시 중심부 인구가 그 주변 행정동 기준보다 약 150%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도시경제 중심성을 분석한 지표인 3차산업(서비스업)의 인구도 노학동 일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과거 속초의 행정·경제의 중심기능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2 역사신설을 고려한 생활권 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방안

01 영랑동, 노학동 교동, 금호동, 동명동 : 중심업무, 관광지원, 물류

▌속초 발전의 거점지역

- 동해북부선(강릉~제진)과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의 역사신설과 연계한 속초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 속초역세권(노학)의 복합기능(주거,상업,업무,공업)과 원도심(청학) 상업기능의 연계로 업무, 상업, 행정 중심의 도심(청학,노학)기능 강화
- 역세권 중심의 압축도시개발을 위한 고밀주거 및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배후주거 기능 활성화 도모

▌시가지 관광지구 활성화

- 동서고속화철도역사와 청초호, 영랑호, 척산온천 등 시가지 휴양관광지를 연계하는 대중교통확충 및 환승체계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 유도

▌국제적 교류 및 북방물류거점

-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광역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연계지역에 북방물류거점 조성
- 속초항~양양공항~동서고속철도 등 육해공의 입체적 광역교통망을 활용하여 MICE등 국제적교류산업 육성

02 조양동, 대포동, 청호동 : 관광, 산업

▌생활권간 균형발전 도모

- 북생활권과 남생활권간 균형적 발전도모를 위해 지역간선도로 확충(장사~노학~대포, 농공단지~도문동)
-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생활권간 기능분담 및 연계로 균형적발전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 도모

4.3 도시공간구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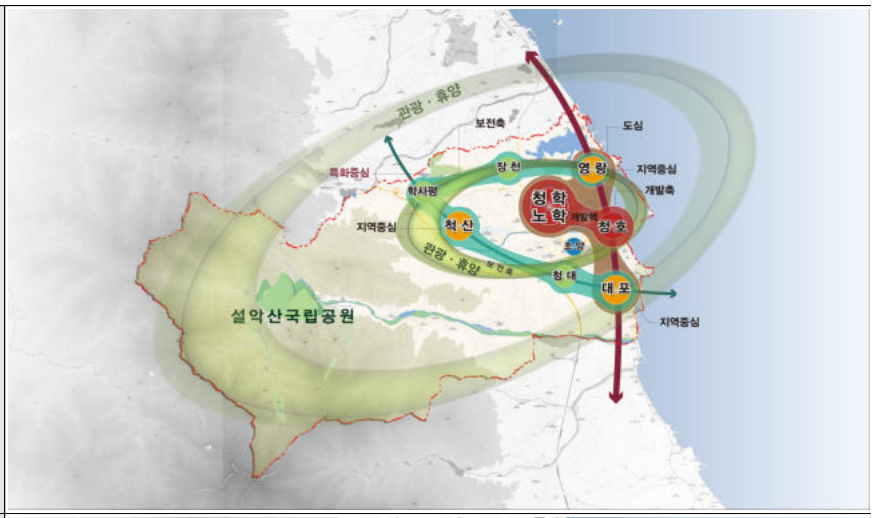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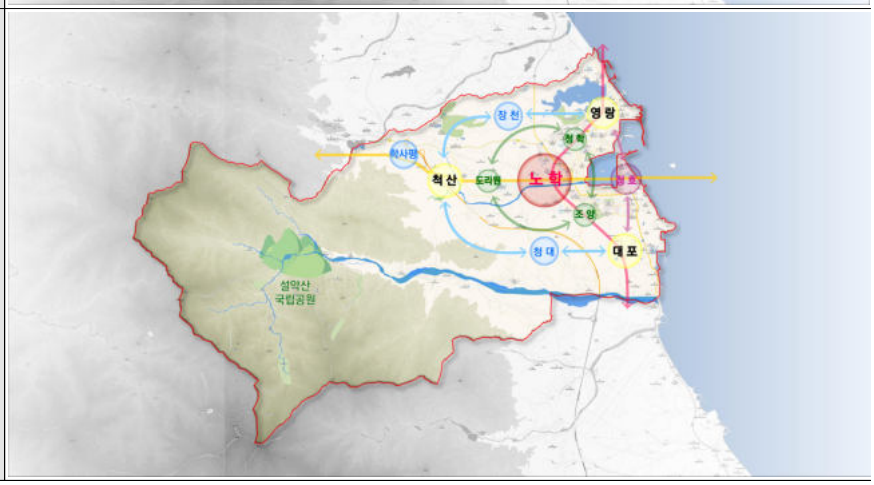
01 대안 1

- 1도심 4지역 중심으로 도심기능 강화전략 수립
- 속초 및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도시발전 추세 및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 의존이 아닌 지역발전 선도 거점공간(노학-청학) 육성
- 광역교통의 중심지역 (속초역, 속초항 크루즈, 국도 7호선)에 대한 지역중심으로 육성

02 대안 2

- 1도심 3지역 중심으로 기정 계획의 균형발전 방향 유지
- 도시기본계획(기정)의 공간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공간구조상 혼란 방지

03 도시공간구상

대안 1 **1도심** **4지역 중심**	
대안 2 **1도심** **3지역 중심**	

04 대안의 평가 및 선정

· 중심지체계,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의 항목 검토

· 도시기본계획(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획 방향 설정

【표 2-2-1-1】 대안의 평가 및 선정

구 분		대안1	대안2
공간구조		· 1도심 : 청학·노학 · 4지역 중심 : 영랑, 척산, 대포, 청호 · 1특화핵 : 학사평	· 1도심 : 노학 · 3지역 중심 : 영랑, 척산, 청학 · 1특화핵 : 학사평
기본개념		· 집중형 공간구조 - 구시가지의 도시기능 재활성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 성장 가능성 대비	·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 - 각 주역중심간 이격거리를 고려 중심기능 수행
개발축		· 기존 노학·청학중심에서 주개발축에 포함된 청호지구를 포함하여 남부지역 개발거점화 · 개발축 구상 - 주개발축(남북축) : 국도7호선변과 기존 도심 연결 - 부개발축(동서축) : 학사평, 척산, 도리원 조양, 청호 연결	· 기존 노학중심에 역세권 개발 포함시 도심으로의 기능 확대 · 개발축 구상 - 주개발축(남북축) : 국도7호선변 ↔ 가성시가지 연결 - 부개발축(동서축) : 학사평 ↔ 척산 ↔ 도리원 ↔ 노학 ↔ 청호 연결
보전축		· 보전축구상 : Eco Ring 지정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 자연보전축 : 설악산 ↔ 주봉산 ↔ 청대산 ↔ 동해 ↔ 성천리 ↔ 설악산 - 관광휴양축 : 청대 ↔ 척산 ↔ 학사평 ↔ 장천 ↔ 영랑호	· 보전축구상 - 설악산을 주핵으로 영랑호, 청초호, 청초천, 쌍천 등 연결 - 해안 ↔ 영랑호 ↔ 설악산 ↔ 청초호 ↔ 해안
합리성·경제성·타당성	장점	· 기존에 도심기능의 강화, 도시의 재성장을 통한 상징성 부각 · 광역적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동서고속철도,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성장거점 마련 ·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공간 설정으로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적음	· 도심기능의 이원화 및 거점지역 중심의 공간구상을 통해 북동서 간 균형발전 도모 · 주거, 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심 도시를 육성하여 속초시 발전 도모 · 행정기능의 분산 배치로 시가지 통행량 감소 등 경제적 효과 기대
	단점	· 도시기능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초래 가능성 내포 · 다핵공간구조로 인한 도시중심성 부족	· 구도심지에 대한 재생동력 부족 · 신규시가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환경성	장점	· 설악산과 해안을 어우르는 도시외곽 녹지에 대한 녹지축 보전에 유리 · 녹지축의 기능을 구분(보전, 휴양)하여 다양한 활용	· 설악산을 기준으로 지형조건을 순응하며 자연스러운 녹지축 설정
	단점	· 산악, 해안이 대부분 녹지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시 상충우려	· 남북, 동서 개발축과 보전축이 중복되는 지역이 다수발생
선정		●	
채택근거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속초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재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집중된 개발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로의 발전에 특화된 **"대안1"** 선정	

5. 생활권 설정

5.1 생활권 설정의 기본방향

01 생활권의 개념

· 생활권은 기존 생활형태의 유사성 및 인구분포, 경제·산업, 관광자원, 교통특성, 시장권, 행정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

· 생활권의 설정은 속초시의 발전과정,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 특성, 주거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 지역 특성별 위계로 따른 생활권을 설정

· 생활권 설정시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음

- 인구 등 각종 자료의 용이한 취득을 위하여 행정경계로 하는 인문적 요소
- 시장이용권, 통학권 등 일상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는 인문적 요소
- 지형, 지세, 하천, 도로, 철도 등을 고려하는 자연적 요소
- 장래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는 의도적 요소

【표 2-2-1-2】 규모별 생활권역 설정 기준

구분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설정요소	· 1~2개의 행정리 · 3~4개 초등학교 학군 · 소매시장 · 사회적 친근감	· 3~4개의 소생활권 · 중고등학교 학군 · 지구중심 상가 · 계획적 개발단위	· 3~4개의 중생활권 · 지역중심 상가 · 간선도로 등 광역시설
인구규모	· 2~3만명	· 10~15만명	· 30~50만명
중심기능	· 주거기능 · 일상 서비스 · 문화활동 · 근린업무(시장, 은행)	· 주거생활 중심 · 문화상업위락시설	· 업무, 관리, 행정, 상업, 의료·보건, 문화 등의 중심 · 자족적 도시기능 발휘

5.2 생활권 설정

· 속초 행정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

· 공간구조 위계 및 장래 인구지표, 공간구조구상을 바탕으로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5개의 생활권을 2개의 생활권으로 조정

【표 2-2-1-3】 생활권 설정

2020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2040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구 분	행정동(읍・면)
북생활권	금호동, 동명동, 영랑동, 노학동, 교동
남생활권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5.3 인구유출 방지 방안

01 양질의 일자리 공급

- 속초 산업구조는 3차산업 종사자가 85.8%로 주요 산업이며 이중 숙박, 도소매업 종사자가 47.6%로 일자리 공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 도소매업의 경우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규모 경제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
  - 고용창출력이 큰 고기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고급인력의 활용도를 제고
  - 일자리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속초시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 확보 및 고용안정성 제고
- 공공고용서비스의 확대로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완화, 실직자의 재고용 가능성 제고 등 실업·이직 등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

02 교육환경의 개선

- 교육환경(학급당 학생수, OECD국가 기준)의 수치상 기준은 양호하나, 질적인 측면 부족한 사항으로 질적인 개선과 특화된 교육환경을 제공(유치)

03 교통인프라 개선

- 고속도로 개통과 고속철도 계획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구 유출 가능성도 있으나, 고속도로 개통 이후 산업단지 등의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시발전에 기여
- 경제 침체, 인구증가 둔화 추세임에도 사업체 및 종사자수가 증가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접근성 개선, 내부 도로망의 정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수립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역유출 현상 방지

04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에 대한 뉴딜정책, 도시재생 등 국가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삶의 질 차원의 균형적인 생활 SOC 배치 등 도시인프라 확충
- 사회·문화·복지시설이 주거지 입지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강원도 평균 이상의 사회·문화·복지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 필요

5.4 권역별 개발방향

01 기본방향

▮ 권역의 구분

· 지역개발 특성을 분석하여 권역 특화계획 수립

·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5개 중생활권, 21개 소생활권으로 구분되었으나, 속초시 행정구역상 적정 생활권으로 축소 조정하여 2개 생활권으로 관리

· 생활권 구분으로 지역 특성상 도시특성, 관광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드나, 지역의 개발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

구 분	기본방향
북생활권	· 지속적인 중심업무 기능 유지 및 북방물류 거점으로 성장
남생활권	· 설악산과 연계한 휴양형 관광 및 4차산업 등 신산업지대 유도

▮ 기본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 권역별로 개발지와 보전지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권역 구분을 통해 확연한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인접지역을 점이지대로 계획하여 형평성 있게 관리

· 자전거도로, 트레킹, 경관도로, 가로수길 등 선형 공간은 권역구분 없이 각 지역별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

02 북생활권 : 중심업무, 관광지원, 물류

▮ 속초 발전의 거점지역

· 업무·상업·행정 등의 도시형 개발권역으로 구상

· 고밀주거 및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지 개발 활성화 도모

▮ 시가지 관광지구

· 청초호, 영랑호, 척산온천 등 기존 휴양관광지를 활용하여 체험관광권역으로 구상

· 설악 로데오거리, 관광시장, 순두부촌 등 문화 체험형 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제적 교류 및 북방물류거점

· 통일 이후를 대비한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북방물류의 거점으로 대비

· 마리나항만–양양공항–동서고속철도를 활용한 국내·외를 연결하는 주요거점으로 도약 기반마련

03 남생활권 : 관광, 산업

▌ 체험 관광지구(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지)

· 설악산국립공원, 속초해변, 마리나 크루즈 등 기존 관광지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지 개발

· 대포항, 속초해변, 외옹치해변, 설악지구 관광단지 등 기존 관광지 활성화

▌ 휴양 관광지구

· 설악산과 연계한 휴양관광권역을 수립하고, 동해와 설악산을 연결하는 관광지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신 교통체계 도입 검토

· 대포항 개발 및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해양수산사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

· 엑스포 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5.5 생활권별 불균형 해소방안 검토

▌ 생활권별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편된 생활권으로 주기적인 현황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활권별 개발밀도, 인구분포, 개발현황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마련

· 생활권간 불균형 발생시 인구유발시설 재배치,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집행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 주택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건축허가유도 등 생활권별 인구분산 배치 방안 강구

▌ 행정지원

· 불균형 해소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사업별 T/F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당해 생활권 내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하는 방안 마련 검토

▌ 도시 인프라 및 주민 복지 혜택

· 생활권 내 도시서비스 우선 확보가 필요한 의료시설, 주민 커뮤니티센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센터 및 문화시설 등의 도입 우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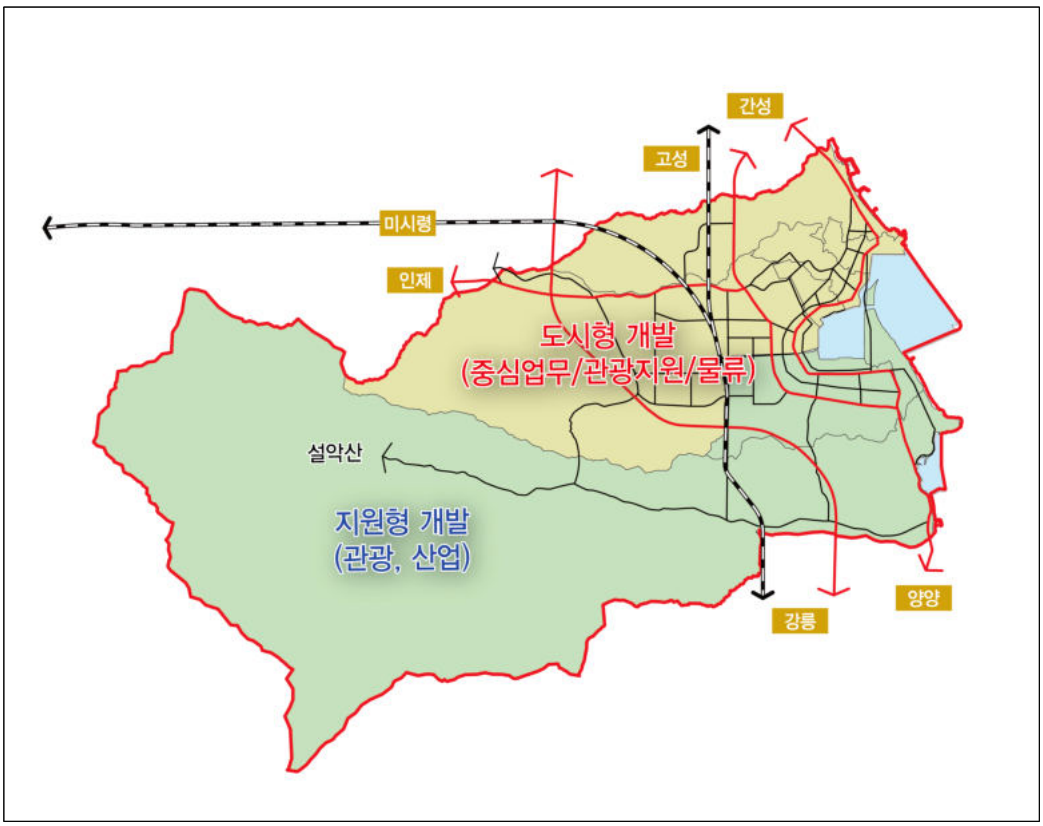
▌ 기타

· 주민 복지시설 사용료 부담 경감

· 주민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 인구대비 재정확보 체계에서 생활권별 재정확보 체계로 전환 검토

【그림 2-2-1-3】 생활권별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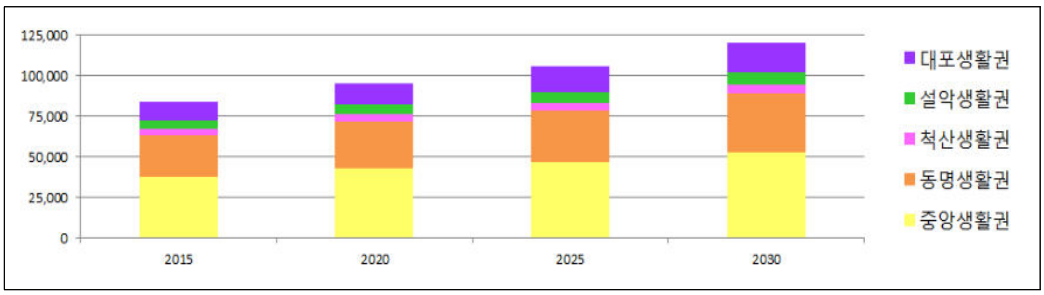


2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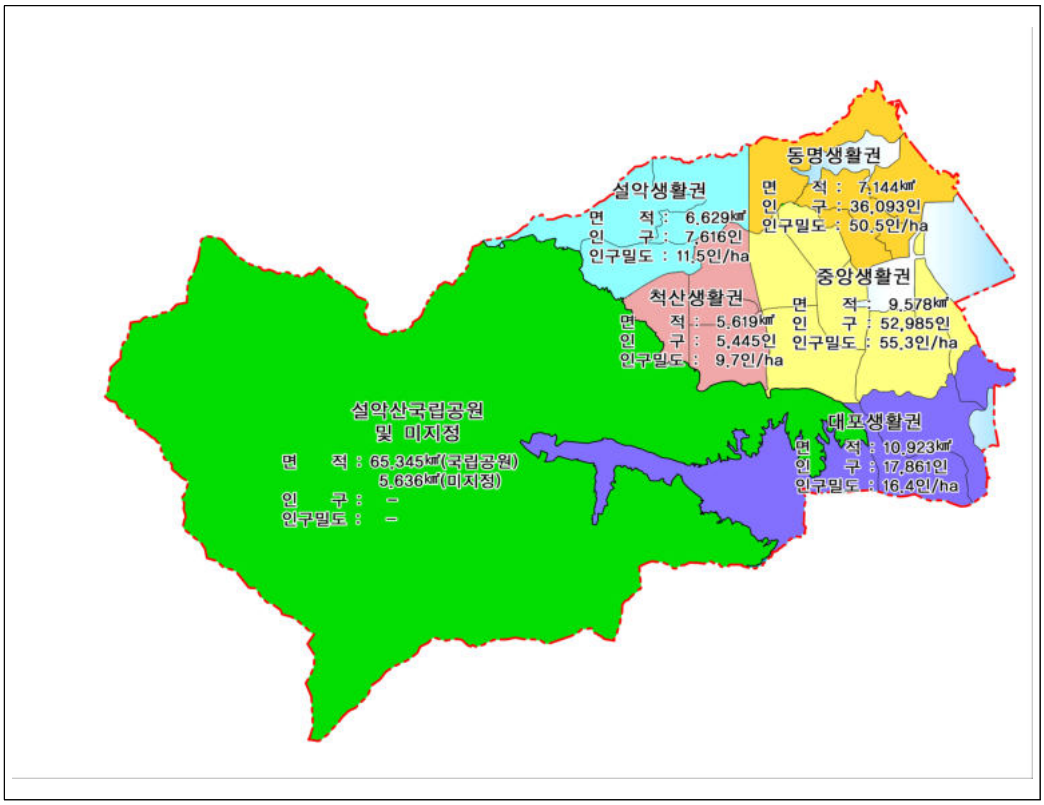
1. 기정 2020 도시기본계획

1.1 생활권 · 단계별 인구배분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계	**84,098**	**95,355**	**106,000**	**120,000**	
중앙생활권	37,593	42,623	46,722	52,985	
동명생활권	25,650	29,083	31,880	36,093	
척산생활권	3,869	4,387	4,808	5,445	
설악생활권	5,382	6,102	6,690	7,616	
대포생활권	11,604	13,160	15,900	17,861	



【그림 2-2-2-1】 기정 2020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1.2 생활권별 여유인구 검토

· 2017년 현황 인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 여유인구 검토

· 여유인구에 대한 사항 검토시 공간구조 개편 및 생활권별 인구 조정 필요

【표 2-2-2-1】 생활권별 인구 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인)	인구밀도(인/ha)	비 고
속초시		105.70	83,213	7.87	
북 생활권	소 계	32.95	50,055	15.21	
	노학동	20.35	22,824	11.24	
	교동	2.75	10,645	38.71	
	금호동	1.43	7,092	49.59	
	동명동	0.79	4,357	55.15	
	영랑동	7.63	5,137	6.73	
남 생활권	소 계	72.75	33,158	4.55	
	조양동	6.02	25,790	42.84	
	대포동	66.15	3,843	0.58	
	청호동	0.58	3,525	6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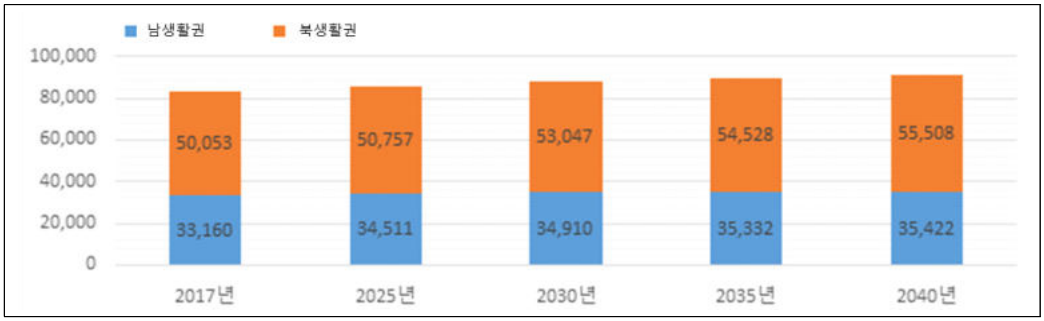
【표 2-2-2-2】 기정 2020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여유인구 검토

구 분	2017년 (A)	2020년 (B)	현재 여유인구 (C=B-A)	소요인구(D)					생활권별 여유인구 (E=C-D)
				소계	고용 유발	역세권	주택	기타	
계	83,213	120,000	36,787	68,806	41,282	7,841	17,059	2,624	-32,019
중앙 생활권	37,197	52,985	15,788	39,118	19,083	7,841	11,301	893	-23,330
동명 생활권	25,380	36,093	10,713	9,764	5,125	-	3,430	1,209	949
척산 생활권	3,828	5,445	1,617	10,680	10,250	-	337	93	-9,063
설악 생활권	5,326	7,616	2,290	3,287	2,563	-	596	128	-997
대포 생활권	11,482	17,861	6,379	5,957	4,261	-	1,395	301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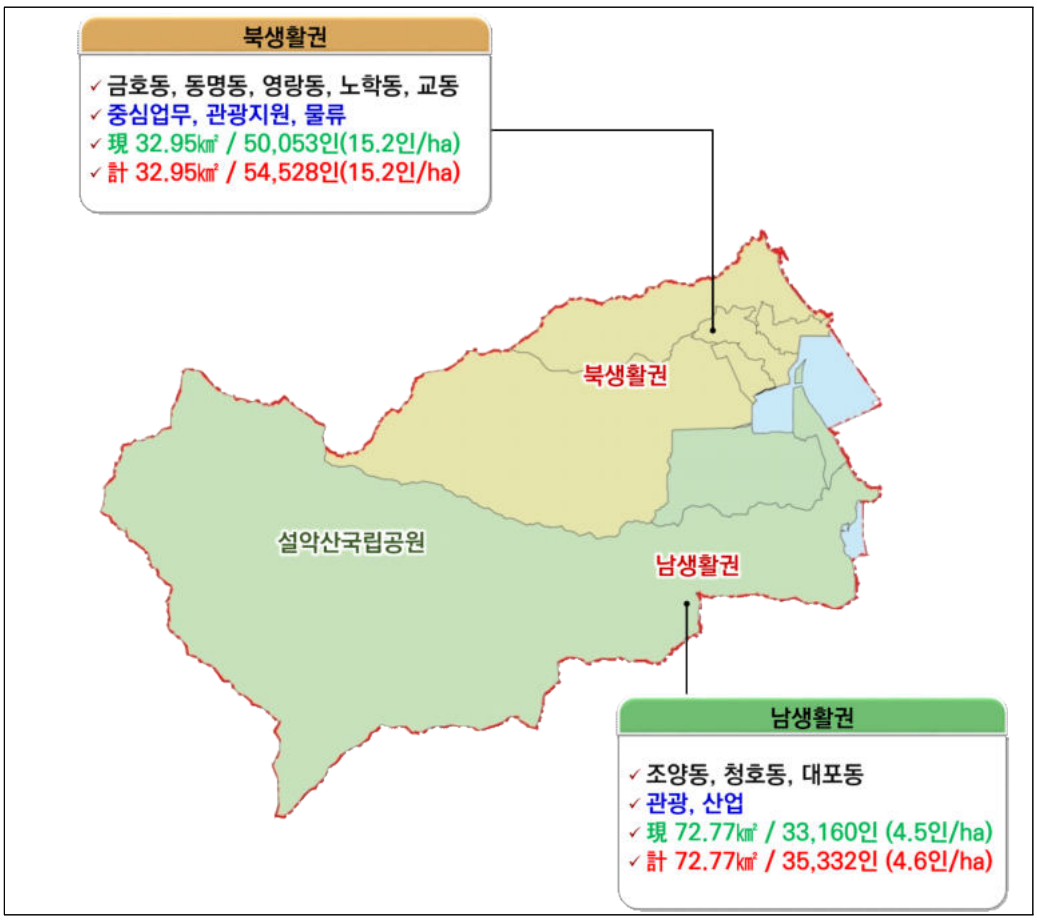
2. 2040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 계획

2.1 생활권·단계별 인구배분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합 계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북 생활권	50,053	50,757	53,047	54,528	55,508
남 생활권	33,160	34,511	34,910	35,332	35,422



【그림 2-2-2-2】 2040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2.2 생활권별 여유인구 검토

· 기준연도 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를 감안하여 여유인구를 검토한 결과, 약 6천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나

· 전출인구 약 8천명을 고려하였을 경우 약 1.7천명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

【표 2-2-2-3】 2040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여유인구 검토

구 분	2017 (A)	2040 (B)	현재 여유인구 (C=B-A)	소요인구(D)					생활권별 여유인구 (E=C-D)
				소계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전략사업	기타	
계	83,213	90,930	7,717	14,127	4,209	7,271	1,156	1,491	-6,410
북생활권	50,147	55,508	5,361	9,311	4,209	3,051	1,156	895	-3,950
남생활권	33,066	35,422	2,356	4,816	-	4,220	-	596	-2,460

주) 주택건설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개별건축을 포함 (외국인 포함)

2.3 생활권·단계별 인구배분 계획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합 계**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자연증가분	83,213	74,915	75,790	76,716	76,803
	사회증가분	-	10,353	12,167	13,144	14,127
북 생활권	**소 계**	**50,053**	**50,757**	**53,047**	**54,528**	**55,508**
	자연증가분	50,053	45,062	45,588	46,145	46,197
	사회증가분	-	5,695	7,459	8,383	9,311
남 생활권	**소 계**	**33,160**	**34,511**	**34,910**	**35,332**	**35,422**
	자연증가분	33,160	29,853	30,202	30,571	30,606
	사회증가분	-	4,658	4,708	4,761	4,816

주) 전출인구 8,097인 반영, 외국은 인구(1,491인)는 편의상 사회적증가분에 포함하여 표기

3. 생활권별 기반시설 확충계획

3.1 기반시설 현황

구 분		인구 분포 (2015)	면적 (㎢)	주요도로	주요시설	비 고
북생활권	노학동	23,705	22.32	지방도56호선, 국도7호선	속초시보건소, 속초종합경기장, 속초경찰서	춘천~속초 고속철도, 양양~속초 동해고속도로
	교동	11,152	0.73	지방도56호선	속초교동우체국	
	금호동	7,407	1.43	지방도56호선	속초시청	
	동명동	3,680	0.79	지방도56호선	속초항국제 여객터미널, 속초시외 버스터미널	
	영랑동	5,328	7.62	국도7호선	강원도속초의료원 속초시문화회관	
남생활권	조양동	23,998	5.60	국도7호선	속초엑스포장	양양~속초 동해고속도로
	대포동	3,620	66.08	국도7호선	대포농공단지 대포항	양양~속초 동해고속도로
	청호동	4,088	1.01	국도7호선	속초항국제 크루즈터미널, 속초해양파출소	

3.2 기반시설 확충계획

구 분	구간	총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고	민자	
동해선북부선 철도 건설사업	강릉~제진	23,490	23,490	-	추진사업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춘천~속초	21,438	21,438	-	확정사업

03 부문별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제1장 토지이용계획

제2장 기타기반시설계획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제4장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제5장 경관 및 미관계획

제6장 공원 및 녹지계획

제7장 방재 및 안전계획

제8장 경제 · 산업 개발계획

제9장 사회 · 문화 개발계획

제10장 실행계획

토지이용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현황분석
2. 용도별 수요추정
3. 토지이용계획

제1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1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

1.1 용도지역 지구 현황

· 도시지역 면적은 42.065㎢(38.0%), 비도시지역은 68.718㎢(62.0%)로 지정

· 도시지역 중 주거용지 6.288㎢(5.6%), 상업용지 2.316㎢(2.1%), 공업용지 1.082㎢(1.0%), 녹지지역 27.312㎢(24.7%)로 지정

【표 3-1-1-1】 용도지역 결정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용도지역 총합계			110.784	100	
도시지역	합계		42.065	38	
	주거지역	소계	6.288	5.6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8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5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4	0.9	
		준주거지역	0.311	0.2	
	상업지역	소 계	2.316	2.1	
		일반상업지역	2.268	2	
		근린상업지역	0.048	0.1	
	공업지역	소 계	1.082	1	
		일반공업지역	0.926	0.9	
		준공업지역	0.156	0.1	
	녹지지역	소 계	27.312	24.7	
		보전녹지지역	3.033	2.7	
		생산녹지지역	1.198	1.1	
		자연녹지지역	23.081	20.9	
	미 지 정		5.067	4.6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475	1.3	
자연환경보전지역			67.243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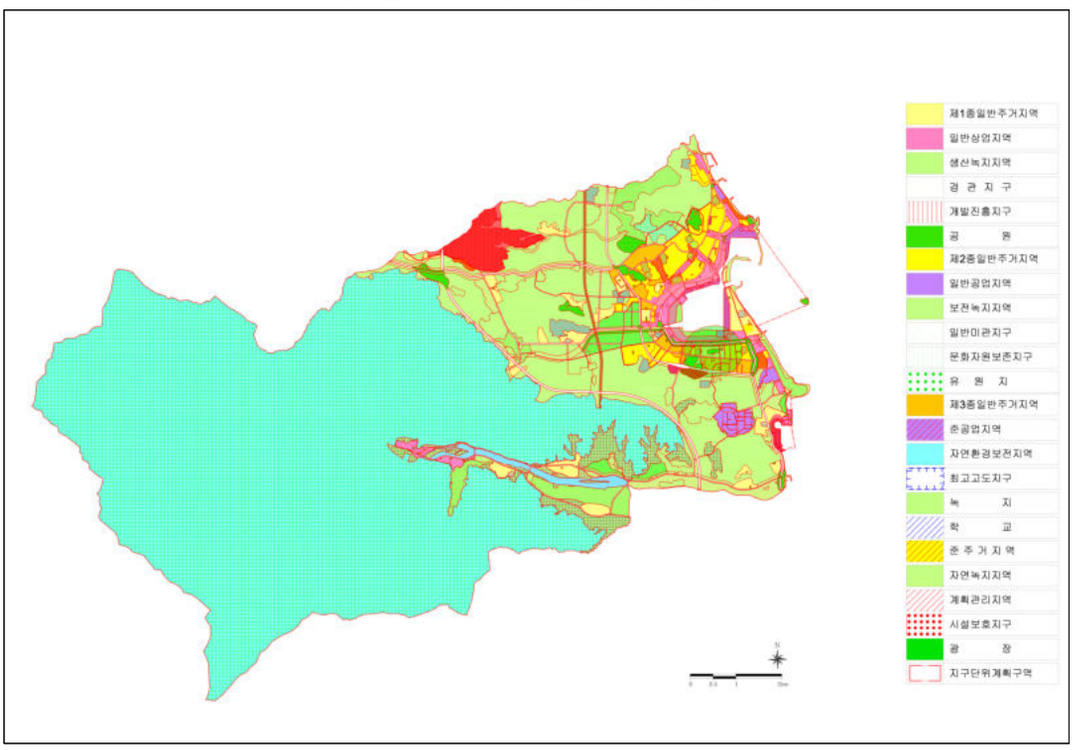
출처 : 속초 도시관리계획 현황 (2021년 06월 기준)

【표 3-1-1-2】 용도지구 결정 현황

구 분	합 계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사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자연	수변	시가지	일반	문화자원	항만			
개소수	50	3	6	3	1	5	1	1	21	9
면적(㎢)	7.60	0.98	1.60	0.87	0.21	1.14	0.33	1.31	0.77	0.39

출처 : 2020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림 3-1-1-1】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1.2 토지이용 현황 및 문제점

01 도시난개발

- 협소한 가로공간, 차량위주의 가로망 형성으로 무질서하고 산발적인 도시공간 형성
- 해변지역(청초호 인근지역) 개발압력 집중으로 도시내 균형발전의 어려움
- 중앙시장 노후화 및 지역 통과교통에 대한 미개선, 차량의 도심통과로 매우 혼잡한 도심의 형태를 보임

02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 개발사업 편중 등 개발압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도시중심기능 쇠퇴
- 면적 대비 낮은 도시용지 비율 및 부족한 도시개발가용지로 인해 자연 및 녹지훼손 불가피
- 도시 내·외곽 녹지 연계성 부족(외곽의 풍부한 녹지(설악산)와 도시내 녹지와의 연결성 부족)
- 관광도시로의 지속적 관광지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및 난개발 발생
- 청초천, 영랑호 등 수계축은 시민의 접근성이 부족으로 보전, 활용 등 지정 목적 불분명

1.3 개발가능지 검토

01 토지적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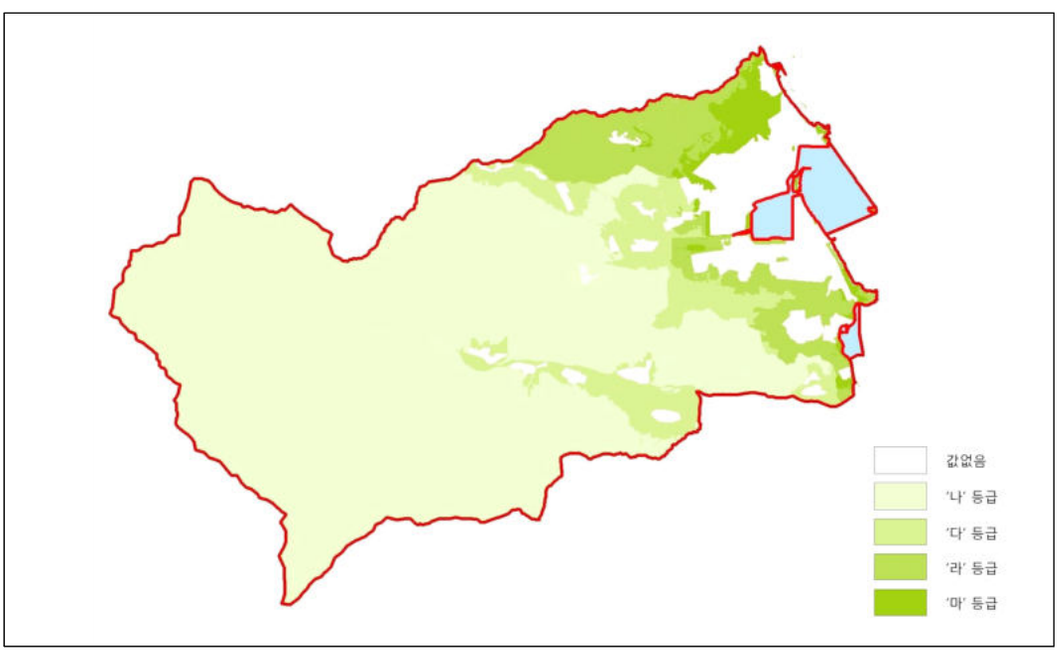
▮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및 범위

·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임

· 토지적성평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 속초시 토지적성평가 범위 : 관리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역 : 96.042㎢

▮ 토지적성평가 종합 판정결과



【표 3-1-1-3】 토지적성등급별 면적

구 분	합 계	← 보전적성 ····· 개발적성 →					비 고
		가	나	다	라	마	
면적(㎢)	96.042	-	73.956	9.316	9.811	2.929	
구성비(%)	100.0	-	77.0	9.7	10.2	3.1	

출처 : 토지적성평가, 속초시

02 가용토지 검토

▮ 개발가능지분석

· 기개발지역, 개발억제지역, 개발불능지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을 개발가능지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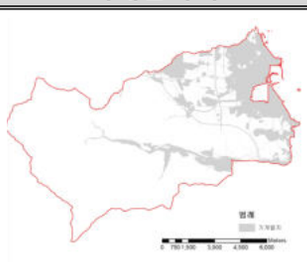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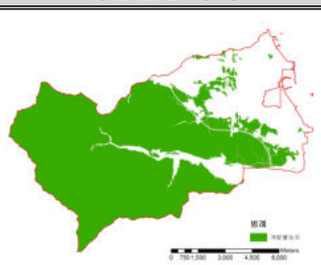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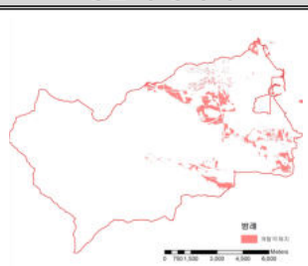
- 기개발지역 : 현재 시가화된 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사업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시가화된 토지에 위요된 공원 및 주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 개발억제지역 : 법적 제약요소로 개발이 억제된 지역
- 개발불능지역 : 자연요소가 개발에 부적정한 지역

▮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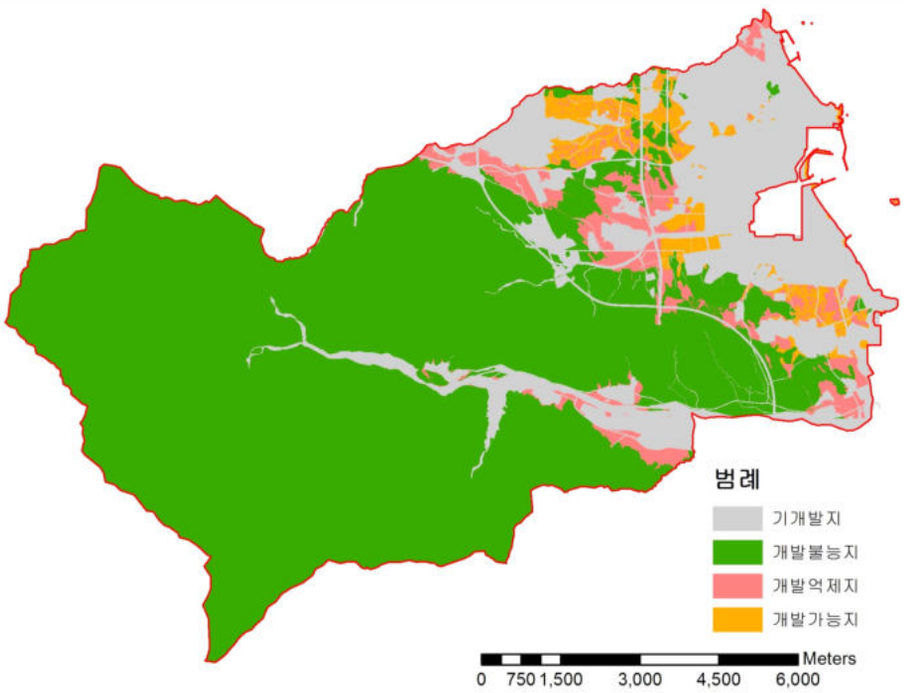
구 분	기 준 설 정	비 고
기 개 발 지 역	· 시가화용지, 주요 도시계획시설용지, 하천, 산업단지, 개발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등	
개 발 억 제 지 역 (법적제약요소)	· 토지적성평가 상 별도의 보전대상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으로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경사 20°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개 발 불 능 지 (자 연 요 소)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이 어려운 표고 125m 이상, 토지적성평가 나등급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개 발 가 능 지	· 기개발지역, 개발억제지역, 개발불능지역 제외 지역	

▮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05.70	100.0	미지정면적 미포함
기 개 발 지	21.76	20.59	
개 발 불 능 지	75.25	71.19	
개 발 억 제 지	5.41	5.12	
개 발 가 능 지	3.28	3.10	

기개발지역	개발불능지역	개발억제지역
		

개발가능지 분석도



2 용도별 수요추정

2. 수요추정 방법

2.1 수요추정 기본방향

01 기본방향

-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 예측 , 토지이용 밀도기준 설정
- 용도별 계획은 각 용지별 토지소요면적 산정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별 배분비율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용지별 토지수요 추정은 목표연도에 추정된 계획인구를 토대로 적용
- 시가화용지는 2021년 6월 기준 현재 `속초도시관리계획'상의 면적 반영으로 무분별한 시가화용지 확장 지양
-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소요물량 산정식과 타시군 적용사례를 감안하여 산정
- 주요지표는 문헌자료(인구 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수요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16)를 인용함

02 용도별 수요추정 방식

- 주거용지는 ①인구밀도에 의한 방식과 ②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 상업용지는 ①상업지역 이용인구에 의한 방식(관광객, 속초시)과 ②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추정방식으로 산정
- 공업용지는 ①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추정방식과 ②업체당 평균 부지면적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2.2 계획지표

01 주거용지

- 인구밀도 : 저밀도(80인/ha), 중밀도(130인/ha), 고밀도(180인/ha)
-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저층(200㎡), 중층(105㎡), 고층(85㎡)

02 상업용지

- 상업용지 이용 평균상면적 : 도심(15㎡/인), 지역중심(15㎡/인), 지구중심(15㎡/인)
- 상업용지 종사자 평균이용면적 : 도소매(57㎡/인), 숙박음식(120㎡/인), 기타(47㎡/인)

03 공업용지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15)의 지표 적용(속초시 특성상 식료품 산업)
- 부지면적 :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144.4㎡/인), 업체당 평균 부지면적(6,182㎡/인)

2.3 주거부문

01 인구밀도에 의한 방식

$$Ra = \sum_{i=0}^{n} \frac{Poi}{Di}$$

Ra : 주거용지 소요면적	Poi : 주거입지별 인구
I...n : 주거입지별 인구밀도 구분	Di : 주거입지별 인구밀도

- 고밀도 주거지 : 아파트, 고밀도 연립주택지 (50%)
- 중밀도 주거지 : 연립주택지, 중밀도 단독주택지 (10%)
- 저밀도 주거지 : 단독주택지, 주변 취락지역 (40%)
- 인구밀도에 의한 시가화구역 내 주거용지는 저밀도 4.092㎢, 중밀도 0.630㎢, 고밀도 2.273㎢로 총 소요면적은 6.995㎢로 산정됨

【표 3-1-2-1】 인구밀도에 의한 방식

구 분		배분인구(인)	인구밀도(인/ha)	소요면적(㎢)	비 고
계획인구		90,930	-	-	-
시가화구역내 거주인구		81,837	-	-	①
주거용지 소요면적	저밀도	32,735	80	4.092	40%
	중밀도	8,184	130	0.630	10%
	고밀도	40,918	180	2.273	50%
주거용지소요면적		-	-	6.995	

주) ①은 계획인구의 90% 적용

02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식

$$Ra = \frac{\text{호당부지면적} \times \text{주택수}}{(1-e)\times(1-C)}$$

Ra : 주거용지 소요면적　　e : 공공용지율　　C : 혼합률

· 도시지역 주택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는 저층 5.596㎢, 중층 0.490㎢, 고층 1.486㎢로 소요면적은 7.572㎢로 산정됨

【표 3-1-2-2】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식

구 분	단 위	계	저층	중층	고층	비 고
계 획 인 구	인	90,930	-	-	-	
시가화구역내 거주인구	인	81,837	-	-	-	①
주거용지내 가구	가구	35,581	-	-	-	2.3인/가구
주거용지내 주택	호	40,919	16,368	4,092	20,459	주택보급률 115%
1호당 부지면적	㎡		200	105	85	
용 적 률	%		100	150	200	
주 택 용 지	㎢	4.429	3.273	0.286	0.870	공공용지율 제외
공 공 용 지 율	%		35	35	35	
혼 합 율	%		10	10	10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	㎢	7.572	5.596	0.490	1.486	

주) ①은 계획인구의 90% 적용, (공실, 감실 주택수 미반영)

03 주거부분 필요면적 산정 결과

· 목표연도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위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 중 최소값인 인구밀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6.995㎢로 계획

(단위 : ㎢)

구분	적용(최소값)	인구밀도에 의한 방식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식
소요면적	**6.995**	6.995	7.572

2.4 상업·공업 용도산정 지표(공통적용)

01 경제활동 인구전망

·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속초 경제활동인구는 37,532인, 경제활동 참가율 58.0%, 취업인구는 37,208인, 실업인구는 324인으로 분석

· 사회적 증가인구의 유입 요소(산업단지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로 인해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며, 목표연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현재 0.9%로 강원도 전체 실업률인 2.6%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치이며 목표연도인 2040년까지 0.5%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표 3-1-2-3】 경제활동 인구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인 구	경제활동 가능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인구	실업인구	실업률(%)
2017년	83,213	64,710	37,532	58.0	37,208	324	0.9
2025년	85,268	75,392	43,878	58.2	43,480	398	0.9
2030년	87,957	78,498	45,843	58.4	45,488	356	0.8
2035년	89,860	80,822	47,362	58.6	47,057	305	0.6
2040년	90,930	81,955	48,190	58.8	47,943	246	0.5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02 산업별 취업구조 인구전망

· 산업별 취업구조는 2017년 기준 1차 산업 45인(0.1%), 2차 산업 4,423인(13.93%), 3차 산업 27,277인(85.9%)임

· 산업 기술 첨단화 및 자동화, 4차 산업혁명, 대규모 집단화로 인해 1차 산업과 2차산업은 현재 산업구조의 구성비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

· 관광산업이 속초시의 주력 산업으로 3차 산업의 인구도 현재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3-1-2-4】 산업별 인구전망

구 분	계	1차 산업 (농림, 어업)	2차 산업 (광업, 제조업)	3차 산업 (기타서비스업)
2017년	37,208	68	5,183	31,962
2025년	43,480	53	6,535	36,892
2030년	45,488	48	7,054	38,386
2035년	47,057	43	7,526	39,488
2040년	47,943	37	7,907	39,999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18)를 구성비를 인용

2.5 상업부문

01 상업용지 이용인구에 의한 방식

$$A = \frac{n \times a}{N \times r \times (1-e)}$$

A : 상업용지 소요면적	N : 평균층수	n : 상업용지 이용인구
a : 1인당 평균상면적	r : 건폐율	e : 공공공지율

· 이용인구별 상업용지 산정시 도심상업 0.588㎢, 지역중심상업 0.661㎢, 지구중심상업 1.511㎢로 필요 소요면적은 2.760㎢로 산정됨

【표 3-1-2-5】 상업용지 이용인구(관광객)에 의한 방식

구 분	분담률 (%)	이용인구 (인)	1인당 점용면적 (㎡)	평균 층수	건폐율 (%)	공공 공지율 (%)	혼합률 (%)	소요 면적 (㎢)
합 계	100%	148,069	-	-	-	-		2.760
도심상업	40%	59,228	15	3	80%	30%	10%	0.588
지역중심상업	30%	44,420	15	2	80%	30%	10%	0.661
지구중심상업	30%	44,421	15	1	70%	30%	10%	1.511

주) 1일관광인구는 주간인구에서 산출된 관광객지수 163%를 적용

【표 3-1-2-6】 3차산업 종사자수에 의한 방식

구분	단위	합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비고
종사자수	인	39,999	11,200	12,800	15,999	2040년 속초시 서비스업 비율 추계 적용 (도매:숙박:기타=28:32:40)
1인당당 평균면적	㎡	-	57	120	47	통계청 서비스업 평균면적 (강원도 서비스업 조사 인용)
층수	층	2				평균층수 적용
공공공지율	%	30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現) 지표 유지
건폐율	%	80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적용
합계	㎢	2.613	0.570	1.372	0.671	

02 상업용지 필요면적 산정 결과

· 목표연도 상업용지 소요면적은 위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 중 최소값인 3차산업 종사자수에 의한 방식 적용하여 2.613㎢로 계획

(단위 : ㎢)

구분	적용(최소값)	상업용지 이용인구(관광객)에 의한 방식	3차산업 종자사수에 의한 방식
소요면적	**2.613**	2.760	2.613

2.6 공업부문

01 산업별 종사자수에 의한 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적용안]

$$I = \frac{P \times a \times r}{(1-e)}$$

I : 공업용지소요면적　　r : 공업용지율　　a : 1인당 부지면적

P : 종업원수　　e : 공공공지율

【표 3-1-2-7】 산업별 종사자수에 의한 방식

구 분	단 위	적 용	산출근거	비 고
종 사 자 수	인	7,907	지역별 고용조사자료	2차산업 종사자수(2040)
종업원1인당부지면적	㎡	144.4	1인당 부지면적 : 5대 권역별 종사자 1인당 입지 및 건축 원단위_ : 144.4㎡/인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연구, 201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업 용 지 율	%	80		
공 공 공 지 율	%	30		
공업용지 소요면적	㎢	1.304		

주) 2차산업 종사자수는 지역별고용조사자료(통계청)를 근거로 산출한 값임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은 5대 권역별 종사자 1인당 입지 및 건축 원단위

02 업체당 평균 부지면적 의한 방식

$$I = \frac{P \times a \times r}{(1-e)}$$

I : 공업용지 소요면적　　r : 공업용지율　　a : 업체당 평균 부지면적
P : 업체수　　e : 공공공지율

【표 3-1-2-8】 업체당 평균부지면적에 의한 방식

구 분	단 위	적 용	산출근거	비 고
증 가 업 체 수	개소	236	증가율(8%) 미반영 1,000개소로 반영	2014년 764개소
업체당평균부지면적	㎡	6,182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연구(2015) 79p 식료품(C10) 적용	
공 업 용 지 율	%	80		
공 공 공 지 율	%	30		
공업용지 소요면적	㎢	1.667		

주1) 업체당 평균 부지면적은「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15)」에 근거하여 제조업 원단위 중 식료품 기준 원단위(6,182㎡)를 적용
주2) 2차산업 업체의 연평균증가율 8% 적용시 2040년 4,083개소로 과다추정됨에 따라 도시규모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 최대 1,000개소로 설정

03 공업용지 필요면적 산정 결과

· 목표연도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위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 중 최소값인 산업별 종사자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1.304㎢로 계획

(단위 : ㎢)

구분	적용(최소값)	산업별 종사자수에 의한 방식	업체당 평균부지면적에 의한 방식
소요면적	**1.304**	1.304	1.667

2.7 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종합

·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별 소요면적 산정결과는 총 10.912㎢ 임
· 각 용지별 산정방식 선정은 최소값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표 3-1-2-9】 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총괄표

구 분	합 계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비 고
합 계	10.912	9.686	1.226	
주 거	6.995	6.288	0.707	
상 업	2.613	2.316	0.297	
공 업	1.304	1.082	0.222	

3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 용도 구분 및 관리

01 기본방향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지침 마련

- 개발여건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공급 지표 제시
- 개발 효율성을 위해 생활권별로 물리적, 지리,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주요 부 도심지로의 기능 분산 배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를 위한 개발밀도 설정

- 자연재해, 사고,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
- 도시공간구조상 생활권별 개발밀도 차등 적용하여 장래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중시하고 장래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개발 방향 설정

- 서부의 설악국립공원은 보존하고 도시개발은 속초 동부지역의 지방도 56호선변을 계획적 개발방향으로 육성 집중
- 계획대상지의 수용능력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과의 보존과 조화 중시
-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개발밀도 조정

02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기본방향

-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사업구역, 시가지로 위요된 근린공원)를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로 구분함
- 「속초시 용도지역 현황(2021.05)」상 주거, 상업, 공업용지 면적을 「2040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 면적으로 반영하여 현실화
- 주거용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가화용지 주변지역 우선 개발 유도
- 상업용지 및 공업용지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 공업지역은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통해 사업이 시행중인 대상지를 시가화용지(공업용지) 면적에 추가 반영

2. 시가화용지 변경

01 기준설정

· 용지별로 배분된 토지는 목표연도별로 단계별, 생활권별로 시가화예정용지로 관리하여 토지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시

·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용도지역을 부여할 경우 단계별 배분계획을 고려

02 관리·정비방향

구 분	시가화용지 관리·정비방향
기본방향	· 현재 시가화가 진행된 기개발지 또는 도시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속초 도시관리계획 (2021.6)」상 면적 반영 · 기반시설 용량과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한 총밀도 계획 ·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정비 방향 제시 · 용도변경(Up-Zoning)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용도변경 수반
주거용지	· 「속초 도시관리계획 (2021.6)」상 주거지역 면적 반영 ·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도록 계획 · 신규 주거용지 배분 대상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하여 개발계획 수립 후 주거용지로의 개발을 유도
상업용지	· 「속초 도시관리계획 (2021.6)」상 상업지역 면적 반영 ·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도록 계획분 ·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부여시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업용지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탄력성 부여
공업용지	· 「속초 도시관리계획 (2021.6)」상 공업지역 면적 반영 및 현재 공업기능을 상실한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상위계획의 타당성 제고 · 공업용지는 도시공간구조상에서 제시한 개발축과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관리용지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리용지로 지정

03 시가화용지 변경 내역

Ⓐ :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위해 용도지역 결정현황을 반영

Ⓑ : 용도지역이 기결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정책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시가화용지 변경 (금회 계획없음)

【표 3-1-3-1】 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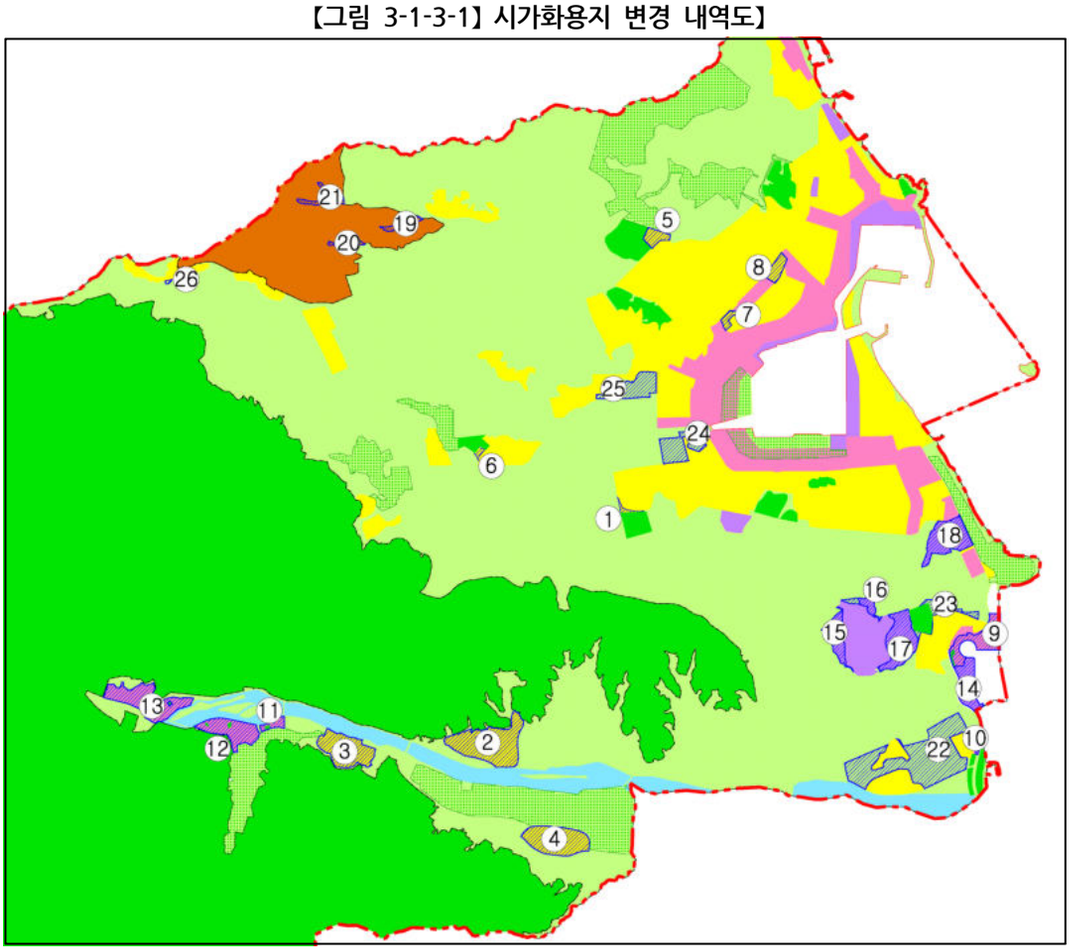
구분	위치	변경내역		면적 (㎢)	생활권	유형
1	조양동 387-11 일원	보전용지	주거용지	0.007	남	Ⓐ
2	도문동 199 일원			0.213	남	Ⓐ
3	설악동 348-2 일원			0.130	남	Ⓐ
4	설악동 714-2 일원			0.144	남	Ⓐ
5	노학동 624-17 일원			0.006	북	Ⓐ
6	금호동 산278 일원			0.040	북	Ⓐ
7	교동 636-69 일원	상업용지		0.020	북	Ⓐ
8	금호동 625-37 일원			0.029	북	Ⓐ
9	대포동 956-3 일원	미지정	상업용지	0.081	남	Ⓐ
10	대포동 790-14 일원	보전용지		0.009	남	Ⓐ
11	설악동 246-106 일원			0.012	남	Ⓐ
12	설악동 246-36 일원			0.052	남	Ⓐ
13	설악동 32 일원			0.143	남	Ⓐ
14	대포동 969 일원	미지정	공업용지	0.077	남	Ⓐ
15	대포동 45-2 일원	보전용지		0.031	남	Ⓐ
16	조양동 1275-6 일원			0.014	남	Ⓐ
17	대포동 986-2 일원			0.071	남	Ⓐ
18	대포동 542 일원			0.054	남	Ⓐ

【표 3-1-3-2】 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총괄표 (이어서)

구분	위치	변경내역		면적 (㎢)	생활권	유형
19	장사동 123-1 일원	보전용지	관리용지	0.027	북	Ⓐ
20	장사동 16 일원			0.032	북	Ⓐ
21	장사동 6-1 일원			0.041	북	Ⓐ
22	도문동 2166 일원	주거용지	보전용지	0.320	남	Ⓐ
23	대포동 473-3 일원			0.081	남	Ⓐ
24	조양동 210 일원			0.086	남	Ⓐ
25	노학동 1075-2 일원			0.084	북	Ⓐ
26	노학동 1316 일원			0.001	북	Ⓐ

주1) ⑯ 포함 : 대포3농공단지 : 속초시고시 제2016-40호(2016.08.04.) 공업→보전 (436㎡)
주2) ⑯ 포함 : 대포1·2농공단지 : 속초시고시 제2019-48호(2019.06.11.) 공업→보전 (7,018㎡)

【그림 3-1-3-1】 시가화용지 변경 내역도】



3.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01 기준의 설정

·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근거하여 목표연도 및 단계별·생활권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되, 위치는 표시하지 아니함

·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개발 수요와 토지시장 상황에 부응해서 융통성 있게 재배분하여 사용

·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 결정 기준

①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지정

·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02 용도별 관리·정비방향

유 형	시가화예정용지 관리·정비방향
공통	· 보전용지의 개발을 최대한 지향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화용지 중 미·저이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하여 개발을 우선으로 함
주 거	· 주거용지 필요물량에서 시가화용지(도시관리계획 상업지역)를 제외한 잔여 물량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가화용지 주변지역 우선 개발 유도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지양 ·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 및 시가지와 연접하여 개발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상 업	· 물류단지를 포함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상업용지 물량 배정
공 업	· 산업형 시가화예정용지 필요물량을 분석하여 적정·배분하고, 민간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 포함 · 산업단지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물량 배정

03 단계별 계획

- 도시공간구조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기설정된 지역현안사업은 추진계획별로 설정하되,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1~2단계에 배분
- 「속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5. 10)」를 기준으로 1단계(2025년)에 적용
- 단계별 계획인구 및 계획인구밀도에 부합하도록 배분하고 부족한 수요를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을 통해 공급

구 분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1단계 (2021~2025)	· 단계별 계획 중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 노학동 일원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세권개발사업 반영 · 1단계 단계별 조정을 위해 적정 물량 확보
2단계 (2026~2030)	·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개발사업 및 신산업 기반 물량 · 2단계 단계별 조정을 위해 적정 물량 확보
3단계 (2031~2035)	· 주거 및 산업·물류용도의 개발계획 수립내용 적용하고 개발용도는 경제성 등을 감안한 생활권별 특성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 유도 필요 · 3단계 단계별 조정을 위해 적정 물량 확보
4단계 (2036~2040)	· 인구 및 산업지표 달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상업·공업물량의 균형 배분 · 4단계 단계별 조정을 위해 적정 물량 확보

【표 3-1-3-3】 단계별·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구분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합계	1.226	0.400	0.325	0.342	0.159
	주거	0.707	0.300	0.120	0.137	0.150
	상업	0.297	0.100	0.105	0.083	0.009
	공업	0.222	-	0.100	0.122	-
북생활권	소계	0.709	0.250	0.170	0.180	0.109
	주거	0.427	0.200	0.070	0.057	0.100
	상업	0.182	0.050	0.050	0.073	0.009
	공업	0.100	-	0.050	0.050	-
남생활권	소계	0.517	0.150	0.155	0.162	0.050
	주거	0.280	0.100	0.050	0.080	0.050
	상업	0.115	0.050	0.055	0.010	-
	공업	0.122	-	0.050	0.072	-

4. 토지이용계획(안)

01 토지 소요량 구분

-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계획 수용
-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토지배분
- 기성 시가지내 분포되어 있는 유휴 토지와 과개발에 따른 사회비용 감안한 소요량 산정
- 상위계획의 검토, 계획간 정합성을 감안하고 시공간 구조 구상에 부합하고, 공원녹지·교통·경관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
- 개발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인구 규모와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과개발 지양

02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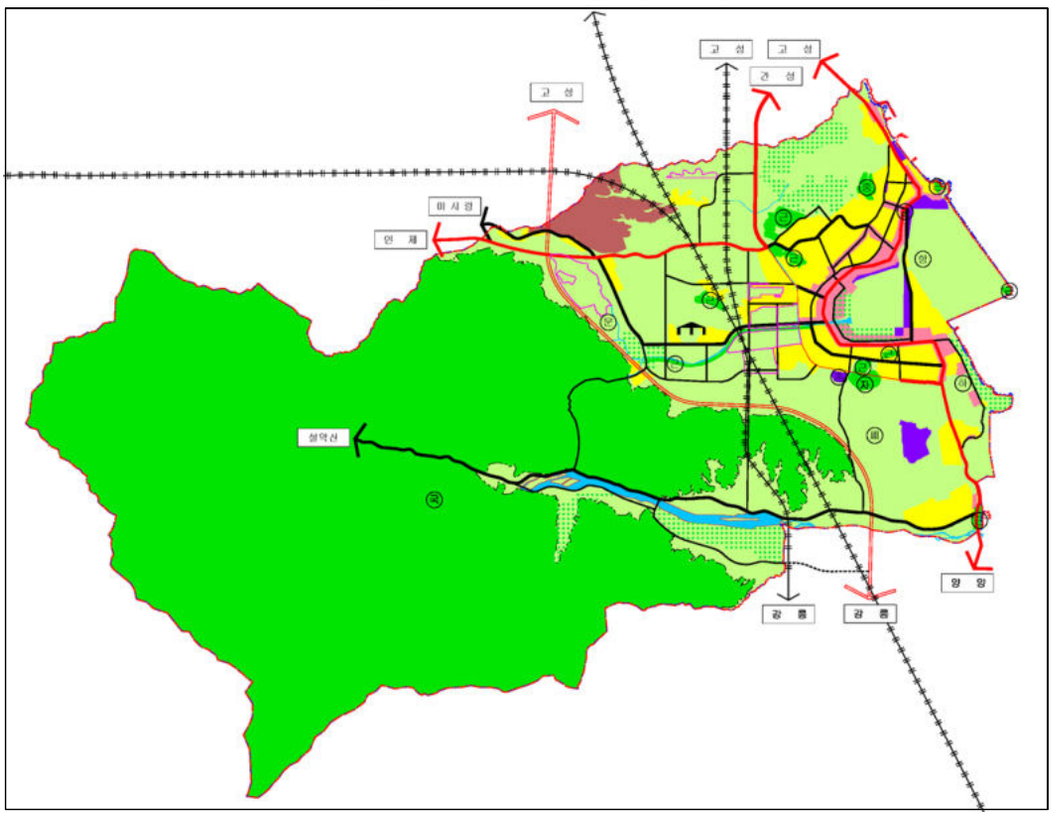
- 기정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는 10개소 3.431㎢로 계획되었으며, 금회는 1.226㎢로 2.205㎢ 감소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위치표시 없이 물량으로만 계획하여 유연성 제고
- 기정 계획에서 보전용지는 96.804㎢로 계획되었으나, 금회는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에 따라 1.593㎢ 증가한 98.397㎢로 계획

【표 3-1-3-4】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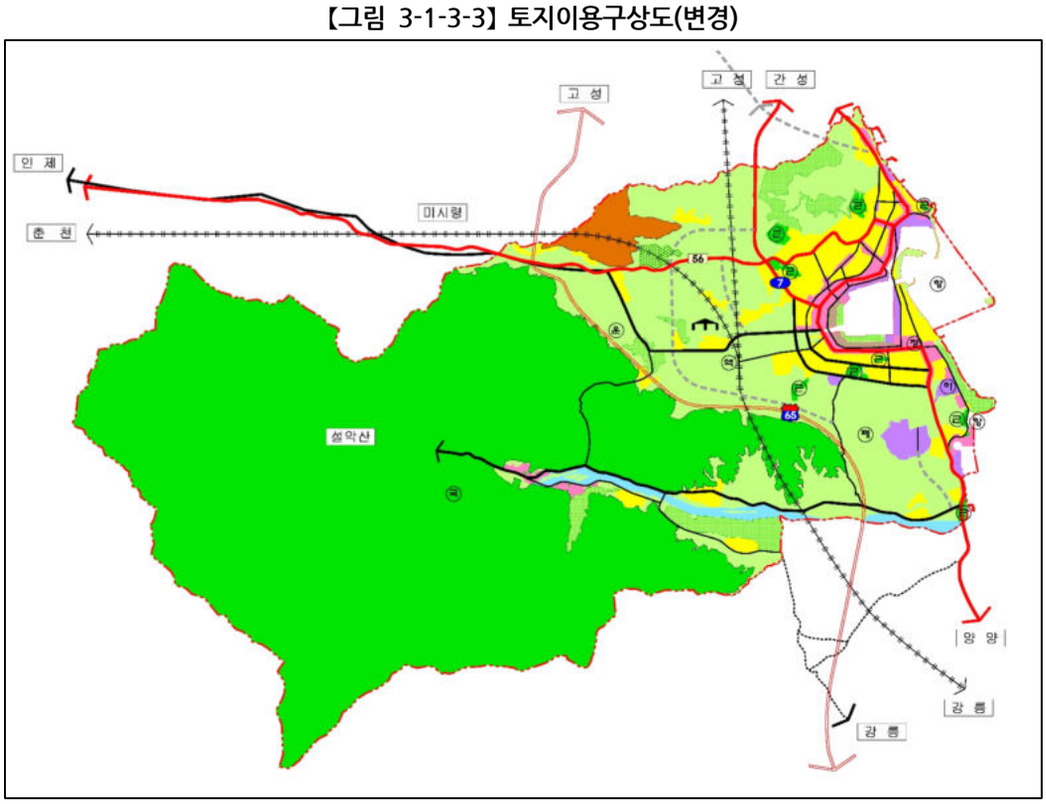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0.784	-	110.784	100.0%	
시가화용지	10.549	증) 0.612	11.161	10.1%	
주거용지	6.270	증) 0.018	6.288	5.7%	
상업용지	2.068	증) 0.248	2.316	2.1%	
공업용지	0.836	증) 0.246	1.082	1.0%	
관리용지	1.375	증) 0.100	1.475	1.3%	
시가화예정용지	3.431	감) 2.205	1.226	1.1%	
주거용지	2.280	감) 1.573	0.707	0.6%	
상업용지	0.359	감) 0.062	0.297	0.3%	
공업용지	0.292	감) 0.070	0.222	0.2%	
관리용지	0.500	감) 0.500	-	0.0%	
보전용지	96.804	증) 1.593	98.397	88.8%	

주) 기정은 2020속초도시기본계획 면적임.

【그림 3-1-3-2】 토지이용구상도(기정)



【그림 3-1-3-3】 토지이용구상도(변경)



주) 시가화예정용지는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물량을 관리하며, 보전용지에 포함되어 있음

II 기반시설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교통계획
2. 물류계획
3. 기타 기반시설 계획
4. 상 · 하수도 계획

제2장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교통계획

1. 현황분석

1.1 교통시설 설치 현황

01 도로시설 현황

· 속초시 총 도로연장은 245km로, 고속도로 8km, 일반국도 9km, 지방도 5km, 시군도 223km로 구성되어 있음

· 도로 포장률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100.0%, 시군도 53.2%로 전체 57.4%의 포장률을 보이며, 강원도 전체 포장률 77.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1-1】 도로연장 현황

구분	강원도					속초시				
	총연장 (km)	포장 (km)	미포장 (km)	미개통 (km)	포장률 (%)	총연장 (km)	포장 (km)	미포장 (km)	미개통 (km)	포장률 (%)
합계	10,007	7,712	1,096	1,199	77.1	245	141	-	104	57.4
고속도로	472	472	-	-	100.0	8	8	-	-	100.0
일반국도	1,942	1,924	19	-	99.0	9	9	-	-	100.0
지방도	1,647	1,469	112	66	89.2	5	5	-	-	100.0
시군도	5,946	3,848	966	1,132	64.7	223	119	-	104	53.2

출처 : 2018년 강원도 통계연보

· 최근 5년간 속초시 도로별 연장 추이를 살펴보면, 시군도의 경우 0.03%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는 변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1-2】 도로별 연장 추이

구 분	계(km)	고속도로(km)	일반국도(km)	지방도(km)	시군도(km)
2013년	237	-	9	5	223
2014년	237	-	9	5	223
2015년	237	-	9	5	223
2016년	245	8	9	5	223
2017년	245	8	9	5	223
연평균 증가율(%)	0.83	-	-	-	0.0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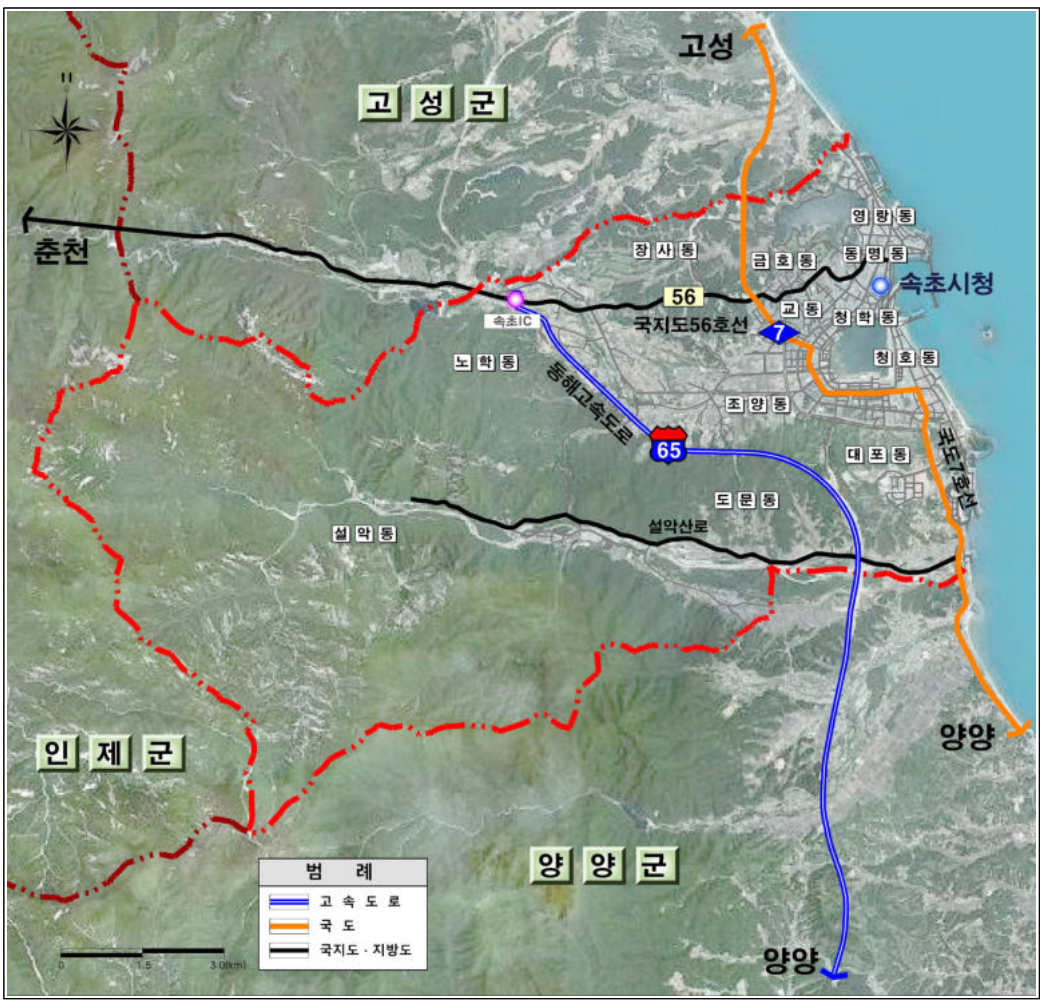
02 주요 가로망 현황

· 속초시 주요 가로망 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삼척~속초를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이 주요 남북간 간선도로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지도 56호선이 동서간을 연결하고 있음

【표 3-2-1-3】 주요 가로망 현황

구분	노선명	도로기능	연장 (km)	차로수 (왕복)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주간선도로	8.51	4
국도	국도7호선	주간선도로	9.11	4~6
국지도/지방도	국지도56호선	주간선도로	5.08	4~6

【그림 3-2-1-1】 주요 가로망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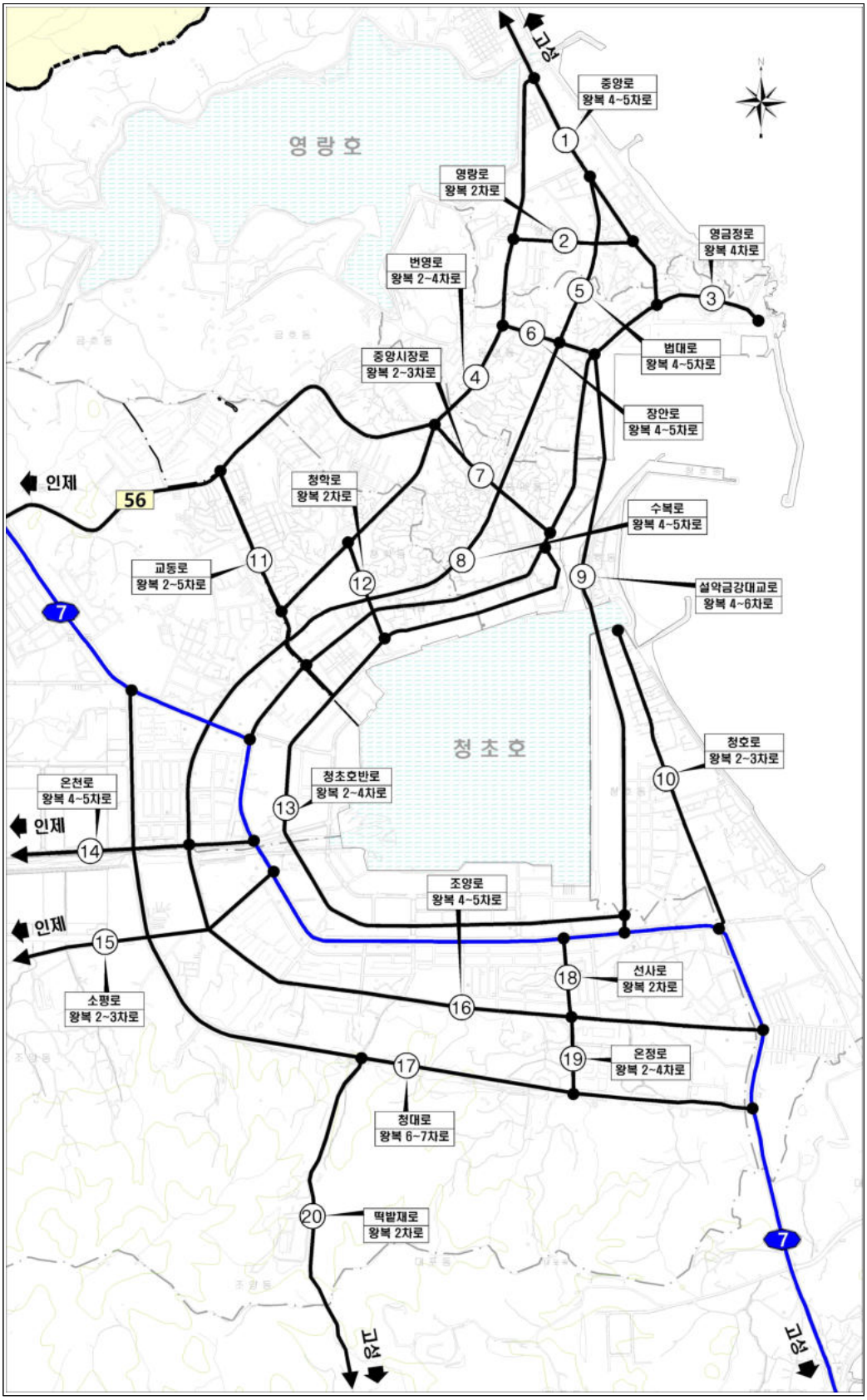
03 도심가로망 현황

· 속초시 도심 주요 가로망은 청초호를 중심으로 20개의 노선이 환상방사형과 격자형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1-4】 도심가로망 현황

구 분	도로명	구간		연장 (km)	차로수 (왕복)
		기점	종점		
①	중앙로	교동삼거리	속초시계	4.83	4~5
②	영랑로	번영로179번길	영랑해안6길	0.47	2
③	영금정로	영금정입구사거리	영금정	0.44	4
④	번영로	번영로입구삼거리	영랑교삼거리	2.48	2~4
⑤	법대로	수복로	중앙로	0.70	4~5
⑥	장안로	동명동사거리	수복탑사거리	0.38	4~5
⑦	중앙시장로	공설운동장오거리	설악로데오거리	0.63	2~3
⑧	수복로	소야교사거리	법대로	2.69	4~5
⑨	설악금강대교로	동해대로	수복탑사거리	2.34	4~6
⑩	청호로	고속버스터미널앞 삼거리	청호동 1706-1	1.27	2~3
⑪	교동로	교동사거리	교동로입구삼거리	0.86	2~5
⑫	청학로	청초호반로	번영로삼거리	0.41	2
⑬	청초호반로	설악로데오거리	이마트	3.35	2~4
⑭	온천로	척산삼거리	청초교사거리	3.29	4~5
⑮	소평로	싸리재길	동해대로	1.85	2~3
⑯	조양로	소야교사거리	새마을사거리	2.64	4~5
⑰	청대로	만천삼거리	조양교차로	3.63	6~7
⑱	선사로	조양주공2단지	조양동1534-1	0.31	2
⑲	온정로	조양동1208	조양동1570-1	0.31	2~4
⑳	떡밭재로	설악산로	청대로	2.71	4

【그림 3-2-1-2】 도심가로망 현황도



1.2 도로시설물 현황

·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입체교차로 각 1개소, 가로등 7,515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표 3-2-1-5】 도로시설물 현황

구 분	보도 육교	지하 보도	지하 차도	고가 도로	지하 상가	터널	입체 교차로	가로등
개소	-	1	1	-	-	1	1	7,515
연장(m)	-	26	255	-	-	610	150	-
면적(㎡)	-	154	4,462	-	-	5,185	6,500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1.3 자전거도로 현황

· 속초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61.8km로 설치되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 1.5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45.4km, 자전거 우선도로 14.9km

【표 3-2-1-6】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구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연장(km)	61.8	1.5	45.4	14.9
비율(%)	100.0	2.4	73.5	24.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그림 3-2-1-3】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도



1.4 여객수송 현황

· 속초시 항만시설은 무역항인 속초항과 수산어항인 대포항이 있으며, 2014년 이후 여객 및 수송물동량은 없음

【표 3-2-1-7】 여객선 현황

구분	합계		연안 여객선		외항선	
	여객(명)	화물(톤)	여객(명)	화물(톤)	여객(명)	화물(톤)
2013년	20,287	62,864	-	-	20,287	62,864
2014년	15,357	51,206	-	-	15,357	51,206
2015년	-	-	-	-	-	-
2016년	-	-	-	-	-	-
2017년	-	-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5 주차시설 현황

· 속초시 주차면수는 총 33,107면이며, 부설주차장 24,073면(72.7%), 노외주차장 8,293면(25.0%), 노상주차장 741면(2.2%)으로 부설주차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강원 동해안 지역 주요 도시의 주차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 속초시 주차 면수당 차량대수는 1.13대/면으로 강원 해안지역 주요도시 평균(0.92대/면)보다 높은 편임

【표 3-2-1-8】 주차시설 현황

구분	합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13년	2,100	27,447	8	586	57	7,995	2,035	18,866
2014년	2,360	30,365	10	687	61	9,325	2,289	20,353
2015년	2,461	30,821	10	687	55	8,522	2,396	21,612
2016년	2,535	31,043	10	687	56	8,284	2,469	22,072
2017년	2,753	33,107	11	741	57	8,293	2,685	24,073
연평균증가율	7.0%	4.8%	8.3%	6.0%	-	0.9%	7.2%	6.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2-1-9】 강원 동해안지역 도시의 주차시설 비교

구분	주차장개소	주차면수	자동차등록대수	차량/주차면
강원도	82,229	829,223	766,374	0.92
속초시	2,753	33,107	37,269	1.13
강릉시	11,322	142,279	106,929	0.75
동해시	2,882	46,263	44,419	0.96
삼척시	2,860	38,188	32,248	0.84
고성군	1,598	14,278	14,036	0.98
양양군	1,466	12,686	15,016	1.18

출처 : 강원도, 통계연보,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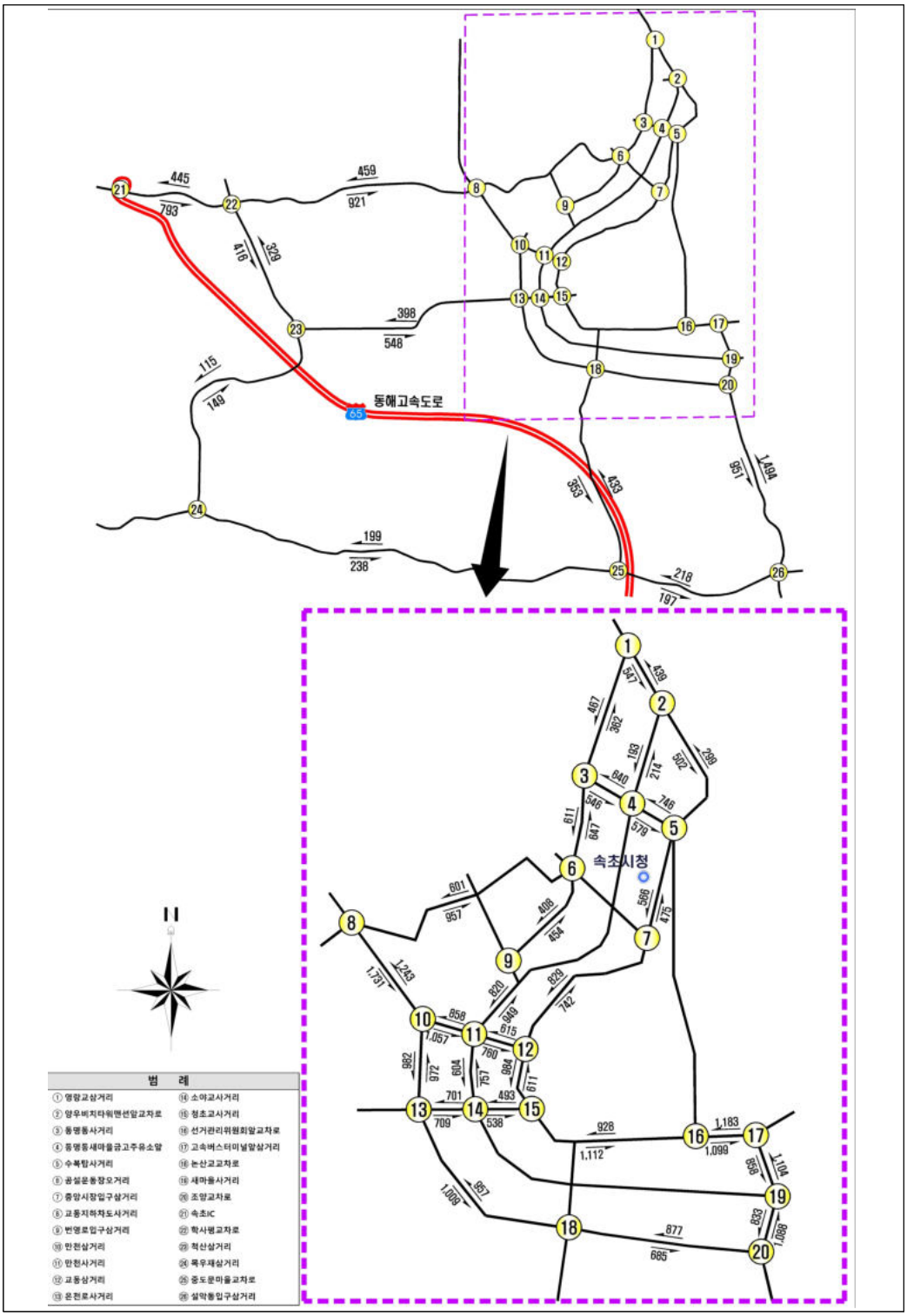
【표 3-2-1-10】 속초시 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주차장 명칭	주소	면수	운영
노상	동명동(수복탑) 노상주차장	동명동 81-1	44	무료
	수복로 노상주차장	생모리츠아파트~수광빌딩앞사거리	135	무료
	법대로 노상주차장	영랑동 150-14	92	무료
	장사동 해안도로 노상주차장	장사항해안길 56	160	무료
	영랑 해안길 노상 공영주차장	영랑동 148-188	54	무료
	청학가로(번영로) 노상주차장	청학동 632-30~청학동 487-49	25	무료
	교동가로 노상주차장	번영로23번길 8-33	65	무료
	설악산입구 노상주차장	설악동 41-3	20	무료
	영랑동(속초의료원 앞) 노상주차장	영랑교삼거리~속초의료원앞	45	무료
	삼환아파트~속초여고입구(양면)	삼환아파트~속초여고입구	71	무료
	경찰서앞먹거리단지앞(청대로)	교동 990	30	무료
노외	속초해수욕장 제1공영주차장	조양동 1449-3	239	유료
	속초해수욕장 제2공영주차장	조양동 1450-8	195	유료
	속초해수욕장 제3공영주차장	해오름로 140	112	유료
	대포 제1공영주차장	동해대로 3757	269	유료
	대포 제2공영주차장	대포항 희망1길 27	194	유료
	대포 제3공영주차장	대포동 972	30	유료
	대포 제4공영주차장	대포동 970	79	유료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수복로 191	475	유료
	설악산 B2 주차장	설악동 220-8	520	무료
	설악산 C1 주차장	청봉로 143-1	800	무료
	설악산 C2 주차장	청봉로 117	700	무료
	설악항 공영주차장	동해대로 3666	220	무료
	청학 1지구 주차장	청학동 청학 1지구	24	무료
	청학 2지구 주차장	청학동 청학 2지구	13	무료
	로데오 제1지구 주차장	청학동 482-258	148	무료
	로데오 제2지구 주차장	청학동 482-48	187	무료
	석봉도자기앞 주차장	교동 1020-1	257	무료
	청초호 유원지 주차장	조양동 1559-5	250	무료
	엑스포 해상유람선앞 주차장	조양동 1557-1	178	무료
	구 교육청 뒤 임시주차장	교동 665-7	30	무료
	시청 직원주차장(신관 뒤편)	동명동 469-1	149	무료
	구 경찰서 주차장	동명동 구 경찰서	70	무료
	구 헌병대 주차장	청학동 구 헌병대	35	무료
	시청뒷길 주차장(정상부)	동명동 439-10	36	무료
	시청뒷길 임시주차장(의회뒷편)	중앙동 469-10	39	무료
	동명항길 노외주차장	동명항길 53	32	무료
	영금정길 노외주차장	동명동 512-132	54	무료
	시청 민원주차장(본관)	중앙동 469-6	80	무료
	시청 종합민원실 주차장	동명동 465-4	34	무료

1.6 교통소통 현황

01 가로구간 교통소통 현황

【그림 3-2-1-4】 주요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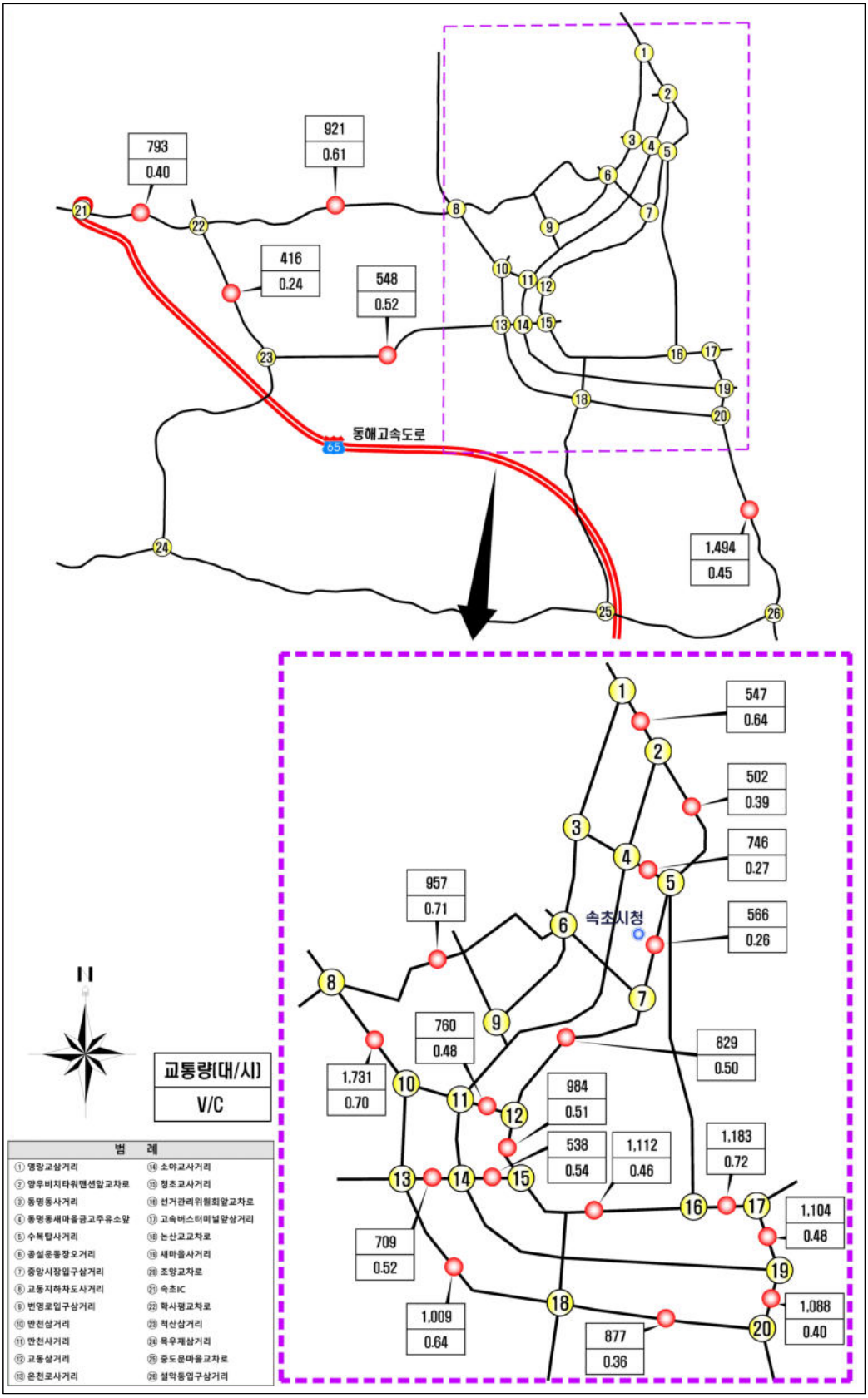


· 속초시 관내 주요 가로구간의 첨두시(18:00~19:00) 용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1-11】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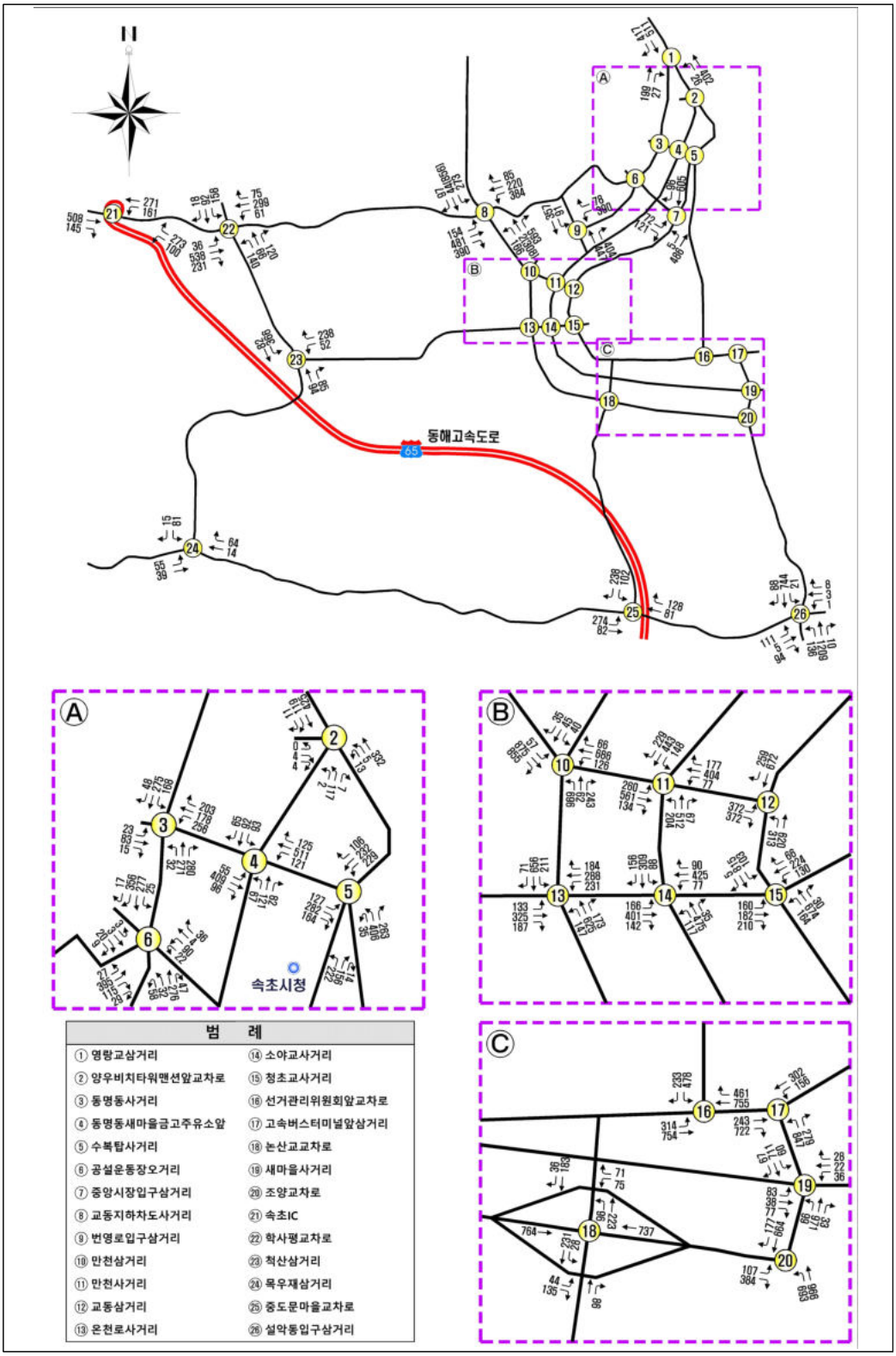
노선		구간	차로수(편도)	교통량(대/시)	V/C	LOS
국도 7호선	동해대로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⑩만천삼거리	2	1,731	0.70	D
		⑪만천사거리↔⑫교동삼거리	2	760	0.48	C
		⑫교동삼거리↔⑮청초교사거리	3	984	0.51	C
		⑮청초교사거리↔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	4	1,112	0.46	C
		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	2	1,183	0.72	D
		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⑲새마을사거리	3	1,104	0.48	C
		⑲새마을사거리↔⑳조양교차로	4	1,088	0.40	B
		⑳조양교차로↔㉖설악동입구삼거리	4	1,494	0.45	C
국지도 56호선	미시령로	㉑속초IC↔㉒학사평교차로	3	793	0.40	B
		㉒학사평교차로↔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	3	921	0.61	C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⑥공설운동장오거리	2	957	0.71	D
	장단로	④동명새마을금고주유소앞↔⑤수복탑사거리	3	746	0.30	B
중앙로		①영랑교삼거리↔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	2	547	0.46	C
		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⑤수복탑사거리	2	502	0.28	B
		⑤수복탑사거리↔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	2	566	0.23	B
		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⑫교동삼거리	2	829	0.44	B
온천로		㉒학사평교차로↔㉓척산삼거리	3	416	0.24	B
		㉓척산삼거리↔⑬온천로사거리	2	548	0.52	C
		⑬온천로사거리↔⑭소야교사거리	2	709	0.52	C
		⑭소야교사거리↔⑮청초교사거리	2	538	0.54	C
청대로		⑬온천로사거리↔⑱논산교교차로	3	1,009	0.64	C
		⑱논산교교차로↔⑳조양교차로	3	877	0.36	B

【그림 3-2-1-5】 주요 가로 용량 분석



02 교차로 교통소통 현황

【그림 3-2-1-6】 주요 교차로 교통량 현황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 속초시 주요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평균제어지체는 14.6~54.5초/대, 서비스 수준 "A~D"로 소통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1-12】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교차로명	교통량 (vph)	평균제어지체 (초/대)	LOS
① 영랑교삼거리	1,582	24.7	B
② 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	1,039	27.9	B
③ 동명동사거리	1,832	44.7	C
④ 동명새마을금고주유소앞	1,837	37.1	C
⑥ 공설운동장오거리	1,841	54.5	D
⑦ 중앙시장입구삼거리	1,385	14.6	A
⑧ 교동지하차도사거리	4,053	47.9	C
⑨ 번영로입구삼거리	1,767	32.1	C
⑩ 만천삼거리	3,786	44.6	C
⑪ 만천사거리	3,216	50.3	D
⑫ 교동삼거리	2,608	37.0	C
⑬ 온천로사거리	3,231	52.5	D
⑭ 소야교사거리	2,481	49.5	C
⑮ 청초교사거리	2,763	44.7	C
⑯ 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	2,995	44.0	C
⑰ 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	2,549	19.8	B
⑲ 새마을사거리	2,225	34.1	C
⑳ 조양교차로	2,991	29.8	B
㉒ 학사평교차로	1,834	39.2	C
㉓ 척산삼거리	917	34.3	C
㉖ 설악동입구삼거리	2,430	30.8	C

▌비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 속초시 비신호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 평균운영지체는 8.7~12.0초/대, 서비스 수준 "A~B"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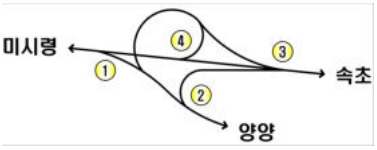
【표 3-2-1-13】 비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교차로명	교통량(vph)	평균운영지체 (초/대)	LOS	비 고
⑤ 수복탑사거리	2,236	12.0	B	회전교차로
⑱-1 논산교교차로(남측)	902	10.3	B	
⑱-2 논산교교차로(북측)	784	9.0	A	
㉔ 목우재삼거리	268	8.7	A	
㉕ 중도문마을교차로	905	11.4	B	

▌ 연결로 접속부 서비스 수준 분석

· 속초시 ㉑속초IC의 연결로 접속부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 LOS "A"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1-14】 연결로접속부 서비스수준 분석

㉑ 속초IC	지점		VFO (pcph)	VR (pcph)	DDR/DMR (pcplkmpl)	서비스 수준
	①	분류	653	145	4.3	A
	②	합류	508	273	4.0	A
	③	분류	432	161	2.2	A
	④	합류	271	100	2.2	A

1.7 교통수단별 현황

01 자동차등록 현황

· 속초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31,651대에서 2017년 36,601대로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는 강원도 평균 2.9%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15】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구분	강원도	속초
2013년	646,532	31,651
2014년	667,144	32,196
2015년	694,040	33,550
2016년	722,333	34,917
2017년	745,959	36,601
연평균증가율(%)	2.9%	3.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강원도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강원도 주요 도시 중 속초시가 2.27인/대로, 강원도 평균 2.10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16】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구분	인구수	차량1대당 인구수	자동차 등록대수				
			총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강원도	1,567,091	2.10	745,959	560,825	30,815	151,608	2,711
춘천시	284,192	2.22	127,750	102,388	4,976	19,931	455
원주시	344,614	2.15	160,402	127,938	6,045	25,949	470
강릉시	215,856	2.06	104,693	81,383	4,196	18,626	488
동해시	93,657	2.15	43,647	34,629	1,743	7,050	225
태백시	46,142	2.19	21,036	16,163	1,098	3,691	84
속초시	83,213	2.27	36,583	28,879	1,684	5,879	141

출처 : 강원도, 통계연보, 2018

02 대중교통 현황

▌ 버스운행 현황

· 속초시 관내 버스업체는 동해상사와 강원여객 2개소가 있음

· 총 29개 노선, 버스대수는 290대가 운행중에 있음

【표 3-2-1-17】 속초시 버스운행 현황

구분	노선수	운행대수
동해상사	20	185
강원여객	9	105
계	29	290

【표 3-2-1-18】 속초시 버스노선 현황

노선 번호	구간	출발지	운행시간		출발지	운행시간		운행 대수	운수업체
			첫차	막차		첫차	막차		
1	대포동~간성	대포동	07:15	18:15	간성	06:30	18:00	5	동해상사
1-1	대포동~마차진	대포동	06:30	16:45	마차진	06:15	20:30	11	동해상사
1-2	대포동~마차진	대포동	08:00	08:00	-	-	-	1	동해상사
3	장사동~한화콘도	장사동	06:45	18:50	한화콘도	07:25	19:30	15	동해상사 강원여객
3-1	장사동~델피노콘도	장사동	07:50	19:30	델피노콘도	08:30	20:10	8	동해상사
7	장사동~설악산	장사동	06:30	20:30	설악소공원	07:20	20:35	6	동해상사
								12	강원여객
7-1								7	동해상사
								19	강원여객
9	양양~속초	장사동	09:38	21:00	양양	08:00	20:08	12	강원여객
13-1	대포~성대	대포동	06:40	11:55	성대	07:30	12:45	3	동해상사
13-2			08:40	19:00		09:30	19:50	4	
18	대포~도원1리	대포동	06:25	18:10	도원1리	07:25	19:15	5	동해상사
22	대포~구성리	대포동	08:10	18:40	구성리	09:10	19:40	5	동해상사
33-1	장사동~경찰서	장사동	07:20	08:00	경찰서	07:40	08:20	2	강원여객
55	관광수산시장 ~장사동	관광 수산시장	06:55	19:45	장사동	10:55	17:35	71	동해상사
66	시외버스터미널 ~성호아파트	시외버스 터미널	07:10	18:05	성호아파트	07:30	18:25	14	강원여객
77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07:20	08:00	시외버스 터미널	순환	순환	2	강원여객
88	동광사~장사동	동광사	07:05	19:40	장사동	07:45	20:20	16	동해상사
99	시외버스터미널 ~리빙마트	시외버스 터미널	07:30	18:30	리빙마트	07:20	18:40	37	강원여객
505	성호아파트 ~대포동	성호아파트	06:45	20:14	대포동	07:38	16:25	35	동해상사

▌속초 시내 버스터미널 현황

구 분	내 용	현 황
명 칭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 16	
면 적	3,200㎡(지상 3층)	
개장연도	1967년	
운영기관	금강고속	
구 분	내 용	현 황
명 칭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98	
면 적	3,200㎡(지상 3층)	
개장연도	2012년	
운영기관	동부익스프레스	
구 분	내 용	현 황
명 칭	강원 여객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53	
면 적	3,910㎡	
개장연도	-	
운영기관	동해상사고속	
구 분	내 용	현 황
명 칭	강원 여객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53	
면 적	3,910㎡	
개장연도	-	
운영기관	동해상사고속	
구 분	내 용	현 황
명 칭	강원 여객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53	
면 적	3,910㎡	
개장연도	-	
운영기관	동해상사고속	

03 택시 운행현황

· 속초시 택시 운행대수는 개인택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업체 택시대수는 연평균 -6.6%로 감소추세임

【표 3-2-1-19】 택시 운행대수 추이

구분	계		택시(업체)		개인택시	
	업체수	대수	업체수	대수	업체수	대수
2013년	390	652	7	269	383	383
2014년	390	641	7	258	383	383
2015년	389	590	6	207	383	383
2016년	409	608	6	205	403	403
2017년	405	604	6	205	399	399
연평균증가율	0.9%	-1.9%	-3.8%	-6.6%	1.0%	1.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2. 교통체계 목표설정

2.1 미래상 및 계획방향

01 미래상 : 흐름이 원활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 교통정책 추진
-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시설 확충)
- 상위계획에서 수립된 광역도로망 체계를 수용하고 토지이용 효율화 도모
- 교통공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요소 저감
- 녹도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등의 환경친화적인 녹색 교통체계 구축

02 기본방향

- 국가 및 상위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계획은 수용하되 속초시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
- 교통 및 물류현황, 여건변화, 향후전망을 토대로 효율성, 다양성, 형평성 조화
- 공급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동해안권 접근성 개선 및 통과교통량 분산처리
- 교통 체계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터미널 신설 및 첨단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
- 지역간 효율적인 격자형 연계도로망 구축과 체계적 도로 운영
-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

03 추진전략

- 도시우회도로의 개설 및 도시환경 악영향 감소방안 마련
-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고 보행자 우선의 도로체계 구축
- 동해안 관광지의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
-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첨단시스템 도입
- 지속적이고 적용 가능한 주차공급 정책과 주차수요 관리정책 도입

2.2 간선도로망 기능별 기본방향

01 기본방향

▌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 신설로 인해 광역접근성의 증대와 통과차량 우회처리로 국도 7호선 기능 향상

▌주간선도로

· 생활권 및 지역간 연계 강화

· 지역간 통과교통의 도심집중을 배제하기 위한 우회도로 계획

▌보조간선도로

· 시가지 내부도로와 유기적 연결 도모

· 우회도로 개설 검토

▌내부도로

· 거주자 위주의 이용편리한 도로망 제공

· 친환경적인 도로계획 수립

02 가로망 계획

· 지구내 교통유발시설에 직접 연결되는 국지도로는 통과교통 배제

· 차량보다는 보행자 통행에 가로 기능 부여

· 셔틀버스, 마을버스 등의 소형버스,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 이용

· 수요대응형 버스 활용

구 분	기능적 측면	계획적 측면
국지도로	· 시내의 주거단위에 접근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로 · 통과교통 배제 ·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에 가로 기능 부여	· 출입허용 평면교차 · 설계속도 30~40㎞/h · 배치간격 0.5㎞ 이하 · 차로폭 3.0m · 시도의 일부와 농어촌 도로

2.3 교통수요 예측

01 장래 통행발생량 예측

【표 3-2-1-20】 속초시 통행특성 분석

구 분	단 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
인 구	인	83,213	134,809	139,060	142,068	143,760	2.4
목 적 통 행	통행	347,057	556,361	568,505	574,830	574,676	2.2
인구당 목적통행	통행/인	4.2	4.1	4.1	4.0	4.0	-0.2

주) 인구 및 통행량은 2040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에 맞게 보정하였음

02 목적통행량 예측

- 속초시 장래 목적 및 수단별 통행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 상의 목적 및 수단별 통행수요 예측치를 본 계획 장래 목표연도별 계획인구 및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함
- 2017년 속초시의 1일 목적통행량은 귀가목적이 가장 높은 44.2%의 통행량을 보이며, 등교와 쇼핑목적이 가장 낮은 3.9%의 통행량을 보임
- 장래 2040년 속초시의 1일 목적통행량은 귀가목적이 가장 높은 46.0%의 통행량이 예측되었으며, 등교목적이 가장 낮은 1.1%의 통행량으로 예측됨

【표 3-2-1-21】 속초시 목적통행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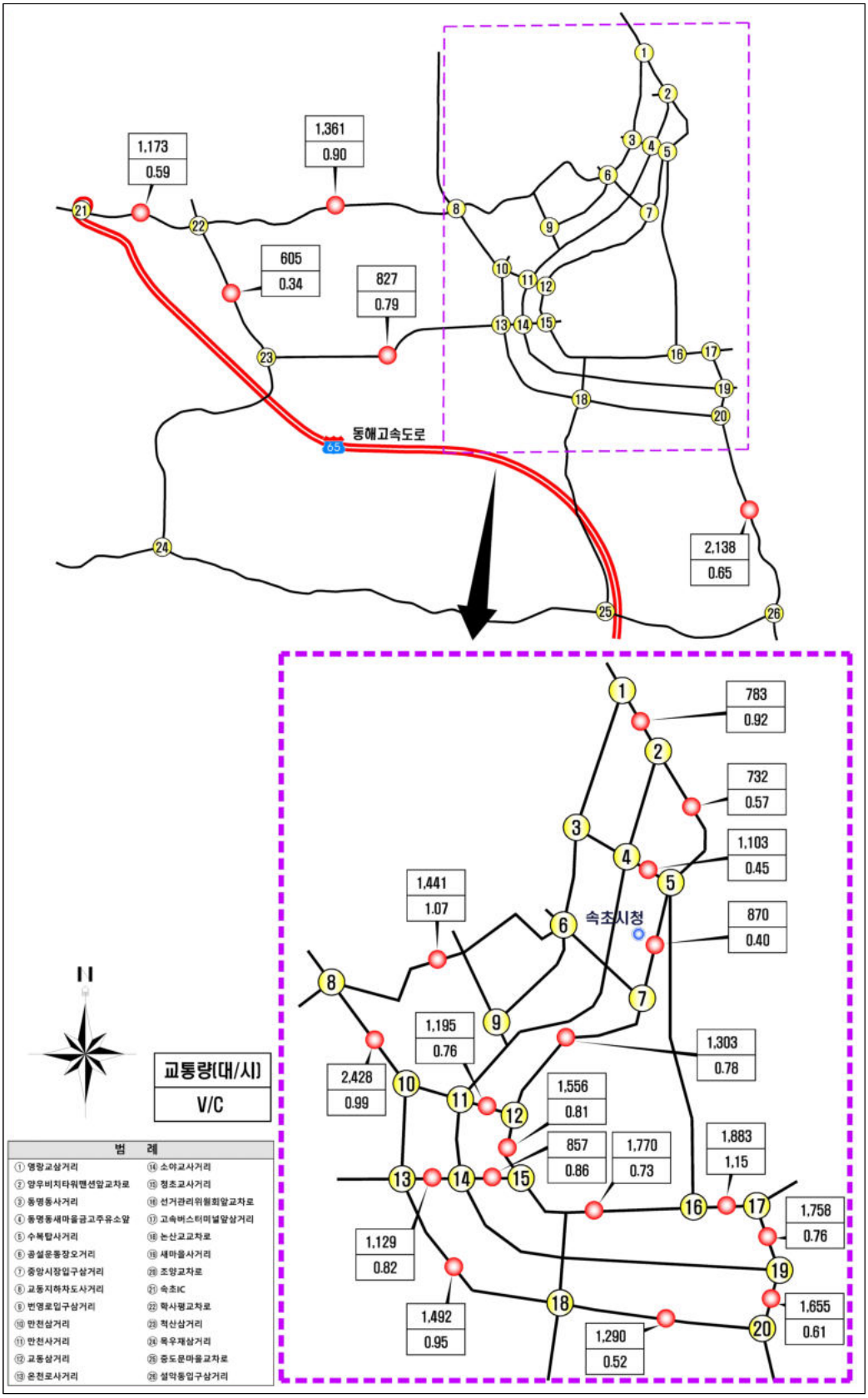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
	통행량 (통행)	구성비 (%)	통행량 (통행)	구성비 (%)	통행량 (통행)	구성비 (%)	통행량 (통행)	구성비 (%)	통행량 (통행)	구성비 (%)	
계	347,057	100.0	556,361	100.0	568,505	100.0	574,830	100.0	574,676	100.0	2.2
출 근	90,979	26.2	144,916	26.0	145,572	25.6	143,146	24.9	137,190	23.9	1.9
등 교	8,405	2.4	8,696	1.6	7,203	1.3	6,240	1.1	6,193	1.1	-1.4
업 무	15,711	4.5	24,997	4.5	25,146	4.4	24,755	4.3	23,725	4.1	1.9
쇼 핑	8,316	2.4	13,988	2.5	14,705	2.6	15,267	2.7	15,808	2.8	3.0
귀 가	153,291	44.2	249,364	44.8	257,711	45.3	264,210	46.0	268,498	46.7	2.6
여 가	33,056	9.5	53,790	9.7	55,599	9.8	56,961	9.9	57,826	10.1	2.6
기 타	37,299	10.7	60,610	10.9	62,569	11.0	64,251	11.2	65,436	11.4	2.6

03 교통소통상태 분석

【표 3-2-1-22】 장래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2040년)

노선		구간	차로수(편도)	교통량(대/시)	V/C	LOS
국도 7호선	동해대로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⑩만천삼거리	3	2,428	0.99	E
		⑪만천사거리↔⑫교동삼거리	2	1,195	0.76	D
		⑫교동삼거리↔⑮청초교사거리	3	1,556	0.81	D
		⑮청초교사거리↔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	4	1,770	0.73	D
		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	2	1,883	1.15	F
		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⑲새마을사거리	3	1,758	0.76	D
		⑲새마을사거리↔⑳조양교차로	4	1,655	0.61	C
		⑳조양교차로↔㉖설악동입구삼거리	4	2,138	0.65	C
국지도 56호선	미시령로	㉑속초IC↔㉒학사평교차로	3	1,173	0.59	C
		㉒학사평교차로↔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	3	1,361	0.90	E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⑥공설운동장오거리	2	1,441	1.07	F
	장단로	④동명새마을금고주유소앞↔⑤수복탑사거리	3	1,103	0.45	B
중앙로		①영랑교삼거리↔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	2	783	0.92	E
		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⑤수복탑사거리	2	732	0.57	C
		⑤수복탑사거리↔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	2	870	0.40	B
		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⑫교동삼거리	2	1,303	0.78	D
온천로		㉒학사평교차로↔㉓척산삼거리	3	605	0.34	B
		㉓척산삼거리↔⑬온천로사거리	2	827	0.79	D
		⑬온천로사거리↔⑭소야교사거리	2	1,129	0.82	D
		⑭소야교사거리↔⑮청초교사거리	2	857	0.86	E
청대로		⑬온천로사거리↔⑱논산교교차로	3	1,492	0.95	E
		⑱논산교교차로↔⑳조양교차로	3	1,290	0.52	C

【그림 3-2-1-7】 장래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도(2040년)



3. 교통 계획

3.1 속초시 도로망 계획

01 광역/간선/지역간 연결 도로망 계획

① 속초~고성간 고속도로(광역도로망 계획)

-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강원도」 및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2017,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속초~고성간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계획 반영
-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교통망 구축 및 통과교통량 우회 처리로 국도 7호선 등 속초시 관내 주요 도로 소통 기능 향상

② 영랑~신평간 도로(간선도로망 계획)

- 고성과 속초시간 연계성 및 영랑호 주변 접근성 확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장래 소통 애로구간인 중앙로, 동해대로 등 남북축 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소통 개선 효과

③ 장사~노학간 도로(간선도로망 계획)

-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남북축 연결) 신설을 통한 속초시 주요 지점 접근성, 편의성 개선 및 도심구간 소통향상 도모

④ 노학~조양간 도로(지역간 연결도로)

- 국도 7호선(동해대로)~국지도 56호선(미시령로)~온천로~떡밭재로를 연결하는 도심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속초시내 교통량을 분산하고, 속초IC 등 광역 및 간선도로와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⑤ 농공단지~도문동간 도로(지역간 연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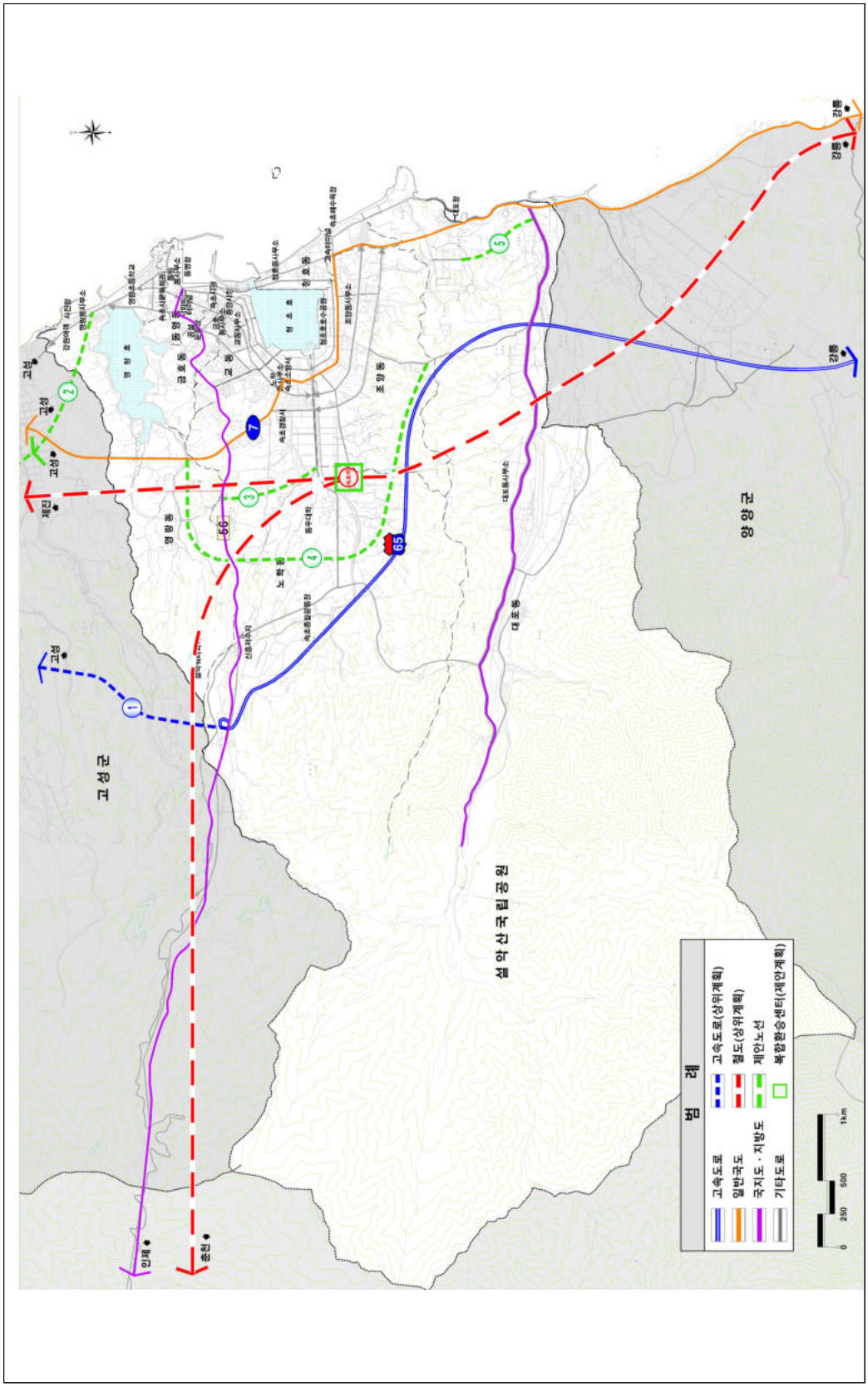
- 대포농공단지와 설악산로를 직접 연결하여 동해대로 교통량 분산 및 화물차의 도심구간 우회 도모

【표 3-2-1-23】 속초시 도로망계획

구분		구간	연장(km)
광역도로	①	속초~고성간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16.6[1)]
간선도로	②	영랑~신평간 도로	5.2(1.2)[2)]
	③	장사~노학간 도로	1.5
지역도로	④	노학~조양간 도로	7.0
	⑤	농공단지~도문동간 도로	1.2

주 1)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2017, 국토교통부」을 반영하여 계획을 최신화.
2) ( )는 속초시 내부 연장임.

【그림 3-2-1-8】 교통망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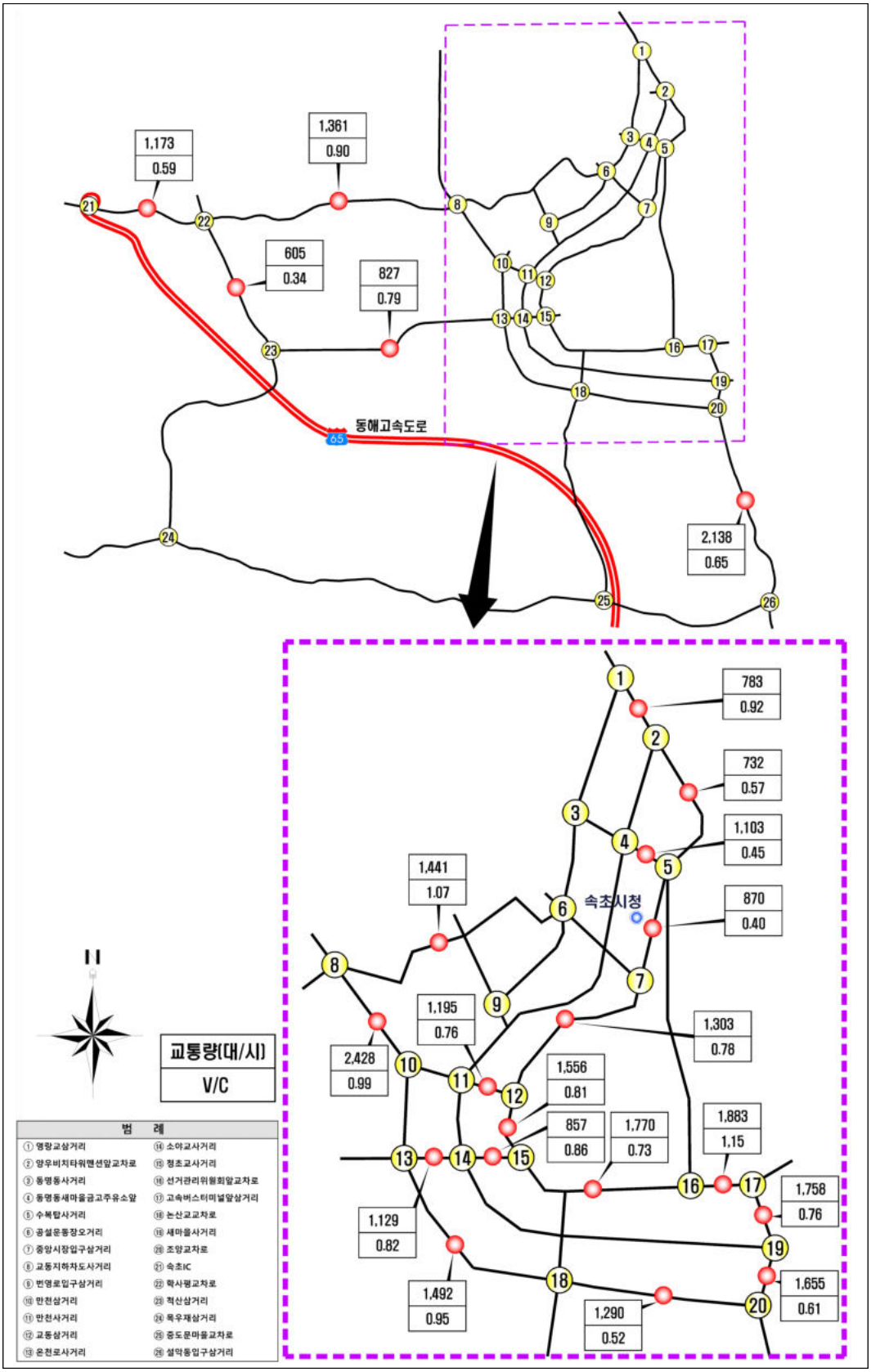


02 도로망 계획에 따른 용량 분석 변화

【표 3-2-1-24】 장래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2040년)_교통계획 반영전

노선		구간	차로수 (편도)	교통량 (대/시)	V/C	LOS
국도 7호선	동해대로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⑩만천삼거리	3	2,428	0.99	E
		⑪만천사거리↔⑫교동삼거리	2	1,195	0.76	D
		⑫교동삼거리↔⑮청초교사거리	3	1,556	0.81	D
		⑮청초교사거리↔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	4	1,770	0.73	D
		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	2	1,883	1.15	F
		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⑲새마을사거리	3	1,758	0.76	D
		⑲새마을사거리↔⑳조양교차로	4	1,655	0.61	C
		⑳조양교차로↔㉖설악동입구삼거리	4	2,138	0.65	C
국지도 56호선	미시령로	㉑속초IC↔㉒학사평교차로	3	1,173	0.59	C
		㉒학사평교차로↔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	3	1,361	0.90	E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⑥공설운동장오거리	2	1,441	1.07	F
	장단로	④동명새마을금고주유소앞↔⑤수복탑사거리	3	1,103	0.45	B
중앙로		①영랑교삼거리↔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	2	783	0.92	E
		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⑤수복탑사거리	2	732	0.57	C
		⑤수복탑사거리↔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	2	870	0.40	B
		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⑫교동삼거리	2	1,303	0.78	D
온천로		㉒학사평교차로↔㉓척산삼거리	3	605	0.34	B
		㉓척산삼거리↔⑬온천로사거리	2	827	0.79	D
		⑬온천로사거리↔⑭소야교사거리	2	1,129	0.82	D
		⑭소야교사거리↔⑮청초교사거리	2	857	0.86	E
청대로		⑬온천로사거리↔⑱논산교교차로	3	1,492	0.95	E
		⑱논산교교차로↔⑳조양교차로	3	1,290	0.52	C

【그림 3-2-1-9】 장래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도(2040년)_교통계획 반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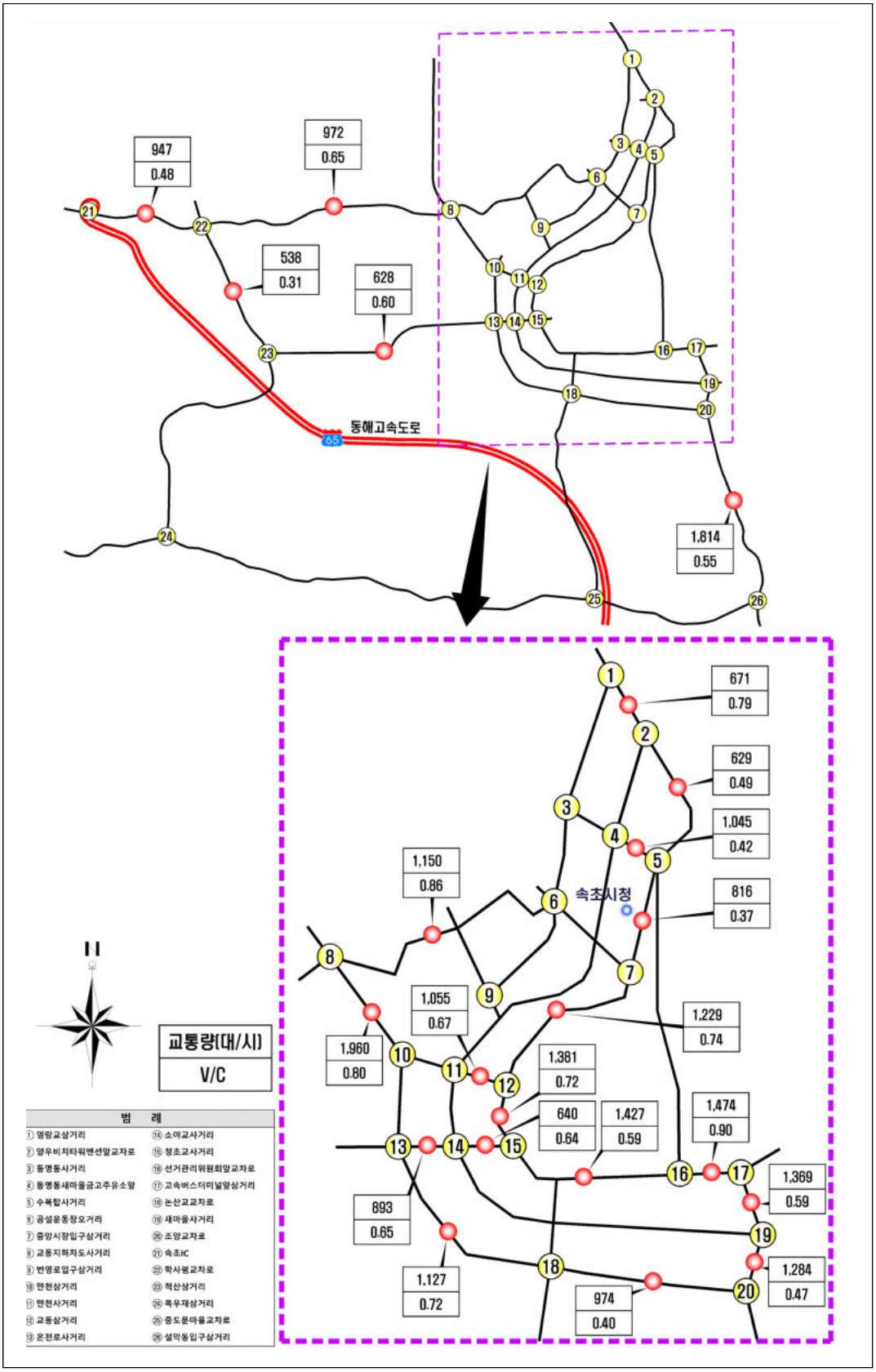


03 도로망 계획에 따른 용량 분석 변화

【표 3-2-1-25】 장래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2040년, 도로망 계획시)

노선		구간	차로수 (편도)	교통량 (대/시)	V/C	LOS
국도 7호선	동해대로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⑩만천삼거리	3	1,960	0.80	D
		⑪만천사거리↔⑫교동삼거리	2	1,055	0.67	C
		⑫교동삼거리↔⑮청초교사거리	3	1,381	0.72	D
		⑮청초교사거리↔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	4	1,427	0.59	C
		⑯선거관리위원회앞교차로↔ 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	2	1,474	0.90	E
		⑰고속버스터미널앞삼거리↔⑲새마을사거리	3	1,369	0.59	C
		⑲새마을사거리↔⑳조양교차로	4	1,284	0.47	C
		⑳조양교차로↔㉖설악동입구삼거리	4	1,814	0.55	C
국지도 56호선	미시령로	㉑속초IC↔㉒학사평교차로	3	947	0.48	C
		㉒학사평교차로↔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	3	972	0.65	C
		⑧교동지하차도교차로↔⑥공설운동장오거리	2	1,150	0.86	E
	장단로	④동명새마을금고주유소앞↔⑤수복탑사거리	3	1,045	0.42	B
중앙로		①영랑교삼거리↔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	2	671	0.79	D
		②양우비치타워맨션앞교차로↔⑤수복탑사거리	2	629	0.49	C
		⑤수복탑사거리↔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	2	816	0.37	B
		⑦중앙시장입구삼거리↔⑫교동삼거리	2	1,229	0.74	D
온천로		㉒학사평교차로↔㉓척산삼거리	3	538	0.31	B
		㉓척산삼거리↔⑬온천로사거리	2	628	0.60	C
		⑬온천로사거리↔⑭소야교사거리	2	893	0.65	C
		⑭소야교사거리↔⑮청초교사거리	2	640	0.64	C
청대로		⑬온천로사거리↔⑱논산교교차로	3	1,127	0.72	D
		⑱논산교교차로↔⑳조양교차로	3	974	0.40	B

【그림 3-2-1-10】 장래 주요 가로구간 용량 분석도(2040년, 도로망 계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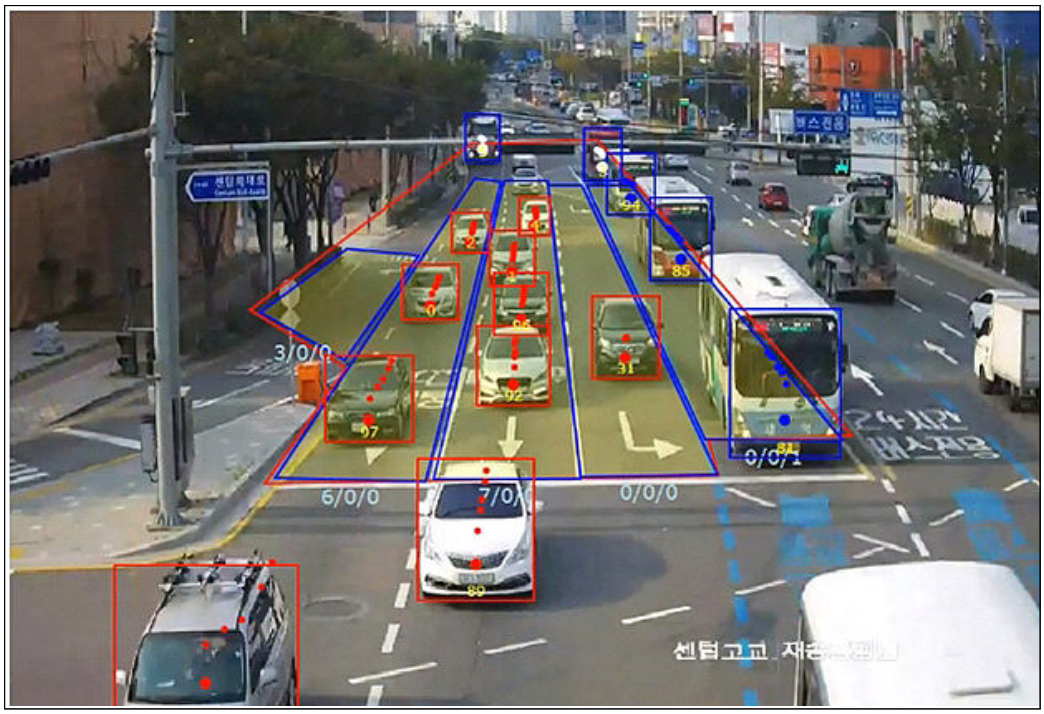
04 용량 초과 구간 개선방안 수립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통상태 개선을 위한 도로망 계획시 용량 초과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필요
-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용량 초과 가로구간의 차량 소통흐름 개선

▮ AI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신호 교차로 방향별 교통특성을 수집하기 위해 고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에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교통량, 대기행렬길이 등 자동으로 집계함과 동시에 전체 교차로는 물론 접근로별 서비스수준 (LOS)을 자동으로 분석
- 교차로의 교통상황 등 실시간 교통량을 수집하고 이를 스마트통합정보센터로 전송하여 수집된 자료의 가공을 통해 교통정책의 기본자료 및 교통환경의 변화를 검출하여 이를 반영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그림 3-2-1-11】 AI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개념



3.2 자전거 및 보행 교통계획

01 자전거도로 현황 및 문제점

-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 이용자의 이용에 어려움 발생
- 학교, 공공기관,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통행 유발 시설과 주거지역 간 연계가 미흡
- 자전거도로의 산발적 설치로 인한 자전거 동선 단절로 인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며, 자전거 보관소 등 관련 시설물도 부족

【표 3-2-1-26】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시설공급	· 자전거전용도로 부족 · 자전거 횡단보도 부족 · 자전거 보관소 등 관련 시설 부족 · 자전거도로 미흡 · 자전거 동선 단절구간 존재
이용현황	· 보차구분 부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발생 ·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 보도 이용으로 인한 보행자와의 상충 우려 · 도로주변 불법적치물 및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통행폭원 부족
안내체계	· 자전거도로 표지판 부족 · 자전거 보관소 안내체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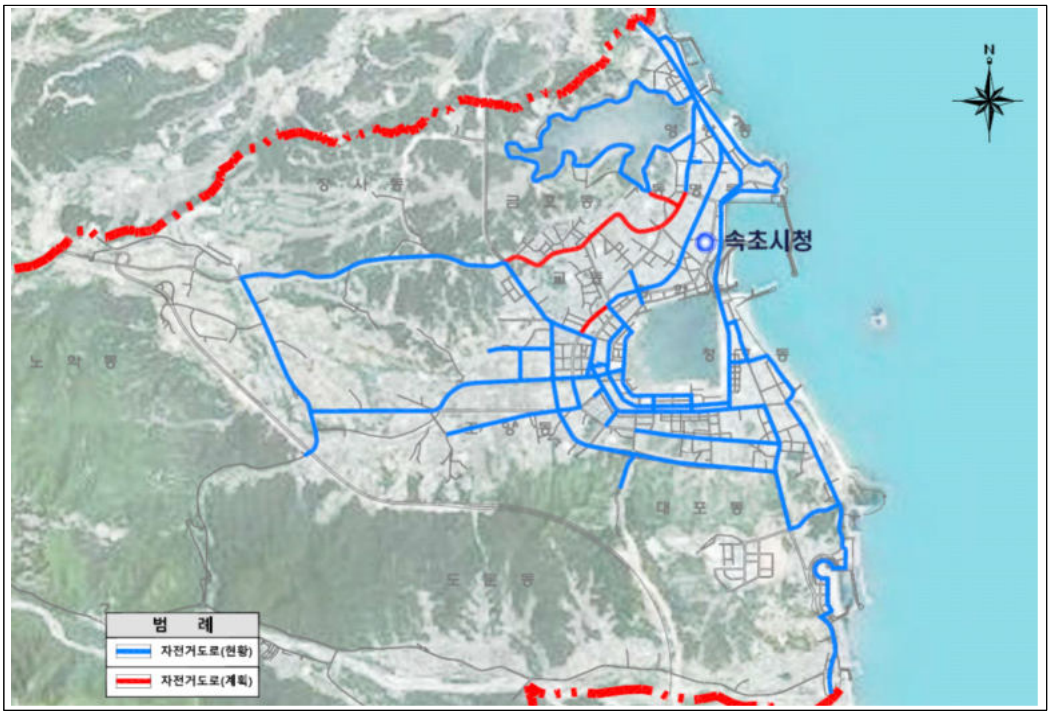
02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자전거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2010, 행정안전부」와 「생활권 단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망」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계획을 수립
- 대중교통수요의 분담과 환경공해 저감 및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공원, 공공기관, 학교, 업무시설 등 통행유발 시설과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망 체계를 구상
- 시가지 내 기존에 형성된 간선가로망, 보조간선가로망 및 중로 이상의 집분산도로상에 자전거도로 및 시가지 내 주요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상
- 단거리 통행으로 생활권이나 통학권을 고려하여 구상하며, 자전거 통행 주요 지점인 학교 주변은 자전거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및 이용시설 추가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통학로 및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 손쉬운 접근을 유도
- 장래 주요 통행유발 시설물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표 3-2-1-27】 자전거도로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현황	47	61.8	1	1.5	29	45.4	17	14.9
계획	3	3.4	-	-	3	3.4	-	-
계	50	65.2	1	1.5	32	48.8	17	14.9

【그림 3-2-1-12】 속초시 자전거도로 계획도



【표 3-2-1-28】 자전거 시설 정비방안

구 분		내 용
보관소	시설종류	· 용도에 따른 용량·기능의 다양화(지붕, 조명, 용량 등)
	설치장소	· 공공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 촉구(면적 5%) · 공공시설 옥내, 자전거 전용 주차 빌딩 등 설치 다양화
	설치주체	· 민자유치 추진 : 자전거보관소에 광고삽입 등 고려 · 민간설치 유도: 설치권장, 설치의무화검토
도 로	설치방법	· 시간대별, 자전거·자동차 겸용,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대
기타	시설종류	· 자전거 : 경량자전거, 다인승 자전거의 개발 · 보호장구 : 안전헬맷, 장갑, 보호대, 신발 등 · 자전거이동수단 : 승용차용 캐리어, 버스부착용 트레일러 등 · 안전표지 : 표지판, 노면표시 등

03 보행자 도로 기본방향 및 현황

▮ 기본방향

· 관광객 및 이용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통체계 및 연계교통수단의 중심 역할을 부여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이동 체계로 전환 필요

· 보행자도로 확충으로 보행자 안전성 및 편리성을 증진하여, 보행자 접근체계 정립

·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체계 확립과 안전시설 정비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위주의 교통체계 계획 수립 및 보행 밀집지역에 대한 보행동선 단절로 인한 보행자 차량 간 안전사고가 발생

· 보도 상 불법주차 및 보도폭 협소, 노상 적치물로 인한 유효보도폭원 부족으로 보행통행 소통저하 등의 문제 발생

· 이면도로 보도 미설치 및 속도저감시설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

04 보행자 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보행	버스 및 택시 정류장	· 교차로에 접속한 곳이 많음 · 버스정차대의 보도공간 협소	· 교차로에서 이격시켜 교통안전에 유의 ·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충분한 공간 확보
	안전지대	· 도로횡단의 장단거리 미흡	· 교차로 개선에 의한 교통섬 설치 · 도류화와 병행한 안전지대 설치
	노견	· 협소하거나 일부가로는 없음	· 안전운행을 위한 가능한 충분한 폭 확보
보도	보도폭	· 유효보도폭이 대체로 협소	· 건축선 내 보행통로 등을 활용한 폭원 확보
	녹지시설	· 주요 도로에 미설치	· 유효보도폭원 확보 가능범위 내에서 설치
	횡단보도	· 횡단보도 과다 및 불합리한 위치로 이용자 횡단 불편	· 불필요한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교차로 면적을 축소하여 보행거리 단축
보행 안전 시설	보차분리	· 이면도로 보차혼용 존재	· 이면도로 보차혼용지역은 보차분리 및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 보차혼용도로 상에 속도저감시설 부족으로 인한 보행안전성 미흡	· 보차혼용도로에 속도저감대책인 과속방지턱 설치
기능 연계	토지이용	·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 연계성 미흡	· 중심상업지역, 주거지역 및 학교 등 통행유발시설과 연계된 보행체계 검토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공간 미비	· 보행자 동선과 대중교통 정류장 대기공간의 분리 가능성 검토
	주차시설	· 주차장과 보행동선의 연계성 불량	· 보행자 동선과 연계하여 주차장 설치 계획

3.3 기타 교통시설 계획

01 철도계획

-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이에 따른 남북교류증대 측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노선의 연결에 대비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구간) 건설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 동해 북부선(강릉~제진)과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의 철도역사 주변지역을 특화된 역세권 계획 수립

【표 3-2-1-29】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구 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km)	총 사업비 (억원)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강원선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단선전철	93.7	22,840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동해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11.7	24,706
합계				205.4	47,546

02 공항계획

- 양양국제공항의 신설로 인하여 속초공항은 사실상 폐항되었으나, 장기적으로 단거리 수직이착륙 항공기 및 경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의 비상용 공항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

03 항만계획

- 속초항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5개 무역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설악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배후로 하여 환동해경제권의 거점항만 역할을 수행
- 속초항은 재정비를 통해 북방교역과 연계된 관광여객 거점항으로 기능에 부합하는 시설을 확충하여 대형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 상위계획상 국제관광거점항만으로서 속초항과 그 주변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하며 속초항은 크루즈 정박 시설 등 기능 강화

▌항만시설 정비·확충

· 속초항 : 여객 및 관광 거점항으로 육성, 국제 관광항 개발 및 크루즈선 유치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국가관리 항만으로 지정 추진
- 접안능력 3만DWT급 여객부두와 크루즈 2선석 증가(3선석 → 5선석)
- 대형 크루즈선 유치, 신규 항로개설 및 백두산 항로 활성화
- 여객부두 전용 선석 확충,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마리나 1식, 친수공간 조성 등
-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의 활용으로 항로 및 항내 안전도 제고

【표 3-2-1-3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구 분	속초항 기본계획
기본방향	· 동해권 관광 관문항만으로 기능 강화 · 동해권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항만으로 구축 · 항만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및 항만시설 확장을 통한 배후도로 차량 및 보행자 안전 도모
현 황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항종 :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면적 3,264천㎡(수상 : 2,932천㎡ / 육상 : 332천㎡) · 항만시설 현황 - 안벽 1,497m, 소형선 부두 3,228m, 방파제 1,394m, 야적장 41천㎡ - 접안능력 : 4선석(여객선 및 유류 포함), 하역능력 : 400천RT/년
관리운영계획	가. 항만기능 재정립 · 국제 여객 및 크루즈 산업 중심 항만으로서의 기능 강화 - 크루즈(여객)부두의 확장으로 대형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 확보 · 국가어업지도선부두 기능 도입으로 강원 및 동해권 어업지도 활동 지원 및 어업지도선의 안전 운영이 가능한 피향지 확보 나. 항만운영 및 관리 · 여객 및 크루즈 노선 유치로 관광·여객기능 활성화 노력 필요 · 적정 수요 확보로 예정된 크루즈(여객)부두의 규모 확장 추진 · 국제크루즈터미널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제고로 건물 활용도 증진 및 노후화 대비 · 국가어업지도선 전용 피항지 마련을 위한 기존시설의 기능 재배치 추진 다. 항만 환경개선 · 지속적인 항만 내 정화작업으로 해양관광 거점항으로서 환경 유지 ·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를 건설하여 항내 정온도 확보 및 통항 안전성 제고 · 협소한 소형선 부두를 확장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3.4 속초시 실행계획 및 현안사항

01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 (현안)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 청호동 설악대교 일원 ~ 속초해변
기간	· 2013년 ~ 2021년 (장기계속사업)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64km, B=9.0~15.0m
기대효과	·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해안관광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

0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선관위~조양로) (현안)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 동해대로(선거관리위원회) ~ 조양로(KCC 앞)
노선명	· 중로1-31호선(1977년 결정)
기간	· 2016년 ~ 2022년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333.0m, B=20.0m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0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청호동 설악덕장 일원) (현안)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 청호해안길(설악덕장 인근) ~ 설악덕장 ~ 청호로
노선명	· 소로3-132호선(1987년 결정)
기간	· 2019년 ~ 2021년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8.0m, B=6.0m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0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대포초교~농어촌공사) (현안)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 농어촌공사(7번국도) ~ 대포초교 뒤편
노선명	· 소로2-206호선(2000년 결정)
기간	· 2019년 ~ 2022년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377.0m, B=9.0m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0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마트~청소년문화의집) (현안)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 이마트 뒤편 ~ 청소년 문화의 집
노선명	· 소로2-97호선(1977년 결정)
기간	· 2019년 ~ 2021년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80.0m, B=8.0~12.0m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0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고속버스터미널~속초해변) (현안)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 고속버스 터미널(교통광장 4호) ~ 속초해변 입구
노선명	· 중로1-24호선(1976년 결정)
기간	· 2019년 ~ 2022년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14.0m, B=15.0→20.0m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01 기본방향

· 상위계획 및 확정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경유지를 포함하는 노선

· 버스공급 현황 및 장래 운행횟수 증가 구간 고려

02 대중교통계획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버스노선 개편 및 간선·지선 기능 강화
- 버스 유형별 기능구분 및 역할 정립

▮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 BIS(버스정보안내시스템) 및 BMS(버스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 최소교통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BIS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 정류장 노선안내체계 강화

▮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 기존 버스내부 시설 개선

03 대중교통계획의 세부 추진 목표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 속초시 도시유형 및 재정을 감안한 대중교통 적정 도입수단 분석 및 적용방안 제시
- 신규 대규모 개발지역 서비스 및 불합리한 노선에 대한 개편
- 철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철도역과의 연계방안

▮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 상위계획을 반영한 환승시설 구축방안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 차량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 도와 시군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대중교통정보체계를 추진 및 BIT(버스도착정보안내기) 구축계획 수립

· 교통카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

· 철도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버스우선처리기법 도입 검토

· 대중교통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합리적 버스노선개편(지간선체계), 버스운영여건 개선, 농어촌도로의 지속적 개선, 준공영제 장기검토로 비수익 노선조정

▮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 신교통수단 도입 및 자전거 연계방안 등 녹색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상위기관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및 요금제 적용으로 이용자 증대 유도

· 비수익 노선조정

·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한 출퇴근버스 등 도입운영 검토

· 저상버스, 도시철도 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확대

·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운전기사 교육강화, 정류장시설 및 안내체계 개선

04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경유지를 포함하는 노선과 버스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광역형 BRT 또는 도심형 BRT를 적절하게 도입

· 현재 속초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장래 도로 확장 및 버스공급현황, 주요 경유지 등을 고려하여 BRT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MaaS(Mobility as a service)로 스마트폰 하나로 카셰어링부터 철도, 택시, 자전거, 주차장, 렌터카 그리고 숙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진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부족한 주차시설 등을 해결하는 시스템 도입

5. 기타 운영계획

5.1 버스체계 운영계획

·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굴곡노선 최소화로 대중교통의 통행속도를 증진시키고 정시성을 확보

· 시내버스 이용시설과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

· 장래 버스교통수요에 의한 적정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버스노선체계를 합리화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및 접근성을 제고함

【표 3-2-1-31】 버스 운영 및 이용상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주 요 내 용
운영체계	경영체계	경영구조 취약 및 경영개선 미흡	· 영세한 경영구조 · 시장 진입제한에 의한 경쟁의식 결여 · 시설 재투자 부족
		버스산업의 환경 악화	· 승용차 증가로 인한 이용률 저하 · 이용요인 부족 및 도심 과밀화로 운행여건 악화
	노선운영	노선체계 불합리	· 노선의 도심집중으로 이용자 편익 감소 · 분산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 저하, 장거리 및 배차간격 증가 발생
	운영체계	운행 서비스 열악	· 정류장시설 부족 및 정시성 결핍, 배차간격 증가 · 과속, 불친절 및 차량내·외부 청결상태 불량
	정책측면	정책적 지원 미흡	· 물가관리에 의한 요금관리 · 업체지원을 위한 지자체 권한 미약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결여
이용체계	버스이용	인프라 구축 및 정보체계 낙후	· 간이터미널, 공영차고지 등 기반시설 부족 · 노선 및 운행관련 이용자 정보체계 미흡
	시민의식	이기주의 만연	· 근접 버스노선 및 정류장 설치 요구 · 차고지 등 필요시설의 기반시설 입지 반대

【표 3-2-1-32】 버스 운영 방안

단기적 방안	·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 버스노선 개편 : 중복노선, 수요 부족노선 및 굴곡노선 등 - 버스서비스 다양화 : 출퇴근, 심야, 마을, 공영, 장애인 버스 등 ·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 규제완화 및 관리방안 : 서비스평가제, 감독 및 처벌 강화 - 부분적 버스공영체계 도입 - 공동배차제 도입 : 노선 공동관리, 수입금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 ·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 : 버스정류장 및 시설 개선 · 시내버스 적정 공급
장기적 방안	·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 버스노선의 삼원화 : 간선노선, 지선노선, 벽지노선 · 버스관리체계 개선방안 : 일부구간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 : 버스 정보 안내체계 구축방안 · 시내버스 적정 공급

5.2 택시체계 운영계획

· 택시공급의 적정화로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업계 서비스 제공 질적 수준 향상

· 택시요금 적정계획으로 수요 증진 및 이용 서비스 개선

【표 3-2-1-33】 택시체계 추진방향

구 분	추 진 방 향
택시공급	· 택시공급제도의 이원화 · 택시수요와 대중교통수단의 수요에 대응한 공급 · 택시의 점진적 확대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
운수종사자	· 택시기사의 자질향상 및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향상 · 택시업체 종사자 복지증진 및 업무효율 증대
택시요금	· 택시요금구조의 적정성 검토
서비스 및 기타	· 택시 예약제 검토 · 택시 광역 단일 서비스 도입방안 검토

【표 3-2-1-34】 택시활성화 방안

구분	단기적	장기적
공급측면	· 택시수요 및 택시보급율 향상을 위한 적정대수 증차 공급 · 개인택시 면허자격기준 강화 및 양도·양수제도 개선	· 택시 수요 및 택시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적정대수 증차 공급 · 택시의 다양화(고급화) 추진
운수종사자측면	· 택시기사의 자질향상 추진 - 택시운전 취업면허제도 도입 · 택시업체 종사자 복지증진 - 택시운송수입금 관리제 정착	· 종사자에 대한 특별제도를 제정하여 운전기사의 근로여건 향상
요금측면	· 택시요금의 합리적 결정 - 현실에 적합한 차등구분 적용 · 택시요금구조 합리화 및 다양화 - 다양한 택시도입 및 택시요금 구조의 합리적 조정 및 다양화	· 시간내 요금단일화체계 구축 · 법인택시 운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도입
서비스 및 기타측면	· 택시서비스 예약시스템 도입 · 택시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유도	· 택시서비스 예약시스템 도입 · 택시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유도

5.3 교통체계관리(TSM) 방안

▌기본방향

·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도심 과밀화로 인하여 도로의 신설 및 확장, 철도건설, 대중교통노선 증설 등 중·장기적인 사업보다 직관적이고 단기적인 교통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필요

▌교통체계관리의 유형별 활용기법

· 교통체계관리(TSM) 사업은 새로운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기존에 사용되어 온 행정, 재정적 방안들을 단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종합화·체계화한 방법임

【표 3-2-1-35】 교통운영체계 관리기법 유형

유 형	교통체계관리 기법
차량통행 수요감소 기법	· 승용차 공동이용(합승) 유도 · 대중교통수단 요금 인하와 개인 교통수단 요금 인상 · 주차 환승시설과 대중교통 연계 ·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을 통한 이용 유도 · 준 대중교통체계 도입과 활성화 유도 · 자전거 및 보행자의 이용시설 개선 · 혼잡비용부과 - 혼잡통행료 징수 및 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등
도로용량 증대기법	· 신호운영 개선과 연동화 · 교차로 회전제한 권장 · 용량증대를 위한 차로정비 · 교차로 도류화 · 교차로와 가로구간의 기하구조 개선 · 트럭 통행제한 · 유연근무제 도입 등
수요와 공급감소 기법	· 승용차 통행 제한구역 · HOV 전용차로 : 기존차로 활용 · 불법주차 단속
수요감소 공급증대 기법	· 증설된 차로를 HOV 우선처리 또는 전용차로로 이용 · 불법주차 단속 : 용량증가,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체계관리 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개선방향
교통소통	간선도로	· 주정차, 대중교통, 이면도로 접근부 등의 상충으로 가로용량 감소 및 소통방해요인 증대 · 주요 결절점의 특정 접근로 및 이동류별 지체과다로 인한 가로구간 정체 발생	· 대중교통 소통처리방안 및 이면도로 접근관리방안도입으로 가로상의 소통능력 제고 · 신호 최적화 및 속도규제방법으로 통행차량 소통능력관리
	교차로	· 주요 가로 교차점, 장래개발계획에 따른 교차로 서비스수준 악화	· 장래 수요 유발요인 고려한 신호주기 최적화 및 기하 구조 개선으로 교차로 지체 최소화
	이면도로	· 이면도로 내 개별건축물 출입구 개설에 따른 동선체계 혼잡으로 소통 및 안전상 문제점 두각 · 이면도로 내 불법주정차로 양방통행 소통장애 발생	· 개별건축물 진출입동선의 일방통행 처리로 상충에 의한 혼잡요인 제거 · 일방통행 정비에 따른 횡단구성 재정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
대중교통	간선도로	· 자전거 수요에 비해 자전거전용도로 부족 · 버스베이와 택시정류장의 혼재로 이용자 및 차량 엇갈림 현상으로 혼란가중 · 버스베이 제원 불량으로 이용률 저하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통해 자전거 이용 유도 · 버스베이와 택시베이 구분 · 버스베이 제원 재조정 및 정차구획선 설치, 일부구간 버스중앙차로 설치
안내체계	간선도로 및 교차로	· 교통안전표지의 불일치로 운전자 혼란 가중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기준 미흡으로 기능성 저하	· 교통안전표지의 내용일치로 이용자 혼란요인 제거 · 설계기준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위치 조정으로 이용자 인지반응거리 및 시간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간선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등 비승용차 동선의 단절지점 존재	· 동선체계 확보로 자전거, 보행자의 이동성에 확보
	이면도로	· 이면도로상의 보차 분리시설 및 차량감속시설의 미흡으로 보행자 와의 상충 및 사고 우려	· 이면도로 내 차량감속시설의 설치로 보행자와의 상충 및 교통사고 최소화

▌교차로 개선방안

· 교차로를 통해 방향전환 및 목적지로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차로의 운영과 통제는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차지

· 교차로 용량과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기하구조 변경, 신호현시 최적화, 신호주기 최적화 등을 통한 교차로 개선이 필요함

【표 3-2-1-36】 교차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개선방향
차로배열	· 방향별 차로 배분 부적절 · 도로폭원 비효율적 활용	· 전용 회전차로 제공 · 길어깨 등 잔여부분 차로 활용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물	· 시인성 부족 · 신호주기, 현시 및 시간 부적절 · 교통안전시설물 부족	· 신호등 위치 효율적 배치 · 신호현시, 주기 최적화 · 비보호좌회전 확대
도류화	· 규격에 맞는 도류화 · 유도 및 안내표지 미비 · 회전처리 부적절	· 차로 재도색 및 노면표식 제공 · 규격에 맞는 도류화 · 적정 회전반경 제공
교통안전 및 운행	· 교차로 면적 과다 · 보행동선 과다	· 정지선 전진 배치, 교통섬 설치 · 횡단거리 단축, 보행자 안전지대 제공

▌신호운영 개선방안

· 교차로의 교통량과 교통용량 및 서비스 수준에 의해 적정한 운영 필요

· 신호체계운영상 불합리한 신호주기 및 신호현시와 첨두시간에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한 연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

【표 3-2-1-37】 신호운영 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개선방향
신호주기 및 현시	· 교통수요와 신호주기의 불합리성 · 교통축별 신호주기 및 현시의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에 의한 지체가중	· 교통수요를 반영한 신호시간 길이 최적화 · 가급적 축별 일정한 신호주기 및 현시운영으로 연동화 효과 증대
방향별 교통량분포와 신호운영	· 중방향 신호현시 재분배 · 기하구조와 불일치한 신호운영체계	· 중방향 현시 추가 부여를 통한 교차로 통과 유도 · 기하구조에 적정한 신호운영체계 수립
횡단보도 신호운영	· 보행자 신호시간 부족	· 보행자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시간 확보

5.4 환승센터 운영계획

▌환승센터 정의

【표 3-2-1-38】 환승센터 정의 및 종류

구 분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정의	·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위해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집합된 시설	· 교통수단 간의 환승시설과 상업, 업무 등 복합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집합된 시설
관련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종류	· 대중교통 연계형 환승센터 · 주차장형 환승센터 · 터미널형 환승센터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광역복합환승센터 · 일반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유형 구분

【표 3-2-1-39】 환승센터 유형 구분

구 분	환승센터 유형 구분	대중교통연계수송형 환승센터
정의	·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특성	·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을 연계시키기 위한 시설 · 세부시설 : 주차장, 버스정류장, 보행이동시설, 정보안내시설 등	· 수단간 연계·환승을 위해 2개 이상의 버스정류장이 한 장소에 집합되어있는 시설 · 세부시설 : 버스정류장, 보행이동시설, 정보안내시설 등
구 분	**터미널형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정의	·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 사회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모여있는 환승센터
특성	· 노선버스나 여객선의 시종점이 되는 시설 · 버스나 선박의 주 ·박차 , 매표 기능을 위한 시설 등이 필요 · 세부시설 : 터미널, 주차장, 버스정류장, 보행이동시설, 정보안내시설	· 모든종류의 환승시설이 설치 가능 · 환승지원시설 -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설 -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근생, 판매, 의료, 업무 등)

▌환승센터 적용방안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강원선)과 동해선(동해북부선)의 교차점인 속초역에 환승을 지원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수단간 환승 및 속초역~주요 지역간 대중교통 연계방안 수립

2 물류계획

1. 현황분석

1.1 현황 및 문제진단

01 일반현황 및 배경

· 속초는 강원 영동권의 물류·관광 거점도시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와 동서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

· 속초항을 통한 산업시설과 연계 물류 체계 구축으로 성장 가능성 확보

02 화물운송 현황

· 2018년 속초시 통계연보 기준 2017년 연간 화물 운송량은 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847,342톤, 해운에 의한 수송이 73,531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1】 연간 화물수송 운송량

구 분	화물 수송(자동차)(ton)				해운 수송(ton)		
	계	일반	개별	용달	계	외항화물	연안화물
2014	860,073	573,080	277,397	9,596	58,523	52,623	5,900
2015	847,417	574,610	265,567	7,240	431	431	-
2016	809,568	577,080	224,033	8,455	17,003	1,798	15,205
2017	847,342	581,800	256,200	9,342	73,531	2,914	70,61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4 문제점 및 잠재력

· 물류자원 발굴과 서비스 시설의 개발 가능성 높음

· 시민생활환경 조성의 선진화로 물류체계 개선

구 분	문제점 및 요인	결 과
물리적 측면	· 연계수송시설 미흡 · 접근 체계망 구축 미흡	· 소형 및 비영업용 차량 증가로 낮은 적재율 및 대형차량의 공차율 증가 · 도로 혼잡으로 인한 문제 발생
행정적 측면	· 사업규제 및 혼적재 규제 · 화물규제 등	· 과적성향 발생 인한 사고율 증가 · 이용자들의 화물차량 이용 기피
경제성 측면	·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 체계적인 시스템 경영관리 부족	· 운송질서 파괴 및 관리통제의 어려움

1.2 관련계획 검토

01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국토교통부)

【표 3-2-2-2】 전략별 추진방향

전 략 사 업	내 용
국제물류시장 진출확대	· 물류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기반 구축
	· 유라시아, 북극해 등 국제물류지도 변화에 따른 물류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통합 물류로드맵 구축
	· 항공 및 해운 물류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성장역량 확보
	· 한국형 GTO육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확대
시장 선진화 및 규제혁신	·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 시대 도래에 따른 화물운송시장 개편
	· 물류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
	· 철도물류 전문경영체제의 구축 및 점진적 경쟁환경 조성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개발	· 물류산업의 장기적 성장역량 확보를 위한 물류기술개발 및 보급 기반 구축
	· 물류비용 최소화 및 효율증대를 위한 단절없는 물류체계 구축 및 신개념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 ICT기반의 스마트 물류정보화
지속가능 물류환경 조성	·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 대량수송수단 활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
	·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류안전·보안체계 구축
	· 그린포트 구축 및 재해대응 시스템 마련
	· 선박 안전성 강화 및 해사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융복합물류 인프라 구축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물류 인프라의 체계적 공급체계 구축
	· 국제 및 전국/광역단위 물류거점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체계 구축
	· 의왕ICD현대화 및 수도권 제2내륙컨테이너기지 추진계획 수립
	·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 수요 대응형 공항 배후단지 개발 및 물류시설 확충 등 항공 허브기능 강화
	· 해운항만 물류 수요창출형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확대 및 배후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신규 물류시장 개척 투자 유치 활성화	·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물류 스타트업, 신선물류 등 신규 물류시장 개척
	· 융복합 물류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재정비 및 기반구축
	· 공·항만 배후단지 비즈니스 모델 기반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생활밀착형 물류기반 조성	· 택배 및 물류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국가안전처 등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긴급대응물류체계 협업
	· 물류산업 종사자 복지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추진

출처 :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국토교통부

02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안)(2021~2040)

▌기본목표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강원

· 웰니스 공동체 강원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 강원

▌주요 추진전략

혁신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	· 연계와 협력 통한 혁신적 지역 발전 조성 · 지역 혁신을 위한 상생형 지역균형발전 · 농산어촌 지역혁신 강화와 맞춤형 지원 · 강원도-시군간 혁신적 협업체계 구축
산업혁신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산업공간 육성 ·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 · K-뉴딜 연계 강원형 뉴딜 사업 추진 · 매력있는 문화공간 창출과 문화·생활공간 조성 · 협력적 관광 자원 발굴과 융복합 관광 활성화
포용·행복 공동체 생활 공간 조성	· 인구감소 대응 도시지역 개발 관리 · 뉴노멀 맞춤형 주거생활공간 조성 · 강원형 포용적 주거복지 확충 · 지능형 강원공간 조성 및 스마트 공간관리 혁신 · 안전하고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능형 방재 구축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태환경 관리	· 강원 국토환경 통합관리 · 기후변화 대응 강원환경조성 · 환경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품격있고 매력있는 강원경관 창출
광역 물류 교통망 확충	· 광역 교통망 체계적 구축 ·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강원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도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평화경제지역 한반도 중심지 기반 강화	· 평화경제지역 한반도 중심지 기반 강화 · 평화경제지역 SOC 기반 구축

▌시군별 발전방향 (속초시 : 스마트한 국제관광·교류 “명품도시 속초”)

· 융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국제관광지대 조성

- 설악~금강산 관광지구 연계 국제적 평화관광지대 육성
- 동해안권 스마트 관광거점도시 육성

· 도시와 전원이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친환경 도시구축

- 깨끗한 연안환경, 항포구 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활성화 도모
- 취수원 추가확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한 물자립도시 완성

·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조성

- 어촌어항뉴딜사업을 통한 혁신어촌구현
-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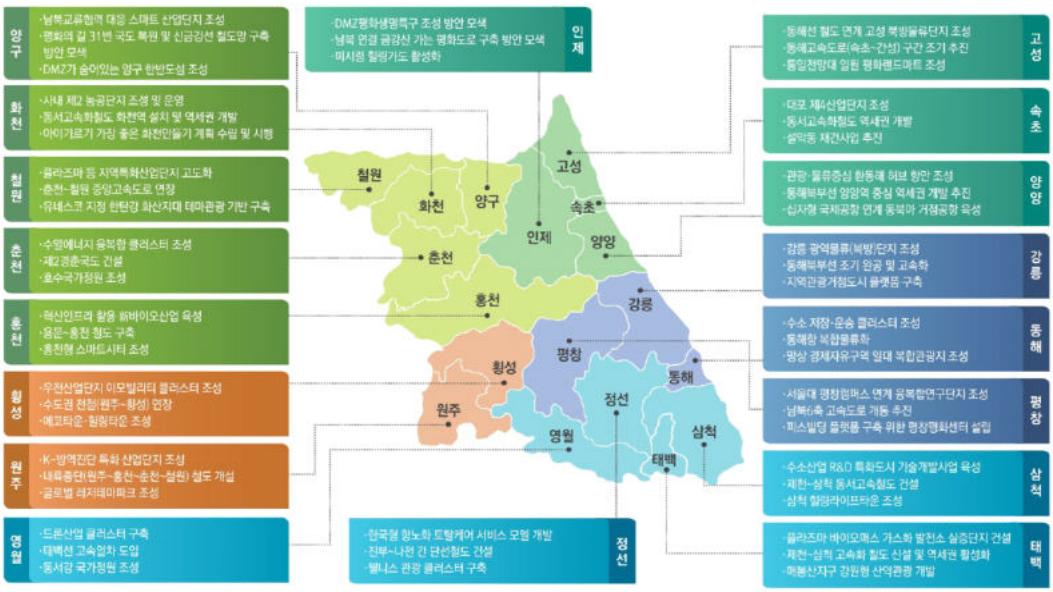
· 지역특화산업고도화 및 지역 맞춤형 산업생태계 조성

- 대포제4산업단지조성
- 속초대표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활용한 6차산업방안 모색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육성을 위한 SOC확충

-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북부선철도 조기건설
- Fly-Train-Cruise 연계크루즈항로 개설 및 크루즈항만 인프라 확충

【그림 3-2-2-1】 시군별 주요사업



03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

【표 3-2-2-3】 전략별 추진방향

전 략 사 업	내 용
7대 추진전략	·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택배, 유통 등 생활물류 활동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생활물류 인프라 확충을 도모
	· 전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서비스로 자리 잡은 물류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물류복지 구현 기반 조성
	· 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집적 물류시설 개발을 실수요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활성화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도모
	· 도시권 화물터미널, 재래유통시설, ICD 등 8~90년대 개발된 낙후된 물류시설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물류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물류시설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물류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유도하여, 주민친화적 친환경·안전 물류체계로 선진화 유도
	· 소량다품종 On-Demand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공유경제형 물류시설 도입 등을 통해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지원
	· FTA 확산, 대외교역 및 해외직구 활성화 등 국경 없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역량 강화

출처 :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 국토교통부

▮ 거점별 물류단지 배치계획

항목 \ 지역		춘천권	원주권	동해권	속초권
행정구역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 횡성, 평창	동해, 삼척, 정선, 영월, 태백	속초, 고성, 강릉, 양양, 인제
화물특성		농산물, 소비재	농산물, 수출입화물, 기자재, 공산품	수출입화물, 농수산물, 공산품, 소비재, 기자재	농수산물, 소비재
총공급규모		- 2012년 실적: 174천㎡ - 추가공급규모: 276천㎡ - 2017년 공급계획: 450천㎡			
주요기능		대도시 소비수요와 북서부지역 물류집산	남서부지역 물류 처리	남동부지역 물류의 집산	동북부지역 물류집산
시설	기존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터미널, 철도CY	물류단지, 철도CY, 농수산물도매시장
	권장시설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쇼핑센터, 산지농산물 유통시설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산지농산물 유통시설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산지농수산물 유통시설, 쇼핑센터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산지농수산물 유통 시설

출처 :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변경)(2014~2017), 2014년도

1.3 종합분석

▮ 연계수송시설 미흡

· 창고. 배송센터 등이 부족하며, 유통·물류 중심기지로의 역할 요구

▮ 도시인프라의 부족

· 도로 등의 도시 인프라와 더불어 유통·물류시설의 투자가 미흡하고 중요도 인식이 부족하여, 유통·물류 관련비용 급증 등 문제발생으로 지역 경제 성장 저해

·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녹색 물류체계와 에너지 개발축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신 교통 접근체계 도입을 위한 당위성 제고

▮ 경제성 측면

· 취업선호도가 낮고 물류시설의 지역내 입주를 반대하는 등 기피산업으로 인식

▮ 물리적 측면

· 연계 수송시설이 미흡하며, 접근 체계망 구축 미흡

· 화물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시설공급 부족

▮ 행정적(법적) 측면

· 사업규제 및 혼·적재 규제 등의 화물규제로 인한 화물차량 이용 기피현상 발생

2. 목표설정

2.1 유통·물류시설 계획

· 속초항-속초역세권을 연결하여 동북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유통・물류단지 조성

· 동서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도를 활용한 유통단지 설치(민간참여 유도)

· 환적기능, 복합 물류·창고시설, 유통·업무지구, 배송센터 입지 조성

· 통일시대 대비 북방물류기지의 선도적 위치 확보

2.2 화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방안

· 화물차량 노선의 복선화·입체화를 위해 우회로 확보 및 화물차량 도심접근 제한

- 속도 규제 및 중량 및 과적 규제, 위험물 규제(위험물 차량통행 규제)
- 교차로 회전 규제(이중정지선 등)
- 지역 규제(도심 및 지역별 통행 규제), 대형차량 규제(야간 등)

· 화물차량 교통관리 : 교통안전, 과적 규제, 대형차량 규제, 지역 규제 등을 통한 관리

· 항만기능 확장 : 속초항의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류 및 선적 시스템의 정비 및 확장

· 철도시설 활용 : 동서고속철도, 동해선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종합물류서비스 도입 등 화물역 거점화 추진

3. 물류시설 계획

3.1 현황분석

01 현황 및 문제진단

▮ 일반현황 및 배경

· 속초는 강원 영동권의 물류·관광 거점도시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와 동서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

· 속초항을 통한 산업시설과 연계 물류 체계 구축으로 성장 가능성 확보

▮ 화물운송 현황

· 2018년 속초시 통계연보 기준 2017년 연간 화물 운송량은 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847,342톤, 해운에 의한 수송이 73,531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4】 연간 화물수송 운송량

구 분	화물 수송(자동차)(ton)				해운 수송(ton)		
	계	일반	개별	용달	계	외항화물	연안화물
2014	860,073	573,080	277,397	9,596	58,523	52,623	5,900
2015	847,417	574,610	265,567	7,240	431	431	-
2016	809,568	577,080	224,033	8,455	17,003	1,798	15,205
2017	847,342	581,800	256,200	9,342	73,531	2,914	70,61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문제점 및 잠재력

· 물류자원 발굴과 서비스 시설의 개발 가능성 높음

· 시민생활환경 조성의 선진화로 물류체계 개선

구 분	문제점 및 요인	결 과
물리적 측면	· 연계수송시설 미흡 · 접근 체계망 구축 미흡	· 소형 및 비영업용 차량 증가로 낮은 적재율 및 대형차량의 공차율 증가 · 도로 혼잡으로 인한 문제 발생
행정적 측면	· 사업규제 및 혼적재 규제 · 화물규제 등	· 과적성향 발생 인한 사고율 증가 · 이용자들의 화물차량 이용 기피
경제성 측면	·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 체계적인 시스템 경영관리 부족	· 운송질서 파괴 및 관리통제의 어려움

02 종합분석

▌ 연계수송시설 미흡

· 창고·배송센터 등이 부족하며, 유통·물류 중심기지로의 역할 요구

▌ 도시인프라의 부족

· 도로 등의 도시 인프라와 더불어 유통·물류시설의 투자가 미흡하고 중요도 인식이 부족하여, 유통·물류 관련비용 급증 등 문제발생으로 지역 경제 성장 저해

·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녹색 물류체계와 에너지 개발축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신 교통 접근체계 도입을 위한 당위성 제고

▌ 경제성 측면

· 취업선호도가 낮고 물류시설의 지역내 입주를 반대하는 등 기피산업으로 인식

▌ 물리적 측면

· 연계 수송시설이 미흡하며, 접근 체계망 구축 미흡

· 화물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시설공급 부족

▌ 행정적(법적) 측면

· 사업규제 및 혼·적재 규제 등의 화물규제로 인한 화물차량 이용 기피현상 발생

03 목표설정

▮ 유통·물류시설 계획

· 속초항-노학역세권을 연결하여 동북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유통·물류단지 조성

· 동서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도를 활용한 유통단지 설치(민간참여 유도)

· 환적기능, 복합 물류·창고시설, 유통·업무지구, 배송센터 입지 조성

· 통일시대 대비 북방물류기지의 선도적 위치 확보

▮ 화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방안

· 화물차량 노선의 복선화·입체화를 위해 우회로 확보 및 화물차량 도심접근 제한

- 속도 규제 및 중량 및 과적 규제, 위험물 규제(위험물 차량통행 규제)
- 교차로 회전 규제(이중정지선 등)
- 지역 규제(도심 및 지역별 통행 규제), 대형차량 규제(야간 등)

· 화물차량 교통관리 : 교통안전, 과적 규제, 대형차량 규제, 지역 규제 등을 통한 관리

· 항만기능 확장 : 속초항의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류 및 선적 시스템의 정비 및 확장

· 철도시설 활용 : 동서고속철도, 동해선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종합물류서비스 도입 등 화물역 거점화 추진

3.2 물류시설 계획

01 유통단지 설치

▮ 유통 · 물류단지

구 분		내 용	비 고
북방물류유통단지	기본방향	· 대포항, 속초항이 연계가능한 유통·물류기능 배치 · 유통·물류단지를 지정하여 유통기한에 민감한 농수산물 유통기능 담당 및 농수산물 집하장 및 1차 가공처리 기능 담당 · 공산품에 대한 운송·집화·하역 기능 담당	
	배치계획	· 농산품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냉동·냉장 보관창고 기능 배치 · 농산물 이송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배치 · 도소매를 위한 유통판매시설 배치 ·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등 지원용지 배치	
	내 용	· 농산물유통센터, 전문도매시설, 집배송단지, 창고, 저온저장고 설치와 연계한 터미널, 휴게소 등 유치 · 대북교류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한 광역교통망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3 기타 기반시설 계획

1. 정보 통신 시설

1.1 현황분석

01 우편현황

· 우편물 취급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취급건수는 2015년 증가 후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

【표 3-2-3-1】 우체국 시설 현황

구 분	우체국수							직원수	집배원수
	계	일반국	분 국	별정국	군우국	분 실	우편취급소		
2015	12	8	-	1	1	-	2	105	47
2016	11	7	-	1	1	-	2	101	47
2017	11	7	-	1	1	-	2	101	48

【표 3-2-3-2】 우편물 취급 현황

구 분	계 (천통)			국 내 (천통)			국 제 (천통)		
	소 계	접 수	배 달	소 계	접 수	배 달	소 계	접 수	배 달
2015	12,666	3,037	9,629	12,655	3,031	9,624	11	6	5
2016	13,281	3,198	10,083	13,268	3,192	10,076	13	6	7
2017	12,464	3,097	9,367	12,448	3,091	9,357	16	6	1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2 인터넷 이용현황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OECD 국가별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수는 41.5인(5위)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은 특별시, 광역시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강원도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스마트시티(Smart-City) 건설을 위한 기반 여건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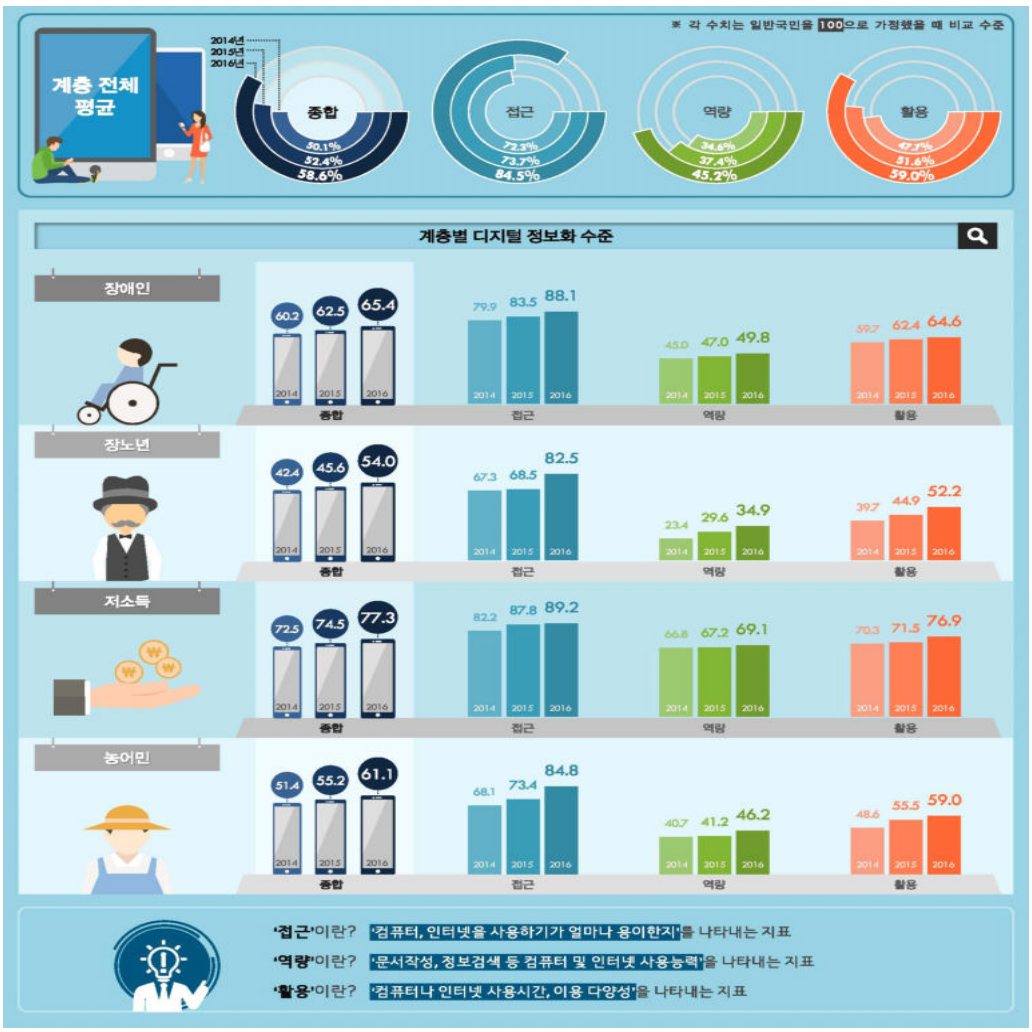
【표 3-2-3-3】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구분	특별시 · 광역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이용률	90.5	93.3	93.6	89.0	93.9	91.8	97.0	90.3	83.1	88.8	86.5	90.1	86.7
순 위	6	4	3	9	2	5	1	7	13	10	12	8	11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03 정보통신 기능의 여건변화

- 2017년 인터넷이용자 수는 4,5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4만명이 증가
- 인터넷이용자 중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97.9%이며, 인터넷 이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5.7시간으로 조사
- 인터넷이용자의 쇼핑·뱅킹 서비스 이용률은 ▲인터넷쇼핑 59.6%, ▲인터넷뱅킹 63.1%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용률은 ▲인스턴트메신저 95.1%, ▲SNS 68.2%, ▲이메일 60.2%로 조사
- 모바일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행태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격차 실태 현황을 보면 유·무선 정보통신환경에서 정보취약계층(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58.6%로 전년(52.4%) 대비 6.2% 개선



1.2 목표설정

01 기본방향

·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춘 시민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는 정보체계 구상, 정보망 구축, 정보의 활용방안 구상

· 국제 교류공간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 스마트도시(Smart-City) 실현을 목표로 정보통신시설 첨단화 및 지역정보화 계획 추진

02 기본목표

· 공공정보 개방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환경 조성

- 정부 3.0[1]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 실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의 지속적 관리, 도시현황 파악,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등을 통한 도시정보의 시민에 공개를 통한 참여 확대

· 사회적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격차 축소

- 초연결사회, IoT 등 디지털 혁명시대에 도래한 만큼 사회에 정보통신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실현

· 스마트시티(Smart-City[2]) 실현

- 여러 부문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창조도시를 건설
- Smart-city : 모든 도시기능에 디지털 기능을 접목
  ①스마트 거버넌스 ②스마트에너지 ③스마트빌딩 ④스마트 이동성 ⑤스마트 기반 ⑥스마트 기술 ⑦스마트 헬스 ⑧스마트 시민
- 강원도를 중심으로 인접도시와의 서비스, 정보, 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호환 및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인접도시와의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도시 성장 및 과밀화 등으로 안전, 교통, 범죄, 재난, 재해, 에너지,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방범·방재,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이 도입
- 개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도시를 총괄·통합관리 필요

---

1) 정부 3.0 :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의 비전실현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소통 협력함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2) Smart-city :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 도시 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도시 (**Smart-city ⊃ U-city**)
전통적 관계망과 서비스가 디지털과 통신 기술에 힘입어 더 효율적으로 된 곳

1.3 실천전략

01 도시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및 구현방안 개발

- 도시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속초가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시
- 교통현황(교통정체, 자동차 등록, 법규위반, 대중교통, 주차 등), 사고현황(사고 취약지점, 사고유형, 차량용도별 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등), 기타현황(기상정보 등) 분석

02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이용자 편리성 도모

-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관내 정보 제공으로 시민 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
- SNS 운영의 체계화 효율화를 통한 시민에 유용한 생활편의 정보전달 지속
-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속초시 홈페이지 개선
- 각종 발급 민원에 대한 다양한 방식 마련

03 행정업무 및 도시관리의 정보화

-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허가, 지방세, 시설물 관리 등 도시관리의 정보화
-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및 분석이 가능한 정보인력 확충으로 관련 제도 정비
- 정보기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체계 구축

04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적극 대처

-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스마트 정보 격차 해소
- 인터넷 매너 지키기, 인터넷 중독 예방

1.4 스마트도시의 실현

01 기본방향

▌미래 정보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인프라 조성

· 미래정보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여 미래 정보 교환량 증가에 대비

· 장래 정보이용 수요에 대응해 개인, 기업, 공공부문간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정보의 안정된 제공을 위한 전송장비와 통신회선망 확충

▌시민참여가 가능한 정보환경 조성

· 향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와 도시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환경 조성

▌스마트 사회 구현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간 내에 접목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과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02 실천전략

▌스마트시티(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

·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행정, 방범, 교통, 환경, 방재, 안전,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분산 운영된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대량의 도시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제공

· U-민원서비스, 지역생활정보 포털서비스 등을 통해 유·무선 포털에 접속한 시민에게 통합된 도시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와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운영

· SNS(Social Network Servic) 등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편리한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

▌스마트 행정도시 기반 구축

· 도시의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 대신 ICT기술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저비용 도시문제 해결방안 수립

·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지원 및 인력 양성

·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 적용환경 조성

03 정보인력의 확충 및 교육 확대

▮ 정보화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산·학·연 협력체의 인프라·기술·서비스의 확산과 교류로 기술개발 및 정비기술의 지원

· 지역대학을 활용한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

▮ 정보화 교육의 확대

· 시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정보화 저변인구 확산을 위해 장애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의 운영으로 시민의 정보활용능력이 사회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삶의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모

04 스마트도시 구현

▮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 구현

· 차량-도로 정보공유 인프라 기술, 자율주행 통합제어 기술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 환경 및 자율주행 버스시스템 구축

- 정밀도로지도, 정밀 GPS,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교통정보통합관제센터 등 자율주행차 기반시설 구축
- 산업단지 내에 전기로 운영되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율주행 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지 내 대중교통과 연결 또는 셔틀버스로 활용하며, 출퇴근시간 외 이동이 많지 않은 산업단지 내 버스 운행을 줄여 탄소배출 감축 도모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률 제고 및 교통혼잡·정체 최소화 방안 마련

- 신호등 영상 감지 기반의 분석을 통하여 보행자를 위한 음성안내 알람 제공으로 횡단보도구간의 보행안전 확보와 일반차로 구간의 교통영상분석 기반 교통정보 제공

· 공영주차장 정보제공서비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 도모

- 공영주차장 내 주차면 감지기를 통해 주차 가능 대수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와 주차장의 위치 정보를 PC,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

▌스마트한 환경관리를 통한 Green City 구현

·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 IoT, 빅데이터, AI, ESS(에너지 저장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거래플랫폼 구축, 수요자원 생태계 구축, 도시 내 실증사업 추진
- 시민이 참여하여 생산하고 아낀 전기를 거래하고, 지역사회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산자원사업을 주도하여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육성
- 다양한 기기 또는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관리 도모

- 미세먼지 측정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예측을 분석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

· 사업장 배출시설의 스마트 모니터링과 최적 관리

- 배출시설 밀집지역, 대기질 악화 지역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관련사항을 빅데이터화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에 활용

·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기감시 시스템 및 정보체계 구축

- 오염감시용 드론에 환경센서 및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관리지역 배출원 감시
- 드론에서 관측한 각종 자료를 저장 및 검색, 타 자료와의 융합 등 활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

[그림 3-2-3-1] 스마트 그리드



자료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 기존의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도시안전관리체계 구축

-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등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감시 수행
- 미세먼지, 폭염 등 기상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과학적, 입체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약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시민불안 요소 해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수요 충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및 기상재난 대응

-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구축
-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 통합플랫폼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정보수집, 모니터링, 분석, 예경보, 대응, 대피 등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시민과 행정내부에 제공

[표 3-2-3-4] 도시안전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시설물 안전관리	· 붕괴, 화재 등 위험시설물의 지속적인 계측 강화 · 인명구조를 위한 신속한 대응 · 재난 발생(지진, 붕괴, 화재 등)에 따른 위험시설물의 피해 예측 · 시설물 붕괴 시 대피정보 제공 · 시설물 위험정보에 대한 시민과의 정보 공유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대응	· 풍수해 시 신속한 인명 구조 · 강우, 온도, 하천의 수위 및 수량 등 기후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 ·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대피 정보 제공 · 지역별 실시간 예경보 정보 제공 · 풍수해(침수, 산사태 등) 위험정보에 대한 시민들과의 상호 정보공유
행정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	· 황금시간 내 119 긴급출동 고도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의 예측 분석 · 지능형 CCTV 확대 보급 · 드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 SNS를 통한 재난상황, 시민행동 요령 전파
취약계층을 포함한 안전약자 보호	· 사회약자(어린이,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 서비스 ·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 서비스 · 안심귀가 등 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서비스 ·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및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 재난 특성(화재, 풍수해, 지진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2. 공공시설 계획

2.1 현황분석

01 공공청사

· 시청 및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공공청사는 총 45개소임

【표 3-2-3-5】 공공청사 및 서비스 인구 현황

(단위 : 인, 개소)

구 분			속초시(개소)	1인당 시설 이용인구	비 고
계			45		
시 청			1	82,273	
주민자치센터			8	10,284	
직 속 기 관			2	41,137	
사 업 소			7	11,753	
경찰소방관서	경찰서	경 찰 서	1	82,273	
		순찰지구대	2	41,137	
	소방관서	소 방 서	1	82,273	
		119안전센터	2	41,137	
법원,검찰관서			2	41,137	
교육청, 우체국, 세무서			3	82,273	각 1개소
기타 중앙직속기관			8	10,284	
전화국, 방속국			1	82,273	각 1개소
한국농촌공사			1	82,27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82,273	
협동조합			5	16,45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외국인제외)

02 봉안시설

· 속초시는 화장장 1개소, 봉안당 1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표 3-2-3-6】 속초시 화장률의 변화추이

(단위 : 개소, 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장장	개소수	1	1	1	1	1
	화로수	3	3	3	3	3
봉안당	개소수	1	1	1	1	1
	봉안능력	11,132	11,132	8,516	8,676	11,884
	봉안기수	4,487	4,685	4,813	4,529	4,56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3 체육시설

· 속초시의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59개소, 신고체육시설 127개소, 등록체육시설 2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3-7】 공공체육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육상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간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승마장	조정 카누장	게이트 볼장
2012	45	1	2	1	1	34	2	-	1	1	1	1
2013	45	1	2	1	1	34	2	-	1	1	1	1
2014	51	1	2	1	1	39	2	1	1	1	1	1
2015	53	1	2	1	1	40	2	1	1	1	1	2
2016	54	1	2	1	1	40	2	1	1	1	1	3
2017	59	1	2	1	1	45	2	1	1	1	1	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3-2-3-8】 신고·등록 체육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합 계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골프장	스키장
2012	128	3	20	20	9	70	4	2	-
2013	124	3	19	20	9	67	4	2	-
2014	115	2	15	20	12	60	4	2	-
2015	120	2	19	16	12	65	4	2	-
2016	115	3	19	14	12	61	4	2	-
2017	127	5	19	19	11	67	4	2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 속초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7.2개소/만인으로 강원도 평균 14.4개소/만인에 비해 부족하나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간이 운동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2-3-9】 속초시 체육시설 결정현황

시설명	체육시설	위치	면 적 (㎡)
계	-	4개소	318,005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중앙동 506체 일원	22,690
영랑호골프장	체육시설	영랑동 605체 일원	238,000
주민체육시설	체육시설	대포동 242 일원	41,347
주민체육시설	체육시설	도문동 1725일원	15,968

출처 : 2020년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2.2 문제점 및 기본방향

01 문제점

· 접근성 및 효율성을 추구한 형태의 행정시설 설치 미흡

· 행정단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구만을 감안한 배치

·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등은 자족적 도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

· 수요자에 비해 시설 공급이 부족

02 기본방향

· 주요 행정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의 완비

- 목표연도까지 주요 공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시설 조성
- 생활권별 적정배치 및 접근성·효율성에 대한 검토로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도모

· 규모 및 기준에 따른 설정

- 도시의 성격, 규모를 고려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설정함
- 주요 기반시설 기설기준은 시설별 인구 수준을 근거로 현황과 법적기준 등을 토대로 설정
- 장래 인구변화와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하고 기초시설은 인구대비 균형적으로 배치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행정시설 배치

- 주요 행정시설의 현황과 원단위 기준 접근성 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분산배치 도모
- 신설 공공시설은 인구분포를 고려한 서비스 우선순위 부여 및 균형입지

· 시설간 네트워크체계의 형성

- 공공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간 네트워크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대

2.3 공공시설계획

01 주요 행정시설 원단위 설정

▮ 주요공공시설의 이용인구와 관할면적 기준 산정

· 속초시의 주민자치센터는 2017년 기준으로 행정동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현황 유지

· 경찰서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40만~50만인당 1개소(경찰청 기준)가 필요하므로 현황 유지

· 순찰지구대(파출소)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30,000인당 1개소, 관할 구역 면적 1.5㎢(경찰청 기준)로 배치

·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우편물 및 택배의 수요 증가량이 낮은 추세이므로 현황 유지

·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각 시군구 단위 또는 인구 20,000인당(면적 10㎢ 이상) 1개소로 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공공시설의 수요는 개발시 적정량의 수요를 접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공급

▌공공시설 설치

구 분	관련계획 및 지침, 규정 등	관련계획.법.지침에 의한 지표설정
주민자치센터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부	· 30,000인/개소, 600~700㎡/개소
소방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시군구 단위로 설치 (119 안전센터 5개소 초과시 1개소 추가)
119안전센터		·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경찰서	-	· 인구 : 400,000 ~ 500,000인
지구대, 파출소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부	· 인구 : 15,000 ~ 30,000인
우체국		· 인구 : 15,000인 ~ 30,000인

02 생활권별 공공시설 계획

· 서비스 범위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 경계를 감안하지 않은 시설 운영 방안 검토

· 서비스 효율을 위해 개별 관리 필요

· 지구대, 파출소는 현재 2개소로 목표연도까지 생활권별로 추가 1개소를 확보하여 총 4개소 설치

· 관할면적 기준 지침은 이전의 지구대 지침으로 지정한 3만인 이하의 이용인구를 유지하되, 초과할 경우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구대 설치 고려

【표 3-2-3-10】 주요 공공시설 수요전망

구 분	2017(인구 : 83,213인)		2040(인구 : 91,000인)	
	시설 이용인구(인)	시설수	시설 이용인구(인)	시설수
시 청	83,213	1	90,930	1
주민자치센터	10,402	8	11,366	8
경 찰 서	83,213	1	90,930	1
지구대, 파출소	41,607	2	22,733	4
소 방 서	83,213	1	90,930	1
119안전센터	41,607	2	22,733	4
우 체 국	27,738	3	30,310	3

【표 3-2-3-11】 주요행정시설 배치계획(2040년)

구 분	시청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순찰 지구대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합 계	1	8	1	4	1	4	3
영랑동	-	1(유지)	-	1(유지)	-	1(유지)	-
동명동	-	1(유지)	-	-	-	-	-
금호동	1(유지)	1(유지)	-	-	-	-	1(유지)
교동	-	1(유지)	-	1	-	1	1(유지)
노학동	-	1(유지)	1(유지)		1(유지)	-	-
조양동	-	1(유지)	-	1((유지)	-	1	1(유지)
청호동	-	1(유지)	-	-	-	-	-
대포동	-	1(유지)	-	1	-	1(유지)	-

▌ 체육시설

· 지속적인 레저인구 증가로 추가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이며, 체육시설 등 건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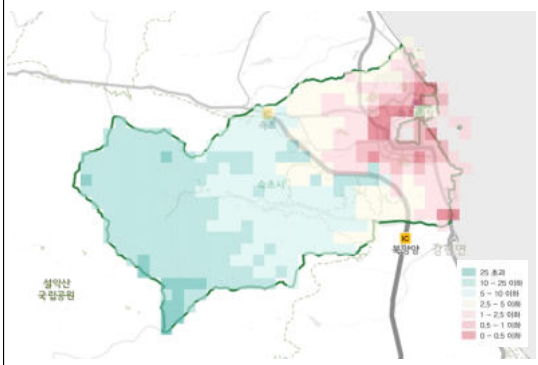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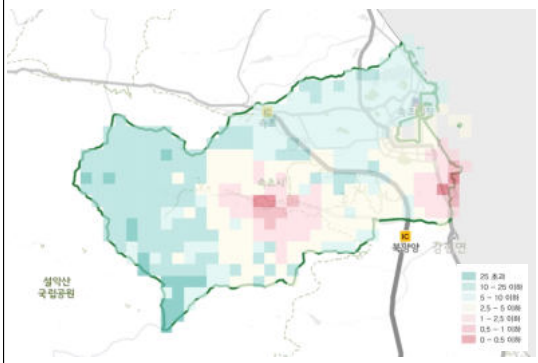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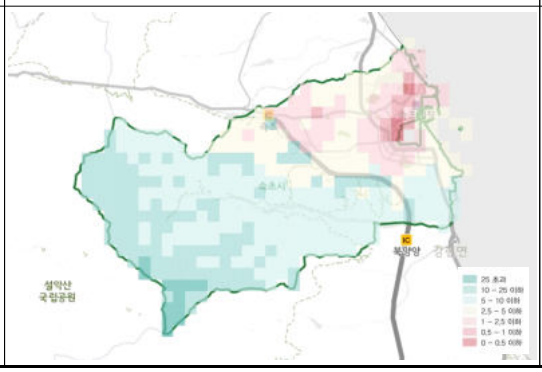
· 국제 관광휴양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 체육시설의 설치와 숙박 및 지원시설 등 부대시설의 증가와 노후시설을 개선 필요

3. 생활SOC 계획

01 시설별 접근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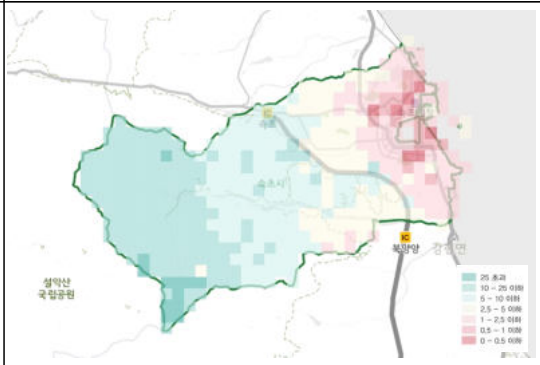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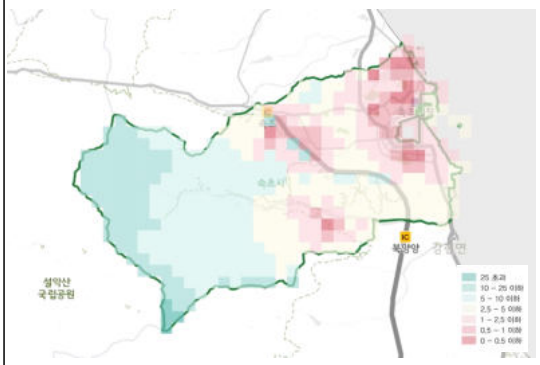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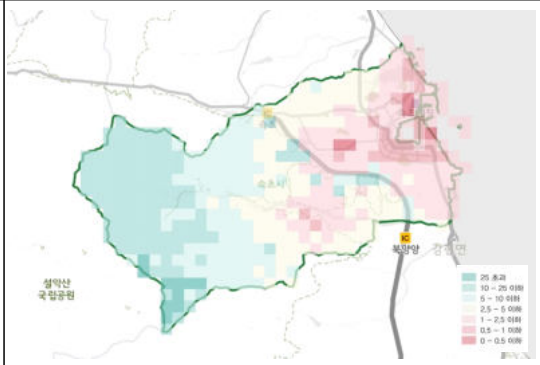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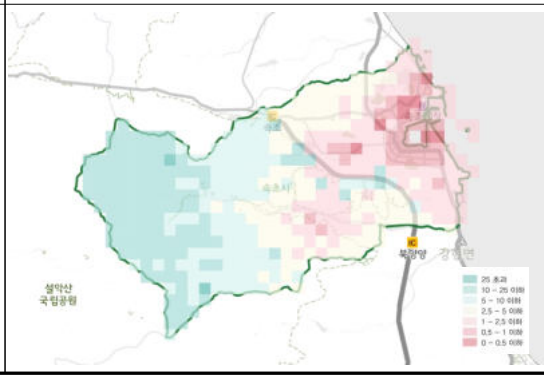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의 국토지표를 바탕으로 시설별 접근성 현황 분석
· 격자(500mX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도로 이동거리

【표 3-2-3-12】 시설별 접근성 현황

구분	생활SOC 분석	현황분석
생활권 공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나타내는 생활권공원의 경우 교동, 금호동, 동명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 · 대포산업단지, 대포항 주변으로는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여 신규공원 설치시 우선고려
주제 공원		· 수변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을 나타내는 주제공원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교동, 금호동, 동명동에서는 접근성이 5㎞이상으로 통행수단 없이 이용하기는 어려움 · 노학동, 영랑동 일원에 공원조성시 주제공원으로 설치가 필요
공연 문화 시설		· 공연 및 문화시설은 교동, 금호동, 동명동 등 북측에 집중되어 있음 ·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인근에 공연 및 문화시설의 설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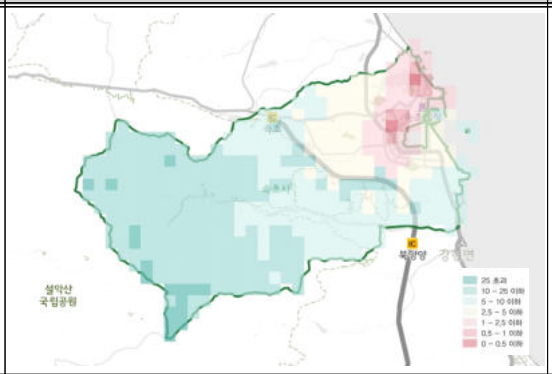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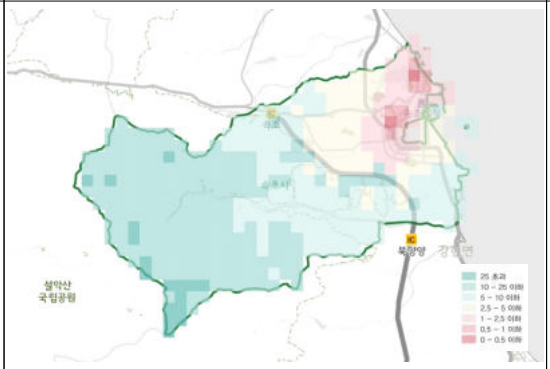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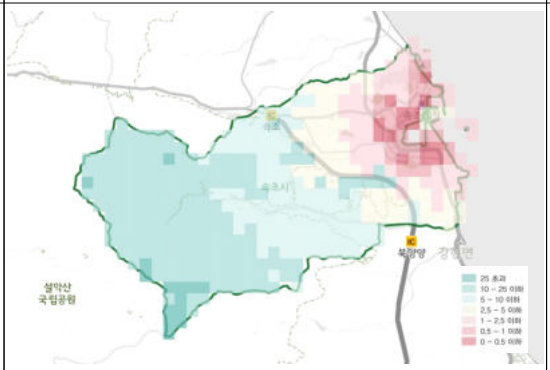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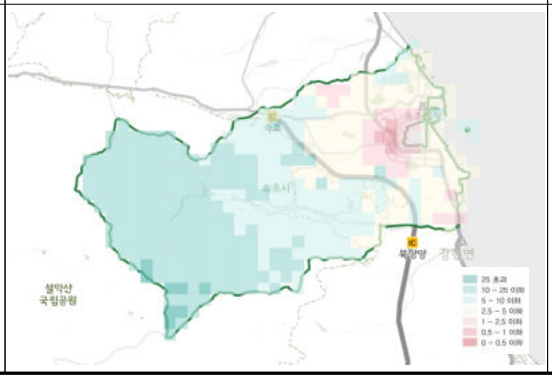
원천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2018.12)
원천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2018.12)
원천자료 : 전국문화시설총람(2019.01)

【표 3-2-3-13】 시설별 접근성 현황

구분	생활SOC 분석	현황분석
도서관		· 도서관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있음 · 학사평, 노학동 일원 신규 주거단지 개발시 도서관에 대한 신규수요를 반영한 신설이 요구됨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도문동 취락지구 일원에 생활밀접형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유치원		· 유치원의 경우 속초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신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초등학교		· 초등학교의 경우 속초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신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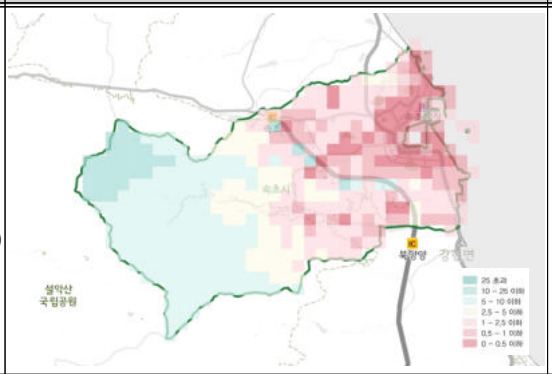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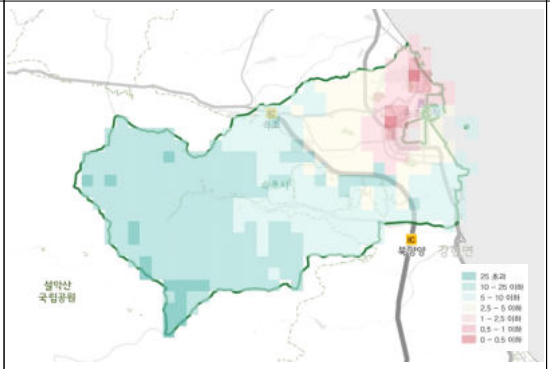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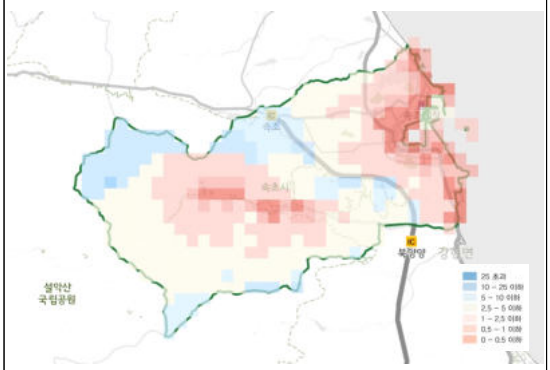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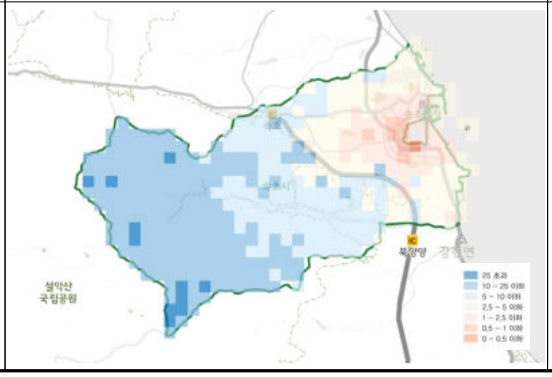
원천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9.11)
원천자료 : 지방자치단체(2019)
원천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8)
원천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8)

【표 3-2-3-14】 시설별 접근성 현황

구분	생활SOC 분석	현황분석
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교동, 금호동, 동명동과 노학동 일부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함 · 그 외 지역과 속초시 남쪽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종합병원 추가 설치시 입지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은 교동, 금호동, 동명동과 노학동 일부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함 · 그 외 지역과 속초시 남쪽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응급의료시설의 특성상 속초시 전역에 대한 접근성 검토가 필요함
의원		·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인 교동, 금호동, 동명동, 조양동과 노학동 일부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함 · 주거지역 인근으로 집중된 영향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시 주변 현황을 고려 허용용도 등에 포함 여부를 반영
보건기관		· 보건기관의 경우 지역별 배치는 양호하나 영향권에 대한 사각지역이 다수 존재 · 지역의료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역내 추가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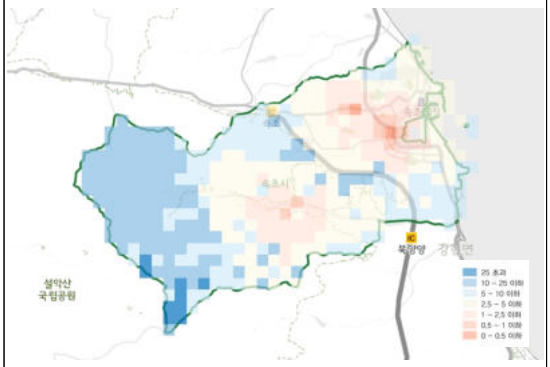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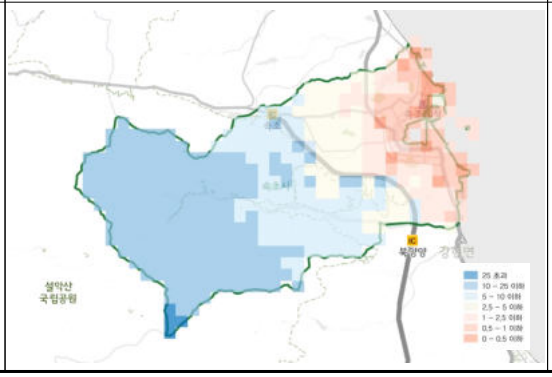
원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6)
원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6)
원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6)
원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6)

【표 3-2-3-15】 시설별 접근성 현황

구분	생활SOC 분석	현황분석
노인 복지 시설 (경로당)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접근거리 및 지역별 배치는 매우 양호함 · 다만, 고령화 시대에 대비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인 대비 필요
종합 사회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거환경여건이 노후화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지역의료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역 내 추가배치 필요
주차장		· 주차장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밀집 지역에서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악산관광지내 주차시설이 존재함 · 향후 인구증가 및 개발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경찰서		· 경찰서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지역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 · 관광지에서의 접근은 다소 어려워 파출소 등의 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원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6)
원천자료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국토지표
원천자료 : 지방자치단체(2019)
원천자료 : 도로명주소시스템(2019.5)

【표 3-2-3-16】 시설별 접근성 현황

구분	생활SOC 분석	현황분석
소방서		· 소방서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급을 요하는 기능의 특성상 남측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다소 미흡함 · 관광지에서의 접근은 다소 어려워 파출소 등의 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지진옥외대피소		· 지진옥외대피소는 해일발생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해안선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있음 · 지진옥외대피시설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원천자료 : 공공데이터 포털(2018.11)
원천자료 : 공공데이터 포털(2019.10)

02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 해소

·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최소기준 이상으로 공급

·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되, 시가지와 그 외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확충 노력

· 인구밀도, 시설 수용능력, 유휴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시설 전환, 복합화, 지역 간 연계, 교통 연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표 3-2-3-17]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 육	유치원	국공립, 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 습	도서관	공공, 사립, 작은 도서관	10~15분
	돌 봄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놀이터	5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 료	기초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체 육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 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 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 노외, 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지역 거점 (차량)	학 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 도립, 사립, 교육청 설립)	10분
	돌 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 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 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 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 식	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주)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되어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SOC 유형별 전략적 배치

· 생활SOC를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별적으로 배치하고, 지역맞춤형 공간복지전달체계와 결합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접근성 향상

· 어린이집, 주차장, 경로당 등 소규모 배치가 필요한 시설은 마을이나 동네에 직접 공급하고,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보건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거점 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거점에 배치

· 도시 외 지역에 서비스 범위가 넓은 지역거점 생활SOC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 간 연계·운영,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생활SOC 공급 시 대중교통 등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그림 3-2-3-2] 생활SOC 집약 특화모델



▌수요 응답형, 시설 복합화 등 생활SOC 공급방식 다원화

· 새로운 생활SOC 시설공급 시 지역주민의 수요, 활용 전망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급방식을 적용

· 인근에 기존 생활SOC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의 복합화를 검토하고, 활용도가 부족한 시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

▌지자체 단위의 접근성 기반 생활SOC 서비스 모니터링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생활SOC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

03 생활SOC 전략별 추진계획

▌생활SOC 정보플랫폼 구축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SOC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SOC 취약지역을 발굴·진단하고,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지자체에 제공

· 생활SOC 정보플랫폼 운영, 공급 및 활용 모니터링,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활SOC 전문지원센터 설치

▌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SOC 관리·운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 지자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기업 등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과잉 투자 방지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대,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

04 생활SOC 재정연관 방안

▮ 생활SOC 조성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적극 활용

- 생활SOC 시설을 2종 이상 복합화하여 조성할 경우, 3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10% 상향하여 지원
- 국유재산에 생활SOC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SOC 확충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운영 부담 경감.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을 통한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활용

▮ 생활SOC의 적정시기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 및 재정계획 수립

- 생활 SOC 취지에 맞게 민간의 참여주체에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마련
- 생활 SOC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민간투자), BTO + BTL(Build Transfer Operate + Build Transfer Lease; 수익형 +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 적극 도입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지역 업체 참여 우대와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생활 SOC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업체의 시공능력·기술력 발전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4 상·하수도 계획

1. 현황 및 여건분석

1.1 상수도 현황

01 급수현황

· 상수도 보급률은 2017년 99.7%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434ℓ로 전국 물 사용량(317ℓ)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나, 관광객 물 사용량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기준연도 급수사용량은 가정용 61.6%(5,841,293㎥), 영업용 33.6%(3,182,874㎥) 순임

【표 3-2-4-1】 상수도 현황

구 분	인 구 (인)	급수인구 (인)	보급률(%)	시설용량 (톤/일)	급수량 (톤/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2017년	83,213	82,943	99.7	52,000	35,983	43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3-2-4-2】 급수사용량 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2017년	9,484,782	5,841,293	-	3,182,874	199,533	261,082
구성비(%)	100.0	61.6	-	33.6	2.1	2.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3-2-4-3】 용도별 급수사용 현황

(단위 : ㎥)

구분	합 계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전용공업용
2012년	8,646,314	5,563,633	2,830,071	252,610	-
2013년	8,643,513	5,611,662	2,814,253	217,598	-
2014년	8,651,658	5,551,916	2,754,896	222,981	121,865
2015년	8,952,328	5,597,000	2,996,468	208,974	149,886
2016년	8,212,618	3,246,368	4,603,313	222,981	139,956
2017년	9,484,782	5,841,293	3,182,874	199,533	261,082

출처 : 상수도 통계, 환경부 수도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02 취수원 및 시설현황

- 속초시 정수장은 총 3개소가 있으며 1일 공급가능량은 52,000㎥/일
- 취수원은 하천표류수와 하천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53,000㎥/일의 확보가 가능하며 속초시에서 추진중인 수원확보 사업 반영시 2023년까지 23,210㎥/일 추가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 현재 운영중인 정수장 3개소에 대한 취수공급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

【표 3-2-4-4】 취수원 현황

(단위 : ㎥/일)

구 분	취 수 량(㎥/일)				해당정수장
	계	하천표류수	하천복류수	지하수	
계	53,000	8,000	45,000	-	-
쌍천	40,000	-	41,000	-	속초정수장
설악	4,000	-	4,000	-	설악정수장
학사평	8,000	8,000	-	-	학사평정수장

출처 : 상수도 통계, 2018

【표 3-2-4-5】 년도별 수원확보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 확보량	3,700 (관정개발)	-	9,510 (관정개발)	5,000 (지하댐)	5,000 (현대화사업)	-
확보 누계량	3,700	3,700	13,210	18,210	23,210	23,210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03 정수장 및 정수시설 현황

- 속초정수장, 학사평정수장, 설악정수장 3개 정수장을 운영중이며, 1일 최대 급수량은 56,374㎥/일로 시설용량 108.4%의 가동률을 보임

【표 3-2-4-6】 정수장용량 및 처리형식

(단위 : ㎥/일)

구 분	시설용량 (㎥/일)	시설가동률 (%)	처리형식	1일 최대 급수량 (㎥/일)	1일 평균 급수량 (㎥/일)	비 고
계	52,000	108.4	-	56,374	34,518	-
속초	40,000	111.5	급속여과	44,591	28,480	-
설악	4,000	44.4	급속여과	1,770	917	-
학사평	8,000	125.2	급속여과	10,013	5,121	-

출처 : 상수도 통계, 2018

0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상수원보호구역은 2개소이며, 쌍천구역 12.90km, 학사평구역 2.50km를 지정하여 관리중임

【표 3-2-4-7】 정수장용량 및 처리형식

(단위 : ㎥/일)

구분	보호구역 명칭	지정거리 (km)	지정면적 (㎡)	최초 결정일	관련취수장			
					취수장 명령	취수능력 (톤/일)	취수원 종류	취수원 위치
계	2개소					53,000		
속초시	쌍천	12.90	692,072	2013.04.26.	설악	4,000	쌍천(표)	설악동
					쌍천	41,000	쌍천(복)	도문동
	학사평	2.50	1,152,125	2000.03.04	학사평	8,000	용촌천(표)	노학동

출처 : 속초시 고시 제2020-127호, 2018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현황

05 소규모 수도시설 및 가압장

· 관내 마을 상수도는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2개소임

· 가압장은 2개소로 교동 가압장(2,016㎥/일)과 설악가압장(430㎥/일)이 있음

【표 3-2-4-8】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시설용량	취수원
계	-	332	
마을상수도	논산리	120	용천수
	상도문1리	120	계곡수
소규모 급수시설	상도문2리	63	용천수
	장재터	29	계곡수

출처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환경부

【표 3-2-4-9】 가압장 현황

시설명	관경	시설용량	급수지역
교동가압장	D250	25마력, H=30m Q=1.4㎥/min(2,016㎥/일)	노학동 21,22,24,25,44통 일원
설악가압장	D100	7.5마력, H=51m Q=0.3㎥/min(430㎥/일)	설악동 12통 일원

출처 :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7

1.2 하수도 현황

01 하수도 보급 현황

· 2017년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99.4%임

· 하수관거 보급률은 계획연장 500km에 시설연장 464km로 92.7%임

【표 3-2-4-10】 처리인구에 대한 하수도 보급률

(단위 : 인, %)

구 분	하수 종말처리인구				폐수종말처리인구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보급률 (%)
	계	1차	2차	3차		계	시가	비시가	
2017년	82,780	-	-	82,780	-	433	433	-	99.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3-2-4-11】 하수관거 현황

(단위 : ㎞, %, 개소)

구 분	합류식		분류식				맨홀	오·우수받이	토실·토구	보급률
			오수관거		우수관거					
	계획연장	시설연장	계획연장	시설연장	계획연장	시설연장				
2017년	129,605	129,605	209,555	173,322	161,146	161,146	10,001	26,849	148	92.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2 하수처리시설현황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개소(46,000㎥/일)이며, 3차 고도처리방식(데니포방식)을 사용하여 처리중임

· 평균 하수처리량은 48,359톤/일로서 시설용량 대비 94.7% 높게 나타남

· 관내 발생 분뇨는 처리용량 100톤/일 규모로 하수병합방식으로 처리중임

【표 3-2-4-12】 하수도 결정 현황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처리공법	가동개시일
공공하수처리장	대포동 542	46,000	48,359	DeNiPho	'99.07.15

시설명	위치	처리방식	계획배수면적 (㎢)	가동개시일
1중계펌프장	조양동 1034-8 일원	합류식	9.100	'99.07.15
2중계펌프장	대포동 182-1 일원	합류식	1.900	'01.05.29
3중계펌프장	장사동 577-42 일원	합류식	1.300	'01.05.29
4중계펌프장	대포동 462 일원	분류식	0.400	'13.04.01

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8

1.3 중수도 현황

01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현황

· 관내 중수도 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없으며, 최근 2017년 이후 지속된 물 부족 위기 해소를 위해 물공급관리와 더불어 물 수요 관리에도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 쌍천 취수장의 차수벽과 해안과의 경계의 거리가 짧아 갈수기에 바닷물이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이슈 대두

02 여건변화

·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빗물이용시설은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이었으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민간시설까지 대상 확대
- 기존 설치의무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의 지붕면적 1천㎡이상인 시설
- 추가시설 : 공동주택 건축면적 1만㎡, 학교 건축면적 5천㎡, 대규모 점포 매장합계 면적 3천㎡, 골프장 부지면적 10만㎡ 이상 시설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7.2.3.]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건축법상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

1.4 지하수 현황

01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 속초시의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1,770,644㎥이며 생활용 이용량이 927,743㎥로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음

· 노학동이 750,928㎥로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대포동, 도문동, 조양동의 순서를 이루고 있음

【표 3-2-4-13】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단위 : 개소, ㎥/년)

구분	총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용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합계	912	1,770,647	553	927,744	67	203,774	284	634,743	8	4,386
교동	42	60,262	38	54,782	0	0	4	5,480	0	0
금호동	9	8,344	7	5,649	2	2,695	0	0	0	0
노학동	335	750,929	222	435,503	5	6,091	108	309,335	0	0

구분	총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용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대포동	86	242,118	24	23,119	34	168,922	22	46,858	6	3,219
도문동	124	170,613	40	21,097	1	1,386	83	148,130	0	0
동명동	20	68,116	18	64,660	0	0	2	3,456	0	0
설악동	86	144,981	74	125,139	0	0	10	18,675	2	1,167
영랑동	11	16,149	7	10,304	3	3,775	1	2,070	0	0
장사동	57	113,174	34	64,501	0	0	23	48,673	0	0
조양동	110	161,587	80	111,591	0	0	30	49,996	0	0
중앙동	4	1,507	4	1,507	0	0	0	0	0	0
청학동	7	9,683	4	6,591	3	3,092	0	0	0	0
청호동	21	23,184	1	3,301	19	17,813	1	2,070	0	0

02 지하수 시공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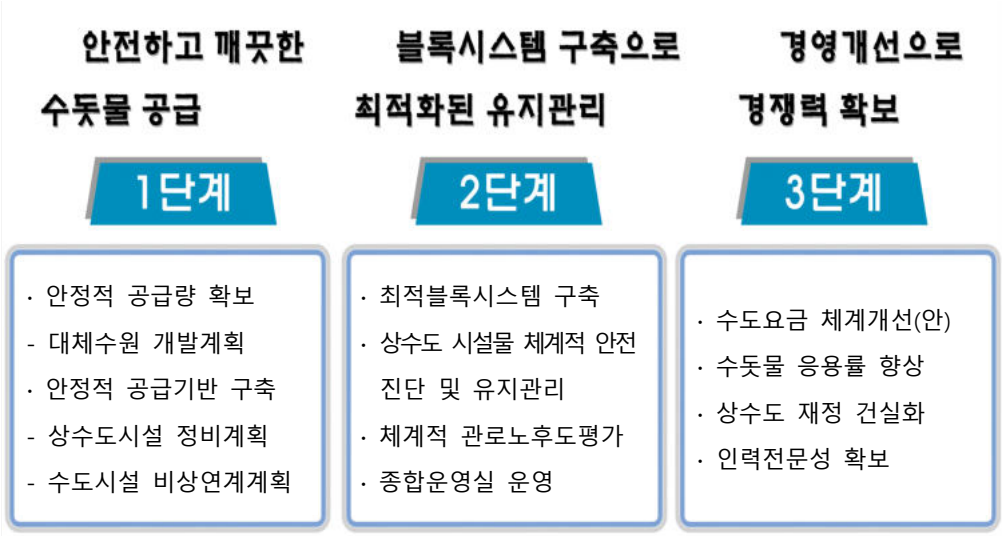
· 속초시의 지하수 시공업체는 4개소가 위치하며 조양동 2개소, 중앙동 1개소, 금호동 1개소로 분포해 있음

시설명	위치
동방기초개발	중앙동 622-240
현대지하개발	조양동 533-1
영동산업개발	금호동 625-12
대신산업개발	조양동 1531-13

2. 상위계획 검토

2.1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 (2020.06)

01 기본방향



02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용수 수요량 산정결과

【표 3-2-4-14】 기본계획 규모 결정

구 분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비 고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인)	78,841	81,941	82,297	82,467	
급수보급률(%)	99.7	100.0	100.0	100.0	
급수인구(인)	78,604	81,941	82,297	82,467	
1인1일급수량(Lpcd)	516	486	473	459	일최대
용수수요량(천㎥/일)	42,977	43,919	43,022	41,948	일최대
생활용수	40,555	39,823	38,926	37,852	
공업용수	3,720	4,657	5,728	6,360	
기타용수	1,284	2,468	2,468	2,468	

03 용수수급 전망

· 총량적으로는 2035년에 41,948㎥/일의 수요가 발생되며 속초정수장, 학사평 정수장, 설악정수장 3개 정수장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

- 시설용량 52,000㎥/일(3개소), 수요량 41,948㎥/일, 여유량 10,052㎥/일

【표 3-2-4-15】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 고
속초시 전체	수요량	42,977	43,919	43,022	41,948	(A)
	시설용량	52,000	52,000	52,000	52,000	(B)
	과부족	9,023	8,081	8,978	10,052	(B)-(A)
속 초 정수장	수요량	34,985	36,163	35,428	34,549	
	시설용량	40,000	40,000	40,000	40,000	
	과부족	5,015	3,837	4,572	5,451	
학사평 정수장	수요량	6,822	6,690	6,552	6,385	
	시설용량	8,000	8,000	8,000	8,000	
	과부족	1,178	1,310	1,448	1,615	
설 악 정수장	수요량	1,170	1,066	1,042	1,014	
	시설용량	4,000	4,000	4,000	4,000	
	과부족	2,830	2,934	2,958	2,986	

04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 수도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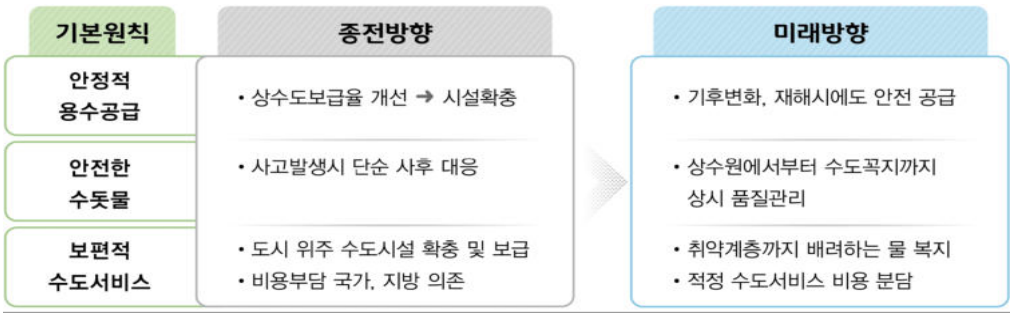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사업개요</th><th>비고</th></tr>
<tr><td>유수율 향상계획</td><td>· 장래 목표 유수율 : 85.0%
· 현재 유수율이 72.2%로 단계별 향상계획 제시
· 현재 유수율은 「강원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2016.11, 강원도)」에 근접하나 노후관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노후관 개량이 필요
<table>
<tr><th>구 분</th><th>2020년</th><th>2025년</th><th>2030년</th><th>2035년</th><th>비 고</th></tr>
<tr><td>유수율제고(%)</td><td>75.0</td><td>80.0</td><td>82.5</td><td>85.0</td><td></td></tr>
<tr><td>블록시스템구축</td><td>-</td><td>30</td><td>-</td><td>-</td><td></td></tr>
<tr><td>노후관개량(km)</td><td>21.1</td><td>98.3</td><td>28.7</td><td>28.7</td><td></td></tr>
<tr><td>누수탐사(km)</td><td>10.0</td><td>50.0</td><td>50.0</td><td>50.0</td><td></td></tr>
<tr><td>계량기교체(전)</td><td>3,000</td><td>12,517</td><td>12,667</td><td>12,799</td><td></td></tr>
</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사업개요</th><th>비고</th></tr>
<tr><td>중수도
이용계획</td><td>· 2035년까지 중수도 시설 목표량 : 400㎥/일
· 시범사업을 실시 및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의식 촉진으로 대상 확대를 계획 (현재 중수도시설 전무)</td><td></td></tr>
<tr><td>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td><td>· 재이용수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정된 수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안정된 수질의 확보는 곧 수요처의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하수처리수 재처리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현재 가동 중인 재이용수 공급시설의 운영실적, 실수요자의 만족도, 예측한 영향의 모니터링, 실증자료 분석, 신기술과 신공법의 개발과 적용 등 재이용수 수질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td><td></td></tr>
<tr><td>빗물이용
시설활용
계획</td><td>· 2035년까지 빗물이용시설 목표량 : 9,281㎥/년 (5개소)
<table>
<tr><th>구분</th><th>시설명</th><th>지붕면적 (㎡)</th><th>설치규모 (㎥)</th><th>빗물이용가능량 (㎥/년)</th></tr>
<tr><td>계</td><td>5개소</td><td>13,854.0</td><td>692.0</td><td>9,281.0</td></tr>
<tr><td>실내체육관</td><td>속초시 국민체육센터</td><td>1,230.9</td><td>61.0</td><td>818.0</td></tr>
<tr><td>공공청사</td><td>속초시청</td><td>2,690.2</td><td>135.0</td><td>1,811.0</td></tr>
<tr><td>학교</td><td>청봉초등학교</td><td>2,125.4</td><td>106.0</td><td>1,422.0</td></tr>
<tr><td>주요시설</td><td>국립산악박물관</td><td>1,807.5</td><td>90.0</td><td>1,207.0</td></tr>
<tr><td>주요시설</td><td>속초시 교도소</td><td>6,000.0</td><td>300.0</td><td>4,023.0</td></tr>
</table></td><td></td></tr>
<tr><td>수도요금
현실화</td><td>·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 100.0%(2025년)
· 수도요금 현실화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재투자 재원 확보 필요
<table>
<tr><th>시·군명</th><th>구 분</th><th>2020년</th><th>2025년</th><th>2030년</th><th>2035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속초시</td><td>요 금</td><td>1,428</td><td>1,552</td><td>1,687</td><td>1,836</td><td></td></tr>
<tr><td>상승률(%)</td><td>5.0</td><td>8.7</td><td>8.7</td><td>8.8</td><td></td></tr>
</table></td><td></td></tr>
</table>

2.2 제 3차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03)

01 계획의 기조 및 비전

『걱정 없는 수도(안전), 함께하는 수도(소통), 발전하는 수도(창의)』



02 주요 총괄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비고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상 누수율	%	10.5	8.0	5.0	

2.3 제2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2016~2025)(2015.12)

01 계획의 기조 및 비전

비 전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안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목 표	시민에게는 안전을, 생활에는 쾌적함을, 지역에는 활력을 주는 하수도

하수도 안전관리	· 기후변화 대비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능력 향상 ·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안전 확보
국민편의 중심 서비스	· 하수도악취 등 생활 주변의 불편요소 관리 강화 · 개인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 강화
강우 시 하수관리	· 강우 시 하수 수집·이송체계 개선 ·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최대처리능력 확보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 하수처리시설별 방류수수질기준 설정·운영 · 하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경제적 기회 창출	· 하수도산업 지원 및 해외진출 활성화 · 하수도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재정 및 자산관리	· 하수도 요금현실화 및 재투자 여력 확보 · 지자체 하수도 자산관리 제도화 및 지원체계 구축

02 주요 총괄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25년	비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상 하수도 보급률	%	92.1	96.0	

3. 목표 및 전략 설정

3.1 기본방향

01 계획인구 증가 및 추진중인 개발사업을 감안한 급수량, 오수량 산정

- 인구 등 계획지표 분석에 의한 처리구역별 적정하수량 산정 및 시설별·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시설보완 방향, 장래시설 예측 등)

02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상수원의 지속적 개발

- 상수도 공급은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지하수 개발로 상수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상수원의 관리·감시 및 시설개량을 통한 상수도 유입수의 수질 개선
- 처리구역의 하수 발생량 및 처리시설 확장 가능성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구역 재분할 계획 수립
- 하수처리수의 중수도 재활용에 따른 원수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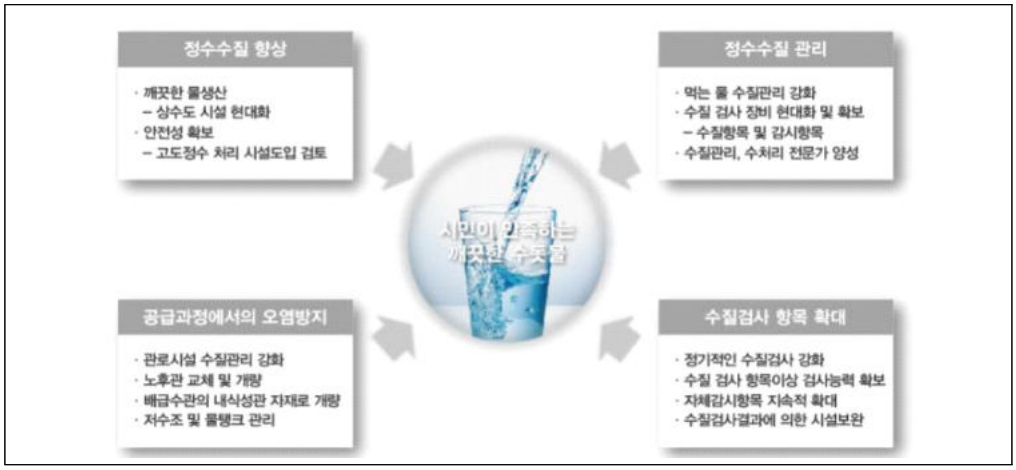
03 효율적 상하수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 및 정수시설을 고도화하여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를 도모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및 농촌 취락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 검토
- 생활하수는 각 지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하수전량을 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
- 하천오염 방지대책 마련 및 하수처리 후 방류시 하천의 수질개선방안 검토

3.2 목표설정

01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은 99.7%로 목표연도에는 100.0%를 보급하도록 설정
-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 도수, 정수처리, 송·배수 및 급수시설에서 급수전까지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급수구역을 분할하여, 단계별로 계획시설용량에 적합한 분할계획을 수립
- 갈수기 상수원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 등 제도적 개선 및 주민교육 실시

– 속초시의 1일 1인당 급수량은 437ℓ로서 강원도 1일 1인당 급수량 438ℓ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제군, 양구군, 양양군, 태백시는 600ℓ이상으로 강원도 갈수기 문제에 대비한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가 필요

– 관광객에 의해 급수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강릉시, 속초시가 강원도 평균 이하로 누수율 개선 등의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

02 하수도

· 2014년 기준 동명동, 금호동, 교동 3개동은 하수도 보급률이 100%이며, 영랑동 외 4개동은 94.3%~99.9%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임

·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단계(2025년)까지 관내 하수도 보급률이 100%가 되도록 계획

· 현재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대비 처리용량은 94.7%이나 절수운동 등을 통해 하수발생량도 부수적으로 감소하도록 개선(시설용량의 증설 불필요)

· 하수도 행정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시설 등이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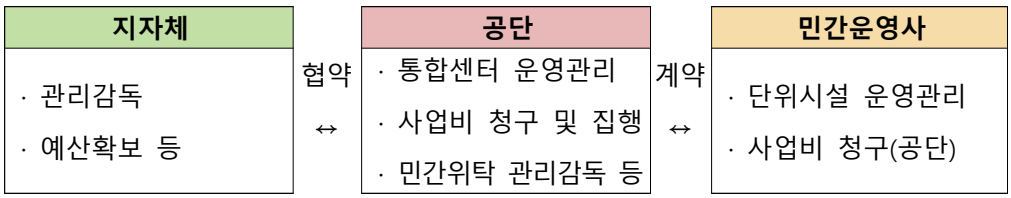
【표 3-2-4-16】 개선방안

<table>
<tr><th>구 분</th><th>개 선 방 안</th></tr>
<tr><td>운영체계</td><td>· 효율적 하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설치 및 운영관리 부서 일원화
· 중앙집중제어방식 운영체계 수립</td></tr>
<tr><td>운영인원</td><td>· 전문기술자 양성 및 확보
⇨ 하수도시설은 토목·건축·전기·기계·수질 등 많은 전문분야에 관련되므로 유지관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폭넓은 지식의 이해가 요구됨</td></tr>
<tr><td>시설관리</td><td><table><tr><th>단기방안</th><th>장기방안</th></tr><tr><td>·「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작성</td><td>· 설비 자동화
⇨ 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
⇨ 전문사업자(지방공사·공단·민간 등) 위탁관리 도입</td></tr></table></td></tr>
<tr><td>하수도 예산</td><td>· 요금수준 관리 ⇨ 다수용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요금 현실화 ⇨ 2014년 16.81% → 2019년 33.41% 요금 현실화 정책 수행 중
· 처리경비절감 ⇨ 처리효율을 증대시켜 처리비용 절감 노력 필요</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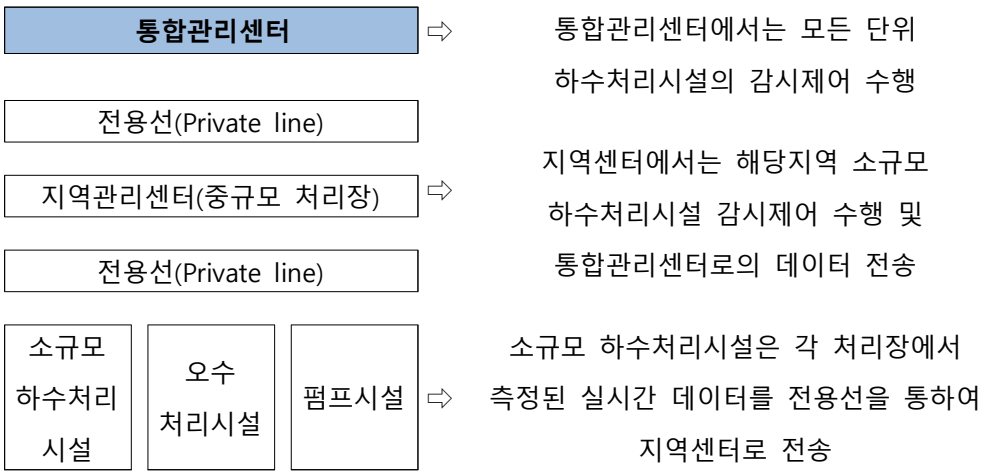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2017

· 하수도시설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기관별 업무분장

【그림 3-2-4-1】 기관별 업무분장



【그림 3-2-4-2】 통합운영관리 체계



【그림 3-2-4-3】 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 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을 면제하는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설치 비용을 납부하여 하수도 건설비용의 분담하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하수도 공사비용을 회수하여 속초시의 재정을 효율화

【표 3-2-4-17】 단계별 하수도 보급률 계획

(단위 : 인, %)

구 분	내 용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하수 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원인자부담금	2,213,000원/㎥ (2020년 기준)
시행내용	· 원인 자부담금 단위단가에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을 적용 · 다른 경우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함 ·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는 신고시 5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시 정산하여 준공허가전 납부토록 해야함
관련기준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출처 : 속초시청,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재산정함에 따라 해당연도 확인 필요

3.3 상수도공급계획

01 용도별 상수도 수요량 예측

▌생활용수

·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2035년 속초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지표를 반영하여 장래 용수 수요량을 예측

· 목표년도 계획인구인 91천인에 대한 일최대 수요량은 41,737㎥/일

【표 3-2-4-18】 생활용수 예상 수요량

연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계획인구(인)	85,268	87,957	89,860	90,930	
급수보급률	100.0%	100.0%	100.0%	100.0%	
급수인구(인)	85,268	87,957	89,860	90,930	
1인 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Lpcd,ℓ/인/일)	486	473	459	459	
일최대 수요량(㎥/일)	41,440	41,604	41,246	41,737	

주) 2035 속초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제시된 2025~2035년 1인 1일 최대급수량 적용하여 계상

▌관광용수

· 관광객에 대한 용수산정을 위하여 현재 수도공급현황을 분석하여 관광객수에 따른 원단위를 도출

- 생활급수량을 제외한 1일 평균 수도공급량 (2,402㎥/일) / 관광객수 (46,881인) = 51.23ℓ
- 51.23ℓ × 속초시 누수율 20.1% = 61.5ℓ → 오차를 감안하여 본 계획에서는 65ℓ로 반영
- 일최대 공급량 = 65ℓ × 130% = 85ℓ

【표 3-2-4-19】 장래 관광용수 원단위 산정

일평균 급수량	급수 인구	평균급수량	평균급수량 누수율 적용	생활 급수	기타 급수	관광객 수	관광용수	관광용수 누수율 적용	관광용수 일최대 급수량
34,518	82,349	325	390	32,116	2,402	46,881	51.2	65	85

주1) 누수율 20.1% (2019 상수도통계, 환경청)
주2) 일최대 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 130% (2035 속초수도정비기본계획, 속초시)

【표 3-2-4-20】 관광용수 예상 수요량

연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계획인구(인)	49,541	51,103	52,208	52,830	
급수보급률	100.0%	100.0%	100.0%	100.0%	
급수인구(인)	49,541	51,103	52,208	52,830	
1인 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Lpcd,ℓ/인/일)	85	85	85	85	
일최대 수요량(㎥/일)	4,211	4,344	4,438	4,491	

주) 관광용수 1인 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는 별도산정

▮ 공업용수

· 산업단지 등 공업용수에 관한 공급량은 「2035년 속초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지표를 반영

· 추진예정인 대포4농공단지는 면적과 업종이 유사한 대포제3농공단지의 지표를 인용하여 추가반영

【표 3-2-4-21】 공업용수 예상 수요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공업용수(㎥/일)	1,628	2,578	2,578	2,578	
대포제3농공단지	950	950	950	950	
대포1,2농공단지	678	678	678	678	
대포제4농공단지	-	950	950	950	예정

주) 2035 속초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제시된 기타용수 수요추정량 반영 (대포4농공단지 추가반영)

02 상수도공급계획

- 계획인구에 따른 수요량은 41,737㎥/일, 관광·산업용을 합한 기타수요량은 48,779㎥/일로 2040년 까지 현재 운영중인 정수시설을 통해 공급 가능함
- 노후수도관 교체, 하천개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취수가 가능함에 따라 상수도 공급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 장기적으로 기존 공급처리시설의 노후화 개선, 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능력을 확보를 유지

【표 3-2-4-22】 장래 상수도 공급 수요량

연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용수 수요량(㎥/일)	47,279	48,526	48,262	48,806	
생활용수	41,440	41,604	41,246	41,737	일최대
관광용수	4,211	4,344	4,438	4,491	
공업용수	1,628	2,578	2,578	2,578	
용수 공급능력(㎥/일)	52,000	52,000	52,000	52,000	
과부족량(㎥/일)	4,721	3,474	3,738	3,194	

주) 속초시 정수장 시설용량 52,000㎥/일 (3개소 : 속초, 학사평, 설악)

▌생활권별 용수 공급계획

- 속초정수장의 경우 시 시가화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북측 생활권과 남생활권 상수도 용량에 대한 적정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장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3.4 하수도처리계획

01 용도별 하수도 수요량 예측

▌생활오수

·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2035년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지표를 반영하여 장래 오수량을 예측

· 목표년도 계획인구인 91천인에 대한 일최대 오수량은 40,410㎥/일

【표 3-2-4-23】 생활오수량 산정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계획인구(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
하수도보급률(%)	99.4	100.0	100.0	100.0	100.0	
하수처리인구(인)	82,714	85,268	87,957	89,860	90,930	
일최대 오수량원단위(Lpcd)	378	385	394	404	404	
생활하수량(㎥/일)	31,266	32,828	34,655	36,303	36,736	
지하수 유입량(㎥/일)	3,127	3,283	3,466	3,630	3,674	생활하수의 10%
계획오수량(㎥/일,일최대)	34,393	36,111	38,121	39,933	40,410	

주1) 지하수유입량 하수량의 10%
주2) 지표는 2035년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속초시, 2017)상 일최대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원단위 적용

▌관광오수

· 관광객에 대한 오수산정을 위한 원단위는「하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최대 생활 오수량의 숙박 50%, 당일 15%를 적용하여 산정

【표 3-2-4-24】 관광오수량 산정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계획인구(인)		49,541	51,103	52,208	52,830	주간활동인구
하수처리인구(인)		49,541	51,103	52,208	52,830	
숙박인구		19,816	20,441	20,883	21,132	주간활동인구의 40%
당일인구		29,725	30,662	31,325	31,698	주간활동인구의 60%
하수도보급률(%)		100.0%	100.0%	100.0%	100.0%	
오수량원단위 (Lpcd)	숙박	193	197	202	202	생활오수 원단위의 50%
	당일	58	59	61	61	생활오수 원단위의 15%
관광하수량 (㎥/일)	소계	2,873	4,824	5,096	5,157	
	숙박	1,149	3,015	3,185	3,223	
	당일	1,724	1,809	1,911	1,934	
지하수 유입량(㎥/일)		287	482	510	516	관광하수량의 10%
계획오수량(㎥/일,일최대)		3,160	5,306	5,606	5,673	

주1) 숙박/당일 비율은 속초시 숙박업 객실수 × 2.3인을 적용 숙박가능 인구를 산정 : 주간활동인구의 40%
주2) 오수량 원단위는 생활오수 원단위의 50%, 15% 적용 (하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2008, 환경부 36p)

▌ 공업오수

·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오수는 대포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 5,600톤/일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음

· 1일 평균 처리량은 832톤/일, 최대 3,086톤/일로 향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음

02 오수처리계획

- 계획인구에 따른 생활오수량은 40,410㎥/일, 관광오수량은 5,6473㎥/일로 2040년까지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 시설 46,000㎥/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로정비, 처리효율 증대 등의 개선사업을 통해 여유공간 확보 필요
- 환경적, 재정적 영향을 고려 기존 처리시설의 증축을 우선으로 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처리능력 확보
- 생활권 구분없이 대포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하여 처리가능

【표 3-2-4-25】 장래 오수량 산정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계획오수량(㎥/일,일최대)	39,271	43,427	45,539	46,083	
생활오수량	36,111	38,121	39,933	40,410	
관광오수량	3,160	5,306	5,606	5,673	
오수처리시설 용량(㎥/일)	46,000	46,000	46,000	46,000	
과부족량(㎥/일)	6,729	2,573	461	-83	

주) 공업오수량은 대포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5,600㎥/일에서 별도처리

3.5 실천전략

01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수량 확보로 자연 순환 체계 유도
- 공공용지 내 지상 및 지하저류지를 설치하고 생태적 학습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
-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생태면적률 및 자연지반녹지율 적용
- 도로 설치시 노면 우수 저류 및 비저감시설 설치 권장

02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

- 노후 상수 관로의 교체로 누수율 감소, 물탱크 관리 강화, 간이 상수도 정비를 통한 불순물 제거
- 급수 불량지역의 송배수관 확장 및 관로 신설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실현
- 상주인구에 대한 공급처리시설 용량은 2040년 까지 확보 되었으나 관광객 등의 주간 활동인구 수요에 부족한 물량은 기존시설의 증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보
- 가용지가 부족한 속초시 특성상 기존 공급처리시설의 노후화 개선 등의 현대화를 통한 공급처리능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 속초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공급처리 방안은 개발계획시 사업지구 내 확보하는 방식 등 기존 시설의 부담 최소화

03 하수처리 방식의 변경

- 우수·오수 분류식을 원칙으로 신시가지 및 신규개발지는 분류식으로 계획
- 기존 시가지의 합류식 관로는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교체

III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도심 및 시가지 정비
2. 주거환경계획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없음)

1 도심 및 시가지 정비

1. 현황분석

1.1 기성시가지 현황

01 속초 공간구조 현황

- 남북에 비해 동서로 긴 도시형태로 서쪽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해안쪽으로 자연발생적인 시가지 형성
- 동측 시청 주변으로 구도심을 형성하며 단독주택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 분포
- 청초호 남측 조양동 일대에 신규 개발이 추진되는 추세임

02 도시지역 현황

- 청초호를 주변(교동, 동명동, 금호동, 청호동, 조양동)으로 아파트가 입지
- 기존 구도심은 개별 개발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단독주택지 등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의 도시인프라 부족
-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기존 시가지내에 시청, 경찰서 등의 관공서가 동측에 밀집되어 있고 상업지역 내 내부도로는 폭원이 좁은 보차혼용 형태로 구성
- 구도심의 상습정체 구간,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 인프라 시설 구축 필요

1.2 주거현황

01 주택보급 현황

- 단독주택 43.3%, 다세대·연립주택 7.0%, 아파트 59.6%로 구성
- 10년전과 비교하면 아파트 56.0%→59.6%, 다세대·연립주택 6.2%→7.0%, 단독주택 35.4%→32.3%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2017년 속초시 주택보급률은 110.7%로 강원도 평균 주택보급률 107.7%에 비해 양호함

【표 3-3-1-1】 주택보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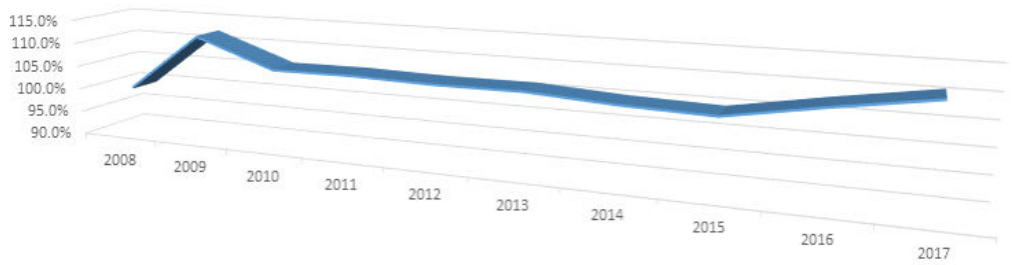
구 분	세대수	주 택 유 형							주택 보급률 (%)
		합 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008년	29,881	29,831	8,566	3,086	18,419	1,778	247	821	99.8
2009년	29,776	33,401	11,445	3,190	18,781	1,778	247	1150	112.2
2010년	31,366	33,353	11,112	3,157	19,434	1,907	496	404	106.3
2011년	31,634	33,684	11,596	3,251	19,685	1,907	496	-	106.5
2012년	31,865	33,797	11,685	3,354	19,685	1,907	520	-	106.1
2013년	32,103	34,084	11,994	2,956	20,355	1,281	454	-	106.2
2014년	32,500	34,169	12,055	3,017	20,367	1,293	454	-	105.1
2015년	33,000	34,533	11,685	3,017	20,421	1,907	520	-	104.7
2016년	33,123	35,721	11,990	3,751	21,296	1,907	528	-	107.8
2017년	33,441	37,023	11,969	4,053	22,068	2,022	560	404	110.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단위 : 세대, 호

【표 3-3-1-2】 주택보급률

구 분	세대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비 고
2008년	29,881	29,831	99.8	
2009년	29,776	33,401	112.2	
2010년	31,366	33,353	106.3	
2011년	31,634	33,684	106.5	
2012년	31,865	33,797	106.1	
2013년	32,103	34,084	106.2	
2014년	32,500	34,169	105.1	
2015년	33,000	34,533	104.7	
2016년	33,123	35,721	107.8	
2017년	33,441	37,023	110.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2 건축연도별 주택

· 2015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32,071호 중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은 17,793호로 55.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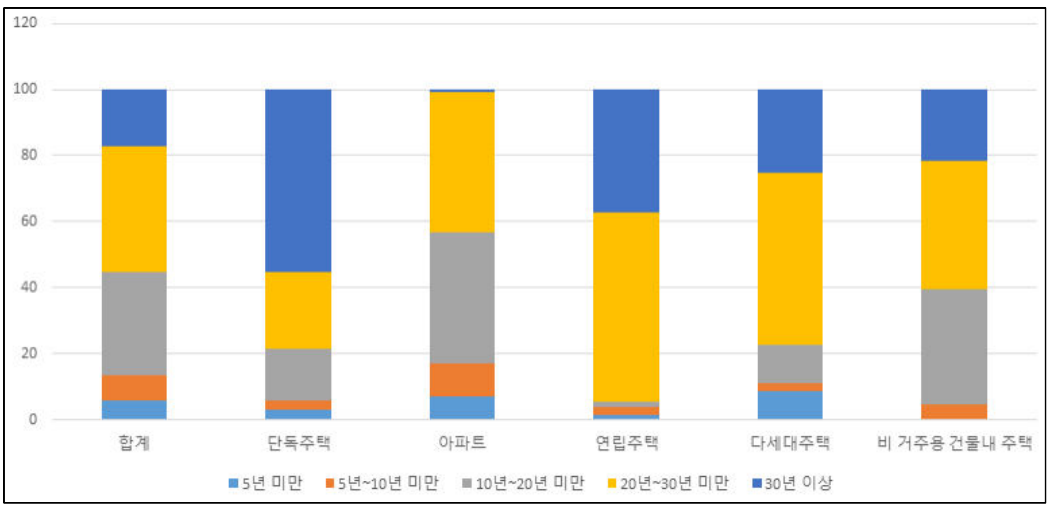
·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단독주택이 55.42%로 가장 많으며 연립주택이 37.2%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3-1-3】 주택유형별 노후주택 현황

구분	합계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주택수	%	주택수	%	주택수	%	주택수	%	주택수	%
합계	32,071	1,849	5.8	2,463	7.7	9,966	31.0	12,215	38.1	5,578	17.4
단독주택	8,476	243	2.9	265	3.1	1,306	15.4	1,965	23.2	4,697	55.4
아파트	21,158	1,472	7.0	2,119	10.0	8,402	39.7	9,036	42.7	129	0.6
연립주택	1,398	19	1.4	31	2.2	28	2.0	800	57.2	520	37.2
다세대주택	426	36	8.5	11	2.6	49	11.5	223	52.3	107	25.1
비 거주용 건물내 주택	468	-	-	21	4.5	163	34.8	183	39.1	101	21.6

출처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건축과
단위 : 호

【그림 3-3-1-1】 주택유형별 노후주택 현황



03 규모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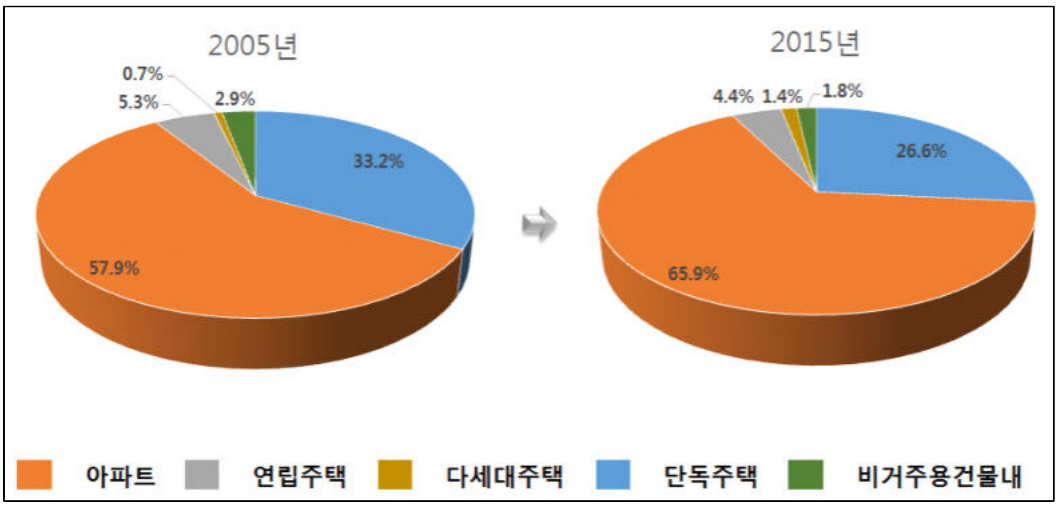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속초시(전체 32,089세대)의 65.9%가 아파트에 거주

· 아파트 거주중인 가구수 중에 20~40㎡가 4,266세대, 40~60㎡가 13,819세대, 60~85㎡가 9,162세대를 차지

【표 3-3-1-4】 연면적별 주택수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비 고
1990년	14,901	11,249	2,151	1,000	53	448	
1995년	20,725	9,485	8,501	1,440	26	1,273	
2000년	25,679	8,883	13,862	1,549	59	1,326	
2005년	26,688	8,849	15,445	1,419	190	785	
2010년	28,352	8,364	17,714	1,501	394	379	
2015년	32,089	8,520	21,161	1,405	439	564	
20㎡ 이하	270	251	-	6	-	13	
20~40㎡	4,266	1,626	2,443	125	14	58	
40~60㎡	13,819	1,853	11,147	491	261	67	
60~85㎡	9,162	1,979	6,211	725	142	105	
85~100㎡	1,044	790	122	28	17	87	
100~130㎡	1,615	736	756	11	5	107	
130~165㎡	859	482	301	11	-	65	
165~230㎡	686	450	181	8	-	47	
230㎡ 초과	368	353	-	-	-	15	

출처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건축과
단위 : 호



1.3 속초시 도시쇠퇴 현황

▌ 종합 쇠퇴도 분석

· 속초시 8개 동지역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종합 결과, 동명동과 청호동이 2개 이상의 분석지표에 부합하는 쇠퇴지역으로 나타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쇠퇴지표(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중 2개지표 이상 충족한 경우 쇠퇴지역으로 분류

· 이에, 지정기준 측면에서는 동명동과 청호동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가능

【표 3-3-1-5】생활권별 정비방향(종합)

구 분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쇠퇴도 중첩	종합결론
영랑동	◉	X	◉	2	쇠퇴지역
동명동	◉	X	◉	2	쇠퇴지역
금호동	◉	X	◉	2	쇠퇴지역
교 동	◉	X	◉	2	쇠퇴지역
노학동	X	X	◉	1	-
조양동	X	X	X	-	-
청호동	◉	X	◉	2	쇠퇴지역
대포동	◉	X	◉	2	쇠퇴지역

▌ 인구사회부문

· 인구사회부문에서는 청호동이 6개 지표 중 5개 이상으로 가장 쇠퇴한 지역임

【표 3-3-1-6】생활권별 정비방향(인구사회부문)

구 분	노령화	인구변화	기초생활수급자	경제활동인구	고령인구수	노년부양비
영랑동	X	X	X	◉	X	X
동명동	X	X	◉	◉	X	◉
금호동	X	X	X	X	X	X
교 동	X	X	X	X	X	X
노학동	X	X	X	X	◉	X
조양동	X	X	X	X	◉	X
청호동	◉	◉	◉	◉	X	◉
대포동	◉	X	X	◉	X	◉

▌산업경제부문

· 산업경제부문에서는 청호동, 동명동이 5개 지표 중 3개 이상으로 가장 쇠퇴한 지역임

【표 3-3-1-7】생활권별 정비방향(산업경제부문)

구 분	주요산업종사자수	사업체수	사업체당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수	종사자수
영랑동	◉	◉	X	X	X
동명동	◉	◉	X	◉	X
금호동	X	X	◉	X	X
교 동	X	X	◉	X	◉
노학동	X	X	X	◉	X
조양동	X	X	X	◉	◉
청호동	◉	◉	◉	X	X
대포동	X	X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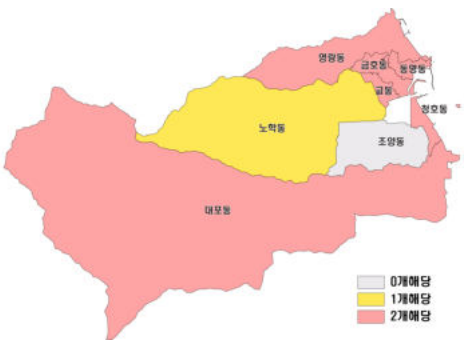
▌물리환경부문

· 물리환경부문에서는 대부분 양호하나, 교동이 5개 지표 중 3개 이상 쇠퇴함

【표 3-3-1-8】생활권별 정비방향(물리환경부문)

구 분	노후주택	신규주택	소형주택	노후건축물	접도율
영랑동	◉	X	X	X	X
동명동	X	X	X	◉	◉
금호동	X	X	X	◉	X
교 동	X	◉	◉	◉	X
노학동	X	X	X	X	X
조양동	X	X	◉	X	◉
청호동	◉	◉	X	X	X
대포동	◉	X	X	X	X

【그림 3-3-1-2】쇠퇴지역 중첩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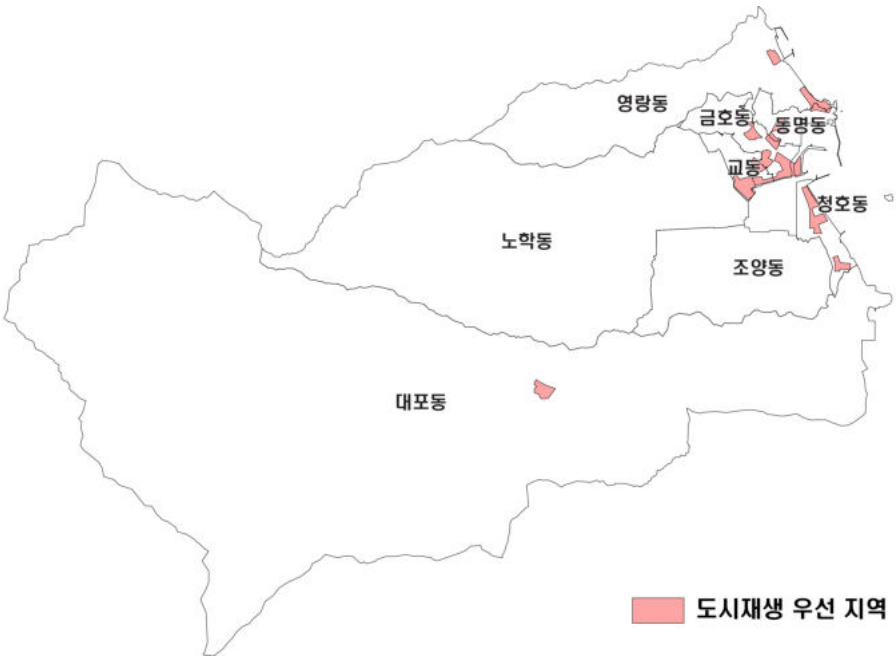
【그림 3-3-1-3】쇠퇴지역 종합 구분도



1.4 도시재생 필요 지역 종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쇠퇴지표(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중 2개 지표 이상 충족한 경우 쇠퇴지역으로 분류 하였으며, 노학동 및 조양동의 경우 기준과 적합하지 않음
- 상위 및 관련계획, 기 추진 사업과의 연계, 도시재생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도심지역을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

【그림 3-3-1-4】속초시 도시재생 우선 지역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2.1 문제점

01 노후·불량 주택 비율의 증가와 주거의 수요불균형

-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3.3%, 강원도는 107.7%이며, 속초시는 110.7%으로 수치상 세대수 대비 주택공급은 양호하나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17.4%로 질적 개선이 필요
- 방치된 빈집, 폐가 등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택의 질적 개선 필요

02 열악한 시가지환경

- 기존 시가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노후주택이 다수분포
- 관광지 및 상업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시가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03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부족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부족으로 기반시설 소외지역 발생
- 실제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필요 편의시설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 필요

2.2 개선방향

01 주거환경의 질 향상으로의 정책 전환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과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유발 할 수 있는 주택정책 제시
- 다양한 소득계층의 요구와 1~2인 세대의 증가, 노인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형태 및 규모의 다양화로 새로운 주거형태 양식 제시
- 주택지의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마련

02 기존 주거지 정비의 활성화

· 신개발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탈피하여 신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존의 토지자원 이용을 극대화 함

·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공간구조를 합리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

· 지역적·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주거지 조성으로 기존의 획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

03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 향후 주택정책의 중요 과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택개념을 소유에서 사용개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

3. 추진전략

3.1 주거환경정비사업

01 구도심 활성화(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구도심 정비방안 마련

·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환경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

· 노후·불량주택개량 촉진으로 저소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고취

·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유형 적용

02 계획적 도시공간 개발

· 입지지역의 특성과 교통 네트워크상의 위상에 따라 계획

· 지역중심지에 형성되는 일반적인 기능들이 공통적이고 보완적인 기능들로 구성

3.2 도시재생

01 효율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사업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재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및 민간주체의 참여 확산

- 사업실행 강화를 위한 주민, 지역기업 등의 참여 지원
- 경관협정, 건축협정 등과 연계하여 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

·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주민협의체 및 사업협의체의 공동출자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구조 확보
- 사회적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청년조직,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 창출

· 장기적 관점에서 강원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체계 구축

-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
-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

▌삶터와 일터로서 자생적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지역주민과 참여주체가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 내 일자리 및 산업의 확보

- 주민, 상인, 지역단체 등이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빈 점포, 공공건축물 등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 조성과 창업 지원

· 사업시행의 전문 분야별 거버넌스 기반 구축

-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를 선정하여 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 도모
- 전문 분야별 사업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
- 주민 교육프로그램 지원, 실험적인 재생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타 지역·기관과 연구·사업협력으로 재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역할 및 갈등 조정,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 확보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 지자체 직영, 외부기관 위탁, 공공출자에 의한 제3섹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및 컨설팅단 구성과 운영

- 상위기관과 지자체 간 업무협의를 통한 재생사업의 유기적 추진 도모

02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표 3-3-1-9】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구 분	사업의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재정비촉진사업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표 3-3-1-10】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구 분	사업의 정의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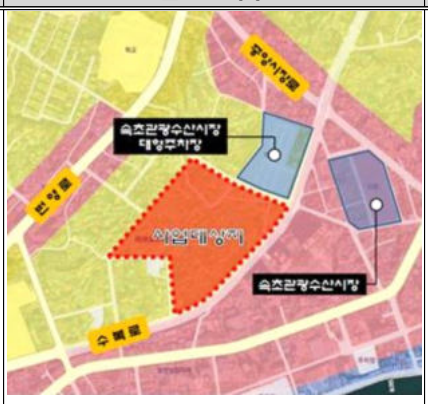
출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내 추진 도시재생사업

① 중앙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 분	사업 내용
사업주체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시행구역	속초시 중앙동 497-4번지 시청 뒤편 일원 (면적 : 56,229㎡)
규모(계획)	공동주택 11개동 / 1,435세대 (최고 39층)

②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구 분	금호3지구	청호3지구
위 치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	 청호동(구)청호시장 일원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2016년 ~ 2019년
사업량	· 도로 2개 노선 (504m) · 소공원 1개소 (246㎡) · 주차장 1개소 (399㎡) · 보행자 전용도로 1개 노선 (58m/국수골목) · 빈집 정비 6동	· 집수리 지원 : 2개 사업 · 인프라 구축 : 9개 사업 · 일자리 및 문화 : 4개 사업
사업비	4,396백만원 (국비 2,198, 시비 2,198)	3,962백만원 (국비 1,981, 시비 1,981)

출처 : 속초시청, 속초시 내부자료 (2017)

【표 3-3-1-11】 개발사업 재원현황

구 분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호3지구	소 계	4,396	200	960	864	2,372	-
	국 비	2,198	100	480	432	1,186	-
	시 비	2,198	100	480	432	1,186	-
청호3지구	소 계	3,962	-	128	600	692	2,542
	국 비	1,981	-	64	300	346	1,271
	시 비	1,981	-	64	300	346	1,271

출처 : 속초시청, 속초시 내부자료 (2017)
단위 : 백만원

03 새뜰마을사업

·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및 노후·불량한 주택환경 개선

·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표 3-3-1-12】 개발사업 현황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위 치</td><td> 

속초시 중앙동 496-25번지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면적 : 49,971㎡)</td></tr>
<tr><td>사업기간</td><td>2017~2020년 (4년간)</td></tr>
<tr><td>사 업 비</td><td>2,400백만원 (국비 1,680, 도비 216, 시비 504)</td></tr>
<tr><td>대상지 현황</td><td>
<table>
<tr><th>면적 (㎡)</th><th>필지수 (필지)</th><th>건축물수 (호)</th><th>주택수 (호)</th><th>가구수 (가구)</th><th>인구수 (인)</th></tr>
<tr><td>49,971</td><td>300</td><td>229</td><td>196</td><td>200</td><td>512</td></tr>
</table>
</td></tr>
<tr><td>향후 추진일정 (계획)</td><td>·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 선정 : 2017. 11
· 마스터플랜 확정(국토교통부) : 2018. 05 ~ 2018. 06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및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2018. 07 ~</td></tr>
</table>

출처 : 속초시청, 속초시 내부자료 (2017)

3.3 도시재생 뉴딜사업

01 개요

·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도시재생 뉴딜정책"도입(`17.7)

· `17년 시범사업(68곳) 선정 이후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뉴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5년간의 추진전략 및 계획 로드맵 수립 추진

【표 3-3-1-13】 도시재생 뉴딜 추진전략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활력 회복	① 도시공간 혁신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원도심지역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일자리 창출	②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참여 유도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③ 주민과 지역 주도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표 3-3-1-14】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유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사업규모	소규모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물량규모	5만㎡이하	5만~10만㎡	10만~15만㎡	20만㎡	50만㎡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주거밀집지역	저층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02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지원 :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지역역량 강화 :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역 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주거취약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공공임대주택 등 소형주택의 에너지성능을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다양성', '균형성', '포용성', '회복탄력성'을 도시재생의 정책이념(UN Habitat 제3차 회의)

구 분	내 용
비 전	·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목 표	· 주거복지 실현 : 노후주거지 정비 공공임대 공급
	· 도시경쟁력 향상 : 산업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 사회 통합 : 공동체 재생 주민 간 상생협력
	·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주민주도 조직 육성
추진전략	· 생활밀착형·소규모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지자체·주민·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 주민주도 조직 육성 역량강화
	· 둥지내몰림 대응과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동시 추진

출처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03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

【표 3-3-1-15】 사업유형 및 내용

구 분	내 용
우리동네 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 지원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 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 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 기반형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출처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

04 법·제도 정비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을 향후 개정할 예정

【표 3-3-1-16】 법 • 제도 정비계획

구분	내 용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입	· 지역의 활력거점 역할의 혁신공간 창출을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례를 집중 부여하는 특별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 인증제도 도입	· 활성화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공공성 있는 민간 등이 발굴 제안한 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기금 출·융자 등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정비	· 도시관리계획상 의제처리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까지 확대하여 사업 추진속도 향상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	·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교통계획을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대중교통체계 정비, 안전경관 등을 감안한 교통계획 수립 등 유도

05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재생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명품도시 속초"	
Goal 1 True Color	다시 살리는 속초,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잠재력을 살리는 재생 ★근현대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지역별 공간형성 스토리 등 잠재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
Goal 2 Link	소통하는 속초,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간 연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지역공동체의 발굴과 연대, 의식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
Goal 3 Sustain -ability	성장하는 속초, 쇠퇴지역의 사회 · 경제적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속초시 원도심-쇠퇴지역의 연계 재생 고려, 도시공간 확장축의 다양한 기존 사업을 고려한 사회적·경제적 도시회복

▌핵심전략

· 지역 어메니티를 살리는 도시재생
- 속초의 역사·문화자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회복
-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토대로 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존 시가지(주거지)-신규 시가지(주거지) 조화
-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존 시가지 및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및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유지

· 주민중심 도시재생공동체 구축
- 기존 진행 중인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유사사업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기타 주민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체계 구축
- 민•관•전문가 통합 거버넌스로 소통을 통한 도시재생공동체 구축



【표 3-3-1-17】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선정

구분	대상지	위치	면적(㎡)	사업유형	선정사유 및 특이사항	우선순위
가	영랑동 1지역	영랑동 주민센터 일원	49,556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노후 주거밀집지역 영랑호, 장사항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도모	3
나	영랑 동명 1지역	일구시장 일원	126,148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 노후주거와 1m이하의 비좁은 골목 등 기초인프라 확충 필요	2
다	동명동 1지역	속초시외버스 터미널 일원	49,943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노후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연계한 활성화 도모	2
라	동명 금호 1지역	금호동주민센터 일원	49,319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노후상가 및 좁은 골목길 등현 새뜰마을사업 연계한 주거지 재생	1
마	금호동 1지역	중앙초교 일원	49,550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노후건축물 및 협소도로 개선을 통한 주거지재생	4
바	교동 금호 1지역	교동주민센터 일원	99,063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노후주택밀집, 빈집, 다수의 유휴부지와 40계단 등 문화자원 연계 재생	2
사	교동 1지역	교동방치건물 일원	127,193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 노후주거지 및 방치건물 개선과 칠성조선소 등의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3
아	청호동 1지역	청호동 주민센터 일원	150,027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 노후주거지 밀집지역개선, 청호시장, 현 도시활력증진사업 연계한 지역활성화	1
자	청호동 2지역	새마을 (68해일마을) 일원	49,977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노후건축물, 비좁은 골목 등 개선, 새마을의 역사문화 연계한 재생도모	1
차	대포동 1지역	화채마을 일원	80,990	근린재생형 (주거재생형)	· 다수의 방치건물과 협소도로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3
카	금호 청호 1지역	로데오거리 주차장 - 신포마을 일원	191,965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 갯배, 구수협, 아바이마을 등 지역자원 연계한 주거환경 및 상권 활성화 도모	1

출처 : 2028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 속초시

2 주거환경계획

1. 주택공급계획

1.1 주택 수요 및 공급계획

01 주거용지 내 수용인구 설정

· 상업지역 내 취락지구, 녹지지역 등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이 혼재됨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수용 거주인구를 산정

· 향후 비 주거용지 거주인구를 주거용지로 수용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목표연도의 비주거용지 내 인구는 혼합률을 감안하여 총인구의 10.0%인 9천인으로 설정

· 주거용지 내 수용인구는 목표연도 총인구 90,930인의 90.0%인 81,837인으로 계획

02 주택용지 수요산정 기준

▮ 인구밀도의 구성

· 속초시의 유형별 주택수는 단독 4,053호 공동 24,650호로 단독 : 연립 : 공동은 33% : 7% : 60%로 조사되며 적정 인구밀도의 유지, 도시미관 등을 고려 중저층 주택을 지향하고자 유형별 배분 계획은 40% : 10% : 50%로 설정

· 도시용지 내 수용인구는 전체인구 혼합률 10%를 적용하여 밀도별 인구배분율을 설정

- 90,930인 - (90,930인 × 10%) = 81,837인

· 충분한 개발가용지, 밀도규정의 하향추세 및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 선호성향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용적률의 하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의 공동주택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구밀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목표연도의 인구밀도는 고밀, 중밀, 저밀 주거지 각각 180인/ha, 130인/ha, 80인/ha로 적용

- 속초시 인구밀도 평균치 132.3ha/인을 기준으로 설정

【표 3-3-2-1】 밀도별 주거용지 수요

구 분	인구밀도(인/ha)	구성비(%)	인 구(인)	면 적(㎢)
계	-	100	81,837	6.995
저 밀	80	40	32,735	4.092
중 밀	130	10	8,184	630
고 밀	180	50	40,918	2.273

▮ 인구 밀도별 구성비

· 속초시의 공동주택 공급은 증가추세이나 해안경관의 훼손의 문제가 지속되고 고밀도 개발지의 포화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공급은 차츰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목표연도 총인구의 50% 이상이 고밀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

· 단독 주거지는 노후주택 등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양질의 단독주택지로 개선되며 고급 단독주택지를 선호하는 추세 등을 고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저밀주거인구는 교외화, 전원주택화 및 단독주택 선호도 증가에 의한 지속적인 보급 등의 영향으로 주거용지 인구의 40%를 수용할 전망

· 목표연도 밀도별 주거지 인구비율은 고밀 : 중밀 : 저밀 비율을 50 : 10 : 40으로 설정

▮ 평균 가구원 수 전망

· 전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95년 3.34인에서 출산율의 감소, 독신자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5년 2.7인, 2017년 2.4인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가구주의 가구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이 증가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동측에 위치한 지자체(자치구)가 속초에 고속철도 개통시 접근성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

· 속초시 주변 지자체(양구, 고성, 인제 등)의 가족 단위의 유입예상

· 금회 계획에서는 동서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계획의 효과로 강원도 시군의 위치한 가구의 유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수준인 2.3인으로 설정

【표 3-3-2-2】 가구당 인구현황(속초시)

구 분	총가구	가구원	가구당 인구	증감율
2015	33,004	79,846	**2.4**	
2016	33,123	79,109	**2.4**	-0.0128
2017	33,441	78,618	**2.4**	-0.0157
2018	33,961	78,312	**2.3**	-0.0191
2019	34,550	78,643	**2.3**	-0.0129

주)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 읍면동(2015), 시군구(2016~), 통계청,「인구총조사」

【표 3-3-2-3】 가구당 인구계획(속초시)

구 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비고
가구당 인구(인/가구)	2.3	2.3	2.3	2.3	

03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 2040년 목표연도의 필요한 주택수는 총 41,737호로 추정되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2017년 37,023호에서 4,714호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함

【표 3-3-2-4】 주택수요 전망

구분		단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가구당 인구		인/호	2.4	2.3	2.3	2.3	2.3
가구수	**총수**	호	33,441	37,073	38,242	39,070	39,535
	실수요	호	30,097	33,366	34,418	35,163	35,581
비주택수요		%	10.00%	10.00%	10.00%	10.00%	10.00%
공 가 수		호	301	334	344	352	356
감실주택수		호	301	334	344	352	356
주택총수요		호	30,699	34,033	35,106	35,866	36,293
주택보급율		%	110.7	112.0	115.0	115.0	115.0
주택실수요		호	37,023	38,117	40,372	41,246	41,737
공급주택수	**당해**	호	-	1,094	2,255	873	491
	누적	호	-	1,094	3,349	4,223	4,714

2.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2.1 주거환경계획

01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활성화

- 생태도시조성을 위해 생활권별 중·저밀도의 개발유도와 동해안 및 태백산맥 등의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의 지정을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 신규 개발지 및 기존 주거지역 내에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가로변 녹화계획 수립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도시생활서비스를 확보하여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주거 소유차원의 무주택해소에서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
-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02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 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택 안정대책 수립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최소한의 주거수준 제시
- 건교부 최저 주거기준은 3인일 경우 1가구당 8.8평으로 설정
- 최저주거수준 시설 기준
  - 침실 : 부부침실 확보, 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침실 분리, 노부모 침실 분리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확보
  - 구조·성능·환경 기준
  -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음에 양호한 재질일 것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출 것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표 3-3-2-5】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 구성	실(방)구성	총주거 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자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1-490호, (시행 2011.05.27.) / 개정 중(2019년 상반기 개정 예정)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03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급처리시설 확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환경처리시설과 상하수도시설 구축
- 문화, 쇼핑, 의료, 교육 등 생활권 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도시 외곽의 전원주택 형태의 개발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04 도시환경기반 확충

- 도시 내 공원 및 옥외공간의 확보, 문화적 생활환경 조건의 창출 및 도시 내 보행자 전용공간의 확대, 도시녹지대 축의 조성,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대 및 노면전차 등 환경오염저감 교통시설확보를 통한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도시개발 추진
- 도심은 도시기능 특화로 자립적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중밀도의 개발로 대도시와 차별화된 여유있는 업무 및 주거환경을 창출
-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형 여가 및 레져시설의 유치로 쾌적한 전원환경을 조성
- 기초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확보수준을 설정하고 도시생활기반시설을 정비
- 소규모 필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의 조성과 도시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 도시문화 인프라 구축 및 복지기반 정비

05 주거환경개선

· 지자체 단위별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과 기존 주택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공동체 의식 함양

2.2 주거관련 사업계획

01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 사업목적

· 도심지 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중앙동 일원(시청후면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

▮ 사업개요

· 규　　모 : 공동주택 11개동 / 1,435세대 (최고 39층)

· 개발밀도 : 건폐율 19.22% / 용적률 372.86%

▮ 기대효과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 기대

· 도심지 기능회복에 따른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

0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 청호시장 일원 전반적인 환경정비를 통한 저소득 주민 주거생활 안정

구 분	기 간	내 용	사업비
금호 3지구	15년~18년 (4년간)	· 도로(2개 노선/504m), 소공원(1개소/ 246㎡), 주차장(1개소/ 399㎡), 국수골목(1개노선/58m), 빈집정비(6동/지역주민 공동텃밭)	4,396백만원 (國 2,198, 市 2,198)
청호 3지구	16년~19년 (4년간)	· 15개 사업(집수리 지원 2, 인프라 구축 10, 일자리 및 문화 3)	3,962백만원 (國 1,981, 市 1,981)

3. 구도심 활성화방안

3.1 지구별 정비방안

01 기본방향

- 속초시 구도심에 대하여 내외부의 광역적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도시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
- 지역의 특색없는 사업성 위주의 개발과 개별 아파트 건설 위주의 단일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광역적 정비방향을 제시
-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한 광역 차원의 활성화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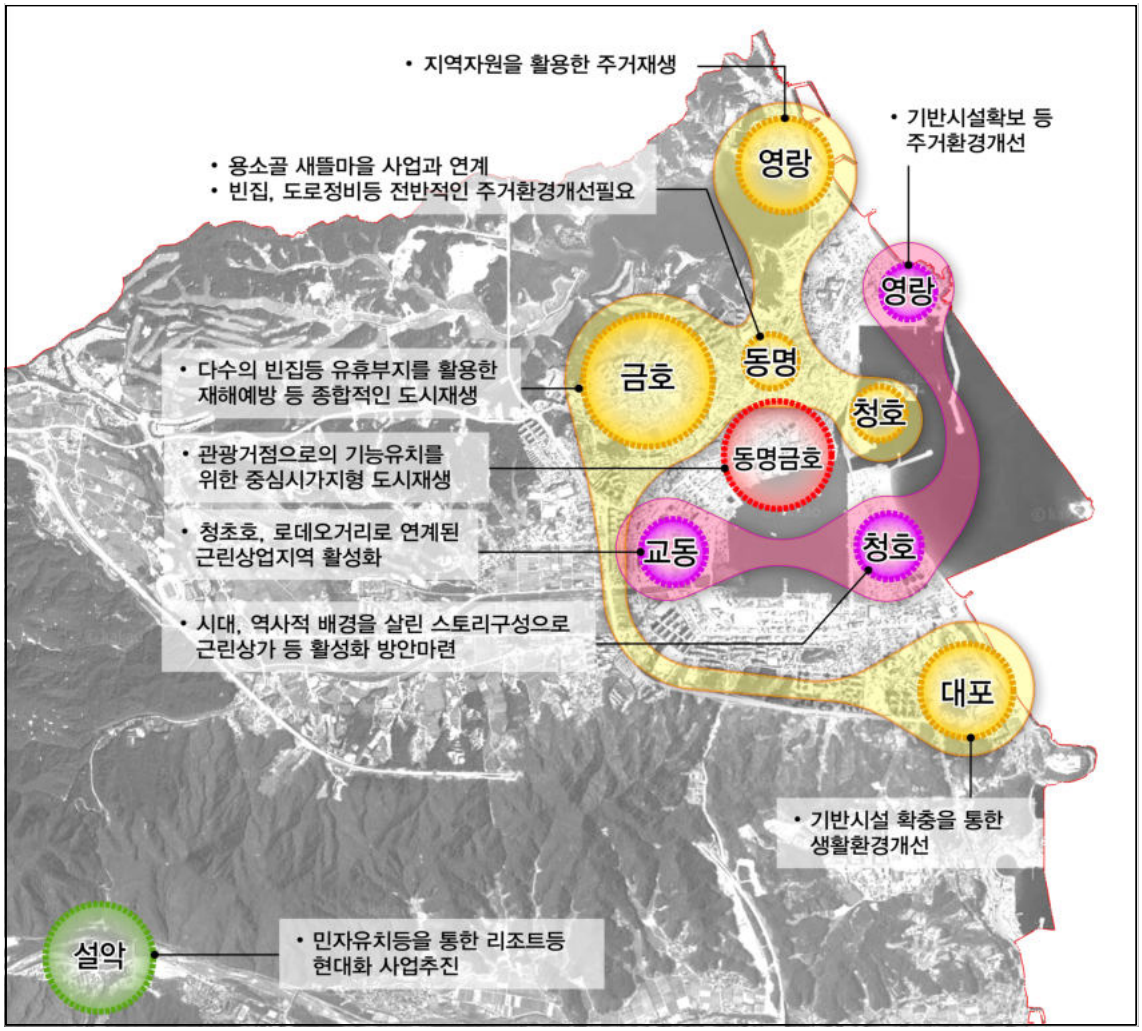
02 구도심 상업지역 정비

- 구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정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비의 틀을 마련하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의거 상업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 도모
- 주요기능으로는 일반상업, 업무, 숙박·위락 등으로 현재의 지역여건 및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
  - 관광시장 : 관광시장 현대화 추진과 병행하여 전문 브랜드 육성
  - 중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의 위계별 기능 차별화
- 원도심의 협소한 도로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원도심 상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의 효율적 운영 및 확장, 공영주차장의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
- 낙후된 상업공간을 도로확장과 이면도로 보행자몰 형태로 정비하여 보행자이용의 편리성 제고
- 상업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와 속초시 녹지네트워크와 도심 녹지축과 연계한 자전거, 도보 등 차량 외 접근성 확보

03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체계적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시 구체적 구역 및 사업수단을 확정
- 주거환경정비 사업시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하여 구도심의 단계적 기반시설 확보
- 마을단위 중심의 자생적 주거지 정비 유도 및 관리

【그림 3-3-2-1】 구도심 정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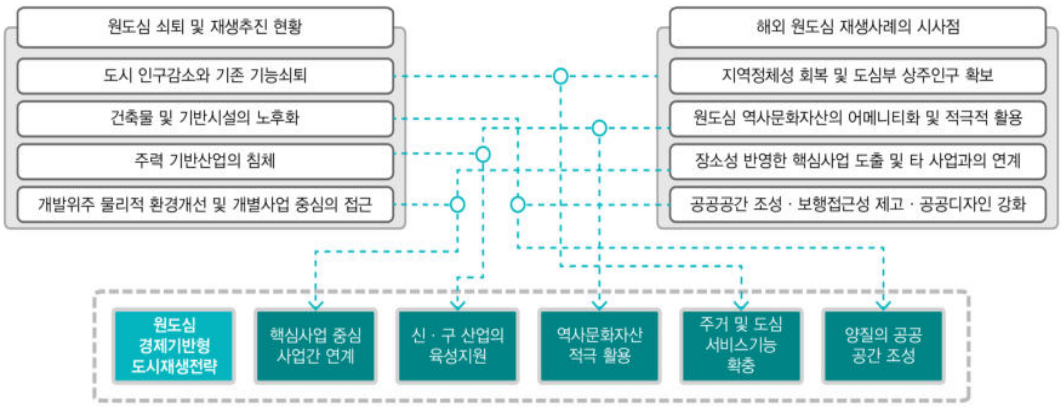


3.2 지구활성화 전략

01 원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재생사업 시행

- 원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워 핵심사업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원도심의 기존 산업 및 물리적 자산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등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거유형 및 도시의 고차서비스 기능을 담는 복합용도로 개발
- 공공 주도하에 양질의 공공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집객력 제고 및 민간투자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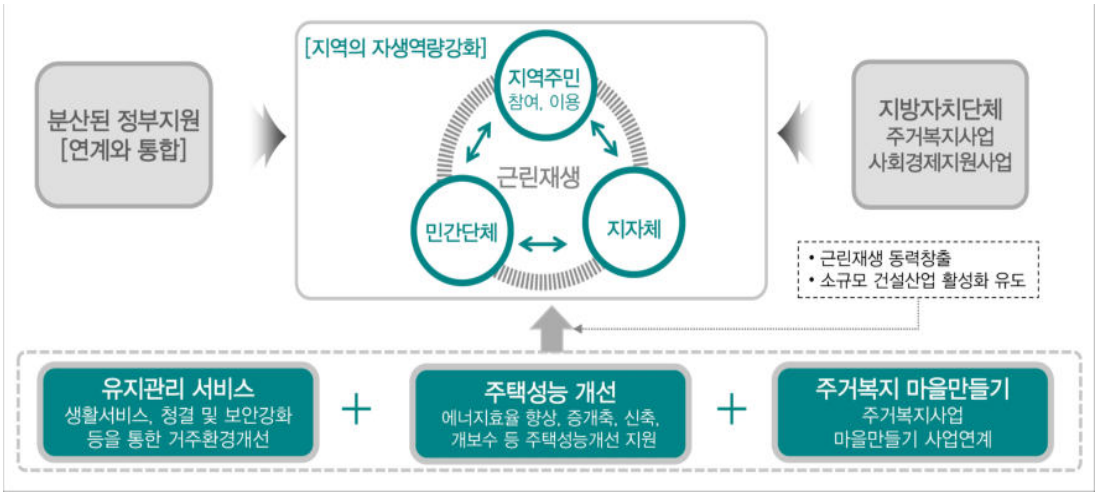
【그림 3-3-2-2】 재생전략추진 방향



02 통합된 근린재생 사업(사회경제적 지원+주거복지+마을만들기)등 물리적 기반조성

·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체계적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시 구체적 구역 및 사업수단을 확정

【그림 3-3-2-3】 근린재생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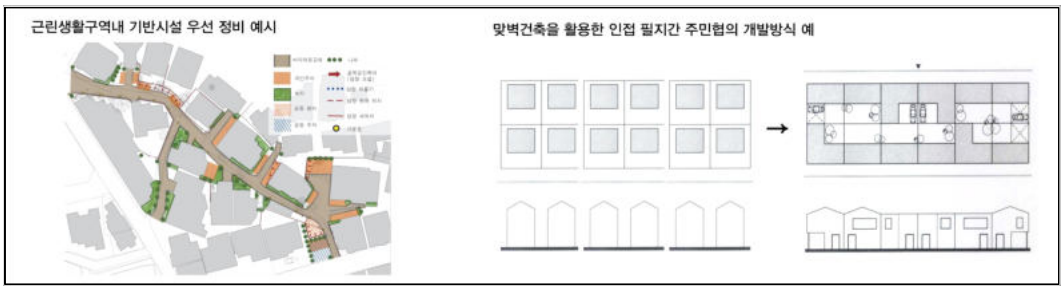
03 소규모 필지단위 정비 유도와 활성화 지원

· 주민주도의 계획적 관리에 의한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 건축협정제도

· 맞벽건축 허용, 건축선, 도로사선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가로구역별 완화), 대지내 공지, 건폐율 등의 기준 완화

· 건축협정 구역 내 공동주차장, 공동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시 건축허가 간소화

【그림 3-3-2-4】 소규모 필지단위 정비 방안



4.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4.1 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

01 공공부문의 기반시설 확보 참여

- 도시 및 개발사업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공공부문이 참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배치 시 인접한 구시가지와 단일 블록으로 검토하여 기반시설의 편중 방지

02 상업지역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 상업지역의 세부용도 설정을 통한 신시가지 상업기능과의 중복 최소화
- 상업지역 커뮤니티 기능(community function)을 보강하고 새로운 형태로의 재개발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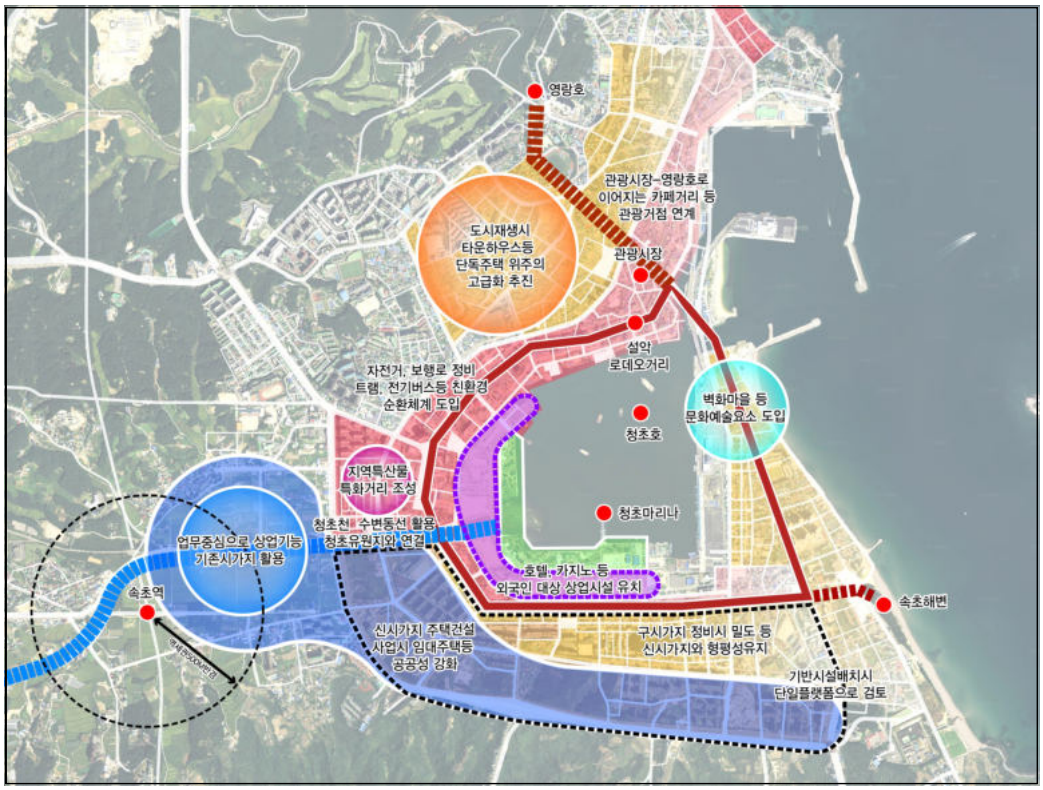
03 하드웨어적인 관광기능 연계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책을 병행 추진

- 시가지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 정부의 지원혜택이 임대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 신뢰도 증가

04 지역적 특색을 살린 특화구역 조성으로 속초만의 개성 창출

-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맛 볼 수 있는 점포 및 음식점을 유도하여 "젓갈거리", "명태마을" 등 특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 관광시장 내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전통공연 및 체험행사를 위한 문화광장 조성

【그림 3-3-2-5】 지역간 연계방안



4.2 신·구시가지 주거격차 해소

01 노후·불량주택의 정비 재건축

· 빈집의 상태, 활용 가능한 상태인지, 가능하다면 일시적, 영구적으로 어떠한지, 소유주의 권리관계는 어떠한지 등 내용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빈집 소유주와 활용 희망자·입주자 간의 매칭 및 민간사업자 정보 제공, 정책 피드백 수단 등으로 활용

· 대규모 전면철거방식 위주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서 전환하여 소규모단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유도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표 3-3-2-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 단독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 가로를 기준으로 구역 ·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 공동주택
규모	· (단독주택) 10호 미만 ·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미만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 호수, 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1만㎡ 미만	· 기존 200세대 미만 · 1만㎡ 미만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사업비 보조 및 융자 : HUG 등을 통하여 총사업비 50% 이내, 1.5% 금리 지원 등		
비고	·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으로 추진 가능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진단 받지 않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 안전진단 받지 않음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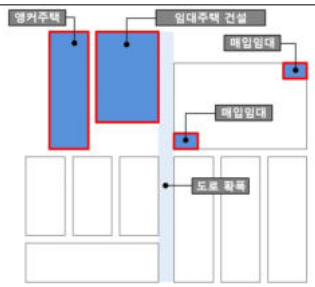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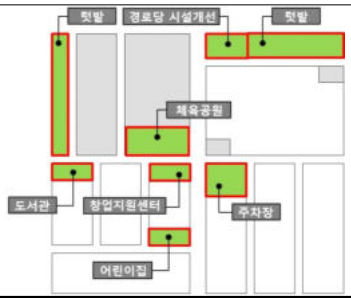
< 소규모재건축사업 >



02 단계별 정비방안 유도

· 노후 주거지의 자생적 재생이 가능하도록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단계별 정비 유도

【표 3-3-2-7】 단계별 재생 • 정비(예시)

1 단계	2 단계
공공 선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기반 마련	공용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이 원하는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3 단계	4 단계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집수리사업 활성화	상가가로 정비, 주택관리, 주거서비스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생적 마을관리 기반 마련
	

02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부설주차장의 현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로의 전용을 억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야간 상호 주차제도를 추진하여 주차난 완화

03 생활권별 도시기반시설 설치

- 접근성 및 생활반경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배분
- 시설간의 이용 편의성, 안전을 고려하여 최적의 적정 입지 선정
- 생활권별 거점화와 지구순환가로 및 단지 내 녹도에 의한 네트워크 구성
- 지역별로 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복합화하여 단일시설 내 도입
- 지역주민의 생활권별 교류거점 공간 창출
-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

【표 3-3-2-8】 주거환경정비 방안

구분	권역특성	적용방안
구시가지 (중·고밀도)	· 가로망 협소 · 소규모 영세상가 밀집 · 노후 건축물 · 기반시설 등 도시서비스 부족	·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 마을가꾸기사업(테마마을 등) · 노후주거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개발사업시 공공시설 우선확보
신시가지 (고밀도)	· 최근 공동주택 입지(예정) · 자율적 정비가 시행 · 기반시설 정비상태 양호 · 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 가로경관 개선 · 맞춤형 정비사업 · 구시가지와 연계방안 마련 · 주변지역과 연계된 지구단위계획
시가지 외 취락지역 (저밀도)	· 개별건축 및 소규모난개발 ·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	·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 등 특색있는 주거유형 도입유도 · 기반시설 범위내 집약화 유도

4.3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체감형 스마트 기술 활용

·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도시문제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정비 활성화

·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시주거환경 등장에 따른 노후 주거지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필요

· 동해안권 스마트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관광이 가능하도록 주요 관광객 유형과 여정별 주요 니즈를 파악하여 스마트관광 도시 모델을 구축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정비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스타트업, IT기업 등)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참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기술 기반 해법(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재생·정비계획 수립

▮민간 참여 확대

· 스마트시티 구축 전반적인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스타트업 등이 활발히 이루이 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

· 리빙랩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스타트업기업 등이 재생·정비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모 등 다양한 기회 제공

· 스마트 인프라, IOT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지역단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개방하여 비즈니스 모델 조성 지원

5. 추진전략

5.1 주택공급 방식의 차별화

01 단독주택 공급의 확대

· 소득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기존 단독주택을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으로 공급 전환

02 도시재생센터의 설립

· 속초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및 주택개발을 위한 연구·기획팀의 신설 및 보완

· 주택개발과 효율적 주택정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립 및 기획업무를 담당

· 주민참여형 주택조성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

· 장기적으로 비영리 주택공급단체의 설립 및 활동지원 모색

03 민간의 적극적 활용

· 공공부문의 행정실무와 민간부문의 자금력, 시공경험을 살려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민관합작회사 등 기관설립 추진

· 도시 경영사업에 의한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건설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04 계획적 개발방식의 적용

· 주택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함

5.2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01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노후주택, 불량주택의 정비 또는 재건축을 통하여 주택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속초시의 주택정비의 기반을 조성

02 지구단위 공공규제의 강화

·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관리기법의 연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입체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유도

03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기법의 모색

· 도시하부 기반시설, 공공시설, 가구 및 대지, 지형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 현 거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지 재정착이 가능한 다양한 정비방안 강구

· 지역주민 의견이나, 도시경관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을 선정하여 건축 제한

5.3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방안

01 기본방향

· 도시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개선 추구

· 상위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도시 주요시설의 저탄소 친환경적 정비 등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조성

02 입지선정

· 노후불량주거지 밀집 지역

· 주변 자연경관이 양호하여 해당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적절한 개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 지역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03 개발 방향

- 현황상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 유형별 개발방향과 부합되도록 조성
- 시가화예정용지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
- 신규개발, 도심 및 주거지정비시 녹색공간 확대 및 바람길 확보를 전제한 압축개발로 지역거점 강화와 도시생태 재생
- 대중교통환승센터와 역세권지역의 토지이용 고도화로 저탄소 시가지 형성
- 노후불량주거지와 상업지역에 친환경적 도시재생 방안 적용
- 바람길 형성과 관련하여 바람길 방향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 유도, 시설물 배치
- 주요 공공시설, 교육·문화·체육시설이 해당지역의 녹색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신축과 재정비 시 녹색건물화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설치, 옥상조경, 벽면녹화,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 노후 주거단지의 녹색단지로의 재생(그린에너지, 그린홈, 녹색인프라 등 적용)
- 농촌지역의 에너지자립형 저탄소 마을 조성과 그린홈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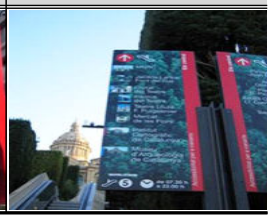
5.4 비물리적 분야 활성화 방안

01 관광부문

▮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

- 도심 진입부에 주요 역사유적지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상징조형물 제작
- 속초시 도심 내 문화·관광단지 조성 (청초호수공원 일원)
  - 중앙로 일대에 문화공간조성
  - 상징적인 가로조형물 설치로 가로경관 이미지 구축
- 작은 공연장 등 조성으로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 독려
- 지역 내 관광정보 안내 발신을 위한 U-Travel City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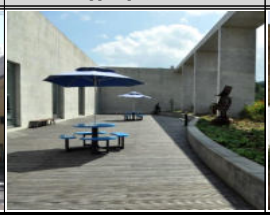
【표 3-3-2-9】 주거환경 정비방안(관광부문)

작은 공연장	가로조형물	도심진입부	주요시설 안내판
			

▌ 시민문화공간 조성

·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오픈스페이스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
· 중앙로와 청초호반로를 연계한 테마거리(걷고싶은 거리) 조성
· 도심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영화관, 전시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 관광거점과 연계한 야외 공연시설 및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표 3-3-2-10】 주거환경 정비방안(문화공간)

오픈스페이스	걷고싶은거리	휴식공간	야외공연장
			

02 도심환경 부문

· 도심 중심상업지 내 블록별 소규모 주차공간 확보
· 도심지 내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로망 체계의 정비 및 친환경 보행공간 조성
· 속초해수욕장~청초호~청초호수공원~아바이마을로 연계되는 도심녹지축 조성으로 시가지 순환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표 3-3-2-11】 주거환경 정비방안(도심환경 부문)

소규모주차시설	친환경 보행공간	가로망 정비	도심 녹지
			

03 복지부문

▮ 복지인프라 구축

·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계획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의무비율 제시)

·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DB구축(통합복지네트워크)

▮ 야간통행자의 사고 방지 및 CPTED 기법 등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치안강화

· 상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도심경계부에 조명시설 설치로 가시성 확보

· 치안위험지역 선정 및 공실주택 별도관리방안 마련

·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을 통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여유있는 환경을 제공

5.5 기타 추진방안

01 주민조직의 체계화 및 각종 협정 체결

· 아파트 공동체 운영, 골목 가꾸기, 마을 도서관 확보 등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권장하여 체계화된 생활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주민 상호간의 자발적인 협의에 의한 각종 협정제도(건축 관련 협정, 가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협정) 도입 검토

02 주민주도형 참여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및 균형 참여 방안 마련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제공, 다른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과의 연대 및 의사소통 채널 마련, 정보교환 등을 주선

· 지역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 방안 마련

Ⅳ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기후변화대응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 자연생태 및 경관녹지
4. 대기환경
5. 수질환경
6.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7. 토양환경
8. 소음 및 진동
9. 에너지
10. 폐기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 기후변화대응

1. 현황분석

1.1 기후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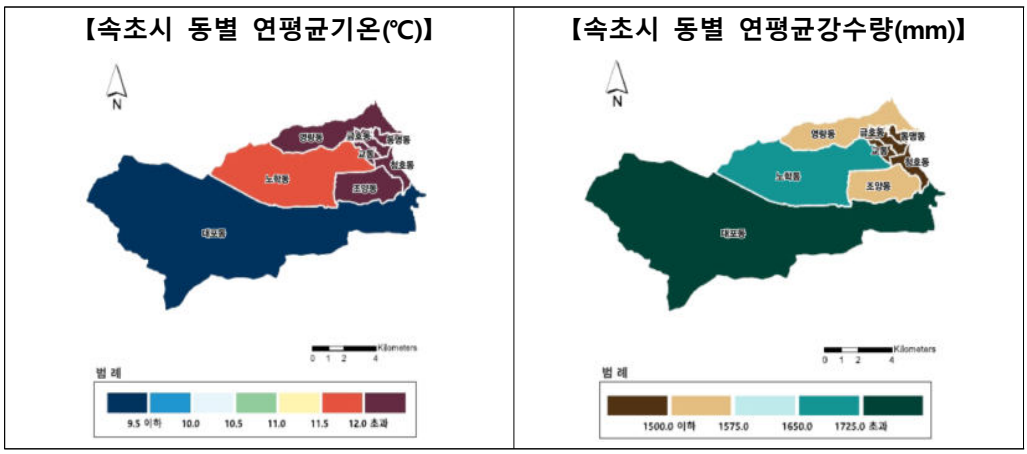
01 기온

· 관내 연평균기온은 13.1℃로 강원도 연평균기온(8.9℃)보다 높음
· 연평균 일 최고기온은 17.4℃, 연평균 일 최저기온은 8.9℃로 일교차는 8.5℃임

02 강수량

· 관내 연평균 강수량은 1,208.2㎜로 강원도 평균 1,162.1㎜보다 많음
· 관내에서는 대포동이 연강수량이 가장 많고, 금호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3-4-1-1】 속초시 동별 연평균기온℃ 상세분포도(2001~2010년)



출처: 강원도 속초시,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2016

【표 3-4-1-1】 연도별 기상개황

구분	기 온(℃)			강수량 (mm)	상대습도 (%)		이슬점 온도 (℃)	평균 운량 (%)	최심신 적설 (cm)	평균 풍속 (m/s)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	최저				
2012	12.0	15.8	9.5	1,217.7	67.4	10	5.3	5.1	14.2	2.3
2013	12.9	16.7	9.1	1,115.7	65.7	32.0	5.9	4.9	33.5	2.3
2014	13.2	17.1	9.3	1,099.0	68.0	11.0	6.5	5.2	41.7	2.2
2015	12.6	16.6	8.8	1,127.7	68.0	1.0	5.7	48.0	5.9	2.1
2016	12.8	16.8	8.5	1,333.2	68.3	9.0	6.2	-	-	1.9
2017	13.1	17.4	8.9	1,208.2	62.0	7.0	4.9	-	-	1.8

출처 : 강원도 속초시,「강원도속초시기본통계」2017

1.3 문제점 및 여건변화

▌에너지 부문과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에너지 부문은 인구, 자동차 증가, 발전용량 증가 등으로 급격히 전망

· 폐기물부문은 재활용 증가 및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감소에 따라 감소 예정

▌新기후체제(post-2020) 마련을 위한 협상의 본격화

· '13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15년 말까지 제출 요청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13~17'년)을 '20년까지 연장하여 新기후체제 출범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 공백 방지
- 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준비작업 필요

▌온실가스 감축요구 강화에 따른 대응 부족

· 2015년부터 업종별, 업체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배출거래제 시행

·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다자 경제협력에서의 입지 증대에 따라 기후변화협상에서 책임 있는 역할 요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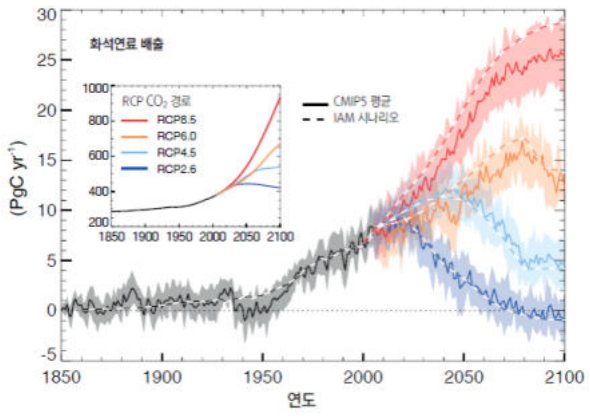
· 속초시에서는 2016년 6월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피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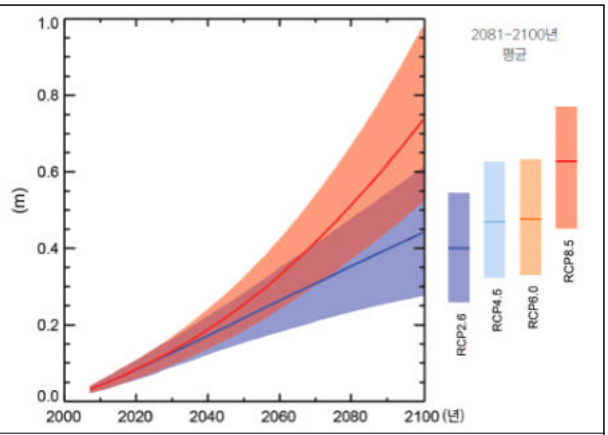
· IPCC WG Ⅰ 제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화석연료 배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지속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가 예상

· 속초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뭄, 태풍, 폭우 등으로 빈번하게 피해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대비가 필요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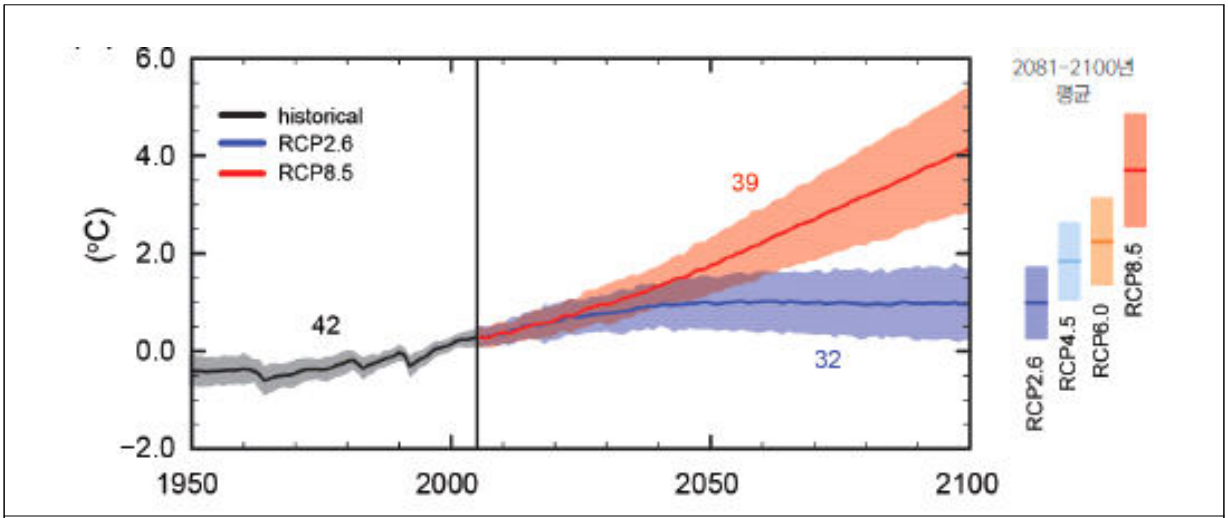
【그림 3-4-1-2】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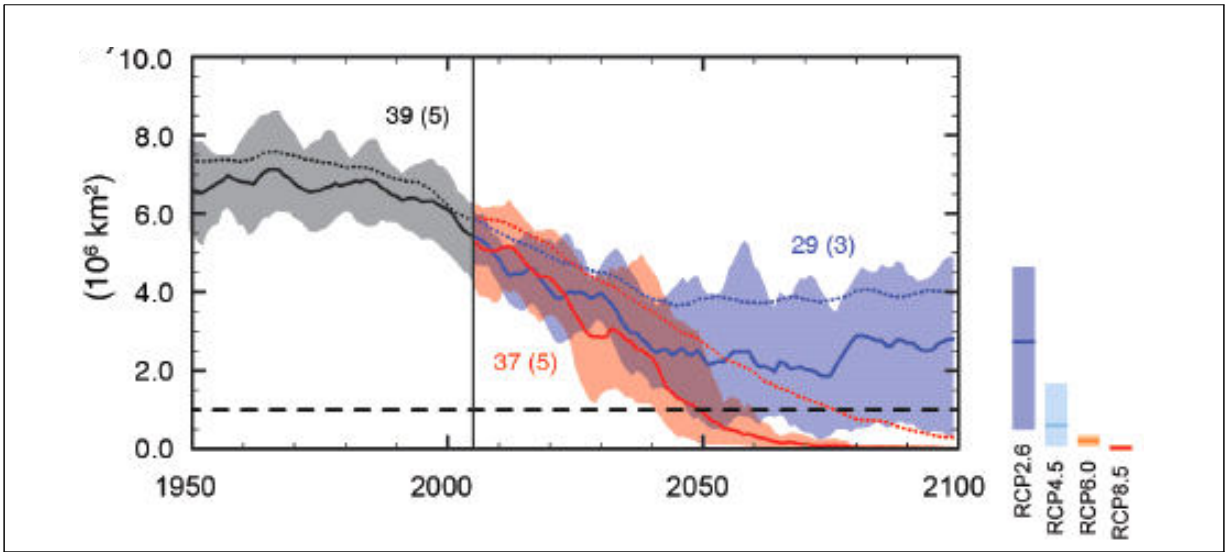
미래 화석연료 배출 경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전 지구 평균 지표온도 변화



북반구 9월 해빙면적 변화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2.1 목표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행복도시 속초"(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로 설정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 관리, 생태계의 7개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시

【표 3-4-1-2】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목표

구 분	내 용
건강	· 폭염과 질병에 건강한 주민복지 실현 ·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목표 실현 및 인프라 증진
재난/재해	· 재난/재해 예방 및 사후방제 능력 강화 인프라 구축 · 구조물 안전점검에 따른 재해방재역량 강화
농업	·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형 농축산업 육성 ·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 환경 유지 확대
산림	· 산림재해 예방·방재 능력 강화 · 산림자원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활동 강화 및 사전모니터링
해양/수산	· 연안재해 방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강화 · 해양생태계 보전 및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형 어장 조성
물관리	·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 물의 재이용을 통한 적응역량 강화
생태계	· 생태계 다양성 확보 및 생태환경 보전 · 녹지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자료 : 속초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2016~2025)

2.2 기본방향

01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등 비용의 효율적인 감축정책 및 수단 확대

· 배출권거래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탄소시장 적극 활용

02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 지원

· 국가정책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확산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시장 선점

03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 기후변화 복합위성 활용 등 과학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선진화
-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 건강·재난관리 등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04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 국민의 감축 참여 유도

-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기구, 다자·양자 협력 등에서의 협상 대응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등 다양한 채널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전 국민의 감축 참여 유도

2.3 실천계획

01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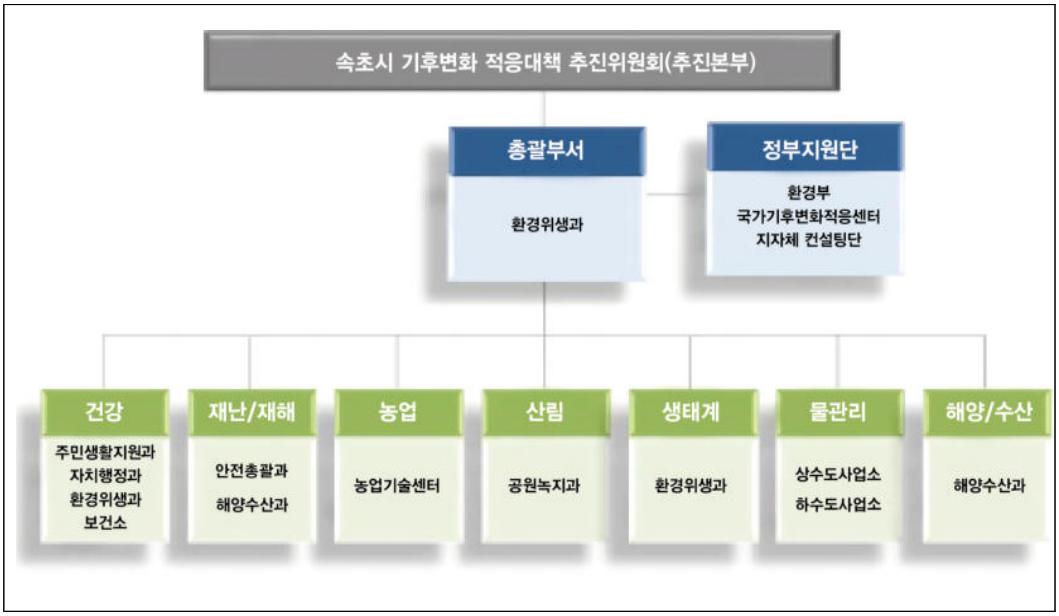
-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행 조직 마련
- 추진협의체의 역할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별 적응대책 및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행정 및 주민활동 지원, 지역현안 및 정보제공, 사업 참여 및 실천, 공동체 구성 및 운영·지원, 교육 및 홍보·캠페인 전개, 정책 모니터링 등임

【표 3-4-1-3】 기후변화 협의체 구성 주체별 역할

구 분		구성원별 역할	
추진 협의체	속초시	상위계획 제공	실시계획 인허가
		계획수립 주요정책/방침 결정	지역현안 및 정보제공
		현황분석 및 문제 진단	홍보 및 교육 실시
		도시운영 주요정책 및 방침 결정	지역사회 활동지원 (행정/재정/기술 등)
	강원도	상위계획 제공	지원제도 마련(행정/재원)
		계획수립 주요정책/방침 결정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수립 주요정책/방침 구체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부 지원단	환경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자체 컨설팅단 등	상위계획 제공	지원제도 마련(행정/재원)
		계획수립 주요정책/방침 결정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수립 주요정책/방침 구체화	

자료 :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2016)

【그림 3-4-1-3】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2.4 세부실천계획

- 여름철은 강한 일사로 인해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열대야로 속초시(전국적)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추세임
- 건강피해는 주민 생활문제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며, 기온상승에 따라 주민 생활양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
- 강수량은 평균 대비 증가하며, 이에 따라 홍수 등 재해 건수 증가 수반
- 단순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뿐 아니라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방재를 강화하여야 함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적으나 전국적으로 집중강우에 의해 크고 작은 산사태의 피해 건수가 증가
- 가뭄, 집중호우 등 강수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 생태계의 취약성과 이수, 치수를 위한 관개 시설정비 필요
- 해안가 지역 침수로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필요

【표 3-4-1-4】 세부시행 계획

분야	사업명	목적
건강	시민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복지 강화	취약계층의 생활복지 강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센터 운영 활성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사업	식중독예방과 관리 강화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강화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조사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관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사업	석면유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무더위쉼터 확대 보급사업	폭염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
	옥상 녹화(텃밭) 중점지구 사업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텃밭)조성
	기후변화 적응 가이드라인 배포	기후변화에 피해 예방 위한 건강 종합대책 마련
	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및 건강질병 예방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및 DB 구축	취약계층 상시 건강 모니터링, 건강한 삶 도모
재난 재해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방재역량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생활안전 강화
	동명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안전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동명10 서민밀집지역 정비	서민밀집지역 정비로 서민들의 안전을 보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지원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강화
	홍수량 할당제도	홍수 예방을 위한 방류수 관리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폭설에 따른 2차 재해예방
산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사태 예방
	도시 숲 조성	수목 식재로 열섬현상 완화
	산림재해 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사방, 임도사업 등 산림복원사업
물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사업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통한 안정적 물 공급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맑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정수장 수질관리 강화	정수장 수질관리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도모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추진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하수처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하수관거 구축/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개량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개량사업
	빗물 재이용 사업 및 식물공장 시범사업	갈수기 시 물의 재이용 활성화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안정적인 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생태계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
	조도 생태조사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	조도 생태조사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
	하천-녹지 네트워크 복원 및 조성	생태축 복원 및 경계 없는 생태도시 조성
	아열대화 수산생물질병 관리 계획 수립	아열대화에 따른 수산생물 질병 관리 강화
해양	아열대화 수산생물질병 관리 계획 수립	아열대화에 따른 수산생물 질병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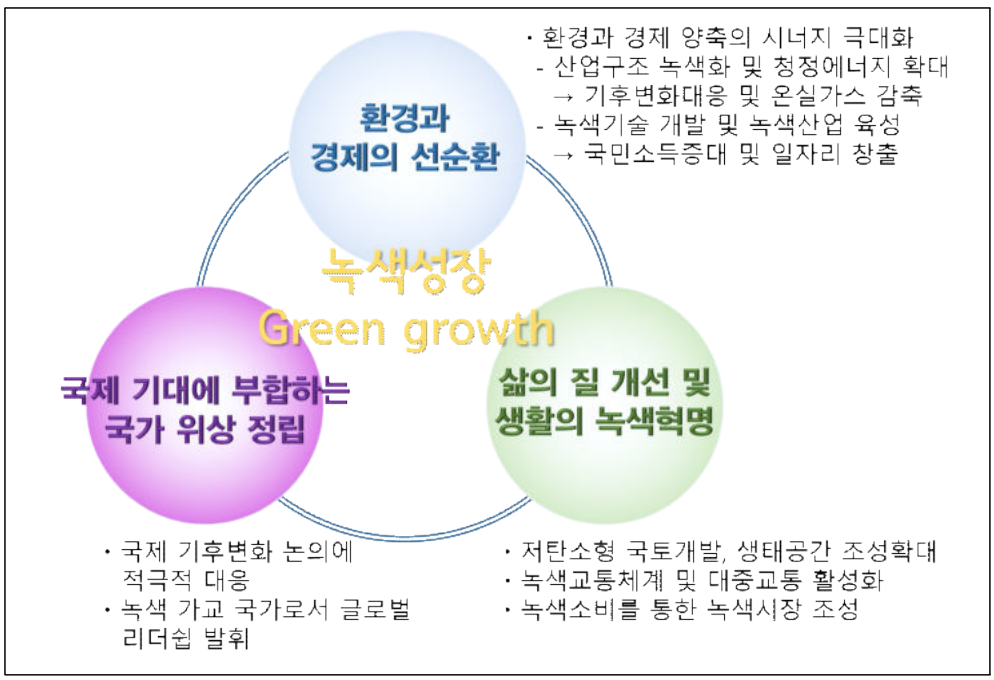
자료 :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2016)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 개요

1.1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1.2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 경제와 환경이 상충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 극대화

-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
- 현 에너지·경제·기후·생태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며, 동시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2. 기본방향 설정

2.1 필요성

01 에너지 위기

·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무역자유화의 진전 및 중국, 인도의 급성장 등에 따라 에너지·자원 부족 문제 발생 예상

· 전 세계적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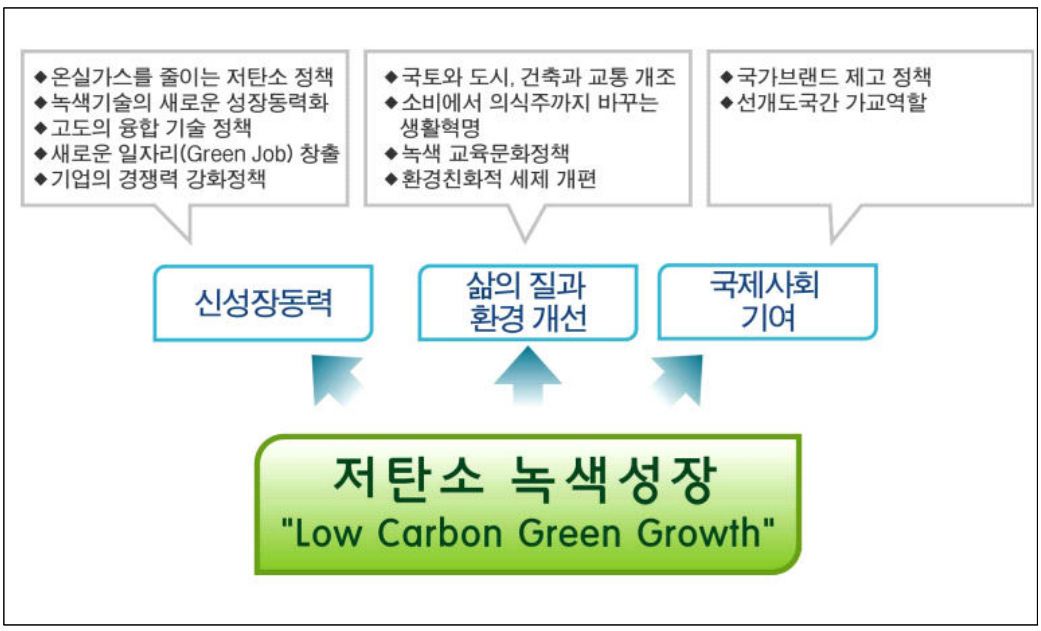
· 국내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며, 가격변동에 민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낮음

02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수립

· 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

· 국가발전 이룩,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 달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 속초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차원의 '저탄소 녹색도시' 비전과 강원도의 거점도시의 역할 전략 마련



2.2 기본방향

01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 창출

- 환경부하량 저감방안 마련
- 속초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에 도입

02 인구지표 수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대

- 건전한 물 순환 구축 및 수자원 절약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자연상태 물 순환 체계 회복
- 폐수 처리수 이용 및 중수도 사용 확대, 절수대책 수립을 통한 수자원 절약

0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 도시환경 조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 마련
-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을 도시형성의 요인으로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적 토지이용구조를 모색함

04 생태를 고려한 도시조성

- 환경부하를 고려한 선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수질오염총량 계획 수립
- 물순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도시개발, 환경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립·안정·순환형 기반시설 및 도시의 정비
- 환경보전상 상호 보완되는 공간으로 일체화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도시조성

3. 현황 분석 및 지표설정

3.1 온실가스 배출현황

01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 속초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630.1천tonCO2-eq[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3% 증가

· 전체 온실가스 중 에너지부문이 46.28%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1】 속초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구 분			배출량(천tonCO2-eq)					비율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619.6	588.0	622.2	635.2	630.1	0.3
에너지	합 계		301.2	266.5	296.8	304.6	291.6	-0.6
	연료 연소	소계	300.4	265.8	296.1	303.9	290.8	-0.7
		에너지 산업	0.1	0.0	0.0	0.0	0.0	-
		제조업 및 건설업	7.4	5.3	11.8	6.8	4.6	-9.2
		수송	153.0	164.4	171.2	180.5	170.3	2.2
		기타 부문	139.9	96.1	113.2	116.6	115.9	-3.7
	탈루성 배출	석유와 천연가스	0.8	0.6	0.7	0.7	0.9	1.5
산업 공정, 제품 사용	합계		26.4	28.5	28.0	29.0	30.2	2.7
	연료로 인한 비에너지 제품 및 용매 사용		0	0	0	0	0	-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써 제품사용		12.2	13.4	13.4	13.2	14.5	3.5
	기타 제품 제조업과 사용		14.2	15.1	14.5	15.7	15.7	2.0
AFOLU[2]	합계		3.4	2.7	3.1	3.6	3.4	0.0
	가축		0.6	0.0	0.5	0.5	0.4	-7.2
	통합적 배출원 및 관리토양에서의 Non-CO2배출		2.8	2.7	2.6	3.1	3.0	1.3

1) CO2eq :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표 3-4-2-2】 속초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어서)

구 분		배출량(천tonCO2-eq)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폐기물	합계	44.8	48.8	42.5	39.2	42.1	-1.3
	고형 폐기물 매립	29.9	28.6	27.6	26.6	25.9	-2.9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1.7	1.7	2.0	0.0	1.1	-7.9
	소각 및 노천소각	11.7	17.5	11.4	11.2	13.9	3.5
	폐수 처리 및 방류	1.5	1.0	1.4	1.3	1.2	-4.0
간접 배출	합 계	243.8	241.5	251.8	258.8	262.8	1.5
	전력	212.1	206.6	212.6	219.5	224.6	1.2
	열(Heat)	0.0	0.0	0.0	0.0	0.0	-
	폐기물	31.7	34.9	39.2	39.4	38.2	3.8

자료 : 지자체 인벤토리 프로그램, 환경부

3.2 온실가스 저감계획

01 기본방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3](2018년 7월)'에서 수립된 감축목표 반영
-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458.0천tonCO2-eq으로 BAU[4] 대비 37%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함
- 속초시는 상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목표연도인 203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속초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대비 37% 감소시켜 국가정책 방향에 부응

【표 3-4-2-3】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단위 : 천tonCO2-eq, %)

구 분	계획지표				비 고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계획인구	85,268	87,957	89,860	90,930	
배출량 예측	691.9	726.9	751.0	762.6	
배출량 감소율	17.5	37.0	37.0	37.0	
감축 배출량	570.9	458.0	473.1	480.4	

자료 : 2013~2017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을 지표로 추정값 산출

2) AFOLU :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
3) 수립 :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 국조실, 과기부, 기재부, 외교부 등)
4) Business-As-Usual :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02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위한 정량적 목표설정

·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 282.2천tonCO2-eq (단계별 예상 배출량의 37%)

구 분	감축 목표배출량 (천tonCO2-eq)				감축 실행방안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총 계	121.0	268.9	277.9	282.2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 • 친환경 도로 · 교통수단 운영 •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감 • 에너지 통합관리스스템 구축 • 폐열회수발전 설비 도입 • 바이오 디젤 보급 • 중온 아스팔트 포장기술 도입 • 저탄소 농작물 생산기술 개발 • 에너지 절감 온실모델 개발 • 매립지의 매립가스 회수 발전시스템 •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
에너지	56.0	124.5	128.6	130.6	
산업공정, 제품사용	5.8	12.9	13.3	13.5	
AFOLU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	0.7	1.5	1.5	1.6	
폐기물	8.0	17.9	18.6	18.8	
간접배출	50.5	112.1	115.9	117.7	

주1) 감축목표 : 2025년 17.5%, 2030~2040년 37%
주2) 발생비율에 따라 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량 설정

4. 실천계획

4.1 녹지보전계획

· 주요 가로변, 주택가의 담장 및 건물의 옥상 등 녹화사업을 추진

· 도시녹지경관으로써 빗물가든,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등 분산식 물순환기능 녹지를 적극 도입하여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한층 제고

· 단절된 완충녹지를 자연 숲에 가까운 생태녹지로 조성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 도로나 철도 개설, 택지개발에 의해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태통로 설치

4.2 하천과 수질관리계획

- 하천의 자연정화기능 강화 및 하천 생태계의 회복·보전을 도모하고 하천공간기능 증진을 위한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저감하는 보전 대책 수립이 요구됨
- 하천경관 유지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하천의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자연물순환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대하면서, 홍수피해의 증가,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 수질오염, 건천화, 열섬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요소를 도출하여 속초시에 적합한 물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노후된 상수관을 개량하며,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해 지원하고,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막여과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4.3 녹색건축물 인증제 가이드라인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 인증대상은 기존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이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검사해야 함
- 녹색건축물의 인증기준은 신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 그린모델링건축물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건축물의 유형(공동주택, 복합건축물, 학교시설 등)별 평가시행

4.4 첨단기술을 활용한 녹색산업 육성

-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며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을 육성하며, 생물자원을 발굴·확보하고, ET·BT·IT·NT를 연계하는 융합녹색산업을 육성해야함
- 기후변화, 환경컨설팅 등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녹색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외 환경전문가 파견을 확대하여 글로벌 환경전문가를 양성함
- 속초시의 중소기업 협력사의 사업장 탄소배출 저감 및 제품 전과정 친환경 기반 마련

【표 3-4-2-4】 녹색전문인력 양성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산정·보고
온실가스관리사 및 산업기사	·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시행('14~)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위한 자격자 배출('14~)
친환경 전문 건설인력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액티브 시설시공, 환경친화적 그린홈네트워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기술활용 접목 등
저탄소 인증 심사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에 따른 심사원 양성
전문손해평가 인력	·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재해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친환경농업리더	· 지역별로 조성중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업지구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인력 육성
그린에너지 인재양성	· 태양광, 연료전지 산업분야 인재양성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 미래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측정분석 장비관리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오염방지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자원재활용	· 폐기물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자원화 부문 등 핵심기능인력 양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 전담('15~)
탄소금융 서비스 및 컨설팅 인력	·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탄소시장 컨설팅 등
환경형 사회적 기업	· 성장 가능성 높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자료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

4.5 자원순환형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영세한 중소재활용업체 대상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금 지원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폐자원의 자원화 촉진

· 업사이클을 환경과 소비문화가 융합하는 신산업으로 육성

* 업사이클(Upcycle) : 폐자원을 디자인과 활용도를 가미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것

· 배출·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과정을 수용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통해 안정적 원료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표 3-4-2-5】 제3차 녹생성장 5개년 계획 중점 추진방향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대 중점과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 온실가스 감축 평가 · 배출권 거래제 정착 · 탄소 흡수원 및 국외 감축 활용 ·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 확대 ·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녹색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 녹색국토 실현 · 녹색교통 체계 확충 · 녹색생활 환경 강화 ·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 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 그린 ODA 협력 강화 · 녹색성장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자료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9~2023)

4.6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공공청사의 솔선수범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력 등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부흥함과 동시에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한 대체 에너지 개발

·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및 신호등 교체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설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건축물의 열관리·폐열이용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제 실시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유도

· 기존 소각장, 매립장 등을 신재생 발전소 부지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4.7 녹색교통수단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유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속적인 자전거 타기 행사 개최, 자전거도로 확충 등)
-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
- 저공해화 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및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보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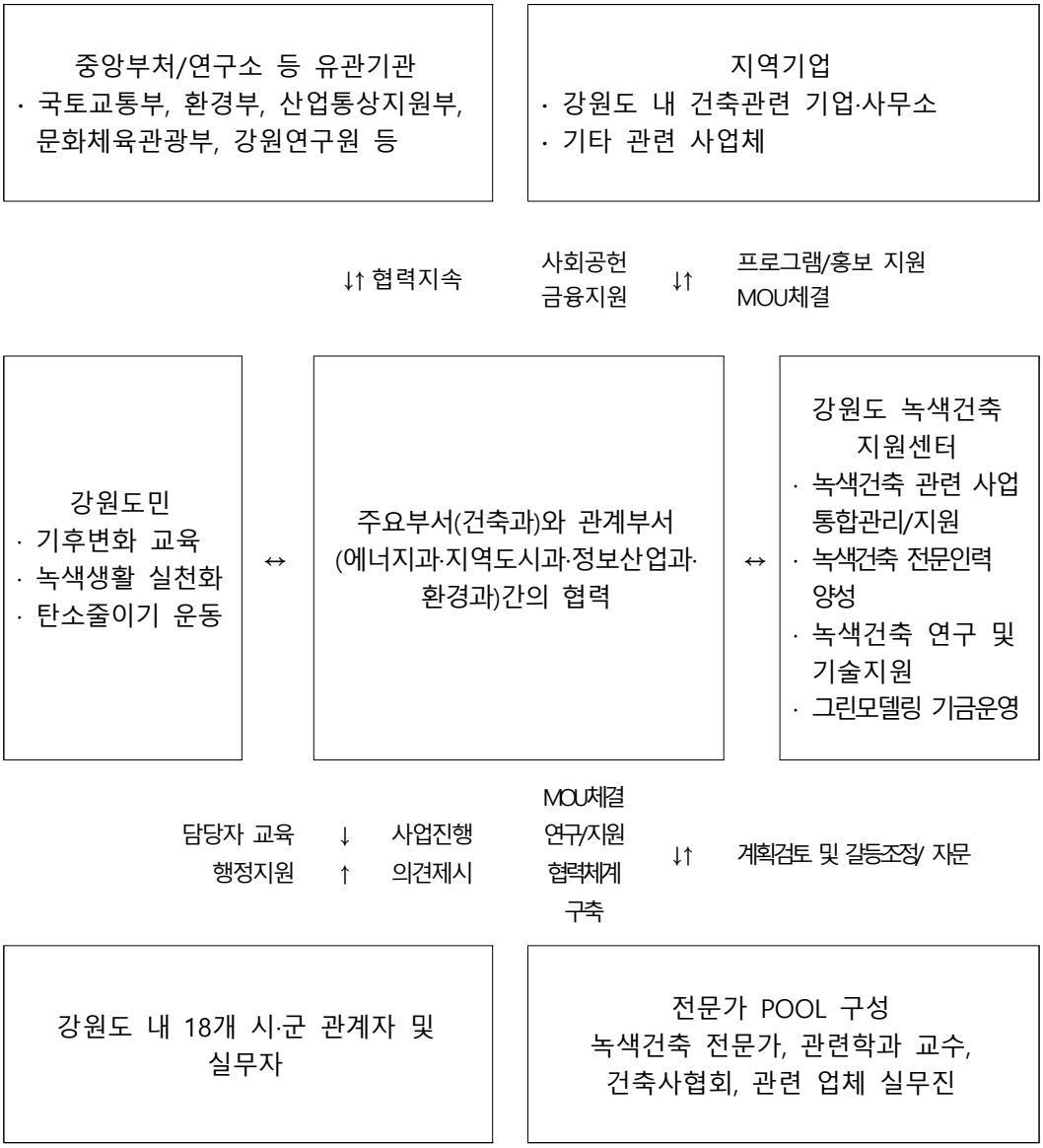
4.8 탄소흡수를 위한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 확충

- 녹지확보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및 도시 열섬효과 방지
-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반 구축
-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생활권별·단계별로 확충하고, 도시 내 탄소흡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
-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도심 속 생태적 건강성 회복 및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과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 제공 등 심신이 건강한 도시 조성

4.9 녹색건축물 조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강원도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중심주체로 세우고, 지역민·업무담당자·전문가·지역사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합관리하고, 그린 리모델링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진행 등 녹색건축 산업기반 역할수행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 절약 생활 실천 및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참여 유도

【그림 3-4-2-1】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협력 네트워크



자료 :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017

5. 녹색성장을 위한 주체별 역할

▮ 시 민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공유 및 지속적인 관심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

· 능동적인 저탄소·친환경 생활양식(life style) 실천

· 나무심기, 자연보호 등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행동 생활화

▌시민단체

-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생활속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 지향을 위한 국민 참여 유도
- 기업의 저탄소 생산활동과 국민의 저탄소 소비활동에 대한 점검(Monitoring)
-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산업계

- 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활동(에너지절약)을 자발적으로 전개
- 선도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과정(Process) 개선
- 저탄소형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 유도
- 근본적인 저탄소 사업(Business) 모델 구축
- 산업폐기물 배출량 감소시 인센티브 제공 등 폐기물 저감 장려

▌지방자치단체

- 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및 장래 배출량 예측
- 실천 가능한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도시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조성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6. 저탄소 녹색관광을 위한 방안

6.1 저탄소 녹색관광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저탄소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기존 화석연료나 비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조속히 청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

· 저탄소 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제도 마련시 관광특구나 관광객 이용시설들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체들의 저탄소 사업 전환을 조기에 유도

▌관광객 접객시설들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풍력, 지열 등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저탄소 건물'로 신축 및 개축 유도

· 개축하기에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건물들을 저탄소 건물로 개축할 경우 허가를 완화해주고, 개축 비용에 상응하는 증축(용적율 상향 등)등으로 사업성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검토

- BIPV :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저탄소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라벨 혹은 탄소 Foot-print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에 도입

▌탄소배출 제로 교통수단 보급 방안

· 전기차나 연료전지 차량을 구매시 속초시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

·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확보하고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내연기관 차량에 우선하여 확보

- 공공주차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 도심 투어형 전기차 대여서비스 등 추진

6.2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 방안

▌첨단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관광상품 개발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는 호텔, 상가 등 저탄소 건축물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 BIPV의 경우 도시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수많은 고층 건물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어 색다른 저탄소 도시경관을 체험해 볼 자원을 창출
- 공공건출물 외벽에 박막형 태양전지와 염료감응형투명필름 태양전지 등을 활용할 경우 저탄소 관광건축물로 활용 가능 (에너지 생산빌딩)

▌저탄소 관광 상품과 연동한 에너지 관광 도입

· 탄소라벨, Foot-print 등 다양한 적립식 아이템과 스마트기술을 활용 `종합 에너지 점수` 등 누구나 스스로가 에너지 소비 형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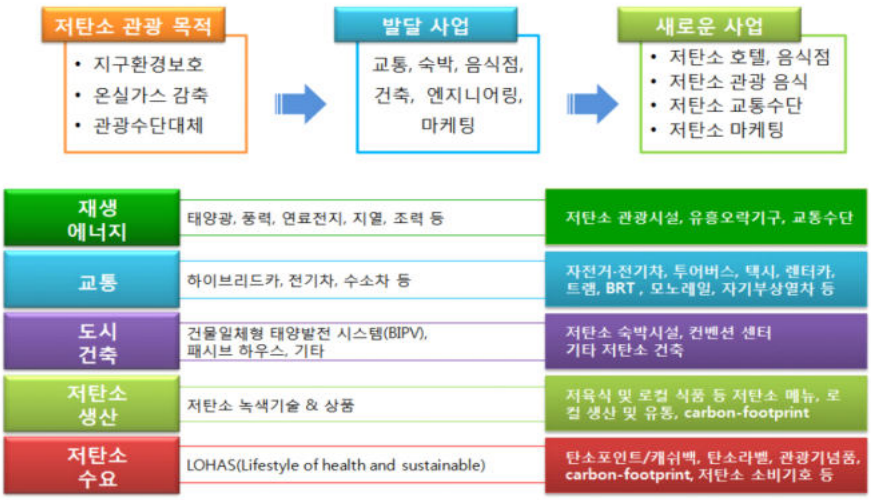
- SNS 등을 활용 순위를 공개하는 등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탄소저감을 위한 시가지 관광교통 감소 대책 마련

·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는 시가지 교통혼잡 등에 따른 탄소배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 외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대중교통 활용 인증시 주차비 지원 등 즉시 느낄수 있는 대책 마련

【그림 3-4-2-2】 저탄소 녹색관광 비즈니스 모델



주) 관광산업의 신성장 모델 : 저탄소 녹색관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 자연생태 및 경관녹지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산림 및 농지

· 행정구역 대비 답은 강원도의 평균인 3.3%에 비해 속초시는 3.9%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림면적 및 전 면적은 강원도의 81.6% 및 6.1%에 비해 73.7%, 3.9%로 평균에 비해 낮음

· 속초시의 녹지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청대산 등을 둘러싸여 양질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표 3-4-3-1】 속초시의 산림과 농지

구 분		행정구역면적(㎢)	산림면적(㎢)	농지면적(㎢)	
				전	답
강원도	면적	16,875.04	13,774.39	1,030.06	553.36
	비율(%)	100%	81.6	6.1	3.3
속초시	면적	110.78	77.89	4.11	4.13
	비율(%)	100%	73.7	3.9	3.9

출처 : 2018년 강원도 통계연보

· 속초시의 주요 녹지자원인 산림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78,417,752㎡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17년 77,894,378㎡로 523,374㎡가 감소하였으며 속초시 전체면적의 73.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3-2】 속초시의 산림변화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야면적(㎡)	78,417,752	78,255,465	78,255,465	78,155,444	78,167,797	77,894,378

출처 : 국토교통부,「지적통계」

· 속초시의 자연공원은 설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표 3-4-3-3】 국립공원 지정현황

구분	개소	면적(㎢)	최초지정일
계	1	67,243	-
설악산국립공원	1	67,243	1970.3.2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1.2 식생

· 환경부에서 조사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1986~2016년)상 속초 지역(388151)은 설악산권으로 홍천, 인제, 고성과 같은 분류이며, 속초시의 경우 청초호와 영랑호 주변의 계속된 도시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야생동물 서식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3-4】 속초시 출현 생물 종 및 보호대상종

구분	출현종	보호대상종	비고
어류	9과 22종	멸종위기 종 II급 잔가시고기, 가시고기, 한둑중개	-
대형무척추동물	15목 30과 47종	-	-
육상곤충	11목 61과 150종	-	-
양서류	2목 5과 9종	-	위해외래종인 황소개구리 발견
파충류	2목 4과 7종	-	위해외래종인 황소개구리 발견
조류	59종	멸종위기 종 II급 가창오리, 새홀리기	-
포유류	10종	멸종위기 종 II급 삵	-

출처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2014

【표 3-4-3-5】 속초시 주요 식생현황

구분		식생	비고
설악산 권역	**자연식생**	신갈나무군락	-
		소나무군락	-
		소나무-신갈나무군락	-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
		굴참나무-소나무군락	-
	식재림	일본잎갈나무식재림	-
		일본잎갈나무-잣나무식재림	-
		잣나무식재림	-
		밤나무-아까시나무식재림	-
속초		소나무군락	산불로 주변 산림은 대부분 소나무군락이 되었으며, 산불과 간벌로 리기다소나무가 간섭해 식생보존등급 III등급으로 하향조정
		소나무-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소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식재림	

출처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2014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의 기본은 지역 환경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속초시의 경우 살아 숨 쉬는 생태형 하천, 주민과 철새가 공존하는 석호,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숲, 풍부한 생명자원의 보고 바다를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속초"를 자연환경 보전의 모토로 삼음

<table>
<tr><td>목 표</td><td colspan="3">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속초</td></tr>
<tr><td rowspan="3">세부목표 달성</td><td>주요지표</td><td>현황(2015년)</td><td>계획목표(2025년)</td></tr>
<tr><td>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td><td>-</td><td>작성</td></tr>
<tr><td>도시·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 계획 수립</td><td>-</td><td>작성</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3">1. 도시 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한 도시 녹지공간 감소
2. 도시화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3.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의 악영향</td></tr>
<tr><td rowspan="4">여건분석</td><td>현황</td><td>주요 영향인자</td><td>예측치</td></tr>
<tr><td>1. 개발위주의 정책 지속
2. 관광지 개발로 인한 훼손 심각
3. 생태축 파편화</td><td>1. 지속가능발전 모색
2. 건강한 녹지 수요
3. 기후변화
4. 관광경제 활성화 여부</td><td>1. 녹지수요 증가
2. 우수 녹지경관 감소
3. 종 다양성 감소
4. 생태관광 활성화</td></tr>
</table>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3. 실천계획

3.1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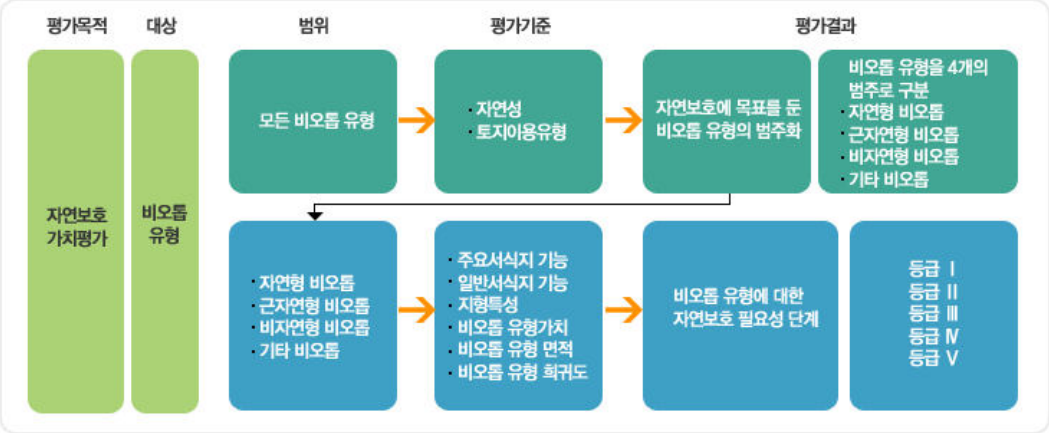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구분되는 독립된 서식지를 의미

▮ 기본방향

·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징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지도로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 네트워크의 형성 뿐 아니라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본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등 다양한 도면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제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국토환경공간정보이며, 대표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활용

【그림 3-4-3-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방법



출처 : 서울시 비오톱 지도의 제작과 활용(2007년), 서울시

【표 3-4-3-6】 비오톱 평가 방법

구분	특성 및 평가 중점사항
시가지 비오톱 중점 지역	· 대도시지역과 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되거나 인간의 간섭 및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역 · 녹지 비오톱 유형 상대적 보전 필요
농촌형 비오톱 중점 지역	· 소규모 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서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자연 및 반자연공간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지역
자연형 비오톱 중점지역	·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산림지역, 해안지역과 같은 자연지역으로 생물서식지로서 가치가 있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자연비오톱의 유연한 평가적용을 통한 가용지 확보와 생물서식처 보전의 균형적 이용 필요

출처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법제처

▌필요성

· 1999년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여 도시생태 보전 및 복원 등 도시계획분야에 활용

· 환경부의 제3차 자연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및 도시생태축 경관계획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환경보전방안 등 도시 생태휴식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개념을 포함한 생물 다양성 직불제 도입, 생태복원 전문업 및 협회 신설, 인력 양성 등 생태복원 전문성을 강화

· 속초시에서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개발과 보전여부를 판단하고, 개발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을 평가하는 체계 필요

【표 3-4-3-7】 분야별 생태자연현황지도 활용방안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친환경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부문 및 공원녹지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관리계획 : 기초조사 중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활용 · 도시개발사업 : 인허가,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비오톱지도와 비오톱 세부조사 결과가 활용
환경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통합적 환경관리 ·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 · 경관생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민	· 지역 시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초중고교의 환경 현장 학습에 비오톱 지도 활용 · 시민 참여를 비오톱 지도의 상시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 · 시민이 지역 생태계의 복원 또는 개선 공간을 발견하도록 하고 복원의 방향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 환경·생태·도시계획 분야의 대학 및 연구소와 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교류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한 연구의 질을 향상

▮ 등급별 운영방안

· 비오톱 지도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특수지 비오톱 등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 유형은 '평가 외 등급'으로 제시

· 비오톱 유형평가는 자연성, 다양성, 희귀성, 면적 및 규모, 복원능력, 복구능력, 생태적 기능성, 도시환경기능성에 대한 특성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 및 지표로 사용 가능

- Ⅰ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Ⅱ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하는 비오톱유형
- Ⅲ등급: 대상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Ⅳ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유형
- Ⅴ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3.2 도시 생활공간과 연계된 공원·녹지 공간구조 구축

- 속초시 공원녹지는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도록 도시권 전체에 대한 녹지체계를 구축
- 공원녹지가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도시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공원시설을 우선 배치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변 시군 및 생활권이 공간구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체계를 구상
- 도시의 외곽지역과 연계한 지역거점 공원설치로 도시 내 녹지 확충
- 실효된 공원에 대한 대체 녹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정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높은 계획을 수립
- 도시자연공원 등 여가와 위락공간을 도시권 전체에 적절히 배치하여 도시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하며, 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체험형 공원 및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공원과 그 주변의 시설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

3.3 경관을 고려한 녹지·하천망 구축

- 속초시 서쪽의 설악산은 주요한 산림으로 양호한 산림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깨끗한 동해바다를 지니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 및 주요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외형, 색채 등으로 인한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 대두
- 속초시내의 경우 인공시설물, 불량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일부 경관의 부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산림녹지에 대해 도로개설, 개발사업 등 불가피할 경우 전용된 산지 이외에 훼손을 방지하고 사업구역내에서 양호한 산지는 최대한 원형존치
- 도시지역 내의 시가화나 시가화 예정에 따른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녹지축 단절에 따른 네트워크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3.4 도시 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 계획 수립

· 환경부에서 생태축 조사, 보전, 복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생태축 보전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생태축 기초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 환경공간정보 고도화 (1/25,000▸1/5,000) 등 생태축 복원정보 기반을 마련

· 속초시는 도시환경계획 수립 시 도시생활공간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 지침 마련이 필요

·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두레"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 생태축 복원사업을 발굴 및 추진 권장

- 생태두레 : 독일 NRW주는 Biological stations을 통해 시민단체와 지역민이 Natura 2000 지역 관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3.5 친환경적 개발 필요

· 속초시의 수려한 산림과 계곡, 바다로 형성된 지역으로 시가지 개발 및 도로 개설 등을 위해서는 경관자원 훼손이 불가피하나 농공단지 조성 및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공사는 산림파괴 및 해안경관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전략환경평가(EA) 및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활용 개발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환경보전이 고려된 친환경 개발유도

4. 백두대간권역의 국립공원 관리방향

4.1 설악산국립공원의 보전 필요성

·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이며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 백두대간의 보호지역은 국립공원 7개소, 도립공원 2개소, 군립공원 1개소, 백두대간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함

· 특히 백두대간 권역의 국립공원은 생태적 측면에서 개별공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전체 생태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육상생태계의 핵심공간으로 인식하고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부전략 추진 필요

4.2 설악산국립공원 관리방안

▮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 백두대간권역의 제1차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위한 4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전략 수립

·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의 보전가치 극대화의 전략목표를 위한 추진전략은 공원자원 보전과 공원환경보호,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는데, 이 분야의 추진전략은 다른 국립공원보다 핵심적으로 수행

· 생태복지 서비스 제공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품격 자연문화 탐방프로그램과 탐방객의 분산에 초점을 두어 공원자원의 지속성이 확보되면서 이용을 유도하는 전략 수립

전략목표	계획구분	추진전략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보전기반 구축화	공원자원 보전	·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및 복원 · 공원자원 DB구축 및 모니터링 · 경관 및 문화자원 체계적 관리 · 생태계 복원 및 건강성 회복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	· 백두대간 자원조사 및 생태축 보전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 · 백두대간의 현명한 이용
	공원환경 보호	· 합리적인 행위허가 및 협의 · 무질서·환경오염의 근원적 예방 ·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환경 개선 · 유관기관과 재난 관리체계 구축
고품격 생태자원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이용	· 고품격 자연문화 탐방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기능 강화 · 선택적 운영을 통한 탐방객 분산 · 자연친화적 탐방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협력 공원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협력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원관리
미래지향적 공원관리 기반마련	관리기반 확충 및 조직문화 개선	· 공원관리 기반 선진화 · 직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강화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제1차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 생태축 연결복원

· 설악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인 지방도 56호선, 설악산로, 국도 44호선에 대한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현황, 생태통로 이동 실태 모니터링 지속 필요

▌점·비점오염원 관리 및 오염 예방

· 점오염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오수처리시설 점검. 오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필요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고려

· 비점오염원인 농지는 지역별 담당구역 관리자가 수시로 오염원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위협요인이 있을 시 대처

·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공원환경보호를 위한 관리 동반자라는 인식을 강화하여 오염 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

▌멸종위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방안 마련

· 탐방유도 및 탐방환경 개선으로 멸종위기종 및 설악산 고유 자생식물 훼손방지

· 국립공원 내 야생동·식물 조사, 모니터링 및 각종 보호활동을 통해 공원자원의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보전 도모

· 표본 및 종자 보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자연자원의 모든 자료를 DB화 추진

4 대기환경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일반현황

· 2019년 금호동에 설치된 대기질 측청망은 대기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속초시의 대기질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제외한 대기질 측정값은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표 3-4-4-1】 속초시 대기오염도 월평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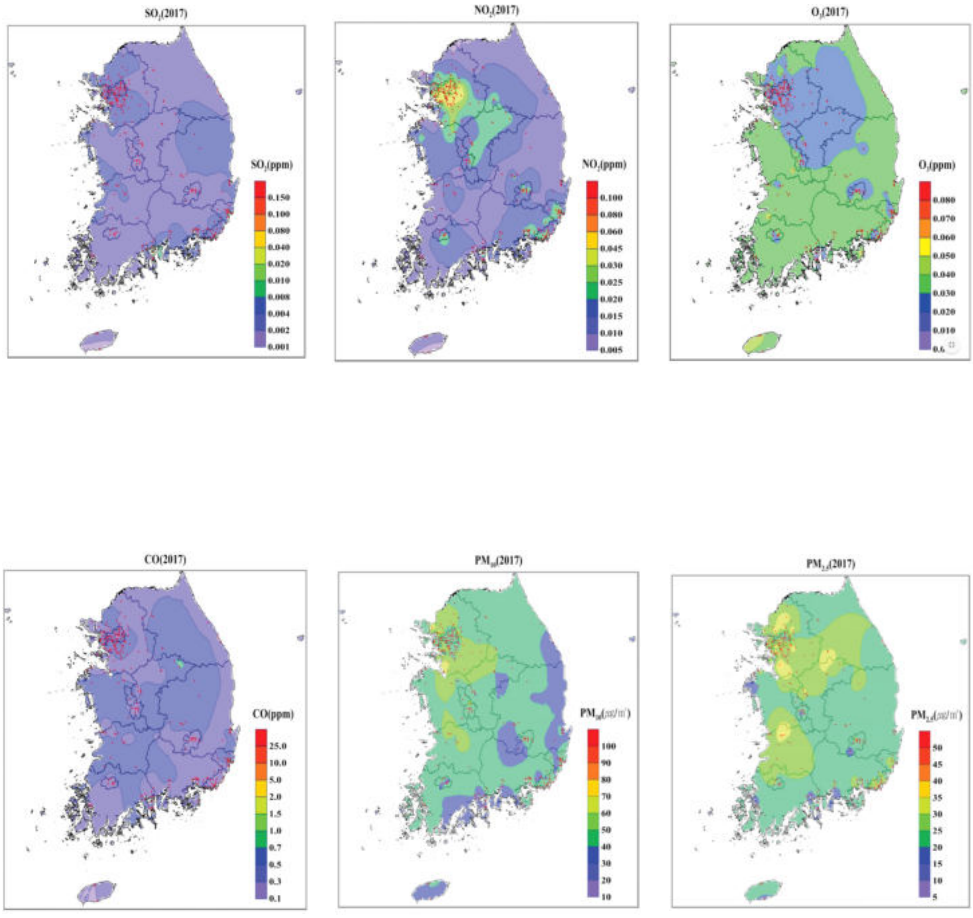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기환경기준
SO2 (ppm)	0.007	0.007	0.006	0.005	0.004	0.003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
NO2 (ppm)	0.017	0.015	0.012	0.01	0.009	0.008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O3 (ppm)	0.034	0.038	0.05	0.049	0.064	0.049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CO (ppm)	0.7	0.7	0.6	0.5	0.4	0.3	8시간 평균치 9ppm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미세먼지 (㎍/㎥)	51	46	53	43	48	29	연간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 정확한 배출량 추정은 대기오염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또는 정책의 신뢰도 등과 직결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자체 지역단위의 배출량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환경부 대기연보에 의하면, 2017년 국내에서 발생되는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581.4kton으로 조사되며, NOx와 VOC, CO 순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4-4-1】 2017년도 전국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공간 분포



【표 3-4-4-2】 속초시 대기오염도 변화추이

(단위 : ppm, ug/㎥)

년도	SO2(ppm)	NO2(ppm)	O3(ppm)	CO(㎍/m3)	PM-10 (㎍/m3)	PM-2.5 (㎍/m3)
2012년	0.005	0.023	0.025	0.5	45	-
2013년	0.006	0.024	0.026	0.5	49	-
2014년	0.005	0.024	0.027	0.5	49	-
2015년	0.005	0.023	0.027	0.5	48	26
2016년	0.005	0.023	0.027	0.5	47	26
2017년	0.004	0.022	0.029	0.5	45	25

출처 : 대기환경연보 2017

1.2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대상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배출원과 자연 배출원으로 나뉨, 인위적인 배출원은 고정배출원과 이동 배출원으로 분류
- 고정배출원은 다시 점 배출원과 면 배출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점 배출원을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1~5종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3종은 대형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4~5종은 중·소규모의 배출시설에 해당
- 2017년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52개소로 연간사용 용량이 대규모인 2종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개소 위치하고, 소규모인 4종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20개소 위치하고, 5종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31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
- 대기오염배출량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가스 순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과 겨울철 난방연료의 사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
- 자동차 등록대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기오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강구가 절실함
- 먼지는 건조한 겨울철 및 황사로 인한 봄에 높고 산성비에 대한 강우산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

【표 3-4-4-3】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 기(가스 · 먼지 · 매연 및 악취)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2년	34	-	-	-	18	16
2013년	34	-	-	-	18	16
2014년	36	-	-	-	18	18
2015년	33	-	-	-	17	16
2016년	33	-	1	-	19	13
2017년	52	-	1	-	20	3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강원도 행정 통계자료에 의하면 속초시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33개로서 비 금속분야 3개소, 섬유 2개소, 기타 28개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

【표 3-4-4-4】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금속 제품	화학 제품	담배 제조	석유 정재	플라 스틱	석탄	비금 속	가죽	목재 나무	종이	음식 료품	섬유	기타
속초	33	-	-	-	-	-	-	3	-	-	-	-	2	28

출처 : 강원도 행정통계집 2016

· 시민들의 건강 및 심미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비산먼지의 발생 사업체는 총 35개소로서 건설업이 28개소로 가장 많으며, 시멘트관련 제조 사업체 3개소, 비금속광물 채취 가공 1개소, 운송장비 제조업체 3개소로 나타남

【표 3-4-4-5】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건설업	시멘트 토사 운송업	저탄 시설	시멘트 석회등 관련제 품제조	비금속 광물 채취가공	1차 금속	비료 사료 제조	운송 장비 제조	금속 제품 제주
속초	35	28	-	-	3	1	-	-	3	-

출처 : 강원도 행정통계집 2016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 현재 속초시의 대기환경기준은 국가의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대기환경기준 마련이 필요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상 대기질 관리목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생활 배출원의 관리강화 및 녹색교통 정책 추진을 통하여 맑은 공기를 품은 청정한 속초를 목표로 정하고 있음

목 표	맑은 공기를 품은 청정한 속초		
세부목표 달성	**주요지표**	**현황(2015년)**	**계획목표(2025년)**
	대기질 상시모니터링 실시	-	2개소
	대기오염 예·경보제 도입	-	오존 및 황사 경보제 운영
	친환경 버스 도입	-	100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간헐적	정기적
문제점	1. 상시 대기질 모니터링 미실시 2.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이동오염원 등 증가추세 3. 불법 소각 행위 여전		
여건분석	현황	주요 영향인자	예측치
	1. 자체 측정망 없음 2. 단위면적당 높은 배출량 3. 천연버스 없음	1. 기후변화 및 산업화 2. 산업단지 조성률 3.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1. 대기오염 광역화로 인한 증가 2. 친환경자동차보급증대 3. 대기관련 민원 증대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3. 실천계획

3.1 대기 측정망 운영

· 현재 주기적인 대기질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및 교통이 밀집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측 자료를 확보 필요

· 시민들에게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

3.2 오존 및 황사 경보제 도입

·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 농도가 기준 이상시 오존 경보제 시행

· 오존 경보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농도 수준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

【표 3-4-4-6】 오존 경보 발령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0.12ppm 이상일때	0.12ppm 미만 일 때
경보	0.3ppm 이상일때	0.12ppm ~ 0.3ppm미만 일 때
중대경보	0.5ppm 이상일 때	0.3ppm ~ 0.5ppm미만 일 때

출처 : 에어코리아 내부자료

【표 3-4-4-7】 오존 경보제 발령시 조치내용

구 분	일반주민	자동차 소유자	행정(유관)관
주의보	· 추가대책	· 불필요한 자동차운행 자제 권고 · 대중교통 시설이용 권고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의 의한 안내
경보	· 실외운동경기 자제 요청 · 모든 시민 실외활동 자제 ·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의 실외학습 자제	·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 경보상황 통보 · 경보사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 ·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 사용량 30% 감축권고
중대 경보	· 실외운동경기 금지요청 · 호흡기환자, 노약자 등 실외 활동 중지 요청 · 학교와 유치원 휴교	· 발령지역에서의 자동차 통행 금지	· 중대경보상황 통보 · 위험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 대형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명령

출처 : 에어코리아 내부자료

· 황사의 경우 2000년대 황사일수(연평균 9.8일)는 80년대(2.9일), 90년대(5.3일)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황사철인 봄철 뿐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PM10 시간당 최고 농도가 2,000~3,000ug/m3에 달하거나 지속시간이 82시간이 넘는 매우 강한 황사가 관측됨

· 황사 발생시 호흡기질환 및 천식환자, 안질환자가 증가하며, 교통·항공부문, 농업, 제조업 등 다방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황사경보제 및 행동요령 마련필요

【표 3-4-4-8】 황사 경보제 발령기준 및 행동요령

구 분	발령기준	행동요령
주의보	· 400ug/㎥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외출시 긴소매 의복 착용 및 개인 청결유지
경보	· 800ug/㎥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 권고 · 일반인의 실외활동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착용, 개인청결 유지

출처 : 제2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2013~2017)

【표 3-4-4-9】 강원권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권역

구 분	권 역	행 정 지 역
강원	**영서북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서남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영동북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동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출처 : 에어코리아 내부지역

3.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임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실행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전과 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

· 현재 수도권에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하여 강원도 즉, 속초시에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마련

· 속초시는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자동차(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문제는 사업장 배출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대기오염경보 기준 강화 및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 상 미세먼지 발령기준은 24시간 이후에 발령나는 형태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주의보' 발령기준은 최소한 환경기준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 판단됨

▌지역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사업장 배출 이외에 이동오염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이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시 차량통행제한 등 방안마련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의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차량 2부제 내지 5부제를 실시

· 지역에 따라 농도와 성분이 다른 미세먼지 오염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관리대책을 수립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및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미세먼지 오염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통보자료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함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재정비

·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시행

· 대규모 사업장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하며 소규모 사업장 등은 현재 허가체계를 유지하되 배출시설 가동후 오염도 측정 의무화 등 제도 개선

· 사업자·측정대행업체간 계약에 대한 공고·평가 등을 통해 계약 공정성 확보 등 감시·관리 할 수 있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신설

·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방지 및 데이터 공개 실시

▌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

· 노후 소형 화물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저소득·민감계층 대상 맞춤형 노후 경유차 퇴출 지원 확대

· 고농도 대응강화, 노후경유차 퇴출 가속화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운행제한 및 단계적 확대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 및 전략적 지원확대

· 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소충전소 확충

▌ 비도로 수송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시행

· 선박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저속운항프로그램 도입

· 항만 정박시 선박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황산화물과 하역장비기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항만인프라 구축

· 건설·농업기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및 저공해 조치지원 등 저감 정책 시행

·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축산·경종분야 암모니아 발생 억제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

3.4 사업자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중소형의 배출시설이 주로 입지하고 있는 속초시의 특성상 중소형배출시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단속위주의 지도점검은 효과적이지 못함
- 속초시에서는 먼저 관내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별업체의 최적 배출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환경부의 환경개선시설자금 등을 활용하여 관련 방지시설의 설치를 추진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자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체 노력 강화 및 선정기업의 대외적인 홍보기회 마련

3.5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친환경적 녹색 교통정책 추진

- 교통정체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늘이는 원인으로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시설과 운영체계 개선 등 원활한 교통여건 확보필요
- 대중교통으로 발생되는 매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NGV)를 보급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조기보급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CNG/LNG 충전소 등 설치
- 터미널 근처, 시장 주변 등 근거리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 통행 여건 확충 등 녹색교통정책 적극적 시행
- 관광객들의 자가용 이용 대신 버스 이용 장려 및 관광투어버스 등 천연가스 버스 이용률 증대방안 마련

3.6 건설 및 산업현장의 불법소각 및 비산먼지 등 관리·감독 강화

-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단계별 비산먼지의 저감 이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토록 하며, 공사장 관리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지시설 기준설정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또한,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단속 실시
- 불법소각 등의 각종 폐기물처리에 대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신고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시행

5 수질환경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하천 현황

· 속초시의 주요하천은 준용하천인 쌍천과 지방2급 하천인 청초천이 있으며 쌍천은 양양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해로 흐르고 청초천은 속초시의 중앙을 관류하여 청초호를 통해 동해로 흐르며, 쌍천은 설악동을 관통하여 속초시와 양양군 경계를 따라 동해안으로 유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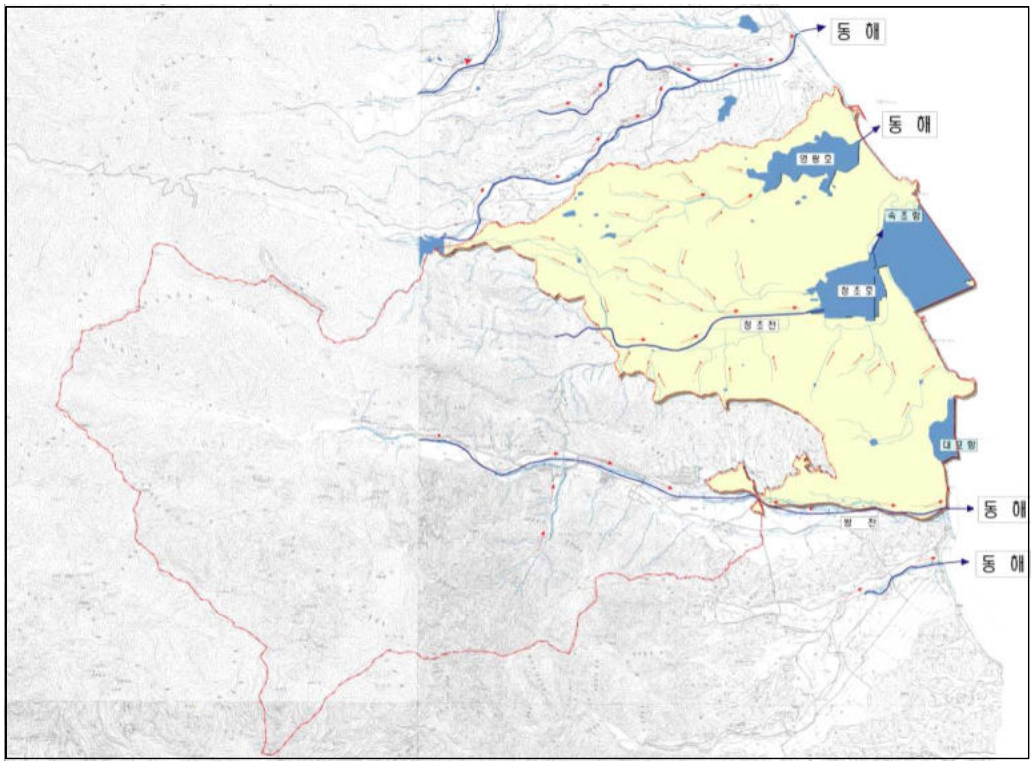
【표 3-4-5-1】 속초시 하천통계

(단위 : 개소, %)

구 분	하천수 (개소)	하천연장 (㎞)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2	17.4	17.4	17.4	-	100.0
국가하천	-	-	-	-	-	-
지방하천	2	17.4	17.4	17.4	-	100.0
기 타	-	-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그림 3-4-5-1】 속초시 수계분석도



1.2 수질 현황

▮ 쌍천

· 시　점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종　점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해안선

· 유역면적 : 65.33㎢

· 유로연장 : 19.10㎞

【표 3-4-5-2】 확률 강우량

(단위 : ㎜/day)

관 측 소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비 고
속 초	366.2	414.8	463.1	487.3	568.3	mm/day

출처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2019

【표 3-4-5-3】 주요지점별 홍수량

(단위 : ㎥/sec)

하 천 명	산정지점	산정방법	빈 도					비 고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쌍 천	과업시점	유역추적법	30	33	35	36	39	
	설악파크앞		426	474	519	540	611	
	쌍천하구		774	841	900	929	1017	

출처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2019

【표 3-4-5-4】 수질오염 (쌍천)

(단위 : 개소)

구 분	온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 (㎎/ℓ)	생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부유 물질 (㎎/ℓ)	대장균군 (MPL/ 100ml)
2013	14.5	7.7	7.4	0.5	1.0	0.8	-
2014	14.4	7.9	7.7	0.6	1.0	0.6	-
2015	14.4	7.9	7.7	0.6	1.0	0.6	-
2016	14.4	7.9	7.7	0.6	1.0	0.6	-
2017	14.3	7.8	7.2	0.6	0.9	0.4	-
1월	4.8	7.6	7.1	0.6	0.8	0.2	-
2월	5.3	8.2	6.6	0.6	0.7	0.2	-
3월	6.1	8.1	7.8	0.5	1.3	0.2	-
4월	10.8	7.4	7.6	0.5	0.8	0.2	-
5월	12.6	7.9	6.5	0.5	0.7	0.4	-
6월	19.8	6.8	6.4	0.5	0.6	0.2	-
7월	24.0	7.7	6.6	0.5	0.4	0.2	-
8월	28.4	7.7	5.7	0.9	0.9	2.8	-
9월	26.3	8.2	6.6	0.5	1.0	0.2	-
10월	14.5	8.4	8.2	0.6	1.4	0.2	-
11월	12.7	8.1	8.3	0.7	1.1	0.2	-
12월	6.2	7.8	8.8	0.6	0.8	0.2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청초천

· 시　점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척산온천
· 종　점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청초호
· 유역면적 : 20.20㎢
· 유로연장 : 7.80㎞

【표 3-4-5-5】 확률 강우량

(단위 : ㎜/day)

관 측 소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비　고
속　　초	366.2	414.8	463.1	487.3	568.3	mm/day

출처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2019

【표 3-4-5-6】 주요지점별 홍수량

(단위 : ㎥/sec)

하 천 명	산정지점	산정방법	빈　　도					비　고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청 초 천	과업시점	유역추적법	45	50	55	60	65	
	목우제천		75	85	90	95	105	
	청초천하구		185	205	225	235	260	

출처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2019

【표 3-4-5-7】 수질오염 (청초천)

(단위 : 개소)

구 분	온도(℃)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 (㎎/ℓ)	생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부유 물질 (㎎/ℓ)	대장균군 (MPL/100)
2013	14.3	7.9	7.3	2.3	2.0	4.6	-
2014	13.9	7.8	6.5	1.5	2.8	10.5	-
2015	13.9	7.8	6.5	1.5	2.8	10.5	-
2016	13.9	7.8	6.5	1.5	2.8	10.5	-
2017	14.1	7.9	6.7	1.4	2.4	6.6	-
1월	5.0	8.1	7.1	0.8	1.9	8.3	-
2월	5.2	8.3	8.0	1.0	2.0	5.4	-
3월	6.3	7.7	7.6	0.8	1.8	4.3	-
4월	9.4	7.1	6.8	1.6	2.4	3.2	-
5월	12.8	7.5	6.7	1.2	2.8	3.0	-
6월	18.6	7.4	7.0	2.0	2.6	18.0	-
7월	24.2	7.7	6.5	1.4	2.2	9.2	-
8월	27.9	8.2	5.3	2.3	2.1	8.4	-
9월	25.6	8.6	5.1	0.9	1.9	11.3	-
10월	15.9	7.8	6.8	2.3	2.5	3.0	-
11월	12.4	7.9	7.2	1.4	3.2	3.0	-
12월	5.8	8.0	6.7	1.6	2.8	2.0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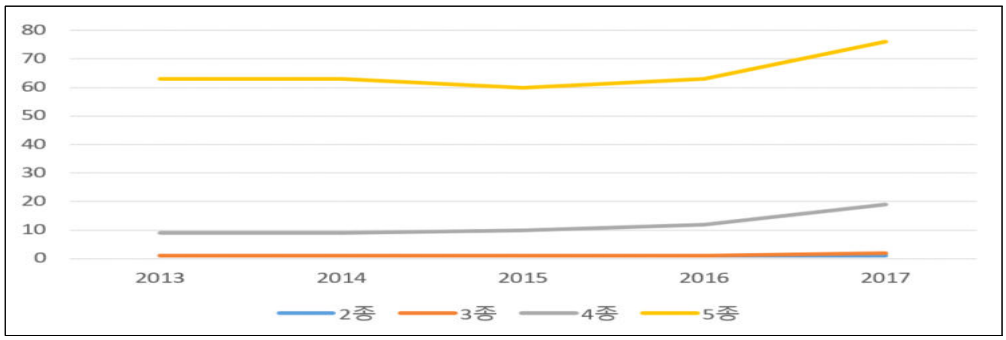
· 속초시에는 2017년 현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98개소로 2016년 이후 큰 폭 상승했으며, 대부분 오염부하가 낮은 5종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

· 속초시 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물 소비량이 많은 2종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개소, 3종 2개소, 4종 19개소, 5종 76개소가 가동 중임

【표 3-4-5-8】 속초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관 측 소	수질(폐수)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3년	74	-	1	1	9	63
2014년	74	-	1	1	9	63
2015년	72	-	1	1	10	60
2016년	77	-	1	1	12	63
2017년	98	-	1	2	19	7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연도별 속초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속초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용량 46,000㎥/일로 고도방식으로 가동 중이며, 평균 처리량은 48,142㎥/일로서 시설용량 높게 나타남

【표 3-4-5-9】 하수처리 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일)	처리량(㎥/일)	처리공법	가동개시일
속초 공공하수처리장	해오름로 99	46,000	48,142	고도	'01.06.2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1.3 호소 현황

▌ 수질측정망 현황

· 속초시 내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측중인 청초호, 영랑호 관측소가 있으며, 금회 하수도정비에서는 청초천 말단부에 위치한 청초호 수질측정망을 검토

【표 3-4-5-10】 속초시 수질측정망 현황

권역	호소	관측지점	주소	관측기관
한강	청초호	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원주지방환경청
	영랑호	1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출처 : 환경부(물환경 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 최근 5년간 수질측정망 지점의 수질분석결과(BOD) 영랑호와 청초호의 수질은 일정하게 유지

【표 3-4-5-11】 수질측정망 수질 (호소수)

지점명	년	pH	DO (mg/ℓ)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대장균군수 (개/mℓ)
영랑호	2013년	8	10.5	2.2	5.7	40.4	0.775	0.038	29
	2014년	8.1	10.1	2.4	3.6	36.1	0.747	0.038	1378
	2015년	8.4	11.3	2	3.7	46.7	0.75	0.022	233
	2016년	8.4	10.6	1.8	3.3	16.7	1.541	0.078	2064
	2017년	7.8	10.4	1.8	4.3	9.4	1.914	0.052	96
	5년간 평균증가율	-0.5%	-0.2%	-3.9%	-5.5%	-25.3%	19.8%	6.5%	27.0%
청초호	2013년	7.8	9.3	3	4.9	41.4	0.862	0.082	120
	2014년	8	8.8	2.4	3.2	34.9	0.804	0.061	4138
	2015년	8	9	1.6	3.1	43.3	0.596	0.034	771
	2016년	8.1	9.8	1.9	2.8	19.6	1.56	0.031	730
	2017년	7.7	8.9	1.8	4.3	8.8	1.895	0.061	5660
	5년간 평균증가율	-0.3%	-0.9%	-9.7%	-2.6%	-26.6%	17.1%	-5.7%	116.1%

출처 : 환경부(물환경 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1.4 지하수 현황

1.4.1 속초시 시가지 지하수 이용현황

【표 3-4-5-12】 속초시 시가지 지하수 이용현황

(단위: 100㎥/년)

년도	총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개소수	사용량	개소수	사용량	개소수	사용량	개소수	사용량	개소수	사용량
2013년	588	22,562	392	17,884	47	845	144	3,677	5	156
2014년	753	23,841	481	15,884	52	1,312	212	6,489	8	156
2015년	852	24,961	532	16,453	59	1,435	252	6,917	9	156
2016년	865	25,846	537	16,318	58	2,130	261	7,216	9	182
2017년	912	17,706	553	9,277	67	2,038	284	6,347	8	44

출처 : 지하수조사연보(환경부, K-water), 2018

1.4.2 지하 수질측정망 현황

· 속초시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는 10곳에서 조사되었으며 주 용도는 생활용수이고 일반지역과 오염지역 각각 5곳으로 구분되어 식수로 사용 가능한 지하수는 1곳으로 나타남

【표 3-4-5-13】 속초시 지하수질(일반지역)

지점번호	위치	주용도	음용여부	ph	총대장균군	NO3-N	Cl-	C
H-6-a-1-01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생활	비음용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H-6-b-1-01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	생활	비음용	118	6.1	370	불검출	14.3
H-6-c-1-01	강원도 속초시 교동 ***	생활	비음용	100	6.4	불검출	불검출	17.4
H-6-d-1-01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	생활	음용	미검사	6.4	불검출	6.7	12.5
H-6-e-3-01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생활	비음용	33	6.3	71	0.5	3.7

출처 :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 2018

【표 3-4-5-14】 속초시 지하수질(오염우려지역)

지점번호	위치	주용도	음용여부	ph	총대장균군	NO3-N	Cl-	Cd	As	CN
GW0103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생활	비음용	6.0	2	4.4	13.9	ND	ND	ND
UW0102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생활	비음용	6	0	1.0	3.9	ND	ND	ND
UW0101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생활	비음용	8.1	1	0.4	3.7	ND	ND	ND
UW0103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생활	비음용	7.5	172	1.2	5.5	ND	ND	ND
GW0103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생활	비음용	6.8	0	2.4	24.7	ND	ND	ND

출처 :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 2018

1.4.3 시군구별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 강원도는 5,585건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123건(91.73%)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속초시의 경우 60건의 지하수 자원 중 57건(95.0%)이 적합한 판정을 받음

【표 3-4-5-15】 강원도 지하수 수질현황

(단위 : 건)

시군구	합계	적합	부적합	미기재
강원도	5,585	5,123	462	1,720
강릉시	583	574	9	98
고성군	124	124	0	100
동해시	77	75	2	97
삼척시	185	177	8	96
속초시	60	57	3	95
양구군	69	69	0	100
양양군	72	72	0	100
영월군	232	212	20	91
원주시	490	483	7	99
인제군	113	110	3	97
정선군	99	97	2	98
철원군	196	195	1	99
춘천시	516	485	31	94
태백시	41	41	0	100
평창군	630	522	108	83
홍천군	505	505	0	100
화천군	1,187	949	238	80
횡성군	406	376	30	93

출처 :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 2018

1.5 문제진단

·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미처리 상태로 하천과 호소로 유입되어 수환경 오염증가

· 하천과 호소들은 각기 그 기능과 여건이 다르나, 청초호와 연접하여 조성된 직선형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변형시킬 필요가 있으며, 영랑호 주변의 주택가와 병원(속초 의료원), 바다로 연결되는 수로 등의 정비 필요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2.1 기본방향

- 하천, 호소 등의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깨끗한 수환경 유지
- 환경오염 부하를 저감 시키고 기반시설 확충
-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 친녹 공간 조성
- 수질 관리시스템 체계 확립

2.2 관리목표

-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의 기본은 지역 환경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속초시의 경우 살아 숨 쉬는 생태형 하천, 주민과 철새가 공존하는 석호,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숲, 풍부한 생명자원의 보고 바다를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속초"를 자연환경 보전의 모토로 삼음

목 표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한 속초

세부목표 달성

주요지표	현황	계획목표(2025년)
청초천 수질 Ia 달성	Ib-II 등급	Ia
자연형 하천 조성	-	1개소
종합 물관리 대책 수립	-	수립/시행

문제점

1. 도시화 가속으로 인한 청초천의 오염도 심화
2.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에 의한 수해피해 발생
3.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하천 부지 등 친수공간 감소 중

여건분석

현황	주요 영향인자	예측치
1. 청초천의 수질은 Ib~II 등급을 보임 2.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속출로 인한 풍수해 발생 3.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지수량부족	1. 개발 수요 2. 친수공간 확보 3. 기후변화	1. 개발로 인한 하천부지 감소 2. 시민의 친환경 욕구 증대 3. 기후변화로 인한 하상변동 심화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3. 실천계획

3.1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한 하천 건강성 확보

-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거나 치수 등의 정비시 살아있는 나무, 풀, 돌, 흙 등 자연재료를 활용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며 하천의 자정작용 및 생태적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필요

3.2 주민과 함께 지키는 하천 및 수변환경

- 주민과 함께 자연에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교육장의 거점화
- 속초시도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여 주민 참여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시 지속적인 하천수질개선 기대

3.3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적 물관리 시스템 구축

- 속초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가와 지자체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지적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 잠재적 위험에 대비를 위한 용수공급시스템과 강우 유출 및 오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3.4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및 대책 마련
- 지하수원 고갈, 오염 등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계획 추진방안 모색

3.5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청정수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지하수의 수질오염 예방하는 정책 추진
- 지하수 잠재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오염 우려지역의 선정 및 관리강화,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준수, 지하수 수질검사 강화 및 수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변화 감시강화, 수질오염 발생 시 대처방안 수립 시행 등 사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오염현상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측정지점의 확대 및 지하수 보유수량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의 사용량 관리가 필요

· 취업자 중 약 5%의 인구(2018년 통계연보기준)가 농업에 종사

3.6 가뭄, 갈수기에 대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 강원도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속초시의 경우 2023년 상습가뭄지역 해소 가능

· 매년 발생하는 갈수기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및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암(학사평)저수지의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 중

· 속초시는 2017년 가뭄 심각단계 이후 비상취수원과 수도암반관정(7개소), 농업용 관정(9개소), 지하수(3개소)와 온천수(3개소) 등을 취수하여 가뭄대책 마련

· 지표수 보강사업을 통해 유효저수량을 상향시켜 속초 장천지역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잉여수량을 갈수기 비상취수원으로 사용

3.7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 마련

▮ 밭작물의 정밀 관개 자동 물관리 기반 구축

· 정밀 자동 물 관리 기술은 토양수분을 자동계측하고 관수시점, 관수시간, 관수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기로 작물에 필요한 양의 물을 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자동 물 관리 체계

- 관개방법 : 지표점적관개, 살수관개(스프링클러), 살수관개(분수), 무관개
- 설치간격 : 점적관개 1.2m, 살수관개(스프링클러) 10m, 살수관개(분수) 3m



4. 생태하천 복원기법 활용

4.1 개념 및 복원유형

·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가능한 한 원래의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며 생물 서식처, 종·횡적 연결성, 유지유량 등을 포함하는 생태계 구조와 기능 회복 자연적 치수가 가능하도록 유도 (하천의 생태적 복원과 치수를 안정적으로 달성)

원형복원	유사복원	대체복원
		
· 교란된 생태계를 가능한 원래 상태에 가까운 자연조건과 생태 기능을 갖도록 회복시키는 것	· 훼손된 생태계를 생태기능이 유지되도록 안정시키는 것	· 생태계를 목적에 맞게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

4.2 복원 추진방향

▮ 생물종과 생태계 복원중심

· 생물종과 생태계 중심의 하천사업 정착

- 생태계 조사 → 깃대종 중심의 계획수립 → 설계, 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생태계 훼손지역 파악 →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피드백 관리)
- 과거 및 현재 하천의 동·식물 분포현황 및 고유종, 희귀종, 법적보호종의 서식 현황 등 하천 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생물종 보전·복원 중심의 하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
- 하천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깃대종'을 선정하고 깃대종을 보전·복원하기 위한 목표 및 복원방법 강구

▮ 생태계의 종적·횡적 연결성 확보

· 횡적 생태네트워크

- 하천구역 내에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하천복원사업을 하천에서 주변의 자연환경까지 연계한 횡적 생태네트워크 구축개념으로 전환

· 종적 생태네트워크

- 하천내 일정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하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연계한 종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건강한 물순환 체계구축

· 깨끗한 물공급 : 하상여과,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적극 도입

· 수질오염유발원인 제거 : 하천 주변 및 수중의 쓰레기, 장마철 부유쓰레기 등 수거 사업 추진

· 풍부한 물공급 :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저류 및 활용, 지하수 함양(涵養) 방안 강구

▌기후변화대비

· 고온수, 갈수기 유량감소 대비 : 녹지대를 조성하여 수원함양과 투수층 증대를 도모하고, 하천 주변지역의 습지, 웅덩이, 저수지 등을 조성하여 하천 생태유지용수 확보

· 이상홍수로 인한 피해 대비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시 이상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 수행, 생태하천공사 수행 시 공사시기 조절을 통한 예상피해 최소화

▌도심 건천·복개하천 복원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된 도심 복개하천 철거 :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과 실개천도 함께 찾아내어 복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도록 수질개선 및 다양한 물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

▌협의체 중심의 하천사업 추진

·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하천 고유의 특징, 역사, 문화를 찾아내는 하천사업

· 하천의 역사, 문화, 스토리 등을 적극 발굴, 하천고유의 정체성(identity)을 부여, 기록유지

· 역사, 문화, 생태계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주민참여, 학습의 장으로서의 하천관리

· 1사 1하천 운동 등 주민참여 운동을 통한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에 주민참여 유도

· 하천 아카데미, River Parkway 등의 교육활동

· 하천특성에 맞는 하천 생태지도 제작 및 배포 : 생물 서식현황·역사·문화 등 주민이나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로도 활용 가능토록 제작

6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1. 현황분석 및 문제 진단

1.1 연안

· 해안선은 육지 환경과 해양 환경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공간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없는 자연형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간의 평형을 유지하며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 제공 등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해안선은 습지, 갯벌, 사구 등 자연형 토지를 구성하는 리아스식 해안선과 함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농경지 및 공업단지, 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인공 해안선으로 구분됨

· 자연형 해안선이 감소하고 직선화 및 콘크리트화에 의한 인공 해안선의 증가에 따라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등 연안 지역의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속초시의 해안선은 총 28.6km이며, 육지부 27.45km, 도서부 1.19km이며 도서는 1개 도서로서 면적은 0.0014㎢임

【표 3-4-6-1】 속초시 해안선 및 도서현황

구 분	해안선(km)			도서 현황			
	계	육지부	도서부	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
속초시	28.6	27.45	1.19	1	-	1	0.001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 속초시의 항만시설은 국가어항 1개소와 어촌정주어항 2개소가 있으며, 방파제는 3개소 2,807m가 구축되어 있음

【표 3-4-6-2】 속초의 어항시설

구 분	어 항					계	
	계	지정항			소규모 어항	계	연장(m)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속초시	3	1	-	2	-	3	2,80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 현재 속초시가 속해 있는 동해안 지역의 경우 COD가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지 않지만, 적조발생의 주요원인 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의 농도는 증가추세이므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시 질소와 인을 제거 할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 설치가 필요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지구적 차원의 해양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또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3-4-6-3】 강원연안 주요해역 수질현황

연안명	평균농도(mg/L)			하수처리율(%)
	COD	총인	총질소	
삼척 연안	0.97	0.37	0.317	73.3
동해 연안	0.96	0.036	0.341	0.5
강릉연안	0.93	0.037	0.320	87.5
주문진연안	1.02	0.041	0.346	52.0
양양연안	0.94	0.032	0.284	32.1
속초연안	0.97	0.031	0.318	82.5
거진연안	0.79	0.037	0.313	38.6

출처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 국토해양부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지구적 차원의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과거에는 연안을 따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 등이 건설되었으며, 연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등이 미수립된 채 개발됨으로 인하여 일부 유명 명소의 경우 연안이 난개발되고 있음

· 강원 연안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건물파손, 해안도로 유실, 주차장 유실, 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연안침식은 돌제, 방파제, 호안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다른 육지와 해양간 단절 및 연안표 사계 교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 발생 등에 의해 발생

【표 3-4-6-4】 강원연안 침식지역현황

연안명	국토해양부 침식 모니터링	환동해출장소 조사
강릉시	남항진리, 강문해수욕장, 사근해수욕장, 사천면 사천진 1-2리, 연곡면 영진리	사천 하평, 사천 사천진, 연곡 영진, 주문교향, 안목, 강문, 소돌해변, 남항진, 강동하시동, 강동염전, 사천 방동
동해시	추암해수욕장	추암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용화, 상맹방
속초시	영랑동해안, 속초해수욕장, 청호동	영랑동 해변, 속초해수욕장
고성군	가진리, 천진해수욕장	거진~화포, 대진~초도, 가진, 거진, 송포
양양군	남애1리, 정암, 광진	현남 광진, 현남 지경, 현남 남애3리

출처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 국토해양부

· 오염관리 정책이 육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발 위주의 연안 이용·관리로 해양수질환경 및 해양생태의 파괴, 생산성 및 청정가치 훼손으로 연안의 보전사업 시행이 시급하며 생태 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훼손으로 경관 저하

【표 3-4-6-5】 하구 환경관리 관련법 및 특징

법 제도	제정목적	관리범위	특징
하천법	유수로 인한 피해방지, 하천이용, 하천정비	하천구역	하천과 해양의 기계적 구분
한강법, 낙동강법, 금강법, 영상강법, 섬진강법	상수원 보호, 오염원 관리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상수원, 하천중심 하천구역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경관보호 및 보전	육상의 자연환경, 경관, 생물다양성	도서, 석호, 사구, 하구 등 연안환경의 관리영역 불명확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 보호	해양동식물을 제외한 육상의 야생동식물	가수어종, 회유성어종, 해양육상 이동성이 큰 동물에 대한 관리영역 불명확
연안관리법	연안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영해 및 해안선으로부터 1km 하천구역 제외	연안관리의 기본법 하천구역에 대한 관리 근거없음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 환경개선	연안유역포함	환경관리해역만 관리가능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육상오염원 관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보전	하천, 호소, 항만 등 모든 공공수역	생태계 관리 부재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
습지보전법 등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및 서식지 보호	습지, 천연기념물, 조류 등 생태계 및 서식지	수질관리 미약 종합적 관점의 개선, 보전, 복원에 한계 일부 하구에 지정

출처 : 도서 연안지역 자연환경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5

· 해양관광 및 체험수요 증가에 따라 연안은 생태적 가치로 인간 활동을 포용, 청정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각될 전망임. 연안 어장 이용형태의 다각화로 단순 어업에서 체험어업으로의 이전 등 연안어장의 가치기준은 환경 및 관광으로 전환

· 해안선을 중심으로 연안구역은 도시, 산업, 휴양 및 환경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이 복합된 관리영역으로 전환될 전망

· 과거 산악중심의 관광문화에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양관광으로 이동, 선진국민의 문화로 여겨졌던 요트의 생활화 및 정착과 주 5일 근무, 웰빙 문화 정착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 육지 및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어촌체험, 요트 등 해양의 다양한 레저, 체험활동 위주의 관광으로 변모

· 국가적인 해양이용관리 틀 속에서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개발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연안 안전관리정책과 더불어 반복되는 연안 재해 및 침식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 속초시의 청정한 바다환경과 우수한 연안 경관 및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위협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정바다를 품은 도시 속초조성" 관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목 표	청정바다를 품은 도시 속초

세부목표 달성	주요 지표	현황(2015년)	계획목표(2020년)
	연안환경관리 계획 수립	-	수립
	석호 체계적 종합관리	미흡	체계적 관리
	연안정비사업 실시(3개소)	2개소	3개소 완료

문제점	
	1. 산업화 및 관광지 개발로 인한 해안선 변경 가속화 2.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연안침식 지속적 증가 3. 석호 주변 개발 등으로 인한 오염 가속

여건분석	현황	주요 영향인자	예측치
	1. 해안선 중심 관광지 조성 2. 석호 중심 개발 수요 3. 해안침식 가속	1. 대규모 개발사업 2. 비점오염원의 증가 3. 기후변화 및 연안 개발행위	1. 무분별한 해안선 난개발 2. 석호 오염도 증가 3. 해안침식으로 인한 재해발생, 해안선 변경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3. 실천계획

3.1 하구 환경관리체계 확립

-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백사장·해안단애 등 자연경관 훼손방지로 연안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보전사업 추진
- 육상위주 정책 추진, 무계획적 연안관리로 인한 연안훼손의 지속적 증가로 이에 대한 연안관리 중심의 보전기능 인식 정립이 필요
- 연안보전 계획이 필요한 지자체 간 통합보전·개발 방안을 마련
- 통합해양환경 측정망을 확충하고 연안유역 인근 배출업소, 하천말단, 방류수 상시감시망을 구축 등 해양오염 통합관리체계 구축

3.2 하구 서식지의 보호 및 환경질 개선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구 서식지에 대한 특성별 보전 및 관리방안 수립
- 지속적으로 하구 환경보호 구역 확대 및 소규모 보호지역의 지정 및 생태 연결통로를 확보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에 노력
- 하구로 유입되는 하천 등에 대한 수시 대청소 및 쓰레기 투기 억제 등 관리·감독 강화
- 하구 지형경관 보호 및 특성을 유지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활용

3.3 석호의 보전·관리 강화 방안

- 청초호는 석호의 특성이 많이 파괴되어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개선대책을 추진
- 훼손이 덜 진행된 영랑호는 보전과 복원노력을 병행하는 다원적인 관리가 필요
- 상류지역으로부터 석호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하고 석호 유입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

· 석호 내부생성 오염 부하 저감대책 마련필요

- 수초제거, 응집제 투여, 통수용량 증대, 수중 폭기기 설치 등의 물리적 대책에 대하여 석호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검토
- 석호에 적합한 수질오염 정화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

3.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관리

· 속초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에 포함된 시군이 아닌 점에 기초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인 자연형 시설(저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등)을 설치·관리하여 석호로 유입되는 오염부하 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녹지, 친수공간의 확대 도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오염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3.5 녹조·적조 예방대책 마련

· 녹조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황토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차단하여 녹조의 번식을 막고 황토와 녹조가 섞여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방안 시행

· 선박에 녹조를 흡입, 여과,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시키는 녹조 제거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높음

· 적조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대응에 어업인 참여(협조) 당부

· 적조 명예감시원과 어업인들의 해상 조업시 해역상황 모니터링 협조를 통해 정보 공유

· 적조 경보 발령시 가용인력, 장비, 선박 등을 총동원하여 광역적으로 일제 방제 실시하는 "일제 방제 주간"을 운영

· 어업인 스스로 표준사육 기준 준수로 밀식 예방과 재해취약성을 개선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으로 안정장치 확보

3.6 연안침식의 체계적 관리

- 해양수산부의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전국적으로 침식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속초시도 침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등에서 연안침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와 연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안침식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침식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보전방안 강구
- 하천 상류에서 해안에 이르기까지 모래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해외의 선례(프랑스 연안토지매립 정책)를 도입하여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연안환경, 생태, 경관을 보전하는 방안 마련
- 연안정비사업(연안보전사업, 연안침식방지사업)의 성격 확장, 국가시행사업의 기준 완화, 각 사업의 사후관리비용 포함 등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연안관리 강화
- 속초해수욕장과 청호지구에 대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영랑동 해변에 대한 연안정비사업도 실시하여 연안관리에 철저히 해야함
- 연안침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식이 제고 되어야 함
- 연안교육센터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 확대, 향후 다양한 교재와 홍보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식 제고방안 마련

3.7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

- 미세플라스틱은 세탁, 타이어 등에 의한 배출도 심각한 상황임으로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요인 파악 및 모니터링 확대
- 어업업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어구 폐기시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
- 생활밀착형 수거사업 강화
  - 해양폐기물, 해안쓰레기, 어장쓰레기, 항만부유물 등

3.8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 연안의 육역과 해역에 대한 통합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방향성 없는 개발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연안경관 및 기능성 훼손은 불가피

· 새롭게 수립 될 도시계획에 반영가능 한 통합적 연안 관리계획의 마련과 향후 이의 도시계획에의 반영은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표 3-4-6-6】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과제

구 분	내 용
도입가능한 관리과제	- 연안별 보전 및 이용 권역 구분과 목표 선정을 통한 관리 - 연안의 공공성 확보 - 연안과 배후도시의 조화 도모 - 연안실태조사 실시 - 공공시설의 친수적 이용 강화 - 속초시 자연해안 지역관리 목표제 도입 - 자연연안 회복사업 실시 - 연안 생태계의 외래생물 관리 - 연안 거버넌스 체계 도입
정책과제	- 통합적 연안관리체계 및 계획 마련(통합 도시계획, 통합 환경계획, 통합 경관계획 등) - 연안경관 관리 지침 마련 - 속초항 재개발을 통한 친수적 활용 및 배후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연안 평가 체계 마련 - 연안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제도개선과제	- 국가의 통합연안관리 체계 재도입 - 통합적 연안 경관 관리를 위한 조례 제개정 - 국가연안조사 시 지자체의 의견 반영 장치 마련 - 지자체의 연안조사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 공공연안(가칭) 제도 도입

7 토양환경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토양오염의 유형

- 토양오염기준은 크게 분류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각각에 대하여 1·2·3지역으로 분류
- 토양오염물질인 21개 항목에 대하여 토양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
- 사용기준에 따라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이용의 중지, 시설설치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준을 토양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

【표 3-4-7-1】 우리나라의 토양오염기준

항 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제1조의5			제20조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25	50	200	75	150	600
수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안	2	2	120	5	5	300
페놀	4	4	20	10	10	50
벤젠	1	1	3	3	3	9

항 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제1조의5			제20조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7] 2018.11.27. 개정

1.2 토양오염 현황

· 토양은 생물 부양기능 외 오염물질의 정화 등 다양한 환경기능을 갖는 중요한 환경자원이나, 최근 각종 유류 유출사고, 유독물 저장 시설의 관리 부실 등으로 토양오염이 심화

· 속초시는 토양측정망은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대지 3개소, 임야 3개소, 학교용지 2개소, 도로 2개소, 답 1개소를 모니터링 실시

· 속초시 토양측정망 측정 목적은 배경농도지점 지역이 6개소로서 사람활동을 위주로 모니터링 실시

【표 3-4-7-2】 속초시내 토양측정망 지점현황

지점표준코드	지점명칭	조사지점위치	목적	지목
WK-②-117	속초교동1	교동 767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대지
WA-②-157	교동초교속초	교동 779-16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학교용지
WK-②-116	속초교동2	교동 898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대지
WC-③-231	속초대포	대포동 304-1	오염영향지점(도로)	도로
WN-②-78	속초도문1	도문동 2011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답
WO-①-27	속초도문2	도문동 산 263	배경농도지점(자연)	임야
WO-①-05	속초설악	설악동 26-3	배경농도지점(자연)	임야
WA-②-158	영랑초교속초	영랑동 163-1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학교용지
WK-②-136	설악CC속초	장사동 24-1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대지
WC-③-230	속초장사	장사동 359-4	오염영향지점(도로)	도로
WO-①-28	속초조양	조양동 242-2	배경농도지점(자연)	임야

자료 : 2017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결과, 환경부, 2019

· 속초시 관내에 운영 중인 토양측정망의 2014년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1개 조사지점의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표 3-4-7-3】 속초시내 토양측정망 지점현황

지점표준코드	Cd	Cu	As	Hg	Pb	Cr+6	Zn	Ni	불소	유기인	PCBs
WK-②-117	0.00	2.7	0.00	0.00	4.9	0.0	17.1	17.5	136	-	-
WA-②-157	0.00	29.3	5.04	0.00	15.1	0.0	60.3	2.8	-	-	-
WK-②-116	0.00	4.1	3.80	0.00	14.4	0.0	35.1	1.8	253	-	-
WC-③-231	0.00	22.7	3.74	0.00	19.3	0.0	117.1	11.7	195	-	-
WN-②-78	0.00	22.3	7.47	0.01	13.6	0.9	42.7	12.4	-	0.00	-
WO-①-27	0.00	18.2	5.02	0.01	13.7	0.9	62.4	34.8	-	-	-
WO-①-05	0.00	79.6	5.07	0.03	16.2	0.0	69.2	4.3	-	-	-
WA-②-158	0.00	30.7	6.39	0.01	24.1	0.0	80.2	5.9	-	-	-
WK-②-136	0.00	18.1	6.28	0.01	19.6	0.0	64.4	8.9	325	-	-
WC-③-230	0.11	36.2	5.47	0.01	25.9	0.6	184.3	15.4	253	-	-
WO-①-28	0.00	7.1	7.04	0.01	13.1	0.0	37.0	9.7	-	-	-

지점표준코드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pH
WK-②-117	0.0	-	-	-	-	-	-	-	-	-	7.8
WA-②-157	0.0	-	-	-	-	-	-	-	-	-	7.9
WK-②-116	0.0	-	-	-	-	-	-	-	-	-	6.9
WC-③-231	0.0	-	-	-	-	-	69	-	-	-	6.8
WN-②-78	0.0	-	-	-	-	-	-	-	-	-	6.3
WO-①-27	0.0	-	-	-	-	-	-	-	-	-	4.7
WO-①-05	0.0	-	-	-	-	-	-	-	-	-	6.4
WA-②-158	0.0	-	-	-	-	-	-	-	-	-	7.0
WK-②-136	0.0	-	-	-	-	-	-	-	-	-	7.6
WC-③-230	0.0	-	-	-	-	-	161	-	-	-	7.6
WO-①-28	0.0	-	-	-	-	-	-	-	-	-	4.7

자료 : 2017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결과, 환경부, 2019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 속초시의 토양환경 관리목표는 토양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오염방지대책과 오염지역 실태조사 및 각종 오염물질의 토양유입 감소를 통한 정화대책을 통하여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삶의 터전 관리"를 목표로 함

목 표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삶의 터전 관리		
세부목표 달성	**주요지표**	**현황(2015년)**	**계획목표(2020년)**
	토양오염측정망 확대설치	9개소	15개소
	'15년 이상 노후 유류저장시설 체계적 관리	-	100%
	클린주유소 지정	1개소	5개소
	토양관리 전문 인력 확보		2명
문제점	1. 산업·농공단지 신규 조성등으로 인한 오염가능성 증가 2. 중앙정부 의존한 모니터링 실시 3. 토양관리 전문 인력 부족		
여건분석	현황	주요 영향인자	예측치
	1. 토양오염측정망 9개소 - 토양기준 만족 2. 토양전문인력 없음 3. 클린주유소 1개소 지정	1. 산업단지 조성 2. 미관리 화학물질 증가 3. 주유소 및 방치공 등 오염원 증가	1. 산업행위 증가로 인한 토양오염 증가 2. 주유소 및 방치공 등에 의한 오염가능성 잠재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3. 실천계획

3.1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DB 구축

· 속초시의 효율적인 토양관리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망을 추가 설치하여 토양오염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구축

· DB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쓰일 수 있도록 공개

3.2 전문 인력 및 관리 부서 확보

·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적인 개편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토양관리의 기술적, 과학적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토양오염 측정망, 토양오염유발시설, 토양오염지역 등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

· 향후 토양오염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양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3.3 토양오염 사전 예방체계 강화

·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은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시설 개선 유도로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 강화

· 주유소 신설시 클린주유소 의무화로 토지오염 사전 방지

【표 3-4-7-4】 일반주유소와 클린주유소의 시설비교

구 분		일반주유소	클린주유소
시설기준	저장탱크	철제탱크 또는 이중벽탱크	이중벽탱크
	탱크조실	설치 또는 미설치	설치
	배관	강철이나 금속배관, 용접연결	비부식성 이중배관, 연결부위 없음
	주입/주유	자동차단 또는 경보 섬프 미설치	자동차단 + 경보탱크와 주유기 섬프 설치
	유수분리시설	설치	4단구조 이상
토양오염도검사 ※ 자가검사 의무		5년 주기 ('15년 이후 2년 주기)	15년간 면제 (15년 이후 2년 주기)

자료 : 클린주유소 가이드북, 환경부, 2012

8 소음 및 진동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일반현황

· 소음이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에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소리를 말하며,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감각적인 것에 의해 큰 차이를 보임

· 진동이랑 기계, 기구, 시설 그리고 그 밖의 물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함

· 소음은 개인의 주관적 감각에 의한 감각공해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50dB(A) 정도를 전후로 그 이상의 음이 발생하면 소음으로 느끼게 되며,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짐

【표 3-4-8-1】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비고
20dB(A)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dB(A)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35dB(A)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WHO 침실기준
40dB(A)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dB(A)	조용한 사무실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 (주간)
60dB(A)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dB(A)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 규제기준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 수축	
80dB(A)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작업장내 기준
90dB(A)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시작, 소변량 증가	
100dB(A)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 높은 수준의 진동은 인체에 순환기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에 영향

·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집중력을 요하는 정밀기계 제조 및 조립과정에서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여 제품의 불량률을 증가시키며, 부동산의 경우 재산가치가 하락

【표 3-4-8-2】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진동크기	진동의 정도
증진(90dB/V)	· 인체에 생리적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 · 가옥의 진동이 격렬하고 안정을 잃어 꽃병 등이 넘어지고 어항내의 물이 넘침
약진(80dB/V)	· 직장(直腸)에서 진동을 느낌 / 깊은 잠에 영향 · 가옥이 흔들리고 문, 창문이 덜컹거리고 전등과 같이 매달린 물건들이 흔들리고 어항내의 수면이 움직일 정도
경진(70dB/V)	· 얕은 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 많은 사람이 영향을 느끼는 정도로 문·창문이 조금 움직일 정도
미진(60dB/V)	· 진동을 느끼기 시작 · 정지한 사람이나 특히 지진에 예민한 사람이 느끼는 정도
무진(50dB/V)	· 자는데 영향이 거의 없음
무진(40dB/V)	· 인체에 감각을 미치지 않고 지진계에 기록될 정도

2. 기본방향 및 관리 목표

· 속초시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속초"를 관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목 표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속초

세부목표 달성	주요지표	현황(2015년)	계획목표(2020년)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없음	5개소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관리	-	5개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신설	-	운영

문제점
1. 소음 측정망이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소음진동 관리가 어려움 2.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 증가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 지속적 발생 3. 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 지속적 발생

여건분석	현황	주요 영향인자	예측치
	1. 소음진동 모니터링 미실시 2. 건설소음 증가 3. 아파트 층간 소음 발생	1. 개발 사업 2. 차량 증가 3. 시민 의식	1. 정온환경 요구 증가로 인한 민원 증대 2. 동서고속철도 공사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한 소음 증가 3. 자가용 이동차량 증가로 교통소음 증가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3. 실천계획

3.1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DB 구축

· 체계적인 관리 방안 설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설치하여 관리

· 대규모 개발공사가 예상되어 있는 곳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교통량이 많은 상업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3.2 소음 및 진동 관리 목표 설정

· 쾌적한 정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단기 개선목표를 설정

· 중기목표는 상업지역 기준인 65dB로 장기목표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인 55dB를 목표로 설정

【표 3-4-8-3】 단계별 소음 개선 목표

목표	단기	중기	장기
낮 시간대 소음도	70Leq(dB)	65Leq(dB)	55Leq(dB)

· 학교, 주거지역, 병원 등 정음환경이 요구되는 지역은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리

· 학교, 병원 등 정음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방음벽 설치하며 경관을 고려하여 목재 방음벽, 담쟁이 등 식물로 가린 방음벽, 방음림 등으로 설치 권장

3.3 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설정 및 집중관리

· 정온 환경이 필요한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해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설정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속도제한이나 우회 명령 등 상황에 맞는 통행대책 마련

· 주택지역, 도서관 등의 지역에는 소음배출업소의 허가를 최대한 억제

· 통과차량이 많은 국도변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도로구조 및 파손된 도로의 보수, 불필요한 요철 제거 등을 통해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

· 주요 도로변에는 방음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설치하여 경관확보와 함께 소음도 동시에 완화

·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공완료시까지 관리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적용 관리함

· 환경친화형 건설 기계류 보급촉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음·저진동형 건설장비를 보급을 위한 "소음·진동대책기금"을 마련, 저리 융자제도를 실시

3.4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신설 및 이웃사이센터 활용

·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

【표 3-4-8-4】 형태별 층간소음 해결방안 추진사항

형태	해결방안	내용
주민자율	주민협약	·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민간자율	· 층간소음 주민 조정위원회 구성, 활성화
	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
	전단팀, 컨설팅단 운영	·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신설운영 · 전문컨설팅단 구성
행정지원	인증제	·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부여
	교육	· 층간소음 예방교육
	인식확산	· 층간소음 관련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표 3-4-8-5】 지자체별 층간소음 예방 추진사항

구 분	내용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발표 · 층간소음 전담 해결팀 구성
경기도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부산광역시	· '이웃사이 상담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 '층간소음 관리 아파트 지정'
인천광역시	· 시와 10개 군·구에 '층간 소음대책센터' 신설
대전광역시	· '층간 소음 자문단' 구성

9 에너지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현황분석

01 전력사용 현황

- 2017년 속초시의 전력소비량은 483,268Mwh로 나타남
- 전력수요는 가정용 22.2%, 공공용 6.9%, 서비스업 61.9%, 산업용 9.8%임
- 지속적인 전력소비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

【표 3-4-9-1】 전력사용 현황

(단위 : Mwh, %)

구 분	합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소 계	농림	광 업	제조업
2013년	456,367	106,637	32,105	289,575	28,049	3,446	1,571	23,031
(구성비)	100.0	23.4	7.0	63.5	6.1	0.5	0.3	5.0
2014년	444,611	106,637	32,105	280,376	28,249	3,744	1,557	22,948
(구성비)	100.0	23.6	7.0	63.1	6.4	0.8	0.4	5.2
2015년	457,698	105,041	32,953	283,335	36,367	4,954	1,960	29,452
(구성비)	100.0	22.9	7.2	61.9	7.9	1.1	0.4	6.4
2016년	472,265	106,619	34,888	289,576	41,181	5,925	2,244	33,010
(구성비)	100.0	22.6	7.4	61.9	8.7	1.3	0.5	7.0
2017년	483,268	106,569	33,053	296,735	46,911	5,792	1,107	40,012
(구성비)	100.0	22.2	6.9	61.9	9.8	1.2	0.2	8.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가스사용현황

- 도시가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보급·증가하였으며, 프로판의 판매량은 2013년~2014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5년~2016년 증가 후 감소하여 총 판매량은 8,522톤임

【표 3-4-9-2】 가스공급량

(단위 : 개소, 톤)

구 분	도시가스		프 로 판		부 탄	
	판매소수	판매량	판매소수	판매량	판매소수	판매량
2013년	1	14,936	8	17,262	6	9,113
2014년	1	14,977	8	5,294	6	8,271
2015년	1	16,283	8	7,894	6	8,567
2016년	1	17,926	8	8,855	6	8,173
2017년	1	19,458	8	8,522	6	7,66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4-9-3】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 가구)

구 분	보급률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	공급권역 총 가구수
2013년	51.8	19,144	36,946
2014년	54.3	20,123	37,032
2015년	56.6	20,999	37,084
2016년	60.1	22,340	37,193
2017년	63.1	23,819	37,77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석유

· 속초시의 석유 소비량은 경유가 53.6%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가고 있으며, 휘발유 31.4%, 등유 13.7% 순으로 나타남

【표 3-4-9-4】 석유 소비량

(단위 : kℓ)

구 분	합 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LPG
2013년	68,283	23,353	9,298	33,372	2,260	49,739
2014년	70,583	25,074	8,521	35,838	1,150	24,727
2015년	75,841	24,964	9,129	40,716	1,032	30,356
2016년	80,305	25,751	10,549	43,079	926	31,567
2017년	75,656	23,739	10,375	40,583	959	31,03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문제 진단

· 도시가스 판매량은 19,458톤으로 2013년 판매량 14,936톤에서 5년간 4,522톤(14.1%)의 증가로 에너지 사용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석유 소비량은 75,656kℓ으로 2013년 소비량 68,283kℓ에서 5년간 7,373kℓ(5.3%) 증가하여 국제기후협의에 따라 대체에너지 및 청정연료의 전환이 시급함

· 오염배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에너지 등의 환경오염 유발 요인에 대한 관리가 미비함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2.1 기본방향

· 석유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가스, 전기 등 대체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수요구조를 합리화

· 대량 전력소비지와 전원지를 적정 배치하고 송·배전 손실을 최소화하며 각종 건축물 신·개축시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

·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제시

·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로 환경오염의 방지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유도

· 에너지 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도시구조 전환

2.2 에너지 공급

· 장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7년 3.748toe에서 2040년에는 1인당 소비량 3.451toe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소비량은 314천toe로 추정

【표 3-4-9-5】 에너지 공급계획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획인구(인)	82,213	85,268	87,957	89,860	90,930
1인당 소비량(toe)	3.748	3.596	3.547	3.499	3.451
총소비량(천toe)	312	307	312	314	314

2.3 전력 공급

· 2017년 주택용 가구당 전력소비량은 2.878MWh의 소비량을 보이고 인원 감소 향상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은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용 전력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많은 전력수요가 예상됨

【표 3-4-9-6】 전력 추정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주택용	주택실수요	37,023	38,117	40,372	41,246	41,737
	가구당사용량(MWh)	2.878	2.700	2.422	2.172	1.948
	사용소비량(MWh)	106,552	102,914	97,764	89,581	81,301
공공용	공공시설 면적(㎢)	5.386	5.551	5.783	6.014	6.192
	㎢당 사용량(MWh)	6,137	6,271	6,500	6,738	6,984
	사용소비량(MWh)	33,053	34,815	37,591	40,521	43,246
서비스업	상업용지 면적(㎢)	2.316	3.021	3.201	3.449	3.614
	㎢당 사용량(MWh)	128,124	129,388	131,516	133,679	135,878
	사용소비량(MWh)	296,735	390,831	420,931	461,023	491,025
산업용	공업용지 면적(㎢)	1.089	2.357	2.457	2.797	3.218
	㎢당 사용량(MWh)	43,077	43,077	43,077	43,077	43,077
	사용소비량(MWh)	46,911	101,541	105,849	120,495	138,634
총소비량(Mwh)		483,251	630,101	662,136	711,620	754,206

주) 공공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을 반영 (2020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서비스용 : 용도지역상 상업용지 반영 (2020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산업용 : 용도지역상 공업용지 반영 (2020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산업용 원단위는 산업단지 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이 급격하여 2017년 지표 적용
공공시설면적은 시가화예정용지의 20% 적용

2.4 도시가스

· 도시화의 진행 및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도시가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시가스의 공급설비는 주거밀집지역부터 외곽으로 점진적으로 공급망 확충

· 도시가스 보급률은 비용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인 70%로 설정

【표 3-4-9-7】 도시가스 추정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주택실수요	37,023	38,117	40,372	41,246	41,737
보급률(%)	62.9%	62.0%	65.0%	67.0%	70.0%
공급가구수(호)	23,305	23,633	26,242	27,635	29,216
가구당 사용량(Kwh/년)	19,458	27,839	30,388	31,476	32,722
총 공급량(천Kwh/년)	834.9	1178.0	1158.0	1139.0	1120.0

3.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체계 검토

3.1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방향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계획 및 관리대책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보급 확대
-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 형성 및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의 도입

3.2 실천전략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정책 수립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파악하고, 정밀한 에너지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
- 전력, 도시가스, 유류, 석탄 등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에 따른 수급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에너지관리대책 마련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 형성

-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감안하고 인접지역의 관련 연구 및 생산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및 생산 도모
-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에너지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디젤, 지열, 수력, 전기, 태양에너지 등) 개발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 탄소중립형 에너지제로, 탄소중립빌딩 등 에너지절약형 건물 개발 및 보급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권고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의 시행
- 신규 도시개발 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적극 도입
- 생태산업단지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원료, 제품, 부산물, 폐열 등 폐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최소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보급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향후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8개 분야)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개 분야)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경유자동차 저탄소화
- 전기자동차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홍보활동 강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 수소 압축 방법 등 기술 획득과 수소자동차 보급 및 확대
- 노후 경유차량 폐차 또는 엔진 개조 추진
- 폐기물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청정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효율성 강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의 도입

-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관련 지원 확대
- 탄소저감 프로그램 도입(탄소포인트제)
  - 탄소포인트제 : 가정, 상업용 건물 등의 에너지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주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일상생활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실천 행동요령 등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형 생활문화 확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소비 유도

-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유도를 위해 에너지 세율과 요금 조정 등 추진
- 홍보 및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유인책 마련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에너지 절약사업에 있어서 목표관리 방식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4. 생활 속 에너지절감 실천방안 제시

4.1 가정에너지 절감

▮ 단열

·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열 출입 방지, 겨울철에는 내부에서 열 유출 방지를 통해 단열이 잘되는 건축물에서는 냉난방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 효과 창출가능

· 공동주택 외벽에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하면 난방에서 많은 에너지 절감 가능

▮ 창문

· 창문은 에너지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창문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층유리를 사용하거나 유리 사이에 아르곤 등 기체 충전, 겨울철 두꺼운 커튼의 활용으로 창문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방지 가능

▮ 냉·난방

· 여름철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선풍기와 에어컨 동시 사용,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 등 여름철 전력소비의 주원인인 냉방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

·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며 5등급 보일러를 1등급으로 교체할 경우 도시가스는 연간 난방에너지 비용을 약 57,000원 등유는 약 90,000원 정도 절약 가능

· 동파방지 기능으로 보일러를 설정할 경우 난방관 내 물의 온도가 약 5℃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다시 보일러를 가동할 때 초기 난방 연료 소모가 커짐

· 외출시 난방온도 18~20℃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방안이며 겨울철 난방 설정온도를 1℃ 낮출때마다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약 9% 감소

▮ 조명

·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백열등은 매우 낮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 효율 높은 조명기기 및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조명기기 및 반사판 청소, 자동 점멸 조명기구로 교체,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 등을 통해 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 가전기기

· 가전기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가전기기의 전력소비를 이해하고 전력소비가 큰 가전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기기를 사용해야 함

【표 3-4-9-8】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른 에너지소비 절감률

기기	월간소비전력량(kWh/월)		에너지소비 절감률(%)	적용범위
	1등급	2등급		
전기냉방기	240.10	284.80	15.7	용량 4kW이상 10kW미만
김치냉장고	15.70	22.40	29.9	용량 200L초과
TV(LED)	17.94	20.07	10.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선풍기	1.90	2.30	17.4	날개지름 35cm
전기냉장고	39.37	54.59	27.9	용량 700L 초과 1100L 이하
전기밥	15.81	19.14	17.4	6인용초과 10인용 이하

자료)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운동 확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2018

▌ 기타 습관

·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제외하고 가전기기 사용습관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야하며 그 외에도 멀티탭 끄기, 압력밥솥사용, 장기간 보온 금지 등의 방법이 있음

【표 3-4-9-9】 에너지 절약 방법(기타)

기기	월간소비전력량(kWh/월)		에너지소비 절감률(%)	적용범위
	1등급	2등급		
전기냉방기	240.10	284.80	15.7	용량 4kW이상 10kW미만
김치냉장고	15.70	22.40	29.9	용량 200L초과
TV(LED)	17.94	20.07	10.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선풍기	1.90	2.30	17.4	날개지름 35cm
전기냉장고	39.37	54.59	27.9	용량 700L 초과 1100L 이하
전기밥	15.81	19.14	17.4	6인용초과 10인용 이하

자료)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운동 확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2018

4.2 상업에너지 절감

▌조명

· 가게 간판이나 옥외조명 소등하기, 영업시간 외에는 진열장 조명 소등하기,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기, 센서로 자동 점·소등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 상승

▌냉·난방

·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겨울철 적정실내온도는 20°c 이하, 여름철 25~26°c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실내온도 1°c 높이거나 낮출 때마다 7%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임

·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냉방기의 순차 운휴를 실시하며 영업종료 1시간 이전에는 남은 냉·온기를 이용

· 출입문, 창문, 문틈을 막아 실내의 냉·온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

▌전기제품

· 전시용 가전제품 사용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냉동·냉장 진열장은 냉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커튼 설치하기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전력사용을 줄여 에너지 저감효과 유도

▌기타

· 절전담당자를 지정 및 상시적으로 절약교육을 실시하고 각 업체의 특성에 맞는 절전지침을 수립

·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식기류를 사용량 줄이기 실천

·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절수형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수도세 절감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음

4.3 건물에너지 절감

▮ 승강기

· 엘리베이터를 전층 운행하는 것에 비해 홀·짝수 격층운행을 했을 때 월간 최대 23.6%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고층빌딩의 경우는 격층운행이 아닌 고층/저층 운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임

· 등록 취소 기능 장착 등 불필요한 엘리베이터 기동효과를 줄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 창문/문

· 여름철 창문에 블라인드와 커튼으로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만 해도 실내온도를 약 3℃ 이상 내릴 수 있음

· 겨울철 창과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여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냉·난방을 피하면 에너지 절감 가능

▮ 조명

· 백열등, 형광등 대신 최고 90%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LED조명으로 교체 할 경우 많은 양의 에너지 절감 가능

4.4 산업에너지 절감

▮ 생산설비

·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상태에 있는 설비 전원차단과 공회전 방지, 최대수요전력 감시 제어장치 설치,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가능

▮ 냉·난방

·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를 2℃만 높여도 약 14%의 에너지가 절약되며 겨울철에는 1℃ 낮추면 약4~6%, 2℃ 낮추면 약 10%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음

· 실내용 환기팬은 상시 가동하지 않고 적정주기로 운행하면 전력소비량을 약 33.6% 줄일 수 있으며 사용 시 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5. 분야별 실천계획

▮ 에너지

- 에너지가격 안정시책과 원활한 수급책의 마련
-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지역에너지정책의 발굴과 실행
-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및 효율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너지자립조례 제정 등으로 법적 구속력 부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빌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고단열 설계, 고기밀 시공, 고성능 창호 시스템 등과 태양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 저감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도에 따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인증 취득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행함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수송

-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시행하여 자동차 통행량 감소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및 주차 상한제 확대
- 버스체계 및 자전거 교통체계 효율화로 인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 하이브리드 차 및 전기차 등 보급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서비스 확대

▌전력

-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한 전력공급시설의 단계별 확충
- 전력수급 전 가구의 220V 승압으로 전력손실 방지
- 도시 내 전력케이블의 점진적인 지하매설로 도시미관의 향상을 유도
- 변전소와 송전시설은 송전선로와 연결이 용이하고 수요자에 근접한 장소에 입지토록 하며, 도시 내의 Open-Space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

▌가스

- 도시가스(LNG)공급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수급계획 마련
- 개별공급에서 집중·단체공급으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증대
- 도시가스공급은 초기 설비투자가 막대하므로 주거밀도가 높은지역(APT단지)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공급망을 확충
- 유류 및 가스공급시설은 주요시설물 및 건축물 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 번화가 등 고밀도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배치

▌에너지 행정

- 에너지 가격 안정정책과 원활한 수급책 마련
- 에너지 절약시책 및 계몽방법 연구
- 무공해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통한 무공해 도시건설을 유도
- 풍력, 태양열 등 속초시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산업단지에서 적용방안 마련

6. 녹색 도시건설을 위한 지원방향

6.1 건물 부문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화 촉진

· 제로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임

- 1++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음

· 2020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에너지건물로 지어짐.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됨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녹색건물화 추진

· 기존 건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 건물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 저감 효과와 건물의 효율을 개선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저감 효과를 모두 반영

- 15년 이상 노후 공공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

· 제2차 국가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을 2025년까지 연 345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그린리모델링 시행물량을 2020년까지 전체 주거용 기존건물의 63% 보급, 전체 비주거용 기존건물의 68%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패시브(Passive) 기술도입 계획,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도입을 계획
- 기존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물량 보급률은 실제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지연 반영

· 건물에너지 성능향상에 관한 기술자료는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Pool 구축」의 건물유형별·건축시기별 냉·난방 에너지 부하량(외피단열 및 냉·난방 설비개선 포함)을 분석하여 반영

- BAU 시나리오는 2013년 지자체별·부문별 가구당 혹은 연면적당 냉·난방에너지 소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감축 시나리오는 건물유형별·건축시기별 냉·난방 에너지 부하의 효율개선율을 적용하여 설정

6.2 교통분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 관내시내버스 및 청소차량등을 천연가스(CNG) 버스로 지속적으로 교체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급
- 시내버스는 지속적인 교체를 추진하여 청소차량은 내구연한 도래 시 연차적으로 교체
- 천연가스 차량 보급 확충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에 관한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스충전소 보급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시내버스 도입방안 검토(자동차배터리 교환/충전시설 도입 및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보급 방안 마련 등)

▌운행차 저공해 사업 확대

- 경유차 오염저감 장치(DPF, p-DPF) 장착 의무화 사업 지속 추진
- 경유차 오염저감 장치(DPF, p-DPF) 장착 의무화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및 강원도 추진 저공해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추진
- 차량 및 배출가스의 배출특성에 따른 검사주기 및 보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교통수요 관리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선택 대안을 마련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 유도
- 대중교통의 날 행사 추진
- 녹색교통을 지향하는 교통수단(보행, 자전거)을 이용 증대

⑩ 폐기물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폐기물 발생 현황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속초시의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약 156.5톤/일이며, 2014년 발생량은 183.3톤/일로 최대치를 보였으며, 2017년 146.0톤/일이 발생하였음

· 속초시의 2017년에는 46.5톤/일(31.8%)은 매립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소각 69.7톤/일(47.4%)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29.9톤/일(20.8%)은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표 3-4-10-1】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량 (톤/일)		183.3	183.3	113.6	156.2	146.0
처리 방법	매 립	40.1	40.1	33.1	45.1	46.5
	소 각	60.0	60.0	73.5	68.7	69.7
	재 활 용	83.2	83.2	7.0	42.4	29.9
	해역배출	-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속초시의 연도별 가정용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5년~2016년 증가 후 2016년~2017년 감소하여 총 발생량은 146.0톤/일임

· 속초시의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가연성이 약 68.9%, 불연성이 38.7%, 재활용품이 2.3%, 음식물쓰레기가 36.1%로 가연성 폐기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10-2】 생활폐기물 매립지

구 분	개소	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 가능량(㎥)
2013년	1	103,093	1,570,556	727,968	842,588
2014년	1	103,093	1,570,556	744,448	826,108
2015년	1	103,093	1,570,556	756,536	814,020
2016년	1	103,093	1,570,556	808,220	762,336
2017년	1	103,093	1,570,556	822,172	748,38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4-10-3】 2017년 생활폐기물 상세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발 생 량	처리방법		
				매 립	소 각	재활용
총 계			146.0	46.5	69.7	29.8
종량제에 의한 배출	소 계		107.6	38.7	68.9	0.0
	가연성	계	68.9	0.0	68.9	0.0
		음식물채소류	2.8	0.0	2.8	0.0
		종이류	12.6	0.0	12.6	0.0
		나무류	1.2	0.0	1.2	0.0
		고무피혁류	0.0	0.0	0.0	0.0
		플라스틱류	0.0	0.0	0.0	0.0
		기 타	52.3	0.0	52.3	0.0
	불연성	계	38.7	38.7	0.0	0.0
		유리류	0.0	0.0	0.0	0.0
		금속류	0.0	0.0	0.0	0.0
		토사류	0.0	0.0	0.0	0.0
		기타	38.7	38.7	0.0	0.0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소 계		2.3	0.0	0.0	2.3
	종이류		0.3	0.0	0.0	0.3
	유리병류		0.4	0.0	0.0	0.4
	캔류		0.3	0.0	0.0	0.3
	합성수지류		0.6	0.0	0.0	0.6
	플라스틱류		0.6	0.0	0.0	0.6
	기타		0.0	0.0	0.0	0.1
남은 음식물류 배출 (분리배출 지역일 경우)			36.1	7.8	0.8	27.5

출처 : 2017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 폐기물 관리구역은 속초시 전 지역으로 전체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수거되어 처리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강원도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 면적비로 93.5%인데 반하여 속초시는 전체면적 105.74㎢ 모두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

【표 3-4-10-4】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구분	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면적(㎢)	인구(인)	동수(읍·면)	면적(㎢)	인구(인)	동수(읍·면)	면적(㎢)	인구(인)	동수(읍·면)
강원도	16,875.05	1,568,649	193	15,770.83	1,563,101	191	1,104.22	5,548	2
속초시	105.77	82,273	8	105.74	82,273	8	0	0	0

출처 : 2017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속초시의 생활폐기물 관리인원은 총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66명, 처리업체 19명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비 현황은 차량이 26대 보유 중이며 중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음

【표 3-4-10-5】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구 분	인원(명)	차량(대)	손수레(대)	중장비(대)
계	85	26	45	3
지방자치단체	66	12	45	3
처리업체	19	14	-	-
자가처리업체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속초시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총 4개소로서, 전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표 3-4-10-6】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현황

허가대상 폐기물	업체명	등록-관리번호	소재지	2017년 처리량 (톤/년)
생활	동해용역㈜	제2호 1999.03.21	조양동 1122	12,648
생활	중앙용역㈜	제2호 1999.09.03	동명동 466-42	6,262
생활	삼비환경㈜	제2호 1993.06.15	대포동 74-18	5,531
생활	(합명)설악용역	제99-1호 2001.06.01.	조양동 1484-12	5,538

출처 : 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속초시의 연도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2.9톤/일이며, 대부분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음

【표 3-4-10-7】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량 (톤/일)		4.2	18.7	4.6	13.1	12.9
처리 방법	매 립	-	14.7	0.6	0.4	0.5
	소 각	0.6	1.9	-	-	-
	재 활 용	3.6	2.1	4.1	12.7	12.4
	해역배출	-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건설폐기물

·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368.4톤/일로 최대치를 나타냈고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음

【표 3-4-10-8】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량 (톤/일)		247.9	258.9	0.4	271.1	368.4
처리 방법	매 립	0.2	0.7	0.0	-	-
	소 각	0.3	0.2	0.0	-	0.3
	재 활 용	247.4	258.0	0.4	271.1	368.1
	해역배출	-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은 2014년 1.8톤/일로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2017년 6.3톤/일로 나타났고, 매립 및 소각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표 3-4-10-9】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도이월량		-	0.1	-	0.1	0.1
발생량 (톤/일)		9.9	1.8	2.3	6.2	6.3
처리 방법	매 립	8.8	0.3	0.7	4.4	4.3
	소 각	0.1	0.2	0.2	0.2	0.2
	재 활 용	1.0	1.2	1.3	1.4	1.2
	해역배출	-	-	-	-	-
	기 타	-	-	0.1	0.1	0.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분뇨처리 현황

· 기준년도인 2017년 속초시의 분뇨 발생량은 90.6톤/일이며, 처리대상량은 90.6톤/일으로 100%의 수거율을 보임

【표 3-4-10-10】 분뇨처리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분뇨 발생량			분뇨 처리					
				처리대상량			처리대상제외		
	계	수거식	수세식	계	수거 분뇨	정화 오니	계	오벽지 분뇨	정화조
2013년	92.0	-	92.0	85.0	-	85.0	7.0	-	7.0
2014년	91.0	-	91.0	85.0	-	85.0	6.0	-	6.0
2015년	89.4	-	89.4	89.4	-	89.4	-	-	-
2016년	89.4	-	89.4	89.4	-	89.4	-	-	-
2017년	90.6	-	90.6	90.6	-	90.6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속초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1개소, 소각시설 1개소임

【표 3-4-10-11】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소재지	총 매립지 면적 (㎡)	총 매립용량 (㎥)	기 매립량 (㎥)	잔여 매립 가능량(㎥)
방축길 60	103,093	1,570,556	822,172	748,384

2017년 매립량 (㎥)	사용기간 (년-년)	연간유지 관리비(백만원)	매립지관리인원 (인)	매립 후 이용계획
13,952	1992-2040	335	15	공원

출처 : : 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폐기물 소각시설은 시설용량이 80톤/일, 1일평균가동시간 24시간으로 방축길 60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소각방식으로 화격자방식을 사용하여 2017년 26,862톤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였음

【표 3-4-10-12】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소각 방식	운영 방식	2017년 처리량 (톤)	연간유지 관리비 (백만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가동 개시일	에너지 발생량 (Gcal)
방축길 60	80	화격자식	연속식	26,862	3,500	31	2011.01.01.	

출처 : : 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1.2 문제진단

· 완벽한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

· 점차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분뇨수거량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확대 필요

· 재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화, 무해화, 감량화하기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족함

· 음식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의 증가에 비해서는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등 배출단계에서 감량화 방안만으로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활용품 거점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의 증가, 시민의 재활용품 분류기준의 혼란, 혼합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의 오염 가능성이 있음

2.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2.1 기본방향

· 폐기물의 감량화, 재이용 및 재활용 극대화 유도

·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시스템 등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 분뇨수거 장비를 현대화하여 관리의 효율화 및 도시환경과 위생을 고려

2.2 관리목표

· 속초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영향인자인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원순환형 도시, 속초"를 관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table>
<tr><td>목 표</td><td colspan="3">자연순환형 도시, 속초</td></tr>
<tr><td rowspan="4">세부목표 달성</td><td>주요지표</td><td>현황</td><td>계획목표(2020년)</td></tr>
<tr><td>1인 1일 폐기물 발생량</td><td rowspan="3">2.21kg
45%</td><td>1.35kg</td></tr>
<tr><td>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td><td>70%</td></tr>
<tr><td>재생용품의무사용에 관한조례 제정</td><td>제정</td></tr>
<tr><td>문제점</td><td colspan="3">1. 1회용품 사용량 증가
2. 증가추세에 있는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3.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td></tr>
<tr><td>여건분석</td><td>현황</td><td>주요 영향인자</td><td>예측치</td></tr>
<tr><td></td><td>1. 높은 쓰레기 발생 원단위(2.21kg)
2. 낮은 재활용률(45%)
3. 폐기물처리 고도화 시설 추가 설치 어려움</td><td>1. 주민의 환경교육 참여도
2. 폐기물 관련 정책
3. 폐자재 등의 유통 비용</td><td>1. 환경의식 증가로 인한 폐기물 감소
2.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재활용율 증대
3. 자원고갈로 인한 재활용율 증가</td></tr>
</table>

출처 : 속초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2.3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지 1개소, 소각시설 1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 소각시설의 처리량은 80톤/일로 현재 소각폐기물 60톤/일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지의 잔여용량은 70만㎥로 총면적의 약 45%의 잔여매립용량이 남아 있음

2.4 지표설정

01 유형별 폐기물발생량 예측

▮ 생활폐기물

· 2040년 목표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인당 1일 1.98kg으로 1일 18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표 3-4-10-13】 폐기물 발생량 추정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획인구(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생활폐기물	1인1일발생량(KG)	1.75	1.98	1.98	1.98	1.98
	총발생량(톤/일)	146	169	174	178	180
	수거율(%)	100.0	100.0	100.0	100.0	100.0

· 2040년 목표연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안은 현재 32.2%에 그치는 재활용 비율을 45% 수준까지 확대하고 매립량은 26%에서 23%수준으로, 소각은 38%에서 32%로 감소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처리방안을 계획

【표 3-4-10-14】 생활 폐기물 유형별 처리방안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		169	174	178	180
생활폐기물 발생량(톤/5년)		308,425	317,550	324,850	328,500
처리 형태	매립	80,190.50	79,388	77,964	75,555
	누적량	80,191	159,578	237,542	313,097
	소각	117,202	114,318	110,449	105,120
	1일발생량	64	63	61	58
	재활용	111,033	123,845	136,437	147,825

▌ 건설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경우 년도에 따라 발생량이 상이하며 건설경기, 개발사업 등에 의해 크게 변동됨에 따라 5년간 평균 발생량 218.3톤을 기준으로 연평균 인가증가율(0.5%)을 반영하여 추정

【표 3-4-10-15】 건설 폐기물 유형별 처리방안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건설폐기물 발생량(톤/일)		225	230	235	240
건설폐기물 발생량(톤/5년)		410,625	419,750	428,875	438,000
처리 형태	매립	3,763	3,846	3,930	4,014
	누적량	3650	7,609	11,539	15,553
	소각	235	240	246	251
	1일발생량	0.1	0.1	0.1	0.1
	재활용	408,179	417,250	426,321	435,391

주)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비율이 높아(99%) 별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음

▌ 사업장 폐기물

· 사업폐기물의 경우 년도에 따라 발생량이 상이하며 각종 행사, 업종변화 등에 의해 크게 변동됨에 따라 5년간 평균 발생량 11.1톤을 기준으로 연평균 인가증가율(0.5%)을 반영하여 추정

【표 3-4-10-16】 사업장 폐기물 유형별 처리방안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		11.7	12.2	12.7	13.2
생활폐기물 발생량(톤/5년)		21,353	22,265	23,178	24,090
처리 형태	매립	6,475	6,752	7,029	7,305
	누적량	6132	13,227	20,256	27,561
	소각	732	764	795	826
	1일발생량	0.4	0.4	0.4	0.5
	재활용	14,184	14,790	15,396	16,002

주)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 비율이 높아(66%) 별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음

02 속초시 장래 폐기물처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발생량 예측

【표 3-4-10-17】 속초시 폐기물 처리방안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폐기물 발생량(톤/일)		406	416	426	433
폐기물 발생량(톤/5년)		740,403	759,565	776,903	790,590
처리 형태	매립	90,428	89,986	88,923	86,874
	누적량	90,428	180,414	269,337	356,210
	소각	118,169	115,322	111,490	106,197
	1일발생량	65	63	61	58
	재활용	533,396	555,884	578,153	599,218

▌매립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검토

· 속초시 매립지 총 용량은 1,570,556㎥ 이며 2020년 기준 기매립량은 872,643㎥로 705,390㎥의 잔여매립이 가능함

【표 3-4-10-18】 매립 폐기물 처리용량 검토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단계별 발생량(톤/5년)		90,428	89,986	88,923	86,874
	누적 발생량	90,428	180,414	269,337	356,210
매립 비중을 반영한 단위환산 (톤→㎥)		70,647	70,301	69,471	67,870
매립지 잔여용량(㎥/5년) (2020년 705,390㎥)		634,743	564,442	494,971	427,101

주1) 1년간 매립량 13,776㎥, 매립된 폐기물량 17,666톤 = 1㎥당 1.28톤 매립(2018년 기준)
주2) 비중에 따른 매립지 잔여용량 단위환산 : 705,390㎥(잔여용량) × 1.28톤 = 902,899톤

▌소각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검토

· 2040년 속초시 소각 폐기물은 2040년 까지 60톤/일 미만으로 현재 처리용량인 80톤/일 범위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증설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표 3-4-10-19】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소각 방식	운영 방식	2017년 처리량 (톤)	연간유지 관리비 (백만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가동 개시일	에너지 발생량 (Gcal)
방축길 60	80	화격자식	연속식	26,862	3,500	31	2011.01.01	

주) 2019년 속초시 통계연보 , 2020년

3. 실천계획

3.1 폐기물 발생 최소화

▌ 폐기물 감량 목표의 설정 및 추진

·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각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

· 가정생활폐기물 발생 감량화를 위해서는 동 단위별로 배출허용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의 혜택이나 제재수단 운영

▌ 폐기물 선별을 통한 감량화 유도

· 재활용 가능물품을 재선별하여 소각 혹은 매립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 폐기물을 기계적 전처리를 통해 재활용 가능물품을 최대한 선별

· 플라스틱 선별시 근적외선 광학선별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 저감 대책 마련

· 정부 차원에서 관광지 주변 상가의 일회용품 사용저감 대책 마련

· 관광객들의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관광지에서의 캠페인 시행

3.2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시민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플라스틱 줄이기 약속 릴레이' SNS 이벤트, 공모전, 경연대회 등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캠페인 추진

▌ 청소년, 주민 등 대상 맞춤형 환경 교육 확대

· 방과후 수업 및 자율학기제 환경교사 파견 등으로 현장중심 교육 진행

· 주민·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와 함께 분리배출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에코리더 등) 양성, 지역별 실천운동에 활용

· 생활권별 업사이클 센터 등을 지역별 자원순환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허브(hub)로 육성, 전시·교육 추진

3.3 자연순환형 사회 구축

·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여 자원·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활용

· 폐전자제품은 중금속과 냉매를 포함하고 있어 부적정 처리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철, 희귀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는 등 자원가치가 매우 큼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을 적극 홍보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3.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활용

▌개념 및 역할

·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운영

·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표 3-4-10-20】 생산자책임활용제도의 주체적 역할

주 체	역 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 (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수입량,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기타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환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출처 :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주요 내용

·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생산자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에 비례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복잡한 재활용 실적관리를 투명화·단순화함으로써,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에 따른 재활용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 등을 위해 현행의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을 폐자원 회수·재활용실적으로 변경

3.5 폐기물 처리 최소화 및 최적화 방안 강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 폐기물 매립·소각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18~)를 통해 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
-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의 전국적 확대 설치
- 폐기물 매립률 변동 및 매립시설 잔여용량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기물 매립 시 전처리 의무화 및 직매립 원천 금지 추진
- 현재 상당부분 매립처분되고 있는 재난 폐기물의 직매립 저감을 위해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마련 및 분리·선별·재활용 체계 사전 구축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폐기물처리 최적화

- 권역별로 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 의견수렴 등 의사소통을 통해 님비현상 최소화
- 경제성, 환경성 외에 주민수용성 및 환경정의 등을 고려한 연차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및 공개
- 친환경 에너지타운 지속 확대 및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을 통한 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등 소프트웨어 기능 강화
-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처리 효율 향상, 선별·재활용시설 개선을 통한 잔재물 발생 최소화·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효율 개선

- 사용종료 또는 종료 예정 매립지에 대한 매립지 복원 및 자원화를 확대하여 사용 연한 연장, 신규 매립지 수요 감소
-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시설 수명연장 및 잔재물 발생 저감
- 일정규모 이상 매립·소각시설에 폐열, 매립가스 등의 회수·이용을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발생 저감 및 폐자원에너지 활용 극대화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연장, 유지관리비용 절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3.6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방안

▌제조·생산단계

-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
- 페트병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 조치계획 마련
-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 확대·강화

▌유통·소비단계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토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 소비단계에서 일회용품(종이컵, 비닐봉투 등) 사용을 감소 계획추진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이 중요함

▌분리·배출단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제시
-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

▌수거·선별단계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 중단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 강화하는 법령 모색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

▌재활용 단계

-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 강화
- 폐비닐, 페트병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의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하는 계획 마련

V 경관 및 미관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2. 기본구상
3. 경관계획
4.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5. 실행계획

제5장 경관 및 미관계획 (변경없음)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1. 경관자원 조사기법

1.1 조사목적

· 속초시가 보유한 경관자원의 현황 조사 및 분석

· 경관특성을 파악 후 분류 및 체계화

· 기본방향 수립 및 경관계획 수립의 기틀 마련

· 속초시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속초시만의 경관계획 수립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1.2 유형분류 기준

· 경관구분

구 분	경 관 구 분
산림녹지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식생, 공원 등
수변경관자원	· 주요 하천, 호수, 해안 및 도서 등
시가지경관자원	·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산업경관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도로, 철도, 교량
역사·문화경관자원	· 속초시 고유의 경관, 선소, 전통사찰, 근대건축물, 문화재, 한옥, 역사문화적기념물

· 분류기준

구 분	경 관 구 분
점적경관	· 산 정상부, 역사시설물, 교량 등 점적으로 관찰되는 경관
선적경관	· 도로축이나 하천축, 해안선, 도시 및 자연 스카이라인 등 선적으로 관찰되는 조망경관
면적경관	· 자연환경, 역사지구, 전원경관, 섬, 마을 산업단지 등 면적으로 조망되는 경관

2.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2.1 산림녹지경관자원

· 설악산을 위시하여 주봉산, 청대산 등 산악축이 해안까지 뻗어 내리며 북측으로도 낮은 구릉 들이 지나고 있음

· 대청봉(1,708m)이 속초시 남서 경계에 위치하고, 1,000m 이상의 연봉이 서·남부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며, 설악산은 시가지에서 원경으로 조망되는 산악 스카이라인으로 형성되어 중요한 랜드마크 요소로 작용함

· 또한, 대청봉의 북동측으로는 청대산, 주봉산 등 약 300m 정도의 낮은 산림능선이 위치하고 있어 남서측으로 점차 높아져 중첩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음

· 시가지 내에는 영금공원, 영랑공원, 만리공원, 조양공원 등 7개소의 근린공원과 자연공원 1개소, 18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의 역사공원, 6개소의 문화공원, 1개소의 수변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67.243㎢	0.030㎢	0.008㎢	0.520㎢	0.011㎢	0.003㎢	0.006㎢	0.090㎢
1개소	18개소	8개소	7개소	6개소	4개소	1개소	1개소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 속초시의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7개소, 경관녹지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구 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총계	281,883㎡	204,975㎡	76,908㎡	-
	34개소	7개소	27개소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구 분	산림녹지경관자원	
산맥	태백산맥	설악산맥
산정	설악산, 주봉산, 청대산	화채봉, 마등령, 대청봉
공원	영금공원, 영랑공원, 속초생활체육공원, 조양공원, 해맞이공원, 중앙공원, 논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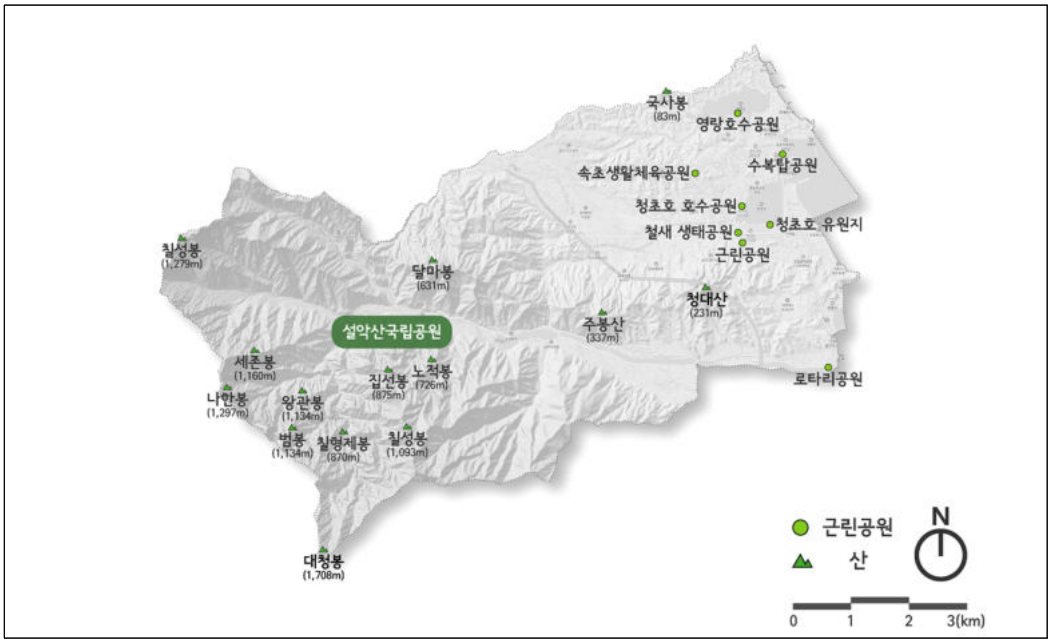
대청봉	해맞이 공원
	

청초호에서 본 설악산





[그림 3-5-1-1] 속초시 산림녹지경관 현황도



2.2 수변경관자원

▌하천 및 호수

· 속초시의 하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한 세 갈래의 주요 하천인 쌍천, 청초천, 그리고 장천이 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천축으로 작용함

· 쌍천은 설악산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속초시의 대표적 수계축으로 하천의 유역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위요된 하천경관을 형성하면서 뛰어난 산수절경을 이룸

· 청초천은 설악산 달마봉에서 시작되어 유로 길이가 12㎞에 이르고,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며, 하천 주위의 비옥한 소야평야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예전에는 소야천이라고도 했음

· 장천은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하나의 소하천을 이루고 있으며, 영랑호로 들어가는 유일한 하천으로 농경지를 관류하면서 영랑호로 유입

· 청초호 및 영랑호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도심 내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영랑호는 시의 북동측 고성군 경계부근에 위치하며 남쪽과 북서쪽에 관광단지가 입지해 있음

▌해안 및 항포구

· 속초시는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동해바다와 이루는 해안선의 연장은 9.4㎞이고, 무인도서로 조도(鳥島)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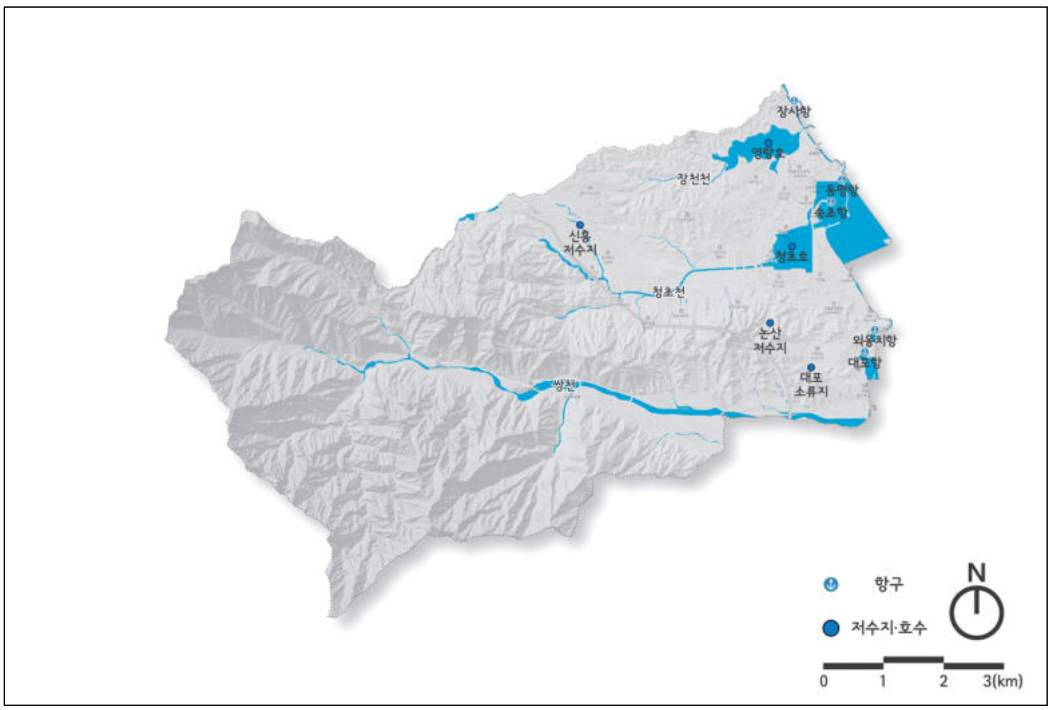
· 동해안은 융기해안의 특성으로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해안쪽으로 치우쳐 해안선과 평행하게 위치하며, 오랜 지질시대를 통하여 아주 완만하게 융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해안선이 매우 단조로움

· 해안선을 따라 북으로부터 사진항, 속초항, 외옹치항, 대포항이 주요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구 분	수변경관자원
하천	쌍천, 청초천, 장천 외 소하천 등
호수	청초호, 영랑호
항포구	사진항, 속초항, 외옹치항, 대포항

청초천	청초호
	
대포항	**동명항**
	

[그림 3-5-1-2] 속초시 수변경관자원 현황도



2.3 시가지경관자원

▌전체 현황

· 속초시의 면적은 110.784㎢이며 대부분 토지는 산림지역이고 그 주변으로 농업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시가화지역은 해안과 청초호 주변에 집중되어 있음

· 속초시의 행정구역은 13개의 법정동, 8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지지형으로 인해 시가지는 좁게 형성되어 있으며 교동과 조양동에는 밀집된 박스형태의 고층아파트들이 입지하고 있음

▌주거지경관

· 속초시의 주택(2017년 기준)을 공동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독주택(35.33%)과 아파트(59.61%), 연립 및 다세대(6.97%), 기타(13.09%)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속초의 주거지역 개발은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동 및 조양동, 청호동에 집중되어 있음

구 분	계	주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총계	37,023㎡	11,969㎡	22,068㎡	2,022㎡	560㎡	404㎡
	100%	32.3%	59.6%	5.5%	1.5%	1.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상업지경관

· 속초시의 상업지역은 조양동 및 청호동, 교동, 금호동, 영랑동, 동명동 등에 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청초호 주변 및 해수욕장 배후지역, 대포항 인접지역에 발달되어 있음

구 분	계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총계	2,316.00㎡	-	2,267.60㎡	48.40㎡	-
	100%	-	97.9%	2.1%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 공업지경관

· 속초시의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86.54%)과 준공업지역(13.46%)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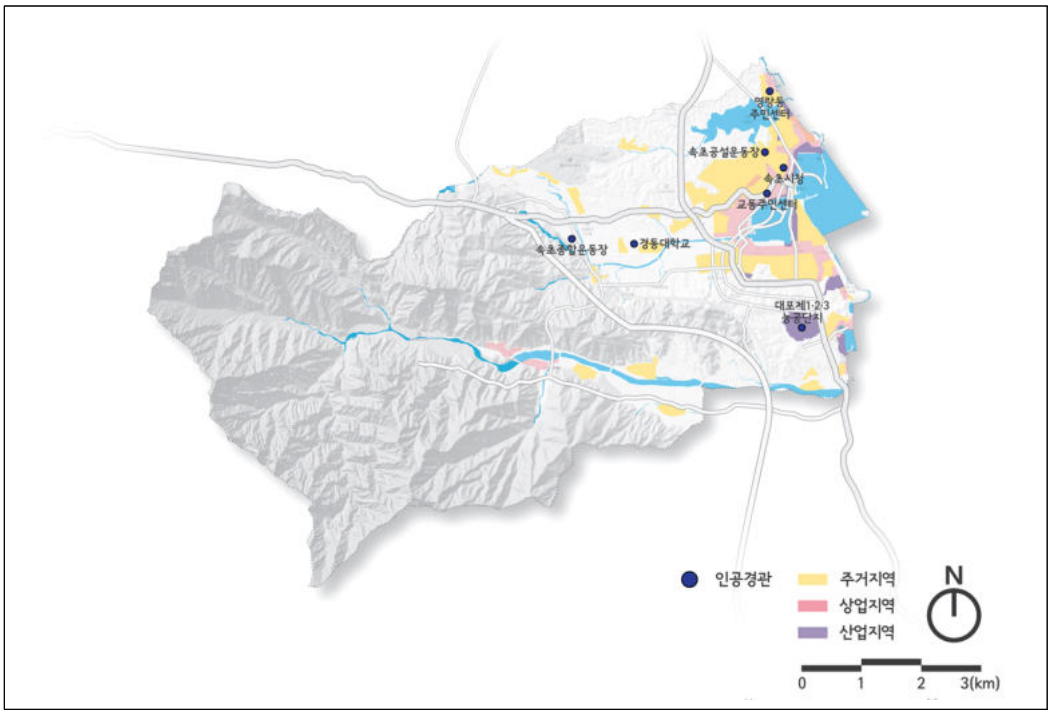
· 공업지역은 청초호 주변 및 속초항 주변에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포동에 대포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구 분	계	공업지역		
		중심	일반	준공업
총계	1088.80	-	942.20	146.60
	100%	-	86.54%	13.4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속초시가지	대포농공단지
	

[그림 3-5-1-3] 속초시 시가지경관 현황도



2.4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도로 및 교량

· 2017년 기준 총 567개의 노선, 245.2㎞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포장률은 57%임

· 7번국도가 고성군과 양양군을 이어주며 북-남으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지방도 56호선이 시가지의 동-서를 연결하고 있음

· 2016년 개통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가 설악산 자락을 지나고 있음

구 분	계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시군도
노선수	567	1	1	1	565
총연장(m)	245,237	7,770	9,150	5,084	223,233
포장률(%)	57.4	100	100	100	53.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 도로상에는 지하보도 1개소(26m), 지하차도 1개소(70m), 터널 1개소(610m), 교량 40개소(4,433m) 등의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 교량은 쌍천, 청초천, 장천 등 양호한 수변경관 및 설악산으로의 조망을 할 수 있는 주요 장소이며 아바이 마을을 이어주고 있는 금강대교 및 설악대교는 야간 수변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 시설임

▌자전거도로

· 속초시 관내 자전거 도로망은 자전거 전용도로 1.5㎞,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45.4㎞, 자전거 우선도로 14.9㎞로 총 61.8㎞가 운영 중에 있음

· 자전거 도로는 영랑호, 청초호 등 호수 주변, 국도7호선 및 국도56호선 도로변, 해변도로 및 청초천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분포함

구 분	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47	1	29	-	17
총연장(㎞)	61.8	1.5	45.4	-	14.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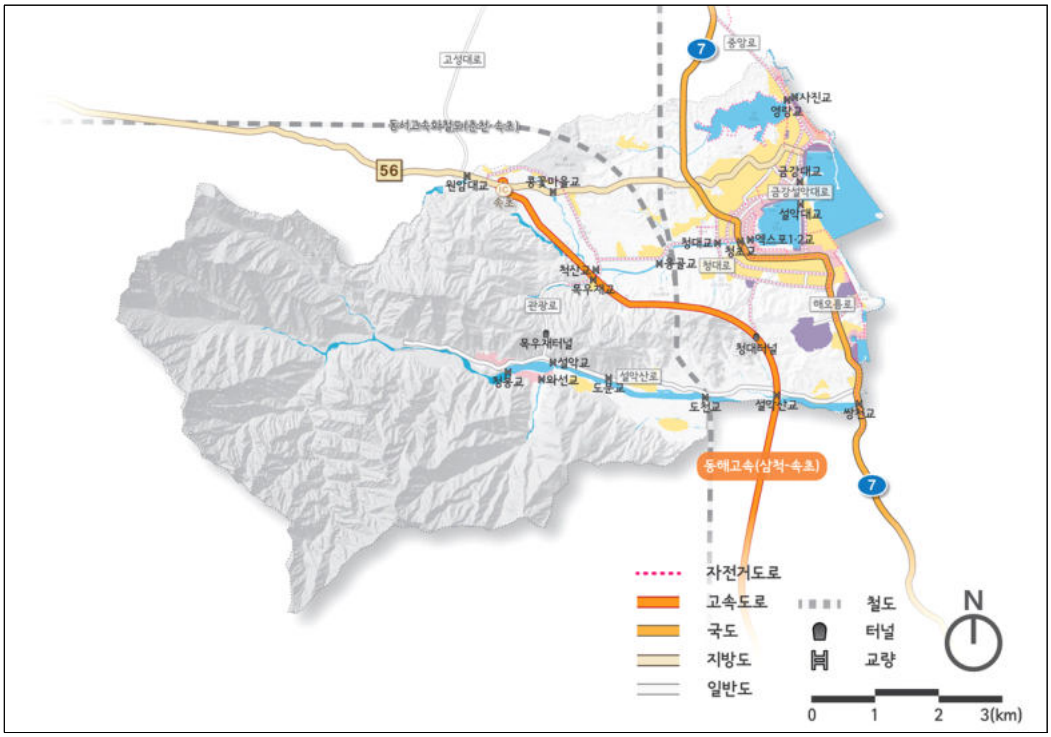
▌철도

· 속초시는 현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은 없으나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 또한, 1967년 노선이 폐지되었던 동해북부선(강릉~고성) 개통이 계획되어 있음

금강대교	7번국도
	

[그림 3-5-1-4] 속초시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현황도



2.5 역사·문화·관광자원

▌ 역사·문화자원

·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30개의 문화재 자원이 있음

· 천연기념물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설악동의 소나무, 신흥사가 있음

·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로 지정된 향성사지 삼층석탑, 신흥사 극락보전 및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제진언집 목판이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된 조양동 유적, 명승으로 지정된 비룡폭포계곡일원, 토왕성폭포, 울산바위,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일원, 공룡능선이 있음

· 신흥사 입구에는 높이가 58척인 동양 최대 규모의 청동석가여래좌상이 있음

【표 3-5-1-1】 문화재 현황

구 분	계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지 방 지 정 문 화 재		문화재 자 료
		국보	보물	사적·명승	천연 기념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속초시	30	-	5	6	2	7	2	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 관광자원

·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8경, 영랑호, 척산온천, 청호동 아바이마을 등의 관광자원과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설악산 눈꽃축제 등 행사 및 축제가 있음

· 속초 8경은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에 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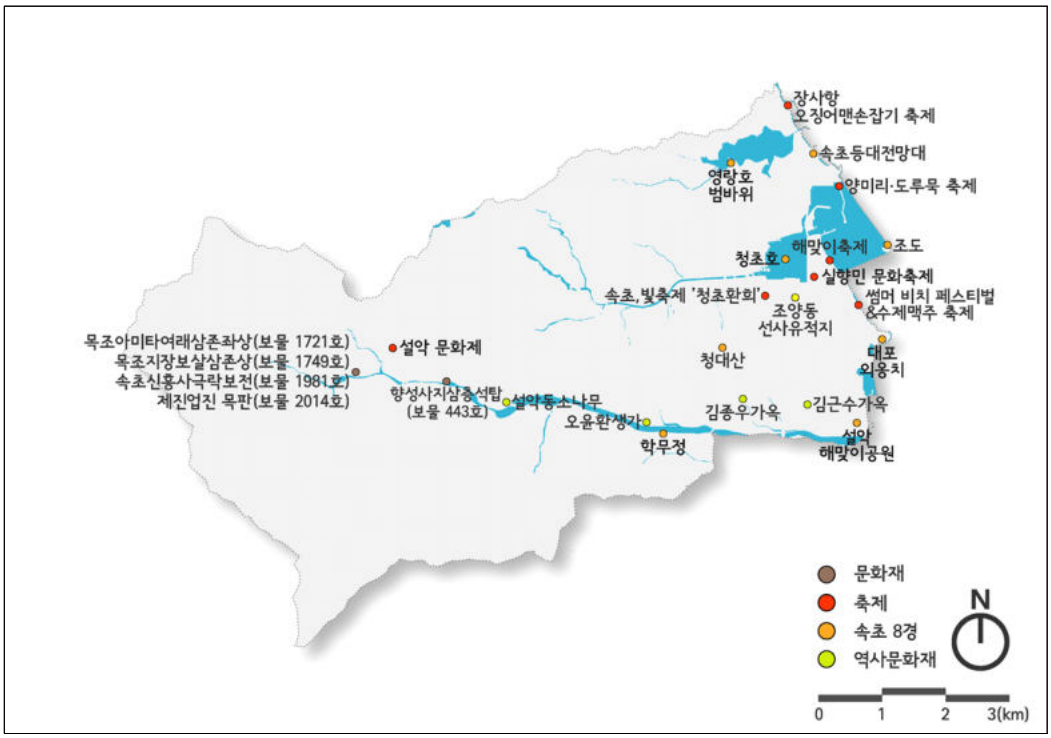
【표 3-5-1-2】 관광자원

관광자원	· 속초시의 관광자원은 국내 제일의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 설악산국립공원, 속초8경(영랑호의 범바위, 영금정의 속초등대전망대, 청초호, 청대리 청대산, 조도, 대포동의 외옹치 <옹치산>, 내물치의 설악해맞이공원, 상도문의 학무정), 영랑호, 척산온천, 청호동 아바이마을
행사와 축 제	· 산, 바다, 호수, 온천, 먹거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갖춘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여름에는 속초의 명물인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해양페스티벌, 철인3종경기가 열리고, 겨울에는 설악산 눈꽃축제, 해맞이 축제, 설악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출처 : 속초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조도	외옹치
	
등대전망대	**범바위**
	

[그림 3-5-1-5] 속초시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도



3. 경관종합분석

구 분		경관특성
산림 녹지 경관	산림	· 설악산, 주봉산, 청대산 등 우수한 산림녹지경관 보유 · 산림으로 위요된 지형으로 인해 시가지에서의 조망 용이 · 구릉지 및 산림인근 지역에 인공건축물(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로 인해 조망경관 훼손
	녹지	· 시가지 내 풍부한 공원녹지 입지 · 점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함
수변 경관	하천 및 호수	· 청초천 및 장천, 쌍천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산림경관으로의 시각회랑축 역할 · 인공적인 호안정비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 영랑호 주변 양호한 수림형성 · 청초호는 시가지 내 입지하여 접근성이 높고 주변 시설물을 이용한 수변경관 이용성 우수 · 주변 개발로 인한 고층 건축물 입지로 인해 자연경관조망 차폐 · 항만시설 및 공업지대로 인한 네트워크 단절
	해안	· 해안선이 도시경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안경관의 매력 부각 · 속초해수욕장과 청호해수욕장, 외옹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구나 도로가 형성된 인공해안을 이루고 있음
시가지 경관	주거지	· 시가지 내 구릉지들이 점적으로 입지하여 녹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구릉지 주변 공동주택 및 인공시설들로 인해 경관훼손 발생 · 특히 청대산의 산지를 배경으로 공동주택이 돌출경관 형성 · 청초호 주변을 제외한 지역은 노후한 단독주택 위주의 경관 형성
	상업지	· 청초호 주변 대형 건축물군으로 인해 위압감이 형성되며, 설악산으로의 조망을 차폐하고 있음 · 보행공간의 단절 및 가로변 불법주차, 옥외광고물, 물건적치 등으로 열악한 보행환경 조성
	공업지	· 청초호 및 속초항 주변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수변경관 활용 미흡 · 대포농공단지 내 건축물들의 색채 이질감 형성
도시 기반 시설 경관	도로 및 교량	· 7번국도는 다양한 자연경관조망을 위한 시각회랑축으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조망차폐 · 해안도로는 수변으로 주차구역이 형성되어 있어 보행환경 저하
	자전거 도로	· 우수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노선 다수 보유 · 시가지 내 단절된 구간이 많아 연속성이 저하되며 네트워크 형성 어려움 · 일부구간 노상적치물, 도로폭 협소 등으로 통행이 어려우며,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안전성 저하
	철도	· 철도노선 계획으로 인해 노선 주변부 경관관리 방안 마련 필요
역사·문화·관광 경관		· 신흥사 등의 사찰문화재는 설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리가 잘 된 편이나 기타 문화재는 관리가 미흡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 주요 관광지들은 주변 상업시설의 간판, 노상적치물, 노후된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음

산림
· 우수한 산림녹지경관 보유
· 인공건축물 입지로 인해 조망경관 훼손

녹지
· 시가지 내 공원녹지 입지
· 점적으로 입지하고있어 네트워크 형성 불가

하천 및 호수
· 하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산림경관으로의 시간회랑축 역할
· 인공적인 호안정비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 영랑호 주변 양호한 수림형성
· 청초호는 시가지 내 입지하여 접근성과 수변경관 이용성 우수

해안
· 해안선이 도시경계의 절반이상이므로 해안경관의 매력 부각
· 대부분 항구나 도로가 형성된 인공해안을 이루고 있음

역사·문화·관광
· 사찰문화재를 제외한 기타문화재는 관리가 미흡하고 접근성 저하
· 상업시설 간판, 노상적차물, 노후된 시설물 방치

도로 및 교량
· 도시개발에 따른 조망 차폐
· 해안도로 근처 수변의 주차구역 형성에 따른 보행환경 저하

자전거도로
· 우수 자연경관을 조망할수 있는 노선 다수 보유
· 시가지 내 단절된 구간으로 인해 연속성이 저하
· 일부구간 통행이 어려우며 불법주정차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

철도
· 철도노선 계획으로 인해 노선 주변부 경관관리 방안 필요

상업지
· 청초호 주변 대형 건축물들이 위압감 형성 및 산림조망 차폐
· 열악한 보행환경 조성

주거지
· 구릉지 주변 인공시설들로 인해 경관훼손 발생
· 청대산 주변 공동주택의 돌출경관 형성
· 청초호 주변을 제외한 지역은 노후한 단독주택의 경관 형성

공업지
· 수변경관 활용 미흡
· 건축물들의 색채 이질감 형성



2 기본구상

1. 경관미래상

· 2040 속초시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속초의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 2040 속초시기본계획 미래상인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관광선도도시 속초"를 고려하여 설정



자연이 어어진 도시 Eco	역사가 어어진 도시 Enjoy	사람이 어어진 도시 Harmony
수려한 산림경관의 보전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경관네트워크 구축**	**매력적인 도심공간 형성**
속초시를 둘러싸고 있는 설악산, 청대산, 주봉산 등의 수려한 녹색산림경관 보전	점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도시이미지 구축	도심 속 유휴지 및 가로 등의 활용을 통한 매력적인 공간 조성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는 수변경관 창출	**활기 있는 생활·관광도시 형성**	**구·신시가지의 조화로운 도심경관 연출**
청초호, 영랑호, 청초천 등 주변 경관형성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매력적인 공간조성	건축물, 시설물, 오픈스페이스 등의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도심경관 연출

2. 경관계획의 추진전략

목표 1	자연이 이어진 도시

▌풍부한 자연경관 및 자원의 보존과 이용

- 해안 자연경관 복원과 수제선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동해안 형성
- 영랑호, 청초호의 호수경관 정비를 통한 관광가치 향상
- 청초천, 장천, 쌍천 등 도심 하천 주변 경관개선 및 자연성의 보전을 통하여 친환경 수변경관 형성
- 속초항, 대포항, 장사항 등의 인공 경관요소의 미항, 관광항 개발로 해안 경관자원 관리

▌조망경관을 고려한 경관 형성

- 설악산의 산악 스카이라인과 조망경관의 원형을 보전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수변축 경관을 따라 형성되는 조망경관을 고려하여 인공시설에 의한 차폐를 최소화
- 해안과 설악산에 접한 도로축(7번국도, 지방도 56호선, 설악산로 등) 경관 관리

화성 동탄 호수공원 (호수경관 정비를 통한 관광가치 향상)	강릉 헌화로 (해안과 산림에 접한 도로축 경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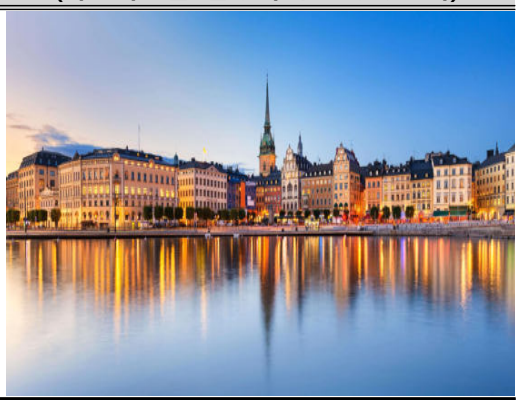
목표 2	역사가 이어진 도시

▌속초시 고유의 경관특성을 발굴·보전

- 축제 등 각종행사와 관광지의 조성 및 정비로 활기찬 도시 육성
- 역사·문화 경관요소의 관광 명소화
-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의 향상 도모
- 산재된 문화경관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 확충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 바다·호수·설악산·온천 등의 주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지로 명소화
- 종합위락단지, 관광항, 매력적인 해안경관 창출 등으로 관광서비스와 가치를 높인 개발계획 정립
-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 영금정 등대 등을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지로 명소화
- 관광객이나 시민들 모두에게 "속초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독자성과 정체성을 찾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조트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마련

경주 밀레니엄타워 (역사·문화요소의 관광명소화)	스웨덴 스톡홀름 항구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명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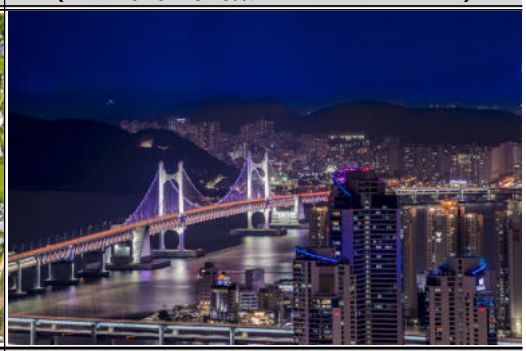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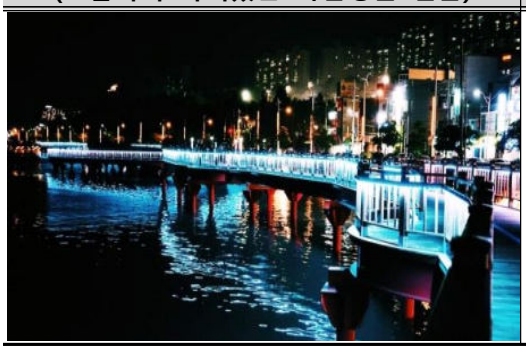
목표 3	사람이 이어진 도시

▌경관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인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 속초시민의 경관특성을 발굴하여 21세기를 향한 개성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경관요소 정비를 통한 매력적인 공간 구성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매력적인 지역경관 형성

- 주택문화, 예술문화, 자연환경, Green Network, 도로, 해안, 하천시설물, 인공구조물 등 인공구조물 및 형상물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추구
- 도심지의 가로·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녹지네트워크 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 시가지 및 주요 경관자원의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연출
- 토지이용특성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수립

스웨덴 코펜하겐 가든시티 (녹지네트워크 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부산 광안리 대교 (도심지의 특색있는 야간경관 연출)
	
여수 소호 해변공원 (도심지의 특색있는 야간경관 연출)	**남해 물미 해안도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조성 추구)**
	

3. 경관구조 설정

·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관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인 계획 집행을 위하여 공간적 특성에 따라 경관구조 틀을 구상함

· 경관구조는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설정하고,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관 이미지나 주제 등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앞서 제시한 기본방향을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실현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 경관권역

· 경관권역은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 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

· 향후 개발계획 등 경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관권역 설정

· 행정구역, 생활권, 지형특성,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속초시 경관권역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형성·관리·보전 차원에서 생태자연권역과 도심휴양권역의 2개 권역으로 설정함

▮ 경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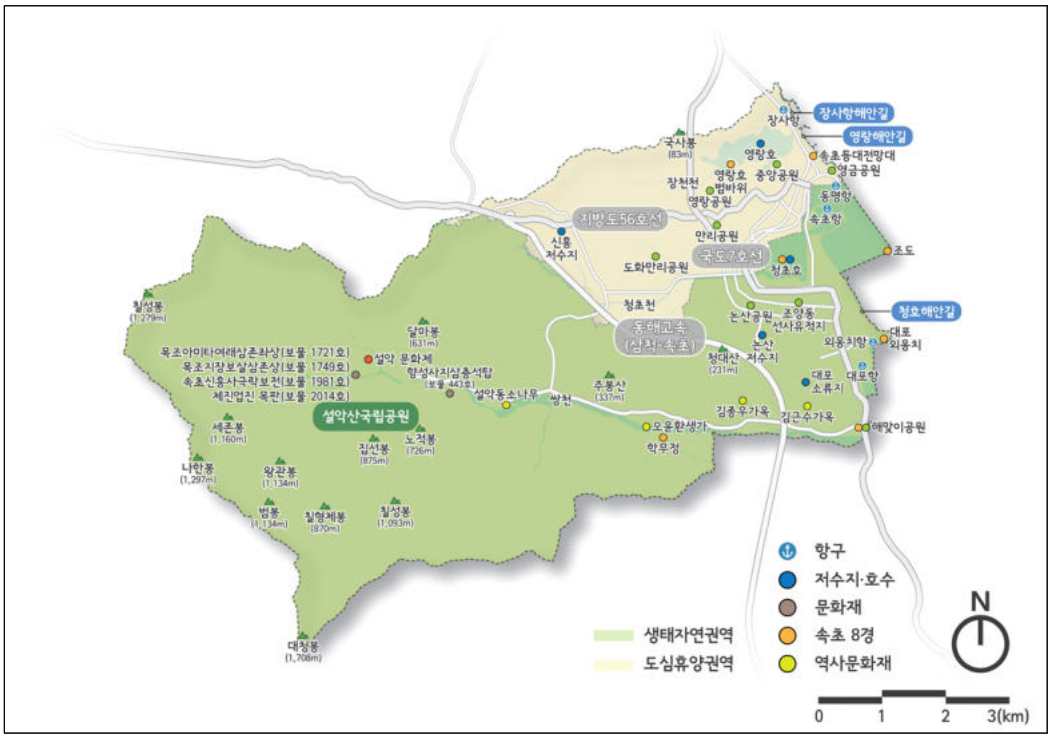
· 경관축은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력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 및 철도 경관축, 역사·문화경관축 등 4개 축으로 설정

▮ 경관거점

·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며, 항구경관거점, 역사경관거점, 문화경관거점, 산림·녹지경관거점, 수경관거점, 진입경관거점의 6개 유형으로 설정함

3.1 경관권역 구상

· 자연지형/지세 특성 및 행정구역, 도시계획적 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도로위계, 동일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자연권역, 도심휴양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경관 특성을 살려 권역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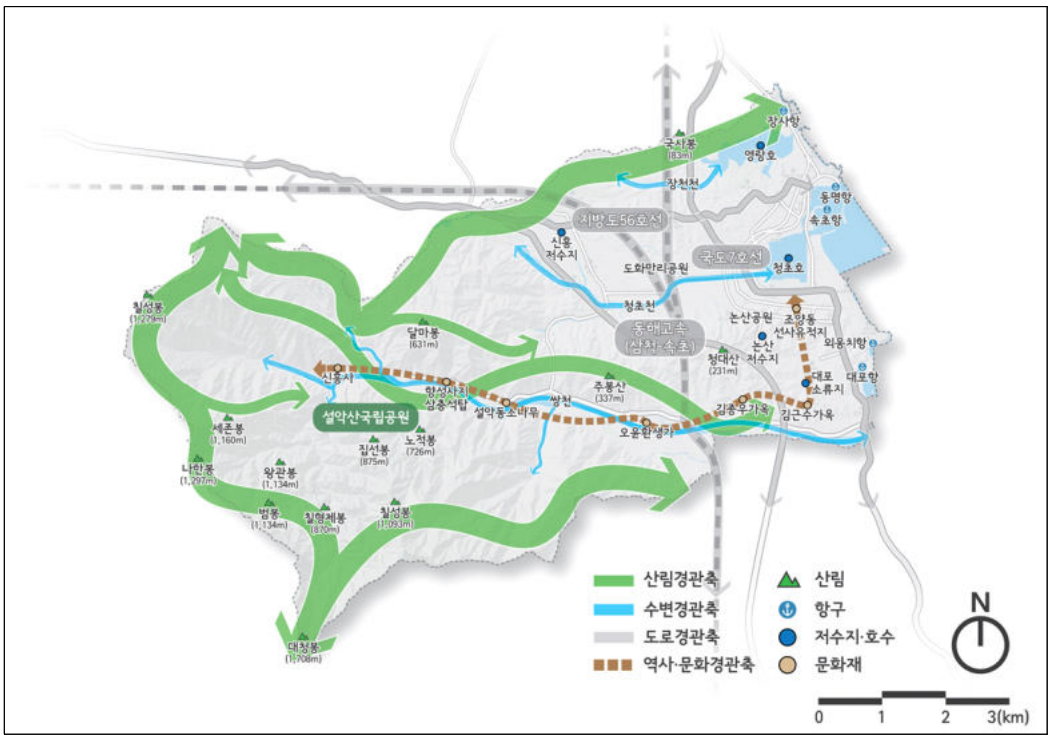


구 분	경 관 특 성	주요경관자원
생태자연권역	· 신시가지 및 대규모 공동주택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대포농공단지 조성 · 산림 및 해안, 호수경관이 우세한 지역 · 해상관광, 설악산관광, 역사문화관광 등 주요 관광요소 다수 입지	· 설악산 국립공원, 주봉산, 청대산, 청초호, 대포항, 외옹치, 쌍천, 대포농공단지, 설악해맞이공원, 학무정, 오윤환 생가, 설악동소나무, 향성사지삼층석탑 등
도심휴양권역	· 영랑동, 노학동, 교동, 금호동, 동명동 등 기존 시가지 및 향후 개발여건이 높은 지역	· 영랑호, 장사항, 속초등대전망대, 국사봉, 속초생활체육공원, 장천, 청초천, 신흥저수지, 속초시청, 경동대학교, 금강대교, 설악대교 등

3.2 경관축 구상

· 속초시는 주로 산림경관과 수경관이 대표적이며, 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흐르는 주요 물줄기 및 산줄기를 축으로 설정

· 또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주요 도로 및 경관적으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역사문화경관자원을 축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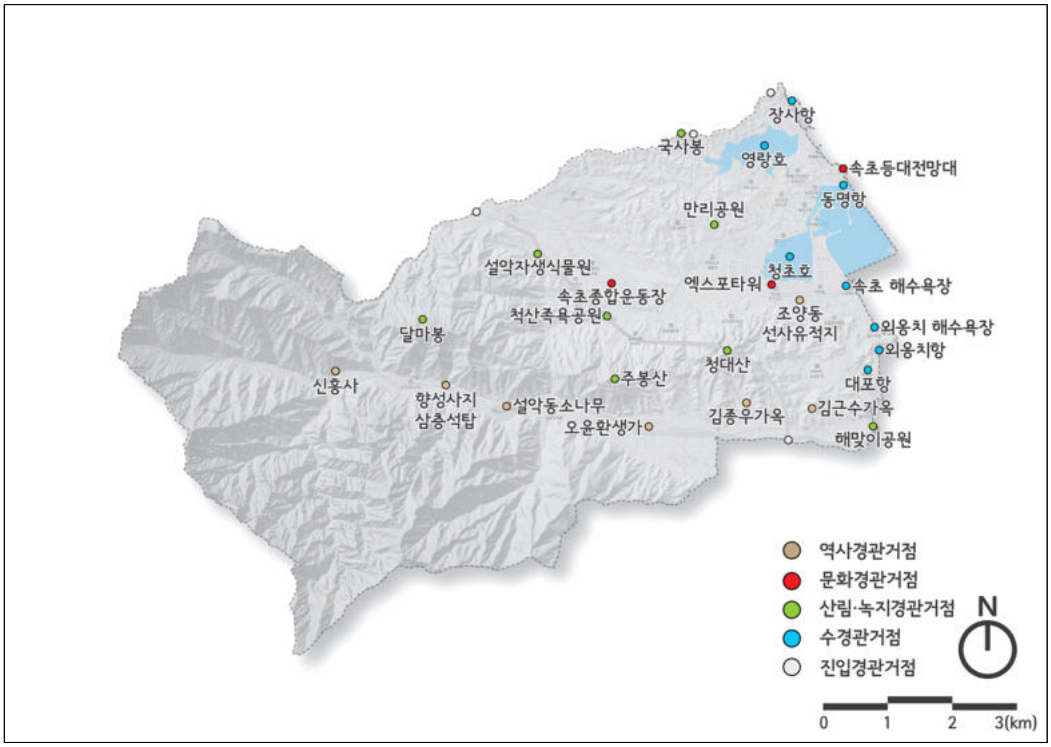


구 분	경 관 특 성	주요경관자원
산림경관축	·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분포	· 대청봉, 청대산, 국사봉 등
수변경관축	· 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천이 수변경관 형성 · 동해바다와 이루는 해안선 · 주요지점에서 산림경관 조망 용이	· 장천, 청초천, 쌍천, 장사항, 동명항, 속초 해수욕장, 외옹치해수욕장, 대포항 등
도로 및 철도 경관축	· 주요지점에서 산림경관 및 수변경관 조망 용이	· 동해고속도로, 국도 7호선, 지방도 56호선, 동해북부선 (예정), 동서고속화철도 (예정) 등
역사·문화 경관축	· 점적으로 형성되어있어 네트워크화 필요	· 신흥사, 향성사지삼층석탑, 설악동소나무, 오윤환생가, 김종우가옥, 김근수가옥 등

3.3 경관거점 구상

· 자연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자원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자연경관으로서 조망경관을 관리해야 하는 거점과 도로를 중심으로 한 속초시로 진출입하는 경계부 거점

· 주요 건축물, 역사문화자원, 랜드마크 등 인문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자원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점



구 분	경 관 특 성	주요경관자원
역사경관거점	· 산림지역 내 사찰문화재 등 분포 · 조양동유적은 시가지내 위치	· 신흥사, 향성사지삼층석탑, 설악동소나무, 선사유적지 등
문화경관거점	· 설악산, 동해, 청초호 등 · 자연경관자원 인접하여 위치	· 등대전망대, 엑스포타워, 종합운동장 등
산림·녹지 경관거점	· 수려한 산림경관 형성 · 공원 및 녹지는 점적으로 분포	· 해맞이공원, 청대산, 국사봉, 주봉산, 해맞이공원 등
수경관거점	· 호수는 시가지내 위치하며 주요 수변경관 형성 · 해안에 위치하는 거점들은 관광지 및 항구경관 형성	· 청초호, 영랑호, 속초해수욕장, 외옹치항, 대포항, 동명항, 장사항 등
진입경관거점	· 해안가와 산림지역에 분포	· 국도7호선 양양군, 고성군 시계, 동해고속도로 속초IC

3 경관계획

1. 경관권역계획

1.1 기본방향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경관 창출

· 2개 권역에 개성 있는 경관연출과 연속성을 부여

보전	· 산악경관과 수변경관,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 구릉지 경관 보전
관리	· 해안변 및 문화재주변, 관광지주변 경관관리 · 기조성 신시가지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형성	· 자연경관자원으로의 조망경관 형성 · 다양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1.2 세부계획

▮ 생태자연권역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설악산 국립공원의 산림을 최대한 보전 · 청대산, 주봉산,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산악경관을 녹지축으로 설정하고 조망경관 보전 · 도로조성 및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림 및 녹지 복원 · 문화재 밀집지역의 경관 보전
관리	·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상업시설의 경관정비 · 해안선 연계 관광코스의 경관정비 · 상업가로 정비를 위한 지구제 도입 · 산림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저층관리구역 설정 · 문화재 및 관광지에 대한 경관 관리
형성	· 해안선을 연계한 관광요소의 네트워크화, 테마코스의 설정 및 경관 이미지 연출 · 역사문화경관거점간의 네트워크 구성 · 해안과 연접한 가로 및 산림경관자원으로의 조망경관 형성

▮ 도심휴양권역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도심하천 및 구릉지 보호
관리	· 관광지 주변 상업시설 및 해안선 연계 관광코스의 경관정비 · 노후건축물 경관관리 · 수변경관 및 산림경관에 대한 조망가능한 조망지역 경관관리
형성	· 도로정비 및 포켓공원 조성 등을 통한 자연경관자원으로의 개방감 확보 ·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개선 · 주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는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 수변공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관광상품화 · 기 조성 신시가지와의 연계경관 형성

2. 경관축계획

2.1 기본방향

· 설악산 국립공원과 산악경관의 보전, 도심녹지 및 수변경관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축 설정

· 도로의 경관위해요소 정비와 산림경관으로의 조망확보, 철도예정에 따른 경관관리를 위한 축 설정

보전	· 설악산 국립공원 및 주요 산맥, 시가지를 연결하는 산림녹지축의 보전 · 하천 선형의 보전 및 수변 생태계 보전
관리	· 스카이라인 및 산지조망 관리 · 수변공간 및 산지 연접부 경관관리 · 도로변 녹지 및 인공물, 철도예정지 경관관리
형성	· 그린네트워크, 블루네트워크, 역사문화네트워크 형성 · 하천 및 수변공간 접근성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 특색 있는 도로경관 형성



2.2 세부계획

▌산림경관축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속초시의 경관골격을 이루는 자연자원으로서 자연적인 지형·지세를 보전 · 산악 스카이라인 보전
관리	· 보전산지 조망대상으로서의 보호조치 및 관리 · 산림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 및 산지로의 조망 관리 · 개발에 의해 훼손된 사면부 경관관리 · 산지 연접부 및 국립공원 주변 경관 관리 · 자연친화적 소재 도입
형성	· 미시령에서 속초 시가지내로 연계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 · 공공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도입

▌수변경관축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해안생태경관 보전 · 해수욕장 및 해안변, 하천, 호수 조망경관 보전
관리	· 하천주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훼손부 관리 · 해안변 건축물 높이 및 도로 경관 정비 · 항구 및 해수욕장 주변 인공경관 관리 · 해안도로에서 설악산 방향으로의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
형성	· 연안지역 및 호수지역 특색 있는 해안경관 형성 · 쌍천, 장천, 청초천변 친수공간 조성 ·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인공물 조성 유도 · 장사항, 대포항, 속초항 등 항구지역 다양하고 활력있는 친수공간 형성 · 풍부한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

▌도로 및 철도 경관축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주행시점에 따른 다양한 풍경조망 보전 · 도로 및 철도 주변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
관리	· 자연자원과 조화되는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 개발에 의해 훼손된 사면부 경관관리 ·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
형성	· 해안과의 접근성을 높인 해안도로 조성 · 거점시설로의 연결성 강화 · 진입관문성 강화 · 국도7호선, 지방도56호선 등 테마를 부여한 가로경관의 연출 및 교통섬 조성으로 녹지축 형성 · 드림벨트 조성 ·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및 동서화고속철도(춘천~속초구간)의 신규 조성 철도의 경관 형성

▌역사·문화 경관축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조망 보전 · 역사문화자원 및 주변 녹지지역의 보존
관리	· 가로시설물 및 정보안내시설물 등의 통합디자인을 통한 맥락 유지 ·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과의 조화 유도 · 역사문화자원에서 자연경관으로의 조망 관리
형성	· 역사문화자원간의 도로 및 하천변을 활용한 보행로,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네트워크화 및 문화가로공간 기반 형성

3. 경관거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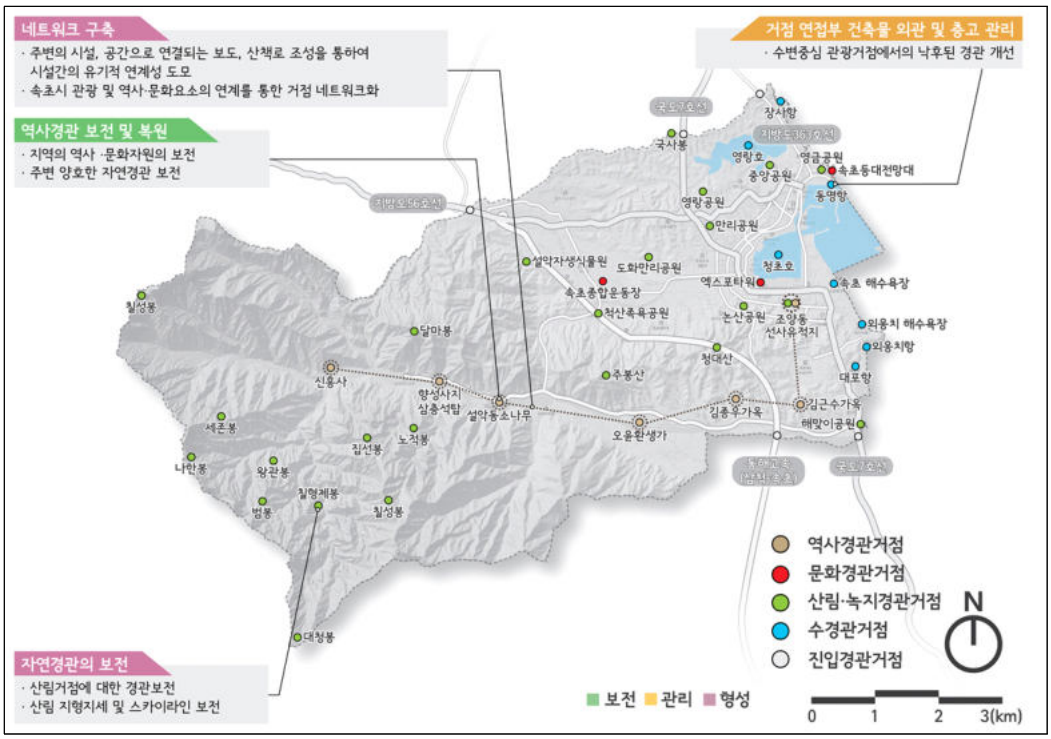
3.1 기본방향

· 자연경관이 우수한 녹지 및 수변거점의 보전

· 거점을 공간화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거점 간 루트를 연결하여 네트워크 형성

보전	· 기존 자연자원 훼손 최소화 및 자연경관의 보전 · 해안 및 산림경관으로의 조망권 확보 · 역사경관 보전 및 복원
관리	· 주요 진출입가로 정비 · 도로 개발로 인한 절토사면 개선 · 거점 연접부 건축물 외관 및 층고 관리
형성	· 진입부 관문경관 형성 · 문화공간, 친수공간 조성 · 네트워크 구축



3.2 세부계획

▌ 역사경관거점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 주변 양호한 자연경관 보전
관리	· 역사문화 경관자원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재정비 · 주변 지역 및 진입로 정비 ·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진입가로 및 연접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형성	· 역사자원의 외부에서의 인지성 강화

▌ 문화경관거점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자연경관으로의 조망권 보호 · 주변 양호한 자연경관 보전
관리	·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재정비 · 주변 지역 및 진입로 정비 · 주변경관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외부공간 및 경계부 경관 관리
형성	· 정체성 강화를 통한 장소성 개선 · 주변의 시설, 공간으로 연결되는 보도, 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성 도모 · 문화행사의 거점 마련 · 속초시 관광 및 역사·문화 요소의 연계를 통한 거점 네트워크화

▌산림녹지경관거점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산림거점에 대한 경관보전 · 산림 지형·지세 및 스카이라인 보전
관리	· 시가지 배후 산림경관에 대한 조망경관관리 · 경관거점 연접부 건축물 외관 및 층고관리 · 개발에 의해 훼손된 사면부 경관관리 · 주요 가로에서의 진입부 및 주변 시설물 인공경관에 대한 관리
형성	· 주요 조망점 발굴과 조망지점 정비 · 훼손된 산림녹지의 복원 · 등산로 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 · 진입부 안내시설 설치 · 자연친화적이고 통일된 인공경관 형성

▌수경관거점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주변 자원과의 연계 ·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고 훼손 시 적극적 복원
관리	· 경관거점 연접부 건축물 외관 및 층고관리 · 수변중심 관광거점에서의 낙후된 경관 개선
형성	· 활력이 넘치는 친수공간 조성 · 해안 및 산림경관으로의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조성 · 인접 경관자원간의 연계방안 마련

▌진입경관거점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산림 및 해안경관 보전
관리	· 주요 진출입 가로 정비 · 도로 개발로 인한 절토사면 개선
형성	· 진입부 관문경관 형성

4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목적

· 경관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경관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 양호한 지역을 보전하고 경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관관리 대책을 마련, 속초시의 양호한 경관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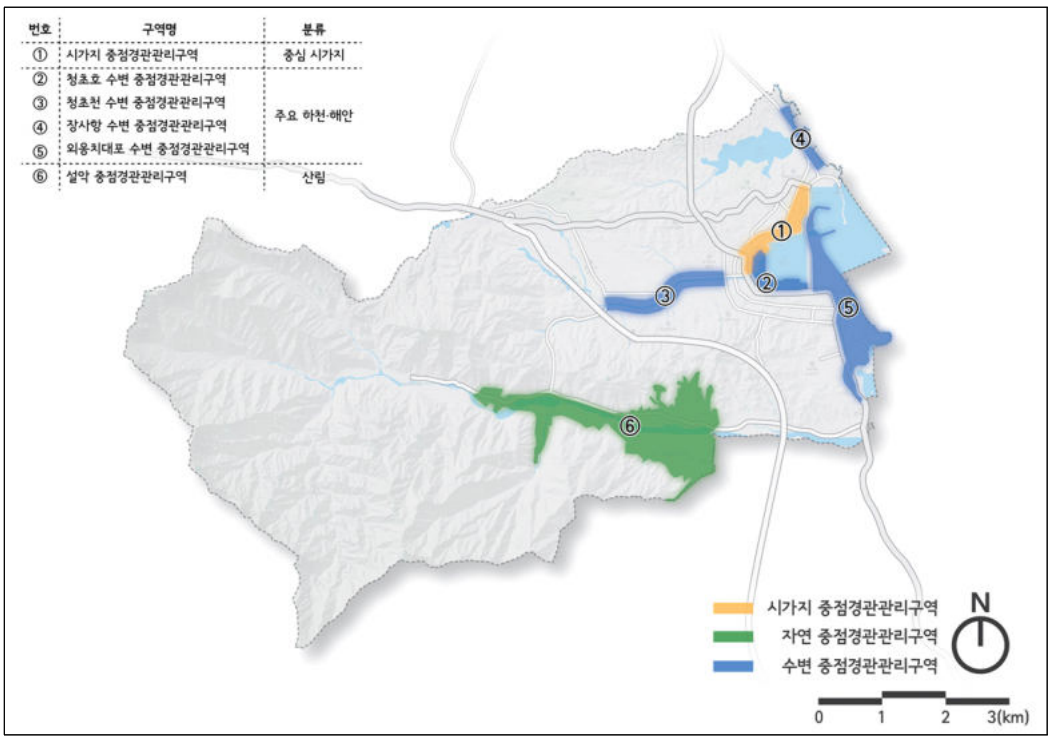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리체계와 중첩하여 설정

· 기본적으로 2015, 속초시 경관성검토서에서 정한 경관중점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설정

· 속초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하천 및 호수, 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원도심의 주요 상업지구인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산림 및 역사문화자원, 수변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설악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함

번호	구역명	분류
①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심 시가지
②	청초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요 하천·해안
③	청초천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④	장사항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⑤	외옹치대로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⑥	설악 중점경관관리구역	산림



1.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특성

· 속초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음

· 속초시청 및 우체국, 수산시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어 속초시민들과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으며 대표적인 가로경관 형성

· 양호한 가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속초시만의 특색이 부족하고, 보도가 좁고 협소하며, 구역 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여 기존 필지의 재개발 시 녹지 확충이 필요함

· 또한, 수산시장 인근은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노후화된 건축물들로 인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추진전략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설악산으로의 조망권 보전
관리	·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 상업지역 옥외광고물 경관관리 · 수산시장 진입부 경관개선
형성	·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 다양한 녹지의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2. 청초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특성

· 영랑호와 더불어 속초시의 2대 호수중 시가지에 입지하는 호수로서 좁고 긴 사주(砂洲)에 의해 격리된 석호임

· 속초항의 내항으로 북측과 동측은 공업지역이며 서측과 남측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남서측에는 엑스포타워와 엑스포 기념관, 철새도래지가 입지해 있으며 공원과 근접하여 상업시설들이 입지해 있음

▌추진전략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철새도래지 생태공간 보존
관리	·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및 경관 개선·관리 · 상업시설 건축물 경관관리 · 해안 및 산림경관으로의 조망경관 관리
형성	·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3. 청초천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특성

· 속초의 3대 하천 중 시가지로 유입되는 유일한 하천으로서 주변 생산녹지지역으로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음

· 하천의 하류부는 청초호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시가지경관이 조망되고 서쪽으로는 설악산맥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가능

· 청초천을 따라 점적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입지하고 있으며, 점차 개발이 확대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초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관리가 필요함

▌추진전략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설악산 및 주변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전 · 주변 양호한 자연경관 보전
관리	· 청초천의 생태환경 관리 · 주거지역 건축물 및 환경 개선
형성	·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4. 장사항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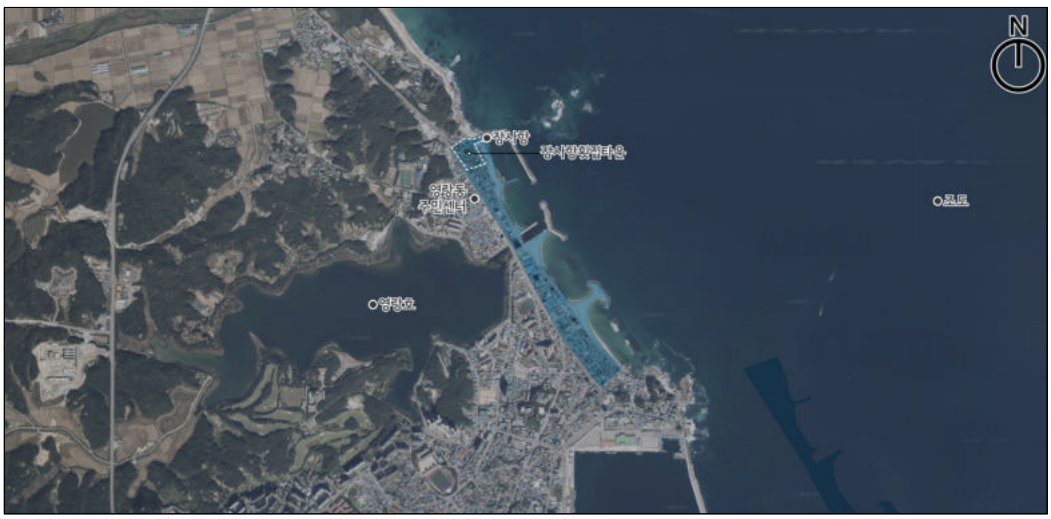
· 사빈해안으로 해안바위가 형성되어 양호한 해안경관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어촌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상업시설들이 해안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 보행경관이 불량하며 친수공간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함

· 영금정과 속초등대가 근접해 있으며 등대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해안도로변 주차구역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짐

▌추진전략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개방감 있는 해안경관 조성
관리	·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관리
형성	· 해안가로 정비 ·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 · 활력있는 수변공간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5. 외옹치·대포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특성

· 남측은 암빈해안 북측은 사빈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지형상 옹기모향으로 동해에 돌출되어 있어 수려한 새안경관을 형성함

·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마을로 동측으로는 사빈해안에 접하고 서측으로는 청초호에 접하고 있음

·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해수욕장이 입지해 있으며, 외옹치 및 조도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형성함

· 해변도로를 따라 주거지 및 상업지, 숙박시설과 하수도사업소 등 다양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추진전략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외옹치 및 조도 등 자연경관의 원풍경 보전
관리	· 수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관리 · 해수욕장 주변 송림 관리
형성	· 해안가로 정비 ·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 · 활력있는 수변공간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6. 설악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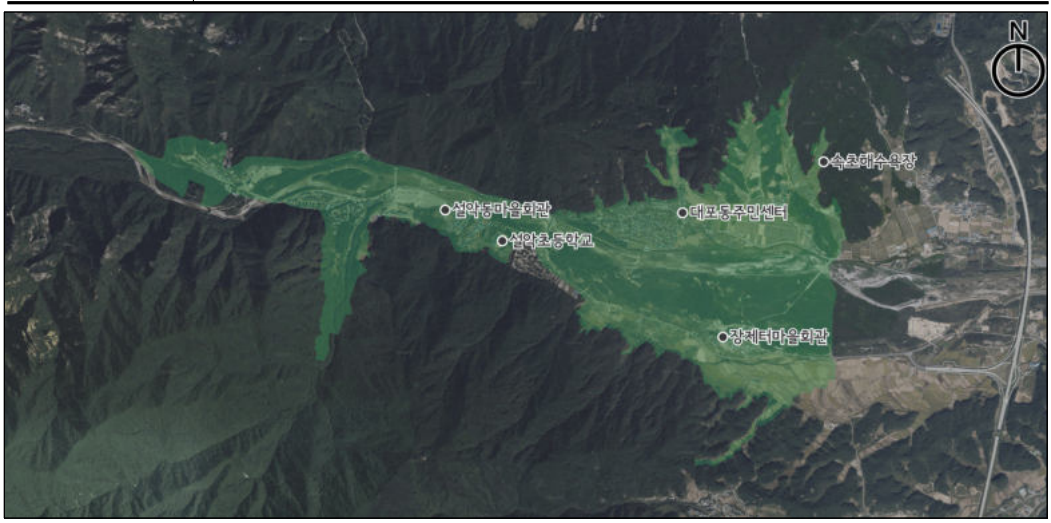
· 강원도 설악권의 관광 핵심역량인 설악산에 위치한 설악산 국립공원해제 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로서 밀집마을지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 설악산의 산림경관과 계곡형 하천인 쌍천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설악동 소나무, 학무정, 오윤환선생 생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입지해 있음

▌추진전략

구 분	세부전략
보전	· 설악산 및 주변 산지, 하천으로의 조망경관 보전 · 자연식생을 통한 종의 보전과 생태계 복원 · 진입경관의 양호한 자연경관 보전
관리	·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 · 주변 도입시설에 대한 경관이미지 제고 · 역사문화 경관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 공공시설 및 안내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 건축물 높이 규제 및 외관 관리
형성	· 하천변 다양한 서식환경 조성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5 유형별 가이드라인

1. 산림녹지경관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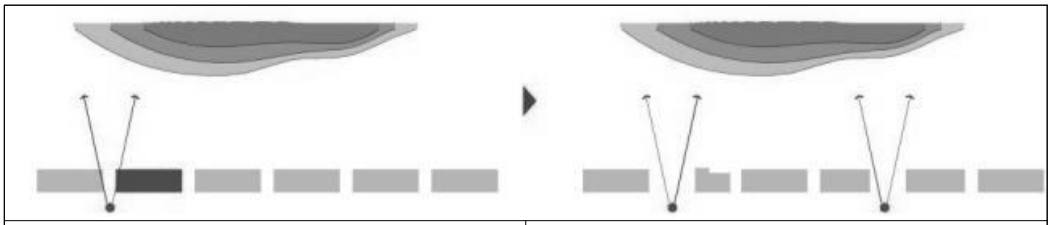
1.1 기본목표

-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산림경관의 절대적인 보존과 조망권 확보
- 개발만이 아닌 이용·보존, 주변 산림축과 연계성 있는 산림 조성
- 속초시의 경관특성을 반영하고, 부각시키는 산악 스카이라인 보존
- 동물의 서식공간을 감안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녹지계획 수립
- 토종식생의 식재를 통한 종의 보전과 식물 생태계 복원
- 산림녹지의 미적 기능과 함께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프로그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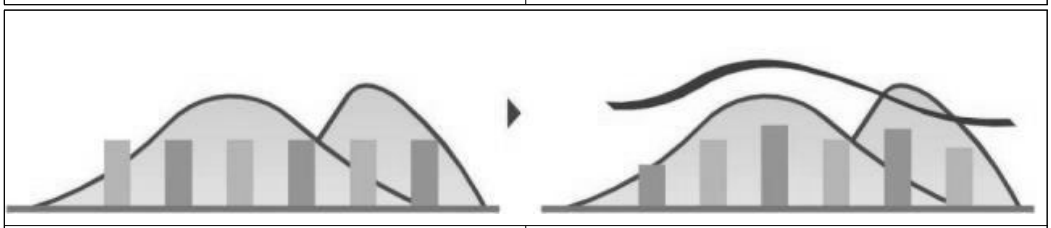
1.2 공통 가이드라인

▮ 자연경관으로의 조망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및 배치 계획 수립

- 산지가 배후경관을 형성하는 경우, 산지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능선과 조화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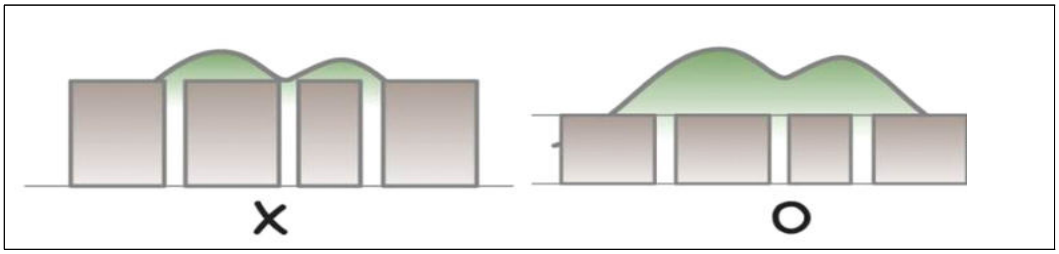


조망확보 미비	산림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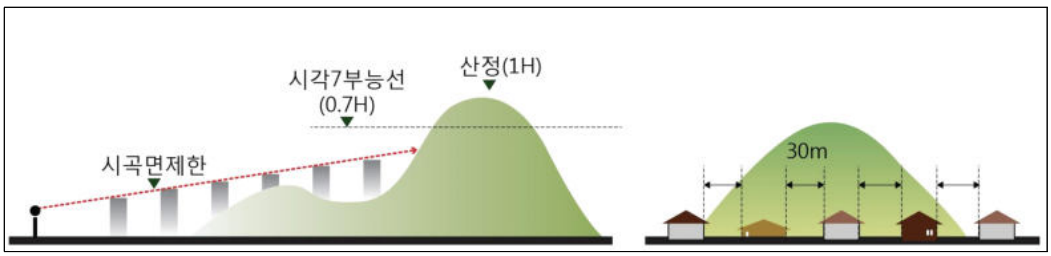
배경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배경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 규모는 배경산의 7부능선 이내로 제한하여 산림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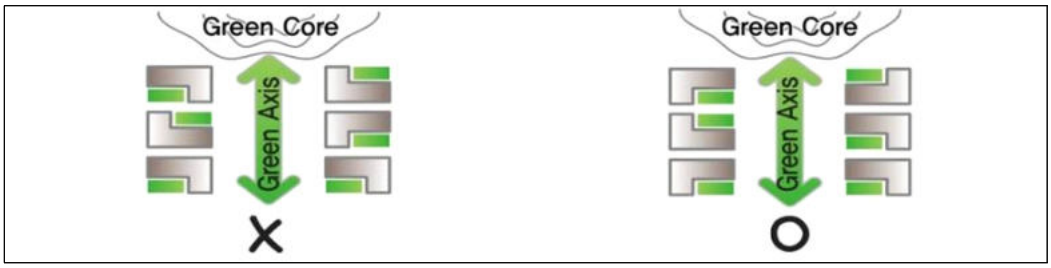


· 산지의 7부 능선에서 산정까지의 산림면에 대한 조망경관 보전

· 조망경관 보호를 위해 입면차폐도 기준(30m이상) 적용하여 위압감 감소



· 대지 내 공지는 녹지연결축 변으로 집중하고, 녹화하여 녹지공간 확보 및 녹시율 증대



▌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절·성토면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구릉지에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저층이나 테라스하우스의 형태로 배치하여 산지와 동화되는 형태로 계획함

· 옹벽설치 시, 절토면적과 높이를 최소화 하고, 자연석, 식재공간 연계 등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함

1.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2.1 기본목표

· 해안선, 송림, 백사장 등 양호한 자연경관요소의 보존과 해안경관과 육상경관의 연계성 확립

· 해안경관 매력 향상과 산악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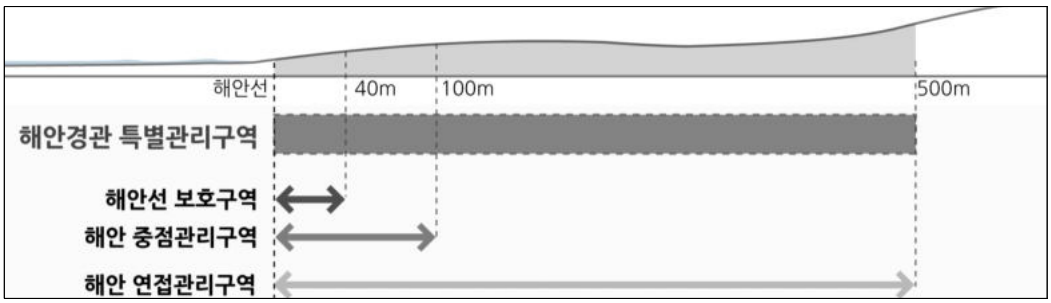
· 항구, 구릉녹지, 해수욕장, 석호 등 속초시만의 특색 있는 해안경관 조성

2.2 공통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및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 준수

·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은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

·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로 구분하여 관리



▮ 해안선 보호구역

· 개발 및 건축물의 신축 시 최대한의 이격거리 확보

· 이격된 공간은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광장 등 공공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조성

· 송림 및 사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공간 조성

▮ 해안 중점관리구역

·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개발 지향

·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의 높이 제한

· 대지 내 전면공지의 방향은 해안방향으로 조성

· 외부공간은 차량위주의 공간이 아닌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 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을 확보

· 건축물의 높이·배치·형태·지붕·색채·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 해안 연접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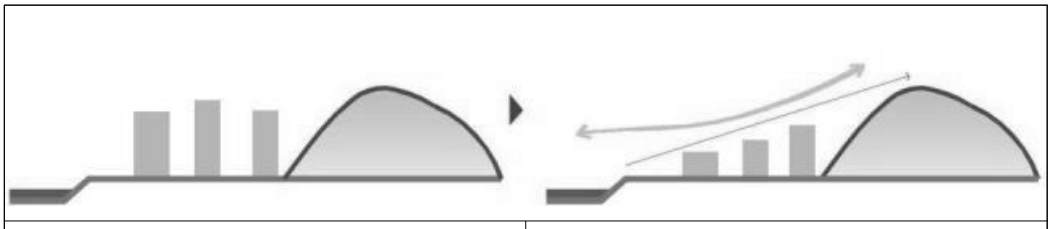
·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한 중층 이하의 개발 지향

· 해안의 배후지역에서 양호한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경우 조망대상에 대한 시곡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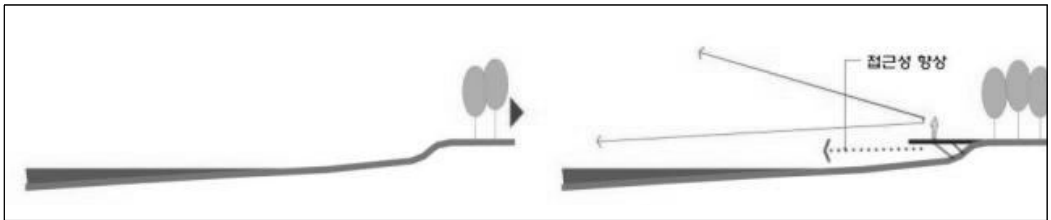
· 배후지역이 산지의 경우 5부 능선까지 시곡면 규제

· 공공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해안으로의 접근성 확보

· 구역 내 건축물의 색채·지붕형태·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



해안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해안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기존 해안경관	해안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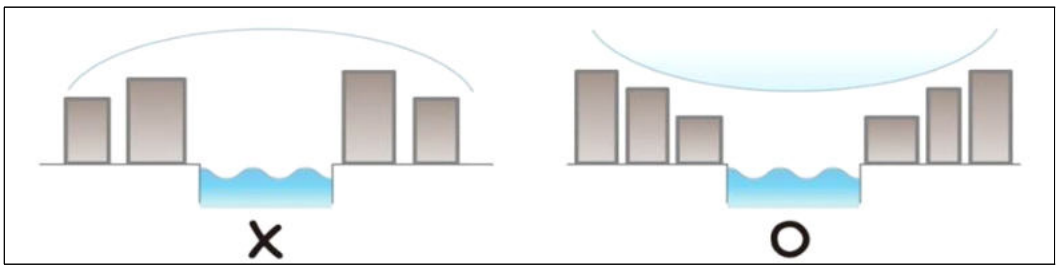
1. 하천 및 호수경관 가이드라인

3.1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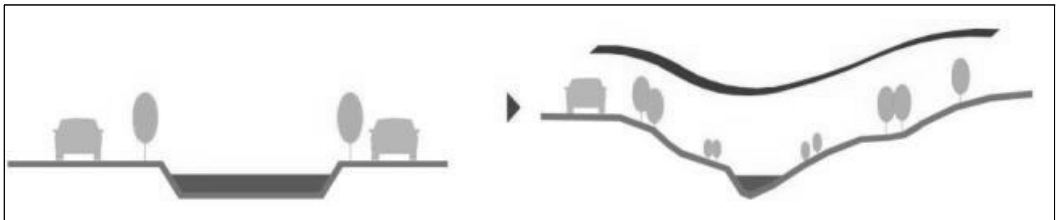
- 천혜의 자연경관요소를 보호·육성하고, 친수성을 도모하여 도시민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함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자연하천경관을 창출함
-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로서 자연과의 접촉 장소에 대한 보전과 재생
- 생태적 기반의 복구, 환경공생을 위한 생물서식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민과 탐방객에게 도심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환경기능과 이수, 치수 기능 등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는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추진함
- 수경관, 공원녹지, 역사문화경관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일체화된 축을 형성함

3.2 공통 가이드라인

- 수변을 중심으로 저·중·고층 형태로 계획하여 오목한 스카이라인(U자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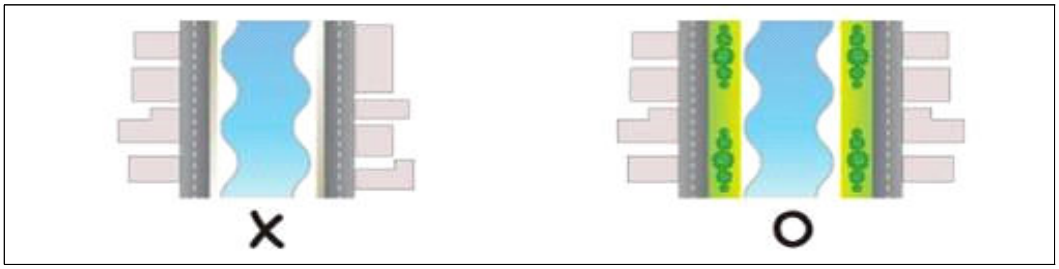


- 하천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고려



하천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하천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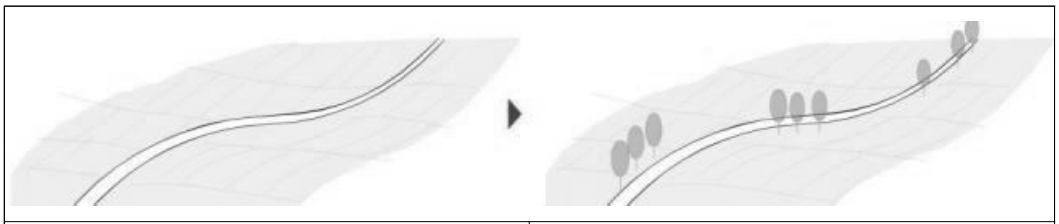
· 인공성 완화를 위해 하천변 완충녹지를 도입하고, 통과형 도로는 하천으로부터 이격 배치



· 수변에 면한 공지는 수변을 따라 보행로가 연속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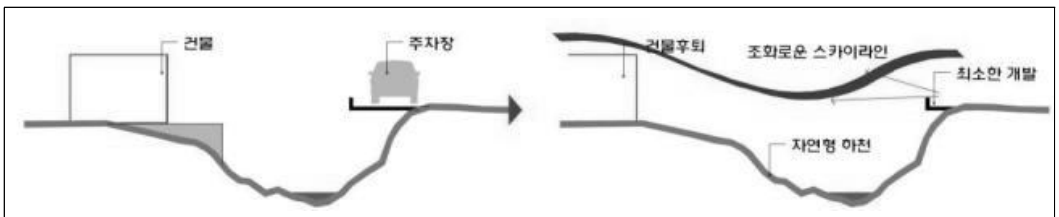
·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변으로 식재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설비, 적치물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성

· 구릉지 및 하천경관 생태적 연속성 확보



구릉지 및 하천경관	생태 코리더 조성(연속성 확보)

· 하천변 오픈스페이스는 친환경하천으로 조성



기능위주의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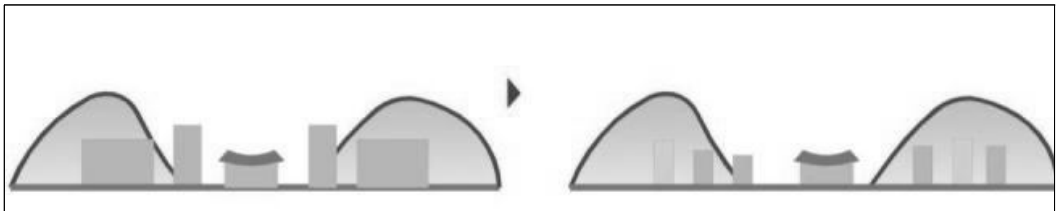
1.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

4.1 기본목표

- 역사적 건축물과 장소의 보전, 특히 전통적 집단건조물 주변의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방안 강구
- 주변지역으로부터 역사경관에 대한 조망 확보와 주변 배경의 보전 및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지표물로서 효과적으로 부각되도록 함
- 무명의 역사자원 발굴과 역사·문화자원의 공원화함
- 역사·문화경관 진입부의 접근성 확보 및 진입로 정비계획을 통한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향상시킴
- 강원도종합계획, 시의 관광문화·사적지 보존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함
- 역사·문화의 현장에 얽힌 전설이나 유래 등의 정신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살리도록 함
- 수경관, 공원녹지체계 속초 8경과 연결체계를 갖도록 함
- 역사·문화경관이 지역의 인물, 지역특산품, 음식, 지역공산품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 수행

4.2 공통 가이드라인

- 주요 역사·문화경관 거점 왜소화 방지



역사·문화경관 거점 왜소화	역사·문화경관 거점과의 조화유도

1. 도로 및 철도경관 가이드라인

5.1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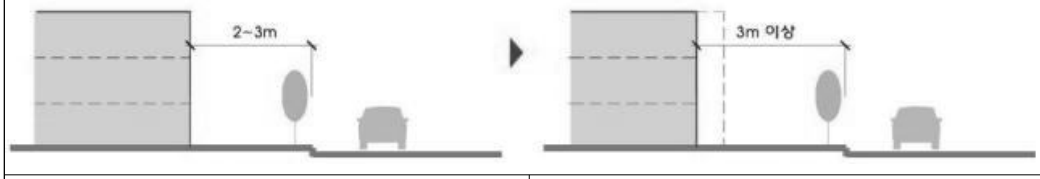
· 도시경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및 철도 경관을 기능적 역할을 바탕으로 개성적이고 인지도 높은 경관 연출

· 보행자 공간은 쾌적성, 안전성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만남, 교류의 장소로 사람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유도하여 도시경관에 활력을 가져오도록 디자인

· 도로경관은 도시의 개성과 이미지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도시 전체의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차량·보행자도로와 인접공간과의 조화로움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인접공원, 수변 등의 접점부분의 활용을 통해 일체화된 경관조성이 중요

5.2 공통 가이드라인

· 보행자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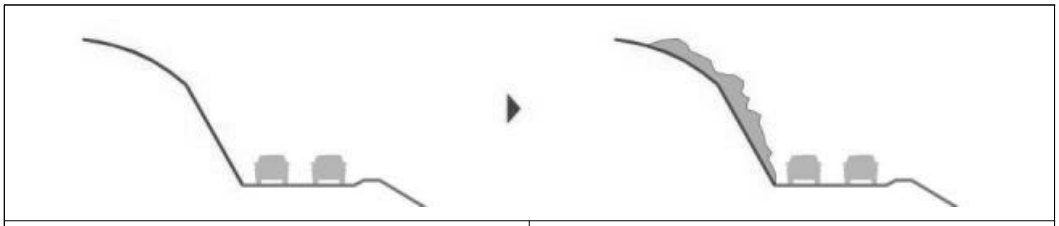
도심지 보행자 공간 협소	보행자 공간 확폭

· 보행밀도가 높은 횡단보도는 차별화 하여 보행 안정성 및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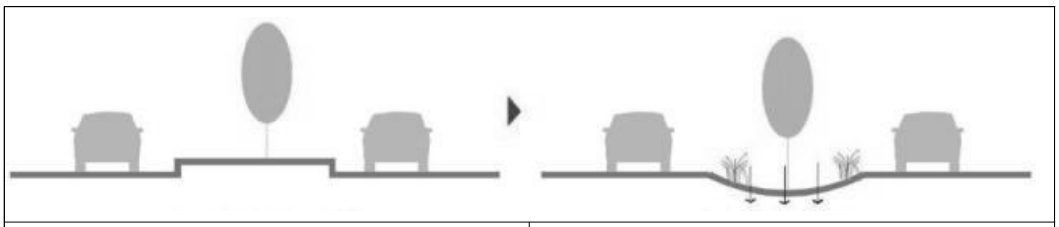
획일적인 횡단보도	보행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 도로조성 시 절·성토면 최소화 및 절·성토 경사면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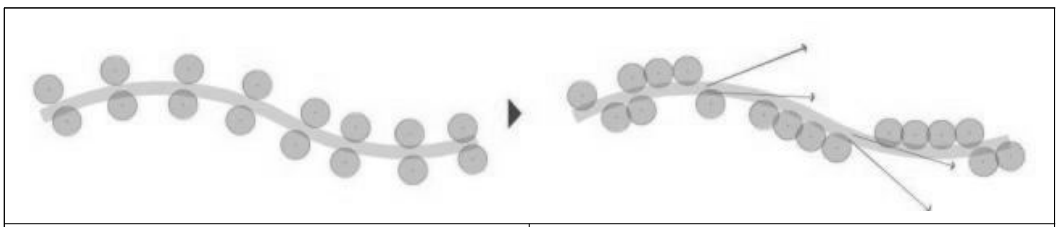
도로조성	절·성토 최소화 및 경사지 녹화

· 도로변 녹지대 조성시 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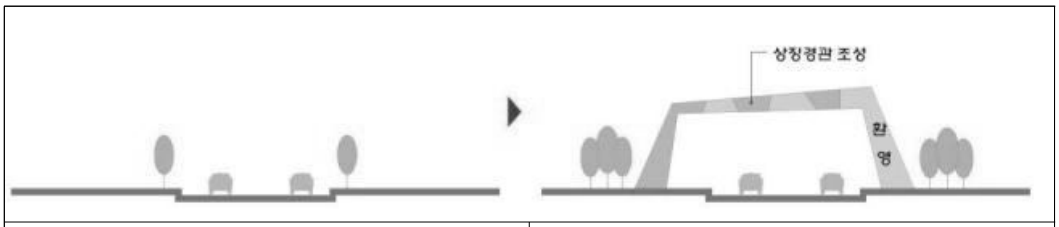
우수침투 불가	우수침투 가능한 녹지대 조성

· 시각적 연속성 확보



현행도로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한 식재

· 주요 결절부 지점 Landmark 요소 도입



특징없는 결절부	특징있는 결절부 형성

6 실행계획

1. 기본방향

· 속초시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 경관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관사업, 경관조례, 경관협정, 경관계획의 수립 등 실행수단을 제시

2. 추진전략

2.1 경관사업

▮ 경관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규제 위주의 경관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차별화 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관 가꾸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

▮ 경관사업의 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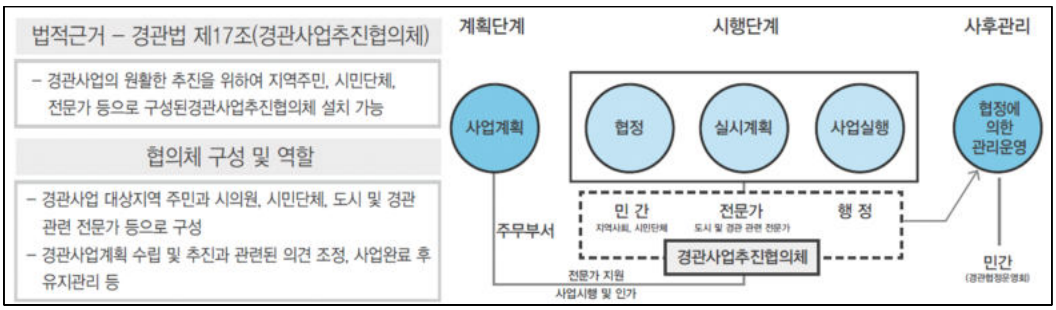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 다양한 유형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관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함

· 현행 경관법에서는 필요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2 경관조례의 보완

· 속초시의 경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따른 「경관조례」의 보완을 유도하고, 경관에 관하여 상세하게 계획하여야 함

· 또한, 실행력을 지닐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속초시만의 특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경관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 경관형성은 넓게 보면 지역가꾸기의 일환이며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관관리의 의무와 책임자적 역할이 행정에 있다면, 경관 형성의 성패와 주도자적 역할은 시민의 시정 참여와 자발적인 실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경관형성 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경관형성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관형성지원 행정의 준비와 실천에 관건이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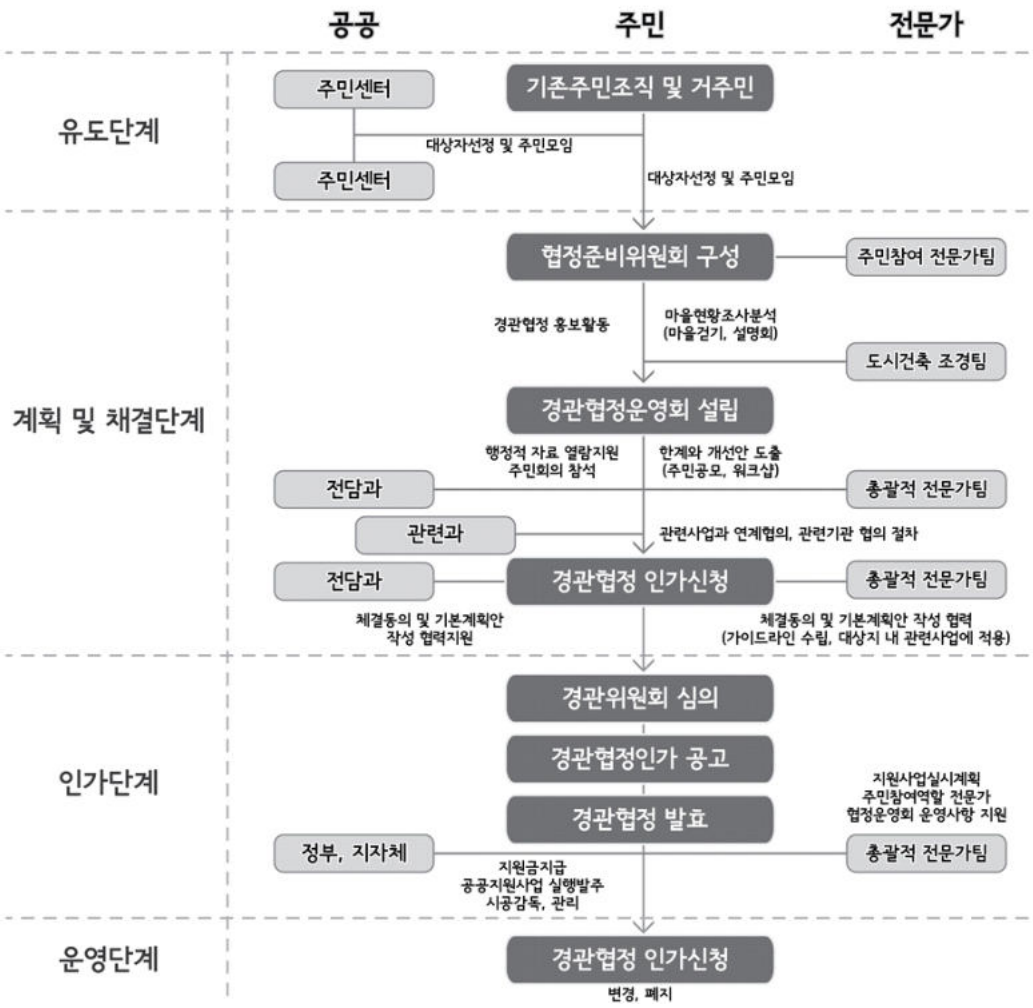
2.3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목적

·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 및 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행정 지원과 전문가의 협력을 유도하여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 경관협정의 추진절차



2.4 경관계획 수립

· 경관의 목적은 자연 및 인공환경의 시각적 질의 향상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보전, 관리, 형성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된 경관을 창조하는 데 있음

· 2017년 말 기준 속초시의 인구는 83,213명으로 「경관법」에서 규정한 경관계획의 의무 수립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속초시의 산림과 하천, 해변 등 천혜의 자연요소가 형성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요소를 활용한 테마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계획 및 특정 경관계획의 수립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자연과 도시, 인간이 보다 밀착된 공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사업자 및 속초시의 시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통된 목표의식을 갖고, 질 높은 속초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기여하도록 함

「경관법」의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경관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VI 공원 및 녹지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현황 및 문제진단
2. 기본방향 및 기준검토
3. 공원 및 녹지계획

제6장 공원 및 녹지계획 (변경)

1 현황 및 문제진단 (변경)

1. 공원 및 녹지현황

1.1 공원 현황

· 2017년 기준 속초시는 설악산국립공원(자연공원) 1개소와 도시공원 43개소, 도시자연공원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은 7.9㎡/인으로 나타남

【표 3-6-1-1】 공원 변화 추이

(단위 : 개소, ㎢, ㎡)

구 분	총계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인당공원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15	48	68.300	1	67.243	46	0.967	1	0.090	11.6
2016	54	68.164	1	67.243	52	0.831	1	0.090	11.7
2017	45	67.993	1	67.243	43	0.660	1	0.090	11.8
2018	47	68.084	1	67.243	45	0.751	1	0.090	10.2
2019	47	68.085	1	67.243	45	0.752	1	0.090	7.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년도, 일몰제 적용전

1.2 동별 공원현황

· 동별 공원지정은 조양동, 교동이 18개소로 면적기준 속초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공원이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표 3-6-1-2】 동별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속초시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총계	개소	41	1	6	3	10	1	8	2	10
	면적	0.578	0.001	0.133	0.148	0.114	0.001	0.099	0.003	0.079
근린공원	개소	7	-	2	1	1	-	2	-	1
	면적	0.521	-	0.129	0.146	0.100	-	0.089	-	0.057
어린이공원	개소	18	-	1		8	1	6	1	1
	면적	0.029	-	0.001	-	0.013	0.001	0.010	0.002	0.002
소공원	개소	8	1	3	2	1	-	-	1	-
	면적	0.008	0.001	0.003	0.002	0.001	-	-	0.001	-
문화공원	개소	6	-	-	-	-	-	-	-	6
	면적	0.011	-	-	-	-	-	-	-	0.011
역사공원	개소	1	-	-	-	-	-	-	-	1
	면적	0.003	-	-	-	-	-	-	-	0.003
수변공원	개소	1	-	-	-	-	-	-	-	1
	면적	0.006	-	-	-	-	-	-	-	0.006

출처 : 202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기준 일몰제 적용후, 2020년

1.3 공원시설 현황

·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은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을 합하여 총 41개소(577,676㎡)가 결정되어 있음

【표 3-6-1-3】 공원시설결정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개 소 수	면 적(㎡)	비 고
합 계		41	577,676	
생활권 공 원	소계	33	558,291	
	근린공원	7	520,877	
	어린이공원	18	29,566	
	소공원	8	7,848	
주제공원	소계	8	19,385	
	역사공원	1	10,847	
	문화공원	6	2,973	
	수변공원	1	5,565	

출처 : 202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기준 일몰제 적용후, 2020년

1.4 유원지

· 속초시의 유원지는 총 6개소로 2,689,695㎡가 있음

【표 3-6-1-4】 유원지 결정현황

(단위 : ㎡)

유 원 지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6개소	2,898,719	
속초해수욕장	조양동	231,748	
청초호	조양동	339,780	
척산온천	노학동	211,031	
설악1유원지	설악동	289,133	
설악2유원지	설악동	807,492	
영랑호	금호동	1,019,535	

출처 : 202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기준 일몰제 적용 후, 2020년

1.5 녹지

· 속초시의 녹지현황은 총 34개소(282,572㎡)로 완충녹지 7개소(205,417㎡), 경관녹지 27개소(77,155㎡)가 있음

【표 3-6-1-5】 녹지결정현황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합 계		34	282,572	
녹 지	완충녹지	7	205,417	
	경관녹지	27	77,155	

출처 :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년

2. 문제 진단

2.1 공원·녹지 면적의 확충 필요

· 2017년 현재 속초시의 공원면적은 설악산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하면 657,345㎡이며, 도시공원의 1인당 면적은 7.9㎡/인으로 OECD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제시한 1인당 공원면적 12.5㎡ 보다 낮음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의 조기 조성 등 공원 면적의 확충이 필요

· 휴식 및 여가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성형 공원 및 녹지 등의 다양한 공간 제공 필요

2.2 녹지와 도시공원과의 연계성 미비

· 속초시의 외곽지역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역과, 산림자원 하천, 호소 등 양호한 자연환경 요소가 산재되어 있음

· 주요 거점녹지와 자연자원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므로 도시 내 주요거점녹지와 외곽산림축 및 하천축의 연계를 통해 녹지네트워크 구축 필요

· 택지개발 등 신규사업시 공원 및 녹지를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계획

· 기존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취락지역에 부족한 생활형 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효율 높이도록 계획

· 시가지 내 광역 및 간선도로망, 철도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축 단절

2.3 녹지시설 확충을 통한 공간구조 개편 및 경관형성

· 속초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부족

· 속초시 전체 및 생활권별 공간구조와 연계되는 공원·녹지체계 관리방안 필요

· 산업공해 및 철도·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공해, 방화 및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를 확충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녹색 환경도시 조성

2.4 다양한 여가수요에 대응하는 공원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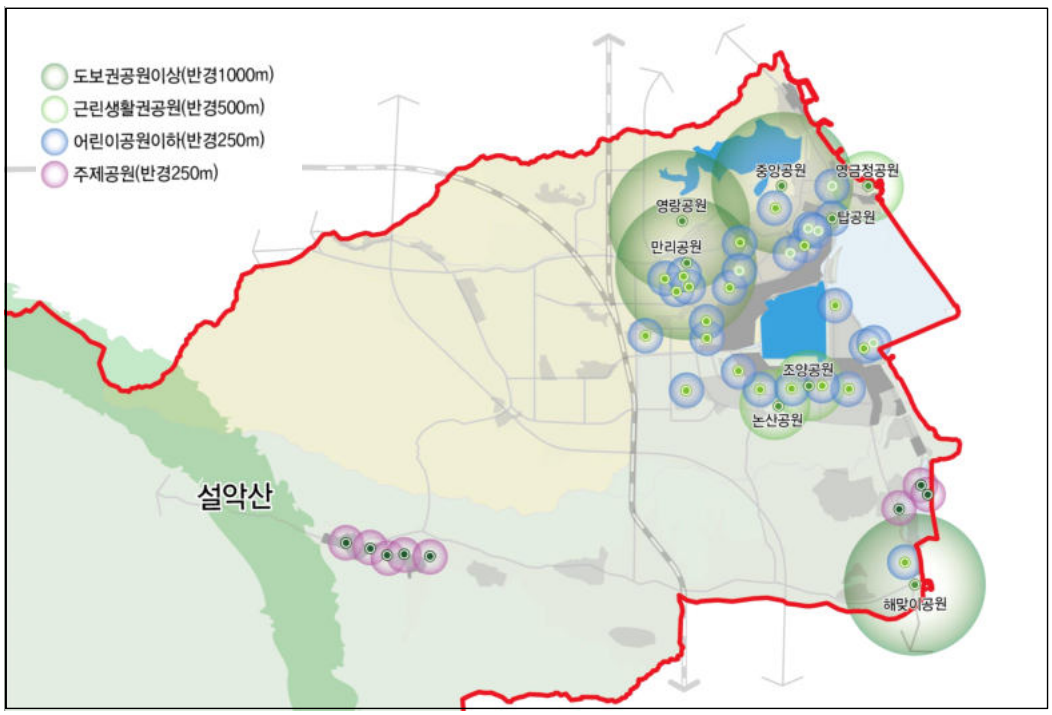
· 공원별 특성화된 주제가 없으며 다양한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원프로그램 부재로 공원이용이 체육, 휴양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

· 일부지역에 공원의 편중과 대규모 위주의 도시공원 설치로 속초시민이 일상생활 속 이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의 부족

2.5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욕구 충족을 위한 관광자원 활용필요

· 도심 관광지(중앙시장, 속초해수욕장 등)에 편중된 관광객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개발필요

【그림 3-6-1-1】 공원 현황도



2 기본방향 및 기준검토 (변경없음)

1. 기본방향

1.1 기본방향

01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공원·녹지공간 확보

-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공원을 생활권별로 배분하며, 추가 면적확보 및 기존에 지정된 공원의 접근성, 시설의 편리성 등 질적 요소의 상향 필요
- 공원의 고유기능을 부여한 공원시설의 다양화(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로 지역 정체성 확립
-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설치로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

02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의 채택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및 유원지 개발에 있어 민·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 수립
- 점차 늘고 있는 공원수요의 현실을 고려한 행정서비스의 집행과 미조성공원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
- 공원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 이에 맞는 계획적 공원 설치계획 수립 필요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등을 조성 시 공간구조상의 녹지축과 연결되도록 계획
  - 공원별 유치거리를 감안하여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03 녹지구성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 조성

- 녹지의 기능성과 이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관적, 방재적 기능의 녹지에서 휴식 등의 활용 가능한 녹지계획 수립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지체계 구성
- 하천변의 녹지 및 주변 산림에 조성된 녹지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조건하에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
- 인간과 식생이 공존하고 배려하는 이상적인 녹지와 공원 조성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기준(공원 확보기준)을 준용
· 도시지역 내 공원 간 연계를 위하여 도로변일 경우 완충녹지를 설정하여 연계성 강화

04 이용자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공원 조성

· 도시공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환경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공원의 이용이 활발해지도록 유도
· 공원의 개발 시 녹지와 주변지역의 문화재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원 이용률 향상과 편리성 도모
· 이용자만의 편리성을 위한 체육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학교운동장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교육적 효과와 방과 후 시설물을 개방하는 등 나무(식생)와 공존하고 배려하는 이상적인 공원조성

05 풍부한 공원, 녹지 확보를 통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 설악산 국립공원과 청초호, 쌍천변 수변공간 및 도시내 공원, 녹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속초시를 포괄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 시가지확산에 대한 환경보존 및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요 녹지축 설정
-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녹지 및 공원을 연계시켜 속초시민들이 어디서든지 녹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중심의 보행체계 구축
-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보전을 위한 녹지생태축 조성

· 공원의 유형, 종류별로 속초시 전체에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확충
· 생활권 공원의 확충과 시설 및 프로그램 정비로 생활과 밀착된 체감형 공원계획으로 공원의 이용률 제고
· 생활권별로 근린공원 배치현황을 고려하여 신규택지 개발시 근린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을 적극 개발
·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변으로 보행공간 녹화 및 주요 시설물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공원·녹지축 형성
· 녹지는 도시지역 위주로 설치하되, 장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수려한 경관 확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외 지역에도 설치 검토

2. 공원 및 녹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2.1 공원

01 도시공원의 종류와 설치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공원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제한없음	500m 이하	10,000㎡ 이상
		도보권	제한없음	1,000m 이하	30,000㎡ 이상
		도시지역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	제한없음	100,000㎡ 이상
		광역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	제한없음	1,000,000㎡ 이상
주제공원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변공원		수변에 접하며 친수공간조성이 가능한 곳	제한없음	제한없음
	묘지공원		정숙하며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	제한없음	100,000㎡ 이상
	체육공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	제한없음	10,000㎡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10,000㎡ 이상
	조례로 정한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02 자연공원의 세분(「자연공원법」 제2조)

-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 도립공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 군립공원 :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 할 만한 지역으로서 지정된 공원
-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2.2 녹지

01 녹지의 지정목적

-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설

구 분	지 정 목 적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02 공공공지

- 공공공지는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공공공지를 조성하되 향후 개발에 대해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성
- 주변도로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변 등에 면 형태로 조성

03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 도로변에 완충녹지는 도로 위계와 교통량을 분석하여 폭원 등의 차등 적용하며 차후 개설 될 동서고속철도 변의 완충녹지를 정주환경 및 경관과 감안하여 지정토록 구상
- 신규 개발 시 기존 시가화구역 사이의 녹지는 보전하고, 녹지 축으로 조성
- 주요 도로, 하천 및 시설물 주변에 경관녹지를 계획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꾀하며, 동시에 주요 오픈스페이스나 녹지를 서로 연결하는 축으로도 활용

【표 3-6-2-1】 녹지 설치기준

구 분		유 형	설치기준	비 고
완충녹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 방지	공해 차단 및 완화	50% 이상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
		재해발생시 피난	70% 이상	
		보안,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 조절	80% 이상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공해의 방지	공해 차단 및 완화	80% 이상	접도구역/보호지역/ 건축제한지구지정
경관녹지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	도시내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 면적이내	
		일상생활의 쾌적성 안전성 확보	도시공원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연결녹지	녹지공간과 일반생활의 동선의 연결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	최소 10미터 이상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의 공공시설 연결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		

출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2.3 기타 개발사업시 공원녹지 확보기준

구 분		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상주인구 1인당면적	개발부지 면적대비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10,000㎡ 이상 300,000㎡ 미만	3㎡ 이상	5% 이상
	300,000㎡ 이상 1,000,000㎡ 미만	6㎡ 이상	9% 이상
	1,000,000㎡ 이상	9㎡ 이상	12% 이상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1,000세대 이상	3㎡/세대 이상	5% 이상
[주택법] 대지조성사업계획	100,000㎡ 이상	3㎡/세대 이상	5%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50,000㎡ 이상	2㎡/세대 이상	5%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계획	-	전체 계획구역에 대해「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10,000㎡ 이상 300,000㎡ 미만	6㎡ 이상	12% 이상
	300,000㎡ 이상 1,000,000㎡ 미만	7㎡ 이상	15% 이상
	1,000,000㎡ 이상 3,300,000㎡ 미만	9㎡ 이상	18% 이상
	3,300,000㎡ 이상	12㎡ 이상	2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사업계획	주거용도	3㎡ 이상	
	전체계획구역	「산업입지개발입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계획	주거용도	3㎡ 이상	-
	전체계획구역	「산업입지개발입지에 관한 법률」의 지침이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	3㎡ 이상	-

주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주2) 본 기준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4 하천변 및 도로변 공원 · 녹지 조성(환경부 가이드라인)

01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 녹지 검토 가이드라인(2015.06월 개정)

▮ 목적

·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도로·철도·하천변 등에 설치하는 공원·녹지의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함

▮ 적용범위

· 사업의 근거법령과 관계없이 사업부지에 '주거용지' 또는 '공장용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 용어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원·녹지'라 함은 다음의 도시공원·녹지와 유효 녹지를 의미

- 도시공원·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 유효녹지 : 공공공지, 광장(일반·경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보행자도로(폭 6m 이상으로 녹피율 30% 이상인 것에 한함) 등 녹지 성격의 시설(단, 대지·상업용지 등 개발용지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조경공간, 학교 등은 제외)

※ '유효 녹지'의 경우 각 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공원·녹지율에서 인정되는 녹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검토 시 적용하여서는 안됨

- '주거지역 등'이라 함은 주거용지 및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 및 시설을 의미함

▮ 공원 · 녹지의 적정성 검토방법

· 검토기준(별표)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검토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지양함

· 검토기준을 만족함에도 환경관리목표(환경기준 등)를 초과할 우려가 상당하거나, 법정 보호종 서식(하천)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른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른 저감방안 예시 : 건축선 추가이격 후 조경공간 조성, 보행자 도로의 식재 확대, 녹지의 다층식재, 영향권(법정보호종) 내 대체녹지 추가확보 등

· 환경적 영향이 경미(방음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현실적 여건상 검토기준을 만족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축소된 공원·녹지(여건상 가능한 최대 폭)를 인정하되, 다른 저감방안을 통한 녹지의 기능적 향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표 3-6-2-2】 도로·철도변 등에 조성하는 공원·녹지의 적정성 검토기준

생활환경 저해시설물		시설 배치형태.규모별	폭
① 철도, 도로변	철 도 변		30m 이상
	고속 국도변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5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3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20m 이상
	간선도로변 왕복8차로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4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	3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15m 이상
	왕복6차로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3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2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방음벽) : 주거지역등	10m 이상
	왕복4차로	도로 : 공원·녹지 : 주거지역등	20m 이상
		도로 : 공원·녹지(마운딩) : 주거지역등	10m 이상
②산업단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주거지역등	산업단지 규모 0.5㎢ 미만	20m 이상
		0.5㎢ 이상 ~ 1.0㎢ 미만	30m 이상
		1.0㎢ 이상 ~ 3.0㎢ 미만	50m 이상
		3.0㎢ 이상 ~ 5.0㎢ 미만	80m 이상
		5.0㎢ 이상 ~ 10.0㎢ 미만	100m 이상
		10.0㎢ 이상	200m 이상
	산업단지 경계의 완충녹지	산업단지 규모 0.5㎢ 이하	10m 이상
		0.5㎢ 이상 ~ 1.0㎢ 미만	15(±5)m 이상
		1.0㎢ 이상	20m 이상
③용도지역간	상업용지와 주거지역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제외	10m이상 또는 15m이상 도로
④하천변	국가하천		20m 이상
	지방하천		10m 이상
	소하천		5m 이상

주1) 주거단지와 도로 사이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할 경우에는 해당 차선의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
주2) 4차선 도로의 경우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적용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도로에 의한 영향의 정도에 따라 별도 판단함
주3) 산업단지에는 5만㎡ 이상의 공장을 포함
주4)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주거지역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폭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공원 · 녹지의 계획방향

3.1 공원 · 녹지공간의 확보

- 기개발지의 부족한 공원·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신규 개발 시 공원·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
- 생활권별 접근성과 환경성, 이용도가 우수한 대표공원을 지정하여 우선 개발
- 하천변 및 시가지 내 자투리 공간의 공원화를 통해 생활권 내 균형 있는 공원·녹지공간 제공

3.2 속초시 녹지축과 조화로운 녹지공간 확보

- 주 녹지 축과 시가지 내부로 연결되는 부 녹지 축으로 구분하여 설정
- 하천변 수변공원 조성 및 생태공원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획일적 공간 발생 억제
- 녹지 축이 단절될 수 있는 주요 도로변 및 국도변 주요 교차지점은 주변 여건에 따라 완충녹지 혹은 경관녹지를 확충하여 녹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여 연계함

3.3 시가지의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생태축 형성

- 공원·녹지체계의 보완을 위해서 설악산의 산림축과 시가지 내부의 녹지축 및 하천변 수변공원, 소생물권 보전 및 복원 등 생태 녹지축 조성
- 인간과 야생동식물의 서식, 생태이동통로 복원·확보 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녹지체계 조성
- 도시 자연경관 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색이 가시화되도록 주변 환경녹화 추진

3.4 녹도의 확대

- 인근 공원·녹지와 연계하는 녹도(Green-way)개념을 반영
- 가로경관의 중요성을 토대로 경관도로 지정 필요
- 점·면적인 녹지간을 선적으로 연결하여 시민의 녹지 접근성 개선

3.5 가로 녹시율 증대

- 가로수, 식수대, 중앙분리대 등 가로녹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느낄 녹지만족도를 상승토록 계획
- 도시 내 주요지역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 집산도로변의 녹시율 향상을 계획하되, 녹시율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

3.6 참여형 도시녹화체계 구축

· 도시녹화에 있어 시민참여는 외부환경에 대한 시민의 지식, 인식, 감성, 환경 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주체자로서의 역할 수행

· 주민, 시민, 사업체의 도시 녹화 참여 유도

- 마을정원 가꾸기(소규모의 녹화사업 지원, 사유건물 녹화 활성화, 담장개방, 생울타리 조성 등) 사유지 공개이용 장려정책 마련

3.7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시행시 공개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완화제도 강화

· 이용행태와 도시건축의 설계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공개공지 조성 유도

- 가로휴게형, 필로티형, 공원형, 광장형, 쌈지형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공간 연출

· 공개공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주체의 명확화로 속초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4. 계획지표 및 추진전략

4.1 계획지표

01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과 상응하는 녹색국토/녹색도시의 실현

녹시율증가	·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내 가로녹지 확보로 도시의 전체적 녹시율을 높여 시민들의 만족도 상승토록 유도
시민참여형	· 생활 속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주민·시민·사업체의 도시녹화 참여 유도 · 상대적으로 관리 및 운영단계가 참여가 가장 용이하므로 공원관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공원의 홍보 등에 지원 필요
자연친화적 개발	· 자연친화적 개발(생태공원, 생물이동통로확보 등)로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다양한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녹지체계 조성

02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방안	·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공원 및 녹지 배치 · 주요 도로, 하천 및 시설물 주변에 경관녹지를 계획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산림녹지축 보전

4.2 추진전략

01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제공

공원녹지 확충	· 기존 공원녹지의 보전 및 미집행 공원의 적극개발 · 신개발지의 공원녹지 용지확충 및 기존 시가지 자투리땅으로 공원용지 확보 · 하천변을 활용한 수변공원화로 친수공간, 보행네트워크체계 구축 · 도보권 내 공원녹지 조성 및 생활권내 공원녹지 균형배치방안 마련
시설배치	· 공원녹지 활용의 극대화(공원시설율 증대, 시설수준 향상) ·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공원·녹지 유형별 관리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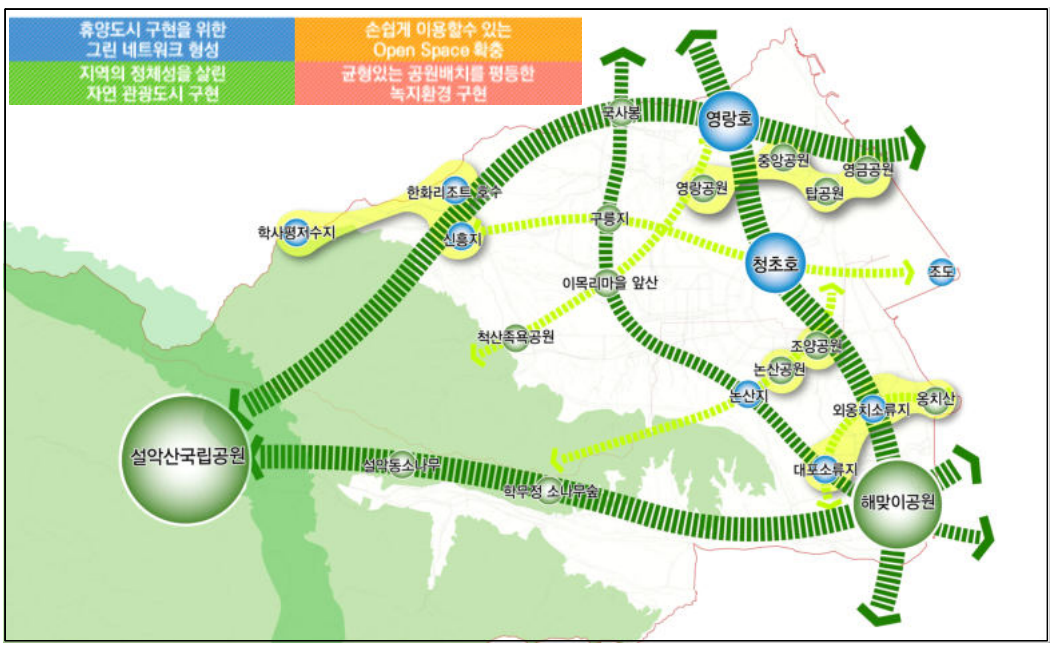
02 생태적 공원녹지 체계의 구축

Green Network	· 산악축 및 공원녹지간 연결로 속초시를 가로지르는 공원녹지축 형성 · 생태적 회랑공간 기회요소 발굴
생태녹지 조성	· 생태자연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물서식처 마련

03 함께 만드는 공원녹지

주민참여	· 마을정원 가꾸기 등 소규모의 녹화사업 지원 · 유휴부지를 활용한 "10분 동네 공원 만들기" 추진
제도기반 조성	· 민간녹지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녹화지원 및 장려제도 도입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위원회 도입

【그림 3-6-2-1】 공원 · 녹지 네트워크



4.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검토

0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녹지) 설치에 관한 검토

▮ 미집행 도시공원·녹지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동안 미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됨
  - 2020년 7월 최초실효(일몰제) 시행 이후 각 시설별 실효시기 도래시 자동실효
·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성 시가지역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 확보된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실효성 있는 시가지 공원·녹지 확보

02 관리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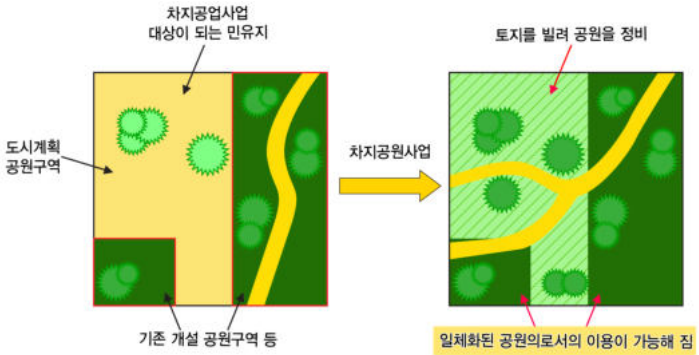
▮ 녹지활용계약 및 임차공원제도

· 녹지활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과 녹지확충을 위해 도시지역 내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부족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300㎡ 이상 면적의 단일 토지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 우려가 큰 토지
  -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녹지활용계약 추진 적합지역
  -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 향후 매입을 가정한 계약이므로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 지역 조성우선(순위 높은 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기는 자연성이 부족한 지역 민간공원으로 하기는 규모가 작은 지역 보전녹지 등의 추진이 어려우나 녹지 필요성 높은 지역에서 가능함
· 토지매입을 통한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원기능 유지를 새로운 규정과 제도 개발이 필요함
·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 등의 비용지불 계약 성격의 제도를 통해 한시적 녹지유지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임차공원 개념의 차지공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토지매입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
- 2004년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임차공원제도를 운영중
- 대차계약 종료로 공원의 토지부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폐지가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되어 기간한정 도시공원 설치가 가능함
- 원상 복귀 후 반환 토지소유자 동의 연장가능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미부과 상속세 평가액의 감액

【그림 3-6-2-2】 일본 임차공원(차지공원) 방식



▌도시공원조성 우선순위시스템

·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인구, 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도시여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도시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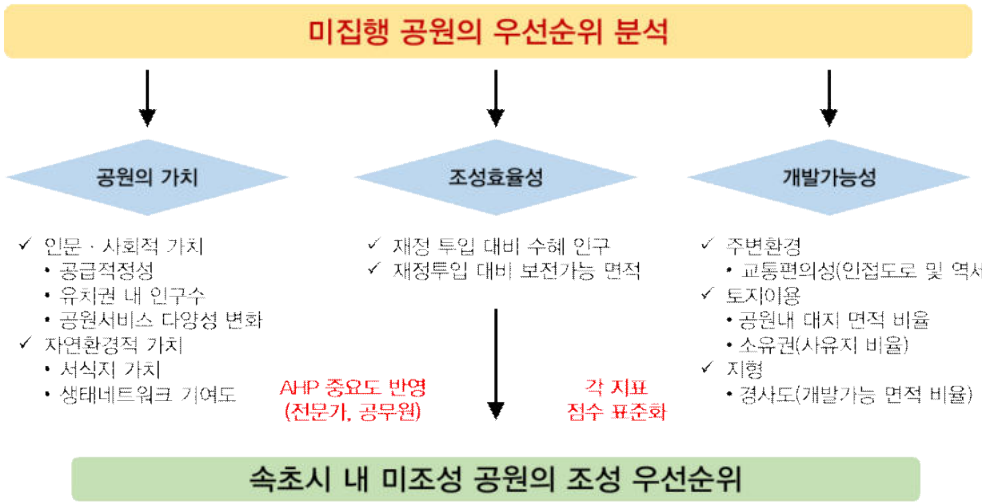
· 우선순위 분석 대응방안별 적합성 분석 시 군의 정책의지 및 현황반영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됨

- 모든 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차적으로 조성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각 공원 조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도출함
- 실질적인 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녹지 민간공원 녹지활용계약 등 각 미집행 도시공원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함
- 시군의 정책의지와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각 시·군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우선순위 도출방법

- 미집행 공원 중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공원의 가치를 평가함

【그림 3-6-2-3】 미집행공원 우선순위 분석방법



· 우선순위는 각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며 결과는 속초시의 의지와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표를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하여 우선순위 도출 가능

【표 3-6-2-3】 조성 우선순위 분석 방향성 및 지표

구 분	공원의 가치	조성효율성	개발가능성
분석의 방향성	· 대상 미조성 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량화함 · 인문사회학적 측면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지표를 선정 · 다양한 지표 중 정량화를 통한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	·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 · 투자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한 효율성을 평가함 · 조성비용 중 토지매입 예산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 인구와 우수한 자연을 보전 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함	· 대상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보전압력보다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함 · 개발압력이 높은 미조성 공원지역 조성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함
분석 지표	· 공급적정성 · 공원 유치권 내 인구수 · 공원서비스 다양성 변화 · 서식지 가치 ·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 재정투입 대비 수혜인구 · 재정투입 대비 보전가능 면적	· 교통편의성 · 공원 내 대지 면적비율 · 소유권 (사유지 면적비율) · 경사도 (법적 제한 경사도 이하 지역의 면적비율)

03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정부 대책

▮ 지방채 발행 여건 개선

·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확대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 허용

–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 추진

–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이하 공급 등

·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하여 추진

–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 완화

–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 최소화

– `19~`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기존 지원범위 내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

·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

▌토지은행 활용 제고

·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

·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 공원 조성

▌공원조성절차 단축

·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

·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 별도 마련

· 장기미집행공원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 필요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합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 조성 유도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 등 공원조성 노력도 반영

– 해외사례 : 영국 정부는 녹지공간을 평가해 우수 공간에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 GFA) 수여 →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도 영국의 GFA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는 '20.7.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별첨)에서는 공원해제지에 대하여 공원이용지역 및 개발적성으로 선별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시

· 따라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아니더라도 도시공원으로 이용되던 지역이 해제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2-2, 2-2-3, 2-2-4를 충족하는 근린공원 해제지 등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에서 공원으로서의 의미와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도시공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서는 녹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5절(녹지지역)의 보전녹지지역 항목에서는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

· 관련 법률 및 지침에서는 결과적으로, 공원시설의 관리방안 중 하나의 요소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보전녹지지역으로의 변경으로 제시

▌용도지구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2018.03.14.)에서는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경관지구를 제시

3 공원 및 녹지계획 (변경)

1. 공원계획(변경없음)

1.1 공원계획 반영 여부

·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지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 생활권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조성

【표 3-6-3-1】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공원계획 반영여부

구 분		기 정		도시관리계획	변 경		반영 여부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1	884,997	감)307,321	41	577,676		
생활권 공원	소 계	42	776,640	감)218,349	33	558,291		
	근린공원	9	726,971	감)206,094	7	520,877	○	
	어린이공원	26	42,067	감)12,501	18	29,566	○	
	소공원	7	7,602	증)246	8	7,848	○	
주제 공원	소 계	9	108,357	감)88,972	8	19,385		
	역사공원	1	2,973	증)7,874	1	10,847	○	
	문화공원	6	10,847	감)7,874	6	2,973	○	
	수변공원	2	94,537	감)88,972	1	5,565	○	

출처 :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년

1.2 지표설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경우 1인당 3㎡이상 확보해야함

· 공원확충은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시 관련법을 고려하여 법상 의무 확보비율이상의 공원 확충을 유도

· 2040년 1인당 공원면적은 면적의 6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용지가 부족한 속초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9.0㎡/인으로 설정

- 세계보건기구 1인당 권장 녹지면적 : 9.0㎡/인 이상

· 도시공원은 목표연도 2040년까지 1인당 9.0㎡/인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0.818㎢이 필요하며, 현재 공원면적은 0.578㎢로 0.240㎢ 부족

【표 3-6-3-2】 공원유형별 원단위에 의한 수요 및 부족량 산정

(단위 : ㎢)

구 분	면적 (㎡/인)	수요량 (2040년 기준)	기존공원		부족량	
			지정면적	조성면적	지정면적	조성면적
도시공원	9.0	0.818	0.578	0.578	0.240	0.240

출처 : 속초시,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1)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한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임

주2) 지정면적은 속초시 전역에 대한 공원계획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공원(5만㎡이상) 및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결정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1.3 공원조성방안

· 인구증가에 따라 2040년까지 추가 확보하여야 할 도시공원면적은 0.240㎢ 이상임

- 도시관리계획상 기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을 최소화
- 미조성 공원은 사업우선순위 선정 및 조속한 집행을 통해 속초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및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발계획 도시공원을 확보 (시가화예정용지 사용물량 중 10% 이상)

·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 확보시 녹지축과 더불어 공원의 유형별 기능, 유치권, 이용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 공원 조성의 효율성을 제고

·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은 속초시의 재정 및 장기미집행 시설,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조성

【표 3-6-3-3】 단계별 공원조성계획

(단위 : 인, ㎢)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획인구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도시공원	0.578	0.617	0.702	0.775	0.818
근린공원	0.521	0.521	0.552	0.605	0.625
어린이공원	0.030	0.042	0.062	0.072	0.082
소공원	0.008	0.020	0.040	0.050	0.060
주제공원	0.019	0.034	0.048	0.048	0.051
1인당도시공원면적(㎡/인)	6.9	7.2	8.0	8.6	9.0

주1) 공원조성계획은 사회적증가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급

【표 3-6-3-4】 단계별 공원공급 물량

(단위 : 인, ㎢)

구 분	합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도시공원	0.240	0.039	0.085	0.073	0.043
근린공원	0.104	0.000	0.031	0.053	0.020
어린이공원	0.052	0.012	0.020	0.010	0.010
소공원	0.052	0.012	0.020	0.010	0.010
주제공원	0.032	0.015	0.014	0.000	0.003

주1) 공급물량은 현재 결정된 공원비율에 대한 추세연장을 반영하여 산정한 지표로 현황 여건과 목적에 따라 공원의 성격을 조정하여 유동성 있게 공급

1.4 공원공급계획

▌청대산 근린공원



연번	공원명(가칭)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
1	**청대산공원**	근린공원	조양동 산 324-34	0.053

▌외옹치 근린공원



연번	공원명(가칭)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
2	**외옹치공원**	근린공원	대포동 753-1	0.031

· 2040년 1인당 공원면적 9㎡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공원 면적 0.240㎢ 중 역세권개발에 따른 해안경관의 보전과 설악산으로부터 시가지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연결을 위하여 근린공원과 청초천을 따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수요에 따라 단계별 확보

· 그 외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등 중소규모의 공원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사용한 신규개발 또는 기존 시가지내 재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시 인구 1인당 9㎡를 충족 할수 있도록 관리

- 공원필요물량 : 0.240㎢
- 공원공급계획 : 0.084㎢
- 미계획물량 : 0.156㎢
- 시가화예정용지 1.226㎢ 중 10% 이상 : 0.123㎢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으로 공급)

1.5 공원계획

▮ 공원의 확충

· 목표년도 2040년 1인당 공원면적 9㎡/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성 시가지정비 및 개발사업시 공원을 추가 확보하며,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 시 공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함

· 공원 확충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소규모 부지매입을 통해 도시 소공원(쌈지공원)을 조성

· 어린이공원 공급이 매우 열악한 지역의 주택지는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소규모 부지로 확보하여 소공원으로 조성

· 주제공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 계획하여 이용권 확대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지정 및 다양한 위탁관리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시설의 투자재원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준비

▌ 미조성 공원의 신속한 개발

· 기 결정 된 도시공원의 적극적 개발을 유도하되, 생활권별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민간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속초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

▌ 관광자원으로 공원화

· 풍부한 녹음과 자연, 편리한 이용, 여유로운 공간의 구상, Barrier-Free Design의 도입으로 다용도 이용공간으로서 조성

· 어린이 놀이기능의 상상공간 및 창의력과 호기심 유발공간으로 조성 놀이의 흥미 유발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원테마상품의 개발로 지역 상징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여가시설의 확충

· 하천변 녹화계획을 통해 연속적인 녹지 흐름을 유지하고 하천과 구릉지, 공공장소와의 결절점에 친수공간 조성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 보행계획 수립

· 도시공간에서 가로의 공원화,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 확충 및 여가시설공간(캠핑장, 피크닉장 등) 조성

▌ 시민 참여형 공원 관리

· 내 집 앞의 공원을 지킨다는 취지로서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청결활동, 안전관리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우리공원 지킴이'(가칭) 운영

· 도심 속에서 삶의 여유와 쉼터가 되어주는 공원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공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 발견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행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1.6 공원 결정(예정)현황

【표 3-6-3-5】 공원 결정(예정) 현황

구 분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
합 계			-	43개소	661,675
소 계			근린공원	9개소	604,877
1		영금공원	근린공원	동명동 1-1임 일원	38,724
2		만리공원	근린공원	교동 798-3임 일원	145,591
3		영랑공원	근린공원	금호동 산278임 일원	100,113
4		중앙공원	근린공원	동명동 산60-1임 일원	90,591
5		조양공원	근린공원	조양동 1529사 일원	23,115
6		논산공원	근린공원	조양동 산278임 일원	66,203
7		해맞이공원	근린공원	대포동 835임 일원	56,540
8	신규	청대산공원	근린공원	조양동 산 324-34	53,000
9	신규	외옹치공원	근린공원	대포동 753-1	31,000

출처 : 202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기준 일몰제 적용후, 2020년

구 분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
소 계		어린이공원	18개소	29,565
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926-6 일원	1,500
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944 일원	1,499
3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907-6 일원	1,518
4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노학동 152-1 일원	1,090
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961-2공 일원	1,665
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972공 일원	2,838
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양동 502 일원	1,638
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양동 1499-1 일원	1,588
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양동 1501-1 일원	1,590
10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양동 1511-1공 일원	1,699
1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양동 1536공 일원	2,094
1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조양동 산27-7 일원	1,500
13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902 일원	1,500
14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799-26 일원	1,507
1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동 800-34 일원	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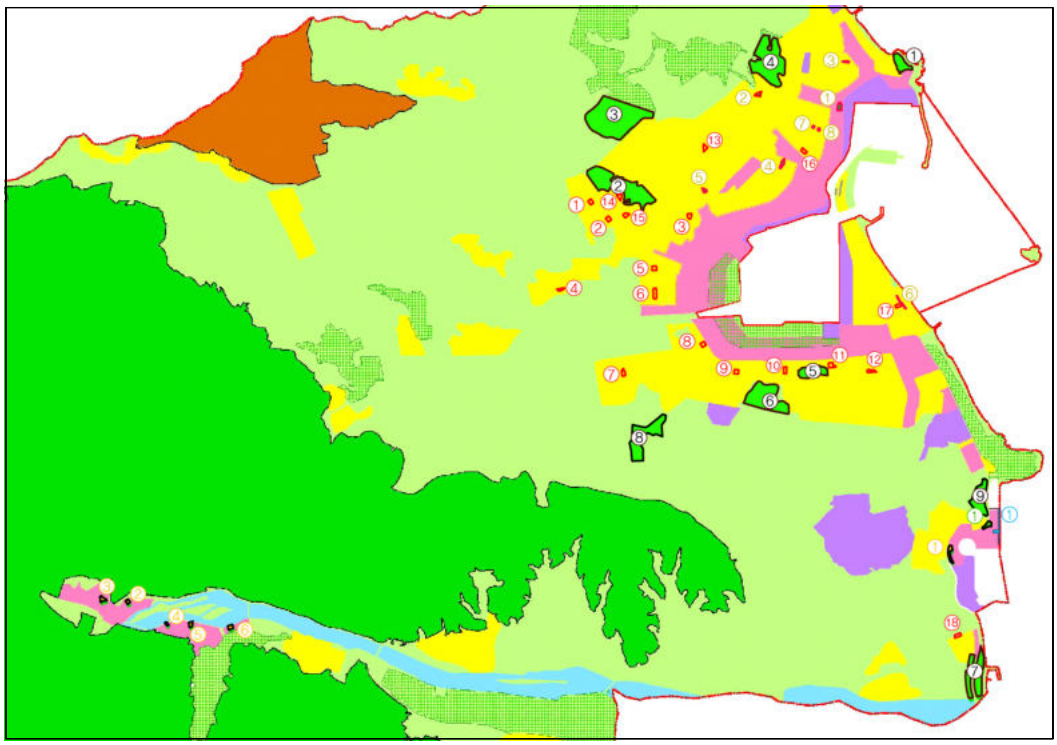
출처 : 202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기준 일몰제 적용후, 2020년

【표 3-6-3-6】 공원 결정(예정) 현황

구 분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
1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중앙동 493-123 일원	1,526
1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청호동 433-3 일원	1,500
1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대포동 산83-3 일원	1,801
소 계		소공원	8개소	7,848
1	소공원	탑공원	동명동374 일원	2,459
2	소공원	소공원	금호동489-53 일원	246
3	소공원	영랑소공원	영랑동323 일원	610
4	소공원	금호2소공원	금호동488-117 일원	1,860
5	소공원	교동소공원	교동627-255대 일원	1,080
6	소공원	청호2소공원	청호동1335-14대 일원	780
7	소공원	중앙소공원1	동명동450-295 일원	370
8	소공원	중앙소공원2	동명동464-10 일원	443
소 계		주제공원	8개소	19,385
1	주제공원	수변공원	대포동 937-1공 일원	5,565
2	주제공원	역사공원	대포동 매립지 일원	2,973
3	주제공원	문화공원	대포동 966공 일원	3,890
4	주제공원	문화공원	설악동 8-7 일원	1,145
5	주제공원	문화공원	설악동 22-4 일원	1,934
6	주제공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6 일원	744
7	주제공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34 일원	1,503
8	주제공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91 일원	1,631

출처 : 202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기준 일몰제 적용후, 2020년

【그림 3-6-3-1】 공원 계획도



2. 유원지계획 (변경)

2.1 기본방향

- 속초시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
-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 고려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연결
-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고속국도나 지역 간 주간선도로에 교통시설이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
- 수변에 위치할 경우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수변에 위치할 경우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으며,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장소에 계획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유원지의 규모는 1만㎡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 관광기능의 도입으로 관광객의 위락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시설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각 생활권 특성에 맞게 개발 유도

·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면서 속초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 공급을 위한 공간조성

- 유원지 1개소 신설 : 장사동 유원지 (A=148,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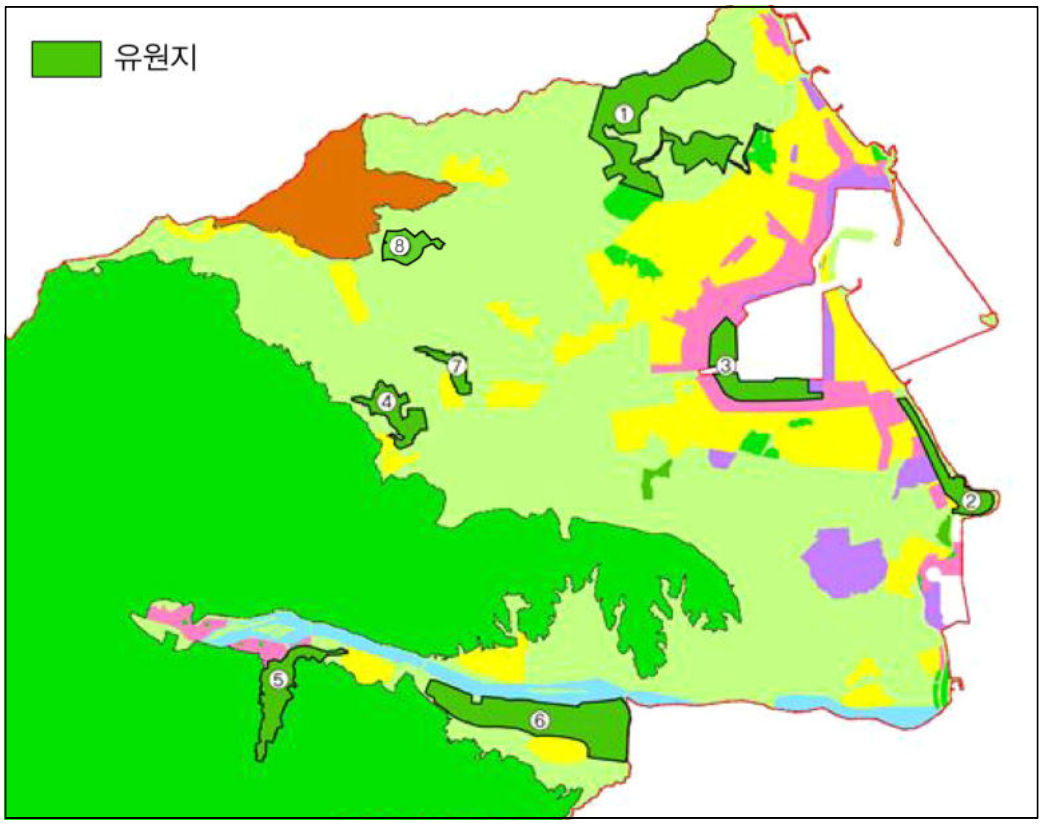
2.3 유원지 결정(예정)현황 (변경)

【표 3-6-3-7】 유원지 세부현황(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도시관리계획 반영여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유원지	7개소	2,991,799	3,140,734	증148,935	
1	영랑호유원지	금호동 600-7원 일원	1,019,535	1,019,535	-	반영
2	속초해수욕장유원지	조양동 1464-1임 일원	231,748	231,748	-	반영
3	청초호유원지	조양동 1544-1대 일원	339,780	339,780	-	반영
4	척산온천유원지	노학동 972-1대 일원	211,031	211,031	-	반영
5	설악1(D지구)	설악동 332답 일원	289,133	289,133	-	반영
6	설악2(E·F지구)	설악동 705-54대 일원	807,492	807,492	-	반영
7	노학온천	노학동 745-20학 일원	93,080	93,080	-	예정
8	장사동 유원지	장사동 산197임 일원	-	148,935	증148,935	예정

출처 : 속초시

【그림 3-6-3-2】 유원지 계획도 (변경)



3. 녹지계획(변경없음)

3.1 기본방향

▌ 속초시의 Green-Blue Network 확보

- 속초시의 대부분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호소의 경우 동측에 위치하고 서측에 산지의 지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그린·블루네트워크를 조성
- 녹지대와 하천의 그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생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해지며, 산책로 등과 병행한 공간계획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용을 도모
- 하천과 녹지대의 횡적연결을 통해 하천과 주변 산림의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주위의 농경지를 활용하여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 하천과 주거지역 및 주변의 다른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녹지대를 조성함
- 영랑호, 청초호 등 주요 호수, 저수지변 수변산책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 명소화로 지역 경쟁력 제고

▌완충녹지를 통한 녹지시설의 확충 및 쾌적성 확보

· 간선도로변

- 인위적 파손 및 자연적 재해로부터 도로 및 도로부속물 보호
- 통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 및 차량통행에 의한 공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 시가지 주요 통행도로인 국도 7호선과 국지도 56호선변은 쾌적한 정주생활권 및 보행환경확보를 위해 완충녹지 설치를 권장

· 철도주변

- 철도교통에서 야기되는 각종 공해 피해의 완화 및 시각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각종 구조물을 은폐하고, 자연적 파손으로부터 철도시설물 보호
- 쾌적한 정주생활권 및 보행환경을 위해 철도변에 완충녹지 계획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포함 된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구간)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쾌적한 정주생활권 및 보행환경 조성

· 공업단지 주변

- 주거와 상충하는 토지이용은 분리하고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 활용
- 평상시에는 적절한 조경으로 위락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공업단지 주변에는 완충녹지대 설치

▌도심내 녹지율의 증진

· 가로수 2열 식재 및 하단 관목식재, 중앙분리대 식재, 완충녹지대 연계 조성 필요

· 도로 개설시 가로수 식재와 완충녹지대를 연계 조성하는 등 가로수 배치유형 개선

· 도심 시가지 내 소규모의 각종 녹지대 등을 가로수와 연계하는 시가지 내 녹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지속적인 옥상녹화,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한 도심 내 녹지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 속초시의 녹지율 증진을 위해 도시개발계획과 녹지보전 및 정비계획을 통합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축 형성

· 주거지역 간선도로 및 철도변 등은 쾌적한 주거공간의 유지를 위한 완충녹지 확보

· 공업용지 계획 시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공업지역과의 분리를 위해 완충녹지대를 설치

▌ 하천 및 호소를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

·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수변공간을 유지하고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가치가 높도록 친수 공원화

· 하천의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하천과 구릉지, 공공장소와의 결절점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녹화계획 수립

· 친수공간 접근로를 도로로 단절되지 않도록 구상하며 장애인, 유아, 자전거 이용자 등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접근 보행계획 수립

3.2 녹지결정현황

· 기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없이 수용하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번호가 중복되는 설악동 집단 시설지구 내 녹지 3개소에 한하여 시설번호 변경

【표 3-6-3-8】 녹지 세부계획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합 계		-	33개소	97,127
소 계		완충녹지	6개소	20,695
1	녹지	완충녹지	청초 지구단위계획구역	4,556
2	녹지	완충녹지	조선단지변	1,350
3	녹지	완충녹지	교동 896공	1,033
4	녹지	완충녹지	대포동 966-7공	1,329
5	녹지	완충녹지	대포동 982-2공	1,379
6	녹지	완충녹지	대포동 990공	11,048
소 계		경관녹지	27개소	76,432
1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753-1대 일원	42,990
2	녹지	경관녹지	동명동 450-273대 일원	105
3	녹지	경관녹지	동명동 455-8대 일원	380
4	녹지	경관녹지	설악동 15-21 일원	1,381
5	녹지	경관녹지	설악동 246-18 일원	2,788
6	녹지	경관녹지	설악동 246-118 일원	609
8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43번지 일원	2,596
9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48임	501
10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43-2번지 일원	823
11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49 일원	3,459

출처 :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년 (구분은 도시계획시설 번호)

【표 3-6-3-9】 녹지 세부계획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12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66-8공	466
13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72-1공	407
14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매립지	689
15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72-3공	113
16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73공	2,993
17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80공	340
18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82-11공 일원	588
19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82-6공 일원	374
26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45-7임 일원	3,274
27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101-22임 일원	318
28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56-6도 일원	951
29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산 93-37임 일원	7,458
30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산 46-8임 일원	274
31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933-2장 일원	1,647
32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934-4장 일원	798
33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935도 일원	26
34	녹지	경관녹지	대포동 45-3임 일원	84

출처 :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년 (구분은 도시계획시설 번호)

4. 제도 및 행정 개선(변경없음)

▌ 행정서비스 확충 및 제도 통합

·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녹지 수요가 양적·질적인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조직과 인원은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에 양질의 녹지공원관리 및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조속한 조직의 정비와 인원확충 도모

· 환경관련 부서에서만의 녹지축 보전과 녹화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개발부서를 포함한 속초시의 도시행정 전반에서의 녹색도시 건설로 녹지보전 및 정비 계획의 통합

▌ 공원 및 녹지계획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녹화정책 수립·집행에 시민, 지역 NGO,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 동 단위,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소구역별로 해당지역의 녹지현황 및 녹화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에 소그룹별 참여 유도

·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의 정원, 발코니, 옥상 등의 녹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녹화지원센터 설립

▌ 공원 및 녹지계획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생태학습, 체험, 스포츠 활동, 야외 연주회 등 문화·예술·학습 이용프로그램 도입

· 내동네·내공원 가꾸기 및 공원녹지 시민식수 활성화

– 공원별 특화된 시민참여로 효율적인 공원시설관리 체계 구축

–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동내·내공원 지킴이 운동 정착

5. 실천 계획(변경없음)

▌ 도시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table>
<tr><th>구 분</th><th>내용</th></tr>
<tr><td>목적</td><td>· 유원지 및 도시공원 연중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 도심 속의 녹색쉼터 지속적 조성관리로 쾌적한 도심 속 녹색환경 제공</td></tr>
<tr><td>위치</td><td>· 청초호유원지 등 74개소</td></tr>
<tr><td>관리대상</td><td>· 도시공원 : 청초호유원지 등 32개소(179,907㎡/왕벚나무 등 144,969본)
· 녹지대 : 대우아파트 주변 등 43개소(26,717㎡/잣나무 등 154,075본)</td></tr>
<tr><td>사업내용</td><td>· 시설물 보수보강, 조경수 보완식재, 수목전정, 잡풀 제초 및 잔디깍기, 병충해 방제, 분수대 및 화장실 관리, 공원청소, 대포항 역사공원 및 로데오거리 관리</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3,228</td><td>991</td><td>637</td><td>800</td><td>-</td><td>-</td><td>800</td><td>-</td><td>800</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공원 녹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제공</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 사업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도로 및 마을 꽃길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극대화하고자 함
위치	·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60개소
사업내용	· 계절꽃묘 및 다년생 꽃묘 생산 : 19종 830천본 · 계절꽃묘 식재(가로화단 및 원형화분) : 60개소 · 동(사회단체) 꽃길 조성사업 : 8개동 19개소 / 계절꽃 2만본 · 다년생 튤립화단 조성 : 속초광장 등 2개소 / 튤립 7만본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투자액	'17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189	2,219	540	760	-	-	760	-	670

구 분	내용
기대효과	· 사계절 꽃으로 덮인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전국제일 관광도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 · 자체 꽃묘 생산으로 안정적 꽃묘 수급 및 예산절감 기여 · 지역주민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 산림경영 기반구축(숲가꾸기, 조림)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조성 기여
위치	· 관내 도시권 주변 산림
사업내용	· 조림사업 : 큰나무 공익조림 · 정책숲가꾸기 :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투자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733	3,529	241	463	232	69	162	-	500

구 분	내용
기대효과	· 큰나무 및 지역특화림 조성으로 생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친환경공간 조성 · 숲의 기능별 수요에 필요한 특성화 된 숲가꾸리고 공익기능 강화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table>
<tr><th>구 분</th><th>내용</th></tr>
<tr><td>사업목적</td><td>· 도심지역 녹지시설로 도시 내 녹지축의 형성과 특징적인 가로공간 조성
· 가로수 및 수벽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경관조성 사업 필요성</td></tr>
<tr><td>위치</td><td>· 동해대로 외 40개 노선(은행나무외 17종/12,063본)</td></tr>
<tr><td>사업내용</td><td>·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 보식 및 관리, 보호틀 설치, 가지치기 및 전정, 시비, 피해목 정비, 병충해 방제, 수종교체 등</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투자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3,316</td><td>1,136</td><td>570</td><td>810</td><td>-</td><td>-</td><td>810</td><td>-</td><td>300</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
· 도로변 수벽의 유지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VII 방재 및 안전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현황분석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3. 방재계획
4. 도시안전계획
5.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제7장 방재 및 안전계획 (변경없음)

1 현황분석

1. 재해 유형별 현황

1.1 자연재해

01 풍수해

·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예측되지 않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

· 지난 2012년 9,900천원, 2014년 225,600천원, 2015년 487,248천원, 2016년 2,475천원, 2017년 2,400천원으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산피해가 발생

【표 3-7-1-1】 속초시 풍수해 피해발생 현황

연도	사망 및 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 면적 (ha)	피해액(천원)					
				총액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 시설	기타
2012년	-	-	31.87	9,900	-	-	-	-	9,900
2013년	-	-	-	-	-	-	-	-	-
2014년	-	-	-	225,600	-	-	-	167,588	58,012
2015년	-	-	-	487,248	-	-	-	-	487,248
2016년	-	-	1.89	2,475	-	-	-	-	2,475
2017년	-	-	-	2,400	-	-	-	-	2,4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도

02 지진

· 전국에 걸쳐 지진발생은 30년간 총 1,312회로 강도 3 이상은 290회이며, 10년간 지진발생 횟수는 총 786회, 강도 3 이상은 78회로 그 중 2016년의 지진발생량이 252회, 강도 3 이상이 34회로 급격하게 증가함

· 강원지역은 2017년 7월 20일 삼척시 동남동쪽 33km해역에서 발생한 2.0강도, 2017년 6월 11일 삼척시 남남동쪽 19km지역 2.1 강도의 지진이 최근 관측된 자료임

· 최근 10년간 속초시에서 발생한 현황은 없으며, 기존 지진 발생 강도도 미비하여 지진 안정권으로 판단되나, 발생에 대비하여 내진설계의 의무화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표 3-7-1-2】 속초시 부근 지진발생 현황

날짜	시간	강도	위도	경도	위치
2016-05-03	3:29:09 AM	2.4	37.11 N	129.02 E	강원 태백시 남남동쪽 7km 지역
2016-12-10	3:51:54 PM	2	37.63 N	129.68 E	강원 삼척시 동북동쪽 50km 해역
2017-03-05	9:18:27 AM	3.2	37.75 N	129.66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4km 해역
2017-03-05	9:28:49 AM	2.4	37.74 N	129.69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6km 해역
2017-03-05	3:09:40 PM	2.1	37.72 N	129.59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47km 해역
2017-03-05	7:19:07 PM	2.1	37.77 N	129.70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8km 해역
2017-03-07	6:53:36 AM	2.6	37.75 N	129.71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8km 해역
2017-03-15	11:56:05 PM	2.4	37.73 N	129.69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6km 해역
2017-05-20	10:29:33 PM	2.9	37.73 N	129.62 E	강원 동해시 동북동쪽 50km 해역
2017-06-11	6:16:53 PM	2	37.28 N	129.21 E	강원 삼척시 남남동쪽 19km 지역
2017-07-20	2:38:47 PM	2	37.39 N	129.54 E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33km 해역

출처 : 기상청, 국내지진 목록

1.2 사회재난

01 교통사고

· 승용차 사고 469건, 화물차 75건, 이륜차 15건 순으로 사고 발생

【표 3-7-1-3】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	인적피해		자동차유형별					
		사망자	부상자	승용차	버 스	화 물	특 수	이륜차	기 타
2012년	722	13	1,214	534	35	99	4	37	13
2017년	615	16	1,012	469	10	75	-	15	4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화재

· 2017년에 9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부주의가 발화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3-7-1-4】 화재피해 현황

구 분	발생건수	소 실 규 모		피해액(천원)			인명피해(인)		
		동수	면적(㎡)	계	부동산	동 산	계	사망	부상
2012년	233	57	9,108	1,066,157	595,128	471,029	29	-	29
2017년	90	11	1,248	499,682	249,841	249,841	7	1	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7-1-5】 발화요인별 발생건수

구 분	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자연적 요인	방화 명확	방화 의심	미상
2012년	233	60	13	4	1	-	118	3	1	1	3	29
2017년	90	20	9	2	-	1	51	-	1	2	-	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재난사고

【표 3-7-1-6】 재난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화 재		붕 괴		도로교통		해난		기 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2년	868	1,347	105	25	-	-	722	1,227	33	95	6	-
2017년	742	1,096	87	-	-	-	615	1,028	10	34	30	34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4 범죄

· 2017년도 범죄 발생건수는 4,720건으로 검거율은 88.6%임

【표 3-7-1-7】 속초시 범죄현황

구 분	발 생	검 거	검 거 율(%)	비 고
2012년	4,795	3,647	76.1	
2017년	4,720	4,184	88.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3 풍수해위험지구

01 하천재해 위험지구

· 속초시의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10개소로 총 12개소를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

【표 3-7-1-8】 하천 재해위험지구 선정 현황

구분	하천명	일련번호	지구명	재해발생가능성		예상피해지역		위험지구 선정	
				현장조사(시설물 평가)	관련계획(홍수위 기준)	면적(m^2)	주요 피해 지역	선정/제외	사 유
계		13개소						12개소	
	소계	3개소						2개소	
지방하천	청초천	RI-01-001	청초천1	B	하폭부족		상업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부족구간으로 확폭계획 수립 미정비 상태
		RI-01-002	청초천2	B	하폭부족		녹지 지역	제외	제방고가 청초천의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만족하고 범람위험성은 없음 일부구간 정비완료
		RI-01-004	청초천3	B	제방고 및 하폭부족		주거 녹지 지역	선정	하폭, 홍수위 부족 및 여유고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9】 하천 재해위험지구 선정 현황(이어서)

구분	하천명	일련번호	지구명	재해발생가능성		예상피해지역		위험지구 선정	
				현장조사 (시설물 평가)	관련계획 (홍수위 기준)	면적 (m^2)	주요 피해 지역	선정/ 제외	사 유
	소계	10개소						10 개소	
소하천	샘골천	RS-03-001	샘골천	D	제방고 및 하폭 부족		주거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응골천	RS-05-001	응골천	B	제방고 및 하폭 부족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가마 소천	RS-08-001	가마소천	D	호안미 설치 및 제방고 부족		녹지 지역	선정	호안미설치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정비계획 수립 미정비 상태
	논산 리천	RS-19-001	논산리천	B	제방고 및 하폭 부족		주거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외옹 치천	RS-26-001	외옹치천	B	제방고 및 하폭 부족		주거 녹지 상업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하도 문천	RS-27-001	하도문천	D	제방고 및 하폭 부족		주거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절골천	RS-28-001	절골천	D	제방고 및 하폭 부족		주거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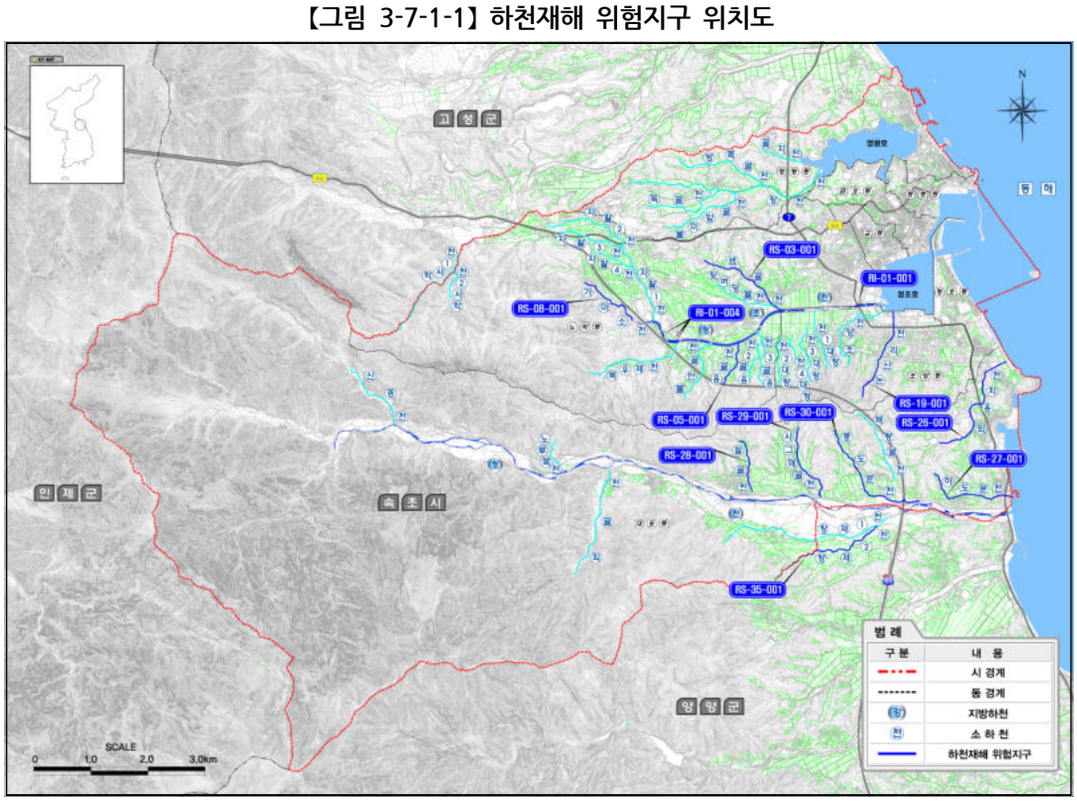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10】 하천 재해위험지구 선정 현황(이어서)

구분	하천명	일련번호	지구명	재해발생가능성		예상피해지역		위험지구 선정	
				현장조사(시설물 평가)	관련계획(홍수위 기준)	면적(m^2)	주요 피해 지역	선정/제외	사 유
소하천	사그매골천	RS-29-001	사그매골천	D	제방고 및 하폭 부족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중도문천	RS-30-001	중도문천	D	제방고 및 하폭 부족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장재2천	RS-35-001	장재2천	D	제방고 및 하폭 부족		녹지 지역	선정	하폭 및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축제계획수립 미정비 상태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1】 하천재해 위험지구 위치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02 내수재해 위험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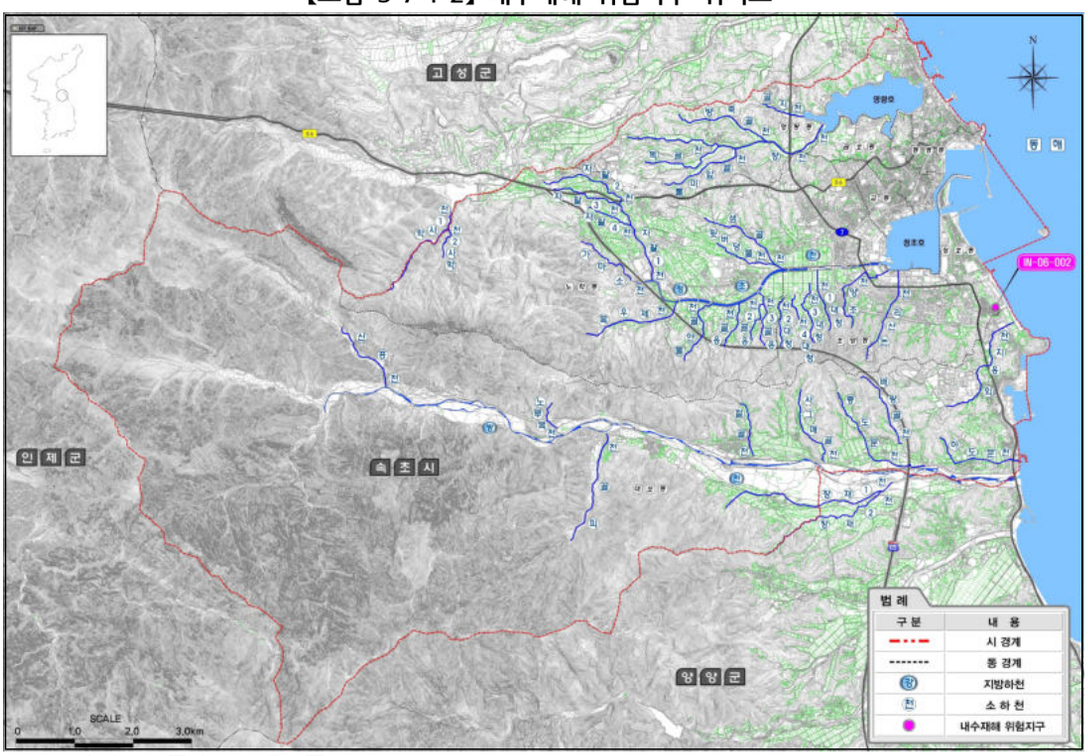
· 침수모의 결과 소규모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과거 피해이력이 없고, 지형여건상 배수가 원활하며 인명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위험지구에서 제외

【표 3-7-1-11】 내수재해 재해위험지구 선정 현황

일련번호	지구명	위 치	예상 침수지역 (㎡)	위험지구 선정		비고
				선정 /제외	사 유	
계	5개소			1개소		
IN-01-003	청해 지구	장사동 (영랑동) 405-5일원	-	제외	위험요인 분석결과 미침수로 위험지구 선정제외	
IN-01-004	장사 지구	장사동 (영랑동) 405-5일원	897	제외	사진1길 주변으로 간선관거 구배불량에 따른 소규모 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과거피해이력이 없고, 지형여건상 노면배수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지구 선정 제외	
IN-04-003	노학 지구	교동(교동) 731-3 일원	7,569	제외	노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상습침수지역은 해소되었음 유역 중·상류부 도로를 따라 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지형여건상 노면배수가 원활하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위험지구 선정제외	
IN-06-002	조양2 지구	조양동 (조양동) 1450-143 일원	1,137	선정	침수 규모는 작으나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위험지구로 선정	▣
IN-08-004	중도문 지구	도문동 (대포동) 832-21일원	3,926	제외	과거 피해이력이 없고 배수분구 대부분이 자연유역임 침수지역 대부분이 농경지 지역이며 침수범위가 작고 인명피해 우려가 없어 위험지구 선정제외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2】 내수재해 위험지구 위치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03 토사재해 위험지구

· 강우 등의 외력에 의해 침식되어 유수에 의해 운반 되다가 완경사 지역에 퇴적되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주를 이루는 토사재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지구 선정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 대상지역을 추정하여 위험지구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적용

【표 3-7-1-12】 토사재해 위험지구 현황

일련번호	지구명	지역특성	토사재해 발생 가능성 (ton/yr)	위험지구선정 사 유	비고
계	4개소				
SO-06-001	조양토사 1	토사유출 분석	322.46	예상피해지역내 주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하며, 토사유출 분석결과 비토사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산정되어 토사피해가 우려되어 선정함	▣
SO-08-001	대포토사 1	토사유출 분석	617.76	예상피해지역내 주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하며, 토사유출 분석결과 비토사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산정되어 토사피해가 우려되어 선정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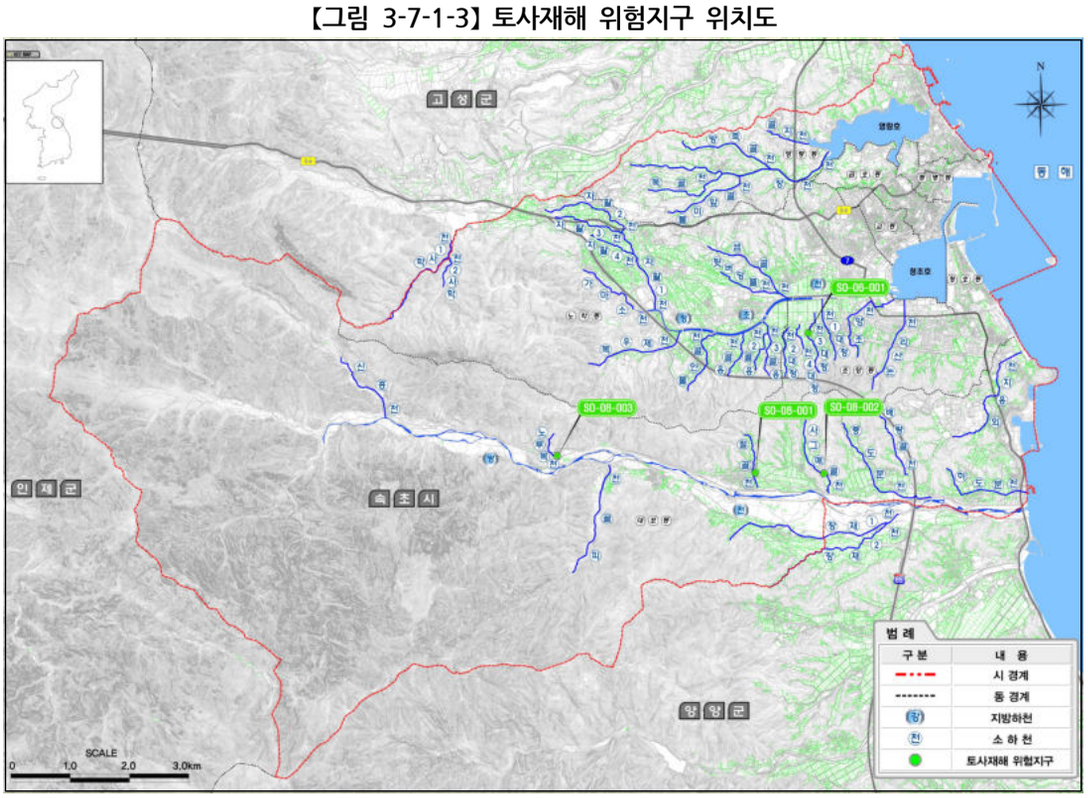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13】 토사재해 위험지구 현황(이어서)

일련 번호	지구명	지역특성	토사재해 발생 가능성 (ton/yr)	위험지구선정 사 유	비고
SO-08-002	대포토사 2	토사유출 분석	903.66	예상피해지역내 주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하며, 토사유출 분석결과 비토사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산정되어 토사피해가 우려되어 선정함	▣
SO-08-003	대포토사 3	토사유출 분석	371.18	노루묵천 상류부는 산지 계곡부로 토사유출 분석결과 비토사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산정되어 토사피해가 우려되어 선정함	▣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3】 토사재해 위험지구 위치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04 사면재해 위험지구

· 총 83개소의 위험지구 후보지 중 D등급 9개소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C등급 3개소 등 총 12개소를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선정

【표 3-7-1-14】 사면재해 위험지구 현황

일련번호	지구명	사면 구분	선정 여부	선정/제외 사유	비 고
SL-01-105	영랑5	인공	제외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등급에 해당 도로에 인접하고 표면보호시설 미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1-106	영랑6	자연	제외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등급에 해당 도로에 인접하고 표면보호시설 미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2-107	동명11	인공	제외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등급에 해당 주택가 진입통로로 석축이 유실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4-101	교동2	인공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주택배후비탈면으로 표면보호시설 미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5-107	청학	옹벽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옹벽의 균열이 진행되며 붕괴위험성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6-107	조양8	인공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소규모 붕괴 후 방치된 상태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8-101	대포1	인공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소규모 붕괴 후 방치된 상태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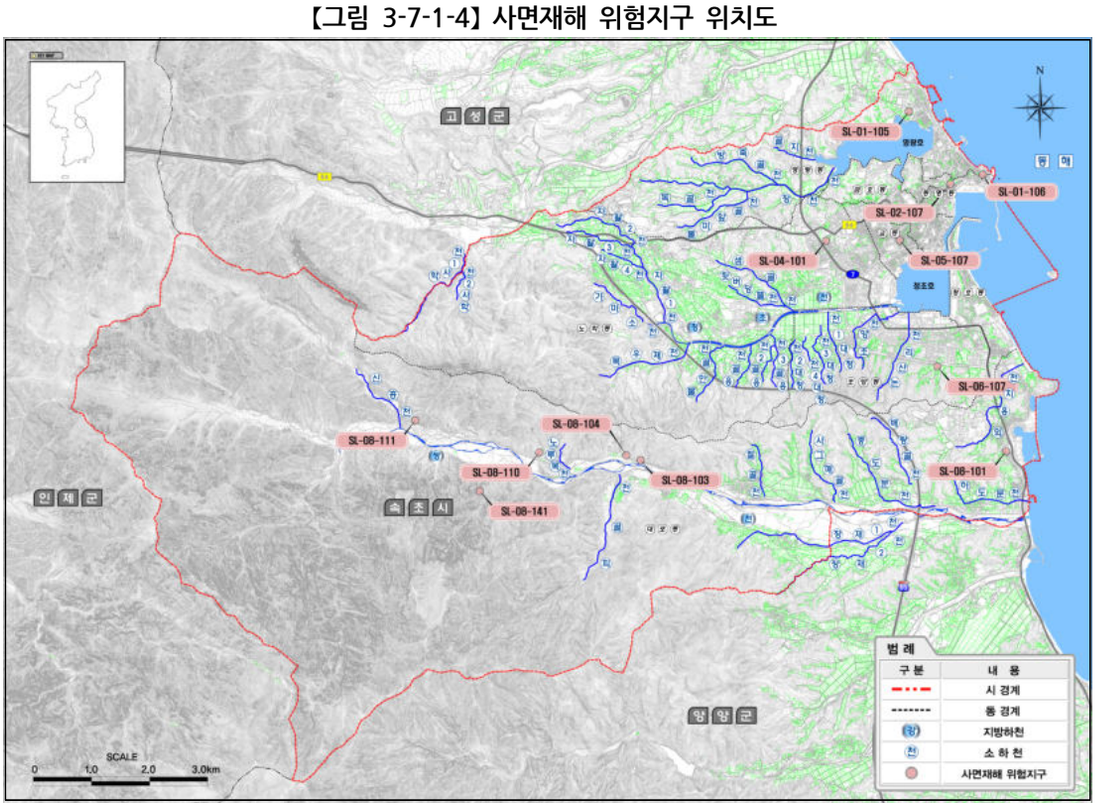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15】 사면재해 위험지구 현황(이어서)

일련번호	지구명	사면 구분	선정 여부	선정/제외 사유	비 고
SL-08-103	대포3	자연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도로 암반비탈면으로 낙석발생위험성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위험지구
SL-08-104	대포4	자연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도로 암반비탈면으로 낙석발생위험성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위험지구
SL-08-110	설악2	자연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토석류발생 위험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8-111	설악3	자연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토석류발생 위험이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	위험지구
SL-08-141	설악 05-03-01	자연	선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 분리된 대규모 암괴의 탄락위험이 높아 현재 보호시설로 부족함	위험지구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4】 사면재해 위험지구 위치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05 해안재해 위험지구

· 총 14개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중 과거 피해발생 이후 지속적인 피해 또는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9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분류하고, 과거 미미한 피해이력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가 거의 없고 현장조사에서도 위험요소가 크게 발견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지구'로 분류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고

【표 3-7-1-16】 해안재해 위험지구 현황

일련번호	지구명	위 치	위험지구 선정		비고
			선정 / 제외	사 유	
계	14개소				
ON-01-001	장사A 지구	장사동(영랑동) 532, 533, 542번지 일원	선정	해변모래의 퇴적으로 강풍 시 배후지 비산모래 피해	위험지구
ON-01-002	장사B 지구	장사동(영랑동) 548-9 & 12 방파제, 배후지 일원	선정	고파랑 내습에 의한 상치 이격 피해 후 고파랑 추가내습으로 방파제 기능상실 시 방파제 외 배후지 침수 피해 우려	위험지구
ON-01-003	장사C 지구	장사동(영랑동) 548-13번지 일원	제외	과거 내수면에 고파랑 내습으로 공동해수인입관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10년동안 피해없이 어항기능이 정상운영 중이므로 추후 고파랑 내습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피해유무 확인	관리지구
ON-01-004	영랑A 지구	장사동(영랑동) 577-30~42번지 일원	선정	장사항 외곽방파제 설치 후 주변 해빈류 흐름변화로 인해 영랑해변의 지속적인 해안침식 발생으로 해변 변형 및 기능 상실	위험지구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17】 해안재해 위험지구 현황(이어서)

일련번호	지구명	위 치	위험지구 선정		비고
			선정/제외	사 유	
ON-01-005	영랑B 지구	영랑동(영랑동) 148-40~190번지 일원	선정	장사항 외곽방파제 설치 후 주변 해빈류 흐름변화로 인해 영랑해변의 지속적인 해안침식 발생으로 해변 변형 및 기능상실 우려 이외에 최근 배후 해안도로 공동화 피해 발생	위험지구
ON-01-006	영랑C 지구	영랑동(영랑동) 147-1~20-15번지 일원	선정	장사항 외곽방파제 설치 후 주변 해빈류 흐름변화로 인해 등대해변의 지속적인 해안침식 발생으로 해변 변형 및 기능상실 우려	위험지구
ON-02-001	동명 지구	영랑동(영랑동) 1-17~18번지 일원	선정	대상지구 해안 암반지형이 월파에 불리한 형상으로 고파랑 시 배후지로의 월파, 월류 피해 발생	위험지구
ON-07-001	청호 지구	청호동 550-11~조양동 1450-79번지 일원	선정	속초항 외곽방파제 설치 후 주변 해빈류 흐름변화로 인해 청호해변의 지속적인 해안침식 발생으로 해변 변형 및 기능 상실 우려 이외에 최근 배후 해안도로 공동화 피해 발생	위험지구
ON-04-001	교동 지구	교동(교동) 664-322, 482-304번지 일원	선정	최근 이상 고조위 발생 시청초호 내측 일부구역의 우수박스 기능 정지 및 역류로 배후지 침수피해 발생	위험지구
ON-06-001	조양 지구	조양동 1450-158~대포동 591번지 일원	선정	속초항 외곽방파제 설치 후 주변 해빈류 흐름변화로 인해 속초해변의 지속적인 해안침식 및 친수시설 피해 발생	위험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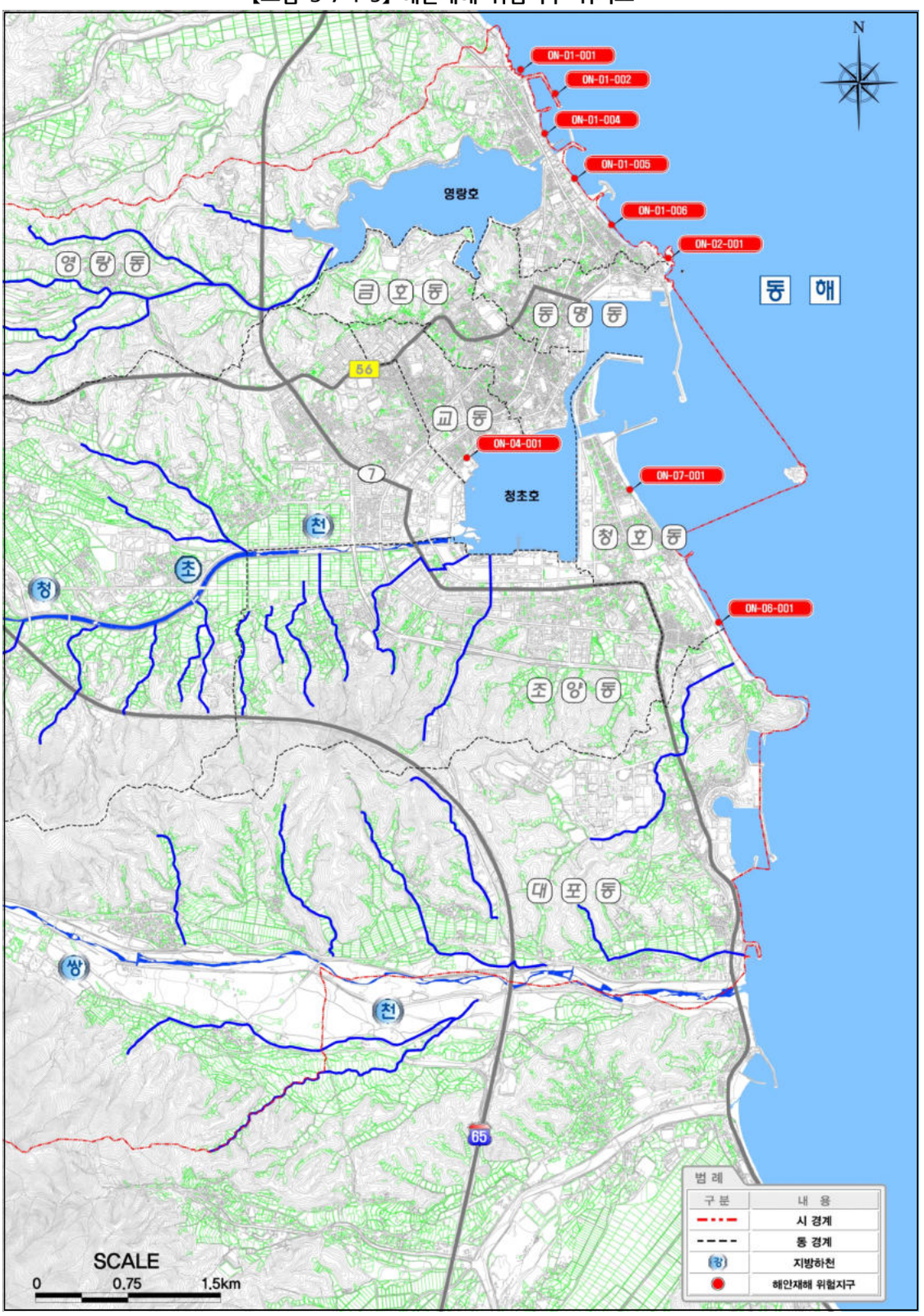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18】 해안재해 위험지구 현황(이어서)

일련번호	지구명	위 치	위험지구 선정		비고
			선정 / 제외	사 유	
ON-08-001	대포A 지구	대포동(대포동) 728-6, 7, 10번지 일원	제외	2006년에 고파랑 내습으로 공동어구보수장, 공공활선어 판매장 파손이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없이 어항기능이 정상 운용 중이므로 추후 고파랑 내습 시 피해접수 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주기적인 피해유무 확인 등 유지관리 수행	관리지구
ON-08-002	대포B 지구	대포동(대포동) 960번지 일원	제외	대상지구는 국가어항인 대포항 외곽방파제로 과거 특별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 관광어항으로의 개발로 보수, 보강이 완료됨에 따라 추후 고파랑 내습 시에 피해접수 및 주기적인 안전난간 점검 등 유지관리 수행	관리지구
ON-08-003	대포C 지구	대포동(대포동) 960번지 일원	제외	대상지구는 국가어항인 대포항 내측으로 최근 관광어항으로의 개발로 방파제 확장 및 보수, 보강이 진행 중이므로 고파랑 내습 시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수행	관리지구
ON-08-004	대포D 지구	대포동(대포동) 178-75, 79번지 일원	제외	2016년에 고파랑 내습으로 상치 안전난간 파손이력이 있으나, 미미한 피해이므로 추후 고파랑 내습 시 피해접수 외 현장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수행	관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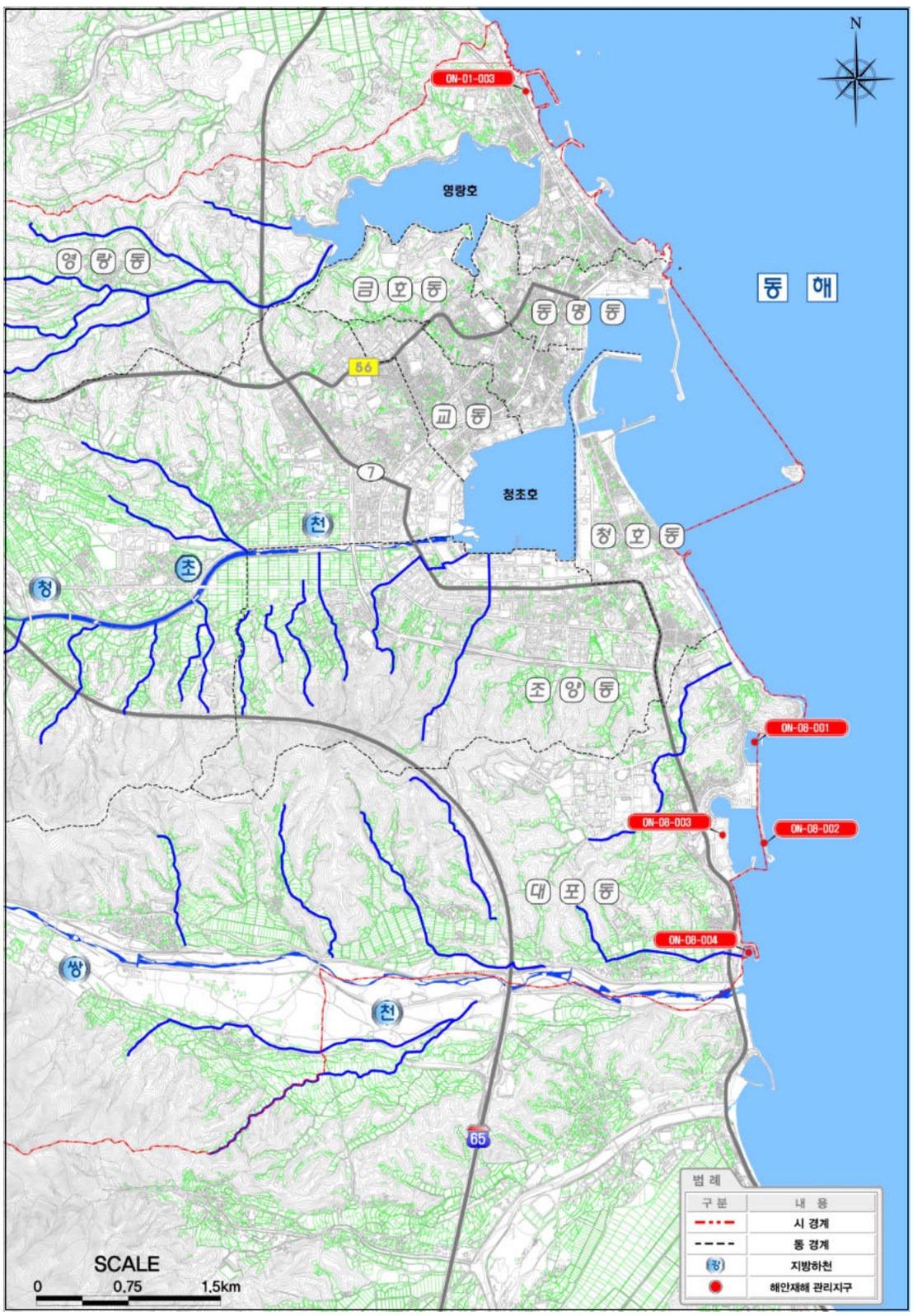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5】 해안재해 위험지구 위치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6】 해안재해 위험지구 위치도(관리지구)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1.5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01 하천시설

· 속초시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방연장은 총 61,669m이며, 배수암거는 29개소, 배수통관은 50개소, 낙차공은 34개소, 보는 73개소, 교량은 80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1-19】 하천시설물 현황

하천등급	하천명	제방(m)	배수시설물(개소)		낙차공 (개소)	보 (개소)	교량 (개소)
			배수암거	배수통관			
지방하천	청초천	4,800	9	15	-	3	9
	쌍천	12,600	11	9	2	4	7
	소계	17,400	20	24	2	7	16
소하천	학사1천	-	-	-	-	1	-
	학사2천	-	-	-	1	1	-
	샘골천	2,227	5	3	1	3	3
	뒷버덩들천	750	-	-	-	-	-
	응골천	800	1	1	6	5	3
	목우제천	1,920	1	3	-	1	1
	물안골천	750	-	-	1	-	-
	가마소천	550	-	-	-	-	-
	자활1천	1,100	-	4	1	8	2
	자활2천	100	-	-	1	1	1
	자활3천	450	-	-	3	1	1
	자활4천	900	1	-	2	-	1
	청대1천	1,132	-	-	1	-	4
	청대2천	50	-	-	-	-	-

출처 : 속초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쌍천, 청초천기본계획

【표 3-7-1-20】 하천시설물 현황(이어서)

하천등급	하천명	제방(m)	배수시설물(개소)		낙차공(개소)	보(개소)	교량(개소)
			배수암거	배수통관			
소하천	청대3천	500	-	-	-	-	1
	청대4천	400	-	-	-	-	-
	응골2천	250	-	-	-	-	-
	응골3천	850	-	-	-	-	-
	논산리천	1,550	-	-	-	5	8
	조양천	2,300	-	-	-	-	1
	장천천	6,340	1	6	4	7	9
	불미앞골천	1,200	-	-	-	4	1
	방죽골천	1,600	-	1	-	-	1
	독골천	2,300	-	-	4	6	-
	골지천	-	-	-	-	-	-
	외옹치천	2,400	-	1	1	2	2
	하도문천	1,950	-	3	-	1	5
	절골천	1,350	-	-	1	3	3
	사그매골천	1,200	-	1	-	-	-
	중도문천	1,850	-	-	5	5	1
	배랑골천	1,500	-	1	-	6	-
	노루목천	550	-	-	-	5	-
	피골천	350	-	-	-	-	1
	장재1천	1,400	-	2	-	-	4
	장재2천	2,800	-	-	-	-	4
	신흥천	900	-	-	-	1	7
	소계	44,269	9	26	32	66	64

출처 : 속초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쌍천, 청초천기본계획

02 저수지

· 속초시 관내에는 논산저수지를 비롯하여 총 4개 저수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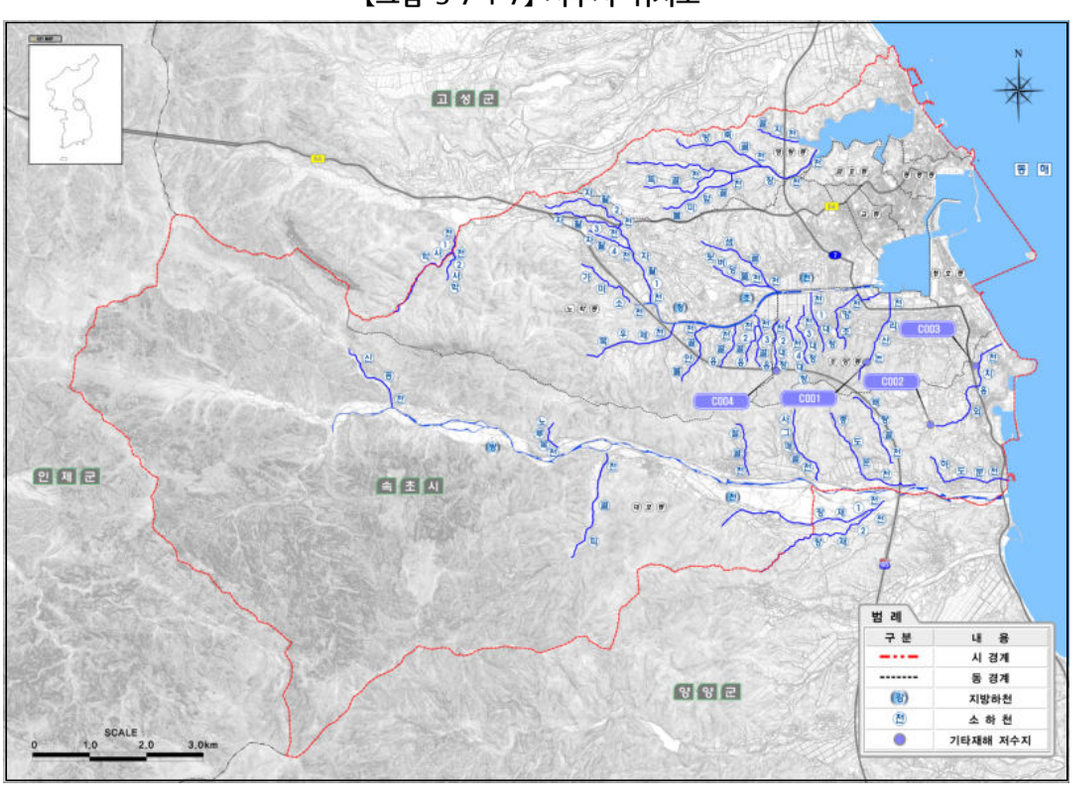
·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1천~15천㎥이며, 저수지에 의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농경지의 수혜면적은 0.4~6.1㎢임

【표 3-7-1-21】 저수지 현황

일련번호	저수지명	하천(소하천)	위치	유역면적(km²)	유효저수량(m³)	만수면적(ha)	제당높이(m)	제당길이(m)	평가등급	여수로형식
C001	논산	논산리천	조양동	0.38	7,000	0.6	6	50	B	자연월류
C002	대포	외옹치천	대포동	0.77	10,000	0.8	1.5	167	B	자연월류
C003	외옹치	외옹치천	대포동	1.95	15,000	1.2	6.5	50	B	자연월류
C004	청대	청대2천	조양동	0.31	7,000	0.3	6	60	B	자연월류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그림 3-7-1-7】 저수지 위치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1.6 방재대책

01 방재관련 법·제도

· 재해대책기구에서 정한 규정과 속초시 조례로 방재관련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관련 조례	·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자연재해대책법」4조) · 속초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규정 및 운영조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 속초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 속초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5조) · 대부분 재난 발생 시 조직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

02 방재 운영체계

· 재해대책본부는 「속초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속초시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규정 및 운영조례」에 의해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대비의 목적으로 속초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시장이 차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 및 본부장을 보좌하고, 안전방재과장이 통제관을 맡음

·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은 속초경찰서, 소방서,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

03 재해·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 조속한 보강 또는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및 이용인구 면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의 제거를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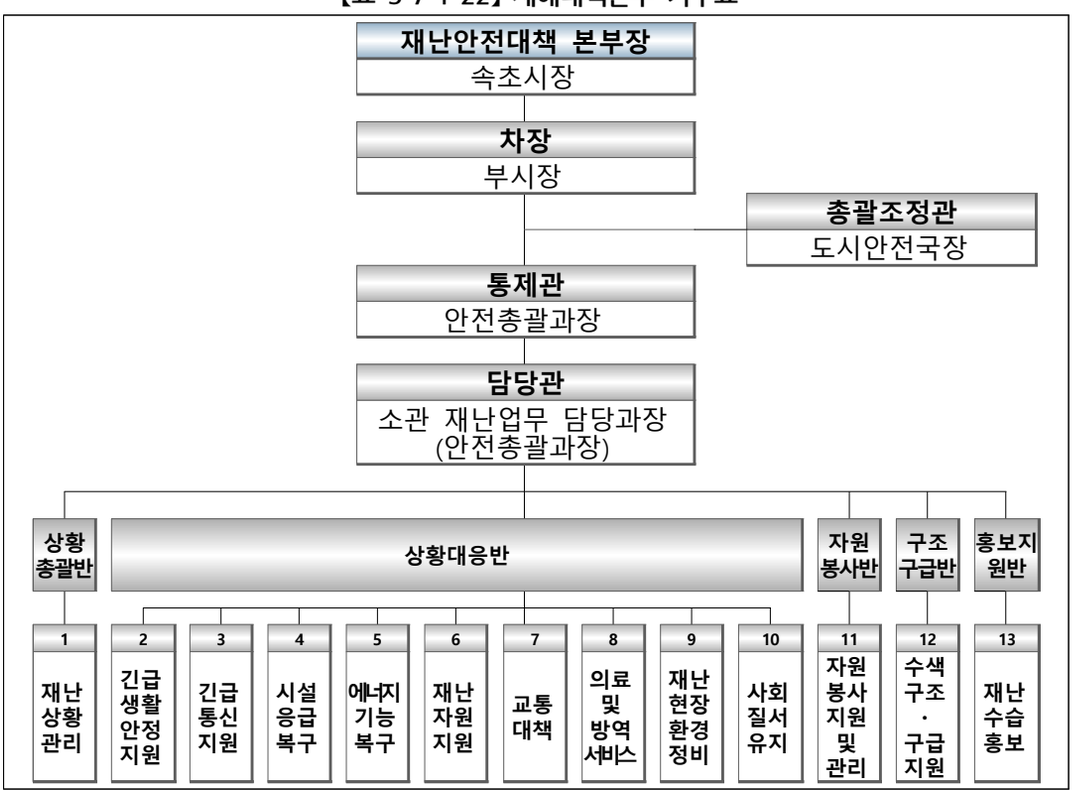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위험시설 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일반하천 개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04 방재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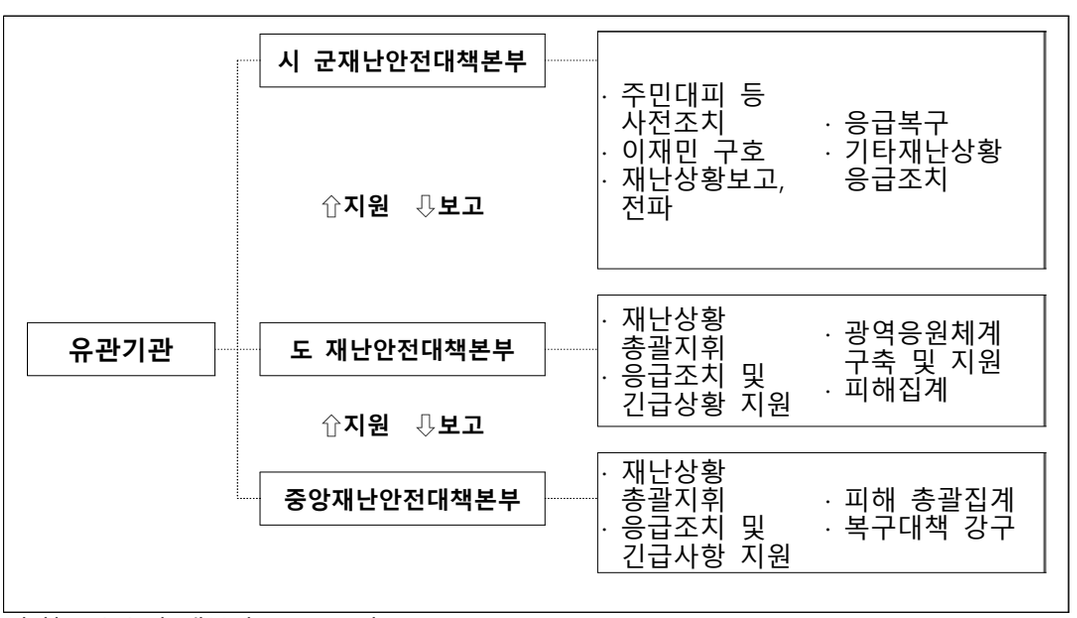
· 자율 방재단 운영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에 지역주민과 단체의 참여활동 극대화

【표 3-7-1-22】 재해대책본부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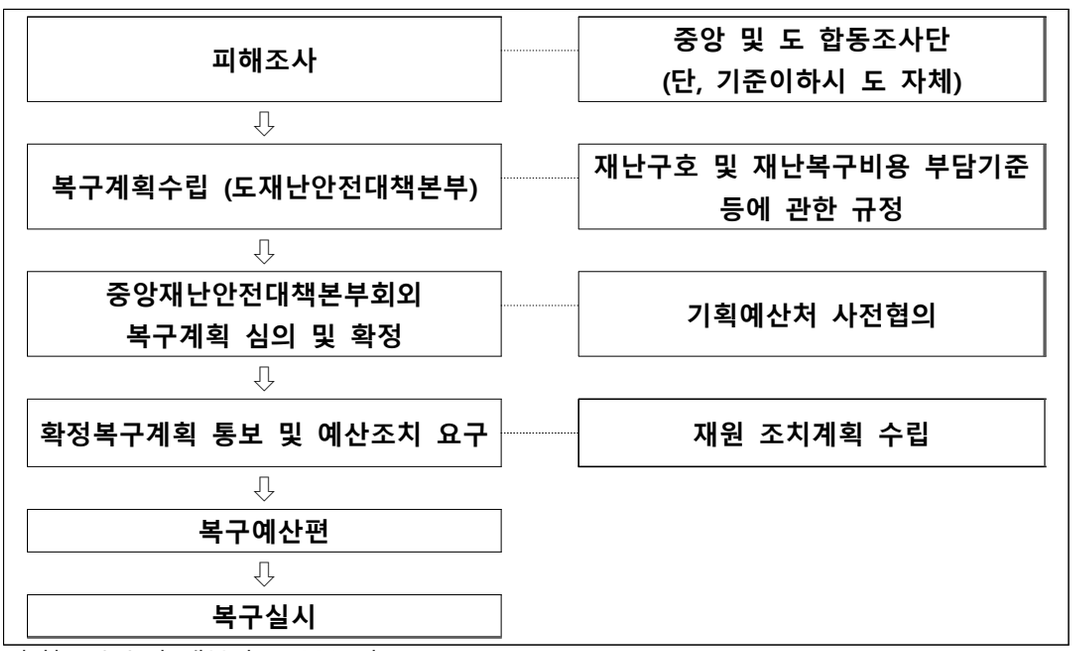
1.6 재난복구지원절차

01 재난응급대책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02 재난복구 대응체계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1.8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201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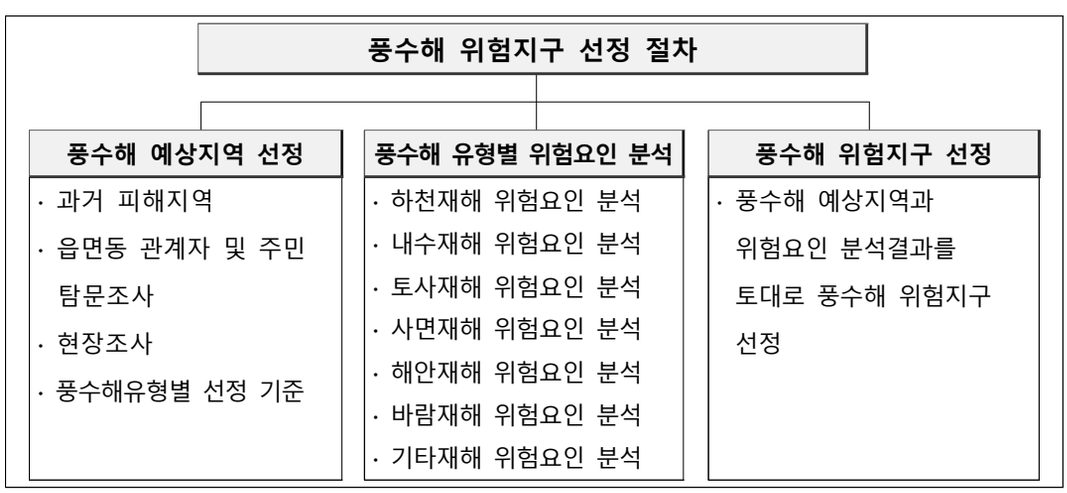
0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목적

· 풍수해 저감을 위한 유도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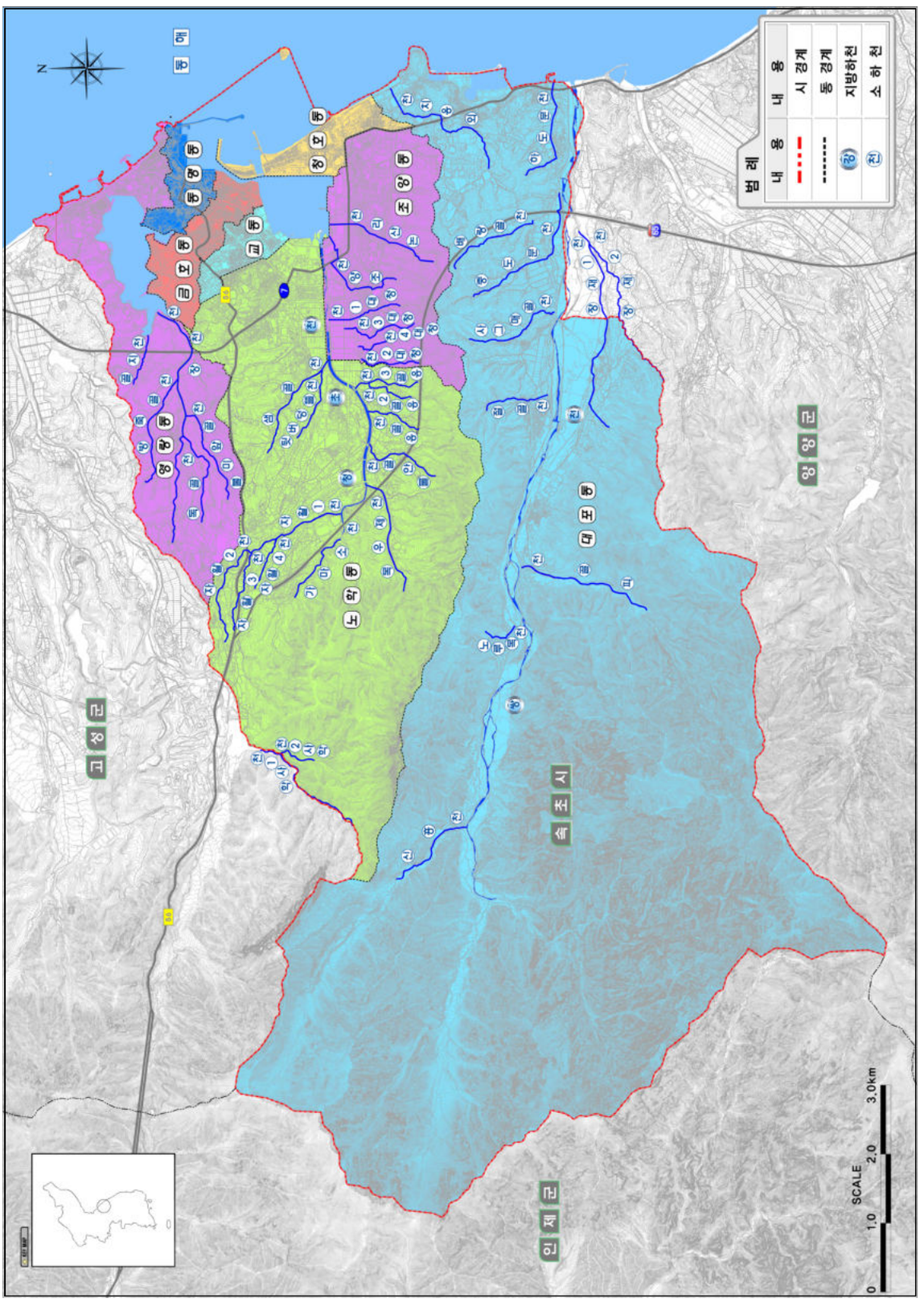
02 계획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해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대비

– 과거 풍수해 이력을 기본으로 우선검토 및 피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조사하여 위험지구로 지정



0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범위도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04 풍수해 유형별 풍수해저감대책

【표 3-7-1-23】 위험지구단위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종합

구 분	수계	위 험 지구명	일련번호	하천명	위 치	저감대책	개략사업비 (백만원)
위험지구단위	합 계		40개소				54,880
	하천재해	계	12개소				27,000
		청초천	청초천1	RI-01-001	청초천	교동(교동) 676-8번지 일원	확폭(L = 120 m) 교량(1개소) 보 및 낙차공(2개소)	2,670
			청초천3	RI-01-004	청초천	노학동(노학동) 1265-120, 916, 953번지 일원	축제(L = 354 m) 보축(L = 183 m) 교량(1개소)	1,150
			샘골천	RS-03-001	샘골천	노학동(노학동) 1084-7번지 일원	축제(L = 1,763 m) 보축(L = 150 m) 보 및 낙차공(3개소) 교량(3개소)	3,570
			응골천	RS-05-001	응골천	노학동(노학동) 1293-3번지 일원	축제(L = 465 m) 보축(L = 140 m) 보 및 낙차공(1개소) 교량(3개소)	3,220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24】 위험지구단위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종합(이어서)

구 분		수계	위 험 지구명	일련번호	하천명	위 치	저감대책	개략사업비 (백만원)
위험지구단위	하천재해	청초천	가마소천	RS-08-001	가마소천	노학동(노학동) 994-1번지 일원	축제(L = 250 m)	400
			논산리천	RS-19-001	논산리천	조양동(조양동) 788-15번지 일원	축제(L = 250 m) 보축(L = 72 m) 보 및 낙차공(4개소) 교량(6개소)	1,060
		쌍천	외옹치천	RS-26-001	외옹치천	대포동(대포동) 458-2번지 일원	축제(L = 1,968 m) 보축(L = 787 m) 보 및 낙차공(2개소) 교량(2개소)	4,020
			하도문천	RS-27-001	하도문천	도문동(대포동) 2184번지 일원	축제(L = 2,095 m) 교량(4개소)	3,820
			절골천	RS-28-001	절골천	도문동(대포동) 322-5번지 일원	축제(L = 916 m) 보 및 낙차공(3개소) 교량(2개소)	1,730
			사그매골천	RS-29-001	사그매골천	도문동(대포동) 821-36번지 일원	축제(L = 1,332 m)	2,240
			중도문천	RS-30-001	중도문천	도문동(대포동) 2037번지 일원	축제(L = 385 m) 보축(L = 638 m)	1,000
			장재2천	RS-35-001	장재2천	설악동(대포동) 835번지 일원	축제(L = 1,160 m) 교량(2개소)	2,120
	내수재해	계		1개소				1,450
		청초천	조양2	IN-06-002	-	조양동(조양동) 1450-143일원	저류지설치 (V = 1,500 m³) 유입, 유출부관로 신설(L = 176.30 m)	1,450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25】 위험지구단위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종합(이어서)

구 분		수계	위 험 지구명	일련번호	하천명	위 치	저감대책	개략사업비 (백만원)
위험지구단위	토사재해	계		4개소				970
		청초천	조양토사1	SO-06-001	청대3천	조양동(조양동) 산 359번지 일원	사방댐 설치 -9.0 × 6.0 × 2.0 (상장×하장×전고)	150
		쌍천	대포토사1	SO-08-001	절골천	도문동(대포동) 산 256번지 일원	사방댐 설치(2개소) -10.0 × 7.0 × 2.5 -9.0 × 6.0 × 2.0 (상장×하장×전고)	320
			대포토사2	SO-08-002	사그매골천	도문동(대포동) 436-1번지 일원	사방댐 설치(2개소) -12.0 × 8.0 × 3.0 -9.0 × 6.0 × 2.0 (상장×하장×전고)	350
			대포토사3	SO-08-003	노루목천	설악동(대포동) 산 3번지 일원	사방댐 설치 -9.0 × 6.0 × 2.0 (상장×하장×전고)	150
	사면재해	계		12개소				5,220
		청초천	영랑5	SL-01-105	-	장사동(영랑동) 645-35	경사완화 표면보호공 산마루측구 설치	165
			영랑6	SL-01-106	-	영랑동(영랑동) 9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산마루측구 설치	160
			동명11	SL-02-107	-	동명동(동명동) 365-9	R/C옹벽, 면정리 배수로 설치	125
			교동2	SL-04-101	-	교동(교동) 799-30	법면보호공 산마루측구 설치	20
			청학	SL-05-107	-	청학동(교동) 642-5	경사완화+법면보호공 이주 대책(8동)	2,460
			조양8	SL-06-107	-	조양동(조양동) 1196-3	법면보호공 돌망태 옹벽	130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26】 위험지구단위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종합(이어서)

구 분		수계	위 험 지구명	일련번호	하천명	위 치	저감대책	개략사업비 (백만원)
위험지구단위	사면재해	쌍천	대포1	SL-08-101	-	대포동(대포동) 296, 295	법면보호공 Soil Nailing 이주 대책(1동)	1,270
			대포3	SL-08-103	-	도문동(대포동) 산306-1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Random Rock Bolt	330
			대포4	SL-08-104	-	도문동(대포동) 산307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Random Rock Bolt	230
			설악2	SL-08-110	-	설악동(대포동) 산11, 74-3	야계 사방 배수로 정비	140
			설악3	SL-08-111	-	설악동(대포동) 151-8	야계 사방 도수로 설치	100
			설악05-03-01	SL-08-141	-	설악동(대포동) 산41 (비룡폭포구간)	흙깍기공	90
	해안재해	계		9개소				15,190
		청초천	장사 A지구	ON-01-001	-	장사동(영랑동) 532, 533, 542번지 일원	해빈준설 및 침식지역 모래 유용	60
			장사 B지구	ON-01-002	-	장사동(영랑동) 548-9 & 12 방파제, 배후지 일원	하부 보강 및 상치 재설치	840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표 3-7-1-27】 위험지구단위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종합(이어서)

구 분		수계	위 험 지구명	일련번호	하천명	위 치	저감대책	개략사업비 (백만원)
위험지구단위	해안재해	청초천	영랑 A지구	ON-01-004	-	장사동(영랑동) 577-30~42번지 일원	지중탐사(GPR)·보수 양빈 3회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하부보호공 연안흐름모니터링	2,320
			영랑 B지구	ON-01-005	-	영랑동(영랑동) 148-40~190번지 일원	헤드랜드 보강 지중탐사(GPR)·보수 양빈 3회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하부보호공 연안흐름모니터링	3,630
			영랑 C지구	ON-01-006	-	영랑동(영랑동) 147-1~20-15번지 일원	헤드랜드 보강 지중탐사(GPR)·보수 양빈 3회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하부보호공 연안흐름모니터링	3,530
			동명 지구	ON-02-001	-	영랑동(영랑동) 1-17~18번지 일원	이주대책 수립	2,510
			청호 지구	ON-07-001	-	청호동 550-11~조양동 1450-79번지 일원	지중탐사(GPR)·보수 연안흐름모니터링	560
			교동 지구	ON-04-001	-	교동(교동) 664-322, 482-304번지 일원	문비 배수펌프	90
			조양 지구	ON-06-001	-	조양동 1450-158~ 대포동 591번지 일원	해안산책로 철거 양빈 3회 및 유지관리 연안흐름모니터링	1,650
	기타재해	계		2개소				5,050
		청초천	자활1 지구	ET-05-001	자활1천	노학동(노학동) 1006-146번지 일원	교량재가설 1개소	1,070
		쌍천	도문3 지구	ET-08-003	쌍천	도문동(대포동) 16번지 일원	교량재가설 1개소	3,980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2. 문제진단

01 재난예방능력과 대비태세 결여

- 재난전문 인력의 확보 및 양성방안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재해 이력과 재해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재난 관련 기구가 통합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나타남
- 재해·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재난 위험시설 장·단기 해소추진, 월별 중점안전점검 실시 등 재난 사전예방 능력이 결여됨
- 재난 관리단계별 표준행동절차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금조성,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02 인적재난의 증가

- 화재, 교통사고, 범죄발생 등 인적재난의 꾸준한 발생으로 시민의식 제고 및 사고 발생률 저하를 위한 효율적 대책 마련이 시급
- 노후화 된 건물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재난 발생 증가

03 방재시스템 미비

- 기후의 변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미비
- 재난 발생시 현장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긴급구조기관 간 협조체제 및 긴급구조 발생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

04 안전교육의 체계화

- 범시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이 요구됨
- 실습·체험프로그램·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발·연구하여 안전교육을 체계화

3. 재난여건 전망

01 건축물 노후화와 도로 협소구간 증가

- 노후 건축물로 인해 화재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등 재난에 대한 우려 증가
- 도로 정비 및 원활한 교통체계가 필요한 도로에 소방도로 및 피난로 확보 등 대응책 마련
- 소방시설 설치 확보, 자율방재단의 지속적 운영 필요

0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증가

- 각종 기후현상에 대한 예측 곤란
- 기후 이상 현상으로 장마일수는 줄어드나 국지적이고, 가뭄, 폭설 등 기상재해가 잦고, 기후가 급진적으로 변화
- 근 10년간 지진발생횟수는 786회로 30년간의 1,312회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의 대책마련 필요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1. 계획목표

01 재난예방능력 제고

· 재해발생위험지역 및 상습침수구역 등 피해발생예상지역에는 개발억제 및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여 향후 발생 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피해규모를 최소화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추진, 월별 중점안전점검 실시 등 재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

02 재난대비태세 강구

· 재난관리단계별 표준행동절차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금조성,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

03 긴급구조능력 강화

·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함

04 국민 안전의식 제고

·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

2. 기본방향

01 자연적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

-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개수 및 관리의 조직화와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사방사업을 실시
- 소하천 중 상습지를 우선 선정·정비하여 인명·농지·주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하천 정비계획을 준수하여 정비율을 높이도록 관리
- 지속적인 소하천의 정비로 농경지 침수 및 재해의 사전예방

02 사회적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

- 사회적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실행
- 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은 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를 기하고 밀집주거지를 정비하여 소방도로를 확보
- 교통사고는 도로교통체계의 확립 및 시설의 보완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교육을 강화

03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 과거 재해이력이 있는 지역의 지속적 점검 및 사전예방 대책 마련
- 재해취약성분석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신규개발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계획 수립
- 재해유형별 구분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수립

04 종합적인 도시방재체계 구축

- 종합적 도시방재 정보체계 및 종합행정체계 도입으로 관련기관과 재해지역간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
- 광역적 방재활동체계의 정비와 시설의 내실화 및 방재인력의 전문화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각종시설의 보호와 군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도시방호시설을 강화하고 다양화, 대형화에 의한 도시형 재해에 대비한 인력, 장비의 보강과 함께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
- 유사시 도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별·유형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 재해응급, 재해복구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

05 도시계획을 통한 방재계획 실현

- 재해위험 검토지역에 대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관리
- 기반시설의 재해 예방능력과 복구능력의 강화 등 방재안전성 제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재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사전 심의제도 도입
- 침수우려지역은 택지, 공장 등으로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재해방지대책 수립 후 개발
- 수해 상습지, 산사태 위험 급경사지 등 과거 태풍에 의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가화예정용지로의 계획에서 제외하고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 등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라도 침수심이 높은 지역은 제외함

3 방재계획

1.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 재해예방대책 수립

1.1 재해취약성 분석에 따른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수립

· '속초시 풍수해종합대책계획(2017.12)' 기반으로 한 개략적인 재해취약성 분석에 따른 재해유형별 구분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01 하천재해 저감대책

· 하천재해에 따른 대책방안은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구조적 대책은 시설물의 정비를 의미하며, 비구조적 대책은 행정적 유도정책임

·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특성과 주변지역의 적합한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제방승고(증축) 또는 보축, 하천 통수단면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하상에 대한 안정 및 주기적인 유지관리, 비탈면의 수목, 잡초제거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예·경보, 침수심 결정에 따른 방재지도의 작성·활용, 홍수보험제도, 공공장소 현황판 설치, 방재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이 있음

02 내수재해 저감대책

· 내수재해와 관련된 방재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구조적 대책은 시설물의 정비를 의미하여, 비구조적 대책은 행정적 유도정책임

·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정비사업, 우수유출억제대책, 홍수조절계획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저수지 운영, 홍수예·경보, 토지이용제한, 홍수보험제도, 방재지도 작성 및 활용 등이 있음

03 사면재해 저감대책

▮ 낙석 및 사면붕괴로 인한 사면 취약지 매몰

- 정기적인 사면취약지역 조사를 통해 산사태 위험지구를 확대 지정함
- 매년 해빙기와 집중호우 발생 전·후에 사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낙석·붕괴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시행함
- 용출작용에 의한 사면 불안정성 문제는 용출수의 이동이 중지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면 안정 조사시 용출수 이동이나 방향 전환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수행하여야 함
- 사면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홍보·훈련 활동 실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면안정공법을 도입·적용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함
- 사면 취약 지구에 입지한 노후화 주택의 개량 작업을 실시하며, 단계적인 이주 사업을 계획·추진
- 사면위험지역 분포도를 제작, 실시간 관측 및 감지·통보 시스템을 개발·보급

▮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처리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 매년 해빙기와 집중호우 발생 전·후에 사면의 배수처리시설 기능을 재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
- 사면 활동 범위에 인접한 공사 준공 시 사면 안전에 대한 안정성 검토요건 강화
- 지표면과 수로의 일체시공을 위한 시방 및 시설기준을 개발하여 활용
- 사면에 위치한 배수관로는 수평 및 수직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
- 사면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강우특성을 고려한 배수로 시설기준을 강화 및 지침을 개발

▌옹벽 등 토사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 집중호우 발생 전·후에 옹벽이나 토사방지시설의 배수 효과를 재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

· 옹벽 등 토사방지시설의 설계 시 집중호우로 인한 활동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시공 감리 등의 지도·감독 활동을 강화

· 집중호우 발생 전·후를 고려한 정기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집중 관리·정비

· 해당지역 사면의 지질 특성(풍화대, 주향, 경사, 절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 개발 등으로 획일적 시공을 지양

· 지반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강공법(보강토 공법, 앵커공법 등)을 지정·시공토록 하여 안전율 및 예상 파괴면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

▌사고관리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중

· 도로 측부에 완충 공간의 설치를 검토하여 유실이나 사면붕괴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나 매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 도로나 철도 노선에 사면 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 사면 재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피 지시, 교통 통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 책임 및 통제 권한 동시 부여 등으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

· 사면위험지역 분포도를 제작하고, 실시간 관측 및 감지·통보 시스템을 개발·보급

· 원격탐사, GIS,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적 산사태 위험분포도 및 사면 재해지도를 제작 활용

· 사면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홍보·훈련 활동을 실시

▌태풍 등에 의한 항만안전 관리 미흡

· 항만위기 대응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 필요

– 재난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나타내는 위기 대응 지표를 정의 및 대응 시나리오 구축

· 항만재난 및 재해 대응 점검체계 재확립 및 광역적 차원에서 대체항만의 기능 강화

–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항만기능 마비를 대비 즉각적 대체부두의 지정 등 대응 단계별 지표마련

04 토사재해 저감대책

▮ 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 산사태피해지역, 벌목지역, 산불피해지역, 공사지역 등 비상시에는 사면보호공, 침사지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
- 장기적인 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대책으로 수목의 활착을 통한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수립
- 벌목지의 경우 벌목한 목재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마다 횡방향 배수를 유도
- 나지와 피복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경계에는 목재를 이용한 보호시설을 설치
- 계곡수 유입부 등에는 저류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

▮ 하천시설물 피해

- 자연재료를 이용하고, 현재의 유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방보강을 실시
- 산지하천의 경우 조도계수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로를 직선화하는 방법으로 개수를 실시 할 경우 유속증가로 인해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함
- 계곡수유입부, 하천복개시점 직상류부 등에는 저류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

▮ 도시지역 내수 침수

- 토사유출량을 고려하여 유입구의 규격 및 간격을 결정
- 침사지 등의 토사 및 잡물제거가 용이한 시설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
- 계곡수유입부, 하천복개시점 직상류부 등에는 저류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

▮ 하천 통수능력 저하

- 적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퇴적량과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입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일정간격마다 보를 설치
- 하천 통수능력 저하방지를 위해 홍수 전·후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적인 준설 계획을 수립
- 계곡물 유입부, 하천복개시점 직상류부 등에는 저류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

▮ 저수지의 저수능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 저수지의 설계시 적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

· 이수시설물 설계시 적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취수구의 위치를 결정

· 저수지 및 이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 및 준설방안을 수립

· 계곡수유입부, 하천복개시점 직상류부 등에는 저류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

▮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 하천의 유송토사량 감소를 위한 사방시설을 설치

· 유수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류제를 설치하여 하천토사를 소류

· 정기적인 계측 및 준설방안을 수립

▮ 농경지 피해

· 침수피해 발생 후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계획

· 계곡수유입부 등에는 저류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

▮ 양식장 피해

· 홍수발생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부유사를 최대한 억제

05 해안재해 저감대책

· 해안 인근의 조류에 대한 연안흐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흐름 변화양상 분석으로 정확한 침.퇴적 원인분석을 실시

·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에 속초해수욕장의 해안침식 저감을 위해 외해측에 잠재, 헤드랜드 설치 등을 계획하여 2020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음

【표 3-7-3-1】 해안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총괄

지구 번호	위험 지구명	주 소	사업유형	사업비 (백만원)	주요위험 유형	저감대책 유형
ON-01 -001	장사 A지구	장사동(영랑동) 532, 533, 542번지 일원	해빈준설 및 침식지역 모래 유용	60	해일위험	구조적 대책
ON-01 -002	장사 B지구	장사동(영랑동) 548-9 & 12 방파제, 배후지 일원	하부 보강 및 상치 재설치	840	해일위험	구조적 대책
ON-01 -004	영랑 A지구	장사동(영랑동) 577-30~42번지 일원	지중탐사(GPR)·보수, 양빈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하부보호공, 연안흐름모니터링	2,320	해일위험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ON-01 -005	영랑 B지구	영랑동(영랑동) 148-40~190번지 일원	헤드랜드 보강, 지중탐사(GPR)·보수, 양빈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하부보호공, 연안흐름모니터링	3,630	해일위험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ON-01 -006	영랑 C지구	영랑동(영랑동) 147-1~20-15번지 일원	헤드랜드 보강, 지중탐사(GPR)·보수, 양빈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하부보호공, 연안흐름모니터링	3,530	해일위험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출처 : 속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2017년

06 바람재해 저감대책

- 기상 악화 시 예찰활동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 옥외광고물 건물주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안전도검사는 구조전문가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
- 새롭게 정해진 규격대로 시공을 지원해 추가적인 비닐하우스를 설계
- 태풍사전대책(밀폐조치, 환기팬 가동, 밴드고정) 등을 교육 및 홍보
- 강풍에 과실목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대를 보강
- 대형광고물의 관리등급은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연결앵글 및 시공부실로 인하여 강풍에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07 산림재해저감대책

▮ 지능형 산림재해 예측

· (산사태 조기감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산사태 조기감지시스템 통합 구축

- 무인원격시스템의 센싱정보의 수집 저장 통합시스템과 스마트모바일서비스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 전국 산지경사면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산사태 조기감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대응능력 강화

· (밀착형 산불감시체계) 밀착형 산불감시체계 구축하여 능동적 감시.감독 강화

- 산림을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 영상(CCTV)으로부터, 산불 발생 시 딥러닝기반의 영상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산불을 감지(산불 위험도 정보와 감시카메라 제어 정보의 연계를 통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감시 명령 전달)
- 산불감시원이 지정된 감시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자동으로 탐지하여 소관 관리자에게 경고알림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 마련
- 산불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로부터 기상·지형 정보를 통해 산불의 진행방향에 대한 예측서비스 활용하여 대형산불 확산 억제(예측된 산불확산경로를 바탕으로 진화선 선정, 대피경로, 주요시설물 보호 등 진화전략 수립 지원, 산불행동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

· (산림병해충 의사결정 지원) 산림병해충 확산 알고리즘을 반영한 확산·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발병 초기 적극적인 방제정책에 활용

- 위성·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확산 예측 기술 개발(영상정보(위성, 드론)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지능형 알고리즘 개발하여 확산 예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적용)

▮ 산불 감시

· (산불위험 통합예보)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위험 통합예보체계 연구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발생 패턴변화 시나리오 구축 및 계절예보 체계 개발
-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기 산불위험 예보 알고리즘 고도화 및 중·장기 예보 알고리즘 개발

· (산불피해 관리기술 개발) 대형산불 발생 규명 및 맞춤형 피해 저감 관리 기술 개발

- 컴퓨터 비전 융합기술을 활용한 개체목 단위 연료량 연구·분석
- 맞춤형 산림인접 보호시설별 피해위험성 평가시스템 개발
- 산불연료관리 추정체계 및 관리 우선대상지역 선정 알고리즘 개발

· (AI 활용 산불진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 진화대응 알고리즘 개발

-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차량, 진화대 등 최적의 산불진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연구개발
- 인공지능 기반 산불진화훈련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산불확산예측모델 고도화) 산불 진행 중 실시간 기상변화와 산불에 의한 국지적 기상 교란 현상을 반영하는 고해상도 산불확산 예측모델 개발

▮ 산사태 감지

· (산사태 위험 통합예보) 무인 원격감시 등을 통한 산사태 위험 통합예보 기술 개발

- 산사태위험지도 현행화 및 활용 기술 고도화
- 산악기상정보를 접목하여 산사태 예보정보 생산기술 고도화
- 도시생활권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모형 기반의 산사태 예보기술 개발
- 산사태 발생 유형에 따라 특화된 계측센서를 활용
- 무인원격 감시시스템을 활용한 변위특성 분석 기술 개발

· (지진 등 맞춤형 대응) 맞춤형 산사태 피해저감 기술 개발

-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에 의해 산사태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땅밀림 피해 현황, 피해지 특성분석 등 강우와 지진을 모두 고려한 산사태 관리 기법 기준 및 유형별 복구·관리기법 개발
- 지진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기법 개발
- 지진 후 강우에 의한 산사태 예·경보 기준 정립

▮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 (감염목 자동 탐지) 예비관찰 및 감염목 탐지기술 개발

- 영상 기반 지능형 병해충 피해목 탐지 진단 자동화 프로그램 개선(드론, 위성영상 등 원격탐사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
- 수집 방법별(위성영상, 항공사진, 드론 등) 장·단점 및 자동탐지 기술 적용과 활용가능성 검토 후 최적화된 예찰 방법 도출

· (빅데이터 분석) 산림정보·기후정보·산림병해충 생태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림병해충발생 및 확산 예측 기술 연구개발

- 산림병해충 우화시기 예측 모형 개발 및 고도화 추진(우화시기 예측모형을 토대로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2종,솔잎혹파리의 우화전망보고서 작성, 방제현장 배포)

· 산림병해충 우화 관련 온·오프라인 자료의 융합을 통해 우화시기 예측 모형 고도화

- 산림병해충 확산저지를 위한 발생위험도 평가·확산 예측알고리즘 개발

1.2 재난 유형별·단계별 재해관리 체계 구축

01 화재

- 주거지 및 상업지역에는 최저 6m이상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소방 설비를 마련하고, 홍보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화재에 대비
- 소방기구체제 강화 및 소방시설 현대화로 시설 확충 및 소방대책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요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
- 다중 이용건축물,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수체계 확립과 소방장비의 고도화 추진

02 풍수해

- 풍수해 예방 투자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
-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 및 방재시설 설치 계획 수립
- 현재의 집중호우 추세를 반영하여 하천별 홍수방어능력 검토 및 신규 개발 시 개발유역의 홍수량 사례 및 환경변화 조사 등을 통한 하류부 수해저감대책 수립
- 주요 침수지역에 대한 지점별 수위관측 보고
- 옹벽, 도로, 교량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방재시설의 개·보수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재해위험지역은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에 대비

03 지진

- 토지이용 고밀지역의 건축물 신축시 내진성, 내화성 구조물 및 내진설계 장려
- 민방위 교육을 통해 주민대피요령 및 지진대비 생활교육 실시 및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주민대피, 대피장소 및 대피로, 물자이송 등을 위한 비상도로 확보 및 사전 대비
- 교량, 고가도로 등 주요 시설물 건축시 내진설계 강화 및 적용 실태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 위험시설물의 인근지역은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분산하여 배치

04 산사태

- 산사태 방지를 위해 경사지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사면취약지역 등의 도시관리 차원의 지정을 통한 단계적 정비 추진
- 옹벽 등 토사방지시설 정기점검 등을 통해 노후시설의 집중관리 및 신규개발시 엄격한 토질조사 실시로 지반침하에 대한 방안 마련

05 설해

· 설해위험지구의 지정·관리 및 구조대책 수립
  - 신속한 상황관리를 통한 사전예방활동 전개 및 산악지역, 고립예상지구, 등산객 안전대책 강구
· 원활한 교통대책 강구
  - 인근 시군과 연계된 제설작업체계 추진, 경사·굴곡도로 등에 제설함 설치 등

06 가뭄

· 가뭄에 대비한 긴급 급수원 확보방안 마련 및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4단계 추진대책 수립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 마련 및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07 폭염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으로 피해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폭염전망 분석
· 폭염 예견 및 지속시 건설·산업 근로자의 안전대책 마련과 학교수업 단축, 휴교, 야외활동 제한 유도
· 언론매체, 홍보용 브로셔, 인터넷 등 대국민 대상 폭염준비요령 및 폭염대비 고령,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홍보
  - 폭염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무수용) 구축 방안 강구

08 산불

·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산불방지 지침 수립 및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산불방지 체계 추진상황 점검
  - 초동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진화 헬기 등 첨단장비 확충 및 체계적 관리
· 대형 산불 발생 시 광역 산불 진화대책 수립 및 긴급구조체계 확립
  - 산불확산에 대비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

09 교통사고

·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위험도로 및 교량 시설 개선, 신호기, 교통안전표시 등 교통안전 유도시설 정비
· 시민,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으로 장기적인 교통사고대책 수립
· 수송장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장비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전에 방지
·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현대화, 교통관리체계의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 사고다발지역과 학교주변 등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교통 통제

10 기타

· 대규모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방재대책 수립

2. 단계별 재해관리

01 재해예방대책의 수립

- 생활권별 방재조직을 확보하고 재해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인력, 조직의 활용정도, 긴급 상황 대처와 복구를 위한 사용 가능한 물자 등을 파악
- 주민방재센터는 지속적이고 선진화된 방재교육실시 및 재해 대비 관련연구 시행
- 상습침수지 일대를 침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 및 건물구조, 자재의 사용 등을 철저히 관리
- 침수와 산사태 등의 위험지역은 사방사업, 옹벽·석축설치 및 배수로 설치
- 방재시설물의 최소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보·확충하고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 확립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간 연결정보망 구축
- 긴급사태 발생시 정보제공을 위한 방송통신망 확보
- 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 등 법적·제도적 측면의 방재시스템 개선
- 재난취약지역 위험요인 해소방안 마련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재난발생 예견시 신속한 상황 대처 및 재해유형별 전문가 양성(전문교육기관 설립)

02 재해응급대책의 수립

- 재해대책 구조를 재정비하고 긴급구명, 구조계획, 재해대책 활동계획 등 재해응급대책 프로그램 개발
- 응급활동체제 역할분담 및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방재 유관기관과 활동체제 강화
- 119 구조대 및 구급대의 인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권역별로 적정 배치
- 경고 및 대피체계 확립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실시
- 현장대응조직의 지휘체계 확립으로 효율적 현장관리 제고 및 지방정부 방재정책 수립 및 지역방재 대응체제 확립

03 재해복구대책의 수립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 체계 확립
- 재해관리체계 및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배치·투입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방재정보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급화하여 기존의 재해원인과 피해상황 분석, 재해예방 및 경보 등의 재해대책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재해 종료 상황까지의 정확한 기록으로 재난관리체계 평가, 방재계획 보완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반의 도시방재시스템의 구축

3.1 기본개념

-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반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재난 관리시스템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이 합쳐진 개념으로 U-기술의 집적 및 융합을 통해 재난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예측과 통합적인 관리·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3.2 기본방향

- 도시안전 및 재난상황의 통합적 관리
- 방재정보시스템의 통합
-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재난관리 영역별 관련시스템과의 연계

3.3 통합방재센터 구축

· U-방재서비스는 핵심기술로 제안되는 응용시스템인 RFID시스템, 통신인프라인 FTTH, 콘텐츠 및 운영 기술인 GIS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구현되며, U-City의 도시통합운영센터 또는 도시통합관제센터에 해당하는 통합방재센터를 통해 모든 정보가 연계되고 통합·관리됨

·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한 도시방재정보체계 구축

· 재해.재난 관련 기록정보, 예측정보, 모의 시스템의 구축 및 통신정보 네트워크의 통합 운영

· 전력공급시스템 자동화, 구역화, 가스의 안전공급 및 가스공급관리의 자동화, 하천제방의 안전점검 및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 각 시스템별로 산재된 각종 데이터의 수집 및 수집 데이터의 가공 분석을 통한 표준화 정보 생성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계체계 구축



4. 광역적이고 통합적인 도시방재 종합행정체계 구축

4.1 종합적인 도시방재 행정체계 구축

· 종합적인 도시방재 행정체계 구축으로 관련기관과 재해지역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체계적인 재해예방과 재해관리를 위해 유형별·단계별 재난관리

· 풍수해 보험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4.2 광역적 방재활동체제의 정비와 시설의 내실화 및 방재인력 전문화

·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방재활동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관리에 관한 광역적 대책 및 구조체계 등 시스템 마련

· 방재 유관기관과의 상호역할 분담 및 반복적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전문화

4.3 안전교육 의무화 및 여성의 대처능력 강화

·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에 대한 재난·방재에 대한 안전교육 활성화 및 의무화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이 개인 차원의 활동을 넘어 지역으로 확대되기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안전 모니터링 활성화 등 시민 참여 방안 모색

·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재난재해 대처력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의 활동성을 높이고, 재난재해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몸쓰기 훈련 등이 지역 차원의 안전역량 강화방안 마련

5 도시방재관련 긴급 구조체계의 확립 및 재해대책의 강화

5.1 도시형 재해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 권역별 응급의료시설 적정량 확보를 통해 일상적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처
- 건축물 붕괴, 폭발사고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례조사 및 대응시스템 마련
- 신규 건축물 건축 시 소방기준에 따른 철저한 시공 유도 및 기 건축물의 경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실행
- 소방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와 주거밀집지의 경우 소방도로 우선 확보 및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방재기능을 보완
- 자원봉사학교 설립, 의용소방대 활용, 아르바이트 등의 자원봉사자 상시 인력 확보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 기 운영되고 있는 속초시 자율방재단 활성화

5.2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긴급수송, 대체운송, 긴급물자공급 등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사고다발지역, 주택가, 학교주변 등에 보호구역 및 통제구역을 지정
- 시민의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 교육 강화 및 운수종사자와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사업용 자동차 사고 예방

6. 도시계획을 통한 방재계획의 실효성 제고

6.1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방재계획 실현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화재발생, 기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 및 재난 위험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재·방화지구를 지정 및 운용
  - 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재난 이력 및 위험요인 조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를 통한 안전성 제고

· 재해·재난 위험지역 및 재해취약지구를 포함하는 신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충분한 재해위험요인 검토를 통한 제도적 안전관리 강화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및 사후평가 실시

6.2 시설물의 재해 예방·복구능력의 강화

· 비상우회도로 확충과 도로망의 정비

- 재해발생지역으로의 원활한 접근과 도시응급선 확보를 위한 비상도로 확충
- 지진, 호우,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우회도로의 확충

· 재해발생시 비상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청,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비상대피소로 사용 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피로 계획 및 장애물 설치 최소화, 돌출간판 설치의 지양 등 안전장치 마련

6.3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안전문화 기반조성

·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방재안전 소양교육 실시 및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감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재난 유형별 안전수칙,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 상식, 안전점검 실천사항, 재난안전 전화번호 안내 등
- 다양한 방재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 도시안전 분야의 봉사활동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 방재단의 지원 및 강화

6.4 도시재생사업과 방재계획 연계

· 과거 재난 이력 및 위험요인 조사 등을 통해 필요시 방재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기반시설정비사업과 연계를 통해 안전성 제고

· 노후·불량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도시구조형성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구조적 안전성 향상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방재안전계획 수립

4 도시안전계획

1. 현황 및 여건전망

1.1 예측치 못한 신종·복합 재난의 지속 발생

· 재난에 대한 대응책 미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 반복 발생

-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 지하철 화재('03),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1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14)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지속 발생

- 태풍 매미('03), 강원도 양양 산불('05), 우면산 산사태('11) 등

· 수해중심의 방지대책뿐만 아니라 신종·복합 재난 및 기후변화 재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재해대책 마련 시급

1.2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위험 증가

·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등 인공적 재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며, 속초도 최근 들어 각종 강력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시민안전 위해요소(성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범죄 등)의 양적·질적 증가 추세
- '17년 속초시 범죄 건수 4,720건/ 하루 평균 12.9건 발생

· 도시디자인이 도시미화사업에서 유니버셜디자인, CPTED 등 안전과 접목해 활용하는 트랜드로 변화됨에 따라 속초시 전반에서 효율적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디자인 접목 요구

1.3 사전 방재개념의 미흡

· 재난 발생시 대응 및 복구계획에 치중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시방재시스템 미비

·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시방재 시스템 구축 필요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2.1 개념

· CPTED란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NCPI)의 정의에 따르면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함

·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실무적 이론임

2.2 CPTED 주요원리

· CPTED는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됨

감시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접근통제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공동체 강화 (근린교류 활성화)
01. 자연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설계	
02. 접근통제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설계	
03. 영역성 강화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강화시키는 설계	
04. 활동의 활성화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설계	
05. 유지관리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설계	

01 자연감시

기 법	관련내용
자연감시	· 공간과 시설물 계획시 주변에 대한 가시범위를 최대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이웃 주민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함으로서 범죄와 불안감을 저감하는 원리 · 건물 출입구나 내부 계단, 외부 창문 등은 개방형 구조로 디자인하고 건물사이의 이격 공간 등에서 시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 야간에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명은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특히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의 불량한 조명설계는 범죄 유발요인이자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함


<개방형 개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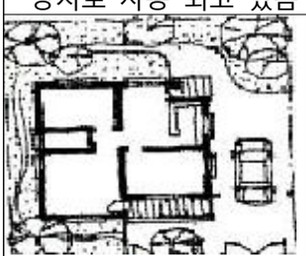

<담장 허물기>


<야간의 활동을 위한 조명>

출처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년

02 접근통제

기 법	관련내용
접근통제	·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동의 노출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 자연적 접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원과 같은 전문인력 배치와 첨단출입통제 장치, 무인경비시스템 등과 같은 기계적, 인적 보안대책이 병행
	· 방범용 CCTV는 기계적 감시와 접근통제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방범벨 또는 비상벨, 인체 탐지기 등도 접근통제 장치로 사용 되고 있음



<출입구 수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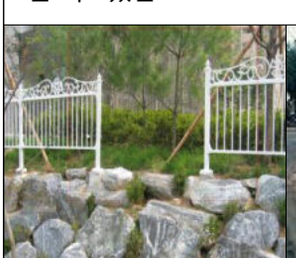

<침입통제 시설 설치>


<건물 이격공간 접근통제>

출처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년

03 영역성 강화

기 법	관련내용
영역성 강 화	·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조성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스스로 감시받거나 제지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시키는 원리
	· 영역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울타리, 각종 표지판, 조경식재, 한평공원 조성, 도로 포장 변화 등과 같은 소유권을 표현하는 물리적 특징을 사용할 수 있음


<공사적 영역 사이 완충공간>


<완충공간 형성을 위한 디자인>



<이해하기 쉬운 안내표지판>

출처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년

04 활용성 증대(활동지원 시설의 설치)

기 법	관련내용
활용성 증대	·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eyes on the street)를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원리
	· 공간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 주로 공공부문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으로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통한 핫스팟(hot spot)을 설정 후 핫스팟을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소금길'을 조성하고 운동 동선으로 조성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계획> <가로 활성화를 위한 시설계획> <환경정비와 연계된 보행공간 계획>

출처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년

05 유지관리

기 법	관련내용
유지관리	·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 설계 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관리가 쉽도록 계획·설계하여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키는 원리
	· 깨진 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리되지 않는 공간과 시설에서는 주민책임의식 약화와 맞물려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 될 수 있음
	·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는 장소와 시설물은 사용자에 대한 통제나 관심 부족을 표시함으로써 무질서와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와 유지관리가 필요
	  
	<낙서로 훼손된 벽 방지> <가로정비> <내구성 있는 재료선택>

출처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년

2.3 CPTED의 세부적인 설계전략

기 법	관련내용
1.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물설계나 도시계획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인하고 범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함 · 건물내의 예리한 코너, 돌출부위, 기둥 등 시야선을 방해하는 것은 가능한 제거함 · 개조가 불가능한곳은 CCTV, 볼록거울과 같은 기계적 장비를 설치하여 시야선 확보
2. 적합한 조명의 사용	· 보행자 도로, 뒷 골목길, 공공장소의 접근 통로에서는 10미터 거리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함 · 외딴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조명의 설치를 가능한 피해야 함 · 조명은 그림자와 조명지역사의 명암차이를 줄이기 위해 균일하게 밝혀져야 함 · 높은 조도를 사용하기보다는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그림자를 감소시키고 과다한 눈부심을 피할 수 있음
3. 고립지역 개선	· 계단 및 경사로는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개방하여 주변에서 충분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계획 · 도로에서 떨어진 빌딩은 고립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함 · 주차장 진출입에 이용되는 통로는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설계함 · 고립지역임을 알리고 대체통로를 표시한 표지판은 조명을 밝혀 표시함
4. 사각지대의 개선	· 지형상 숨을 수 있는 장소, 인적이 드문 골목, 벽으로 둘러싸인 지역, 주요보행로 주변의 저장창고와 같은 함정지역은 제거함 · 제거가 어려운 함정지역은 일과시간 이후나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폐쇄 · 승강기 문에 유리창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승강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승강기 내에 CCTV,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기 법	관련내용
5. 부지 용도 다양화	· 부지활용은 무계획적으로 운용 되어서는 안되며, 각 시설물의 용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배치되어야 함 · 부지의 다양한 사용은 사람의 활동, 자연적 감시, 사람사이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함
6. 활동인자	· 허가받은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공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함 · 공원은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활동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사용
7. 영역성 강화	· 올바른 관리가 되지 않고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지역을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함 · 일상적인 시설을 위하여 사용된 재료는 관리 필요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잘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8.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적정한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표지판과 지도는 지역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함 · 표지판은 분명하고 일관되어야 하며 메시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함 · 표지판은 크고 읽기 쉽게 제작하며, 간단한 지도와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표지판은 교차로나 입구 근처와 같은 위치의 적당한 높이에 설치해서 잘 보이도록 함
9. 공간 설계	· 해당 시설의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야함 · 공간의 설계는 이해하기 쉽게 만듦

출처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3년

3. 셉테드(CPTED) 세부계획

3.1 법정계획

- 2014년 연말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됨
- 「건축법」을 개정해 2014년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
-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13.03.05)

▮ 건축물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3. 1, 국토교통부)

목 적	·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
적용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 일반 건축물 中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적용범위	·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 제시 ·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가능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 사항	·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 · 해당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 등 범죄위험 평가를 권장 ·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시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 공적장소와 사적장소 간 공간 위계를 명확히 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설계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치 정보나 지역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방안을 고려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 고려 ·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동 출입구에 문주 등 상징물 사용 사례  주동 출입구 시야 차단 사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 외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 ·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 ·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 적정하게 유지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조명에 대한 설계기준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하기 위해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함 ·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함

주) 공동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은 세부적으로 제시

3.2 적용계획

· 신규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보행자도로, 계단실 등의 공용공간에 대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및 색채, 조경계획, 동선계획,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

-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 어린이놀이터, 여성쉼터 등의 공간 배치
- 공원 경계는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으로 영역 구분
- 어린이 놀이터, 보행자도로변 등 자연 감시가 용이하도록 교목 식재
- 학교주변, 골목길, 정류장 사각지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지하도 직선화 및 절점부 비상벨·CCTV 설치
-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건물 내부를 관찰 가능한 투시형 유리 설치
- 지하주차장 등 취약부분 집중 조명 설치

· 허용되지 않는 출입을 통제하는 '접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계획, 조경, 구조물 계획 수립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분리 계획
-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주차장 접근통제
- 필로티 건축물 설계

3.3 속초시 적용 사례

· 시민의 통행이 적고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귀갓길 중 어두운 장소를 분석, 범죄취약지역 약 20개소를 선정하여 로고젝터 설치사업 실시

- 금호동 주변 3곳 시범설치, 이후 청호성당 등 20개소

설치사례 1	설치사례 2
	

출처 : ㈜큐엘 홈페이지

5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1.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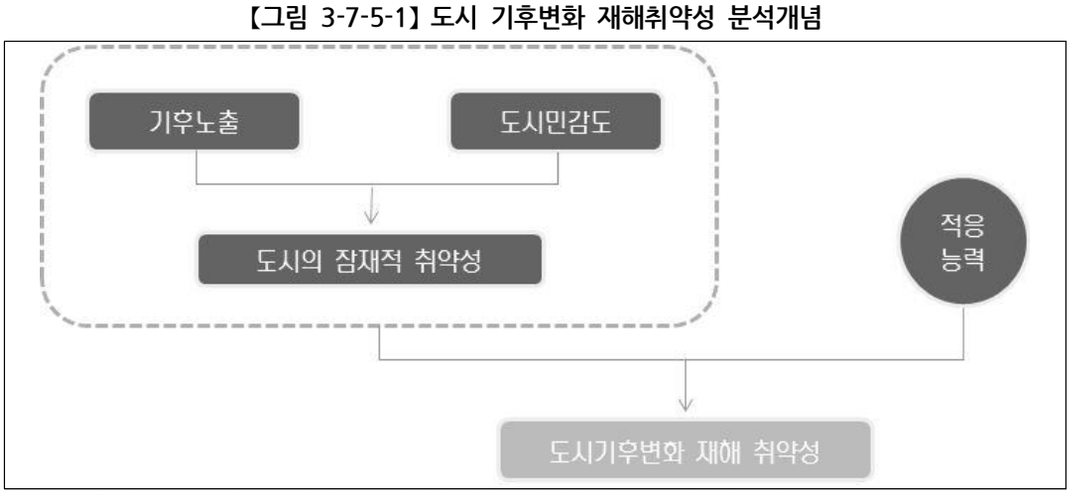
1.1 배경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면산 산사태', '예측 불가한 폭우로 인한 침수'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재해취약성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2018.12.21.) 및 시행(2018.12.21.)
- 도시의 재해별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분석이 필요한 재해에 대해 지역별로 취약성을 분석하여 등급화
- 또한, 재해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1.29.)
  - 재해취약성분석제도는 도시의 기후, 개발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재해취약등급을 도출하고 도시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1.2 분석개념 및 구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은 IPCC(2007)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 도시 민감도(Sensitivity)에 의한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기본틀을 마련함

【그림 3-7-5-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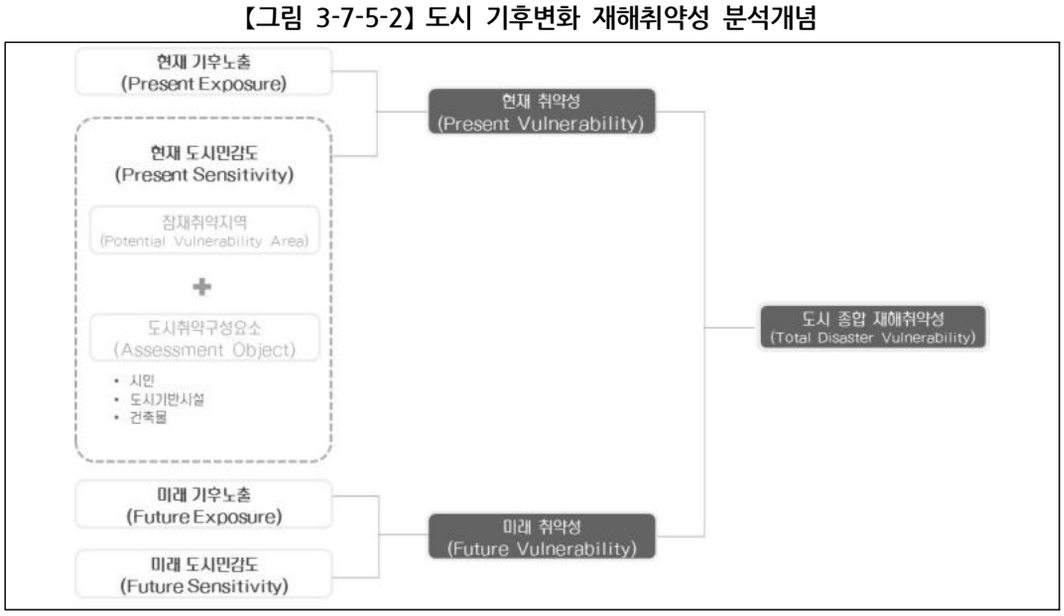
출처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VER 3.1, 2014년

- 기후노출(Exposure) : 기후변화 재해를 유발하는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나타냄
- 도시 민감도(Sensitivity) : 기후변화 재해에 따른 도시의 물리적 취약특성과 도시구성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함
- 재해취약성은 Ⅰ-Ⅳ등급으로 등급화하고, Ⅰ등급이 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재해취약지역은 Ⅰ, Ⅱ등급 지역을 의미함

·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은 현재 취약성(Present Vulnerability), 미래 취약성(Future Vulnerability),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으로 구분

- 현재 취약성은 과거부터 현재(보통 30년)까지의 기상 관측치에 의한 현재 기후노출(Present Exposure)과 현재의 잠재취약지역과 도시취약구성요소를 중첩한 도시민감도(Present Sensitivity)로 나타냄
- 미래 취약성은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기반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기후노출(Future Exposure)과 미래의 도시개발전망 등을 반영한 도시민감도(Future Sensitivity)로 나타냄
- 분석결과로 나타난 위험지역(1, 2등급)에 한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정확한 취약지역을 도출하도록 함

【그림 3-7-5-2】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개념



출처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VER 3.1, 2014년

1.3 분석절차

▮ 지자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지자체 피해 현황 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해발생특성 파악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회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분석

▮ 취약성 분석 대상 재해유형 선정

- 지자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이해관계자(관련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자체의 분석 대상 재해유형 선정
- 폭우재해는 우리나라 기상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모든 지자체에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고, 해수면상승은 해안을 포함하는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

▮ 대상 재해별, 지표별 관련 DB 구축

-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상 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지자체,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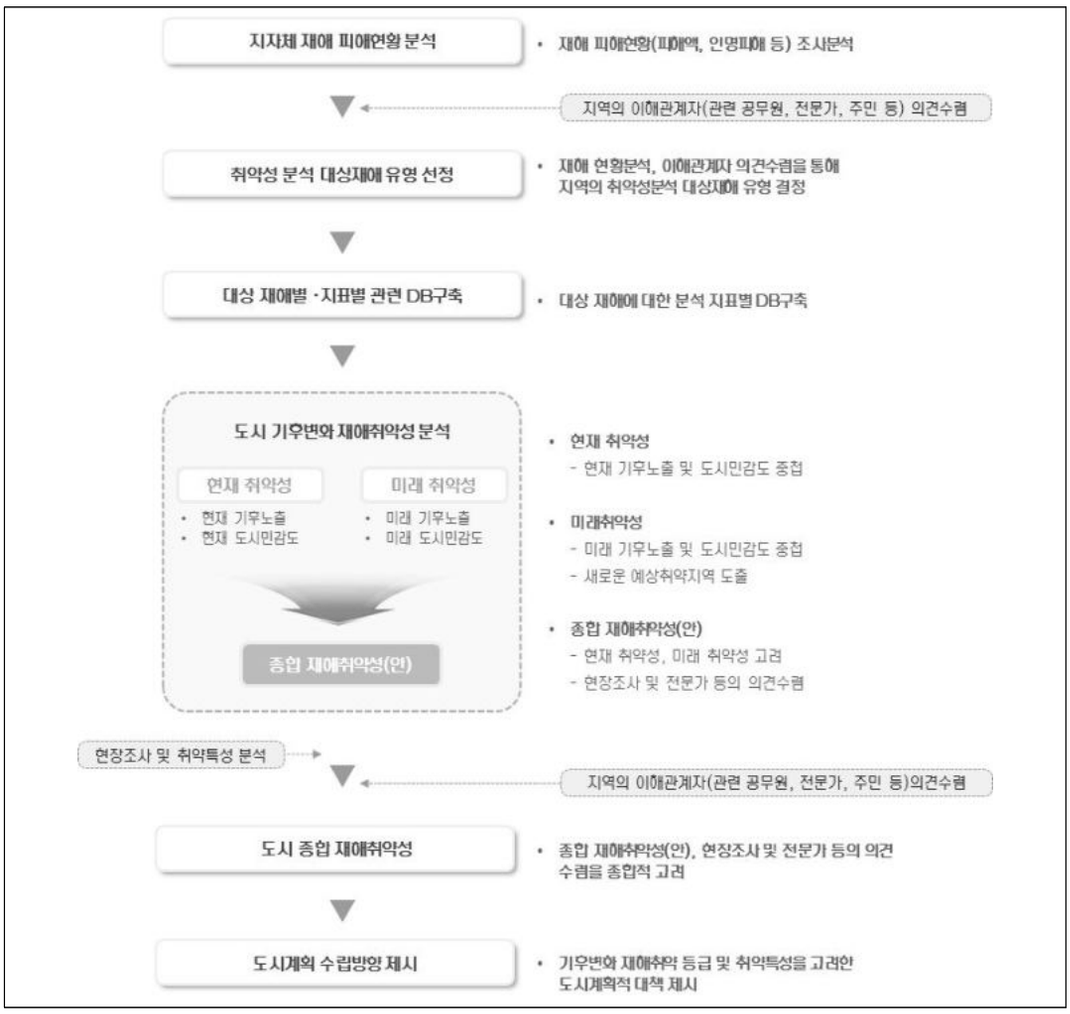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현재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분석결과를 중첩 및 등급화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 도출
- 미래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분석결과를 중첩 및 등급화하여 미래의 새로운 예상 재해취약지역 도출
- 현재 취약성 분석결과와 미래의 예상 재해취약지역을 중첩하여 종합 재해취약성(안) 제시

▮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 현장조사 및 공간분석, 지역 이해관계자(관련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을 확정

【그림 3-7-5-3】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개념



출처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VER 3.1, 2014년

2. 분석지표 및 분석범위

2.1 재해취약성 분석

2.1.1 최소 공간범위 설정

01 개 념

· 재해취약성 분석의 최소 공간범위는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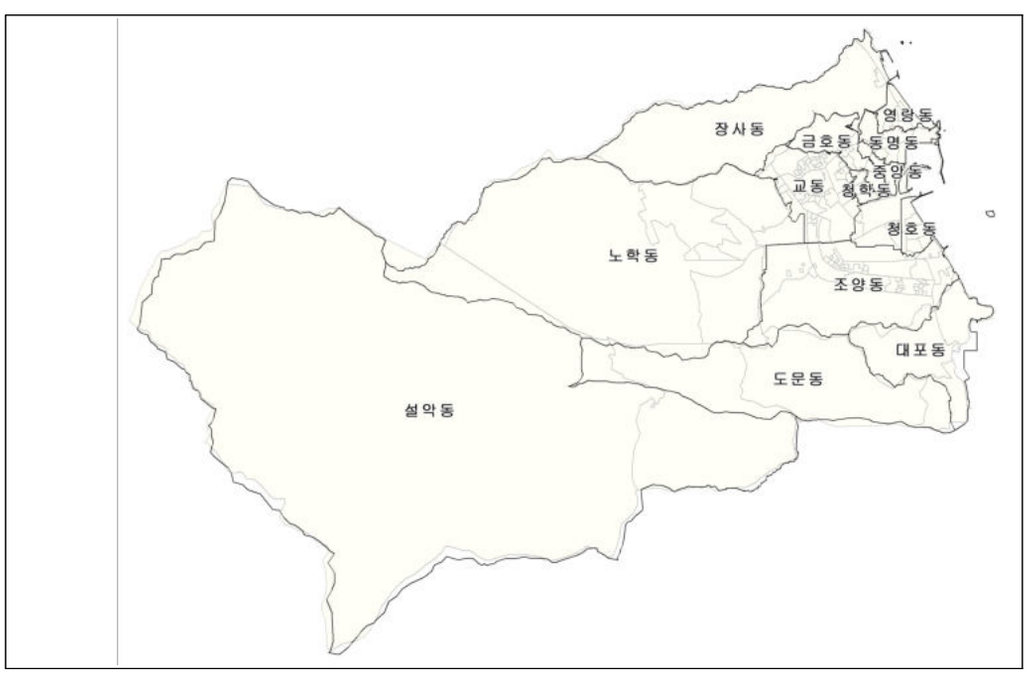
· 집계구는 인구센서스 조사 시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주변 도로, 하천, 철도, 산능선 등과 같은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구획한 공간단위구역으로, 보통 읍면동의 1/23 크기(출처 :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02 속초시 집계구 현황

· SGIS에서 추출한 속초시 집계구는 8개로 크게 나뉘고 더 세분되어 총 133개로 구성됨

【표 3-7-5-1】 집계구 현황(법정도 기준)

대분류	소분류	비고
8개	133개	
3206051	8개	
3206052	6개	
3206054	11개	
3206056	17개	
3206057	39개	
3206058	39개	
3206059	7개	
3206060	6개	



출처 :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보고서, 2015년

03 분석방법

▮ 표준화

· 관측값이 다른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중첩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에 의해 표준화하는 Z-score를 활용

· Z-score 값을 구한 후 이를 다시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표 3-7-5-2】 표준화 개념

구 분	개념	공식
분석지표 점수	해당 분석지표를 집계구 기준으로 점수화	분석지표 점수 = 집계구 내 분석지표 / 집계구 면적
Z-score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점수화	$z_i = \frac{X_i - X_{mean}}{X_{std}}$ z_i : Z-score 값 X_i : 지표값 X_{mean} : 지표평균값 X_{std} : 지표값들의 표준편차
		Z-score = (개별 분석지표 점수 – 분석지표 점수의 평균) / 분산
표준화 지수	z-score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	$Z-score_{Normal} = a \cdot z-score + b$ $a = \frac{1}{(Z-score_{\max}) - (Z-score_{\min})}$ $b = \frac{-Z-score_{\min}}{(Z-score_{\max}) - (Z-score_{\min})}$ $Z = score_{Normal}$ = 표준화된 Z스코어

▌ 등급화

· 현재 취약성은 현재 기후노출(I~IV)과 현재 도시민감도(I~IV)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Matrix) 상의 매칭 등급으로 등급화(I~IV)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I, II등급) 등급 도출

–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현재 취약성은 I등급으로 갈수록 취약

【표 3-7-5-3】 현재취약성 등급 구분표

현재 기후노출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Ⅳ	Ⅳ	Ⅳ	Ⅳ
현재 도시민감도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현재 취약성	Ⅰ	Ⅱ	Ⅱ	Ⅲ	Ⅱ	Ⅱ	Ⅲ	Ⅲ	Ⅱ	Ⅲ	Ⅲ	Ⅳ	Ⅲ	Ⅲ	Ⅳ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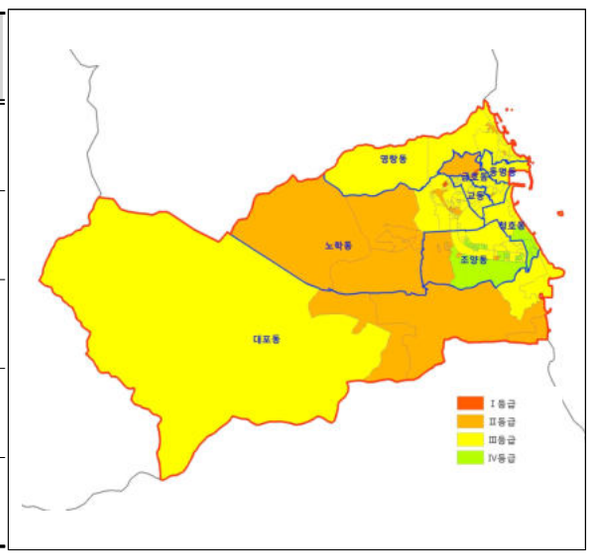
3.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3.1 폭우

· 폭우에 대한 종합 재해취약성 등급은 Ⅱ~Ⅲ등급지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학동, 대포동(도문,대포)에 Ⅱ등급 지역이 다수분포

【표 3-7-5-4】 폭우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결과

구분	개소	면적 (㎢)	구성비 (%)
계	165	107.12	100.0
Ⅰ등급	4	0.05	0.1
Ⅱ등급	28	33	30.8
Ⅲ등급	100	71.25	66.5
Ⅳ등급	33	2.8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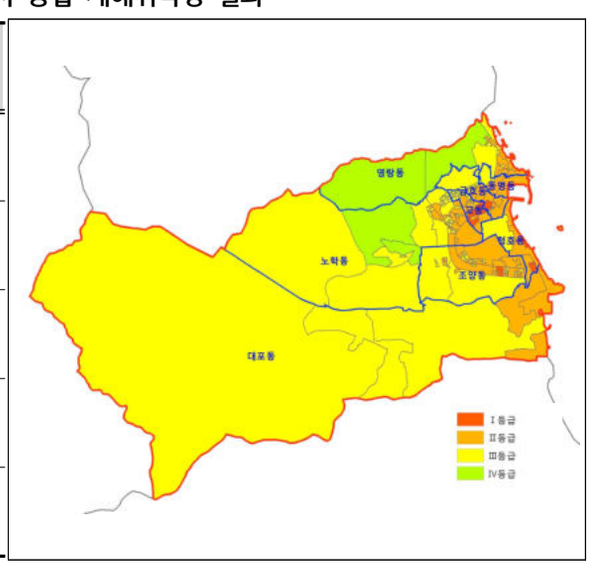


3.2 폭염

· 폭염에 대한 종합 재해취약성 등급은 Ⅲ등급이 주를 이루나, 녹지가 부족한 해안가 인근에 Ⅱ등급지가 밀집되어 있음

【표 3-7-5-5】 폭염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결과

구분	개소	면적 (㎢)	구성비 (%)
계	165	107.12	100
Ⅰ등급	7	0.45	0.42
Ⅱ등급	75	8.77	8.19
Ⅲ등급	78	87.9	82.06
Ⅳ등급	5	10	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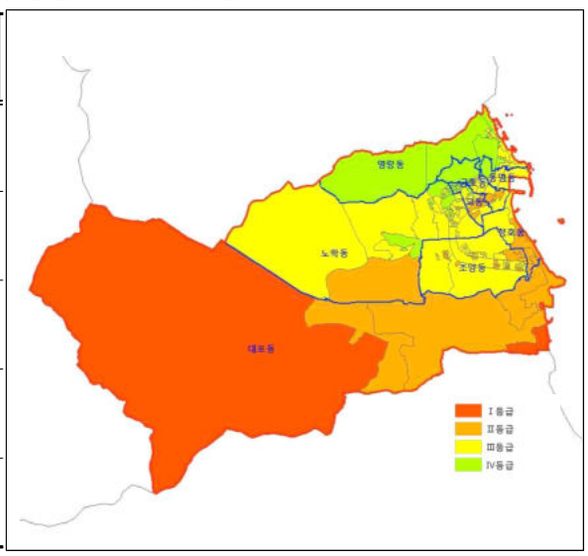


3.3 폭설

· 폭설에 대해 Ⅰ등급지가 50.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설악산과 대포동 일원에 Ⅰ~Ⅱ등급지로 분석됨

【표 3-7-5-6】 폭설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결과

구분	개소	면적 (㎢)	구성비 (%)
계	165	107.12	100
Ⅰ등급	2	54.05	50.46
Ⅱ등급	29	19.5	18.2
Ⅲ등급	90	23.91	22.32
Ⅳ등급	44	9.66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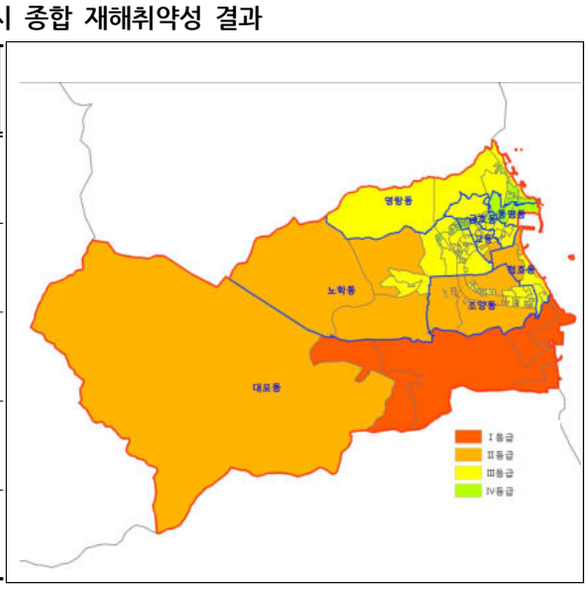


3.4 가뭄

· 속초시는 전반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상황이며, 방재대책수립이 필요한 Ⅱ등급지 이상이 86%를 보임

【표 3-7-5-7】 가뭄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결과

구분	개소	면적 (㎢)	구성비 (%)
계	165	107.12	100
Ⅰ등급	5	14.91	13.92
Ⅱ등급	24	76.15	71.09
Ⅲ등급	101	14.56	13.59
Ⅳ등급	35	1.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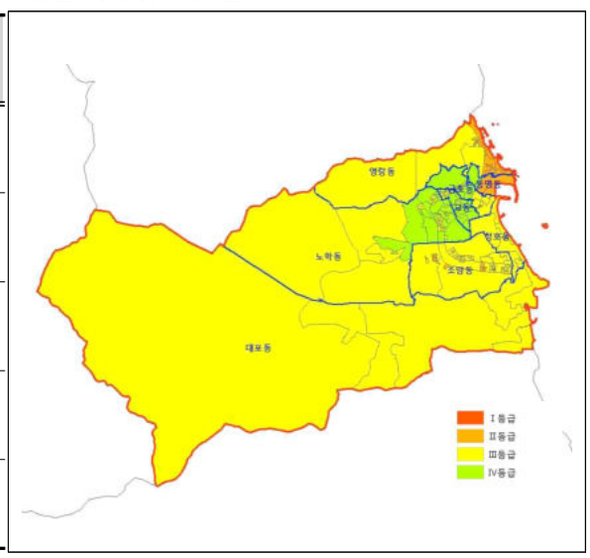


3.5 강풍

· 강풍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랑동 해안가 일부에 한해 Ⅱ등급지로 분석됨

【표 3-7-5-8】 강풍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결과

구분	개소	면적 (㎢)	구성비 (%)
계	165	107.12	100
Ⅰ등급	0	0	0
Ⅱ등급	20	1.41	1.32
Ⅲ등급	105	100.56	93.87
Ⅳ등급	40	5.15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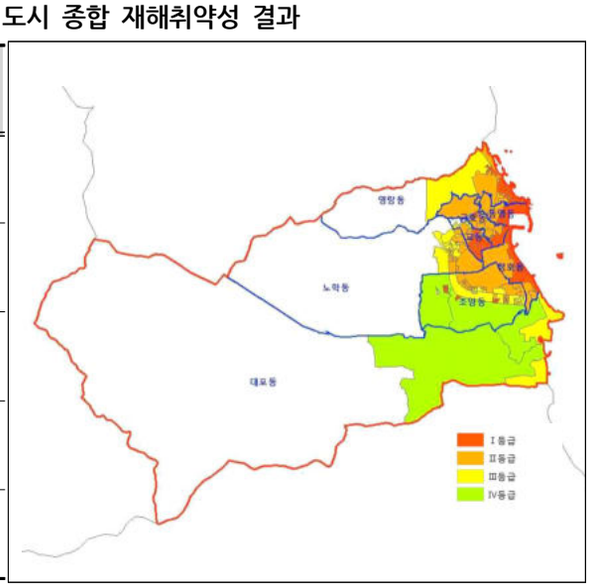


3.6 해수면상승

· 지구온난화 및 해일에 의한 해수면 상승위험에 취약지역은 해안가 일부와 청초호 주변에서 Ⅰ~Ⅱ등급의 높은 등급을 보임

【표 3-7-5-9】 해수면상승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결과

구분	개소	면적 (㎢)	구성비 (%)
계	130	26.55	100
Ⅰ등급	23	2.16	8.14
Ⅱ등급	65	5.91	22.26
Ⅲ등급	38	5	18.83
Ⅳ등급	4	13.48	5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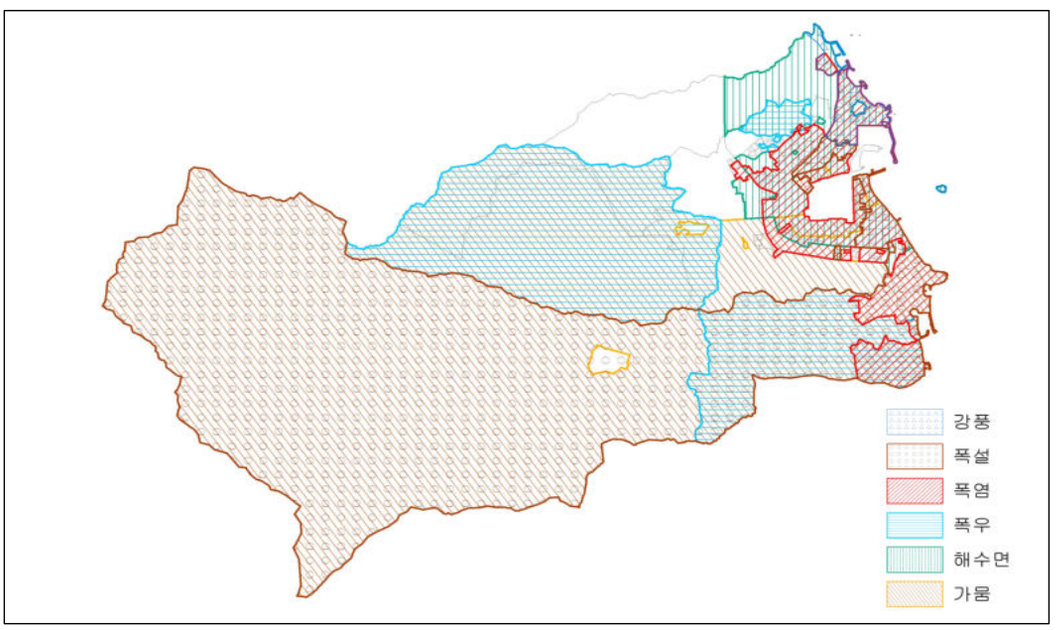


3.7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 폭우재해의 경우 종합취약성 Ⅰ,Ⅱ등급은 현재취약성 현재도시민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분포가 비슷하게 분석되고 Ⅰ,Ⅱ등급지역이 주로 분포한 지역은 영랑호 주변 및 속초시 중심부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폭염재해의 경우 종합취약성 Ⅰ,Ⅱ등급은 취약시민 및 취약건축물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해안가에 취약등급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폭설재해의 경우 종합취약성 Ⅰ,Ⅱ등급지역은 현재취약성과 미래취약성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일부지역)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가뭄재해의 경우 종합취약성 Ⅰ,Ⅱ등급지역은 현재취약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Ⅰ,Ⅱ등급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강풍재해의 경우 종합취약성 Ⅰ등급지역은 분포하지 않으며, Ⅱ등급은 현재취약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속초시 북측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해수면상승재해의 경우 종합취약성 Ⅰ,Ⅱ등급은 현재취약성의 영향으로 현재기후노출과 현재도시민감도의 Ⅰ,Ⅱ등급지역의 분포가 비슷하게 분석되고 속초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속초시청 주변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유형별로 속초시 내 지역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도출하고자 하는 분석으로 취약하게 분석된 지역(Ⅰ, Ⅱ등급지역)이 절대적으로 해당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확대해석을 지양함

【그림 3-7-5-4】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등급(Ⅰ,Ⅱ) 분석결과도



4. 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4.1 토지이용대책

· 재해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공간배치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용도배치 및 완충공간의 조성

4.2 기반시설대책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기존 및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입지 및 방재성능(침투·저류 등) 검토를 통하여 재해영향을 저감

4.3 건축물 대책

· 건축대지, 구조, 설비를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적으로 방재기능 수행

【표 3-7-5-10】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등 급	도시계획 수립방향 예시
1등급	· 토지이용대책 및 제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재지구 지정 적극 검토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및 설치 제한 적극 검토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2등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설치 제한 검토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3등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4등급	·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5. 재해유형별 도시관리방안

5.1 폭우

▌쌍천·청초천 주변지역 및 저지대

- 하천변 주변과 이격 및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노후건축물 우수 침투시설설치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지반고를 높여 피해예방
- 기존도시에서는 이격 거리 확보가 어려우므로, 신규개발 시 적극적 이격 및 완충공간 조성 필요

▌도심지역

- 공공시설의 방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수위로 고려한 출입구, 필로티건축 및 지하층 주거용도 제한 등 필요
- 공원 내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지역에 내린 우수를 저류함으로써 주변 저지대의 침수피해 저감 필요
- 공용주차장 표면을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잔디블록을 설치하여 우수가 지표면으로 침투되어 주변지역으로의 유출을 저감하도록 유도

5.3 폭염

▌교동, 청호동 등 해안선 주변지역

- 교동, 청호동 등 해안선 주변직여의 종합취약성 등급이 Ⅰ~Ⅱ등급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속초시의 경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적응력 강화 대책 및 보호체계 구축
- 도로변 녹도 형성, 콘크리트 보도블럭 교체 등 2차 열발생 요인 감소

▌도시지역

- 그늘막 설치, 전기차 보급, 녹음수 확대 등 기온상승요인 저감
- 도로변 녹도 형성, 옥상녹화, 학교 숲 사업, 기존 건물에 옥상정원 설치 등 시설물에 의한 2차 열 발생 저감 유도
- 속초역역세권개발사업(예정) 등 신규 개발 사업시 그린루프 또는 수직정원 설치 권장

5.3 폭설

▮ 설악산 국립공원지역

· 경사도로, 급커브길, 터널 등에 도로 열선시스템을 구축하여 결빙 방지

· 도로변 급경사지 내 눈막이울타리(snow fence)를 설치하여 사고 방지

▮ 도심지역

· 겨울철 이용도가 낮아지는 공원 및 녹지를 제설적치장으로 활용하여 제설차량의 동선 효율화 도모

· 저층건축물의 경우 저설을 보행이 잘이루어지지 않는 공산으로 유도토록 팔(八)자 지붕구조를 적용하며 고층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경사면을 짧게하고 옥상은 평평한 면을 가지는 구조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적설량 감소 유도

5.4 가뭄

▮ 대포동 일대

· 가뭄이 지속되면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므로 긴급 용수원 조달 및 공급에 대한 방안을 유지하며, 우수 재활용 등의 대책 필요

· 특히, 대포 제3,4 농공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가뭄재해취약성 등급이 높으므로 용수마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도시지역

· 개별 건축물에 빗물통 및 빗물이용(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를 재활용하여 가뭄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

5.5 강풍

▮ 동명동 일대

· 강풍 발생 시 해안가 접근 금지, 나무 및 전신주 접근 금지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

▌ 도시지역

· 동명동을 제외한 속초시 전역은 강풍재해취약성 Ⅲ~Ⅳ등급으로 비교적 강풍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 간판, 현수막, 유리창 등 깨짐 및 날아갈 위험물건 고정을 통해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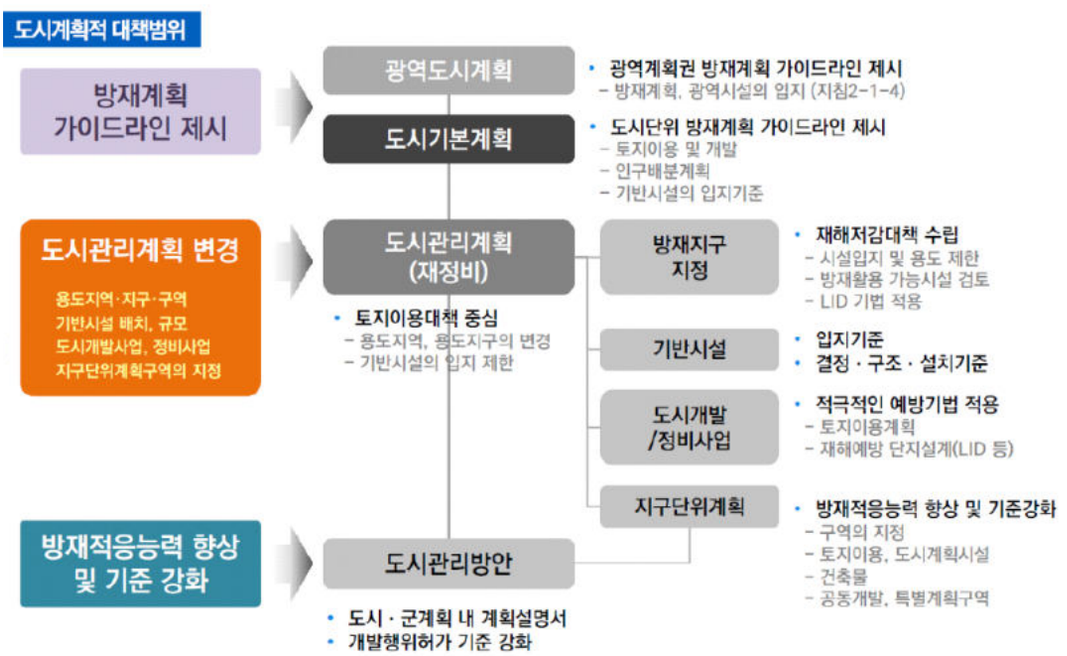
5.6 해수면상승

▌ 청초호 및 해안 주변

· 대조기 등 해수면 상승이 예보 된 때에는 해안가 주변 도로, 방파제, 해수욕장, 갯바위 등에 접근 금지

· 침수나 범람이 발생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주택의 전기시설 등 접촉방지

6. 단계적 방재계획 수립방안



7.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시계획 가이드 마련

부문	계획목표	계획기법
토지이용	대기의 질 향상	신선하고 찬 공기 생성지역과 유입통로 구축 및 보호
		풍부한 바람 유입과 통풍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구조
	쾌적한 온도 유지	태양 및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건물 계획
		공공공간 내 녹음을 위한 녹지 조성
		도시 기후 조절을 위한 도시 숲 조성
	자연자원 관리	지역 내 동식물군 서식지 보존 및 여가공간 창출 유지
		재해취약지역 개발 억제 및 제한
수자원	빗물관리 시스템	하수와 우수 분리관거 설치 및 규칙적 관리
		빗물 집수·저장을 위한 저류시설 및 공간 구축
		빗물의 침투·저류를 위한 나무여과박스 면적 확보
	안전한 수공간 확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규모 하천 및 계곡의 형태 복원
		다양한 수변공간 창출 및 유지
		하수를 활용한 바이오 리텐션 조성
녹지	다양한 녹지면적 확보	입체녹화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
		미기후 조절을 위한 블록 내 녹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녹지 관리	입지의 안정을 위한 심근성 수종 식재 및 유지·관리
		내후성 있는 수종 선정 및 식물군집 관리
		건조 억제 및 냉각기능 유지를 위한 녹지의 관개
교통	외부공간과열방지	철로나 도로의 녹화를 통한 과열 방지
		도로의 색채 조절을 통한 과열 방지
		혹서와 혹한으로부터 안전한 정류장 환경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통합설계	도로외곽부에 수순환 통합적 도로 설계
		빗물 침투 및 저류공간을 포함한 도로 및 주차장 설계
		내열성, 투수성 바닥재 사용
건축물	실내온도 조절	건물의 단열과 기밀을 통한 실내온도 유지 및 보호
		건물 내 일조량·일사량 조절을 위한 차양 시스템
	실외온도 조절	건물의 냉각을 위한 지붕 및 발코니 녹화
		기후 친화적인 건축 구조 및 외장재 선택
		태양반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밝은 색채 사용
	가정 내 자원관리	건물 단위(산업, 상업, 가정)의 물절약 기술 적용

Ⅷ 경제 · 산업 개발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농 · 축산업
2. 수산업
3. 공업부문
4. 서비스업
5. 관광

제8장 경제·산업 개발계획 (변경없음)

1 현황분석

1.1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017년 기준 속초시는 8,603개의 사업체와 37,190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산업이 전체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8-1-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구 분		총 수		비고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2012		7,578	26,129	
2013		7,706	27,354	
2014		8,020	28,792	
2015		8,077	29,185	
2016		8,365	30,806	
2017		8,603	37,190	
1차산업	소 계	6	45	
	농업, 임업 및 어업	6	45	
2차산업	소 계	724	5,183	
	광업	-	-	
	제조업	386	2,90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5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	209	
	건설업	310	2,011	
3차산업	소 계	7,873	31,962	
	도매 및 소매업	2,216	6,891	
	운수업	732	2,044	
	숙박 및 음식점업	2,553	8,4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286	
	금융 및 보험업	86	1,691	
	부동산 및 임대업	226	7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9	5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8	5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	2,392	
	교육 서비스업	296	2,5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9	2,9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1	9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74	1,821	

출처 : 속초시, 「속초통계연보」, 2017년

1.2 도시경제분석

▌ 지역내 총생산

· 속초시 지역총생산(GRDP)은 2013년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에 대한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15.28백만원 낮으며, 강원도 대비 9.38백만원 낮음

【표 3-8-1-2】 지역내총생산 추이 및 연평균증가율

(단위: 백만원, 백만원/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전 국	1,566,633,412	1,615,774,616	1,660,844,316	1,709,742,565	1,762,932,983	3.0%
1인당	29.85	30.86	32.56	34.04	35.83	4.7%
강원도	38,211,948	40,077,987	40,867,985	42,047,331	43,761,362	3.4%
1인당	24.09	25.68	26.95	28.33	29.93	5.6%
속초시	1,277,256	1,353,671	1,401,515	1,547,535	1,710,435	7.6%
1인당	15.24	16.27	16.89	18.72	20.55	7.8%
전국대비	51.1%	52.7%	51.9%	55.0%	57.4%	2.9%
강원대비	63.3%	63.4%	62.7%	66.1%	68.7%	2.1%

자료 : 통계청,「시도별/GRDP(시도)」, 각 년도
: 통계청,「시도별/1인당 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 속초시,「인구/통계연보」,
각 년도(속초시 1인당 GRDP = 속초시 지역총생산 ÷ 속초시 전체인구)

▌ 경제활동인구

· 전국 15세이상 인구는 0.95%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61.7%에서 2017년 63.2%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8-1-3】 전국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 분	15세이상 인구(천인)	경제활동인구(천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
		계	취업자	실업자			
2013년	42,304	26,107	25,299	808	61.7	56.3	3.1
2014년	42,795	26,836	25,897	939	62.7	56.9	3.5
2015년	43,239	27,154	26,178	976	62.8	57.9	3.6
2016년	43,606	27,418	26,409	1,009	62.9	58.2	3.7
2017년	43,931	27,748	26,725	1,023	63.2	61.0	3.7
연평균 증가율	0.95	1.53	1.38	6.08	0.60	0.42	4.52

자료 : 통계청,「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2017년

▌강원도 경제활동인구

· 강원도 15세 이상 인구는 0.8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국보다 낮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표 3-8-1-4】 강원도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 분	15세이상 인구(천인)	경제활동인구(천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
		계	취업자	실업자			
2013년	1,254	723	706	17	57.6	56.3	2.3
2014년	1,267	744	721	23	58.7	56.9	3.1
2015년	1,280	766	741	25	59.8	57.9	3.2
2016년	1,288	771	749	22	59.9	58.2	2.8
2017년	1,295	811	790	21	62.6	61.0	2.6
연평균 증가율	0.81	2.91	2.85	5.42	2.10	2.02	3.11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2017년

▌속초시 경제활동인구

· 속초시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강원도 평균보다 낮은 경제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은 높으며, 실업률은 낮은 편임

【표 3-8-1-5】 속초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 분	15세이상 인구(천인)	경제활동인구(천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
		계	취업자	실업자			
2013년	66.1	36.6	36.1	0.5	55.3	54.6	1.2
2014년	66.6	37.8	37.4	0.4	56.9	56.2	1.1
2015년	67.1	38.7	38.4	0.3	57.6	57.6	0.7
2016년	65.6	39.0	38.8	0.2	59.4	59.4	0.6
2017년	64.7	37.5	37.2	0.3	58.0	57.5	0.7
연평균 증가율	-0.2	1.8	2.0	-16.7	2.1	2.4	0.1

자료 : 통계청, 시군(9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속초시), 「지역별고용조사」, 2013~2018

1.3 특화분석

·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속초시 주요 특화산업은 '숙박·음식업(2.31)','여가서비스업(1.57)'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의 특화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표 3-8-1-6】 주요 특화산업

구분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전국	강원	속 초	전국대비	강원도대비
합 계	22,234,776	639,277	37,724	-	-
농·어·임업	42,324	2,921	49	0.78	0.33
광 업	14,998	4,500	4,731	-	-
제 조 업	4,105,871	59,477	2,251	0.37	0.7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4,066	3,427	53	0.56	0.3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8,906	4,654	223	1.38	0.93
건 설 업	1,481,673	57,535	2,204	1.00	0.74
도·소매업	3,250,867	84,822	5,608	1.16	1.28
운수업	1,145,752	26,974	1,819	1.07	1.31
숙박·음식점업	2,326,716	104,485	7,978	2.31	1.48
정보서비스업	599,006	8,324	289	0.33	0.67
금융·보험업	711,494	22,229	1,074	1.02	0.94
부동산 및 임대업	520,591	11,564	848	1.10	1.42
기술서비스업	1,075,234	16,282	547	0.34	0.65
사업서비스업	1,187,986	22,566	583	0.33	0.50
공공·사회보장	734,566	38,319	1,634	1.50	0.83
교육서비스업	1,630,311	57,100	2,272	0.94	0.77
보건·복지사업	1,902,052	61,840	2,875	1.02	0.90
여가서비스업	442,046	21,704	1,027	1.57	0.92
개인서비스업	890,317	30,554	1,659	1.26	1.0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고용 지표 설정

· 2017년 고용률 현황을 전국, 강원도, 속초시의 최근 5년간 등비급수모형을 사용하여 각각 추계한 결과, 전국 수준의 고용 증가률을 보임

· 취업문제가 심각한 경제여건을 감안 시 과도한 고용률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서고속철도 등에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범위의 예측이 어려워 현재 고용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설정함

【표 3-8-1-7】 속초시 고용지표

구 분	연평균 증가율에 의한 추계	2017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 고
고용률 추정	전국	63.2	63.3	63.4	63.5	63.6	
	강원도	62.6	62.9	63.2	63.5	63.8	
	속초시	57.5	57.7	57.9	58.2	58.5	
고용률	설정	57.7	57.7	57.9	58.2	58.5	

▌경제활동 및 구조

· 동서고속철도 등을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2040년 3차산업 종사자는 약 4만인에 근접할 것을 전망됨

【표 3-8-1-8】 경제활동 지표

구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계획인구(인)	85,268	87,957	89,860	90,930	
15세이상인구(인)	75,392	78,498	80,822	81,955	
경제활동인구(인)	43,878	45,843	47,362	48,190	
경제활동참가율(%)	58.2	58.4	58.6	58.8	
취업인구(인)	43,480	45,488	47,057	47,943	
1차산업	53	48	43	37	
2차산업	6,535	7,054	7,526	7,907	
3차산업	36,892	38,386	39,488	39,999	

※ 외국인인구 제외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인구=15세이상인구×고용률
※ 각 산업별 종사자는 2014~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

▌연령별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소득구조는 150~350만원 사이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350만원 이상의 중간값 이상의 소득은 30~49세 까지 증가하다 60세 후반으로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속초시와 강원도의 소득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만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60세 이상의 양질의 취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구분(%)	강원도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만원 미만	63.4	14.0	0.9	1.5	2.9	6.9	25.6
50~100만원	27.7	16.9	1.8	2.0	5.3	14.5	33.8
100~150만원	-	5.1	1.6	4.7	6.9	13.5	13.8
150~200만원	1.2	18.2	8.2	7.7	11.6	16.6	10.3
200~250만원	7.7	20.0	14.8	10.8	10.8	12.9	6.0
250~300만원	-	10.5	18.6	11.8	9.9	9.6	3.5
300~350만원	-	6.3	14.2	13.4	10.8	7.5	2.3
350~400만원	-	3.2	11.5	11.9	8.2	4.8	1.8
400~500만원	-	3.8	12.5	12.7	11.2	5.1	1.2
500~600만원	-	0.7	6.7	9.2	8.2	3.3	0.8
600~700만원	-	0.6	4.9	6.3	4.7	1.8	0.2
700만원 이상	-	0.8	4.2	7.9	9.5	3.5	0.7

구분(%)	속초시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만원 미만	-	5.2	1.7	1.2	2.6	7.6	29.0
50~100만원	-	4.8	2.3	3.0	6.0	14.7	37.6
100~150만원	-	4.5	2.7	5.0	7.6	15.9	11.7
150~200만원	-	30.2	5.0	13.4	11.9	17.1	11.3
200~250만원	-	15.8	19.4	6.3	16.6	13.1	3.2
250~300만원	-	10.4	23.2	10.7	10.6	6.4	3.7
300~350만원	-	10.3	18.6	19.9	8.1	9.6	2.1
350~400만원	-	7.5	13.8	9.0	9.3	4.9	0.3
400~500만원	-	9.1	7.1	12.2	14.9	4.2	0.6
500~600만원	-	2.2	2.1	5.9	6.7	3.7	-
600~700만원	-	-	4.2	4.9	2.6	1.0	0.5
700만원 이상	-	-	-	8.5	3.1	2.0	-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

· 월평균 소비구조는 50~150만원 사이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350만원 이상의 중간값 이상의 소비는 30~49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60세이상의 고령화 인구로 진입할수록 소비금액도 낮아지며 이는 소득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됨

· 강원도 평균값에 비해 속초시의 20~49세의 소비금액이 다소 높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지역 대비 속초시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발생됨

구분	강원도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만원 미만	63.4	16.5	1.0	1.6	3.6	8.7	33.3
50~100만원	27.7	23.6	3.5	4.4	8.3	19.0	34.1
100~150만원	-	22.1	11.8	9.1	11.0	17.8	13.5
150~200만원	2.2	17.1	17.9	13.0	14.8	16.9	8.7
200~250만원	6.7	8.9	18.0	15.0	12.4	11.5	4.5
250~300만원	-	6.9	15.3	13.5	11.6	10.3	2.5
300~350만원	-	2.8	12.9	12.9	11.2	4.9	1.3
350~400만원	-	0.5	7.4	9.8	8.4	3.5	0.6
400~500만원	-	0.2	6.5	9.3	7.5	2.7	0.8
500~600만원	-	0.8	3.3	5.6	5.0	1.5	0.4
600~700만원	-	0.1	1.0	2.4	2.0	0.7	0.1
700만원 이상	-	0.5	1.4	3.5	4.3	2.4	0.3

구분	속초시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0만원 미만	-	7.4	0.8	1.6	2.6	10.4	33.1
50~100만원	-	9.2	4.2	6.6	9.3	18.7	37.9
100~150만원	-	27.5	7.7	5.9	10.1	15.8	13.1
150~200만원	-	20.8	10.7	12.0	16.8	16.9	9.8
200~250만원	-	4.6	35.7	14.7	20.0	15.3	5.1
250~300만원	-	14.9	22.1	18.2	13.6	7.5	0.8
300~350만원	-	10.3	14.0	16.6	10.6	9.7	-
350~400만원	-	2.9	2.7	10.3	9.9	1.3	-
400~500만원	-	2.2	1.0	8.1	5.4	1.4	-
500~600만원	-	-	-	3.5	1.1	1.1	0.3
600~700만원	-	-	1.0	1.0	-	1.4	-
700만원 이상	-	-	-	1.6	0.6	0.6	-

2 농·축산업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현황분석

01 농가 및 농가인구

- 도시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가 수, 농가 인구, 경지면적이 감소추세이며, 속초시는 증감없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속초시 총 가구 수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33,441가구 중 1,037가구로 3.1%로 나타남
-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시화 현상에 따른 도시형 업종의 고용기회의 확대로 인한 영농인구의 전업이 현저하고 영농기계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의 증가가 반영된 것임
- 소규모 경지면적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한계로 영농의욕의 상실, 도시주민과의 소득 격차로 인해 영농인구의 전업과 이농현상이 생김

【표 3-8-2-1】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

(단위 : ha, 인, %)

구 분		강원도	속초시	비 고
총인구	(A)	1,561,313	83,231	
총가구수	(B)	620,729	33,441	
농가인구수	(C)	160,871	2,624	
농가수	(D)	68,750	1,037	
농가인구비	(C/A)	10.3	3.2	
농가수비	(D/B)	11.0	3.1	
경지면적	논	35,682	405	
	밭	67,452	160	

출처 : 강원도, 통계연보, 201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3-8-2-2】 속초시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추이

구 분	농가수(호)	농가인구(인)	경지면적(ha)
2013년	943	2,665	621
2014년	991	2,910	606
2015년	1,072	2,730	786
2016년	1,049	2,829	578
2017년	1,037	2,624	56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식량작물이 전체의 62.9%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나, 생산량은 과채소류가 51.8%로 가장 높음

· 주작물은 식량작물이 특용작물류로 변하는 추세로, 속초시는 깨 생산량이 100.0%를 차지

【표 3-8-2-3】 농산물 재배면적 현황

(단위 : ha, M/T)

구 분	합 계		식량작물 (미곡, 맥류 등)		두류, 서류		과채소류		특용작물 (깨)		과실류 (배, 사과 등)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12년	438.6	3,769.4	300.0	1,270.0	31.0	407.0	83.5	1,884.2	10.0	7.2	14.1	201.0
2017년	543.4	4,722.6	342.0	1,586.0	64.0	489.0	73.2	2,447.9	49.0	35.5	15.2	164.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가축사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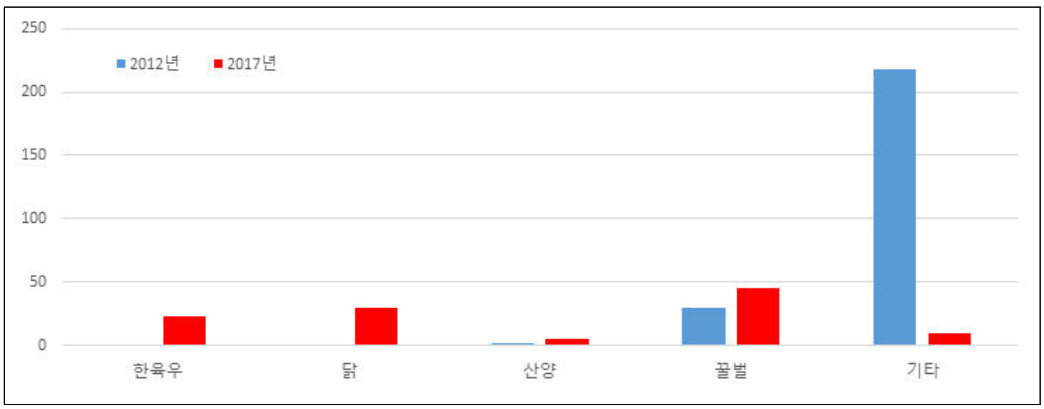
· 가축사육은 2017년 총 111농가로 11,301마리를 사육함

【표 3-8-2-4】 가축사육 현황

(단위 : 개소, 마리, %)

구 분	합 계		한육우		닭		산양		꿀벌		기타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2012년	249	7,181	-	-	-	-	1	13	30	6,083	218	1,085
2017년	111	11,301	23	306	29	5,701	5	130	45	4,427	9	73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문제점 진단

01 농가인구 및 경지의 감소

- 농업생산력 증대 및 타 산업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 마련 시급
- 개발사업으로 인한 농경지의 감소로 농가인구의 전업 및 전출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바람직한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농촌 정주공간 조성 필요(경관 개선, 생활환경 개선·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

02 농축산업의 퇴보

- 첨단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기술공급 지체
- FTA체결에 의한 수입농산물 개방화로 가격 경쟁력 저하
-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및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농업의 기반 부족
- WTO체제에 의한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중국에서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마저도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03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훼손

- 도시확산 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갖추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
- 순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의 무질서한 입지 증가
- 농촌지역의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정주환경이 열악함

04 농업시장의 불안정성

-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고, 농가계층 간 소득격차가 증가하여 농가의 이질화 심화
- 기온상승, 가뭄, 홍수, 태풍, 폭설, 병충해 등 재해에 대한 대응체계 부족
- 자연 의존적 생산구조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의 불안전성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2.1 계획목표

·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상업화, 기업화, 전문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 첨단 영농기술 개발과 영농인력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명산지화 및 특산품 개발

·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대화로 소매시장의 능률화, 효율화를 유도

· 국제 경쟁력을 갖는 지역 특산품을 수출하는 수출농업의 육성

· 인구 고령화와 탈 농어업 현상을 대비한 정책적 제도 마련

2.2 기본방향

· 도시인을 위한 관광농업, 전통식품의 가공, 직거래유통시설의 활성화 추진

· 주말농장 등 관광농업 및 근교농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해외시장조사, 현지여건을 고려한 수출 적합 품목의 개발

· 기 훼손된 생산농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 영농체제개선과 농업생산기반 강화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위주의 농업활동만이 아닌 농산물의 판매, 가공, 유통 등 농업관련 기업 활동 및 지원활동을 포함하는 영농체제 활성화농업의 직거래 등 상업화, 기업화, 전문화 활성화

· 농업기술체계 개선과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지원

· 지역특산물의 지속적 개발

· 농산물 관련 축제 및 농촌체험이벤트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통해 농촌관광산업육성

· 전문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방안 강구

3. 추진전략

01 전문농업인력 양성

- 농촌지도자들의 특화작물의 재배에 대한 전문화 영농교육 실시
- 영농후계자에 대한 국제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화 교육
- 영농후계자에 대한 집단적 해외시장 참관기회 제공으로 수출가능성 파악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여 미래 전문농어업인으로 육성

02 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 지역 특산품 상표등록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확대
- 상표에 원산지명을 활용하여 차별화 추진

03 관광농업의 육성

- 도시인을 위한 주말 현장체험 학습장 활용
- 자연 친화적 숙박시설의 설치를 통한 소득증대

04 고소득 작물개발

-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환경친화적 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05 농수산물의 유통시설 확충

- 농산물의 규격출하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 종합유통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도매시장 건설

06 생산농지의 용도 현실화

- 태풍피해로 침식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생산농지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 훼손되어 작물생산의 용도 이외로 전용된 토지를 용도 현실화함

4. 세부계획

▌농업기반시설 정비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관내 농업기반시설(농로, 농수로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편안한 농업환경을 제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td></tr>
<tr><td>위치</td><td>· 관내 농업기반시설(농로, 농수로 등) 정비</td></tr>
<tr><td>사업내용</td><td>
<table>
<tr><th>사 업 명</th><th>사업구간</th><th>사업내용</th><th>사업비(백만원)</th></tr>
<tr><td>농 로</td><td>중도문마을 외 6개소</td><td>농로보수 L=666m</td><td>151</td></tr>
<tr><td>농수로</td><td>척산마을 외 2개소</td><td>농수로보수 L=150m</td><td>50</td></tr>
<tr><td>농업용 관정</td><td>장재터마을 외 1개소</td><td>관정보수 2개소</td><td>25</td></tr>
</table>
</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3,417</td><td>47</td><td>770</td><td>1,000</td><td>-</td><td>-</td><td>1,000</td><td>-</td><td>1,600</td></tr>
</table>
</td></tr>
<tr><td>기대효과</td><td>·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쾌적한 영농 환경을 조성 및 농업생산력 증대</td></tr>
</table>

자료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농업생산 기반지원(농협협력사업)사업 추진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농업생산기반 조성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td></tr>
<tr><td>위치</td><td>· 속초시 관내일전</td></tr>
<tr><td>사업내용</td><td>
<table>
<tr><th>사 업 명</th><th>사업규모</th><th>사업비(천원)</th></tr>
<tr><td>계</td><td>-</td><td>805,000</td></tr>
<tr><td>마을 특화작물 포장재 지원사업</td><td>35천매</td><td>70,000</td></tr>
<tr><td>소형농기계 공급지원</td><td>210대</td><td>156,000</td></tr>
<tr><td>벼육묘용상토 지원</td><td>400ha</td><td>80,000</td></tr>
<tr><td>친환경 농자재 지원</td><td>60ha</td><td>35,000</td></tr>
<tr><td>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td><td>2종</td><td>50,000</td></tr>
<tr><td>벼 병해충 공동 방제 보조농약 지원</td><td>400ha</td><td>90,000</td></tr>
<tr><td>농업용 드론 방제단 운영</td><td>2개소</td><td>9,000</td></tr>
<tr><td>농기계 임대은행</td><td>6종</td><td>95,000</td></tr>
<tr><td>벼 못자리 공동육묘장 설치</td><td>2개소</td><td>220,000</td></tr>
</table>
</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3,031</td><td>412</td><td>819</td><td>900</td><td>-</td><td>-</td><td>450</td><td>450</td><td>900</td></tr>
</table>
</td></tr>
<tr><td>기대효과</td><td>· 다양한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지역농업 생산기반 확대 조성</td></tr>
</table>

자료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로컬푸드 활성화 안정적 출하기반 구축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대상	· 로컬푸드 희망농가 및 로컬푸드사업단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농촌체험연계 농산물장터 운영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예산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29	269	45	115	-	16.5	0.5	38	100
기대효과	· 로컬푸드 사업단 운영 활성화 - 분기별 신규 회원 모집 및 참여농가 교육·견학을 통한 사업단 활성화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기반구축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출하 농산물 품목 수 및 출하량 확대 · 학교급식 연계로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과잉 대비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가을딸기 새소득작목 도입 육성

구분	세부내용								
목적	· 딸기 출하기간 연장 생산량 증대 및 추석 선물용으로 개발 · 가을딸기 새소득작목 도입 출하기간 확대(9월~11월)를 통한 단경기 출하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내용	· 가을딸기 재배기술 정립 및 면적 확대 : 1.0ha(기존 0.5, 신규 0.5) · 가을딸기 브랜드 개발 및 다양한 출하방식, 출하처 확대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예산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52	-	2	50	-	-	40	10	100
기대효과	· 비수기 농가소득 요인 확대로 지역농업 활성화 기대 · 새로운 소득작목 공급을 통한 대농업인 인지도 향상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농업여건 변화대응 생력형 농업기계화 추진

구분	세부내용								
목적	· 농업인의 고령화·부녀화 추세에 따른 기계화 수요 증가에 부응 - 농작업 생력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의 효율화 · 농가 보유기계 지속관리 교육, 수리 및 자재 지원으로 수리비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안전관리 유도								
사업내용	· 농작업 생력화 소형농기계 공급 ·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강화 · 농업기계 보험 및 면세유 구입지원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예산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305	332	249	244	1	14	139	90	480
기대효과	· 기계화에 따른 생산성 및 소득 증대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부족 해결 및 활성화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3 수산업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현황분석

01 어가 및 어가인구

· 2015년 속초시의 어가인구는 738인, 어가 수는 277호로 속초시 전체에서 인구는 0.89%, 가구는 0.75%를 차지하고 있음

【표 3-8-3-1】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단위 : ha, 세대, 인, %)

구 분		강원도	속초시	비 고
총인구(인)	(A)	1,564,615	82,978	
총가구수(세대)	(B)	685,005	37,084	
어가인구수(인)	(C)	5,669	738	
어가수(세대)	(D)	2,292	277	
어가인구비(%)	(C/A)	0.36	0.89	
어가수비(%)	(D/B)	0.33	0.75	
어업종사자(인)		3,253	32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년, 어가인구 통계는 2015년 이후 미작성

【표 3-8-3-2】 어가 및 어가인구 추이

구 분	어가수(호)	어가인구(인)	어업종사자(인)
1995년	1,494	5,378	1,558
2000년	933	3,145	998
2005년	670	2,154	718
2010년	479	1,362	579
2015년	277	738	32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어가인구 통계는 2015년 이후 미작성

02 어선등록현황

· 어선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344척 중 동력선이 341척(99.1%)을 차지하며, 총 톤수는 4,377톤이며, 10톤 미만이 288척(84.5%), 50톤 이상은 29척(8.5%)으로 영세한 편임

【표 3-8-3-3】 어선 등록현황

(단위 : t, 척)

구분	동력		무동력		10톤 미만	1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 이상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013년	351	4,449	4	5	290	26	7	29	3
2014년	331	4,044	4	5	274	25	7	28	1
2015년	334	4,134	3	4	277	21	6	32	1
2016년	339	4,606	3	4	286	18	7	29	2
2017년	341	4,377	3	4	288	18	6	27	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어촌계별 기본현황

· 속초시 어촌계 조합원수는 692명으로 청호, 대포가 43.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8-3-4】 어선 등록현황

(단위 : ha, 인, 척)

어촌계별	어촌계원(명)	조합원(명)	어선수(척)			마을/협동양식 어장(ha)	
			계	동력	무동력	마을면적	협동양식
합 계	-	692	337	334	3	490.56	61.54
동 명	-	83	36	36	-	185.30 (대표 교동 어촌계)	-
금 호	-	77	35	35	-		-
청 호	-	168	99	98	1		-
교 동	-	83	58	58	-		-
장 사	-	66	22	22	-	220.0	-
대 포	-	132	49	47	2	-	26.24
외옹치	-	39	21	21	-	39.44	18.11
내물치	-	44	17	17	-	45.82	17.19

출처 : 속초시청 내부자료 (2015.12.31. 기준)

04 어획동향

· 속초시의 주 어종은 오징어로 활어, 선어, 냉동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으며, 총 수량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루묵 9.2%, 가자미 4.9%를 차지함

· 속초시의 어업 생산량은 오징어가 23.1%, 가자미 9.9%, 문어 5.9%로 이익을 내고 있음

【표 3-8-3-5】 연간 어획동향

연도별 / 어종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890	36,704	7,710	35,367	7,509	31,013	7,932	32,584	11,406	35,769
오징어	활어	407	2,617	394	2,489	501	3,208	272	2,513	190	1,803
	선어	290	1,344	271	1,245	190	71	414	1,622	102	483
	냉동	3,466	14,846	3,467	14,846	1,794	6,399	1,587	5,644	1,724	5,988
명태		0.2	2	0.22	2	-	-	267	5	6	20
양미리		530	861	515	846	603	651	484	891	374	544
청어		15	67	14	67	64	143	127	246	348	448
가자미		555	3,740	544	3,644	426	2,753	648	3,203	564	3,545
문어		109	1,567	107	1,533	86	1,793	99	2,211	80	2,098
복어		152	1,068	152	1,066	90	570	12	229	185	1,000
도로묵		928	2,438	843	2,228	1,911	3,022	1,302	1,945	1,049	1,325
대구		138	850	134	825	135	620	204	1,378	130	824
기타		1,300	7,304	1,269	6,576	1,709	11,783	2,516	12,697	6,654	17,691

출처 : 속초시청 내부자료 (2015.12.31. 기준)

1.2 문제점

01 수온 상승 등 환경변화

- 과거 17년간 동해안의 연평균 수온은 0.087도씩 총 1.5도가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0.014도에 비해 약 6배가 높음
- 환경변화로 인해 속초 연안의 어획시기의 변화, 서식어종의 변화 등 생태계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기존지역에서 어획되는 어종의 변화가 초래됨

02 업종간 조업 경쟁심화 및 다양한 불법어업 존재

- 동해안은 해역의 특성상 대륙붕 어장이 협소하며 이 때문에 한·일 어업협정 등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을 통해 어장의 축소가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며 협소한 어장을 둘러싼 다양한 업종간, 업종내 어업분쟁이 나타나고 있음
- 자원의 감소와 맞물려 업종간 조업 경쟁은 속초시 동해안 해역의 자원감소를 심화시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03 해양투기·폐기물 등 해양환경 오염 심화

- 육상폐기물,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04 어업경영 불안 가속

- 유류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체 어업 경비 증가가 상승하고 있음

2. 기본방향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조성

· 어선의 대형화·현대화 추진

· 유통단지 조성 및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수산물 가격 경쟁력 향상

· 수산업 연구단지 및 기술인력 육성

· 어촌기반시설정비 등 어촌환경 및 복지시설 정비 확충

· 수산물 부가가치화, 지역특산품 개발, 정보 및 기술축척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 북방원양어업의 전진기지화를 위한 어항 및 지원시설의 확충

· 관광어업개발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조성

· 수산물 가공·포장법의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 어민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직거래 공판장 설립

3. 추진전략

· 어민개발욕구 반영

- 오염물질 해양방출 예방을 통한 어장정화사업 추진
- 어선건조 및 현대화, 노후어선 개량, 동력선 현대화로 수산시설 현대화
- 수산물 가공판매, 직판장(공판장) 설치 등으로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시설 확충
-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개선

· 수산자원 조성계획

- 청정해역관리 및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를 통한 어장 보전
- 어장 정리사업 확대
- 오·폐수 해양유입 방지대책 강구

· 어항기반 시설확충

· 수산관광개발

-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어촌관광지 및 관광어장 개발
-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소득 제고
- 정보수집, 전시회를 통한 수산물 판로 개척
- 체인점 개척을 통한 유통과정 축소로 상품 경쟁력 제고

· 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마련

- 선박의 현대화, 대형화 추진, 선착장, 방파제, 축양장, 물양장, 호안 등의 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도모
- 냉장·냉동 저장시설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자원조성으로 양식어장을 개발 및 어업환경 보호

-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술 지도를 확대
- 기존 공업단지 및 주거지역 주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연근해 어장 및 어업환경 보호

· 어업구조의 전환 및 시설 활용도 제고

- 어장 복장화, 인공초 시설 등 수산자원개발과 육상 양식어업개발로 관리형 어업구조 전환 유도
- 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한 어항시설 확충 및 관광어항개발 등 3차 산업 기능 부여

· 활어보관용 축양장, 수산물 냉동 창고시설 확충과 활어운반차량을 개발·확대 보급하여 수산물의 공급조절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청초항을 어업 전용항으로 확충정비하고 어업기상, 어장정보 등 각종 어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수심 20~30m이내 해역에 인공어초를 투하해 연근해 어업을 활성화

· 수산물가공법과 포장법의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및 수산업의 관광화를 도모함

4. 세부계획

▌어촌 민생안정 및 어업인 복지지원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어업인 부채경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소수 여성어업인 및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가지원을 통한 복지증진</td></tr>
<tr><td>사업내용</td><td>· '20년 어업경영안정화 지원 : 3개 사업, 1,585백만원
- 어업용 면세유 지원(1,250백만원) : 톤급별 차등지원
- 영어자금이차보전 지원(56백만원) : 영어자금의 이자 일부 보전지원
-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279백만원) :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일부 지원
· '20년 어업복지 지원 : 3개 사업, 66백만원
- 어가도우미 지원(8백만원) : 임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조업활동 불가시(년 30일 이내)
- 여성어업인 복지지원(30백만원) : 복지바우처사업(22백만원), 작업물품 지원(8백만원)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28백만원/100세대) : 추석전 년 1회 지원금 지급</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7,568</td><td>2,644</td><td>1,623</td><td>1,651</td><td>5</td><td>497</td><td>1,143</td><td>6</td><td>1,650</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어촌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가지원을 통한 어업인구 감소 방지
· 어가에 대한 복지 증진을 통한 신규 어업인 유입효과 기대</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다양화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국내 수산물 전시행사 참가비용 및 포장재·물류비 지원으로 홍보효과 증대
·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td></tr>
<tr><td>사업내용</td><td>·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35백만원
- 수도권 대형마트 및 온라인 마켓 직거래 개설 및 판촉
·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 50백만원
·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
- 강원도 통합브랜드 이용 홍보물 및 소포장재 제작 지원
· 수협 수산물 군납확대를 위한 명태 저온·냉장시설 건립 지원 : 330백만원</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1,226</td><td>346</td><td>165</td><td>515</td><td>-</td><td>113</td><td>276</td><td>126</td><td>200</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어획물 신선도 유지에 따른 상품성 향상
·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유통망 확보로 어업인 경제안정 도모</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 어촌뉴딜 300사업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어항 및 항포구 배후 어촌마을 정비로 어촌지역 활력 유도 ·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가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
위치	· 속초시 장사동 장사항 일원
사업내용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방사제, 안전시설, 기능편익시설 등) · 특화사업 : 울산바위 조망쉼터, 해안탐방로 및 해변감성길, 해양레저 체험장 등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예산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5,000	-	-	15,000	10,500	1,350	3,150	-	-

기대효과	· 어촌지역 정비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광객 방문 유도로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4 공업부문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현황분석

01 업체수 및 종사자수

· 속초시 광업 업체는 전무하며 제조업체는 2012년 24개소에서 2017년 41개소로 대폭 증가함

· 종사자수와 업체 수, 생산액과 부가가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4-1】 광업 및 제조업의 규모변화

(단위 : 개소, 인,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7년	비 고
계	업체수	24	41	
	종사자수	761	1,229	
	주요생산비	57,549	114,126	
	부가가치	33,783	69,785	
광 업	업체수	-	-	
	종사자수	-	-	
	주요생산비	-	-	
	부가가치	-	-	
제조업	업체수	24	41	
	종사자수	761	1,229	
	주요생산비	57,549	114,126	
	부가가치	33,783	69,78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부터 종사자수 10인 이상으로 변경

02 공업용수 이용량

· 속초시는 한강권역에 속하며 2014년 이후 계획입지공단의 이용량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편으로 판단되며 자유입지업체의 이용량은 2016년에 증가하였음

【표 3-8-4-2】 공업용수 이용량 현황

(단위 : 천㎥/년)

구 분	계	계획입지공단이용량	자유입지업체이용량
2008년	106.3	63.7	42.6
2009년	148.8	133.0	15.8
2010년	448.6	423.3	25.3
2011년	332.8	305.4	27.4
2012년	350.1	311.7	38.4
2013년	329.5	290.8	38.7
2014년	448.4	407.8	40.6
2015년	435.8	393.8	42.0
2016년	443.0	380.0	63.0
2017년	438.9	379.9	59.0

출처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03 제조업 규모별 현황

· 제조업 사업체는 대부분 식료품 제조업으로 92.7%의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외 음료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각 2개소, 1개소로 영세함

【표 3-8-4-3】 사업체규모별 제조업 현황

구 분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인)	생산액 (백만원)	주요생산비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계	41	1,229	182,970	114,126	69,785
식료품 제조업	38	1,172	176,297	111,941	65,195
음료 제조업	2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주)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로 표시

04 산업단지 현황

▌대포 제 1·2·3 농공단지 조성현황

【표 3-8-4-4】 산업단지 지정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정일 및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백만원)			
			계	토지보상	단지조성	기타
1단지	1989.12.30 1990.12.21	1993.5.13	5,687	2,378	3,100	209
2단지	2007.12.28 2008.07.09	2010.1.17	9,587	3,698	5,704	185
3단지	2011.04.27 2011.07.06	2016.4.29	20,445	9,574	7,778	3,093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대포 제 1·2·3 농공단지 분양현황

【표 3-8-4-5】 분양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분양률	분양가	비고
1단지	193,853㎡	172,990㎡	153,367㎡	19,623㎡	88%	44천원/㎡	원형지개발
2단지	106,182㎡	66,182㎡	66,182㎡	-	100%	102천원/㎡	-
3단지	162,211㎡	112,424㎡	104,099㎡	8,324㎡	92%	134천원/㎡	-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대포 제 1·2·3 농공단지 입주현황

【표 3-8-4-6】 입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입주업체수	가동	휴·폐업 (C)	건설중	설계중	가동율	비고
1단지	54	52	2	-	-	96%	
2단지	31	27	4	-	-	87%	
3단지	37	28	-	9	13	75%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 속초시 산업단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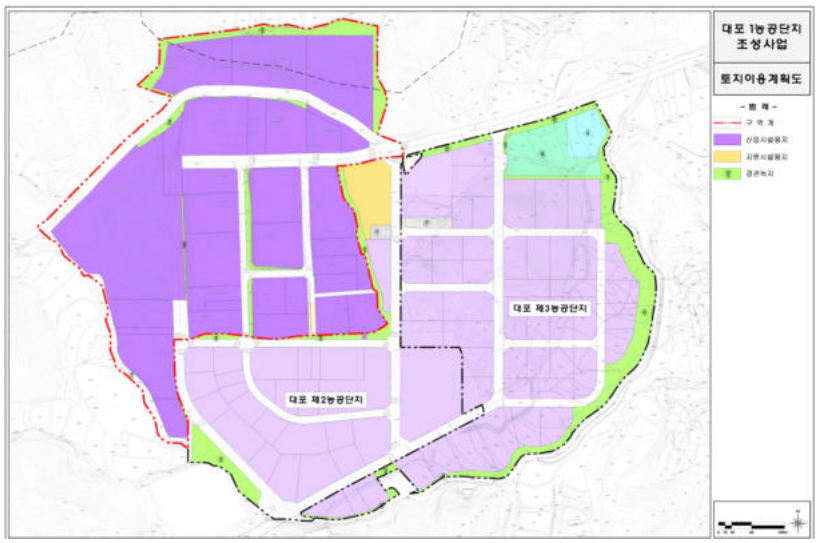
· 산업단지(준공)는 대포 제1농공단지, 대포 제2농공단지, 대포 제3농공단지 3개소임

· 면적 465천㎡, 입주업체 122개소, 가동률 93.4%, 총생산액 1,412억원임

【표 3-8-4-7】 속초시 산업단지 현황

구 분	총면적(천㎡)	입주업체수	가동률(%)	종업원수(인)	생산액(억원)	수출액(천불)
2012년	217	51	77.0	495	380	19,820
2017년	465	122	93.4	1,502	1,412	6,15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5 공장등록 현황

· 속초시는 음식료품 관련 공장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조립·금속 13.6%, 전기·기계 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8-4-8】 속초시 공장등록 현황

구 분	총계	음식료품	목재·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조립 금속	전기·기계	기타
총계	103	57	4	1	-	14	8	19
1단지	40	15	4	1	-	6	3	11
2단지	25	14	-	-	-	8	-	3
3단지	38	28	-	-	-	-	5	5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1.2 문제점

01 지역특화품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족

- 대포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속초시 내 대부분이 수산물 가공 등의 조미가공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 부족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을 통한 기업 활성화 지원이 미비함

02 소규모 사업체의 공간구조 개편 및 계획적인 체제 확립 필요

- 산재 된 개별공장에 따른 환경오염 노출지역 산재화와 정보교류 및 운송비 증가 등 각종 집적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므로, 효율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필요
- 추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연관 산업 증가에 대비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산업단지 입지를 유도하는 한편 영세공장 입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항만 및 철도시설 등 SOC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여 물류전용 항만시설의 정비 및 확충, 지원도로 및 철도의 개설이 시급함

03 2차산업 및 제조업에 대한 기반 부족

- 전국적인 2차산업인구 감소추세에 비해 속초시는 제조업, 건설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
-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이에 따라 신규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04 주변산업과 연관된 제조업체의 부족

-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대부분은 농수산물 가공업체로서 생산액 및 부가가치가 높지 않음
- 대포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기존산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망 미래산업 육성이 필요함

2. 기본방향

· 국제적인 관광도시화의 잠재력에 따른 도시개발방향에 부응하여 공해발생의 공장유치는 억제하도록 하며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

· 관광산업에 의존을 벗어난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산업의 필요성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기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집중개발을 유도하여 공업의 계열화 및 집적효과 극대화 전략 강구

· 기존산업의 벤처기업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특성화와 지식·기술집약화에 의한 지식산업발전의 추구

· 도시형 첨단산업의 육성·정비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 강화

3. 개발계획

· 도시성격을 감안하여 무공해, 비용수,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도록 함

· 대포농공단지의 조미가공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지역특화품목(조미가공 등) 육성 등을 통한 기업 활성화 지원

-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해외수출정보 제공 및 시장조사단 파견, 창업보육센터 운영
- 지역특산품 박람회 참가와 중소기업 특허 장려 사업 및 디자인 개발,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대폭강화
- 대포농공단지를 확충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조성하여 클러스터화하고 지역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 속초항 및 청초호의 공업지역은 부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가지에 인접한 공업지역은 친환경 저영향의 첨단도시형 공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기존 주거기능 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공업과 주거기능의 상호 공존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지구단위계획 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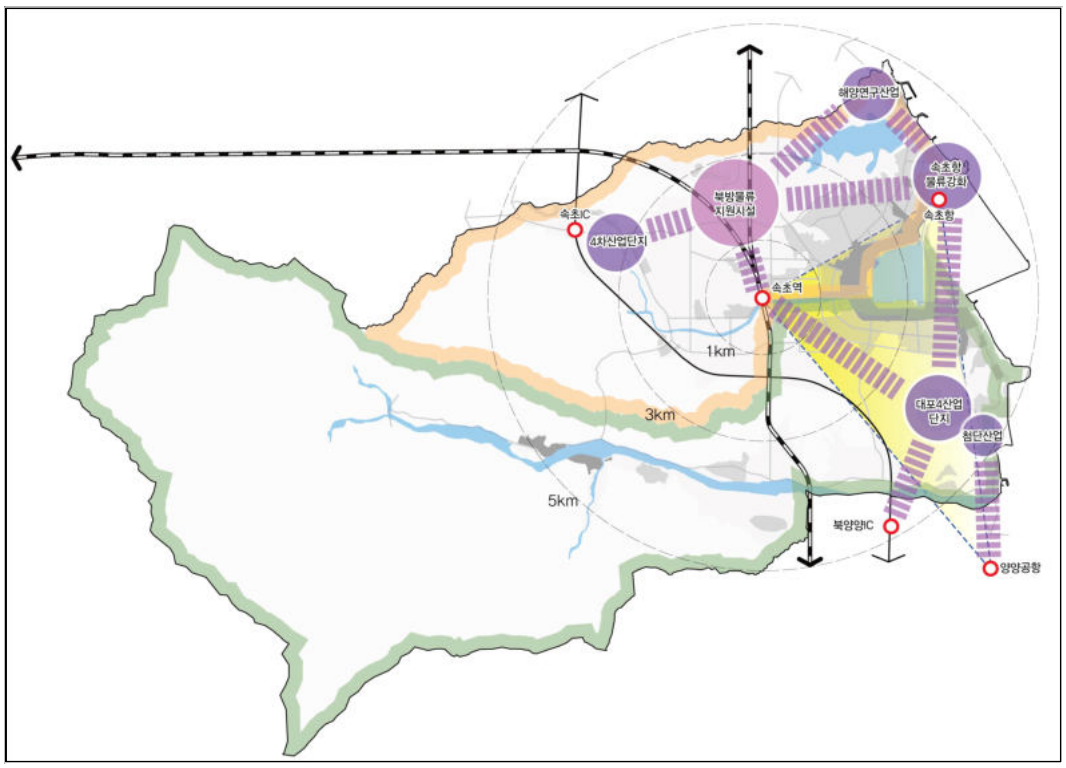
· 환경부하가 적은 산업 육성

- 공해 유발 업체의 규제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의 적극적 유치
- 기존의 중·소규모 공장에 대해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집단화 유도

· 자립기반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적극 육성

- 동서고속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동해북부선 등 광역적 교통망 확충에 따른 강원북부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
- 속초역을 거점으로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을 연계한 4차산업 및 물류기지 육성
- 소규모 제조업의 집약화로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형 산업단지 마련과 첨단산업 등 친환경적 신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장사항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연구단지 추진

【그림 3-8-4-1】 산업발전 연계구상도



4. 세부계획

4.1 대포 제4산업단지 조성

구분	세부내용
목적	· 대내외 경기여건에 취약한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4차산업 위주의 신성장산업으로 유치 ·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친환경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내용	·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14-9번지 일원(속초해양산업단지 인근) - 교통(고속도로 접근성) 여건, 분양 조성원가(공유재산) 고려 · 면 적 : (최소)15만㎡ ~ (최대)22만㎡ · 업 종 : 제4차산업 및 대북방교류 확대에 대비한 물류 기반시설 - 공해유발업종 제외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예산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미정	55	-	-	-	-	-	-	-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속초시청), 2020년

5 서비스업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현황분석

01 업체 및 종업원수

· 업체수는 총 7,873(종사자수는 27,277인)이며, 숙박 음식점업 32.4%, 도매 및 소매업이 28.1%임

【표 3-8-5-1】 속초시 서비스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소	구성비(%)	인	구성비(%)
합 계	7,873	100.0	27,277	100.0
도매 및 소매업	2,216	28.1	5,391	19.8
운수업	732	9.3	1,784	6.5
숙박 및 음식점업	2,553	32.4	7,581	27.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0.4	286	1.0
금융 및 보험업	86	1.1	1,091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	2.9	789	2.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9	1.8	518	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8	1.6	570	2.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0	0.5	1,892	6.9
교육·서비스업	296	3.8	2,265	8.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9	3.4	2,563	9.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1	3.6	926	3.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74	11.1	1,621	5.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표 3-8-5-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연 별 동 별	합 계 Total				
	사업체수 Establishments		종사자수 Workers		
		여성 대표자		남 Male	여 Female
2012년	7,578	3,383	26,129	12,999	13,130
2013년	7,706	3,420	27,355	13,905	13,450
2014년	8,020	3,536	28,612	14,482	14,130
2015년	8,077	3,555	29,185	14,407	14,778
2016년	8,365	3,701	30,806	15,443	15,363
2017년	8,603	3,796	31,745	16,010	15,73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2 유통시설

- 유통시설은 대형마트는 2개소로 교동에 하나로마트, 청호동에 이마트가 위치하며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각 1개소로 총 3개소임
- 대형마트의 면적은 각각 이마트 13,239㎡(건축연면적 27,724㎡), 하나로마트 10,471㎡(건축연면적 4,993㎡)임
- 시장의 면적은 총 25,768㎡(대지면적 22,190㎡)으로 등록시장 9,288㎡, 인정시장 14,825㎡, 상점가 1,655㎡임
- 속초시의 시장 점포수는 총 825개소로 등록시장 505개소, 인정시장 289개소, 상점가 31개소로 구성됨

【표 3-8-5-3】 속초시 동별 유통업체 현황

구 분	합 계			대형마트(할인점)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개소	면적(㎡)	점포수(시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5	49,478	825	2	23,710	1	9,288	1	14,825	1	1,655
영랑동	-	-	-	-	-	-	-	-	-	-	-
동명동	-	-	-	-	-	-	-	-	-	-	-
금호동	3	25,768	825	-	-	1	9,288	1	14,825	1	1,655
교동	1	10,471	-	1	10,471	-	-	-	-	-	-
노학동	-	-	-	-	-	-	-	-	-	-	-
조양동	-	-	-	-	-	-	-	-	-	-	-
청호동	1	13,239	-	1	13,239	-	-	-	-	-	-
대포동	-	-	-	-	-	-	-	-	-	-	-

출처 : 통계청,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기본통계
참고 : 면적은 판매면적 기준으로 나타냄

1.2 문제점

01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

· 속초시의 상권은 청초호를 주변으로 주요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에는 유통업체와의 접근성이 낮음

· 지역특산품의 판매장 또는 어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판장의 판매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판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차별화 전략 필요

·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 미흡

02 유통시설업체의 경쟁 구도

· 광역교통개선으로 타 시군과의 접근이 쉬워진 만큼 속초 외 지역 상권과의 경쟁 구도 형성으로 속초 내 유통시설의 서비스업의 품질 및 접근성 향상 필요

2. 기본방향

· 기존의 상권을 고려하여 상업·업무기능의 적극적 개발

· 상업서비스기능의 체계화를 통해 유통·업무의 효율화 도모

·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기존 전통시장 및 지역 유통업체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 지역 내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한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

- 휴게시설 등의 고객편의시설 확충 및 주차장 확보로 고객불만 해소

· 고급전문점을 육성하여 국제관광자원화

· 점포의 대형화와 기업화로 시장개방에 대비

· 지역유통 및 도소매업의 현대화와 자립기반 구축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역내 중소기업 상품지원의 확보

· 상업시설을 생활권별로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 재래시장 내 영세상인들을 업종별로 협업화 또는 조직화하여 상품구매시 규모의 경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기존 영세상점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환경정비와 위생관련시설, 주차시설 등을 공동으로 조성하며, 판매촉진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수요에 대응한 근린형 상가의 재정비를 도모하여 새로운 상업공간의 조성을 지원
· 지역 내 소규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시설을 확충 지원하여 서비스업의 정보화 촉진
· 협동조합설립을 촉진하는 자금지원
  -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의 조성, 저금리의 융자 대출제도 알선
·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지원
  - 협동조합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3. 개발계획

·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을 통해 중앙시장의 현대화 및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
·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강원 북부지역 지역주민의 중심 상권으로 육성
· 지역 전통의 관광자원을 홍보·특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전통 5일장을 복원하되 청초, 동명항 부두 또는 매립지 등을 활용하도록 함(남북물자교류에 대비한 공간 확보)
· 기존 도심의 기능 활성화
  - 중심상업·업무활동의 중추거점 육성
  - 복합기능 확보 : 역사, 문화, 관광, 유통, 전문상가 등
·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성 강화
  - 전통민속제품, 음식, 약재, 패션, 스포츠 등
  - 어시장의 보수 개편으로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
  - 소상공인의 자립성 강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
·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재래시장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4. 세부계획

4.1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노후된 진입도로를 개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쇼핑 만족감을 증대시킴
· 상권활성화에 따른 이용객들의 공용시설 사용 증가로 늘어나는 상인 분담 공동 전기료 부담 해소</td></tr>
<tr><td>위치</td><td>· 속초시 중앙로 147번길 일원</td></tr>
<tr><td>사업내용</td><td>· 속초관광수산시장 진입도로 개선(동화장길, 명동로, 순대골목, 어물전 등)
· 중앙상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33,954</td><td>28,880</td><td>2,260</td><td>814</td><td>488</td><td>98</td><td>197</td><td>31</td><td>2,000</td></tr>
</table></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4.2 지역특산품 산업 성장동력 육성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지역특산품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단계별 실행계획 추진
· 시장경제 및 기후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사용자 중심의 산업간 융·복합 방안 추진</td></tr>
<tr><td>사업내용</td><td>·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관 설립 및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 민간 주도 기관 설립을 통한 비즈니스 개발 전문성 확보 및 투자자 연계 추진
· 브랜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통한 시장성 사전검증,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 실시
· 사용자 중심의 지역특산품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동 콘텐츠 개발 및 4차산업 기술요소 활용 공동마케팅
· 지역특산품 산업의 6차산업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 6차산업 인증기업 육성 및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미정</td><td>-</td><td>17</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속초시청), 2020년

4.3 특성화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대형마트와 차별화 된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시장 육성 공모 사업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에 첨단조명 설치, 중앙상가 환경개선,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상권활성화 도모</td></tr>
<tr><td>사업내용</td><td>· 중앙상가 환경개선 및 상인 교육장(동아리방) 조성
· 글로벌 문화 접목을 통한 음식특화거리 조성
· 첨단조명 설치를 통한 명품거리 조성</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2,000</td><td>1,000</td><td>1,000</td><td>2,000</td><td>1,000</td><td>300</td><td>700</td><td>-</td><td>-</td></tr>
</table></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속초시청), 2020년

4.4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및 청년몰 활성화 사업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소상공인 생업기반 약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방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공모할 계획임에 따라,
·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관광수산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선정노력을 기울여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함
· 청년상인·여성의 창업기반 제공을 위한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관광수산시장 · 갯배 · 아바이마을을 연계하는 관광 및 쇼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td></tr>
<tr><td>사업내용</td><td>· 쇠퇴한 상권 개선 및 특색있는 상권 조성 등 지원
- 환경개선사업 : 상점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 환경안전관리 등
- 활성화 사업 : 빈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테마존 운영(문화예술공간 등)
· 해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및 전시·판매공간 조성 등</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100</td><td>-</td><td>1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속초시청), 2020년

6 관광

1. 현황 및 문제진단

1.1 현황분석

01 역사문화자원

- 문화재 보유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1개, 지방지정문화재 9개, 문화재자료 7개로 총 27개이며, 국보급 이상의 문화재는 부재
-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적 및 명승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3-8-6-1】 문화재 현황

구분	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개소	27	11	3	6	2	-	9	8	-	-	1	7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2018

02 자연자원

- 쌍천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명승지 위치
- 속초8경으로는 등대전망대, 범바위, 청대산, 청초호, 조도, 대포외옹치, 설악해맞이공원, 학무정이 있음
- 설악산 및 청대산(231.8m), 주봉산(337.8m)이 위치
- 그 외에도 속초해수욕장, 외옹치해변, 대포항, 설악항 및 동명항, 장사항이 위치

03 휴양·레저·스포츠자원 및 도시내 위락자원

- 속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가 있으며 그밖에 설악한화리조트관광단지, 설악산 국립공원 등이 있음
- 개별시설로는 관광숙박업 23개소와 골프장2개소(플라자CC설악, 영랑호)가 운영 중임
- 온천은 LH 속초연수원, 한화프라자(워터피아), 척산온천장, 척산온천휴양존, 파인리조트 부속 등이 있음

04 문화행사

· 전통놀이로는 논뫼호 불꽃놀이, 설악 산신제, 성황제, 등대질 놀이 등이 있음

· 농수산물 및 자연환경을 토대로한 관광산업 관련된 축제로는 속초 해맞이 축제, 봄빛 축제 청초누리, 썸머 비치 페스티벌, 빛 축제 청초환희 등이 있음

05 특산물

· 속초지역의 토속음식은 오징어순대, 오징어회, 메밀전병, 막국수, 산채정식, 도토리묵, 표고덮밥, 감자부침 등이 있음

· 지역 특산품으로서 관솔목각, 자수정, 젓갈, 버섯, 토중석, 치커리, 다래, 더덕, 돌김, 산천어, 연어 등이 있음

06 속초의 주요관광자원 현황

구 분		주 요 관 광 자 원
자연자원	관광지	속초 해수욕장(외옹치)
	국립공원	설악산
	도시자연공원	용초(조도), 초산
	근린공원	영랑, 영금, 중앙, 조양, 탑, 만리, 도화만리, 해맞이
	유원지	영랑호, 속초해수욕장, 영금정, 청초호
	온천	척산온천
문화자원	불교 문화재	신흥사, 극락보전, 보제루, 명부전, 삼성각, 범종각, 운하당, 적묵당, 경판, 범종, 비석, 부도, 계조항, 내원암, 금강굴, 안양암, 향성사지 3층석탑
	목조 건축물	김종우가옥, 김근수가옥, 학무정, 금장대, 도문각, 용초정, 침산정, 청초정
	비석 기념물	유물재비, 관찰사선정비, 박지의 효자비각, 충효강릉박공휘지의지비, 박상희 읍장 송덕비, 설악산횡단도로개통기념비, 학무정기념비, 삼연 김창흡선생추모비, 순국 5용사비, 이형근장군덕정비, 수복기념탑 등
	글씨	비선대각자, 계조암각자, 신흥사 내원암 추사체, 계조암마당 바위 이대통령 각자, 관음암 각자
	유적지	권금성, 토왕성, 대포성터, 동명동 장골성터, 봉수터, 군량장, 노학동 만호첨사유허
	사적지	조양동 선사시대 사적지

07 속초시 각 부서별 행사·이벤트 추진현황

부서	주요 행사·이벤트	기간	장소
관광과	속초 해맞이 축제	1월	속초해수욕장
	속초 봄 도시樂	4월	영랑호
	속초, 빛 축제	5월	청초호 호수공원
	속초 썸머 페스티벌	7~8월	속초해수욕장
	속초 수제맥주 축제	7~8월	속초해수욕장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	7~8월	장사항
	속초해수욕장 이벤트	7~8월	속초해수욕장
문화체육과	2020 실향민 문화 축제	5~7월	청호동 일원
해양수산과	양미리도루묵축제	11월	속초항 일원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1.2 해수욕장현황

01 해수욕장 지정내역

· 속초시는 총 3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해수욕장 이용객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연 별 해수욕장별	관리등급	이용객수	백사장(해빈)조건			운영주체
			면적	길이	관리 상태	
2013년	-	3,199,436	62,900	1,310	-	-
2014년	-	3,544,369	61,550	1,310	-	-
2015년	-	3,673,645	61,300	1,310	-	-
2016년	-	3,558,530	61,300	1,310	-	-
2017년	-	3,002,157	61,300	1,310	-	-
속초	시범	2,987,709	50,000	1,000	양호	속초시
속초등대	일반	14,448	4,800	160	양호	등대해수욕장 영랑청년회
외옹치	마을	-	6,500	150	양호	외옹치마을 운협의회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명칭	개장기간	개장시간	수영시간	비고
속초해수욕장	매년 7.7~8.20(45일간)	06:00~24:00	09:00~18:00	"가급"
등대해수욕장	매년 7.7~8.20(45일간)			"나급"
외옹치해수욕장	매년 7.7~8.20(45일간)	06:00~22:00	09:00~18:00	"다급"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1.3 온천지정현황

01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현황

· 속초시는 총 4개소의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온천 지구명	위치	발견신고 수리일	지구 지정일	지정면적(㎡)
척산온천	노학동 972-1, 939-7번지	'94.11.23	'81.9.1	234,132
설악온천	설악동 307번지 일원	'09.11.5	'93.2.1	42,877
설악프라자	장사동 11번지 일원	'93.1.11	'94.9.9	972,744
노학온천	노학동 745-20번지 일원	'02.12.30	'06.12.29	93,080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0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현황

· 속초시는 총 3개소의 온천공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온천 지구명	위치	발견신고 수리일	지구 지정일	지정면적(㎡)
주택공사 연수원	노학동 730-1번지	'94.11.26	'04.10.8	25,656
설악약수	설악동 395번지 일원	'93.8.25	'08.3.3	39,600
설악파인 리조트	노학동 746-96번지	'06.3.24	'08.7.1	14,925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1.4 관광객 이용 및 시설현황

01 관광객 이용현황

· 속초시는 최근 4년간 유료관광지+무료관광지에 약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해온 이유는 좁은 행정구역 면적을 지닌 압축도시이면서 관광자원의 다양성과 매력성이 양호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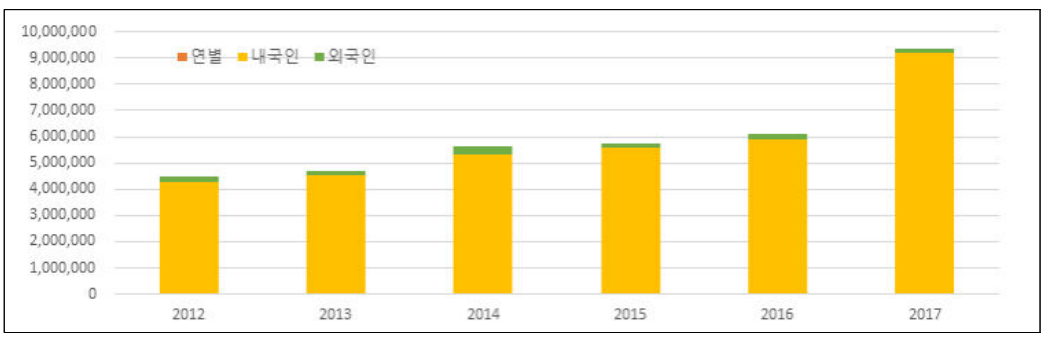
【표 3-8-6-2】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별	집계 관광지수	방문객수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소계	내국인	외국인	
2012년	34	4,496,748	4,280,386	216,362	7,248,455
2013년	34	4,681,190	4,524,428	156,762	7,177,441
2014년	39	5,628,593	5,306,230	322,363	8,002,309
2015년	45	5,760,710	5,564,015	196,695	7,917,399
2016년	49	6,079,309	5,893,336	185,973	8,039,263
2017년	52	9,333,649	9,218,150	115,499	8,257,53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3-8-6-1】 속초시 유료관광지 방문객수



02 속초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

· 최근 4년간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별 방문개수를 살펴보면,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설악산국립공원 탐방객이며 설악산에 견줄 도심 및 해안 관광자원의 매력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표 3-8-6-3】 속초시 월별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관광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료	석봉도자기미술관	16,729	14,962	17,543	12,147
	설악자동차 야영장	-	-	23,634	28,323
	설악워터피아	516,685	475,987	497,158	512,939
	속초시박물관	98,527	110,393	223,120	110,480
	속초시청소년수련관	4,179	17,253	42,098	63,687
	속초해변 국민여가 제1캠핑장	-	-	7,730	19,464
	속초해수욕장	351,403	386,928	88,932	90,083
	아바이마을	-	1,635	88,976	545,543
	얼라이브하트	21,842	30,059	24,589	159,125
	엑스포유람선	86,049	98,853	146,386	26,180
	엑스포타워	45,480	51,218	51,570	-
	영랑호CC	63,957	68,631	67,409	55,363
	척산온천	288,909	317,721	315,735	71,549
	척산온천휴양촌	115,760	117,598	77,993	342,229
	테디베어팜	50,636	54,615	55,730	49,438
	한화리조트(골프장)	-	-	7,559	56,230
	해피 아울 하우스	5,193	5,772	4,615	14,567
	화랑도 체험장	3,544369	3,540,117	3,515,275	1,877
무료	국립산악박물관	6,557	99,648	99,309	107,538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	2,163,660	1,989,391	2,269,380	2,452,020
	설악자생식물원	31,077	33,987	37,475	44,291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각 년도

03 관광이용시설 현황

· 관광수요에 대비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종합휴양업 1개소(설악워터피아), 야영장업 4개소, 관광유람선업 등 총 14개소가 있음

· 해수욕장과 설악산 단풍 등의 영향으로 8월부터 11월에 집중되고 있음

· 관광 진흥을 위해서 시설 및 여행업 등의 관광자원 육성 방안 필요

1.5 관광사업 현황

01 강원도 동해안 5개 시군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현황

·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속초시의 관광사업체는 관광숙박업과 관광편의 시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전무함

【표 3-8-6-4】 관광사업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강원도	114	100.0	59	100.0	66	100.0	-	-	-	-	22	100.0	182	100.0
강릉시	62	54.4	10	16.9	22	33.3	-	-	-	-	4	18.2	117	64.3
동해시	25	21.9	6	10.2	5	7.6	-	-	-	-	6	27.3	27	14.8
속초시	17	14.9	24	40.7	4	6.1	-	-	-	-	8	36.4	12	6.6
고성군	4	3.5	14	23.7	10	15.2	-	-	-	-	2	9.1	17	9.3
양양군	6	5.3	5	8.5	25	37.8	-	-	-	-	2	9.1	9	4.9

출처 : 강원도, 강원통계, 2018
주) 속초시 통계자료 조회불가

02 속초시 신규 대형 숙박시설 건축 현황

· 라마다 해양호텔 준공을 시작으로 속초시는 대형 숙박시설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은 콘도·연수원 중심의 객실 유형과 달리 호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포동과 청학동 같이 해안가 입지에 집중되고 있음

구분	건축허가일 착공일	위치	규모	용도	객실수	준공(예정)일
라마다 해양호텔	2014.06.19 2014.07.14.	대포동 939번지	지상20 연면적 31,075㎡	일반 호텔	556	2016.5.25
롯데리조트 속초	2015.04.28 2015.06.26.	대포동 908-1 외 53	지하3 / 지상9 연면적 94,825㎡	관광호텔 & 콘도	392 (호텔173) (콘도219)	2017.7월말
속초해변 입구 고층복합시설	2015.08.28 -	조양동 1426-4 외 6	지하2 / 지상32 연면적 47,103㎡	일반 호텔	528	동계올림픽 이전
속초 크루즈 호텔	2015.12.02 2015.12.14.	청학동 482-525번지	지하4 / 지상20 연면적 25,270㎡	일반 호텔	443	2017. 12월말
호텔 스파스토리 인 설악	2016.05.19 2016.05.23	설악동 307외 6	지하2 / 지상4 연면적 21,216㎡	일반 호텔	305	2017. 12월말
조양동 OO호텔	2016.06.17 -	조양동 1292외 4	지하3 / 지상22 연면적 21,515㎡	일반 호텔	500	2018. 12월말
홈프레스티지 호텔	- -	청학동 482-524	지하3 / 지상17 연면적 13,478㎡	일반 호텔	255	-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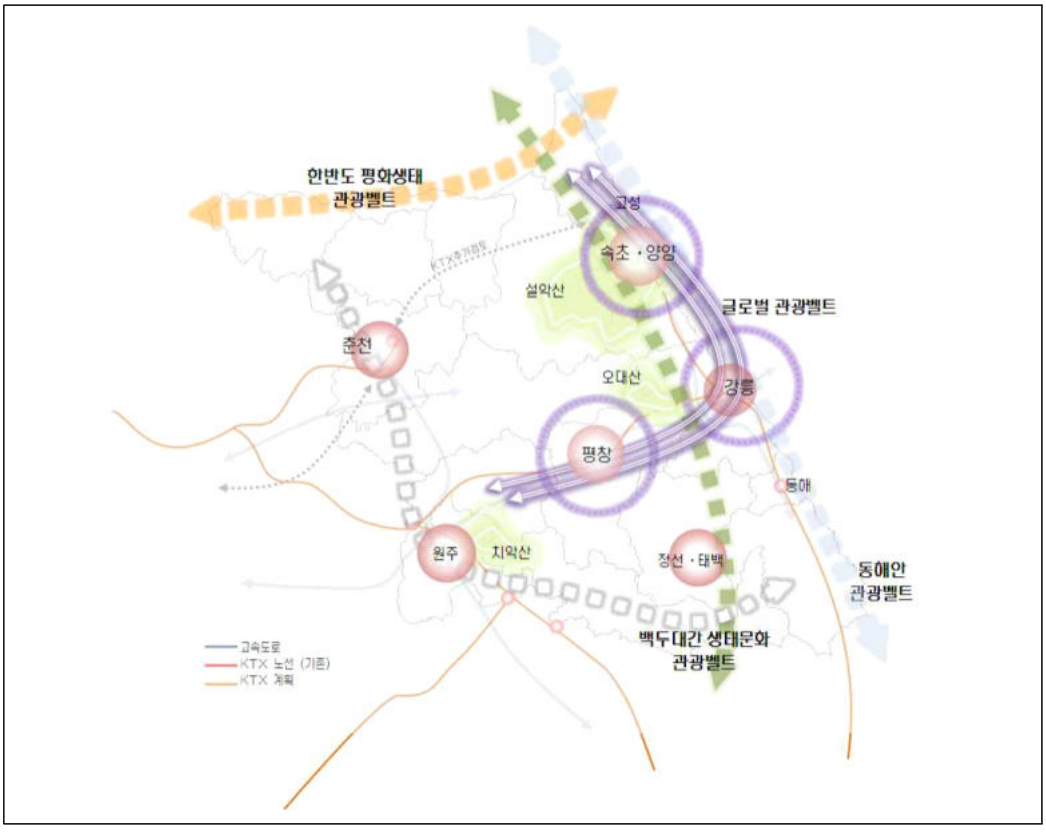
1.6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현황

0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을 비전으로 설정
- 강원도 권역의 목표는 「생태·웰빙관광 및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부 개발전략으로는 '평창-강릉-속초 연계 글로벌 관광벨트 구상',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 육성', '관광단지와 지역연계를 통한 복·융합 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를 평화생명관광의 세계적 명소로 개발'을 제시

【표 3-8-6-5】 강원 관광권 공간전략 및 특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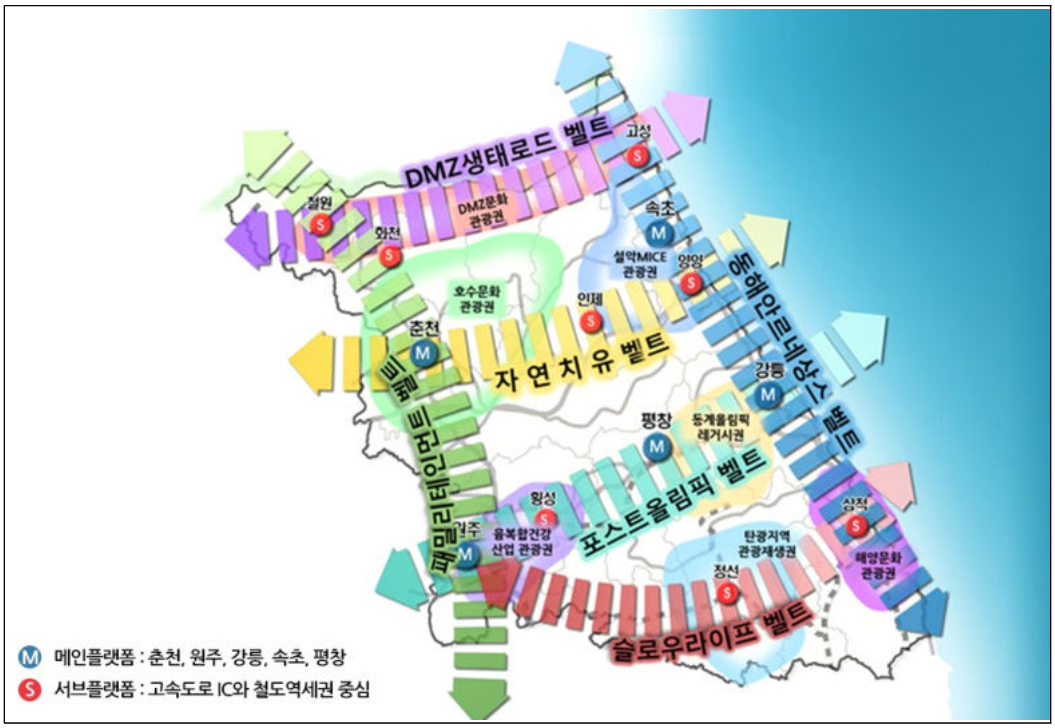
목 표	"생태·웰빙관광 및 동계스포츠의 메카"
전 략	① 평창-강릉-속초 연계 글로벌 관광벨트 구상 ②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 육성 ③ 관광단지와 지역연계를 통한 복·융합 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를 평화생명관광의 세계적 명소로 개발



02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의 개발비전은「동북아시아의 관광 수도」
- 속초는 공간구조상 자연치유벨트와 동해안르네상스벨트에 속함
- 자연치유벨트는 2017년 개통되는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를 통해 국내외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레저·휴양객을 적극 유치
- 고속도로와 연계된 각 시군별로 필요한 관광자원을 확충하되, 본 관광벨트의 경우 이미 상당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을 고도화하는 전략도 병행
- 춘천-양양 간 관광벨트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관광객들에게「강원의 자연을 담은 길」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광역관광 네트워크를 구축
- 동해안르네상스벨트는 2017년 완성되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단위 레저·휴양 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
- 고속도로와 7번국도 상에 인접한 크고 작은 관광도시의 서비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강원도 관광에서 차지하는 동해안 관광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 기 형성된 관광객들의 관심도와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관광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그림 3-8-6-2】 강원 관광권 관광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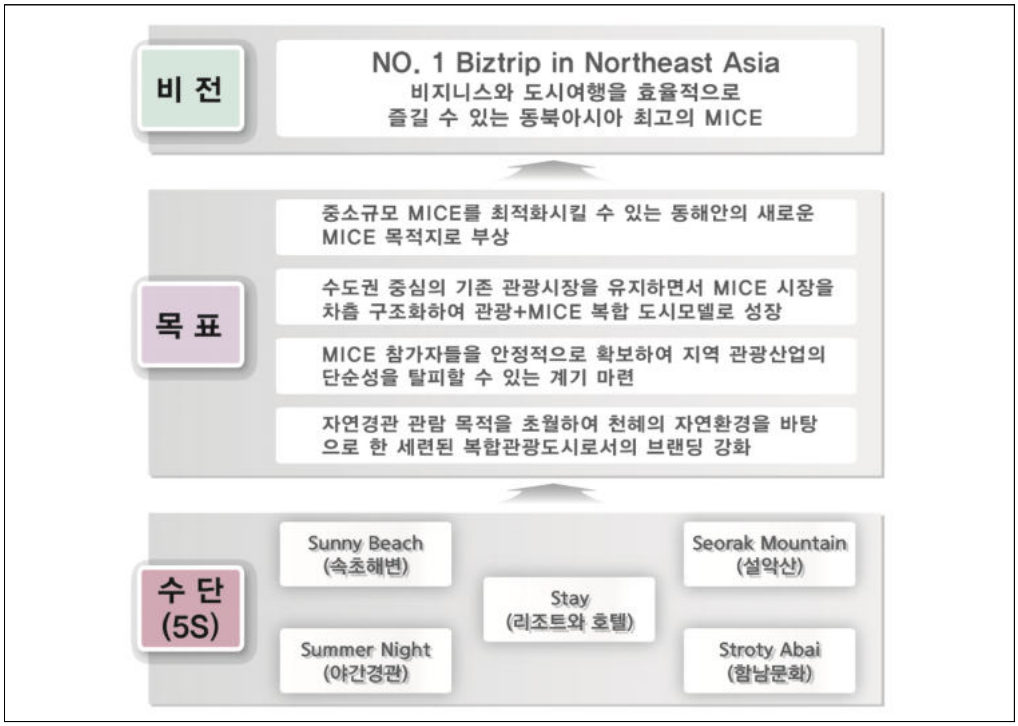


03 속초시 MICE산업 육성방안 연구(2017.05)

▌기본방향

- 'MICE + 관광'의 복합적인 강점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속초시를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핵심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MICE 산업 육성의 비전을 근간으로 하여 속초시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구체화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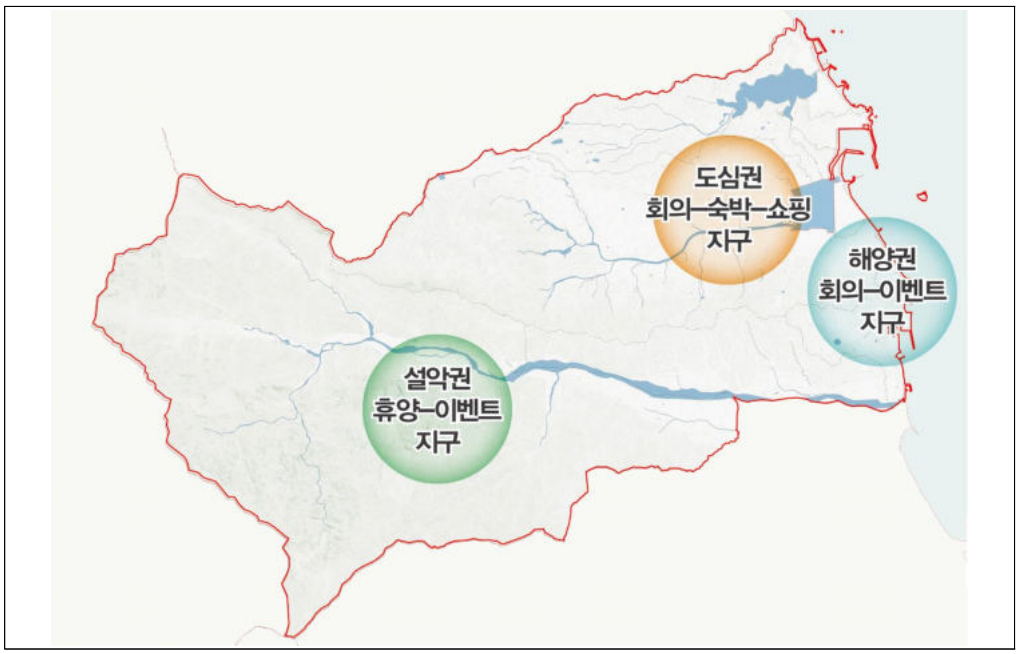
【그림 3-8-6-3】 MICE 산업 비전, 목표, 수단



▌MICE 인프라 형성

- 리조트·호텔 회의시설 확충
  - 기존 리조트 및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시설을 새롭게 리뉴얼하거나 또는 증축 하도록 유도
- 중소규모 비즈니스센터 발굴 및 활성화
  - 속초시 관내에서 중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비즈니스 센터들을 발굴하고 활성화
- 유니크 베뉴 발굴 및 활용
  - 장소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니크 베뉴들을 발굴하고 활용도 향상
- 속초시 MICE 지구 특성화
  - 비즈니스와 관광, 야간활동 등이 가능한 효율적인 MICE지구를 지정하고 MICE 참가자들의 동선관리 도모
- (가칭) 속초 인포메이션 플레이스(SIP) 선정 및 운영
  - MICE 참가자들의 도시여행을 위한 정보제공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속초 인포메이션 플레이스(SIP)'로 선정하고 적극 운영
- 철도역 대규모 컨벤션 기능 도입에 관한 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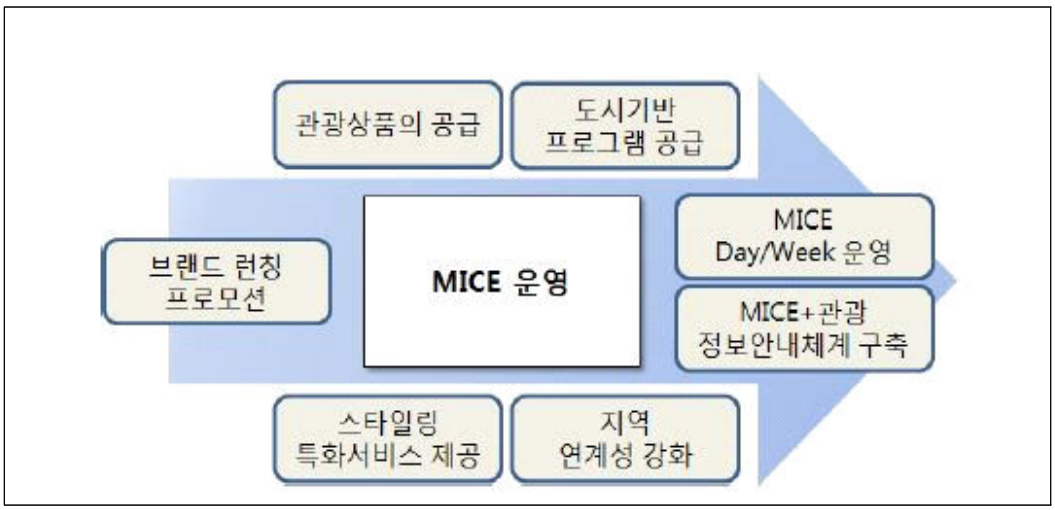
【그림 3-8-6-4】 속초시 MICE 공간구상



▮ MICE 운영

- MICE City 브랜드 런칭에 따른 MICE 프로모션 시즌 운영
- MICE 연계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 숙박업 운영의 다양성 모색
-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지원
- MICE와 지역 연계성 강화
- 'MICE + 관광' 정보안내체계 구축
- 속초시 MICE Day/Week 운영

【그림 3-8-6-5】 속초시 MICE 운영



1.6 문제점

01 관광자원에 비해 경쟁력의 부족

- 자연관광지인 설악산과 속초해변 외의 관광자원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타 관광지에 비해 경쟁력 결여
- 속초시 내 유·무형의 관광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관광상품화 및 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관광을 위한 관광 인프라 부족

02 관광지 수요의 증대

- 여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객의 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도입 필요
- 유명 관광지의 경우 주말이나 연휴에 과부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새로운 관광지 개발 필요성 부각

03 자동차 위주의 관광교통 인프라

- 속초시 교통관광은 자동차에 중심이 맞추어져 설악산이나 대포항과 같은 도시 외곽 지역에 관심을 두었고, 속초시 내부와의 연결망이 미흡함
- 도보관광이나 자전거 관광의 경우 주변 경관은 양호하지만 걷기에 불편하고, 일반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시민 안전에 위협

04 도시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의 미흡

- 안내표지판이나 안내소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대중 교통시스템 안내, 휴게공간 확보 등이 필요함
- 정기적으로 시내·외를 순환하고 있는 버스가 관광투어 버스의 대체수단 또는 연장수단으로 활용되어 기능적인 리모델링 실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함

05 도심의 먹거리 환경조성이 부족함

· 속초시 도심의 경우 아바이마을(아바이순대)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전문거리 정도가 있을 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먹거리촌이 부족함

· 관광활동의 형태가 가족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음식업들이 도심부 중심으로 발전해야함

06 관광소비의 비활성화

·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도시의 소비환경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지 입장이나 생필품 및 기념품 등의 구입이 매우 제한적임

· 도심부에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쇼핑 공간 연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기본방향

·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관광마케팅활동의 전개로 속초지역에 대한 관광 선호도 증진 유도

· 관광객의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시설의 도입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관광교통수단의 도입

·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개발

· 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

·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미래지향적 관광지로 개발

· 관광소비 패턴에 따른 관광 상품개발 및 정책전환

– 이벤트 및 음식, 특산품 활성화

· 급증하는 여가수요와 다양한 여가행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모색

· 지역적 관광자원의 특성 및 주된 수요대상자에 맞추어 특색 있는 관광개발을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

· 산재 된 관광 문화 자원의 발굴, 보전, 복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 상품개발

· 관광지 개발에 있어 외부자본 및 관광운영기술의 과감한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잠재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다양한 관광루트의 개발로 유형별 패키지 상품화 도모

· 즉흥적인 이벤트의 산발적 개최를 지양하고 문화·관광 이벤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 고유의 자연 및 문화자원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육성

- 관광순환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관광지간 연계이용 강화
- 지역의 문화 및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테마형 특화관광단지 개발
-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문화·관광자원의 연계개발



· 관광산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산촌의 농외소득 증가를 위해 체험마을, 관광농원 조성 및 관광지 주변의 민박마을 조성

3. 개발계획

01 관광루트개발

- 산악자원과 해안자원을 연계하고 설악산 관광권 내 양양·인제권과 유기적 상호관계를 유지
- 각 지역별 특성을 연결하는 생태권역·시가지권역·해양권역 관광벨트 구상하고 연계하는 tour-road 구상
- 남북교류증대에 따른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에 대비
- 환동해 국제관광권역 내 순환관광체계를 구축
- 동서고속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관광루트 개발 등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권역별 관광프로그램 마련

02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속적인 먹거리 관광 육성으로 동적이며 참여할 수 있는 관광기능을 유도
- 청초호, 영랑호를 활용한 친환경 관광시설 설치 및 체험콘텐츠 개발 등 친환경 생태명소 개발
-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설악산을 활용하여 순환산책로, 쌈지공원, 산악스포츠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산악관광 프로그램 개발

03 관광요소의 질 · 양적 확충을 통한 가족 및 외국인 관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계절별 이벤트를 개발하고 기존 문화재를 질·양적으로 확충·보완
- 가족단위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롭게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 동서고속철도, 크루즈 등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관광특구 등 문화·예술과 결합한 복합적인 관광요소 발굴

04 관광기반시설 확충

- 양양공항 이용 관광객이 속초시 방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계 교통수단 도입 검토
- 관광숙박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한국의 전통여관, 호텔을 개발
- 관광센터를 설치하여 교통, 숙박, 안내, 통역 등의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주요관광지별 지역관광센터를 설치·운영
- 속초해수욕장과 설악산 진입부에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자원 위주의 단순한 관광기반시설을 보완·확충

05 관광홍보강화

- 전국 도청소재지에 속초관광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속초시 차원에서 주요 나라에 속초 관광유치센터를 설치
- 주요 나라에 유치사절단을 파견하며 외국도시들과 자매결연을 강화하여 국제적 홍보활동을 활성화
-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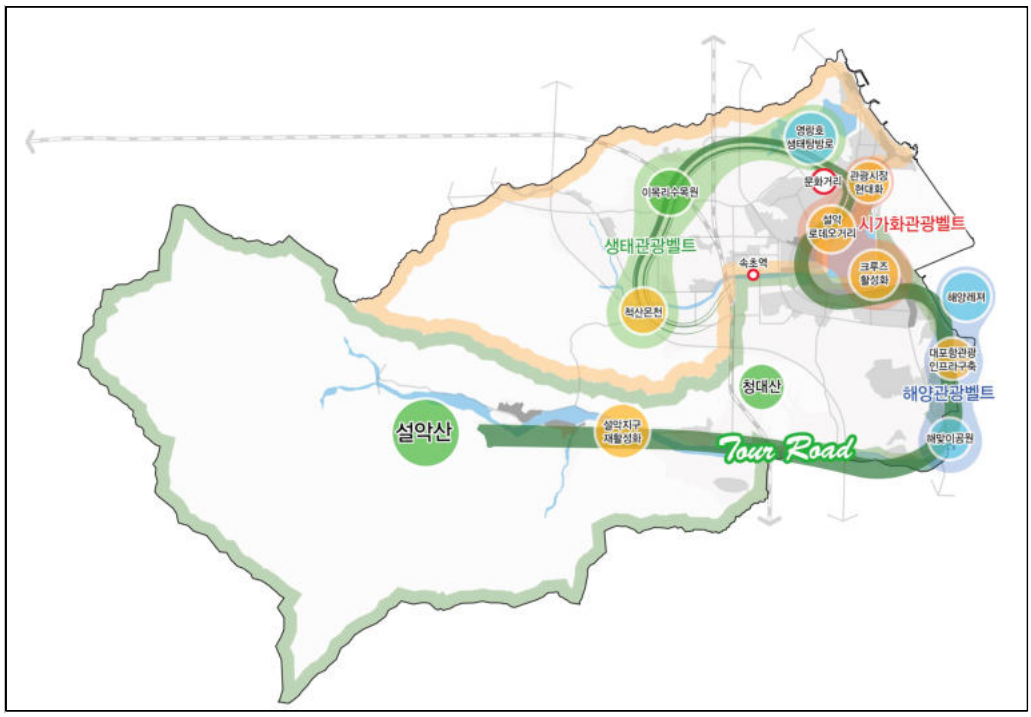
06 관광특산품 개발

- 지역 특산품을 적극적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 관광특산품으로서 수산물의 가공·포장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며 특히 항공운송에 대비한 가공포장법을 개발
- 향토음식점 지정 및 홍보 등으로 특정업체에 의존 된 요식업의 다양화 방안마련

07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 자연환경에 순응한 개발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함
- 각종 폐기물,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며 관광시설의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
- 환경보전업무에 대한 행정지도력을 강화하며 환경보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그림 3-8-6-6】 관광개발 구상도



4. 설악산 관광활성화 방안

▌산악관광에 대한 이해 부족(산지활용 = 환경훼손)

· 산악관광은 산지가 가지고 있는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는 자연경관 관람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규제 중심의 콘텐츠 개발로 등산과 관련된 시설 개발에만 치중

· '산지활용 = 환경훼손'이라는 인식으로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악관광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와 이로 인한 무관심

· 산지와 연계된 마을에 대한 고려보다는 해당 산지만의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에만 집중

▌단순한 패턴의 산악관광(단순 자연경관 관람형)

· 전국의 산악형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기존에 조성되었던 산악관광지의 경우 시설과 프로그램이 유사한 형태로 관광객에게 제공

· 단순한 자연경관 관람형 관광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여가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발생

· 단체 관광 위주의 수용환경을 가지고 있어 가족 단위의 개별여행이 늘어난 현재의 관광시장에는 매력도가 떨어짐

▌산지 통합 활용 미흡(지자체 간 연계 미흡)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대관령, 가리왕산, 두타산 등 강원도 내 주요산지를 살펴보면 2개 또는 3개의 지역자치단체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공원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지 개발 시 지역자치단체의 구역만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통일된 산지 활용에 한계 발생

▌파급효과 확대 한계(지역과의 연계성 미흡)

· 기존의 산악관광지는 공원 구역, 시설조성 구역 등 일정 구역 안에서만 개발 및 운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산악관광지 구역과 주변 마을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관광지 조성 효과가 주변 마을까지 미치지 않음

· 단위 관광지로서 필요시설이 구역 안에 모두 조성되어 있어 개발업자 또는 운영업자에게만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정부의 산악관광 정책효과 미지수(덩어리 규제 완화에 한계)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산악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추진에 관한 법률' 추진

· 그러나 13가지의 적용배제 지역 조항은 산악자원의 경쟁력이 높은 산지에 대한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

· 강원도의 경우 실제 적용배제지역을 감안하면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경쟁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산지 활용의 제약(산지 관련 규제)

· 강원도 및 시·군은 산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지가 규제로 묶여 있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움

· 보존과 활용의 Two-Track 전략이 요구됨

▌산악관광 공감대 강화로 지역거점화 추진

· 산악관광의 발전적 논의 및 공감대 확대

- 강원도 내 산지 여건에 맞는 산악관광을 정의하고 산악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야 함
-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거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함

· 지역 거점화를 위한 산악자원의 고도별 차별화 전략 추진

- 주변 마을까지 연계시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산악관광 모델 구축
- 핵심 산악자원(山)에 대해 고도별로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하여 관광객의 활동 공간을 연계하고 마을까지 확대
-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산지의 복합활용 및 융복합 추진

· 산지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악관광지로 조성 및 운영

- 연계 활용형 : 산악자원과 지역 문화 또는 특산품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
- 융복합형 : 산악자원과 함께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축산업(소, 양, 말 등), 화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 자연자원만을 단순히 활용하는 산악관광지 대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시킨다면 기존의 관광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新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광역 단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산지 단위의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

-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 광역 단위의 사업계획 및 파트너십 구축

- 각 사업주체별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과 최대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개발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빅데이터의 다면적 활용

· 강원도 산악관광 공간체계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원도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를 공간체계에 효율적으로 반영

· 수요자가 원하는 산악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화

- 최근 여가관광 트렌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강원도 산악관광 사업을 구상하고 구체화에 활용

▮ 친환경 新교통 수단 도입

· 산악관광은 청정자연을 핵심 자원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새로운 교통 수단 등을 도입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LIM(선형유도모터), 모노레일, 로프웨이 등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사용

5. 크루즈 산업

01 크루즈 시장 전망 및 동향

▌기존 시장 전망

· (세계 크루즈 시장) '08~'17년까지 연평균 4.5% 성장, '22년까지 연평균 약 5.1%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크루즈 관광객 전망(Cruise Industry, 2019): (19년) 2,776만→ (20년) 3,000만(+8.1%)

· (아시아 시장) '08~'17년까지 연평균 19.8% 초고속 성장, '22년까지 연평균 약 15.1%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크루즈선 운항) '20년 세계 크루즈 항로에 425척('19년 404척), 아시아 크루즈 항로에는 44척('19년 40척)의 크루즈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

– (19년) 404척(+25)→ (20년) 422척(+15척) → (21년) 436(+14) → (22년) 452(+16)

▌여건 변화(코로나 19)

· (코로나 쇼크)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과 집단감염 사태*로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이 전면 금지되어 전세계 크루즈선 운항 중단

– 日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3,711명 중 712명 코로나 확진

– (재개시점) 카니발, 로열 캐리비언 등 주요 해외 선사들이 '20년 8월부터 일부 항로에서 운항 재개 예정이나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음

· (회복전망) 크루즈 관광 대기 수요와 '20년 취소자들의 재예약 등으로 '21년 크루즈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약현황) '21년 출항 크루즈 상품 예약이 전년 동기(3월 이후) 대비 40% 증가, 이 중 11%만 금년도 예약 취소자로 나머지는 신규 예약자(LA타임스)

– (수요조사) 크루즈 관광객 4,6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크루즈 관광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CruiseCritic.com)

02 「관광진흥계획」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

▌크루즈관광 관련 2021년 주요 추진 계획

· (기항지 홍보)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 해외 크루즈 업계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참가 및 해외 박람회 참가

- 크루즈관광 박람회 개최

· (콘텐츠 확충) 기항지관광 체험 및 홍보 콘텐츠 확대

- 기항지별 크루즈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한국 크루즈 관광 홍보 영상 제작·배포

· (해외 거점 조성)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 해외 크루즈 관광 거점지사(뉴욕, 타이페이 등 6개서) 기능 확대 및 내실화

· (수요 확대) 체험단 운영을 통한 '안전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 크루즈체함단을 운영하고, 연안크루즈 홍보 병행

· (해외선사 유치) K-Cruise 온라인 홍보관을 비대면 홍보시스템으로 정착, 상시 원격 홍보로 해외 선사 접근성 증대

· (인프라 확충) 크루즈 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속초) 확장·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향후계획

· 크루즈 기항지 홍보 및 관광상품 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다양한 테마크루즈 상품 및 기항지 관광상품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국적 크루즈선 취항 여건 조성을 위해 연안 크루즈 항로 개발·운영 등 국태 크루즈 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른 크루즈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6.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MICE 산업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 동서고속철도 역사와 원도심과 연계하는 대중교통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을 통한 상권 이용인구 유입

· 지자체와 지역상인회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이용 인구 증가정책 마련

· ICT기술을 이용한 철도시설 이용객에 대한 관광서비스 상품정보 제공

▌MICE산업등과의 연계방안

· 속초항~양양공항~동서고속철도 등 육해공의 입체적 광역교통망을 활용하여 MICE등 국제적교류산업 육성

7. 세부계획

7.1 장사항 바다향기로 조성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천혜의 해안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사항 일원에 해안 탐방로를 조성하여 우수한 해안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고 관광객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범위	· 장사동 펜션크루즈 ~ 나폴리아
사업내용	· 해안 탐방로 조성(L=340m), 전망데크 광장 등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8년까지 투자액	'19년 예산액	'20년도 투자계획					'21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500	-	-	-	-	-	-	-	1,500

구분	세부내용
기대효과	· 영랑동 일원의 관광객 유입 활성화 기대 · 영랑호~장사항 연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속초관광의 추진동력 마련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7.2 대포항 주변 인프라 구축

구분	세부내용
목적	· 대포항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즐길거리·볼거리 관광 제공 · 대포항 주변 기존 관광인프라 연계코스 개발
위치	· 대포항 일원
사업내용	· 유치가능 해양관광분야 시책 발굴 벤치마킹 :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 · 대포전망대에서 바다향기로를 연결하는 기반시설 검토
재원대책	· 민자유치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모를 통한 직접 투자 추진
기대효과	· 특화축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비수기 설악동 활성화 기반 마련에 일조 · 매력있는 축제개발과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설악동 이미지 창출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7.3 오감만족 관광상품 개발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테마별 관광자원을 트렌드에 맞게 결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td></tr>
<tr><td>위치</td><td>· 속초시 전역</td></tr>
<tr><td>사업내용</td><td>· 오감만족 관광상품 개발
- 감성투어 : 골목길, 문화예술인문 결합 상품
- 맛집투어 : 유명한 지역먹거리 중심의 미식여행 상품
- 도보여행 : 바다향기로, 해파랑길, 호수길 중심의 도보여행 상품
- 시즌여행 : 사계절 축제·이벤트, 해수욕장 야간개장 등과 연계한 상품</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속초시 권역별 통합 관광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상생발전
· 다양한 계층의 누릴수 있는 관광지로서 가족 등의 단체 관람객 증가 예상</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7.4 「강원도 크루즈 체험단」운영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목적</td><td>· 현재 3만명 규모의 국내 크루즈 관광 인구를 연간 20만명으로 확대하여 도내 모항크루즈 취항을 위한 크루즈 관광수요 기반 마련
· 크루즈 관광 홍보콘텐츠 다양화 및 인식제고(대중화)로 도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td></tr>
<tr><td>사업개요</td><td>· 모집인원 : 강원도민 80팀 160명
· 대상선박 : 코스타 세레나호(114,500톤)</td></tr>
<tr><td>재원대책</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18년까지 투자액</th><th rowspan="2">'19년 예산액</th><th colspan="5">'20년도 투자계획</th><th rowspan="2">'21년 이후</th></tr>
<tr><th>소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
<tr><td>300</td><td>-</td><td>-</td><td>300</td><td>-</td><td>150</td><td>150</td><td>-</td><td>-</td></tr>
</table></td></tr>
<tr><td>기대효과</td><td>·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제고로 주로 항공에 의존되어 있는 해외관광 루트 개선
· 크루즈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업, 숙박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td></tr>
</table>

출처 : 속초시 내부자료, 2020년

IX 사회 · 문화 개발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의료 · 보건
2. 사회 · 복지 부문
3. 교육부문
4. 문화 · 체육시설 부문

제9장 사회·문화 개발계획 (변경없음)

1 의료·보건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의료보건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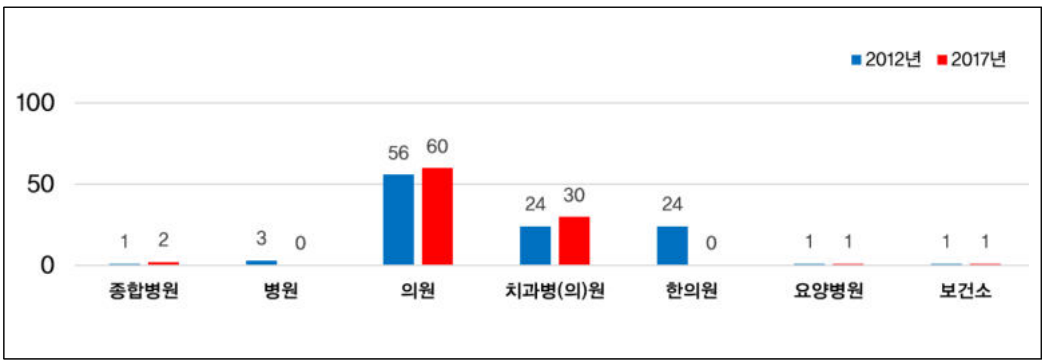
- 속초 의료기관은 총 117개소이며 주로 동지역 및 기성 시가지에 분포
- 「2017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1.5병상으로 OECD평균(4.7병상)보다 약2.4배 많음
- 속초시의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0병상으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의료시설의 고급화를 위한 계획 필요
-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총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3.1병상이며, 독일 8.0병상 순임

【표 3-9-1-1】 의료기관 현황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병원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2년	109	1	161	3	476	56	238	24	-
2017년	117	2	470	-	-	60	146	30	-

구 분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2년	24	29	1	79	-	1	-	-
2017년	24	-	1	130	-	1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의료인 현황

· 기준년도의 의료 종사자수는 815인임

– 의사107인, 치과의사37인, 한의사25인, 간호사182인, 간호조무사294인 등

·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는 인구 천인당 2.3인으로 OECD 평균(3.4)보다 적으며, 속초 의사수는 천인당 1.3인임

· 인구 천인당 간호인력은 6.9인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간호사 수 9.0인보다 부족

· 우리나라는 의사수, 간호사수가 인구 천인 기준으로 OECD 평균치 보다 낮음

【표 3-9-1-2】 의료인 현황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약 사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2012년	763	112	-	28	26	3
2017년	815	107	-	37	25	3

구 분	조산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비 고
2012년	-	228	210	153	3	
2017년	-	182	294	162	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1-3】 OECD 건강지표

구 분	천인당 의사수	천인당 간호사수	천인당 의학계열졸업자수	비 고
평 균	3.4	9.8	12.6	
한 국	2.3	6.9	7.6	
일 본	2.4	11.3	6.8	
멕 시 코	2.4	2.9	13.5	
캐 나 다	2.7	10.0	7.7	
영 국	2.8	7.8	12.9	
프 랑 스	3.2	3.2	9.5	
네 덜 란 드	3.6	3.6	16.0	
스 페 인	3.9	3.9	14.5	
덴 마 크	4.0	4.0	21.5	
독 일	4.3	12.9	12.0	
스 위 스	4.3	4.3	11.2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OECD 건강지표 주요지표 분석 결과, 2017년

1.3 문제점 및 여건변화

01 의료시설

- 의료시설 및 병상수는 양호하나, 노인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병원의 부재로 대도시에서 진료를 받는 불편이 존재
- 양적인 확충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설치 필요
- 의료기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시설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짐

02 의료인

- 의료시설의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및 향후 인구고령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병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2.1 기본방향

01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제고

- 수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충
-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적정배치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02 특수의료시설 확충 및 치료사업의 확대로 의료 서비스 전문화

- 인구증가에 따른 특수병원(노인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의 확충
- 연령층별, 장애 유무별 등 서비스이용의 전문화
- 생업에 바쁜 농어촌 주민 및 노인층 순환진료
- 신설되는 의료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진료 효율성 제고

03 생활권별 균형있는 의료시설배치

- 생활권, 인구밀도, 접근성 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확충
  - 생활권별 의료시설을 배치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 배치를 통해 2·3차 진료 전담
- 의료인구의 적정배치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시민의료서비스 향상
- 보건예방 행정의 적극추진과 방역활동의 생활화
- 교동지역에 집중된 의료시설이 시가지 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시스템개발

04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 시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전문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와 연계한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
- 건강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및 공공보건소 등에 관련자료 구비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05 의료·보건관련 정보망 확충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과 무료진료 등 각종 공지사항을 보건소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지함

2.1 지표설정

- 병상 당 인구기준은 250~900인으로 속초시는 2017년 현재 병상 당 112인(병상수 : 746병상)으로 기준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연도 2040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병상당 122인이라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현재보다는 혼잡한 진료환경이 예상됨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의료보건제도의 확대 등으로 속초시의 의료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연도인 2040년에는 병상 당 100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목표연도인 2040년 의사는 1.56천인당/의사, 병상수는 100인/병상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 141인 병상은 910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
- 보건소는 생활권별 1개소 이상으로 설치되어 교외 지역의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활용

【표 3-9-1-4】 의료시설 지표설정

구 분		단 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 구		인	83,213	85,268	87,959	89,860	90,930
종 합 병 원		개소	2	2	2	2	2
병상	1병상당 인 구 수	인/상	112	100	100	100	100
	병 상 수	상	746	853	880	899	910
의사	의 사 당 인 구 수	인/의사	778	641	642	642	645
	의 사 수	의사	107	133	137	140	141

주) 병상수는 강원도 평균지표보다 양호한 속초시 지표를 반영하여 현재수준 유지
의사수는 강원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강원도 천인당의사수 지표를 적용

3. 실천전략

01 종합병원의 확대 및 의료시설의 균형적 배치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적절한 균형설치 유도
- 종합병원은 생활권별 인구규모에 따라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배치하고 병원 및 의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진료체계 확립
-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을 설정하여 진료망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부문과 민간 의료부문의 상호 협력하에 진료권역을 구체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계층별 진료체계를 확립
- 종합병원의 유치에 병원의 입지와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병원 분원설치 유도
- 지역주민이 적은 지역은 보건소 확충을 통하여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균형개발 유도

02 응급의료 지원의 강화

· 속초시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 시차원의 응급의료체계 구성하여 의료서비스 확충

· 응급의료지원은 민간기관의 재정적 한계가 있음으로 시 차원에서 공공응급체계의 확립

03 의료보건도시계획의 수립

· 의료복지는 지역사회 특성

· 생활권별 도시보건지표 개발 및 보급

· 인근 도시간 건강정보 연계

· 의료보건 관련 기관들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04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확대

·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보건센터 및 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특정기능을 강화한 특화보건소 설치

· 의료 복지 및 감면혜택 지원

· 보건소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 보건소 역할 탈피

- 무료 건강검진, 질병 예방과 치료, 물리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 서비스 등의 기능 강화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보건의료센터로서의 실질적 역할 담당
- 단순한 예방업무 위주에서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전환
-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 시행

05 의료보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역과의 연계

- 속초시 보건사업 및 시민운동 활성화
- 의료복지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집권적·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및 주민의 주체성에 근거하여 운영
- 보건의료의 연대 및 제휴를 통하여 지역보건활동, 재가복지 활동에 진전을 꾀하고 보건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체계적인 정비 유도
- 지역의료시설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연계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한 학교,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06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특수병원 설치 유도

- 노인인구의 의료체계 강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특화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설치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문병원 유치 및 한방종합병원 유치
- 노인 도우미 간병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간호 전문인력 육성

07 보건·의료 정보화 및 의료전달 체계 강화

- 민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입지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보건의료 취약성 해소
- 생활권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양질의 의료시설 공급
- 보건지소에 의료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서비스체제 구축
- 오지 또는 노인들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호출서비스 제공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정보체계와 지역복지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 보건·복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 사회복지부문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01 사회적 약자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연도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가구는 3,068호로 가구원 수는 4,443인임

【표 3-9-2-1】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호)	가구원수(인)	가구(호)	가구원수(인)	가구(호)	가구원수(인)	시설수	인원
2014년	2,744	4,141	2,516	3,628	228	359	15	154
2015년	3,073	4,630	2,898	4,216	175	260	15	154
2016년	3,173	4,662	3,017	4,281	156	227	15	154
2017년	3,068	4,443	2,899	4,059	169	229	15	15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속초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434명이며 그 중 기초노령 연금대상자수는 9,553명으로 69.62%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표 3-9-2-2】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구 분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4년	12,261	4,947	7,314	9,038	3,231	5,807	73.71	65.31	79.40
2015년	12,487	5,060	7,427	9,087	3,260	5,827	72.77	64.43	78.46
2016년	12,752	5,139	7,613	9,172	3,270	5,902	71.92	63.63	77.53
2017년	13,434	5,494	7,940	9,553	3,426	6,127	70.95	62.36	76.8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장애인 등록현황

· 속초시의 장애인구는 4,958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3급 이상의 장애로 관리가 시급한 인원은 1,829명으로 36.9%의 비중을 차지함

【표 3-9-2-3】 장애인 등록현황

구 분	성별			장애등급						
	합계	남	여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4년	4,889	2,833	2,056	4,889	359	685	807	836	1,129	1,073
2015년	4,827	2,796	2,031	4,827	357	667	799	825	1,105	1,074
2016년	4,851	2,808	2,043	4,851	356	673	794	834	1,103	1,091
2017년	4,958	2,876	2,082	4,958	355	657	817	833	1,155	1,14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 속초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는 총 560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759명으로 나타남

【표 3-9-2-4】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단위 : 가족, 명)

구 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보훈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4년	637	1,590	422	1,055	215	535	-	-
2015년	593	1,466	349	866	544	600	-	-
2016년	576	1,420	186	614	390	806	-	-
2017년	543	1,319	169	560	374	759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노인복지

· 속초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8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2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표 3-9-2-5】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구 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13년	81	1	79	1
2014년	81	1	80	-
2015년	85	1	84	-
2016년	87	1	86	-
2017년	86	1	85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2-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구 분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2013년	12	409	367	5	350	312	7	59	55
2014년	13	426	376	5	358	307	8	68	69
2015년	13	434	380	5	363	311	8	71	69
2016년	14	496	396	6	425	327	8	71	69
2017년	14	496	399	6	424	344	8	72	5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2-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구 분	합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2013년	12	429	201	5	320	157	5	78	37	2	31	31
2014년	12	386	152	5	311	123	5	55	22	2	20	20
2015년	12	426	146	5	320	115	5	79	27	2	27	27
2016년	12	458	159	5	359	127	5	74	25	2	25	25
2017년	12	487	195	5	371	153	5	88	34	2	28	2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여성복지

· 속초시의 여성복지시설은 소외여성복지시설 1개소, 여성폭력상담소2개소를 운영중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시설은 전무하여, 여성복지에 대하여 전문화 및 시설확충이 필요함

【표 3-9-2-8】 여성복지시설

구 분	소외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현재인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현재인원
2013년	1	58	54	9	-	-	-	-
2014년	1	61	64	6	-	-	-	-
2015년	1	38	41	3	-	-	-	-
2016년	1	54	55	2	-	-	-	-
2017년	1	46	38	10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2-9】 여성폭력상담소

구 분	합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2013년	2	1,437	1	872	1	565	-	-
2014년	2	1,407	1	1,008	1	399	-	-
2015년	2	1,546	1	950	1	596	-	-
2016년	2	1,605	1	1,201	1	404	-	-
2017년	2	1,743	1	1,337	1	406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4 아동복지

· 2017년말 현재 속초시의 양육·보호치료시설은 전무하며 사회적 여건 변화등을 반영하여 확충이 필요함

【표 3-9-2-10】 아동복지시설

구 분	합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2013년	1	1	-	-	-	-	1	1
2014년	1	4	-	-	-	-	1	4
2015년	1	2	-	-	-	-	1	2
2016년	2	11	-	-	-	-	2	11
2017년	2	9	-	-	-	-	2	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5 장애인복지

· 2017년말 현재 속초시의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장애복지에 대하여 전문화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함

【표 3-9-2-11】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구 분	합계		연말 현재 수용인원 (장애종별)				
	시설수	입소자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기타
2013년	3	20	3	-	-	17	-
2014년	3	20	3	-	-	17	-
2015년	3	19	1	-	-	15	3
2016년	3	23	4	-	-	18	1
2017년	3	22	3	-	-	19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문제점 및 여건변화

01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속초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말 1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체인구의 18.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대비 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출산율의 저하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0.2%로 고령자인구 증가율 2.9%에 비해 낮아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수요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사회정책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02 가족구조의 변화

- 3~4인 가구 중심에서 1~3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재혼 가족,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등장
-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부모 부양의지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노인, 아동 등 돌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짐에 따라 남성의 육아를 위한 사회·문화적 해결 방안, 자영업자 등에 대한 양육지원 방안이 필요함

03 현대사회 복지개념의 변화

- 과거 사회복지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빈곤에서 탈피하는 전통사회의 보완적 사회복지 개념에 한정됨
- 최근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모든 시민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보편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
- 복지에 대한 인식이 수단적 개념이 아닌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표로 인식하는 추세로 공공지원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중시하고 있음

04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복지서비스 공급 필요

-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서비스 확충 전략 필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05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

- 인구고령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정비와 확충 및 전문화가 필요
-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양적인 문제해결을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06 복지프로그램 미흡

-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 공급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필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와 그에 대비한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필요
- 외국인 가구 등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복지시설 부족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부족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2.1 기본방향

01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질적 확충

- 인구증가, 도시규모의 확대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필요
- 복합시설을 검토하여 시설의 효율화, 이용체계 강화
-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잠재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확충 필요
-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문제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로원,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

02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 확충

- 어린이, 임산부, 근로자, 노인, 신체장애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계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공급으로 다양한 계층에 혜택 부여
-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 알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지속적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실시와 참여기업에 특정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여성의 사회 참여도 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교양 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청소년 여가시설 확대 설치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방안 강구
- 사회복지기관, 사회교육시설 등의 설치
-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설 운영
- 청소년의 선도와 새로운 여성복지 욕구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

03 생활권별 균형적 서비스 공급

- 복지시설 신설시 균형적이고 종합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별 배치 필요
-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신설

2.2 지표설정

【표 3-9-2-12】 사회복지시설 지표설정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아동복지시설	2	2	2	2	2
청소년회관	3	3	4	4	4
종합복지회관	1	1	1	1	1
여성복지시설	1	1	1	1	1
노인복지시설	100	103	106	108	110
장애인시설	3	3	3	3	3

주) 강원도 복지시설(2013~2017년도) 만인당 각 개소수를 적용

2. 사회복지시설 계획기준

01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18. 3. 1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02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03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04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4. 실천전략

01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기반 강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배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목표 연도에는 각 동별로 1개소씩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계획
- 저소득층 노인 가족 전반에 대한 가족돌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봉사원, 도우미 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확충
-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환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 미래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시설보호측면에서 노인층의 소득, 주거, 의료 보건차원의 지역사회 서비스향상으로 전환하여야 함
- 도·농간 노령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배치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은 144개소 배치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

-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인적 노후생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나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하천정화, 가로수 및 화단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에 노인인력을 활용 시 노인특성에 맞도록 배치하며 손주돌보미 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노인 스토리텔러 등 전문적 창업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유도함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노인동아리, 소모임 활성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노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
- 노인일자리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주요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02 어린이·청소년 보호 및 인권신장 기반 마련

▌아동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탁아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시설의 확충

· 탁아시설의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인구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 및 시설 전환을 통한 탁아시설을 확충 배치함

·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등은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

▌청소년 문제의 사전적 예방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신고상담체계 구축

· 약물남용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약물 등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약물 복용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자활센터설치

·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흥가의 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한 보호순찰 강화

▌근로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 근로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회지도와 신고체계 등의 보호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시간외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예방

·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의 신체적·성적 학대와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시적 보호서비스 제공

03 여성 임신·출산 및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출산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영유아의 지속적 관리와 체계적 보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 등록관리를 확대하고, 여성취업자들의 안정적 출산장려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양육휴가 의무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양육지원 확대(대체인력 등)방안 마련

▌돌봄의 사회적 분담

-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국·공립 탁아 보육시설을 생활권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대·배치하고, 야간보육, 방과 후 아동지도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 부족한 보육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여성 복지시설 확대

-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의 부녀복지시설을 1개소 배치
- 여성회관을 통하여 생활개선사업, 교양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조직운용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 여성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육아 지원 강화

- 육아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을 건립하여 시설 보육 이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육아비용의 지원과 장학금 지급, 사교육 저감 대책 마련 등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04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기준 강화

- 장애인들의 재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인으로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보호기능을 확대 및 장애인의 수용·보호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강구함
- 장애인 수용·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은 생활권을 고려 배치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 수용 및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은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재활보호체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은 지역별로 적정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를 도모함
-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단위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열악한 장애인시설을 정비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시설 기준 강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취업알선 정보망의 확보를 통해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의무고용대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활동보조제도 강화

- 장애인 활동보조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 현실화
- 장애인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를 확대·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자녀의 자립자금 대여 등 지원책 마련

▌장애인 우선시하는 공공시설 설치

- 보행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 시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한 조건의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 저상버스의 도입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전동휠체어 충전소 등을 확대·설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 구현

05 돌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영역별 대응방안

▌돌봄정책 탈가속화 수준에 따른 정책방향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
- 민간이 제공하는 돌봄기관의 경우, 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돌봄기관·시설에 종사자 고용안전성, 근로조건과 처우 등 근무여건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캐어(care)체계 구축

-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초기대응 강화
- 비대면 디지털행정시스템 마련 및 상시운용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 마련
- 비대면 근무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분야의 안전성 강화

【표 3-9-2-13】 돌봄정책의 추진방향

1. 복지기술(WT)을 통한 융합적·효율적 사회서비스 혁신	· 복지기술(WT)을 통한 융합적·효율적 사회서비스 혁신 · IT기기 활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2. 사용자 주도의 다방향 Multi-interactive 사회서비스로 전환	· 사용자의 주도적 역할(the public as more patners) · 사용자 경험 (User Interfaces & Experience) 기회 확대
3.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적용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및 기관 역량 강화	·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적용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 도모
4.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산 및 체계화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확대 ·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업(co-creation)체계화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커뮤니티 연계 및 육성

06 성별 균형적인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양성평등정책 추진협의회 설치 및 전문성 강화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마련
-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계자, 연구기관, NGO,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주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여성 임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목표제」 등의 도입 권장
- 공공기관 내·외 다양한 여성 인재 임용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표 3-9-2-14】 협치민관협의체 (총괄 거버넌스)

1. 성 평등 정책추진기반 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설치 -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간 협력 - 지역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활성화,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촉진 •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여성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3. 지역사회 안전증진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특성을 반영한 이동여건 조성 - 도시기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안전 유지역량 강화
4. 가족친화 환경조성	·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양립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강화 - 돌봄서비스 내실화와 돌봄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단위 돌봄 확대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공간 확대 - 지역사회 여성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참여 확대

출처 : 여성가족부(2017).「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p. 14.

07 안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안전문화 계획

▮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맞춤형 보행 안전환경 조성
- 노숙인 국고지원시설 신·증축확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증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와 가스감지센서 설치 지원 등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피난약자에 대한 주거시설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 범죄 피해 우려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강화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 유아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과정 내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체계적 교육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약자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확대
- 어린이가 직접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참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

- 장애인 및 노약자 교육훈련 체계 개선, 위기상황 탈출 훈련 프로그램과 필요한 장비의 개발,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자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강화
- 모바일 기반 장애인 재난경보와 유도시스템 개발 등 21세기 새로운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

3 교육부문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교육시설 현황

· 유치원 9개소,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변화없으나, 경동대학교 내 속초캠퍼스의 통폐합으로 사실상 폐교상태

· 2017년 학생수는 총 9,982인으로 2017년 기준 속초시 인구 83,213명 대비 8.3%를 차지함

【표 3-9-3-1】 교육시설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 및 학과수	보통 교실수	학생수(인)	교직원수(인)			교원1인당 학생수(인)
					소 계	교 원	사무직원	
2014년	34	480	466	15,623	1,077	929	148	16
2015년	31	504	450	18,427	1,160	979	181	17
2016년	29	433	605	9,982	879	770	109	13
2017년	29	433	605	9,982	869	770	99	13
2018년	29	433	606	9,608	873	771	102	12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인)
계		29	433	9,608	873	11
유 치 원		9	33	596	61	13
초 등 학 교		12	190	3,892	329	14
중 학 교		4	96	2,389	201	13
고등학교	소 계	3	91	2,612	224	13
	일 반	3	91	2,612	224	13
	전 문	-	-	-	-	-
대학 이상	소 계	-	-	-	-	-
	전문대학	-	-	-	-	-
	대학(교)	-	-	-	-	-
기타학교		1	23	119	58	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교육시설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1.2 기타교육시설 현황

· 속초시의 사설학원은 128개소, 독서실은 12개소 도서관은 교육문화관 1개소, 교육도서관 1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로 총 3개소를 보유하고 있음

【표 3-9-3-2】 사설학원 및 독서실

(단위 : 개수)

연별	사설학원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수강자수	강사수	강의실	독서실수	열람실수	열람 좌석수
2013년	139	9	7,093	354	528	24	126	1,868
2014년	147	8	9,180	262	571	12	66	982
2015년	111	7	6,456	228	327	11	10	-
2016년	116	7	4,486	107	383	11	54	-
2017년	119	9	10,491	301	438	12	61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3-3】 공공도서관

(단위 : 개수)

연별	도서관 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객수	직원수
			도서	비도서	연속 간행물		
2013년	2	1,524	274,609	0	0	477,498	27
2014년	2	1,190	238,056	22,420	274	485,590	28
2015년	3	1,393	263,160	22,739	336	522,864	38
2016년	3	1,415	271,352	16,845	337	673,496	33
2017년	3	725	279,326	23,524	192	562,317	31
속초교육 문화관	1	150	147,600	14,755	84	243,769	19
속초교육 도서관	1	258	88,029	6,963	43	115,641	7
속초시립 도서관	1	317	43,697	1,806	65	202,907	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3 문제점 및 여건변화

01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부족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생교육복지체제 기반구축 미흡
- 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교, 기업, 개인학습자 등 사회 각 부문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역할 분담 방안 수립이 필요

02 지역인재 유출 및 대학교육과 지역경제 낙후문제

- 지역대학의 인프라 부족과 지역산업구조 역시 특화되지 못해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심각함
- 인문·사회분야의 고급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인력수요 취약
- 학교주변 교통, 식품 등의 유해환경 및 학생 복지시설 부족 등 열악
- 외국어고등학교, 전문고 및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학교 부재
- 경동대학교(설악URIE캠퍼스) 폐교 및 4년제 종합대학교의 부재
- 지역의 문화예술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미흡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부족

03 교육환경의 확충과 내실화 문제

-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의 연계미흡, 학급당 학생수 감축추세에 따른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행정구역별 학교시설의 불균형 현상 초래
-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학습이 미흡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중도탈락자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미비함
- 학생들의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사물함 부족, 교실 냉난방시설의 부족, 급식시설의 부족, 화장실 문제 등 학생들의 기본이 되는 시설들이 미비한 실정
- 학생의 실질적인 진로교육 내실화를 도모해줄 수 있는 체제 미구축
- 학교주변의 유흥, 위락업소의 증가로 교육환경 저해
-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격차가 심화됨

04 평생교육의 중요성 대두

-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언제든 재취업, 전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게 됨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수의 증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3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절실함
- 공무원, 교사 등 기존 담당업무를 가진 인력이 부업무로 평생교육을 담당하여 평생교육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탓에 프로그램 개발, 관리, 평가, 상담, 조정 등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됨

05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 모색

-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마이스터고,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 등 특성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역 내 특성화목적의 중등교육기관 부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인재의 전출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2.1 기본방향

0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계획추진

-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자발적 참여추진
- 지역특화분야의 다양한 학습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확보
-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호연계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영역별 전문가 양성

02 정보기술을 통한 지식 인프라 구축과 교육컨텐츠 개발

-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기술 인프라와 가상교육체제 구축
- 컨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03 학교교육 여건 확충

· 학교규모의 적정화

- 새로운 학교(특목고, 소규모 대안학교 포함)를 설립하여 적정규모로 유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실시, 학교 재배치, 보조교사 활용

· 학교주변 소음공해를 막는 법적 장치 마련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축 감소

-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기존학교로 통학이 불가피
- 통학거리 증가에 따른 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04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 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 우수인재가 지역의 기업으로 원활히 공급되는 체계구축

· 산업 현장화, 전문화된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에 기여함

· 우수학생의 이공계 유인, 대학환경의 개선과 산업의 수요 반영 및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로 기업이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의 취업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

05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 여성 인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직접적인 직업체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체계적, 집중적으로 이를 전문화하게 하여 여성의 직업세계 진입과 발전을 보다 용이하게 함

· 여성지원정책의 강화

-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이나 복지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는 기업, 여성고용 우수 기업은 여성능력 활용의 선도적 역할자라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

· 지역사회 조건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여성취업 관련된 산발적인 기구를 통합하여 효율성 추구
- 공공기관의 연계강화,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의 협응적 체계구축

· 가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 남성의 돌볼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조성

·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누적된 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 채용 할당제 실시

2.2 지표설정

- 초등학교는 OECD 교육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시 목표연도에 12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현재 초등학교는 12개소)
- 신설 학교는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수 및 학생수의 추가 확보 시기 결정
- 학생수 추계는 5세 단위를 기준으로 학년별로 배정하고 학교당 학급수는 현황을 반영
- 현재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가 위치하나 폐교상태임
- 대학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최적의 부지선정 및 매입지원, 기반시설 조성 등 4년제 대학유치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표 3-9-3-4】 교육시설 지표설정

구 분		단 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초등학교	학생수	인	3,870	4,184	3,802	3,635	3,704
	학급당 학생수	인/학급	20.6	21.0	21.0	21.0	21.0
	학급수	학급	188	199	181	173	176
	학교당 학급수	학급	15.7	16.6	16.5	15.7	16.0
	학교수	개교	12	12	11	11	11
중학교	학생수	인	2,589	2,220	2,261	1,920	1,905
	학급당 학생수	인/학급	25.4	22.9	23.1	23.1	23.0
	학급수	학급	102	97	98	83	83
	학교당 학급수	학급	25.5	24.3	24.5	27.7	27.7
	학교수	개교	4	4	4	3	3
고등학교	학생수	인	2,837	2,426	2,125	2,095	1,873
	학급당 학생수	인/학급	30.8	23.1	23.1	23.0	23.1
	학급수	학급	92	105	92	91	81
	학교당 학급수	학급	30.7	35.0	30.7	30.3	27.0
	학교수	개교	3	3	3	3	3
대학교		개교	1	1	1	1	1

주) 유치원은 학교산정에서 제외, 대학교는 학생수 및 학급수 산정에서 제외
OECD 학급당 평균 학생수 : 초등교육(21명), 전기중등교육(23명)

3. 실천계획

01 교육기반 선진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기반 선진화

· 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

· 학급당 학생수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신설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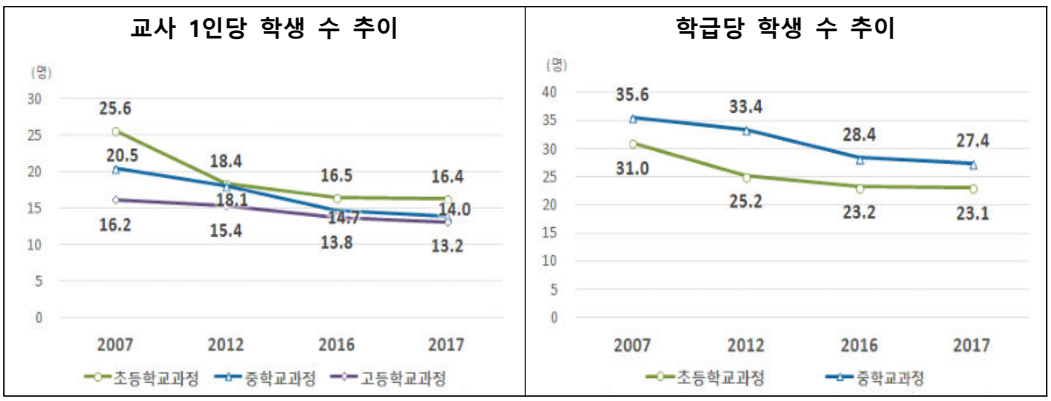
· 학교 주변 유해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표 3-9-3-5】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교육	중학교
전 국 (인)	16.4	14.0	13.2	23.1	27.4
속 초 시 (인)	13.6	13.4	13.8	15.7	25.5
OECD평균 (인)	15.2	13.3	13.4	21.2	22.9

주1) OECD EDU. DATA, 2017
주2) 통계연보, 각 년도(2017년)

【그림 3-9-3-1】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변화추이(전국)



출처 :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 교육환경의 개선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통합 교육 활성화

·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학교 유치

· 4년제 종합대학교의 유치로 교육의 터전 제공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 강화

02 학교환경의 질적 개선

▌학교기반의 선진화

- 학생 체형에 맞는 고품질의 책걸상과 사물함을 공급하고, 냉난방 및 급수·화장실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인쇄물 및 구체물, 각종 영상매체자료, 시청각 기자재 등 교육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개선

- 학교보건과 위생,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흥업소의 이전 적극 추진
- 지속적인 학교 주변 유해환경점검 및 캠페인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환경이 취약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정보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스마트 스쿨(smart school) 구현

- 정보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장기적 측면에서 IT-인프라를 학교에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 기술이 접목된 학교로 개편
-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토론이 가능한 기반시설 구축·확대

03 교육환경의 다양화

▌다양한 학습 욕구의 해소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수준별 맞춤 학습, 논술캠프, 독서 교육, 스포츠클럽 등 아카데미 신청학생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모집하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맞춤별로 선정 및 운영
-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학교간 협력체계 구축

- 소생활권별 학교간 상호발전과 학생지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지역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시스템 운영

· 글로벌시대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점점 더 가중

·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시설과 강사, 수준 높은 프로그램 등 영어교육을 제공 하는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절감

· 또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해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영어교육의 격차 해소

·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 추진하며, 영어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4 문화·체육시설 부문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문화시설 현황

01 박물관 현황

· 속초시의 박물관은 속초시립박물관 1개소로 총 13,137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1만명 이상의 입장객이 방문하고 있음

【표 3-9-4-1】 박물관 현황

(명, 점)

구분	입장자	소장품							
		합계	금속	토제	석	나무	지	사적	기타
2012년	102,769	8,165	1,374	171	602	1,106	3,097	300	1,515
2017년	113,877	13,137	2,391	213	1,020	1,284	6,106	420	1,70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문화시설 현황

· 공연시설은 4개소(공공공연장 1개소, 민간공연장 2개소, 영화관 1개소)임

· 전시시설은 미술관 1개소가 있으며, 기타시설로 문화원 1개소가 있음

【표 3-9-4-2】 문화시설 현황

구분	공 연 시 설				전 시 실		기 타 시 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스크린수					
2012년	1	-	1	5	1	-	1	-	-
2017년	1	2	1	5	1	-	1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체육시설

-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1개소, 축구장 2개소, 테니스장 1개소 등 59개소가 있음
- 2017년도 신고체육시설은 125개소로 총 1개소 감소함
- 2017년도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2개소로 2012년과 변함없음

【표 3-9-4-3】 체육시설 현황

구분	공공체육시설											
	합계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	구기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승마장	조정카누장	전천후게이트볼장
2012년	45	1	2	1	1	34	2	-	1	1	1	1
2017년	59	1	2	1	1	45	2	1	1	1	1	3

연별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합계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합계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2012년	126	3	20	20	9	70	-	-	4	2	2	-	-
2017년	125	5	19	19	11	67	-	-	4	2	2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문제진단 및 여건변화

01 문화시설

-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
- 복지회관, 박물관,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부족

02 체육시설

- 대부분이 신고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 부족
-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수용할 시설이 부족
- 생활 속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형 체육시설의 필요성 증가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2.1 기본방향

01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문화도시 경관 조성, 지역문화 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도시 환경 조성

· 문화적 핵심거점을 설정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서 문화적 흐름을 도시 전체로 확산

· 기보유한 역사적 시설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 지역문화재가 입지하고있는 주변에 대한 개발규제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주변환경 정비

· 문화도시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충

·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도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속초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 시민문화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적인 다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국제적 시민교육 확대

02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체육활동의 기회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 지표설정

01 문화시설

· 일반시민의 정서함양 및 편리한 이용을 고려한 시설 배치

· 지역사회 및 지역공간을 특화할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 확립

· 공공도서관은 목표연도까지 1개소를 설치(총 3개소)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박물관은 인구증가에 따른 설치보다 신규 전시테마 등의 이슈 발생시 추가설치 검토
· 공공공연장은 4만인당 1개소 설치로 목표연도에는 총 2개소로 계획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여가문화 저변 확대
· 재난 발생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역량강화 계획

02 체육시설

· 공원, 폐교 등을 활용하는 등 기존시설 정비 및 이용
· 수변 및 공원·녹지지역에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체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생활주변공간을 이용한 소규모 체육기반시설 개발을 통해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착

【표 3-9-4-4】 문화•체육시설 수요 추정

구 분		단 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1개소/3만인	2	3	3	3	3
	박 물 관	1개소	1	1	1	1	1
	공 연 장	1개소/4만인	1	2	2	2	2
	시 민 회 관	1개소/10만인	1	1	1	1	1
체육시설	문 화 원	1개소/10만인	1	1	1	1	1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3만인	3	3	3	3	3
	종합운동장	1개소/10만인	1	1	1	1	1
	공공체육시설	개소/1.5천인	59	59	59	60	61

3. 실천계획

01 문화시설

차별없는 문화서비스 제공

- 모든 시민이 동일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문화서비스 제공이 절실함
- 기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지역 문화 기반시설인 북카페, 휴카페와 복지와 문화, 스포츠가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여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특화된 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문화시설의 확충에 앞서, 문화·예술, 공연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 장르별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
- 문화인력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동호인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02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실천운동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생활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축구공원 등 새로운 체육시설이 조성
- 기존 시설과 더불어, 시민들의 여가 활동증진을 위해 소규모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시설의 확충 및 신설

해양·산악관련 체육시설의 개발

-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해양 체육시설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체휴일제도, 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휴양인구 증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레져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 풍부한 산악지형을 활용한 트래킹코스, 암벽등반장 등 생활체육시설 도입으로 속초시만의 특성을 활용한 체육시설도입 추진

X 실행계획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1. 현황분석
2. 재정계획
3. 재원조달방안
4. 투자계획

제10장 실행계획 (변경없음)

1 현황분석

1. 재정규모

1.1 재정규모 현황

· 2017년 기준 속초시의 재정은 결산액 기준으로 세입 454,593백만원, 세출 362,928백만원이며, 잉여액은 91,665백만원임

· 과거 연평균증가율은 세입이 6.7%, 세출이 5.7%로 나타남

【표 3-10-1-1】 총 재정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별	예산현액	세입	세출	잉여
2012년	332,627	308,541	260,062	48,479
2013년	343,412	349,756	271,360	78,396
2014년	332,208	302,510	287,667	302,510
2015년	340,473	348,008	286,330	61,678
2016년	358,521	367,732	301,646	32,456
2017년	443,521	454,593	362,928	91,665
증가율 (%)	4.9	6.7	5.7	11.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재정자립도

· 2017년 기준 속초시 재정자립도는 16.47%, 재정자주도는 57.34%, 재정력지수는 33.5%를 나타남

· 2012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5.5%, 재정자주도는 –3.0% 감소하였으며, 재정력지수는 2.1% 증가함

【표 3-10-1-2】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연 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재정력지수)
2012년	23.1	69	29.6
2013년	20.6	68	25.5
2014년	18.37	60.7	26.4
2015년	23.37	57.37	31.9
2016년	19.36	56.12	36.9
2017년	16.47	57.34	33.5
증감율 (%)	-5.5	-3.0	2.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 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X 100
2)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액 X 100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 교부전기준

2. 일반회계 세출입 구조현황

2.1. 일반회계 세입구조

· 2017년도의 예산 현액은 345,202백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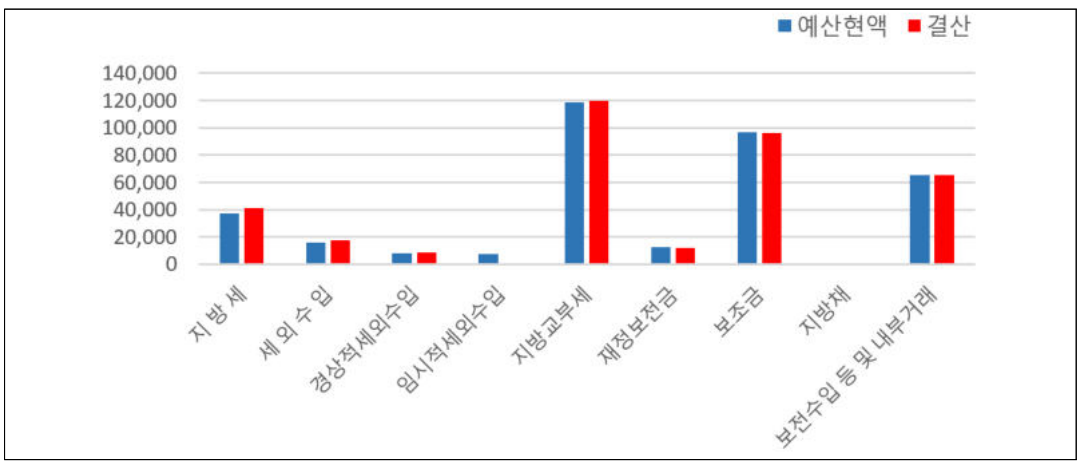
· 2017년도 일반회계세입은 전체세입에서 결산 기준 지방교부세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보조금 2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5%를 차지

【표 3-10-1-3】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과목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대 결산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2012년	247,805	100.0	245,503	100.0	99.07
2017년	345,202	100.0	351,863	100.0	101.9
1. 지 방 세	37,000	10.7	41,260	11.7	111.5
2. 세 외 수 입	15,761	4.6	17,642	5.0	111.9
3. 경상적세외수입	8,161	2.4	8,889	2.5	108.9
4. 임시적세외수입	7,600	2.2	8,753	2.5	115.2
5. 지방교부세	118,507	34.3	119,867	34.1	101.1
6. 재정보전금	12,390	3.6	11,864	3.4	95.8
7. 보조금	96,483	27.9	96,170	27.3	99.7
8. 지방채	-	-	-	-	-
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061	18.8	65,060	18.5	10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2.2 일반회계 세출 구조

· 세출결산 결과 2017년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은 8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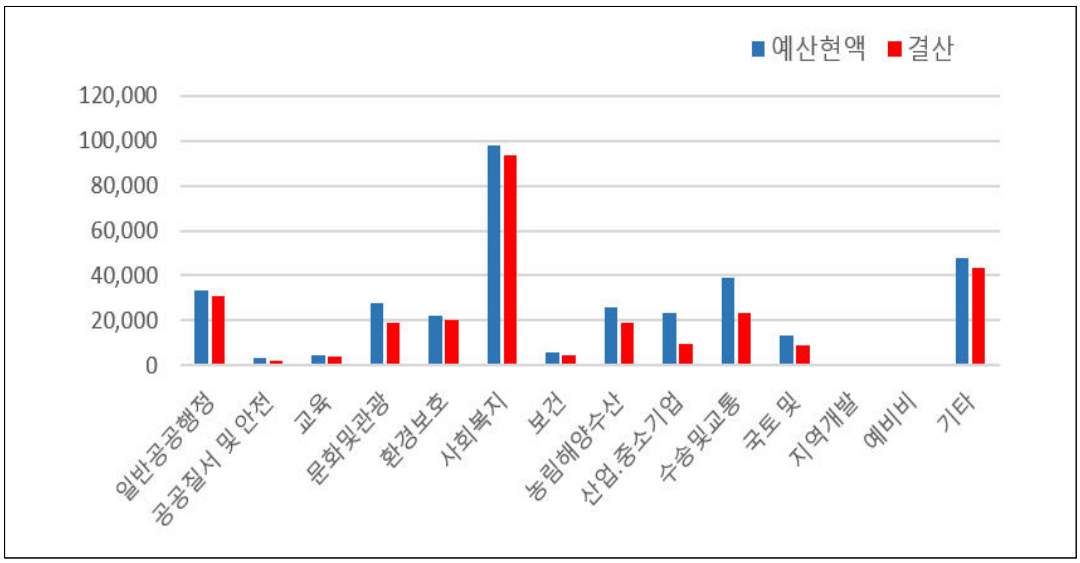
· 2017년도 세출총액은 결산 기준 279,606백만원으로, 사회복지가 33.5%, 일반공공행정이 11.1%, 수송 및 교통 부문이 8.4%를 차지

【표 3-10-1-4】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2012년	247,805	100.0	203,144	100.0	82.0
2017년	345,203	100.0	279,606	100.0	81.0
일반공공행정	33,521	9.7	31,047	11.1	92.6
공공질서 및 안전	3,132	0.9	2,355	0.8	75.2
교 육	4,506	1.3	4,265	1.5	94.7
문화 및 관광	27,820	8.1	19,050	6.8	68.5
환 경 보 호	22,235	6.4	19,971	7.1	89.8
사 회 복 지	97,705	28.3	93,691	33.5	95.9
보 건	5,560	1.6	4,727	1.7	85.0
농림해양수산	26,168	7.6	19,100	6.8	73.0
산업·중소기업	23,515	6.8	9,569	3.4	40.7
수 송 및 교 통	39,185	11.4	23,508	8.4	60.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3,549	3.9	9,123	3.3	67.3
예 비 비	770	0.2	-	-	0.0
기 타	47,537	13.8	43,200	15.5	90.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3. 특별회계 세출입 구조현황

3.1 특별회계

01 회계수

· 회계수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주택건설, 의료보험기금, 농공단지사업, 주차장설치사업, 시설관리공단사업, 대포항개발사업, 장기미집행대지보상으로 총 10건임

02 예산 및 세입·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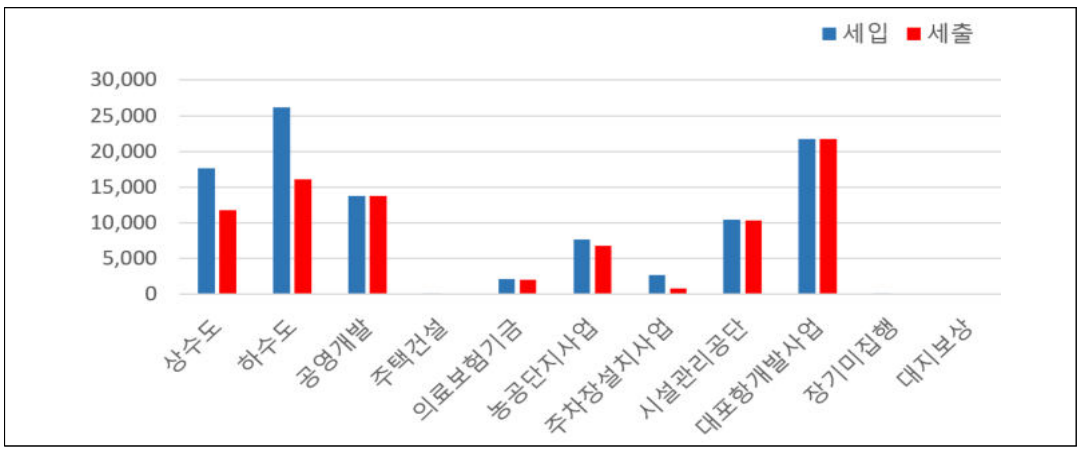
·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98,318백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증가
·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전체적으로 5년전에 비해 세입·세출 모두 증가했으며, 세입은 하수도가 25.5%, 상수도 17.1%의 순이며
· 기타특별회계로는 대포항개발사업이 2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0-1-5】 특별회계 예산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수	예산	세입		세출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2년	11	92,427	70,548	100.0	56,915	100.0	
2017년	10	98,318	102,730	100.0	83,322	100.0	
공기업특별회계	1	53,649	57,611	56.1	41,600	49.9	
상 수 도	1	15,521	17,608	17.1	11,759	14.1	
하 수 도	1	24,344	26,182	25.5	16,065	19.3	
공 영 개 발	1	13,784	13,821	13.5	13,776	16.5	
기 타 특 별 회 계	1	44,669	45,119	43.9	41,722	50.1	
주 택 건 설	1	144	141	0.1	-	-	
의 료 보 험 기 금	1	2,103	2,120	2.1	2,082	2.5	
농 공 단 지 사 업	1	8,050	7,727	7.5	6,746	8.1	
주차장설치사업	1	1,889	2,646	2.6	788	0.9	
시 설 관 리 공 단	1	10,499	10,497	10.2	10,346	12.5	
대포항개발사업	1	21,785	21,789	21.2	21,744	26.1	
장 기 미 집 행 대 지 보 상	1	199	199	0.2	16	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4. 지방세 부담액 및 용도별 징수현황

4.1 지방세 부담액

· 2017년도 지방세 부담액은 총 96,845백만원, 1인당 부담액은 약 1,177,118만원임

【표 3-10-1-6】 지방세 부담액 현황

구 분	지방세 (백만원)	인구 (외국인제외)	1인당부담액 (원)	세대 (외국인제외)	세대당부담액 (원)	비고
2012년	29,731	83,579	355,723	36,745	809,117	
2017년	96,845	82,273	1,177,118	37,772	2,563,93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4.2 지방세 용도별 징수현황

· 2017년도 지방세 징수 총 금액은 96,845백만원이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표 3-10-1-7】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보통세	
	계	도세	시군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2012년	29,731	-	29,731	-	-
2017년	96,845	55,585	41,260	41,514	2,111

구 분	보통세				
	도세			시군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폐지세목	주민세	지방소득세
2012년	-	-	-	493	5,178
2017년	-	-	-	1,336	11,521

구 분	보통세				목적세	
	시군세				도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폐지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12년	8,932	8,581	5,761	1	-	-
2017년	10,887	8,566	7,750	-	1,897	9,553

구 분	과년년도수입		
	소계	도세	시세
2012년	784	-	784
2017년	1,710	510	1,2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5. 문제 진단

- 속초의 재정은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재정자립도는 2017년 16.47%로 전국 시 평균(53.7%) 및 강원도(29.1%) 보다 낮음
- 시민의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한 도시내부의 상향적 정책결정 과정의 한계 존재
- 지역지구제, 도로 및 교통, 공원녹지 등과 관련된 전형적인 도시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이들 문제를 담당할 집행부서가 나뉘어 있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수요와 행정기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조직운영 및 공직환경 개선의 필요성 증대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경로와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방식의 개선 및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

2 재정계획

1. 기본방향

01 도시 공공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

- 도시의 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도시민의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도시재정의 확보가 필요함

02 자주재원의 확충

-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함께 도시정부는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도시행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자주적 도시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주재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고유재원을 통한 자주재정수입이 확충되어야 함

03 투자재원 한계극복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 현행 도시재정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공공재정으로부터 도시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운 실정
- 공공재정의 투자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함
-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04 도시재정증진 계획

- 도시의 적정한 성장관리는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의 재정력이 필요하므로 도시재정증진이 우선시되어야 함
- 속초시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 장기 전략사업 시행이 필요함

05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조직 개선

- 속초시의 재정능력을 점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경영기법 도입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 유도
- 시민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서비스 정신 강화
-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행정조직 구축과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을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속초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으로 차별화되는 도시행정 환경 구축

2. 실천계획

01 합리적 세원 관리

- 재산세제는 과세표 현실화 시책을 감안, 과세시가 표준액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조정
-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새로운 지방세 신설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부서·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 강구
- 사업 및 집행이 확정된 사업들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가 중단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유도

02 세외수입원의 발굴

- 재산매각의 기준가액을 엄밀히 조사하여 가격결정
- 사용료, 수수료의 과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03 지방채의 활용

-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수익채의 활용
- 효율적인 지방체계획의 수립
- 지방채가 금융자산의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자, 소득세 감면 폭 확대 등 검토
-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 제도화로 채권 종류 다양화
- 총량적 리스크관리 개념에서 재정수요, 재정능력을 감안한 탄력적 대응책 마련

04 민간자본의 도입

- 제3섹터방식의 확대 도입
- 현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고보조만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투자가 어려움
- 지역개발 및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민간기업자본을 유치
-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시의 재정 확충

05 다양한 세외수입 확보

-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상의 개발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수익자부담금 징수원칙을 통한 정책적 관리
- 상하수도, 대중교통, 의료시설, 문화시설,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 행정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위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수익자 독립채산 경영방식으로 전환
- 수익자부담에 대한 요율수준의 결정기준이 될 수 있는 현행 요율체계 조정 및 수수료와 사용료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합리적인 요율수준 정립

06 도시 자산 가치 증진

-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세지표의 현실화,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대 등 지속적 추진 필요
-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계획적인 인구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수립 필요
- 도시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시 전체의 생활수준과 편의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방안 강구

07 지방채의 탄력적인 발행

-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 제도화로 채권 종류 다양화
- 총량적 리스크 관리 개념에서 재정수요, 재정능력을 감안한 탄력적 대응책 마련

08 재정수입 제고 방안

- 세외수입 확보 필요(양여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
- 도시의 발전정책 및 계획수립 시 국가정책 및 강원도의 정책과 연계성 검토
- 국책사업 및 도 주관 사업 등의 유치로 세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구상

09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제3섹터방식의 민간참여 확대 도입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고보조만으로는 시민복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움
-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시의 재정 확충
- 지역개발 및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자본 유치

3. 재정규모 전망

· 재정규모는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의 추계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에 부합토록 재정규모 추계

- 2017년 세입규모는 통계연보 일반회계 세입결산 적용
-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세입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증가율 적용 (지방세 1.3%, 세외수입 2.0%, 지방교부세 0.8%, 조정교부금 4.3%, 보조금 등 1.7%, 기타 1.8%)

· 2040년 목표연도의 재정규모는 534,136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6.8%를 차지하고 이전 재원이 63.5%, 기타재원이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됨

【표 3-10-2-1】 재원별 재정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총 계	351,863	402,493	446,068	490,166	534,136
자체재원	58,902	67,646	75,072	82,532	89,891
지방세	41,260	46,676	51,278	55,792	60,126
세외수입	17,642	20,970	23,795	26,740	29,765
이전재원	227,901	258,580	285,244	312,142	338,919
지방교부세	119,867	130,688	140,202	148,965	156,768
조정교부금	11,864	16,339	20,478	25,419	31,252
보조금 등	96,170	111,553	124,564	137,758	150,899
기타	65,060	76,267	85,752	95,492	105,326

주)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장래 세입규모 추정

4. 재정규모 전망

· 세출규모는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의 추계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에 부합토록 세출규모 추계

- 2017년 세출규모는 통계연보 일반회계 세출결산 적용
-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세출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증가율 적용 (일반공공행정 2.7%, 공공질서 및 안전 1.7%, 교육 6.7%, 문화 및 관광 -1.1%, 환경보호 0.7%, 사회복지 2.5%, 보건 -0.6%, 농림해양수산 1.3%, 산업·중소기업 -2.2%, 수송 및 교통 -0.3%, 국토 및 지역개발 -3.0%, 예비비 -1.4%, 기타 3.8%)

· 2040년 목표연도의 세출은 468,322백만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37.4%)와 일반공공행정(12.9%)가 전체의 50.2%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됨

【표 3-10-2-2】 세출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합계	279,606	325,395	368,468	416,074	468,322
일반공공행정	31,047	38,685	45,293	52,519	60,319
공공질서 및 안전	2,356	2,743	3,069	3,402	3,736
교육	4,264	6,711	9,242	12,605	17,028
문화 및 관광	19,050	17,803	17,354	16,754	16,021
환경보호	19,971	21,610	23,072	24,396	25,551
사회복지	93,691	115,206	133,694	153,659	174,925
보건	4,727	4,611	4,614	4,572	4,488
농림해양수산	19,100	21,607	23,737	25,827	27,833
산업·중소기업	9,569	8,080	7,418	6,744	6,074
수송 및 교통	23,508	23,510	23,888	24,039	23,960
국토 및 지역개발	9,123	7,105	6,229	5,410	4,653
예비비	-	-	-	-	-
기타	43,200	57,724	70,858	86,147	103,734

주)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장래 세출규모 추정

3 재원조달방안

1. 기본방향

01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 신세원 발굴, 과세형평성 개선, 세율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세 재원 확대방안 마련
- 지방세 과세 관련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관리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담당인력 확충 또는 민간위탁 등을 통한 징수율 증대방안 마련
- 징수책임과 지출권의 일치라는 재정운영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의 수입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새로운 세원의 개발 추진
- 상수도·하수도·도시개발사업·주택사업 등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방 수익체의 활용

02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 도로·교량사업, 주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고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적극 유도
- 민간자본 유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문화·관광·체육, 교육, 주택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적극 유치

03 세외수입 확대

-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세외수립 증대 방안 마련
-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
- 세외수입 관리구조의 시스템화를 통한 연간 관리목표제의강화, 모니터링 강화, 인센티브확대방안 마련
- 재산임대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가격 고려, 임대료 적정부과를 추진하고, 유휴토지전수조사 후 매각·임대 등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무료 이용시설의 유료전환을 통한 시설 사용료 수입 증대 도모 등 시행

04 재정운영의 건전성 도모

- 단계별 투자 우선수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재정운영을 개선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사전배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05 민간자본도입

▌기본방향

구 분	내 용
정부와 민간 출자형태	·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출자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 · 자기자본 및 자체조달자금으로 사업 시행-국민부담 경감 · 내부 수익률 보장을 위해 과다한 경영개입 배제 필요
정부와 국민 출자형태	· 국민주체적 민영회사 설립으로 사업 추진 · 초기에는 공기업 형태이나 점차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 · 주요재원 : 주식매각자금, 자체조달자금, 정부재원 지원
BOT 방식	·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설립 · 투자비 회수기간을 협의하여 회수기간 이후 기부채납 · 재계약시 시설이용료 지불
프랜차이즈	· 정부에 의해 프랜차이즈 업체로 선정된 민간기업이 시행 · 재정지원 대책으로 정부보증채권 발행(타기업과 합자 등) ·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 허가

▌민간자본 도입방안 및 개발사업

구 분		도입방안
민·관 혼합 출자형태	정부와 대기업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발기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정부와 민간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 국민주 보급에 의한 국민주체적 민영회사 설립
민간 출자형태	기부채납방식	· 민간기업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컨소시엄) · 투자비 회수 후 기부채납
	계약제도방식	· 프랜차이즈업체를 선정하여 건설 및 운영 · 운영기간은 정부와 협의(일정기간 후 정부매수)

【표 3-10-3-1】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개발사업

구 분	개발가능사업
지역및도시개발	부동산 및 호텔업, 공업단지조성, 빌딩의 임대 및 관리(재개발)
주택도시서비스	열공급사업, 건축의 취득, 시설관리
관광레져	관광개발, 호텔.유스호스텔의 경영, 수족관 및 유원지 경영
농림수산	식육의 제조, 보관 및 가공, 판매
상공	전시관 임대, 유통단지 조성, 도매점포·전시장의 임대업
운수도로	민영 철도업, 화물임대업, 도로
사회복지,위생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분뇨 수집·운반
기타	방송사업, 주차장 임대

2. 재원별 조달방안

01 자체재원에 의한 방안

- 부문별사업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허용재원의 확보방안을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체계의 조정과 국고지원의 확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기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보방안 강구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목증설과 현행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그 토지를 관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 부여가 타당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유도
- 재산수입 및 각종 허가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수익자 부담금 징수의 확대, 사용료 징수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강구

02 의존재원에 대한 방안

- 특정목적의 조정재원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중앙과 지방간 재배분을 통한 부담 한계를 확정토록 하며, 보조재원으로서의 기능보다 평균재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부세의 보강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율에 대한 고정수준 확보
- 영세한 보조금이나 목적이 달성된 보조금 등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중앙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강구

03 민자유치방안

-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중 일부를 민간기업과 공동 부담함으로써 부족재원을 충당하며, 민간기업의 경제성을 확보토록 유도
-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투자규모가 큰 반면 유지관리비 회수가 긴 사업은 민자유치로 유도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하여 민간기업의 자본력과 경영기법, 공공의 행정력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의 새로운 투자주체의 구성으로 지방재정의 한계성 극복
- 지역주민과 관계한 사업추진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으로 형성된 투자주체를 구성하여 현실화된 저리의 지방채 및 주식발행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확보방안 모색

【표 3-10-3-2】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개발사업

구 분	사업주체	참여기능사업	비 고
직접참여	민간부문	· 우편, 전화, 상수도	민간공급형
간접참여	민간부문(자금) 공공부문(주체)	· 병원, 복지시설 등	자금공급형
위탁참여	민간부문	· 쓰레기 수거, 검사업무 등	업무위탁형
합동참여	공공+민간	· 공항, 항만, 일부도로, 대형프로젝트 등	민간협동형

【표 3-10-3-3】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개발사업

구 분	직접참여	간접참여	제3섹터 (민관합동개발)
특 성	·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거나 허가권을 받아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 민간이 일정지분을 가지고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투자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대상사업	·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차장, 복합터미널, 민자역사 등 지역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관광개발사업	· 직접·간접참여의 모든 대상사업
장·단점	· 민간부문에 자율적인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권개입의 소지가 높음	· 부족한 자금 조달 · 민간의 창의력 활용에 한계 · 적절한 민자유치조건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특혜소지가 있음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 · 대규모 투자사업이 민간 자본의 참여로 신속하게 활성화 · 공공성 결여

4 투자계획

1. 기본방향

·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에 따라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자주재원의 확충,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도시재정계획과 연계한 가용 투자재원을 산출하고 도시 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합리적인 투자배분계획 수립

2. 투자 우선순위

01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사항

【표 3-10-4-1】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 긴급성 / 중요성	· 분배효과
· 필요성 / 우수성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 재정수입효과	· 법적 / 정치적 타당성
· 위생 / 안전 효과	· 사업지연, 미집행의 결과 / 효과
· 지역경제 효과	· 불확실성 : 위험
· 환경 / 심미적 효과	· 정부 / 지자체간 조정의 필요성
·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기적 불편함	·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

02 우선순위 결정기준

- 도시성장 및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지역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전력사업으로 정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 추진
-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가 직접수익을 유발하거나 비용환수가 용이한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 등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사업부터 우선 개발
- 생활권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설치

03 시설투자 우선순위

- 상위계획과 관련한 보완적인 사업
-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고용기회를 증대·창출하는 사업
- 사업의 편익이 특정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 비수익성 사업참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설관리권, 사용료징수권, 부대수익사업권, 세제지원, 절차 간소화 등)



